전근대 수원 자료집(7)

일성록(국역·원문)

2015. 3. 6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일러두기

1. 수록 지역

행정 구역상 현재의 수원은 역사 전통과 유리된 구획이기 때문에, 본 자료집에서는 수원의 역사 자료를 집성하기 위하여 ‘수원 문화권’ 개념을 설정하여 현 행정 구역상 화성, 오산, 남양 지역까지 포함하였다.

2. 수록 범위

본 자료집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서비스하는 국역『일성록』의 검색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수록 범위는 2014년 12월 현재 국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1760년(영조 36) 1월 1일부터 1794년(정조 18) 11월 18일까지의 기사이다.

3. 수록 방식

⑴ 기사를 내용에 따라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다시 분류 안에서는 시간순서로 배열하였다.

⑵ 기사의 내용에 대하여 2줄 이내로 요약문을 달아 기사의 요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⑶ 주요 어휘와 구절에 밑줄을 긋고 굵게 표시하였다.

⑷ ‘수원 문화권’과 관련 없는 내용은 생략한 뒤 ‘(…)’ 표시하였다.

⑸ 『일성록』의 원문에 도삭된 부분은 ‘[ ]’로 표기하였다.

4. 분류 방식

수집된 자료는 기왕의 연대기 자료 분류 체계를 바탕으로 ‘수원 문화권’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 항목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세부내역
1	정치	왕실	국왕	종사	행행(능행·온행·강무)	의식	산릉·천릉
		행정	중앙행정	지방행정	인사(선발, 임면, 관리)
		사법	재판	행형	치안	정변·민란	파면
		군사	군정	중앙군	지방군	특수군	금화(禁火)	군역	병참(兵站)	통신(通信)[봉수]	관방	전쟁.
		인물	수원인, 수원부사(유사)

2	경제	재정	재정일반 ㅣ 전세 ㅣ 공물(貢物) ㅣ 역(役) ㅣ 진상 ㅣ 잡세 ㅣ 창고 ㅣ 국용(國用) ㅣ 군자 ㅣ 상공(上供) ㅣ 전매(專賣)
		상업	상업일반 ㅣ 상인 ㅣ 시장 ㅣ 상품 ㅣ 무역(貿易)
		교통	육운 ㅣ 수운 ㅣ 마정(목장) ㅣ역참 ㅣ역원
		농수산업	◯양전 ㅣ 경영형태 ㅣ 토지매매 ㅣ 권농 ㅣ농사 ○농업기술 ㅣ 수리 ㅣ 개간 ㅣ 농작 ○임업 ㅣ 목축 ㅣ 양잠 ㅣ 면작 ㅣ 과수원예 ㅣ 특용작물 ○어업 ㅣ 염업
		광공업	○광산 ㅣ 채광 ㅣ 제련 ○관청수공 ㅣ 사영수공 ㅣ 농촌수공 ㅣ 장인 ㅣ 수공업품
		건설	건축 ㅣ 토목 ㅣ 보수
3	사회	가족	가족 ㅣ 친족 ㅣ 가산 ㅣ 성명 ㅣ 호구 ㅣ 호적
		신분	양반ㅣ 중인 ㅣ 상민 ㅣ 신량역천 ㅣ 천인 ㅣ 신분변동
		향촌	취락 ㅣ 지방자치 ㅣ 사회조직 ㅣ 장지(葬地)
		의식주	○관복 ㅣ 상복 ㅣ 예복 ㅣ 장신구 ○주부식 ㅣ 주류 ㅣ 기호식품 ㅣ 기명제물 ○가옥 ㅣ 가구ㅣ 택지 ㅣ주거
		윤리·풍속	강상 ㅣ 사회기강
			예속 ㅣ 풍속ㅣ 연회 ㅣ 구휼(진휼)
4	문화	사상	유학 ㅣ 불교 ㅣ 교육(서원·향교·과거) ㅣ토속신앙
		과학	자연재해(가뭄·홍수) ㅣ 의학 ㅣ 약학 ㅣ 보건 ㅣ 수레
		지리·경관	산천 ㅣ 여정 ㅣ 역사지리
		예술	음악 ㅣ 미술 ㅣ문학 ㅣ 서예
5	화성	성문	長安門, 八達門, 蒼龍門, 華西門, 華虹門
		시설	西將臺, 東將臺, 東北角樓(=訪花隨柳亭) 西南角樓(=華陽樓), 東北鋪樓(=角巾臺)
		행궁	○新豊樓(鎭南樓), 左翊門, 中陽門(重鑰門), 奉壽堂(壯南軒)○洛南軒[藏春閣], 得中亭[得閒門], 老來堂[難老門, 歌風門]○長樂堂, 景龍館[3판문 至樂門], 福內堂[동행각 維福門, 서별당의 九如門, 외행각 북쪽 求福門], 維與宅[초명 隱若軒, 拱晨樓, 附舍門. / 向春門(서), 延暉門·維與門(북), 嘉漁門·慶華門(남), 賓曦門(동)] 未老閑亭(일명六面亭). ○于華館(八達館), 講武堂, 華請館(동헌), 祝釐堂(내아) 臥護軒, 內鋪舍[미복원], 分奉常寺 ○華寧殿, 壯勇營(壯勇衛) 禦牧軒(영조글씨), 拱樓屢
		원행	○穩穩舍(과천) 萬安橋(안양), 彌勒峴(지지대고개, =遲遲峴, =沙斤峴), 遲遲臺, 槐木亭橋, 만석거, 芰荷洞, 大有坪, 觀吉野 ○梅橋(초명 梅山橋), 上柳川, 萬和峴, 建章洞, 眞木亭(橋), 下柳川, 皇橋, 甕峰, 大皇橋, 逌瞻峴, 安寧里, 逌覲橋, 만년제
		제언	祝萬堤(서호), 萬年堤, 萬石渠, 坤申堤 杵池(=方下池, 남곡면) 南池, 北池

목 차

Ⅰ. 수원(水原)

2. 경제(經濟) ····· 1

⑴ 재정 ····· 1

⑵ 교통 ····· 69

⑶ 농수산업 ····· 83

⑷ 광공업 ····· 86

⑸ 건설 ····· 87

3. 사회(社會) ····· 170

⑴ 가족 ····· 170

⑵ 신분 ····· 172

⑶ 향촌 ····· 174

⑷ 의식주 ····· 180

⑸ 윤리·풍속 ····· 181

4. 문화(文化) ····· 203

⑴ 사상 ····· 203

⑵ 과학 ····· 229

⑶ 지리·경관 ····· 234

5. 화성(華城) ····· 235

⑴ 행궁 ····· 235

Ⅱ. 남양(南陽)

1. 정치(政治) ····· 242

⑴ 왕실 ····· 242

⑵ 행정 ····· 244

⑶ 사법 ····· 276

⑷ 군사 ····· 332

2. 경제(經濟) ····· 350
⑴ 재정 ····· 350
⑵ 교통 ····· 360
⑶ 농수산업 ····· 364
⑷ 건설 ····· 365

3. 사회(社會) ····· 385
⑴ 윤리·풍속 ····· 385

4. 문화(文化) ····· 394
⑴ 과학 ····· 394
⑵ 예술 ····· 400

2. 경제(經濟)

⑴ 재정

경제/재정

수원에 있는 정빈방(靖嬪房)의 둔세(屯稅)를 비판하다

강 정빈방(靖嬪房)의 둔세(屯稅)를 거두는 전답이 유토 궁방전(有土宮房田)인지 무토 궁방전(無土宮房田)인지 분명히 조사해서 장문하라고 명하였다.

목 좌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에 정빈방의 전답이 있는데, 내사(內司)는 비국(備局)에 논보(論報)하기를 유토 궁둔(有土宮屯)이라고 하고, 백성들은 비국에 와서 호소하기를 무토 면세전(無土免稅田)이라고 합니다. 무토 면세전인데 유토 궁둔이라고 했다면 궁차(宮差)의 죄이고, 유토 궁둔인데 무토 면세전이라고 했다면 백성들의 호소가 무고(誣告)입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분명히 조사해서 장문하게 한 뒤에 품처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靖嬪房屯稅有無土明覈狀聞

목 左議政 金尙喆啓言**水原地**有靖嬪房田畓而內司則論報備局以爲有土宮屯民人則來訴備局謂之無土免稅以無土而托以有土則宮差之罪也以有土而稱以無土則民訴之誣也分付道臣使之明覈狀聞後請稟處從之

<일성록, 정조즉위년(1776) 11월20일(무자)>

경제/재정

좌의정 김상철이 수원 궁둔전과 바꾼 강화(江華)의 북일 목장(北一牧場)의 환원을 아뢰다

강 강화(江華)의 북일 목장(北一牧場)을 각기 본처(本處)로 환원하도록 명하였다.

목 좌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강화의 북일 목장은 본래 말을 먹이기에 좋은 곳으로 일컬어져 온 곳입니다. 그런데 연전에 내수사가 수본(手本)을 올려서 **수원(水原)**의 궁둔전(宮屯田)과 서로 바꾼 다음, 본 목장의 말은 매음도(煤音島)로 옮겼는데, 해마다 말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꾼 땅들을 종전과 같이 각각 본처로 다시 환원하도록 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江華北一牧場各還本處

목 左議政 金尙喆啓言江華北一牧場素稱宜馬之地年前內需司以**水原**宮屯呈手本相換本場馬移送煤音島馬畜逐歲耗縮以相換之地請依前各還本處從之

<일성록, 정조원년(1777) 2월26일(임술)>

경제/재정

수원의 군작미 현황을 살피다

강 각 해읍(該邑) 군작미(軍作米)의 회안(會案)을 마감(磨勘)한 수령을 현고(現告)하여 나문하라고 명하였다.

목 호조 판서 정민시가 아뢰기를, "각 도 군작미의 회안을 살펴보니, 경기의 **수원** 등 10개 고을의 군작미가 신묘년(1771, 영조47)에서 을미년(1775, 영조51)까지 분기(分期)마다 도둑맞아 줄어든 수량이 미(米)는 839석이고 조(租)는 1736석이었습니다. 막중한 국곡(國穀)이 이와 같이 도둑맞아서 줄어들었으니 일이 지극히 놀랍습니다. 각 해당 고을 해당 분기의 회

안을 마감한 수령들을 모두 본도로 하여금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하게 해서 나문하여 정죄(定罪)하며, 도둑맞아 줄어든 곡물은 도신으로 하여금 따로 더 자세히 조사하여 즉시 거두기를 마친 뒤에 장문(狀聞)하게 하고, 각 해당 감색(監色)은 각별히 엄하게 다스리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各該邑軍作米會案磨勘守令現告拿問

목 戶曹判書 鄭民始啓言考見各道軍作米會案則京畿水原等十邑軍作米自辛卯至乙未逐等盜減之數米爲八百三十九石租爲一千七百三十六石莫重國穀之若是盜減事極驚駭各該邑當等會案磨勘守令竝令本道指名現告拿問定罪盜減穀物令道臣另加詳覈卽爲畢捧後狀聞各該監色各別重繩之意請分付從之

<일성록, 정조 5년(1781) 8월 27일(정유)>

경제/재정

수원의 군액(軍額)을 살피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총융청의 환곡(還穀)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300석의 급대(給代)는 어디에서 마련해 낼 것인지 충융사가 진달하라."

하니, 서명선이 아뢰기를, "이것은 영문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하고, 부사직 이주국(李柱國)이 아뢰기를, "북한산성이 중영(中營)이 되는데, 지방(支放)을 잇기 어렵다는 이유로 군액(軍額)을 삭감한다면 융정(戎政)에 관계되는 일이어서 허술하다는 탄식이 있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어떻게 중영이 되는가?" 하니, 이주국이 아뢰기를,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은 전좌영(前左營)과 전우영(前右營)이 되고 파주(坡州)와 장단(長湍)은 후좌영(後左營)과 후우영(後右營)이 되기 때문에 북한산성이 중영이 되는데, 아병(牙兵) 5초(哨), 별파군(別把軍) 200명, 수첩군관(守堞軍官) 200명, 교련관(敎鍊官) 9인을 둡니다. 돌아보건대 이것은 오래된 군액(軍額)이므로 지금 갑자기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평창의 환곡은 수량이 많지 않아 도합 1만 2000여 석인데, 부족한 모조(耗條)가 200여 석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유고(留庫)가 이 수량인가, 원총(原摠)이 이 수량인가?" 하니, 이주국이 아뢰기를, "원총이 1만 2000석 남짓인데 분급(分給)한 것이 6000석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600석의 모조를 제하고 또 대하조(貸下條)와 잡탈조(雜頉條)를 제하면 실제 유고가 8000석 남짓이 될 것이다." 하니, 이주국이 아뢰기를, "원총은 1만 2000석이지만 잡탈을 제하면 과연 8000석이 됩니다. 8000석 중에서 분급해야 할 것이 4000석이나, 1700석은 이전(移轉)하고 300석은 원역(員役)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민호(民戶)에 분급한 환곡은 2000석에 불과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본영은 조금 부유했는데 요즘에는 몹시 피폐해졌다." 하니, 구선복이 아뢰기를, "환곡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또 수원의 모미(耗米)가 있었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일컬어졌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것은 복구하기 어렵다." 하니, 이주국이 아뢰기를,

"북한산성의 군제(軍制)를 변통한 뒤에야 이 폐단을 고칠 수 있는데, 이것은 함부로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모조 200여 석은 신이 삼가 중간에서 절약하여 편의(便宜)한 쪽으로 조처하겠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거조(擧條)를 내거든 거행하라." 하고, (…)

綱 行次對于誠正閣

目 (…) 予曰總戎廳還穀其可畢捧乎三百石給代出處何以爲之總戎使陳達也命善曰此則當自營門區處矣副司直 李柱國曰北漢爲中營若以支放之難繼減削軍額則事係戎政恐有疏虞之歎矣予曰何以爲中營柱國曰水原 南陽爲前左右營 坡州 長湍爲後左右營故北漢爲中營而置牙兵五哨別把軍二百名守堞軍官二百名敎鍊官九人顧此年久軍額今難猝革矣平倉還穀其數不多合爲一萬二千餘石而不足耗條爲二百餘石矣予曰何謂也留庫爲此數乎原總爲此數乎柱國曰原總爲一萬二千石零而分給爲六千石矣予曰除六百石耗又除貸下條雜頉條則實留庫當爲八千石零矣柱國曰原總則爲一萬二千石而除雜頉則果爲八千石矣八千石內分給爲四千石而一千七百石爲移轉三百石給員役故戶還則不過爲二千石矣予曰本營稍富饒而近甚凋殘矣善復曰不但還穀古則又有水原耗米故稱爲富饒矣予曰此則有難復舊也柱國曰北漢軍制變通然後可革此弊而此則有難輕議至於耗條二百餘石不足之數則臣謹當從中節省從便區處矣予曰待出擧條擧行 (…)
<일성록, 정조5년(1781) 11월 20일(무오)>

경제/재정

수원의 향미(餉米)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강 남양(南陽) 등 6개 고을은 강도(江都)의 향미(餉米)를 정봉(停捧)하고, 양주읍(楊州邑)은 총융청의 향미에 대한 모조(耗條)를 탕감(蕩減)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심이지가 아뢰기를, "도내의 환향(還餉)을 모두 한꺼번에 조령(朝令)을 받들어 정퇴(停退)하는데, 그 가운데 남양, 수원(水原), 김포(金浦), 통진(通津), 교하(交河), 양천(陽川) 등 6개 고을에 대해서는 올봄에 받은 강도의 향미를 원래의 환향과 아울러 논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도(沁都)에서 한창 독촉하여 거두고 있는 양주 고을에 대해서는 당년치 환향의 모조에 대해 올봄 특교(特敎)로 모곡을 덧붙이지 말고 받도록 하였는데, 북한산성(北漢山城) 향미의 모조는 혼동하여 제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례적인 일은 아니나 강도의 향미를 정퇴하는 것과 총융청의 향미에 대해 모곡을 제해 주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는 품청(稟請)하여 처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묘당에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하문할 필요 없이 강도의 향미에 대해서는 일체 정봉하고, 총융청 향미의 모조에 대해서는 환향의 모조의 규례대로 일체 탕감하라." 하였다.

강 命南陽等六邑江都餉米停捧楊州邑 總廳餉耗蕩減

목 京畿監司 沈頤之啓言道內還餉一竝奉朝令停退而其中南陽 水原 金浦 通津 交河 陽川等六邑今春所受江都餉米不可幷論於元還餉爲言而自沁都方督捧楊州一邑當年還耗今年特敎除耗而北漢餉耗不可混同減除爲言雖非異事江都米之停退總廳米之減耗當否不可不稟請處分請下詢廟堂處之敎以不必詢問江都米事一體停捧總廳餉耗事依還耗例一體蕩減
<일성록, 정조7년(1783) 12월 2일(기미)>

경제/재정

수원의 향미(餉米)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강 강도의 향미를 옮겨 운송하는 데에 드는 잡비(雜費)는 묘당에 하문하여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심이지가 아뢰기를, "올봄 강도의 향미를 옮겨 운송할 때에 배와 말에 드는 잡비가 88석이었는데, 원곡(元穀)에서 가져다 쓰고는 아직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계미년(1763, 영조39)과 을유년(1765, 영조41) 두 해에도 강도에서 옮겨 운송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당년의 모조(耗條)에서 제급(除給)하여 보충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원, 남양** 두 고을에서 받은 1100석에서 그 정퇴하는 수를 제하면 모조가 겨우 78석인데, 비록 88석의 수에 맞출 수는 없지만 이미 계미년과 을유년의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모조를 가지고 제급하여 원곡에서 가져다 쓴 수량을 보충하는 것이 편의(便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묘당에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綱 命江都米移運雜費詢廟堂處之

目 京畿監司 沈頤之啓言今春江都米移運時船馬雜費爲八十八石而取用於元穀中尙未區處矣癸未乙酉兩年亦有江都移運而其時以當年耗條除給充補云今此水原 南陽兩邑所受一千一百石除其停退之數則耗條堇爲七十八石雖未能準八十八石之數旣有癸未乙酉已例今番亦以耗條除給以補元穀取用之數恐合便宜請下詢廟堂處之從之

<일성록, 정조7년(1783) 12월 2일(기미)>

경제/재정

수원에 보내지는 강도(江都)의 미곡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강 강도(江都)의 미(米)를 이운(移運)할 때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에 보내는 곡물에서 모조(耗條)를 제하고 주어서 원곡에서 가져다 쓰는 수량에 보태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좌의정 이복원이 아뢰기를, "경기 감사 심이지(沈頤之)의 장계에, '올봄 강도의 미를 이운할 때 **수원**에 700석을 보내고 남양에 400석을 보내는 데에 드는 선박과 말의 잡비가 88석인데 그것을 원곡에서 가져다 쓰는 문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읍이 받는 1100석에서 정퇴조(停退條)를 제하면 모조는 겨우 78석이 됩니다. 이미 계미년(1763, 영조39)과 을유년(1765, 영조41)의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모조를 제하고 주어서 원곡에서 가져다 쓰는 수량에 보태도록 묘당에 하문하여 처분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원곡을 예전대로 감(減)할 수 없고 또 근거할 만한 전례가 있으니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江都米移運時水原 南陽耗條除給以補元穀取用之數

목 左議政 李福源啓言京畿監司 沈頤之狀啓以爲今春江都米移運時水原七百石南陽四百石船馬雜費爲八十八石而取用於元穀中尙未區處矣今此兩邑所受一千一百石除其停退則耗條僅爲七十八石旣有癸未乙酉已例今番亦以耗條除給以補元穀取用之數事下詢廟堂處之爲辭矣元穀不可仍減前例亦有可據依所請施行之意請分付從之

<일성록, 정조8년(1784) 1월 13일(기해)>

경제/재정

수원에 별도로 진휼할 재원 문제에 대해 윤음을 내리다.

강 경기(京畿)와 호서(湖西)에 별진(別賑)의 재원에 대한 윤음(綸音)을 반급(頒給)하라고 명하였다.

목 ○ 하교하기를, "지금 경기와 호서 양도에 별진의 재원에 대한 윤음을 내리니, 경기 감영에는 백면지(白綿紙)로 장황(粧績)한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3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白紙)에 쓴 것 4건을, 도사(都事)와 중군(中軍)에게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2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3건을, 파주(坡州)·장단(長湍)·풍덕(豐德)·인천(仁川)·남양(**南陽**)·부평(富平)·죽산(竹山)·통진(通津)·고양(高陽)·김포(金浦)·교하(交河)·양천(陽川) 등 우심(尤甚)인 진휼(賑恤)을 설행한 12개 읍에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3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4건을, 광주(廣州)·양주(楊州)·수원(水原)·용인(龍仁)·양지(陽智)·과천(果川) 등 지차(之次)인 진휼을 설행한 6개 읍에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3건을, 여주(驪州)·교동(喬桐)·안산(安山)·안성(安城)·가평(加平)·영평(永平)·진위(振威)·이천(利川)·양근(楊根)·금천(衿川)·양성(陽城)·지평(砥平)·음죽(陰竹)·포천(抱川) 등 지차인 14개 읍에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1건을, 덕포(德浦)·화양(花梁) 등 진휼을 설행한 2개 진(鎭)에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4건을 반급하여, 도합 장황한 백면지에 쓴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65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98건을 반급하라.

홍충 감영에는 백면지로 장황한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3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4건을, 도사와 중군에게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2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3건을, 병영(兵營)·수영(水營)에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3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4건을, 공산(公山)·홍주(洪州)·서원(西原) 등 3개 진영(鎭營)에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2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3건을, 태안(泰安)·서천(舒川)·대흥(大興)·한산(韓山)·천안(天安)·온양(溫陽)·면천(沔川)·서산(瑞山)·평택(平澤)·아산(牙山)·직산(稷山)·비인(庇仁)·예산(禮山)·당진(唐津)·해미(海美)·보령(保寧)·남포(藍浦)·은진(恩津)·부여(扶餘)·결성(結城)·석성(石城) 등 우심인 진휼을 설행한 21개 읍에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3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4건을, 홍주(洪州)·임천(林川)·공산(公山)·정산(定山)·홍산(鴻山)·서원(西原)·제천(堤川)·연기(燕岐)·문의(文義)·전의(全義)·덕산(德山) 등 지차인 진휼을 설행한 11개 읍에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3건을, 청안(淸安)·단양(丹陽)·이성(尼城)·진잠(鎭岑)·연산(連山)·음성(陰城)·청양(淸陽) 등 지차인 7개 읍에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1건을, 성환(成歡)·이인(利仁)·율봉(栗峯) 등 진휼을 설행한 3개 역(驛)에는 각각 백면지로 장황하지 않은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4건을, 안흥(安興)·평신(平薪)·소근(所斤)·마량(馬梁)·서천포(舒川浦) 등 진휼을 설행한 5개 진(鎭)에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4건을 반급하여, 도합 백면지로 장황한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108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183건을 반급하라." 하였다.

강 命畿湖別賑綸音頒給

목 敎曰今下畿湖兩道別賑資綸音京畿監營粧緘 白綿紙件一不粧白綿紙件三不粧白紙件四都事中軍各不粧白綿紙件二不粧白紙件三坡州 長湍 豐德 仁川 南陽 富平 竹山 通津 高陽 金浦 交河 陽川等尤甚設賑十二邑各不粧白綿紙件三不粧白紙件四廣州 楊州 水原 龍仁 陽智 果川等之次設賑六邑各不粧白綿紙件一不粧白紙件三驪州 喬桐 安山 安城 加平 永平 振威 利川 楊根 衿川 陽城 砥平 陰竹 抱川等之次十四邑各不粧白綿紙件一不粧白紙件一德浦 花梁等設賑二鎭各不粧白綿紙件一不粧白紙件四合粧緘白綿紙件一不粧白綿紙件六十五不粧白紙件九十八頒給洪忠監營粧緘白綿紙件一不粧白綿紙件三不粧白紙件四都事中軍各不粧白綿紙件二不粧白紙件三兵營 水營各不粧白綿紙件三不粧白紙件四公山 洪州 西原等三鎭營各不粧白綿紙件二不粧白紙件三泰安 舒川 大興 韓山 天安 溫陽 沔川 瑞山 平澤 牙山 稷山 庇仁 禮山 唐津 海美 保寧 藍浦 恩津 扶餘 結城 石城等尤甚設賑二十一邑各不粧白綿紙件三不粧白紙件四洪州 林川公山定山 鴻山 西原

提川 燕岐 文義 全義 德山等之次設賑十一邑各不粧白綿紙件一不粧白紙件三淸安 丹陽 尼城 鎭岑 連山 陰城 淸陽等之次七邑各不粧白綿紙件一不粧白紙件一成歡 利仁 栗峯等設賑三驛各不粧白綿紙件一不粧白紙件四安興 平薪 所斤 馬梁 舒川浦等設賑五鎭各不粧白綿紙件一不粧白紙件四合粧縨白綿紙件一不粧白綿紙件一百八不粧白紙件一百八十三頒給
<일성록, 정조8년(1784) 1월 17일(계묘)>

경제/재정

수원의 진휼을 위한 재원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비변사 당상과 경기 감사 심이지(沈頤之)를 소견(召見)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오늘 밤 소견하는 것은 양주목(楊州牧)의 거조(擧條)에 관한 일 때문이다. 경은 그 거조를 보았는가?" 하니, 경기 감사 심이지(沈頤之)가 아뢰기를, "거조는 신이 미처 보지 못하였습니다만, 양주는 백성이 많고 곡식이 적은 상황이 도 안에서 가장 심하여 진휼을 설행하고 환곡을 분급하는 것이 모두 난감하기 때문에 해당 목사가 일찍이 경청(京廳)의 전곡(錢穀)을 청해 얻겠다는 뜻으로 신과 의견을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과연 어전(御前)에서 진달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른바 경청은, 곡식은 모두 발매하는 데 들어갔고 전은 동을 사는 데 들어가게 될 것이니, 또 어찌 기읍(畿邑)에 나누어 줄 재원이 있겠는가. 작년에 진휼 재원으로 획급한 것의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가?" 하니, 심이지가 아뢰기를, "36개 읍이 모두 부족한데, 양주는 적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양주의 부족한 수량이 2000석이라고 하였다."

하니, 심이지가 아뢰기를, "총융청의 보환전(保還錢)을 청하여 얻은 수량이 거의 5만 냥에 가깝기 때문에 도내의 각 읍에 순차(巡次)를 안배하여 조금씩 분급하여 작환(作還)할 계획입니다만, 대체로 부족한 곳은 양주와 **수원(水原)**이 가장 심합니다. 본도의 전례에도 경청의 곡물을 청해 얻은 일이 있는데, 갑술년(1754, 영조30)에는 3000석이었고 병자년(1756, 영조32)과 정축년(1757, 영조33)에는 혹 2000석, 혹 1000석이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러한가? 헤아려 구획할 방도가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또 이르기를, "금년에 기백(畿伯)은 환곡을 잘 거두었다고 하니 매우 가상한데, 이는 수령을 잘 조종한 결과이다. 총 수량은 얼마이고, 지금 얼마나 거두었는가?" 하니, 심이지가 아뢰기를, "23만 6000석 중에서 아직 거두지 못한 것이 4000석 남짓 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어떻게 이와 같이 많이 거둘 수 있었는가?" 하니, 심이지는 아뢰기를, "모두 제읍(諸邑) 수령의 힘이고, 또 3분의 1을 감해 주었기 때문에 백성들도 잘 바쳤습니다." 하고, 서유린은 아뢰기를,

"이는 재읍(災邑)에 수령을 뽑아서 차임한 효과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아무리 쇠잔한 형세라도 영동(嶺東) 9개 군(郡)은 너무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하니, 서유린이 아뢰기를, "7000석 중에서 겨우 100여 석을 거둔 것은 매우 잘못되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재읍의 수령이 어렵지 않게 체차되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는 것이다. 예컨대 전(前) 간성(杆城) 수령은 고의로 피하려 든 자인 듯하다." 하니, 서유린이 아뢰기를, "그렇기는 합니다만 부모의 병이 있었기 때문에 끝내 체차된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매우 잘못되었다. 이런 사람은 얼마간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였다. (…)

綱 召見備堂及京畿監司 沈頤之于誠正閣

目 (…) 予曰今夜召見爲楊牧擧條事也卿見其擧條乎京畿監司 沈頤之曰擧條則臣未及見而楊州之民多穀少最於一道設賑分還俱爲難堪故該牧使曾以請得京廳錢穀之意有所往復於臣矣今果奏達於前席矣予曰所謂京廳穀則盡歸於發賣錢則將入於貿銅又豈有分俵圻邑之資乎昨年劃給賑資之不足爲幾許乎頤之曰三十六邑俱爲不足楊州則未能的知矣予曰楊州不足之數二千石云矣頤之曰總廳保還請得之數殆近五萬兩錢故道內各邑略略排巡作還爲計而大體不足之處楊州與水原爲最矣本道前例亦有請得京廳穀物之事而甲戌則爲三千石丙子丁丑則或二千石或一千石矣予曰然乎當有商量區劃之道矣又曰今年畿伯善捧還穀云甚可嘉尙此是操縱得宜之致都數幾何而今捧幾許耶頤之曰二十三萬六千石內未捧爲四千石許矣予曰何以能如是多捧乎頤之曰俱是諸邑守令之力且三分減一之故民亦善納矣有隣曰是災邑守令擇差之效矣予曰雖弩末之勢嶺東九郡太不成說矣有隣曰七千石之內僅捧一百餘石甚爲非矣予曰災邑守令不難遞來故有此弊耳如前杆城守似是故避者矣有隣曰然矣而有親病之故終至遞改矣予曰甚爲非矣此等之人不可不少有懲勵矣 (…)

<일성록, 정조8년(1784) 2월 10일(병인)>

경제/재정

경기 감사 심이지(沈頤之)의 청대로 수원의 군향 처리를 허락하다

강 경기도 감영에 유고(留庫)해 둔 신태(新太)를 가분(加分)하는 것에 관한 경기 감영의 청에 대해,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기 감사 심이지가 아뢴, 수원의 군향 중 응류조의 신태를 3분의 2만 가분하도록 특별히 허락해 달라고 한 일로 인하여 방금 품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태의 종자가 매우 부족하여 그루갈이할 경지가 묵어 버려질 염려가 있으니, 수원에 유고해 둔 신태를 경기 감사가 청한 대로 3분의 2에 한하여 가분하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어 제때 파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초기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강 許施畿營留庫新太加分之請

목 備邊司啓言卽因京畿監司 沈頤之所啓水原軍餉應留條新太限以三分二特許加分事有稟處之命矣太種絶乏根耕將有陳弊之慮水原留庫新太依所請限三分二特許加分請以爲趁時播種之地敎以依草記施行

<일성록, 정조8년(1784) 4월 2일(병술)>

경제/재정

수원부의 향태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부(水原府)의 향태(餉太)를 절반까지만 미(米)로 바꾸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 서유방의 장계를 보니, 수원부사 이복영(李復永)의 첩정(牒呈)을 낱낱이 거론하면서 ‘본부(本府)의 군향 중에서 현재 남아 있는 미(米)가 2730석 남짓, 태(太)가 6159석으로, 해읍(該邑)은 논이 많고 밭이 적어서 조적(糶糴)을 할 때에 이것이 백성의 폐해와 관계가 됩니다. 분급(分給)한 향태 중에서 2000석까지 미로 바꾸어 거두어들이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참작하여 태를 미로 바꾸어 거두어들이는 것은 참으로 백성과 나라 둘 다 편리한 방도이지만, 수천 석의 곡물을 일시에 바꾸어 거두어들이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요청한 수량 중에서 절반까지만 바꾸게 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綱 命水原府餉太折半換作

目 備邊司啓言水原府使 李復永牒呈以爲本府軍餉時在米爲二千七百三十石零太爲六千一百五十九石而該邑畓多田少糶糴之際有關民弊餉太已分給條中限二千石作米捧上爲辭矣參量換作誠爲民國兩便之道而第數千穀物一時換作事涉重大所請中限折半請許令換作允之

<일성록, 정조9년(1785) 10월 2일(무인)>

경제/재정

미곡을 목천읍에서 운반하다가 수원에서 표실한 사람을 1년 넘게 가둔 일에 대한 원정

강 형조가 격쟁인(擊錚人)의 원정(原情)에 대해 회계(回啓)하였다.

목 해조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서부(西部)의 양녀(良女) 이 조이(李召史)의 원정에, '저의 시아비 차윤복(車閏福)이 작년 가을에 배를 가지고 충청도 목천읍(木川邑)에 가서 수어청의 미(米) 50석, 양향청(糧餉廳)의 미 40석, 훈련도감의 미 11석을 싣고서 오다가 바다에 이르러 침몰하여 곡식을 모두 표실(漂失)하였기 때문에 수원부(水原府)에 이르러 침몰한 연유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천읍에서 저의 지아비를 잡아 가두었고, 또 양향청에서 저의 시아비를 가두어 한 해가 지나도록 풀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석방해 주는 은전을 베풀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 일은 비록 사건사(四件事)와 관계되기는 하지만, 국곡(國穀)을 취재(臭載)한 경우 사격(沙格)을 가두어 신문하고 3년 내에 징수한다는 것이 《대전통편(大典通編)》에 분명히 실려 있으니, 억울해한다고 해서 변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정을 시행하지 말고, 엄히 신칙하고 풀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綱 刑曹以擊錚人等原情回啓

目 該曹啓言 (…) 又啓言西部良女李召史原情以爲渠之舅父車閏福昨年秋持舡隻往忠淸道木川邑守禦廳米五十石糧餉廳米四十石訓鍊都監米十一石載來到海洋致敗穀物盡數漂失故到水原府致敗緣由立旨成出矣自木川邑捉囚渠夫又自糧餉廳囚渠舅父經年不放特垂放釋之典云矣此事雖係四件國穀臭載沙格囚訊三年刻期徵捧昭載通編中則不可以其稱冤有所闊狹請原情勿施嚴飭放送允之 (…)

<일성록, 정조13년(1789) 1월 11일(무진)>

경제/재정

수원 인근의 진공을 경감해주다

강 경기 연읍(沿邑)에서 금년에 게［蟹］를 진공(進供)하는 것을 특별히 정감(停減)하였다.

목 ○ 하교하기를, "이러한 때에 기읍(畿邑)에 혹 조금이라도 폐를 끼쳐서는 안 되므로 도감에서 허다히 지정(卜定)하는 것을 모두 없애 주고 모두 값을 치러 주게 하였는데, 하물며 공상(供上)하는 물자를 어찌 혹 일반적인 예를 따라 거두어 쓰겠는가. 연례(年例)로 진공하는 생게는 대부분 연읍에서 바치고 있다고 일찍이 들었었는데 연읍도 모두 수원에 가까우니 금년에 진공하는 게를 특별히 정감하라. 몇 년 전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것을 절기보다 늦게 영(令)을 반포한 탓으로 돌렸으나 올해는 제철이 조금 멀었으니 만일 수혜 대상에 허실이 뒤섞이는 폐해가 있다면 이는 도백의 책임이다. 모두 자세히 알아 유념하라고 묘당으로 하여금 엄하게 신칙하여 행회하게 하라. 어제 도감 당상이 연석에서 아뢴 일로 인하여 가가(假家)와 공석(空石)은 부득이 분정(分定)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가가는 능행 때의 예대로 해청으로 하여금 저치미(儲置米)를 회감(會減)하여 먼저 값을 치러 주고 뒤에 진배(進排)하게 하여 소민들이 이 일로 영향을 받는 일이 없게 하라고 일체 엄하게 신칙하라.” 하였다.

綱 特停畿沿今年進供蟹

目 敎曰此時畿邑豈或一毫貽弊都監許多卜定竝皆除之皆令給價則況上供之需寧或循例收用乎年例進供生蟹曾聞多在沿邑沿邑亦皆近於水原今年供蟹特爲停減年前則實惠之未究猶諉節晩頒令今則當節稍遠如有相混之弊是道伯之責也竝須知悉惕念事令廟堂嚴飭行會昨因都監堂上筵奏假家空石雖不得不分定云而假家則依陵事例令該廳儲置米會減而先給價後進排使小民無所干與事一體嚴飭 <일성록, 정조13년(1789) 7월 16일(경자)>

경제/재정

수원부사가 민호의 이주 대가를 지급한 일을 장계하다.

강 수원부사 조심태(趙心泰)가 봉표(封標)한 혈전(穴前) 근처에 살던 민호(民戶)에게 이주하는 대가로 값을 지급한 것으로 아뢰었다.

목 ○ 해부 부사의 장계에, “삼가 유지(有旨)의 내용대로 봉표한 혈전과 매우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20호는 원가(元價) 외로 모두 50냥을 더 지급하였는데, 원가도 다른 백성에 비해 특별히 넉넉하게 지급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잔약한 부류에 대해서는 원가에 비하여 2배, 3배, 4배씩 등급을 나누어 더 지급하였는데, 그중에 홍윤주(洪允舟)는 병폐(病廢)한 사람이라고 하므로 그 아들인 한량(閑良) 홍달상(洪達相)을 당역(當役)의 초관(哨官)으로 차출하였습니다. 그 뒤에 이주하는 백성 244호를 모두 객사의 앞뜰에 불러 모아 놓고 원가 및 추가로 지급한 값을 호마다 분급하니, 모두가 환호작약하며 은택을 축수하였습니다. 때문에 신이 다시 그동안의 전교를 가지고 잘 이주하여 생업에 안주하라는 뜻으로 거듭해서 효유(曉諭)하였습니다. 민가의 칸수 및 원가와 추가로 지급한 값을 아울러 후록하여 치계(馳啓)합니다.

한량 안윤무(安允武)는 초가(草家) 4칸, 원가 8냥이고, 한량 안윤문(安允文)은 초가 6칸, 원가 9냥이고, 양인(良人) 진오장(陳五壯)은 초가 3칸, 원가 6냥이고, 한량 형만식(邢萬式)은 초가 3칸, 원가 6냥이고, 한량 이익상(李益尙)은 초가 3칸, 원가 6냥이고, 기패관(旗牌官) 이익제(李益濟)는 초가 8칸, 원가 15냥이고, 하리(下吏) 안윤협(安允協)은 초가 2칸 반, 원가 6냥이고, 방영(防營)의 군관(軍官) 안윤집(安允執)은 초가 11칸, 원가 20냥이고, 한량 안숙(安塾)은 초가 19칸, 원가 59냥이고, 속오군(束伍軍) 인엇복(印荅福)은 초가 4칸, 원가 8냥이고, 한량 안사흠(安思欽)은 초가 8칸, 원가 12냥이고, 교련관(敎鍊官) 홍윤우(洪允祐)는 초가 11칸, 원가 24냥이고, 한량 박세주(朴世柱)는 초가 5칸, 원가 8냥이고, 한량 안양성(安陽城)은 초가 6칸 반, 원가 14냥이고, 한량 형만해(邢萬海)는 초가 3칸 반, 원가 7냥이고, 유학(幼學) 김양직(金養直)은 초가 15칸, 원가 55냥이고, 유학 김약채(金若采)는 초가 4칸 반, 원가 10냥이고, 양인 황준이(黃俊伊)는 초가 4칸, 원가 7냥이고, 한량 김검정(金儉丁)은 초가 6칸, 원가 24냥인데 모두에게 50냥을 추가로 지급하였습니다.

한량 홍윤주(洪允舟)는 초가 18칸, 원가 122냥, 추가 지급 65냥이고, 한량 이징태(李徵太)는 초가 10칸, 원가 14냥, 추가 지급 15냥이고, 김 조이(金召史)는 초가 5칸, 원가 7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궁인(弓人) 이복돌(李福乭)은 초가 4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양인 손장복(孫長福)은 초가 6칸, 원가 7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하리 홍명순(洪命淳)은 초가 10칸, 원가 19냥, 추가 지급 17냥이고, 유방군(留防軍) 강선위(姜先渭)는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지구관(知彀官) 홍윤적(洪允迪)은 초가 10칸, 원가 14냥, 추가 지급 15냥이고, 교련관 홍명연(洪命淵)은 초가 14칸, 원가 28냥, 추가 지급 20냥이고, 시임 만호(萬戶) 홍윤정(洪允禎)은 초가 13칸, 원가 31냥, 추가 지급 21냥이고, 한량 홍윤장(洪允章)은 초가 5칸, 원가 9냥, 추가 지급 12냥이고, 방영의 군관 홍윤상(洪允祥)은 초가 3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한량 홍윤문(洪允文)은 초가 3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하리 김형택(金亨擇)은 초가 20칸, 원가 56냥, 추가 지급 35냥이고, 하리 홍윤일(洪允一)은 초가 9칸 반, 원가 24냥, 추가 지급 20냥이고, 지구관 홍윤희(洪允希)는 초가 11칸, 원가 15냥, 추가 지급 16냥이고, 별효사(別驍士) 홍명룡(洪命龍)은 초가 7칸, 원가 14냥, 추가 지급 15냥이고, 홍 조이(洪召史)는 초가 3칸 반,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입니다.
기패관 홍윤서(洪允瑞)는 초가 10칸, 원가 19냥, 추가 지급 17냥이고, 기영(畿營)의 교련관 김태서(金泰瑞)는 초가 22칸, 원가 56냥, 추가 지급 35냥이고, 영리(營吏) 한수일(韓守一)은 초가 15칸, 원가 42냥, 추가 지급 30냥이고, 이 조이(李召史)는 초가 5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유방군 임만세(林萬世)는 초가 3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이 조이(李召吏)는 초가 4칸 반,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이 조이(李召史)는 초가 3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양인 홍복이(洪福伊)는 초가 3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하리 홍명관(洪命寬)은 초가 18칸, 원가 38냥, 추가 지급 25냥이고, 맹인(盲人) 김광제(金光齊)는 초가 4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하리 김원협(金元浹)은 초가 7칸 반, 원가 21냥, 추가 지급 18냥이고, 방영의 군관 전심량(全心良)은 초가 11칸, 원가 15냥, 추가 지급 16냥이고, 기패관 구재희(具在希)는 초가 4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한량 이성춘(李成春)은 초가 5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하리 홍윤갑(洪允甲)은 초가 10칸 반, 원가 12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한량 홍언범(洪彦範)은 초가 12칸, 원가 12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하리 최성순(崔性純)은 초가 6칸, 원가 9냥, 추가 지급 12냥이고, 한량 오십동(五十同)은 초가 5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하리 송명욱(宋命郁)은 초가 12칸, 원가 12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김 조이(金召史)는 초가 10칸, 원가 10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한량 김천룡(金千龍)은 초가 6칸, 원가 8냥, 추가 지급 12냥이고, 업무(業武) 이팽련(李彭連)은 초가 6칸, 원가 7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양인 이경신(李京信)은 초가 3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입니다.
유사장(柳笥匠) 김점동(金占同)은 초가 2칸 반,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유사장 김대상(金大尙)은 초가 3칸 반,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취수(吹手) 박놈(朴老味)은 초가 4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재인(才人) 한춘복(韓春福)은 초가 4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사노(私奴) 이석남(李石男)은 초가 5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양인 김오중(金五仲)은 초가 4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관노(官奴) 시놈(時老味)은 초가 5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양인 김득이(金得伊)는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취수 김귀봉(金貴奉)은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관비(官婢) 예금(禮今)은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양인 박기오동(朴其五同)은 초가 4칸 반,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사령(使令) 정소놈(鄭小老味)은 초가 6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취수 이태놈(李太老味)은 초가 5칸 반, 원가 7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재인 장윤기(張允己)는 초가 6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양인 이이기(李以己)는 초가 6칸, 원가 10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양인 이만춘(李萬春)은 초가 6칸, 원가 7냥, 추가 지급 11냥입니다.

양인 신도야지(申道也之)는 초가 4칸 반,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기수(旗手) 한덕순(韓德順)은 초가 4칸 반,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취수 최금산(崔今山)은 초가 3칸 반,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한량 박옥갑(朴玉甲)은 초가 4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하리 박윤흥(朴允興)은 초가 4칸 반, 원가 9냥, 추가 지급 12냥이고, 하리 이득룡(李得龍)은 초가 9칸, 원가 19냥, 추가 지급 17냥이고, 양인 나작은놈(羅者斤老味)은 초가 11칸 반, 원가 30냥, 추가 지급 21냥이고, 기수 이성놈(李成老味)은 초가 4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사노 조호길(趙好吉)은 초가 3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양인 김명금(金命金)은 초가 6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기수 서용복(徐龍福)은 초가 6칸, 원가 7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마부(馬夫) 함놈(咸老味)은 초가 5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양인 박태근(朴太根)은 초가 3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양인 최엇금(崔荅金)은 초가 4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하리 이관춘(李觀春)은 초가 11칸, 원가 38냥, 추가 지급 25냥이고, 하리 문업동(文業同)은 초가 6칸, 원가 7냥, 추가 지급 11냥입니다.

양인 이철희(李喆希)는 초가 5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양인 이태평(李太平)은 초가 15칸, 원가 31냥, 추가 지급 21냥이고, 한량 김여휘(金呂輝)는 초가 12칸, 원가 19냥, 추가 지급 17냥이고, 하리 송지흥(宋之興)은 초가 7칸, 원가 12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하리 박진택(朴振澤)은 초가 11칸, 원가 17냥, 추가 지급 17냥이고, 가선대부(嘉善大夫) 조득경(趙得卿)은 초가 4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방영의 군관 홍언주(洪彦周)는 초가 17칸, 원가 35냥, 추가 지급 22냥이고, 토포 군관(討捕軍官) 이필재(李必載)는 초가 10칸, 원가 14냥, 추가 지급 15냥이고, 한량 박대천(朴大天)은 초가 27칸, 원가 42냥, 추가 지급 30냥이고, 토포 군관 이재운(李載雲)은 초가 10칸, 원가 24냥, 추가 지급 20냥이고, 한량 최인이(崔仁伊)는 초가 13칸, 원가 13냥, 추가 지급 15냥이고, 마부 황차금(黃次金)은 초가 5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기수 김고공(金古工)은 초가 5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관비 인금(仁今)은 초가 11칸, 원가 8냥, 추가 지급 12냥입니다.

양인 이흥일(李興一)은 초가 4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사령 이흥관(李興寬)은 초가 6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관노 유월금(六月金)은 초가 10칸, 원가 25냥, 추가 지급 20냥이고, 토포 군관 이도겸(李道謙)은 초가 5칸, 원가 14냥, 추가 지급 15냥이고, 마부 유비감(劉非甘)은 초가 9칸, 원가 24냥, 추가 지급 15냥이고, 양인 이석봉(李石奉)은 초가 12칸, 원가 21냥, 추가 지급 18냥이고, 한량 이태성(李太成)은 초가 9칸, 원가 14냥, 추가 지급 15냥이고, 양인 지대성(池大成)은 초가 14칸, 원가 19냥, 추가 지급 17냥이고, 양인 이금금(李今金)은 초가 8칸, 원가 31냥, 추가 지급 21냥이고, 양인 김오동(金五同)은 초가 2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양인 윤태복(尹太福)은 초가 6칸, 원가 9냥, 추가 지급 12냥이고, 마부 조악놈(趙岳老味)은 초가 5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한량 김정빈(金廷彬)은 초가 11칸, 원가 28냥, 추가 지급 20냥이고, 업무 김성추(金成秋)는 초가 13칸, 원가 49냥, 추가 지급 31냥이고, 마부 김원이(金元伊)는 초가 6칸, 원가 9냥, 추가 지급 12냥이고, 토포 군관 이중빈(李仲彬)은 초가 16칸, 원가 33냥, 추가 지급 21냥이고, 뇌자(牢子) 김창득(金昌得)은 초가 2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입니다.

양인 박경순(朴京純)은 초가 4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면주인(面主人) 박소득(朴所得)은 초가 12칸, 원가 28냥, 추가 지급 20냥이고, 도안 군관(都案軍官) 황금이(黃金伊)는 초가 19칸, 원가 31냥, 추가 지급 21냥이고, 양인 표승운(表昇雲)은 초가 12칸, 원가 24냥, 추가 지급 20냥이고, 고마 감관(雇馬監官) 황도형(黃道亨)은 초가 10칸, 원가 12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양인 허판동(許判同)은 초가 5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하리 최인선(崔仁善)은 초가 5칸, 원가 9냥, 추가 지급 12냥이고, 양인 이경인(李景仁)은 초가 5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마부 김수태(金守太)는 초가 7칸 반, 원가 7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양인 김만철(金萬喆)은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양인 김철명(金喆明)은 초가 3칸 반,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사령 김철몽(金喆夢)은 초가 3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기수 이만숙(李萬淑)은 초가 5칸, 원가 9냥, 추가 지급 12냥이고, 하리 서윤중(徐允中)은 초가 7칸, 원가 10냥, 추가 지급 13냥입니다.
양인 이수곤(李守昆)은 초가 9칸, 원가 12냥, 추가 지급 14냥이고, 사령 이운득(李云得)은 초가 9칸, 원가 11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취수 송부흥(宋夫興)은 초가 3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하리 전종효(全宗孝)는 초가 10칸 반, 원가 14냥, 추가 지급 15냥이고, 관노 도남(道男)은 초가 6칸 반, 원가 10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양인 김일련(金日連)은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토포 군관 서순항(徐順恒)은 초가 8칸, 원가 9냥, 추가 지급 12냥이고, 마부 김호랑(金好郎)은 초가 5칸, 원가 12냥, 추가 지급 14냥이고, 도안 군관 박천복(朴千卜)은 초가 17칸 반, 원가 42냥, 추가 지급 30냥이고, 양인 이종놈(李種老味)은 초가 4칸 반,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하리 지일황(池一璜)은 초가 4칸 반, 원가 6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군수 고자(軍需庫子) 김소동(金小同)은 초가 10칸, 원가 14냥, 추가 지급 15냥이고, 면주인 최봉기(崔奉己)는 초가 7칸, 원가 10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마부 김호놈(金好老味)은 초가 6칸, 원가 12냥, 추가 지급 14냥이고, 하리 나효득(羅孝得)은 초가 10칸, 원가 12냥, 추가 지급 14냥이고, 하리 안명현(安命顯)은 초가 11칸, 원가 14냥, 추가 지급 15냥이고, 절충장군(折衝將軍) 노논손(盧論孫)은 초가 14칸, 원가 18냥, 추가 지급 17냥이고, 교노(校奴) 수창(守昌)은 초가 10칸, 원가 14냥, 추가 지급 15냥입니다.
양인 최덕삼(崔德三)은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뇌자 김성후(金成垕)는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교노 맹송(孟松)은 초가 5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교노 판놈(判老味)은 초가 7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교노 복희(卜希)는 초가 12칸, 원가 15냥, 추가 지급 15냥이고, 사노 천계봉(千癸奉)은 초가 3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차비(差備) 박천의(朴千儀)는 초가 4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사령 차도성(車道成)은 초가 6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교노 봉선(奉先)은 초가 5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교노 복선(卜先)은 초가 4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양인 임철이(林哲伊)는 초가 4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양인 김범이(金凡伊)는 초가 4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교노 화선(化先)은 초가 13칸, 원가 10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교노 치희(致希)는 초가 9칸, 원가 10냥, 추가 지급 13냥입니다.
유학 이운하(李運河)는 초가 10칸, 원가 18냥, 추가 지급 17냥이고, 유학 조학진(曺學振)은 초가 12칸, 원가 20냥, 추가 지급 18냥이고, 유학 조윤영(曺允榮)은 초가 15칸, 원가 67냥, 추가 지급 40냥이고, 한량 나상여(羅尙汝)는 초가 11칸, 원가 24냥, 추가 지급 20냥이고, 하리 박성윤(朴聖潤)은 초가 15칸, 원가 49냥, 추가 지급 30냥이고, 하리 최윤형(崔潤亨)은 초가 20칸 반, 원가 77냥, 추가 지급 42냥이고, 토포 군관 조관옥(趙寬玉)은 초가 4칸, 원가 7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하리 나은보(羅殷輔)는 초가 14칸, 원가 46냥, 추가 지급 30냥이고, 초관(哨官) 나천경(羅天經)은 초가 13칸, 원가 49냥, 추가 지급 30냥이고, 한량 이정조(李丁祖)는 초가 3칸 반,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통인(通引) 윤관득(尹寬得)은

초가 19칸, 원가 91냥, 추가 지급 60냥이고, 한량 박신대(朴辰大)는 초가 3칸 반,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양인 오이동(吳二同)은 초가 7칸 반, 원가 7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기수 김범금(金凡金)은 초가 5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기수 김신갑(金辰甲)은 초가 4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사령 이순재(李順才)는 초가 4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입니다.
한량 김황(金晃)은 초가 10칸, 원가 11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군관 강송놈(姜松老味)은 초가 6칸, 원가 10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하리 나태을(羅太乙)은 와가(瓦家) 24칸 반, 원가 400냥, 추가 지급 120냥이고, 군향 감관(軍餉監官) 최봉놈(崔奉老味)은 초가 4칸 반,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군수 고지기 임만복(林萬福)은 초가 3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한량 김여선(金呂先)은 초가 6칸, 원가 8냥, 추가 지급 12냥이고, 가선대부 이복놈(李卜老味)은 초가 12칸, 원가 16냥, 추가 지급 16냥이고, 양인 박검동(朴儉同)은 초가 7칸 반, 원가 11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사령 김복이(金卜伊)는 초가 7칸, 원가 12냥, 추가 지급 14냥이고, 양인 오충손(吳忠孫)은 초가 3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군향 감고(軍餉監考) 이복득(李卜得)은 초가 6칸 반, 원가 10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토포 제번 군관(討捕除番軍官) 강삼이(姜三伊)는 초가 2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양인 엄암회(嚴巖回)는 초가 5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양인 임놈(林老味)은 초가 3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사창 감고군(司倉監考軍) 복놈(卜老味)은 초가 4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기수 이재득(李再得)은 초가 3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입니다.
마부 최득춘(崔得春)은 초가 5칸, 원가 6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면주인 안태로(安太老)는 초가 6칸, 원가 10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군수 고지기 김택귀(金宅貴)는 초가 5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양인 한천성(韓千成)은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양인 이명철(李命哲)은 초가 4칸 반, 원가 7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군수 고자 변필준(邊必俊)은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군수 고자 김오만(金五萬)은 초가 12칸, 원가 14냥, 추가 지급 15냥이고, 양인 김덕겸(金德兼)은 초가 4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관노 취영(就永)은 초가 6칸, 원가 6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취수 송복기(宋卜只)는 초가 4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집사청(執事廳) 고지기 김택귀(金宅貴)는 초가 6칸, 원가 7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군향 감고 임태재(林太才)는 초가 4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지 조이(池召史)는 초가 4칸 반, 원가 8냥, 추가 지급 12냥이고, 절충장군 홍이창(洪以昌)은 초가 8칸, 원가 10냥, 추가 지급 13냥입니다.
양인 방억봉(方億奉)은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기수 장수대(張守大)는 초가 4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군수 고지기 김의관(金儀寬)은 초가 7칸, 원가 9냥, 추가 지급 12냥이고, 양인 김태억(金太億)은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면주인 박두응골남(朴斗應骨男)은 초가 4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기패관 박종철(朴宗喆)은 초가 16칸, 원가 38냥, 추가 지급 25냥이고, 별고 감고(別庫監考) 최사금(崔士金)은 초가 5칸, 원가 5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양인 엄수산(嚴守山)은 초가 4칸 반,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절충장군 안명열(安命悅)은 초가 4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하리 박달복(朴達福)은 초가 10칸, 원가 12냥, 추가 지급 14냥이고, 양인 이복동(李卜同)은 초가 11칸, 원가 13냥, 추가 지급 15냥이고, 하리 이기춘(李起春)은 초가 11칸, 원가 12냥, 추가 지급 14냥이고, 양인 노덕재(盧德才)는 초가 5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하리 안성묵(安聖默)은 초가 10칸, 원가 19냥, 추가 지급 17냥이고, 재인(才人) 한일태

(韓一太)는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기수 신놈(申老味)은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입니다.
사노 정혹속(丁或束)은 초가 5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재인 최사읍사리(崔沙邑士里)는 초가 4칸 반,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양인 박무응(朴無應)은 초가 3칸, 원가 2냥, 추가 지급 6냥이고, 한량 최경순(崔京純)은 초가 8칸, 원가 9냥, 추가 지급 12냥이고, 양인 김귀남(金貴男)은 초가 5칸 반,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양인 윤갑손(尹甲孫)은 초가 5칸, 원가 4냥, 추가 지급 10냥이고, 양인 이시놈(李時老味)은 초가 6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통인 표한욱(表汗旭)은 초가 16칸, 원가 12냥, 추가 지급 13냥이고, 양인 손득천(孫得天)은 초가 4칸, 원가 3냥, 추가 지급 9냥이고, 양인 김명철(金命喆)은 초가 9칸, 원가 7냥, 추가 지급 11냥이고, 마병(馬兵) 양대창(梁大昌)은 초가 15칸, 원가 19냥, 추가 지급 17냥이고, 토포 제번 군관 박창기(朴昌己)는 초가 11칸, 원가 17냥, 추가 지급 17냥이고, 재인 한덕흥(韓德興)은 초가 6칸 반, 원가 10냥, 추가 지급 13냥입니다. 이상을 모두 합하면 민가(民家) 244호, 가사(家舍) 1789칸 반, 원가 3457냥, 추가 지급 4112냥 도합 7569냥입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 '장계의 내용을 보고 잘 알았다. 이 밖에 차례로 값을 지급하여 이주시킬 곳은 또 몇 호나 되겠는가? 혈전(穴前) 및 용호(龍虎) 근처의 전답(田畓)에 대한 일은 도감 당상(都監堂上)이 입시했을 때에 이미 곡식이 익기 전에 지레 먼저 베지 말고 형세를 보아서 때에 임박하여 하도록 하라고 하교하였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화리(禾利)를 넉넉히 지급하고 땅값을 즉시 편리한 쪽으로 결정해 지급하여 역군(役軍)들이 폐단을 끼치는 단서를 없게 해야 할 것이고, 봉표한 혈전 근처에 있는 장양(長養)하기에 알맞은 수목(樹木)은 공한지(空閑地) 외에 민호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도 편리한 쪽으로 값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경은 모쪼록 잘 알고서 거행하라.' 는 내용으로 회유하라." 하였다.

綱 **水原府使 趙心泰**以封標穴前搬移民戶給價啓

目 該府使狀啓以爲敬依有旨內辭意封標穴前至近處入接二十戶則本價外竝加給五十兩而本價亦比他民別爲優給其餘疲殘之類比本價二三四倍分等加給而其中洪允舟聞是病廢之人故其子閑良洪達相當役哨官差出後搬移民二百四十四戶一併招聚於客舍前庭本價及加給價逐戶分給則莫不聳躍歡蹈攢祝恩澤故臣更將前後傳敎以善爲搬移安生樂業之意申複曉諭民家間數及本價加價竝後錄馳啓閑良安允武草家四間元價八兩閑良安允文草家六間元價九兩良人陳五壯草家三間元價六兩閑良邢萬式草家三間元價六兩閑良李益尙草家三間元價六兩旗牌官 李益濟草家八間元價十五兩下吏安允協草家二間半元價六兩防營軍官安允執草家十一間元價二十兩閑良安塾草家十九間元價五十九兩束伍軍印荅福草家四間元價八兩閑良安思欽草家八間元價十二兩敎鍊官 洪允祐草家十一間元價二十四兩閑良朴世柱草家五間元價八兩閑良安陽城草家六間半元價十四兩閑良邢萬海草家三間半元價七兩幼學金養直草家十五間元價五十五兩幼學金若采草家四間半元價十兩良人黃俊伊草家四間元價七兩閑良金儉丁草家六間元價二十四兩竝加給五十兩閑良洪允舟草家十八間元價一百二十二兩加給六十五兩閑良李徵太草家十間元價十四兩加給十五兩金召史草家五間元價七兩加給十一兩弓人李福乭草家四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良人孫長福草家六間元價七兩加給十一兩下吏洪命淳草家十間元價十九兩加給十七兩留防軍姜先渭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知殼官 洪允迪草家十間元價十四兩加給十五兩敎鍊官 洪命淵草家十四間元價二十八兩加給二十兩時萬戶 洪允禎草家十三間元價三十一兩加給二十一兩閑良洪允章草家五間元價九兩加給十二兩防營軍官洪允祥草家三間元價三兩加給九兩閑良洪允文草家三間元價三兩加給九兩下吏金亨擇草家二十間元價五十六兩加給三十五兩下吏洪允一草家九間半元價二十四兩加給二十兩知殼官 洪允希草家十一間元價十五兩

加給十六兩別驍士洪命龍草家七間元價十四兩加給十五兩洪召史草家三間半元價五兩加給十一兩旗牌官　洪允瑞草家十間元價十九兩加給十七兩幾營教鍊官　金泰瑞草家二十二間元價五十六兩加給三十五兩營吏　韓守一草家十五間元價四十二兩加給三十兩李召史草家五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留防軍林萬世草家三間元價三兩加給九兩李召吏草家四間半元價五兩加給十一兩李召史草家三間元價三兩加給九兩良人洪福伊草家三間元價四兩加給十兩下吏洪命寬草家十八間元價三十八兩加給二十五兩盲人金光齊草家四間元價二兩加給六兩下吏金元浹草家七間半元價二十一兩加給十八兩防營軍官全心良草家十一間元價十五兩加給十六兩旗牌官　具在希草家四間元價五兩加給十兩閑良李成春草家五間元價四兩加給十兩下吏洪允甲草家十間半元價十二兩加給十三兩閑良洪彦範草家十二間元價十二兩加給十三兩下吏崔性純草家六間元價九兩加給十二兩間良五十同草家五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下吏宋命郁草家十二間元價十二兩加給十三兩金召史草家十間元間價十兩加給十三兩良金千龍草家六元價八兩加給十二兩業武李彭連草家六間元價七兩加給十一兩良人李京信草家三間元價三兩加給九兩柳笥匠金占同草家二間半元價二兩加給六兩柳笥匠金大尙草家三間半元價二兩加給六兩吹手朴老味草家四間元價四兩加給十兩才人韓春福草家四間元價四兩加給十兩私奴李石男草家五聞元價五兩加給十一兩良人金五仲草家四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官奴時老味草家五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良人金得伊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吹手金貴奉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官婢禮今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良人朴其五同草家四間半元價四兩加給十兩使令鄭小老味草家六間元價四兩加給十兩吹手李太老味草家五間半元價七兩加給十一兩才人張允巳草家六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良人李以已草家六間元價十兩加給十三兩良人李萬春草家六間元價七兩加給十一兩良人申道也之草家四間半元價四兩加給十良旗手韓德順草家四間半元價四兩加給十兩吹手崔今山草家三間半元價三兩加給九兩閑良朴玉甲草家四間元價四兩加給十兩下吏朴允興草家四間半元加九兩加給十二兩下吏李得龍草家九間元價十九兩加給十七兩良人羅者斤老味草家十一間半元價三十兩加給二十一兩旗手李成老味草家四間元價三兩加給九兩私奴趙好吉草家三間元價三兩加給九兩良人金命金草家六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旗手徐龍福草家六間元價七兩加給十一兩馬夫咸老味草家五間元價三兩加給九兩良人朴太根草家三間元價三兩加給九兩良人崔叅金草家四間元價三兩加給九兩下吏李觀春草家十一間元價三十八兩加給二十五兩下吏文業同草家六間元價七兩加給十一兩良人李喆希草家五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良人李太平草家十五間元價三十一兩加給二十一兩閑良金呂輝草家十二間元價十九兩加給十七兩下吏宋之興草家七間元價十二兩加給十三兩下吏朴振澤草家十一間元價十七兩加給十七兩嘉善趙得卿草家四間元價三兩加給九兩防營軍官洪彦周草家十七間元價三十五兩加給二十二兩討捕軍官　李必載草家十間元價十四兩加給十五兩閑良朴大天草家二十七間元價四十二兩加給三十兩討捕軍官　李載雲草家十間元價二十四兩加給二十兩閑良崔仁伊草家十三間元價十三兩加給十五兩馬夫　黃次金草家五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旗手金古工草家五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官婢仁今草家十一間元價八兩加給十二兩良人李興一草家四間元價四兩加給十兩使令李興寬草家六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官奴六月金草家十間元價二十五兩加給二十兩討捕軍官　李道謙草家五間元價十四兩加給十五兩馬夫劉非甘草家九間元價二十四兩加給十五兩良人李石奉草家十二問元價二十一兩加給十八兩閑良李太成草家九間元價十四兩加給十五兩良人池大成草家十四間元價十九兩加給十七兩良人李今金草家八間元價三十一兩加給二十一兩良人金五同草家二間元價二兩加給六兩良人尹太福草家六間元價九兩加給十二兩馬夫趙岳老味草家五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閑良金廷彬草家十一間元價二十八兩加給二十兩業武金成秋草家十三間元價四十九兩加給三十一兩馬夫金元伊草家六間元價九兩加給十二兩討捕軍官　李仲彬草家十六間元價三十三兩加給二十一兩牢子金昌得草家二間元價三兩加給九兩良人朴京純草家四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面主人朴所得草家十二間元價二十八兩加給二十兩都案軍官黃金伊草家十九間元

價三十一兩加給二十一兩良人表昇雲草家十二間元價二十四兩加給二十兩雇馬監官 黃道亨草家十間元價十二兩加給十三兩良人許判同草家五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下吏崔仁善草家五間元價九兩加給十二兩良人李景仁草家五間元價三兩加給九兩馬夫金守太草家七間半元價七兩加給十一兩良人金萬喆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良人金喆明草家三間半元價四兩加給十兩使令金喆夢草家三間元價四兩加給十兩旗手李萬淑草家五間元價九兩加給十二兩下吏徐允中草家七間元價十兩加給十三兩良人李守昆草家九間元價十二兩加給十四兩使令李云得草家九間元價十一兩加給十三兩吹手宋夫興草家三間元價三兩加給九兩下吏全宗孝草家十間半元價十四兩加給十五兩官奴道男草家六間半元價十兩加給十三兩良人金日連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討捕軍官 徐順恒草家八間元價九兩加給十二兩馬夫金好郎草家五間元價十二兩加給十四兩都案軍官 朴千卜草家十七間半元價四十二兩加給三十兩良人李種老味草間四間半元價五兩加給十一兩下吏池一璜草家四間半元價六兩加給十一兩軍需庫子金小同草家十間元價十四兩加給十五兩面主人崔奉巳草家七間元價十兩加給十三兩馬夫金好老味草家六間元價十二兩加給十四兩下吏羅孝得草家十間元價十二兩加給十四兩下吏安命顯草家十一間元價十四兩加給十五兩折衝盧論孫草家十四間元價十八兩加給十七兩校奴守昌草家十間元價十四兩加給十五兩良人崔德三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牢子金成垕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校奴孟松草家五間元價三兩加給九兩校奴判老味草家七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校奴卜希草家十二間元價十五兩加給十五兩私奴千癸奉草家三間元價三兩加給九兩差備朴千儀草家四間元價三兩加給九兩使令車道成草家六間元價四兩加給十兩校奴奉先草家五間元價四兩加給十兩校奴卜先草家四間元價三兩加給九兩良人林哲伊草家四間元價二兩加給六兩良人金凡伊草家四間元價二兩加給六兩校奴化先草家十三間元價十兩加給十三兩校奴致希草家九間元價十兩加給十三兩幼學李運河草家十間元價十八兩加給十七兩幼學曺學振草家十二間元價二十兩加給十八兩幼學曺允榮草家十五間元價六十七兩加給四十兩閑良羅尙汝草家十一間元價二十四兩加給二十兩下吏朴聖潤草家十五間元價四十九兩加給三十兩下吏崔潤亨草家二十間半元價七十七兩加給四十二兩討捕軍官 趙寬玉草家四間元價七兩加給十一兩下吏羅殷輔草家十四間元價四十六兩加給三十兩哨官 羅天經草家十三間元價四十九兩加給三十兩閑良李丁祖草家三間半元價四兩加給十兩通引尹寬得草家十九間元價九十一兩加給六十兩閑良朴辰大草家三間半元價三兩加給九兩良人吳二同草家七間半元價七兩加給十一兩旗手金凡金草家五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旗手金辰甲草家四間元價三兩加給九兩使令李順才草家四間元價四兩加給十兩閑良金晃草家十間元價十一兩加給十三兩軍官姜松老味草家六間元價十兩加給十三兩下吏羅太乙瓦家二十四間半元價四百兩加給一百二十兩軍餉監官 崔奉老味草家四間半元價四兩加給十兩軍需庫子林萬福草家三間元價四兩加給十兩閑良金呂先草家六間元價八兩加給十二兩嘉善李卜老味草家十二間元價十六兩加給十六兩良人朴儉同草家七間半元價十一兩加給十三兩使令金卜伊草家七間元價十二兩加給十四兩良人吳忠孫草家三間元價三兩加給九兩軍餉監考李卜得草家六間半元價十兩加給十三兩討捕除番軍官 姜三伊草家二間元價二兩加給六兩良人嚴巖回草家五間九價五兩加給十一兩良人林老味草家三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司倉監考軍卜老味草家四間元價四兩加給十兩旗手李再得草家三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馬未崔得春草家五間元價六兩加給十一兩面主人安太老草家六間元價十兩加給十三兩軍需庫子金宅貴草家五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良人韓千成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良人李命哲草家四間半元價七兩加給十一兩軍需庫子邊必俊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軍需庫子金五萬草家十二間元價十四兩加給十五兩良人金德兼草家四間元價四兩加給十兩官奴就永草家六間元價六兩加給十一兩吹手宋卜只草家四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執事廳庫子金宅貴草家六間元價七兩加給十一兩軍餉監考林太才草家四間元價三兩加給九兩池召史草家四間半元價八兩加給十二兩折衝洪以昌草家八間元價十兩加給十三兩良人方億奉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旗手張守大草家四間元價三兩加給九

兩軍需庫子金儀寬草家七間元價九兩加給十二兩良人金太億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面主人朴斗應　骨男草家四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旗牌官　朴宗喆草家十六間元價三十八兩加給二十五兩別庫監考崔士金草家五間元價五兩加給十一兩良人嚴守山草家四間半元價四兩加給十兩折衝安命悅草家四間元價三兩加給九兩下吏朴達福草家十間元價十二兩加給十四兩良人李卜同草家十一間元價十三兩加給十五兩下吏李起春草家十一間元價十二兩加給十四兩良人盧德才草家五間元價二兩加給六兩下吏安聖默草家十間元價十九兩加給十七兩才人韓一太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旗手申老味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私奴丁或束草家五間元價三兩加給九兩才人崔沙邑士里草家四間半元價四兩加給十兩良人朴無應草家三間元價二兩加給六兩閑良崔京純草家八間元價九兩加給十二兩良人金貴男草家五間半元價四兩加給十兩良人尹甲孫草家五間元價四兩加給十兩良人李時老味草家六間元價三兩加給九兩通引 表汗旭草家十六間元價十二兩加給十三兩良人孫得天草家四間元價三兩加給九兩良人金命喆草家九間元價七兩加給十一兩馬兵梁大昌草家十五間元價十九兩加給十七兩討捕除番軍官 朴昌巳草家十一間元價十七兩加給十七兩才人韓德興草家六間半元價十兩加給十三兩已上民家二百四十四戶家舍一千七百人十九間半元價錢三千四百五十七兩加給錢四千一百十二兩合錢七千五百六十九兩敎曰狀辭見悉此外次次給價移送處又當爲幾戶耶穴前及龍虎近處田畓事都監堂上入侍時已以勿令未熟前徑先刈給觀勢臨時爲之爲敎更思優給禾利土價趁卽從便決給俾無役軍輩貽弊之端而封前近處樹大之可合長養者空閑地外民戶籬內亦爲從便給價事卿須知悉擧行事回諭

<일성록, 정조13년(1789) 7월 20일(갑진)>

경제/재정

수원부 팔달산 주인의 재주와 식견을 살피다

강 경기 감영(京畿監營)과 **수원부(水原府)**는 **팔달산(八達山)**의 주인 이운행(李運行)을 불러와서 그 재주와 식견을 살펴보고 장문(狀聞)하라고 명하였다.

목 ○ 하교하기를, "'팔달산의 주인은 바로 진사(進士) 이운행의 집안이고 또 누대의 분묘(墳墓)가 남아 있는데, 신읍(新邑)의 향교(鄕校)를 이운행 집안의 분산(墳山) 계단 아래 아주 가까운 곳에 정하여 10여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에 감조관(監造官)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 뒤미처 들으니 여전히 애석해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그 분산 자리까지 빼앗는다면 이 어찌 그 집안을 염려한 본뜻이겠는가. 합당한 곳이 있으면 향교를 다시 다른 터에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본도의 순영(巡營)으로 하여금 주인을 불러와서 특별히 넉넉하게 산 값을 치러 주고 그 사람의 재주와 식견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나서 장문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기백(畿伯)과 **수원부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綱 命畿營及**水原府**招致**八遠山**主人李運行觀其才識以聞

目 敎曰八達山主人卽進士李運行家亦有累代墳墓而聞新邑鄕校定於運行家墳山階節下至近之地不過爲十餘步云今番監造官見漏追聞猶以爲嗟惜今若竝奪其山地是豈念其家之本意乎如有可合處鄕校更卜他基否則令本道巡營招致主人拔例厚給山價仍觀其人才識之如何狀聞事下諭于畿伯及**水原府使**處

<일성록, 정조13년(1789) 8월 4일(정사)>

경제/재정

수원 천원(遷園)때 쓴 비용을 정리하다

강 천원(遷園) 때 쓴 경비의 총 수효이다.

목 ○ 전(錢)은 18만 4600냥(兩) 남짓 - 대내(大內)에서 내려 준 것이 11만 6500냥이고, - 10만 냥은 **수원(水原)**에, 1만 냥은 기영(畿營)에, 3000냥은 과천(果川)에, 2000냥은 도감(都監)에, 1500냥은 훈조계(燻造契)에 내렸다. - 호조에서 3만 9360냥을, 선혜청(宣惠廳)에서 2484냥을, 진휼청(賑恤廳)에서 1100냥을, 병조에서 500냥을, 훈련도감(訓鍊都監)에서 1000냥을, 금위영(禁衛營)에서 2000냥을, 어영청(御營廳)에서 2만 700냥을, 사복시(司僕寺)에서 1000냥을 마련하였다. - 이고, 미(米)는 6326석 - 호조에서 1100석을, 선혜청에서 596석을, 진휼청에서 1630석을, 금위영에서 1500석을, 어영청에서 1500석을 마련하였다. - 이고, 목(木)은 279동(同) 남짓 - 호조에서 70동을, 선혜청에서 1동 38필을, 병조에서 50동을, 훈련도감에서 10동을, 금위영에서 15동을, 어영청에서 15동을, 평안 감영(平安監營)에서 30동을, 병영(兵營)에서 25동을, 전라 감영(全羅監營)에서 13동을, 경상 감영(慶尙監營)에서 20동을, 통영(統營)에서 30동을 마련하였다. - 이고, 포(布)는 14동 - 함경 감영(咸鏡監營)에서 10동을, 남병영(南兵營)에서 4동을 마련하였다. - 이다.

綱 遷園時經用總數

目 錢十八萬四千六百兩零內下十一萬六千五百兩十萬兩**水原**一萬兩畿營三千兩果川二千兩都監一千五百兩燻造契戶曹三萬九千三百六十兩宣惠廳二十四百八十四兩賑恤廳一千一百兩兵曹五百兩訓鍊都監一千兩禁衛營二千兩御營廳二萬七百兩司僕寺一千兩米六千三百二十六石 戶曹一千二百石宣惠廳五百九十六石賑恤廳一千六百三十石禁衛營一千五百石御營廳一千五百石木二百七十九同零 戶曹七十同宣惠廳一同三十八疋兵曹五十同訓鍊都監十同禁衛營十五同御營廳十五同平安監營三十同兵營二十五同全羅監營十三同慶尙監營二十同統營三十同布十四同 咸鏡監營十同南兵營四同

<일성록, 정조13년(1789) 10월 8일(경신)>

경제/재정

기영(箕營)의 별비전(別備錢)을 수원부(水原府)에 구획(區劃)하라고 명하다

강 기영(箕營)의 별비전(別備錢) 7만 냥을 **수원부(水原府)**에 구획(區劃)하라고 명하였다.

목 ○ 비국이 아뢰기를, "**현륭원(顯隆園)**의 전답 값 3만 냥, 5개 초(哨)의 향군(鄕軍)에게 급료로 지급할 미(米) 1000석에 대해 모곡(耗穀)을 취하기 위한 1만 석의 대전(代錢) 3만 냥, **수원부**의 가설(加設)한 교졸의 요미(料米)에 대해 작곡(作穀)하여 모곡을 취하기 위한 1만 냥을, 평안 감영에서 연례적으로 별비한 것 중에 무신년(1788, 정조12) 조(條)와 기유년(1789) 조로 각각 3만 5000냥을 구획하라고 경기와 평안의 두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綱 命箕營別備錢七萬兩區劃于**水原府**

目 備局啓言舟橋司設置規度一依濬川司例爲之事命下矣都提調三員領議政 左議政 右議政例 兼提調六員以濬川司主管堂上及兵曹判書 漢城判尹 訓鍊大將 禁衛大將 御營大將例兼郎廳三員以兵曹一軍色郎廳漢城府道路橋梁次知郎廳及三軍門武從事官中一人差下請使之察任允之又啓言舟橋司堂郎今方啓下矣經紀財力及今措置然後事役可以就緖嶺南別會穀中大米限二千石以耗條請自今爲始逐年區劃使之取用允之

<일성록, 정조13년(1789) 12월 4일(을묘)>

경제/재정

수원부의 군보미(軍保米) 문제를 논의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경기 감사 김사목(金思穆), 수원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를 소견하였다.

목 ○ 김사목이 아뢰기를, "수원부의 군보미(軍保米) 탕감조(蕩減條) 642석 남짓을 대신하여 조(租) 1606석 남짓을 본부 및 안성(安城), 용인(龍仁), 양성(陽城) 등의 읍에 있는 상진곡(常賑穀)의 조로 구획하여 급대(給代)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졸(將卒)들에게 매월 급료로 지급하는 것이니 미 대신 조를 받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이고 또 타읍에 가서 1천여 포의 곡물을 받아 올 때 한갓 비용만 들일 뿐이니 아마 실속이 없다는 탄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미 600석 남짓을 먼저 본부의 유고곡(留庫穀)과 총융청의 둔향곡(屯餉穀) 중에서 지급하고 구획한 조는 각각 그 읍에서 가을에 작미(作米)하여 명년 봄 환곡을 나누어 줄 때 본부 부근 백성의 이전곡(移轉穀)으로 받아 온다면 형편에 따라 대처하는 방법이 이보다 나은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綱 召見京畿監司 金思穆 水原府使 趙心泰于重熙堂

目 思穆啓言水原府軍保米蕩減條六百四十二石零代租一千六百六石零以本府及安城 龍仁 陽城等邑所在常賑租區劃給代矣此是將士軍卒逐朔支放之資則米代受租在所當念且就他邑受來千餘包穀物之際徒歸糜費將有無實之歎米六百石零先就本府留庫及總廳屯餉中支放而區劃租則自各其邑待秋作米趁明春還分時以本府附近民移轉受來則方便之道恐不外此矣從之

<일성록, 정조14년(1790) 4월 10일(경신)>

경제/재정

수원부의 각종 세금문제를 하유하다

강 수원부(水原府)의 어부가미(漁夫價米) 및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의 전(錢)을 본부(本府)에 획급(劃給)하여 삼색군(三色軍)의 경비에 보태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 '수원부 삼색군의 경비에 필요한 재원은 바로 원행(園行) 때 가전(駕前)에 소용되는 것입니다. 비록 동가(動駕) 때가 아니더라도 관문(官門)에서 장기간 입직하니 어찌 이와 같은 고역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미 300석(石)과 전 600여 민(緡)이 있어야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비록 이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 곳이 아니더라도 경비를 위하여 대동(大同)을 구획해 준 것은 이미 전례와 근례가 많다. 더구나 어부미가 수원 한 고을 백성들에게 몹시 고통스러운 폐단이 됨은 일찍이 익히 들었던 바인데, 1포(包)에 추가로 내는 것이 수십 두(斗)를 훨씬 넘어서니, 그 폐단이 근래 향궤(餉饋)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수원 백성의 다행이 아니겠는가. 매년 바치는 어부미 명색은 경비로 전속시키고, 부족한 수량은 대동 중에서 떼어서 300석 수량에 맞추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하고서 어부미를 거둘 때에 만일 주원(廚院)이 침탈하는 폐단을 모두 없애지 않는다면 일거양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폐단을 없애는 것이 진실로 어렵지 않음을 알므로 수원 백성을 위하여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이니, 경과 지방관은 그리 알고서 각별히 신칙하라. 전조(錢條)는 본부의 사체가 어찌 통곤(統閫)에 비할 뿐이겠는가. 관방(關防)에도 시행하도록 허락한 전례가 있는데, 더구나 본부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본부가 바치는 어세·염세·선세를 특별히 본부에 획급하여 경비에 보태도록 하라. 이런 내용으로 기백(畿伯)과 수원부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綱 命水原府漁夫價米及漁鹽船稅錢劃給本府以補三色軍支放

目 敎曰水原府三色軍支放之需卽園行時駕前所用雖非動駕之時長立官門豈有如許若役須有米三百

石錢六百餘緡可以拮据云雖無似此所重爲支放區劃大同旣多久例與近例況漁夫米之爲水原一邑民切若之瘼曾所熟聞一包之容優過數十斗其弊何異於近來餉饋及此得以息肩豈非水民之幸乎以每年所納漁夫米名色全屬支放條不足之數以大同中除留以準三百之數如是之後漁米之捧也若不盡革廚院侵虐之弊則其可曰一擧兩得乎蘇弊固知不難爲水民更此申申卿與地方官知悉各別申飭錢條則本府事體豈比統閫關防則彼有許施之例況本府乎本府納漁鹽船稅條特爲劃屬本府以補支放事下諭于畿伯及水原府使

<일성록, 정조14년(1790) 4월 17일(정묘)>

경제/재정

도창감색이 수원부에서 쌀을 매석하여 보낸 일을 아뢰다

강 평안 감사 심이지(沈頤之)가 영변(寧邊) 등 8개 고을의 전 수령을 조사한 일에 대해 치계하였다.

목 도창 감색(都倉監色)이 공초하기를, '본부 각 창고의 회외곡(會外穀)의 모조(耗條) 소미(小米) 288석과 태(太) 100석과 매 석의 값이 5냥 3전인 각 창고의 잉여곡(剩餘穀) 및 산사(山査)의 본가(本價)와 매 석의 값이 4냥 5전인 본관이 사용한 태 200석은 합계가 900냥인데, 3냥씩 도로 민간에 나누어 주어 철옹성(鐵甕城)의 향미(餉米) 300석을 가져다 쓴 대가로 채웠습니다. 본태(本太)는 현재 허류(虛留) 상태에 있고, 소미 283석 남짓과 태 200석은 강화(江華) 발매조(發賣條)를 매 석에 5냥 1전씩 본관에서 사서 진휼하는 곳에 이송한 뒤에 대전(代錢) 6냥씩으로 가져다 썼습니다. 소미 150석은 수원부(水原府) 발매조를 매 석에 7냥 2전인 것을 매 석에 6냥씩 실어 보내고, 있는 돈 180냥을 가져다 썼습니다. 소미 180석은 매 석의 값을 6냥에 발매하였는데 3냥씩으로만 백성들에게 분급하였습니다. 남은 돈 565냥은 책객 허가가 중간에 투식(偸食)하였습니다. 태 170석은 매 석의 값을 5냥으로 발매하여 견요전(蠲徭錢)을 도로 갚았고, 관아에서 사용한 대가인 본태는 아직 허류 상태에 있습니다. 8종의 곡식으로 대봉(代捧)하고 가장 비싼 종류만 발매한 일이 회안(會案)에 실제 있었습니다. 대미·소미·두·태·직(稷)·당(唐)·도(稻)·속(粟) 등 8종을 모두 회안에 따라 봉상하였으나 작년에 태의 값이 높이 올랐기 때문에 태 한 가지로만 발매하였으니, 가장 비싼 종류만 발매했다고 운운한 것은 여기에서 말미암은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강 平安監司 沈頤之以寧邊等八邑前倅查事馳啓

목 (…) 都倉監色所供以爲本府各庫會外穀耗條小米二百八十八石太一百石各倉剩餘穀及山查本價每石價五兩三錢本官用下太二百石每石價四兩五錢合九百兩三兩式還分民間以充鐵甕城餉米三百石取用之代本太方在虛留中小米二百八十三石零太二百石則江華發賣條每石五兩一錢式自本官貿得移送賑所後代錢六兩式取用小米一百五十石則水原府發賣條每石價七兩二錢以每石六兩式輸送在錢一百八十兩取用小米一百八十石每石價六兩發賣只以三兩式分給民間餘錢五百六十五兩冊客許哥從中偸食太一百七十石每石價五兩發賣還報蠲徭錢官用代本太則尙在虛留中八種穀之代捧最貴種之發賣事會案果有大小米豆太稷唐稻粟等八種竝依會案捧上而昨年太價高騰故只以太一色發賣最貴種之發賣云云似由於此 (…)

<일성록, 정조14년 (1790) 4월 22일(임신)>

경제/재정

수원의 백성들의 정착을 위한 재정문제를 논의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승지 홍성연(洪聖淵), 경기 감사 김사목(金思穆), 수원부사(水原府

使) 조심태(趙心泰)를 소견하고, 균역청의 전(錢) 6만 5000냥을 특별히 수원부에 빌려주라고 명하였다.

목 (…) ○ 조심태가 아뢰기를, "근래 '본부의 신읍(新邑) 안에 시전(市廛)을 설립하는 일로 대신(大臣)과 여러 재신(宰臣)에게 이미 수의(收議)하였으므로 신이 널리 대중의 의견을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본부는 삼남(三南)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이기는 하지만 본래 물산(物産)이 부족하므로, 부유한 민호(民戶)를 널리 모집하여 시전을 설립하려고 해도 부유한 민호가 모집에 응하도록 하는 것은 갑자기 생각처럼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모쪼록 본토의 백성 중에서 살림밑천이 있고 상업에 대해 잘 아는 자를 골라 수원읍 주변에 정착하게 하고, 그 형편에 따라 본전(本錢)을 받아서 돈을 불리며 생계를 유지하게 해야 합니다.」 운운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중의 의견을 가지고 사정을 참고해 보면 충분히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참으로 한번 시험해 볼만한 일이나, 적지 않은 돈을 실로 마련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어느 아문의 돈이거나 막론하고 이자 없이 본전 5만 냥을 구획(區劃)받아서, 본전의 10분 1을 이자로 받고 빚을 놓는 전례에 따라 이 돈을 받기 원하는 도하(都下)의 부유한 사람에게 넘겨주어 이자를 받게 한다면, 해마다 이자로 거두어들이는 몫이 5000냥이 될 것이고 3년으로 기한을 정하면 정확히 1만 5000냥의 이자를 모으게 되니, 그런 뒤에 본전 5만 냥까지 아울러 수납하게 한다면 백성을 모집하고 산업을 제정하는 방도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깁니다. 다만 삼가 생각하건대 현재 모집에 응한 자가 벌써 5, 6호(戶)가 되며 앞으로 차례차례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도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매년 이자로 받는 몫 5000냥을 해마다 내주도록 한다면 처음에는 나누어 받는 양이 매우 적어서 주선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빚을 놓는 본전 5만 냥 이외에 3년 동안 이자로 받게 될 몫 1만 5000냥을 추가로 빌려주어서 이때에 맞추어 모집에 응한 사람에게 일제히 구획하여 능력껏 운용하게 한다면, 시전의 명목을 설립할 필요도 없이 그들이 직접 판매하는 것이 마치 여기저기서 일어나 도부장수〔行貨商〕가 되는 것처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싼 것을 사고 비싼 것을 팔아 수시로 잘 운영하면, 새로운 읍치(邑治)로서도 백성들이 완전히 모여들기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포사(造泡寺) 승도(僧徒)의 생활이 매우 쇠잔하므로 일체 참작하여 분배해 줌으로써 지혜(紙鞋)의 본전으로 삼아 이익을 창출하여 생계를 유지하게 한다면, 이득을 볼 방도가 있을 것입니다.'고 한 일에 대한 비지(批旨)에 '좌상과 우상에게 나아가 의논하여 거조(擧條)를 내어 들이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신이 삼가 하교하신 대로 나아가 의논하니, 좌의정 채제공은 '운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리가 있으니 참으로 진달한 대로 시행해야겠습니다. 돈은 균청(均廳)과 금위영(禁衛營)·어영청(御營廳) 두 영, 관서(關西)의 별향고(別餉庫)에서 참작하여 분배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고, 우의정 김종수는 '이번에 수원부사가 아뢴 것은 이것저것 비교하여 선택할 때에 모두 사리에 적합하게 결정한 것입니다. 6만 냥의 돈이 적지 않은 것 같기는 하나, 3년 안에 원래의 수량을 돌려준다면 기한을 늘리거나 써서 없애버릴 우려가 없으니, 아뢴 대로 시행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돈을 분배하는 것은 거조에 대해 계하하기를 기다려 좌상의 말대로 균청과 금위영·어영청 두 영, 관서의 별향고에서 참작하여 수량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 균청의 돈은 사체가 중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 여러 해 동안 남는 수효가 처음에 비해서 여러 배일 뿐만 아니라, 경각사(京各司)가 빌려다 쓰고 10년 안에 도로 갚도록 한 것은 작년부터 벌써 규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더구나 이처럼 막중한 일에 필요한 돈을 빌려다 쓰고 수년 안에 본전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

을 미룰 이유가 없을 듯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은 남아 있는 비축량이 넉넉하지 않다고 하며 별향고는 거리가 머니, 균청의 돈으로 전수 획급(劃給)하라. 균청의 돈은 자별하기는 하지만 갚을 연한을 정해서 도로 채워 놓을 것이니, 이는 정식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뜻으로 해청(該廳)에 분부하라." 하였다.

강 召見承旨 洪聖淵 京畿監司 金思穆 **水原府使** **趙心泰**于重熙堂命均廳錢六萬五千兩特貸**水原府**

목 (…) ○心泰啓言頃以本府新邑內市廛事大臣諸宰已有收議而臣博詢物議則咸以爲本府雖是三南要路物產素乏雖欲廣集富戶設立市廛實戶之應幕捽難如意須於本土民人中擇其有食根解商業者奠居於邑底從多少受本錢興利資生云云以此物議參互事情綽有可據亶合一試而不貲錢貨實難辦出臣意則毋論某衙門劃得無邊錢五萬兩以十一邊放債之例付諸都下有富名願受者使之取殖則歲收利條當爲五千兩定以三年之限恰得一萬五千兩邊錢然後竝與本錢五萬兩收納其在募民制產之方庶爲一大助第伏念目下應募已五六戶次第願屬者亦未知爲幾何每年利條五千兩逐歲出給則初頭分受數甚零星將無拮據之望放債元錢五萬兩外加貸利條一萬五千兩趁此時一齊區劃於應募之類使之隨力經紀而不必設立廛名其所手販有若雜興成行貨商貿賤賣貴隨時料理則新治亦期完聚矣且造泡寺僧徒之生涯極爲凋殘一體酌量分排作爲紙鞋本錢辦利資生則合有沾溉之道事批旨內就議左右相出擧條以入事命下矣臣敬依下敎就議則左議政 **蔡濟恭**以爲經紀極有條理固當依所陳施行至於錢物似於均廳及禁御兩營 關西別餉庫酌量分排恐合事宜云右議政 金鍾秀以爲今此**水原**倅所奏彼此取舍之際儘皆中窾六萬錢貨雖似不些三年之內還他原數則可無延拖消融之慮依所奏施行恐合事宜至於錢物分排待擧條啓下依左相言就均廳及禁御兩營 關西別餉庫可以斟量裒益而其中均廳錢雖似體重不但多年贏縮之數比初累倍而已京各司借用限十年還償自昔年已有成例則況此莫重所須之數年內還本似無持難之端云矣敎以禁御而營遺儲不敷云別餉庫遠矣以均廳錢全數劃給均錢雖自異限年當還充此非違越定式以此意分付該廳

<일성록, 정조14년(1790) 5월 17일(정유)>

경제/재정

수원부사가 상진곡 문제를 치계하다

강 **수원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가 본부(本府)의 상진곡(常賑穀)으로 새로 거둔 모(牟)를 읍내의 민호(民戶)에게 분급(分給)하는 것에 대해 치계(馳啓)하였다.

목 ○ 장계에, "신이 삼가 윤음(綸音) 내용에 의거하여 본부 읍내의 민호를 일일이 적간(摘奸)하였더니, 구읍(舊邑)에서 이사한 백성 469호(戶)에게는 매호마다 모 2석(石)을, 원래 거주하던 백성 63호와 이사한 백성의 협호(挾戶) 46호, 다른 곳에서 옮겨 온 백성 141호에게는 매 호마다 모 1석을 마련한다면 도합 719호에게 분급해야 하는 모가 1188석이 됩니다. 본부의 모환(牟還)이 매우 넉넉한 데다가 인근 고을에서 받아 오는 것도 민폐에 관계되므로 민정(民情)을 참작하고 순영(巡營)과 논의하여 본부에 회부(會付)된, 상진곡으로 새로 거둔 모를 일일이 분급한 후에 회감(會減)하겠다는 내용으로 성책(成冊)을 만들어 관찰사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연유로 치계합니다." 하였다.

강: **水原府使** **趙心泰**以本府常賑新捧牟分給邑內民戶馳啓

목 狀啓以爲臣敬依綸音內辭意本府邑內民戶逐戶摘奸自舊邑遷徙民人四百六十九戶每戶牟二石元居民人六十三戶遷徙狹戶民人四十六戶他處移來民人一百四十一戶每戶牟一石磨鍊合七百十九戶當分牟爲一千一百八十八石本府牟還旣甚有裕隣邑受來亦係民弊參互民情往復巡營以本府會付常

賑新捧牟一一分給後會減之意修成册報于觀察使緣由馳啓
<일성록, 정조14년(1790) 7월 16일(갑오)>

경제/재정

수원 등에서 사노비의 도망과 사망에 따른 백징의 폐단 문제를 논의하다

강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초계 문신(抄啓文臣)의 친시(親試) 및 일차 유생(日次儒生)의 전강(殿講)과 제술(製述)을 행하고,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하였다. 친시의 시관은 채제공(蔡濟恭), 정민시(鄭民始), 정동준(鄭東浚), 이만수(李晩秀), 윤행임(尹行任)이고, 유생 제술의 시관은 오재순(吳載純), 김희(金憙), 서정수(徐鼎修), 김이정(金履正), 서형수(徐瀅修), 유문양(柳文養), 이경오(李敬五)이고, 유생 전강의 시관은 채제공, 정민시, 홍양호(洪良浩), 민종현(閔鍾顯), 이만수, 서미수(徐美修), 유강(柳堈), 이철모(李喆模)이다.

목 (…) 또 아뢰기를, "지난번 함양 어사(咸陽御史) 최현중(崔顯重)의 별단으로 인하여 시노비가 도망하거나 사망하여 백징하는 폐단을 본사(本司)가 초기한 것에 대해 비지(批旨)하여, 어느 도, 어느 읍의 폐막이 심하고 덜한지를 두루 관문을 보내어 물어서 읍마다 조목조목 열거하여 장문하게 하고 장문이 올라온 뒤에 품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교대로 제도(諸道)에 관문을 보내 물었습니다. 방금 경기 감사 김사목의 장계를 보니 각 읍의 보고를 하나하나 들어 아뢰기를, '대체로 노비들은 도망하거나 죽으면 별도로 탈급(頉給)하고 출생하면 상세하게 현록하는 것이 본래 정식입니다. 그러나 추쇄하고 탈급하는 것이 마땅함을 잃었으므로 폐막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원(水原) 등 14개 읍 외에 모두 그 폐단이 있으니 앞으로는 영읍(營邑)이 빼거나 넣는 것을 직접 관장하여 조사해냄으로써 백징의 폐단을 없앤다면 읍총(邑總)은 혹 부족하더라도 온 도를 통틀어 계산하면 크게 흠축나지 않을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추쇄관을 혁파한 후에 도비총(道比總)의 정식을 두었으니 영읍이 만일 직접 빼거나 넣는 것을 관장하여 마음을 다해 바로잡는다면 고질적인 폐막이 저절로 점점 없어질 것입니다. 이로써 각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강 御熙政堂行抄啓文臣親試及日次儒生講製召見大臣備堂 親試試官 蔡濟恭 鄭民始 鄭東浚 李晩秀 尹行任儒生製述試官 吳載純 金憙 徐鼎修 金履正 徐瀅修 柳文養 李敬五儒生殿講試官 蔡濟恭 鄭民始 洪良浩 閔鍾顯 李晩秀 徐美修 柳堈 李喆模

목 (…) 又啓言頃因咸陽御史 崔顯重別單寺奴婢逃故白徵之弊本司草記批旨有何道何邑之弊峻弊歇遍擧關問使之逐邑條列狀聞後稟處之命矣依下敎關問諸道矣卽見京畿監司 金思穆狀啓則枚擧各邑所報以爲蓋此奴婢逃故則別加頉給生產則詳細懸錄自是定式而只緣刷頉之失宜致有弊瘼之滋甚水原等十四邑外俱有其弊此後則營邑親執存拔以査現之類除白徵之弊則邑總雖或不足通計一道不至大縮請令廟堂稟處矣刷官革罷後旣有道比總定式營邑若能親執存拔盡心釐革則痼弊自當漸祛請以此各別申飭從之 (…)

<일성록, 정조14년(1790) 8월 28일(병자)>

경제/재정

용주사 승도에게 미곡 지급을 할 것을 수원부사에게 명하다

강 독성산성(禿城山城)에 있는 총융청 둔향(屯餉)의 미(米)와 태(太)를 가분(加分)하여 모곡(耗穀)을 받아서 기거를 원하는 용주사 승도에게 획급하라고 명하였다.

목 ○ 수원부사 조심태에게 전교하기를, "용주사에 기거하기를 원하는 승도들을 구제할 방도를 찾기 위하여 불향답(佛享畓)을 매입하였다. 독성산성에 있는 총융청 둔향의 미와 태 가운데 추수 전에 중군(中軍)이 감독하여 담당하는 환곡의 수량이 넉넉히 5000포(包)가 넘는다고 한다. 그중에서 미와 태의 유고조(留庫條)를 해영에 분부하여 즉시 적절하게 가분해서 모곡을 취하여 100석이나 200석에 한하여 기거하기를 원하는 승도에게 획급하여 추이(推移)해서 구제할 수 있게 하라. 이 전교 1통을 베껴서 본도 관찰사 및 총융사에게 보여 주어 이대로 거행할 수 있게 하고, 본부는 거행한 상황을 장계하라." 하였다.

강 命總戎廳屯餉在禿城者加分取耗劃給龍珠寺願居僧徒

목 敎水原府使 趙心泰曰因龍珠寺願居僧等接濟之道佛享畓買得秋收前以總廳屯餉米太之在禿城山城中軍監掌糶糶者厥數洽過半萬包云就其中米太留庫條分付該營使卽量宜加分取耗限百石或二百石劃給願居僧以爲推移接濟之地此傳敎一通謄示本道觀察使及總戎使處以爲依此擧行之地本府擧行形止以狀啓爲之

<일성록, 정조14년(1790) 10월 10일(정사)>

경제/재정

수원에 이속시킨 2개 면의 미곡 수급 문제에 관해 논의하다

강 희정당(熙政堂)에서 대신(大臣)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하고, 이어 초계 문신의 과강(課講)을 행하였다. 시관은 오재순(吳載純), 이병모(李秉模)이다.

목 (…) 채제공이 또 아뢰기를, "광주(廣州) 2개 면(面)을 수원(水原)에 이속시킨 뒤에 수청(守廳)에서 거두는 미(米)의 줄어든 수량은 지난번 연석에서 관서(關西)의 소미(小米)나 혹은 본청(本廳)의 첨향조(添餉條)로 추이(推移)하여 보충하라는 뜻으로 하교하셨습니다. 관서의 소미는 계속해서 이획(移劃)하기 어려우니, 첨향조로 비용을 지급하는 데에 옮겨 시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책이 없습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

강 召見大臣備堂于熙政堂仍行抄啓文臣課講 試官 吳載純 李秉模

목 (…) 又啓言廣州兩面移屬 水原之後守廳收米之見縮者頃日筵中以關西小米或本廳添餉條推移充補之意有所下敎矣關西米則有難續續移劃以添餉條移施之外無他策矣從之 (…)

<일성록, 정조14년(1790) 10월 20일(정묘)>

경제/재정

수원의 새 고을의 급복(給復) 결수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水原) 새 고을 민호의 급복(給復) 500결(結)은 제1등급의 규례대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봄에 원침(園寢)에 전알하고 숙차(宿次)에 돌아와 머물면서 새 고을의 민호에게 그 살림살이와 먹을 것을 넉넉하게 해 주려는 정사에 마음이 간절하여 윤음을 불러 쓰느라 촛불을 여러 번 갈아대는 것도 모르고 앉아서 밤을 새웠다. 또 환궁한 뒤에도 특별히 윤음을 내렸는데, 그중 한 조목은 바로 조세는 면제하고 부역은 면제하지 않는 것으로 급복을 시행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새 고을 백성들의 살림에 크게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근래 호조의 신하가 일러주는 말을 들으니, 제1등급을 희망한 수원 백성들의 마음에 실망하는 한탄이 없을 수 있겠는가. 대저 급복은 그 규례가 한둘이 아니다. 능복(陵復), 역복(驛復), 인리복(人吏復), 효열복(孝烈復), 잡복(雜復)이 있으니 전세, 대동세, 초미세(草米稅) 등 땅에서 생산되는 것에 세금이라 명목을 붙인 것까지 아울러 면제해 주는

것이 제1등급이 된다. 그 다음은 세금만 면제해 주고 공물은 면제해 주지 않거나 또는 공물만 면제해 주고 잡비는 면제해 주지 않는 것으로서 그 단계가 매우 많다고 한다. 지금 **수원**의 백성들에게 중등이나 하등의 규례를 적용한다면 이것이 어찌 내가 처음부터 돌보아 주려고 애쓴 본의이겠는가. 본부의 새 고을 민호의 급복 500결은 특별히 제1등급의 규례대로 거행하고, 즉시 묘당으로 하여금 해당 부사에게 행회(行會)하여 이 전교를 반포하여 백성들에게 토지에서 거두는 것은 없고 혜택은 고루 미치게 하였다는 뜻을 환히 알게 하라." 하였다.

강 命水原新治民戶給復五百結依第一等例擧行

목 敎曰春謁園寢還住宿次惓惓於新治民戶裕產足食之政呼宣十行不知蓮燭屢跋而坐夜向曙又於回鑾之後別下綸音其中一條卽給復之以稅不以役也意謂大有裨益於新治民產近聞度支之臣警咳之說以水民希其第一等之心得無觖望之歎乎大抵給復其例不一有陵復焉有驛復焉有人吏復焉有孝烈復焉有雜復焉與田稅大同草米等出於土而名以稅者竝蠲爲第一等其次或蠲稅不蠲貢又或蠲貢不蠲雜費層節甚多云今於水民用中下等之例則是豈自初辛勤之本意乎本府新治民戶給復五百結特依第一等之例擧行卽令廟堂行會該府使以此傳敎頒布民衆曉然知土無所納惠則偏被之意

<일성록, 정조14년(1790) 12월 8일(갑인)>

경제/재정

수원의 상업과 재정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강 희정당(熙政堂)에서 대신(大臣), 비변사 당상 및 하직하는 수령을 소견하였다.

목 (…) 채제공이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전민(廛民)이 누차 정소(呈訴)하여 관서의 목(木)을 얻어서 먹고 사는 밑천으로 삼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300동(同)을 발매하라는 내용으로 허락하는 제사(題辭)를 써 준 뒤에 기영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남아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보고 내용을 보니, 현재 있는 온전한 물품은 300여 동에 불과하고 손상된 것은 100여 동인데 영문에 쌓여 있는 목은 전 수량을 다 발매할 수는 없어서 손상된 것으로 신전(新廛)의 백성들에게 내주려고 하는데 그 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 이로움이 없을 듯하니 참으로 매우 불쌍합니다. 기영에서 들어오는 필단(疋緞)은 2140여 필이니 그중에서 500필을 절가(折價)하여 내준다면 혹 먹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문단(紋緞)은 입전(立廛)에서 소관하는 물품인 이상 **수원** 백성에게만 주고 원전(原廛)에 미치지 않는다면 조정에서 똑같이 취급하는 의리로 볼 때 불공정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500필을 또한 입전에서 발매하도록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하기에 감히 이렇게 진달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

○ 정민시가 사옹원 제조로서 아뢰기를, "**수원부**의 어부가 받아먹는 복호미(復戶米)를 줄여 없애는 대신 혜청(惠廳)에서 획급(劃給)하도록 정식을 삼았습니다. 어부 등이 본래 받아먹는 복호미는 122석 10두인데 혜청에서 복호 115결(結)에 대해 매 결마다 미 12두씩 도합 92석을 지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원부**에 물으니, '혜청이 복호에 대해 매 결마다 대동미 12두씩을 지불하는 것 이외에 본부가 관수(官需)를 작미(作米)한 것 중에서 지불하는 것이 또한 30석 10두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합하여 계산해 보니 과연 122석 10두였습니다. 지금 견감(蠲減)한 것을 혜청에서 이미 급대한 이상 어부 등이 본래 받는 수량을 줄여서는 안 되고 관수를 작미하는 것은 대동미와 관계가 되니, 일찍이 해부가 지불한 미 30석 10두도 혜청에서 일체 마련하여 내주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하기에 감히 이렇게 진달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召見大臣備堂及下直守令于熙政堂

목 (…) 又啓言水原廛民屢次呈訴願得關西木以爲聊賴之資故仍以三百同發賣之意許題後發關箕營問其餘存爲幾何及見所報時在完品不過爲三百餘同腐傷爲一百餘同營門所儲不可盡數發賣以腐傷者出給新廛之民誠甚可矜箕營流來疋緞爲二千一百四十餘疋就其中以五百疋折價出給則或可聊活紋緞旣是立廛所管之物則只給水民不及原廛在朝家一視之義不無斑駁五百疋亦爲許賣於立廛恐合事宜故敢此仰達從之 (…) ○民始以司饔提調啓言水原府漁夫復戶米減罷之代自惠廳劃給事定式矣漁夫等自來受食復戶米爲一百二十二石十斗而惠廳以爲復戶一百十五結每結米十二斗式合九十二石當上下云故問于水原府則以爲復戶每結大同米十二斗外本府官需作米中所下亦爲三十石十斗云合而計之果爲一百二十二石十斗今此蠲減者旣已給代則漁夫等本來所受不可減數而官需作米係是大同則曾前該府所下米三十石十斗亦自惠廳一體磨鍊出給似合事宜敢此仰達矣從之

<일성록, 정조14년(1790) 12월 14일(경신)>

경제/재정

수원으로 인근의 외창을 옮길 것을 논의하다

강 수원(水原) 근읍(近邑)의 외창(外倉)을 본부(本府)로 옮겨 세우라고 명하였다.

목 ○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수원 신읍(新邑) 백성들이 생활하는 데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부근인 광주(廣州)·용인(龍仁) 등 읍의 외창을 본부 읍내로 옮겨 세우도록 한다면 비록 본부 외촌(外村)에 거주하는 부류들도 반드시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장구한 계책으로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도신과 해당 부사로 하여금 창고를 설치하는 제도를 강구하게 하고, 이어 이에 대한 의견과 언제 역을 시작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 命水原附近邑外倉移建於本府

목 左議政 蔡濟恭啓言水原新邑民生理無所倚靠臣意則傳近如廣州 龍仁等邑外倉移建於本府邑內則雖外村居生之類必有願居之入長策恐無出此矣從之敎以令道臣及該府使講究設倉之制仍具意見及始役遲速狀聞事分付

<일성록, 정조15년(1791) 3월 11일(을유)>

경제/재정

수원으로 외창 이설 문제를 논의하다

강 원행(園幸) 때에 본도(本道)가 거행하는 데 드는 재력(財力)은 도내의 가분곡(加分穀)의 모조(耗條)로 떼어 주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가 광주(廣州)·용인(龍仁) 등의 외창(外倉)을 수원(水原)에 이설(移設)하는 것의 편의에 대해 논열(論列)하여 치계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 '본도의 일은 재작년 가을에 연석에서 하교한 것이 있었으나 아직 통지를 하지는 못하였다. 매년 원행에 대해서는 정례(定例)가 이루어져 서울의 각 영(營)은 비록 윤차로 하지만, 본도의 경우는 해마다 수가(隨駕)하지 않을 수 없고, 모든 거행에 있어서도 분판(分辦) 등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재력을 어디에서 마련해 내겠는가. 그리고 공역(公役)이 있을 때마다 번번이 번거롭게 조정이 지시하여 떼어 주니, 일의 체모로 보아 구차스러움이 역시 심하다. 연전에 호남과 영남 두 도의 3000석, 6000석은 단지 감영의 비용을 위하여 그렇게 특별히 떼어 주었는데, 더구나 기영(畿營)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도내의 가분

곡의 모조 3000석을 특별히 떼어 줄 것이니 이후로는 이것으로 감영의 비용을 삼되, 만일 가분이 없거나 혹은 가분했는데도 모조가 수량에 차지 않으면 상진곡(常賑穀)의 모조로 이 수량에 준해 채우도록 하라.' 라는 내용으로 회유하라." 하였다.

강 園幸時本道擧行財力命以道內加分耗許劃

목 京畿監司 徐鼎修以廣州 龍仁等外倉移設於**水原**便宜論列馳啓敎以本道事再昨秋有筵敎而尙未知委矣每年園幸定例已成京各營則雖輪次本道則不可不年年隨駕凡百擧行亦除分辦等事則財力從何辦出乎每當一番公役輒煩朝家指劃事面之苟艱亦甚矣年前湖嶺兩藩之三千六千只爲營用有此特劃則況畿藩乎道內加分耗三千石特爲許劃此後以此所劃爲營用如値無加分或加分而耗不滿此數則以常賑耗準充事回諭

<일성록, 정조15년(1791) 3월 29일(계묘)>

경제/재정

강화도의 쌀을 수원부에 이속시키다

강 강화도(江華島)의 미(米) 560석(石)을 **수원부**에 소속시키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은 읍을 옮긴 이후로 일의 체모의 중요성이 다른 곳과는 구별이 됩니다. 듣건대 **수원**에는 심도(沁都)의 미를 이전(移轉)하여 유고(留庫)해 둔 것이 있는데, 매년 환곡(還穀)으로 운용하여 그 모조(耗條)를 작전(作錢)하여 심도로 보내고 있으나 그 값을 매번 높게 책정하여 실로 **수원** 백성의 폐단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진실로 조정에서 바로잡아야 마땅한 것이고, 더구나 **수원**은 관방(關防)으로서의 중요성이 심도에 버금가니, **수원**에 유고해 둔 미를 작전하여 심도로 보내는 것은 실로 부당합니다. 지금부터는 심도의 미 560석을 **수원부**에 소속시켜 폐단을 구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命沁都米五百六十石屬之**水原府**

목 備邊司啓言**水原**自遷邑以後事面之重與他有別聞**水原**有沁都米移轉留置者每年糶糴以其耗條作錢以送而價直之定每患高峻實爲水民之弊此固朝家所宜矯革而況**水原**關防之重未必不及於沁都則以**水原**留置之米作錢以納於沁都實涉乖當從今爲始沁都米五百六十石屬之**水原府**請以爲救弊允之

<일성록, 정조15년(1791) 4월 13일(정사)>

경제/재정

안성의 공장에게 대급한 것을 수원부에 납부케 하다

강 안성의 공장 등에게 대급(貸給)한 것은 갑인년(1794, 정조18)부터 시작하여 10분의 1씩 마련해 납부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안성의 공장 등에게 구획하는 아문과 대급하는 연한에 대해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경군문(京軍門) 가운데 총청(摠廳)이 **수원**을 관할하고 있으니, 총청의 전 2만 냥을 구획하되, 대급할 즈음에 신원이 확실한 자 약간 명을 뽑아서 두목(頭目)을 삼아서 보증인을 세우는 예와 같이 하며, 도로 갚는 규식은 저들로 하여금 3년 동안 이익을 남겨 의뢰하여 생활하게 하고 갑인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0분의 1씩 마련해 **수원부**에 납부하게 한 다음 본부에서 총청에 수송하게 하되 10년에 한하여 모두 끝마치게 함으로써 원금이 축나는 문제가 없게 해야 합니다. 이 내용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命安城工匠等貸給自甲寅爲始以十分一備納

목 備邊司啓言安城工匠等貸給年限草記事命下矣京軍門之中總廳管轄水原以該廳椿貨二萬兩區劃而貸給之際擇其有根着者略千人作爲頭目有若懸保之例其還報之規使渠輩限三年興利資生自甲寅爲始以十分一逐年備納於水原府自本府輸致於總廳限十年了畢俾無欠縮之患事請分付允之
<일성록, 정조15년(1791) 5월 6일(경진)>

경제/재정

수원의 시취에 입격한 사람의 점심밥 재원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水原)의 유생과 무사로서 입격(入格)한 부류에 대해 점심밥의 재원을 제급(題給)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이번에 수원의 유생과 무사로서 입격한 부류에 대해 등급을 나누어 점심밥의 재원을 제급해서 새로 거주한 저들로 하여금 어려운 식량 사정을 면하게 하라. 그러나 만일 수원부로 하여금 회감(會減)하게 한다면 일의 체모가 몹시 구차하니, 우선 본부의 대동조(大同條) 중에서 응납(應納)과 저치(儲置)를 막론하고 편리한 쪽으로 회감하라고 해당 관청에 분부하고, 이어 또 해당 부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강 命水原儒武入格之類題給午飯之資

목 敎曰今番水原儒武入格之類分等題給午飯之資俾渠輩新接者免艱食之患若令該府會減事面甚苟且以本府大同條中無論應納與儲置從便會減事分付該廳仍又下諭于該府使
<일성록, 정조15년(1791) 5월 28일(임인)>

경제/재정

수원부 전세문제와 능침 행행에 대한 부역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부(水原府)의 전세(田稅)를 다른 창고에 옮기지 말라고 명하고, 각 능침의 행행(幸行) 때 들어가는 역(役)을 분담시키는 것에 대해 거론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목 ○ 직각 서정수가 아뢰기를, "수원부에서 상납하는 전세를 각 창고에 나누어 옮길 때에 폐해를 입는 것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수원부의 전세를 다른 창고에 옮기지 말고 별고(別庫)를 정해 이송하라고 호조에 분부하고, 이로써 정식을 삼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매년 원행(園幸) 때마다 수원부가 이미 그 역을 전담하여 거행하고 있으니, 봄가을로 각 능침에 행행할 때 들어가는 역까지 수원부에 한결같이 분담시키는 것은 역을 이중으로 지우는 것에 가까운 듯합니다. 앞으로 본원(本園)에 행행하는 것 외에는 각 능침에 행행할 때 역을 분담시키는 것을 거론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아뢴 2건의 일은 모두 정원으로 하여금 만들어 보낼 유지(有旨)에 후록(後錄)하여 본부(本府)의 부사에게 하유(下諭)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水原府田稅勿劃他倉各陵寢幸行分辨勿爲擧論

목 分付戶曹請定式施行從之又啓言每年園幸旣已專當擧行則春秋幸行之一例分辨恐近疊役此後本園幸行外各陵寢幸行分辨勿爲擧論似合事宜矣從之敎以所奏兩件事竝令政院成送有旨後錄下諭于本府使可也
<일성록, 정조15년(1791) 6월 8일(신해)>

경제/재정

수원부로 옮기는 곡식의 문제를 논의하다

강 강화(江華)의 첨향조(添餉條)와 관서와 영남의 모조(耗條)를 **수원부(水原府)**에 옮겨 떼어 주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 **수원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가 연석에서 아뢴 것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수원**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과 마찬가지여서 급료가 부족하고 군수(軍需)가 구차합니다. 강화의 향곡(餉穀)에 보태는 관서의 소미(小米) 583석 5두를 매년 옮겨 떼어 준다면 혹 보태어 쓸 수 있을 것이나, 이 수효 역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416석 10두를 더 보태어 옮겨 떼어 주어 1000석 수효에 맞추어 준다면 어느 정도 보탬이 될 듯합니다.

장용영(壯勇營) 향군(鄕軍)의 경우는 군장과 무기를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참으로 걱정이 되나 이것은 오히려 부차적인 일에 속합니다. 행궁(行宮)에서 거행하는 일과 수라(水剌)에 소용되는 것도 모두 본부에서 준비하게 하므로 사세와 재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호조에서 관할하는 관서와 영남의 환곡이 많은 고을의 모조를 작전(作錢)한 것 가운데 5000냥과 균역청과 진휼청의 보환곡(補還穀)의 모조 가운데 1000석을 옮겨 떼어 준다면 본부로서는 수용(需用)에 있어 실질적인 보탬이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命江華添餉關西 嶺南耗條移劃**水原府**

목 備邊司啓言**水原**前府使 **趙心泰**筵稟有令廟堂稟處之命矣**水原**便同草創支放艱乏軍需苟艱江華添餉關西小米五百八十三石五斗每年移屬則或可爲補用而此數亦近零星若添劃四百十六石十斗俾準千數似爲一隅之補**壯勇營**行軍軍裝器械之措置無路行宮擧行及水剌所用亦皆責應本府則事力爲難戶曹所關關西 嶺南穀多邑耗條作錢中五千兩均賑廳補還穀條限一千石移劃則在本府有需用之實請以此分付允之

<일성록, 정조15년(1791) 7월 15일(무자)>

경제/재정

수원의 봉진을 면제시키다

강 경기에서 금년에 봉진(封進)하는 생해(生蟹)는 정면(停免)하고, **수원(水原)**의 봉진은 영구히 면제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기읍(畿邑)에서 공물로 바치는 해(蟹)의 폐해가 비록 작은 것 같지만 일찍이 들으니 공물에 응하는 데가 20개 고을 가까이 되는데 두세 개 고을 외에는 모두 백성에게서 나온다고 하였다. 전에는 견감해 주는 때가 많았고 더구나 금년에는 한 달 넘게 장마가 져서 강가와 근해(近海) 지역 백성들의 형편이 매우 마음이 쓰이는데, 해를 공물로 바치는 고을이 모두 연읍(沿邑)이니 어느 모로 보나 생각해 주는 거조가 있어야 한다. 매번 공물을 거두고 나서 명을 반포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입지 못하였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이 뜻을 낱낱이 들어서 경기에 분부하여 금년에 봉진하는 생해는 특별히 정면하게 하고, 모두 오늘 안으로 열읍(列邑)에 통지하게 하라. 그중에 관아에 있던 것에서 내어 이 진공(進貢)에 응하는 것도 이번에는 봉진하지 말게 하고 민역(民役)에 보충하게 하라. 이로 인하여 하교할 것이 있는데, **수원**이 공물 해를 지금까지 응당 바치고 있었으니 이후로는 본부의 봉진을 영구히 면제하라고 일체 분부하라." 하였다.

강 命京畿今年封進生蟹停免**水原**封進永爲蠲除

목 敎曰畿邑貢蟹之弊雖似微細嘗聞應貢者近二十邑而二三邑外皆出於民在前多有蠲免之時況今年霖雨浹月濱江近海處民事甚關心則貢蟹之邑無非沿邑以此以彼宜有軫念之擧每於旣收之後頒令之

故民未蒙實惠令廟堂枚擧此意分付該道今年封進生蟹特爲停免皆令今日內知委列邑其中出於官而應此貢者今番則亦勿封進以補民役因此而有下敎者水原蟹貢尙此應捧之中此後本府封進永爲蠲除事一體分付

<일성록, 정조15년(1791) 7월 24일(정유)>

경제/재정

수원부의 전결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부(水原府)의 구진결(舊陳結)을 탈급(頉給)해 주고, 각종 조건으로 급대(給代)하는 것을 등급을 나누어 구획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조정이 본부(本府)를 부내(部內)처럼 여기니 그곳에 고통이 있다면 어찌 범연히 볼 수가 있겠는가. 해당 부사의 말을 듣건대, 구진(舊陳)이 100결가량이라고 하니 가령 금년에 새로 잡은 재결(災結)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마땅히 이전부터 묵혀서 버려진 이른바 구진결의 몫으로 다 돌아가서 애초 명색이 없으니, 어찌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을 것이며 토지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본부는 비록 재결을 배분하는 대열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니 이 어찌 조정에서 본부를 위하는 뜻이겠는가. 수원부의 구진 전답에 대해서 그 실제 수량만큼 즉시 탈급하게 하라고 묘당은 잘 알아서 호조와 경기에 분부하라.

본부에서 지응(支應)하는 비용도 별도로 구획할 것이 있다. 옛날에는 세금을 거두었지만 지금은 소중히 여기는 바를 위하여 부세를 면제해 준 것이 과연 얼마나 되며, 그 밖에 햇수를 제한해서 급복(給復)해 주는 등 각종 조건으로 본부의 비용을 줄여 준 것이 또한 얼마나 되는가. 비록 다른 고을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급대를 해 줄 텐데 하물며 본부이겠는가. 이 일은 처음부터 연석의 하교가 있었는데 전임 수령이나 현임 수령이 번거롭고 잗단 것을 혐의하여 모두 아뢰지 않았고 조정에서도 경황이 없어서 지금까지 조처를 취하지 못했다. 좌상은 잘 알아서 수원부의 전임 부사와 현임 부사에게 물어 햇수를 제한해서 급대하는 것, 햇수를 따져 추후에 급대하는 것, 영원히 급대하는 것을 등급을 나누어 구획한 뒤에 초기하라고 비변사 낭청으로 하여금 전유(傳諭)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水原府舊陳結頉給各項條件給代者分等區劃

목 敎曰朝廷之視本府如部內凡有疾苦豈可泛視乎聞該府使言有舊陳百許結云設令今年有新執之災結皆當盡歸於流來陳棄之所謂舊陳初不名色民何以食其效土何能蠲其稅然則本府地方雖謂之不入於俵分之列非過語是豈朝家爲本府之意乎水原府舊陳田畓從實數卽令頉給事廟堂知悉分付該曹該道本府支應之需亦有別般區劃者昔之收稅而今爲所重免其賦果幾許乎外此如限年給復等各項條件府用之減縮亦果幾許乎雖在他邑猶當給其代況本府乎以此事自初有筵敎而前倅時倅嫌於煩屑皆不提奏朝家亦未遑至今無措處左相知悉問于該府前府使時府使處限年給代者計年追給代者永爲給代者分等區劃後草記事令備郎傳諭

<일성록, 정조15년(1791) 8월 24일(병인)>

경제/재정

비국이 수원의 전결 문제를 복계하다

강 비국이 수원(水原)의 구진(舊陳)을 탈급(頉給)해 주는 것 및 급대(給代)하는 것을 등급을 나누어 구획하여 복계(覆啓)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의 구진을 탈급해 주는 것 및 급대하는 것을 등급을 나누

어 구획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부는 실로 구초불(舊初不) 명색 50결(結) 남짓 및 천번(川反)과 포락(浦落) 62결 남짓이 있는데 이전에 탈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재결을 배분하는 신재(新災)가 모두 여기로 돌아가서 당년의 재민(災民)은 실제로 혜택을 입지 못하였습니다. 위 조항의 탈급되지 않은 세 가지 명색의 실제 수량을 금년부터 모두 탈급해 주라고 호조와 경기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호군(守護軍)에 대한 복호(復戶) 60결, 처음에 정한 화소(火巢) 안의 전답 130결, 재차 정한 전답 28결, 신읍(新邑) 공해좌지(公廨坐地)의 전답 21결을 매 결당 3두(斗) 5승(升)으로 작미(作米)하면 도합 미(米) 56석 남짓인데 이는 본부의 비용에서 영원히 감축하고, 이주한 백성에 대한 복호 500결을 매 결당 3두 5승으로 작미하면 도합 미 116석 10두인데 이는 본부의 비용에서 10년간 감축하고, 기유년(1789, 정조13)에 먼저 사둔 국내(局內)의 전답 8결, 수호군에 대한 복호 60결, 신읍 좌지(坐地)의 전답 9결 및 경술년(1790)에 수호군에 대한 복호 60결, 이주한 백성에 대한 복호 500결, 처음에 정한 화소 안의 전답 133결, 신읍 좌지의 전답 19결을 매 결당 3두 5승으로 작미하면 도합 184석인데 이는 햇수를 따져 추후에 급대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급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본부의 대동미(大同米)로 전량 구획하고, 유사시에 대동미가 부족하면 전세(田稅)로 대신 떼어 주게 하는 것도 편의에 합당할 것입니다. 이로써 호조, 선혜청, 경기, **수원부**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備局以**水原**舊陳除頉及給代分等區劃覆啓

목 備邊司啓言**水原**舊陳頉給及給代分等區劃事命下矣本府果有舊初不名色五十結零及川浦落六十二結零而以其流來未頉之故每年所俵新災盡歸於此當年災民未蒙實惠上項三名色未頉實數自今年竝爲頉給之意分付該曹該道守護軍復戶六十結初定火巢內田畓一百三十結再定田畓二十八結新邑公廨坐地田畓二十一結每結作三斗五升合米五十六石零此府用之永爲減縮遷徙民復戶五百結每結作米三斗五升合一百十六石十斗此府用之十年減縮者至於己酉局內先買處八結守護軍復戶六十結新邑坐地九結及庚戌守護軍復戶六十結遷徙民復戶五百結初定火巢田畓一百三十三結新邑坐地十九結每結作米三斗五升合一百八十四石此計年可以追給代者凡此三件不可不給代者而以本府大同米依數區劃若値有事之時大同有所不足則以田稅代劃亦合便宜請以此分付該曹該廳該道該府允之

<일성록, 정조15년(1791) 8월 29일(신미)>

경제/재정

수원부의 군향태(軍餉太)를 작미(作米)토록 허락하다

강 군향태(軍餉太)를 작미(作米)해 달라는 **수원부(水原府)**의 청을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가, **수원부**가 분급하는 군향태 중에 2000석을 작미해 달라고 치계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강 許施**水原府**軍餉太作米之請

목 京畿監司 徐鼎修以**水原府**軍餉太分給中二千石作米馳啓敎以依狀請施行事回諭

<일성록, 정조15년(1791) 10월 21일(임술)>

경제/재정

수원부의 호역 문제를 논의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원행정례 이정 당상(園幸定例釐正堂上) 이병모(李秉模),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 훈련대장 조심태(趙心泰)를 소견하였다.

목 ○ 서정수가 아뢰기를, "수원부(水原府)의 각종 호역(戶役) 중에서 관용조(官用條)에 대해 급대(給代)하라는 명령은 실로 조정이 백성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기유년(1789, 정조13)의 호역을 경내 전체를 통틀어 탕감해 준 수와 경술년(1790)과 신해년(1791) 두 해의 견감(蠲減)해 준 몫이 모두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일관되지 못하니 이것도 한결같이 당초의 하교에 따라 똑같이 급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召見定例釐正堂上李秉模 京畿監司 徐鼎修 訓鍊大將 趙心泰于重熙堂

목 鼎修啓言水原府各樣戶役官用條給代之命實出朝家軫念之意而己酉戶役通一境蕩減之數及庚戌辛亥兩年蠲減條俱見漏云事涉斑駁此亦一依當初下敎同爲給代似好矣從之

<일성록, 정조16년(1792) 1월 8일(무인)>

경제/재정

강화도와 수원부의 전결을 정리 획급하다

강 심도(沁都 강화도)에 떼어 준 수원부(水原府)의 결전(結錢)을 본읍에 봉류(捧留)하라고 명하였다.

목 ○ 강화 유수(江華留守) 유당(柳戇)의 장계에, "황해도 각 읍의 선무 군관(選武軍官) 군목(軍木)의 대전(代錢) 5410냥을 본부(本府)에 급대(給代)해 주었습니다. 그중에 곡산부(谷山府)가 아직 납부하지 않은 전(錢)이 254냥가량이고, 부족한 목의 대전 796냥 남짓에 대해서는 경기 감영에서 수원부의 결전을 떼어 주기로 하였습니다. 곡산부의 감색(監色)에게는 강화 감영에서 추문(推問)하여 엄히 독책할 것이지만 수원부에 대해서는 즉시 속히 실어 보내 주도록 또한 관문으로 신칙해 주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수원부의 결전을 본읍에 봉류하도록 경기 감사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강 命沁都所劃水原府結錢捧留本邑

목 該留守 柳戇狀啓以爲本府給代海西各邑選武木代錢五千四百十兩內谷山府未納錢爲二百五十四兩零而不足木代錢七百九十六兩零自畿營以水原府結錢區劃故谷山府監色自臣營推治嚴督而水原府則卽速輸納之意亦爲關飭敎以水原府結錢捧留本邑事本道監司處分付

<일성록, 정조16년(1792) 2월 21일(경신)>

경제/재정

총융청의 돈으로 수원 이주민들에게 차용케 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강 총융청 돈 4000냥을 수원부에 구획(區劃)하여 안성(安城)의 지장(紙匠)으로서 수원에 옮겨 와 사는 자들에게 빌려 주라고 명하였다.

목 ○ 비국이 아뢰기를, "안성의 지장으로서 자원해서 수원 신읍(新邑)에 옮겨 와 사는 자들에게 공화(公貨) 4000냥에 한하여 빌려 주어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방도를 세우게 하되, 구획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초기로 보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지장도 공장(工匠) 중의 하나이고 몇 해 전에 공장들이 와서 살 때에도 이미 공화를 빌려 주어 한편으로는 옮겨 온 것을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재산을 마련하게 하였으니, 이번 지장들에게도 어찌 이미 시행했던 예(例)를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총융청이 수원부를 관할하고 있으니 옮겨 와 사는 사람들의 살아갈 방도를 세우는 등의 일을 다른 아문(衙門)에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총융청의 봉부동(封不動) 전화(錢貨)에서 4000냥을 덜어 내서 수원부사에게 구획하여 그로 하여금 변

리 없이 빌려 주게 하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두목으로 삼아 보증을 세우는 규정과 3년 동안 이익을 남겨 의뢰하여 생계를 유지한 뒤에 을묘년(1795, 정조19)부터 시작하여 매년 10분의 1씩 마련해 본부에 납부하고 본부에서 총융청에 실어다 바치는 등의 여러 조건은 한결같이 몇 년 전 공장의 예에 따라 거행하라고 총융청과 **수원부**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命區劃總廳錢四千兩於**水原府**貸安城紙匠之移居者

목 備局啓言安城紙匠之自願移居於**水原**新邑者以公貨限四千兩貸給使之接濟區劃凡節草記以聞事命下矣紙匠卽居一於工匠而前年工匠之來接也旣以公貨許貸一以勞徠一以制產今於紙匠之來何可不用已行之例乎總廳管轄**水原**其所接濟等節不可責之他衙門就其封不動錢貨除出四千兩區劃**水原府使**使無邊貸給若其有根着者爲頭目懸保之規及限三年興利資生後自乙卯爲始以十分一逐年備納於本府自本府輸致於總廳等諸條一依前年工匠例擧行事請分付該廳該府允之

<일성록, 정조16년(1792) 3월 8일(정축)>

경제/재정

수원부에 이속된 2개면의 군향미 문제를 논의하다

강 광주의 **송동면(松洞面)과 일용면(一用面)**의 군미(軍米) 급대조(給代條)의 남은 수량을 회안(會案)에 도로 올리라고 명하였다.

목 ○ 수어사 오재순(吳載純)이 아뢰기를, "연전에 광주의 **송동면과 일용면**을 **수원부(水原府)**로 옮겨 소속시켰을 때 2개 면의 궐액(闕額)이 되는 군정(軍丁)에게 거두는 신미조(身米條)를 연석에서 여쭌 뒤에 군향미(軍餉米) 중에서 구획(區劃)해서 급대하도록 하였는데, 경술년(1790) 조를 본부(本府)가 수량을 잘못 더해서 마련하였습니다. 전 수어사 정창순(鄭昌順)이 이미 광주부로 하여금 남은 수량을 회안에 도로 올리게 하였는데 마침 체임(遞任)되어 미처 보고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이렇게 진달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還錄廣州 **松洞一用**兩面軍米給代條餘數

목 守禦使 吳載純啓言年前廣州 **松洞一用**兩面移屬**水原**時兩面軍丁身米闕額條筵稟後以軍餉米中區劃給代而庚戌條本府誤爲加數磨鍊前使鄭昌順已令該府還錄餘數於會案而適値遞任未及上聞云故敢此仰達從之

<일성록, 정조16년(1792) 5월 22일(기미)>

경제/재정

수원부 암행어사의 서계를 논의하다

강 경기 감사에게 **수원부(水原府)**의 환곡, 전방(廛房), 장호(匠戶), 유생(儒生)의 폐단을 엄히 신칙하고, 이어 삼남(三南)의 도신을 신칙하여 각각 검전(檢田)하고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에 부지런히 힘쓰라고 명하였다.

목 ○ 이보다 앞서 **수원**, 고양(高陽) 등 읍의 암행 어사 신헌조(申獻朝)가 서계를 올렸는데, 이때에 이르러 전교하기를, "**수원** 등 이 지역 암행 어사의 서계를 보건대, 그중에 **수원의 쌍부창(雙阜倉)**은 읍치(邑治)와 거의 100리나 떨어져 있어 환곡의 운반을 번갈아 하는 것이 그동안 전해 내려온 잘못된 규례 때문이라고 해도 이른바 창감(倉監)이 8년 동안 자리를 차지하여 간사한 폐단이 백방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몰래 왕래하느라 아직 번고(反庫)하지 못했더라도 백성들의 말이 한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같다면 백성의 폐단을 알 수가 있으

니, 도백을 엄히 신칙하여 민정의 억울함을 없애 주라. 대체로 신읍의 전방과 장호는 본래 나의 뜻이 아니니 이 두 가지 일을 생각할 때면 매우 난처하다. 이른바 전민(廛民)의 고통이 날로 심해지는 것은 전적으로 그 곡절을 모른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장호 또한 주객(主客)이 모두 곤란함을 면하지 못하니 이 어찌 말이 되는가. 이는 대개 해당 수령이 마음을 다하지 않은 소치이니, 도신으로 하여금 모두 엄히 신칙하게 하라. 유호(儒戶)가 과거 시험 때면 가솔을 데리고 가는 폐단이 있는데 이번에 신칙한 뒤에도 그랬다고 하니, **수원부**의 부사가 한결같이 보고도 모른 체한 것으로 더욱 견지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다시 도백으로 하여금 한 사람을 징계하여 여러 사람을 격려할 정사를 별도로 찾으라고 분부하라. 이 밖에 다른 읍의 치적과 잘못한 정사는 가을걷이가 끝나 환곡을 거두어 들인 상황을 본 뒤에 처분하려고 서계를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은 채 놔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도백이 열읍에 두루 신칙하여 각각 유념하고 조심하게 하라.

현재 가장 신경을 쓰는 문제는 바로 영남(嶺南)의 민사이다. 도백이 소홀하게 처리한 일을 이러한 때에 조정에서 또한 어찌 따라서 본받을 수 있겠는가. 잠행(潛行)하는 어사가 이전에는 간혹 출두한 경우가 있었지만 또한 어찌 일일이 모두 그렇게 하겠는가. 경상 감사를 엄히 신칙해서 70여 개 읍의 수령에게 두루 효유하여 각각 검전과 백성을 구휼하는 정사에 부지런히 힘쓰게 하고 항상 호랑이 같은 암행 어사가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하게 하라. 양호(兩湖)의 도신에게 이 전교를 모두 낱낱이 들어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강 命畿伯嚴飭**水原府**糶糴廛房匠戶儒生之弊仍飭三南道臣俾各孜孜於檢田恤民之政

목 先是**水原** 高陽等邑暗行御史 申獻朝進書啓至是敎曰觀此**水原**等地暗行御史書啓其中**水原** **雙阜倉** 距邑治近百里糶糴之替爲雖因流來謬規所謂倉監之八年冒當奸弊百端云以其潛往潛來雖未反庫衆民之言如出一口云爾則民弊可知嚴飭道伯以謝民情之抑鬱大抵新邑之廛房與匠戶本非朝家之意每念此二事甚以爲難處而所謂廛民之其苦日甚專由於已知之委折匠戶亦未免主客俱困是笠成說乎此蓋該倅之不能盡心之致令道臣一體嚴飭儒戶之臨科則率携其所謂內眷之弊今番申飭之後亦然云該府府使一味闔眼尤莫曉所執之何在更令道伯另究懲一之政事分付外此他邑治蹟與疵政欲觀秋成捧糴後處分書啓尙今留中以此意道伯遍飭列邑各令惕念小心目今耿耿憧憧者卽嶺南民事也道伯泛忽若此之時朝家亦豈可從而效之潛行之繡衣前或有露蹤者亦豈必一一皆然乎嚴飭嶺伯遍諭七十餘邑倅俾各孜孜於檢田恤民之政常若衣繡之虎耽耽伺視兩湖道臣處以此傳敎一體枚擧嚴飭

<일성록, 정조16년(1792) 7월 4일(신축)>

경제/재정

수원의 향곡 문제를 논의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를 소견하고, 광주(廣州) 향곡(餉穀)의 부족한 수효는 부근 고을의 가분곡(加分穀) 모조(耗條)를 급대(給代)하라고 명하였다.

목 ○ 서정수가 아뢰기를, "**수원** 소재 광주창(廣州倉)의 향곡 모조를 **수원**으로 옮겨 소속시켜 장리(將吏)의 녹료조(祿料條)에 보충하였는데, 광주 관아의 제반 지출에 필요한 재원이 이번에 향곡의 모조를 옮겨 떼어 주는 바람에 부족한 수효가 30여 석(石)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부근 고을의 가분곡 모조 가운데서 이 수효대로 매년 절미(折米)한 뒤 광주로 떼어 보내 급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召見京畿監司 徐鼎修于重熙堂命廣州餉穀不足之數以附近邑加分耗給代

목 鼎修啓言**水原**所在廣州倉餉穀耗條移屬**水原**添補於將吏料條而聞廣州支放之資因此餉耗之移劃其不足之數爲三十餘石云此則就附近邑加分耗中依此數每年折米劃送廣州以給其代似好矣從之

<일성록, 정조16년(1792) 8월 1일(정묘)>

경제/재정

수원의 복호가 문제를 논의하다

강 경기 감사가 **현륭원(顯隆園)**의 관원과 원역(員役)에게 지공(支供)하는 여러 조목에 대한 급대 절목(給代節目)을 급히 장계하였다.

목 (…) 〔복호를 예매(豫賣)하는 것을 금단하는 데 대한 조목〕

첫째, 원역 및 수복군 등의 복호가는 모두 본관에서 거두어들이도록 이미 정식을 삼은 이상 예매하는 문제는 자연 금단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는 법이니 어찌 간간이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없다고 보장하겠는가. 복호가 있는 **수원**과 진위(振威) 두 고을은 각별히 엄히 신칙해서 만약 서로 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주고받은 것을 막론하고 적발되는 대로 엄히 감처하고, 두 고을의 지방관이 혹 제대로 검칙하지 못하여 미처 수급하지 못하였거나 예매하도록 내버려 두었는데도 애당초 살펴 금하지 못하였다가 다른 데에서 적발되면 본영의 해당 지방관이 장계로 보고하여 논죄하도록 엄히 과조(科條)를 세우는 것을 정식으로 삼아 시행한다.

강 畿伯以**顯隆園**官員員役支供諸條給代節目馳啓

목 (…) 復戶預賣禁斷條一員役及守僕軍等復戶價皆自本官收捧事旣已定式則預賣一款自可給斷而法久廢生安知無間間違越之患乎復戶所在**水原** 振威兩邑各別嚴飭如有潛相買賣者毋論與受隨現重勘而兩邑地方官或不善檢飭趁未收給或任其預賣初不察禁而從他現發則自臣營當該地方官狀聞論罪事嚴立科條定式施行

<일성록, 정조16년(1792) 8월 19일(을유)>

경제/재정

총융청의 돈을 수원부에게 떼어 줄 것을 명하다

강 총융청의 유고전(留庫錢) 2000냥을 **수원부(水原府)**에 떼어 주라고 명하였다.

목 ○ 우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이것은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입니다. 장계에, '**수원산성(水原山城)**의 수축을 지금 끝냈는데, 부족한 물력이 2000냥이었기 때문에 도내에서 중앙에 상납할 각종 조항 중에서 변통하여 가져다 썼습니다. 대신 채울 것을 즉시 떼어 주어서 지금 도로 갚도록 하는 것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 뜻을 여쭈어 분부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수원산성**은 소중한 **현륭원(顯隆園)**이 있는 곳이니 총융청의 유고전 가운데에서 이 수량만큼 우선 가져다 쓰도록 총융청과 경기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總戎廳留庫錢二千兩劃給**水原府**

목 右議政 金履素啓言此京畿監司 徐鼎修狀啓也以爲**水原山城**修築今已畢役物力不足爲二千兩故道內各樣上納條中推移取用而其代卽爲劃給以爲及今還報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水原山城**所重有在請總戎廳留庫中依此數姑先取用之意分付該廳及該道從之

<일성록, 정조16년(1792) 11월 9일(갑진)>

경제/재정

수원에 있는 외탕고의 물자 문제를 논의하다

강 영남 도신에게 신칙하여 외탕고(外帑庫)에 납부하는 상격(賞格)에 소용되는 면포(綿布)

는 매년 반드시 본색으로 올려보내게 하라고 하였다.

목 ○ 장용영이 아뢰기를, “지난번의 하교로 인하여, 수원(水原)에 있는 외탕고로 매년 수송해 오는, 상격에 쓰는 목(木)의 2년분 도합 10동(同)을 애당초 논보(論報)하지도 않은 채 전(錢)으로 대신 보낸 곡절에 대해 경상 감사 정대용(鄭大容)에게 관문(關文)을 보내 물어보았습니다. 방금 그 보고해 온 내용을 보니 ‘경상도의 신구 사군목(射軍木)은 도합 180여 동 남짓인데, 모두 순전(純錢)으로 대신 거두었기 때문에 현재 본색은 1필(疋)도 저축된 것이 없습니다. 이는 대개 올해의 면화 농사가 흉작이었기 때문에 생긴 일로 현재로서는 변통해 보려 해도 형편상 어떻게 해 볼 길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대전(代錢)으로 받아 보낸 것입니다. 신칙하는 관문을 받고 봉행하는 데 급급하여 미처 보고하여 제사(題辭)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히 사유를 갖추어 논보하지 못하였으니 어리석고 혼미하며 경솔한 죄는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삼가 엄한 하교를 받고 그지없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외탕고로 수송하는 목은 상격에 소용되는 것이고 보면 비록 사군목을 전으로 대신 받아들였더라도 뒤에 사서 수송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설령 사들이기가 어려워서 전으로 대신 보내더라도 보고하여 제사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응당 시행해야 하는 규례인데 이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수송한 것은 일의 체모로 보아 매우 놀랍습니다. 해당 도백을 엄히 감처(勘處)해야 할 일이지만 전에 이 일로 이미 문비(問備)하였으므로 이번에는 일단 참작해 주지만 앞으로는 매년 실어 보내는 사군목 5동은 목으로 받아들였든 전으로 받아들였든 간에 반드시 본색으로 올려보내서 상격의 수용에 충당하게 하라고 거듭 밝혀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飭嶺南道臣外帑庫所納賞格綿布每年必以本色上送

목 壯勇營啓言項因下敎水原外帑庫每年輸送賞格木兩年條合十同初不論報以錢代送委折發關查問於慶尙監司 鄭大容處矣卽見其所報則以爲本道新舊射軍木合爲一百八十餘同零而竝以純錢代捧本色無一疋見儲蓋由於此歲綿歉之致目下推移其勢末由不得已代錢收送而關飭之下急於奉行未及稟報受題不敢具由論報愚迷妄率罪合萬殞伏承嚴敎不勝萬萬惶懍云矣外帑庫輸送木旣是賞格所用則雖於射軍木以錢代捧之後貿取輸送道理當然設令難於貿取以錢代送稟報待題便是應行之例而不此之爲直爲輸送揆以事體萬萬駭然該道伯所當重勘而前以此事旣經問備今姑參酌此後則每年輸納射軍木五同無論木捧錢捧必以本色上送以備賞格之用事請申明分付允之

<일성록, 정조16년(1792) 12월 16일(경진)>

경제/재정

수원부가 납입하던 수미(收米)문제를 논의하다

강 평안도와 황해도의 첨향조(添餉條) 소미(小米 좁쌀) 1500섬을 총융청에 떼어 주어 수원부에서 납입하던 수미(收米)를 대신하게 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부를 총융청에서 관할하지 않게 되었으니 수원부에서 납입하던 수미를 대신할 것을 묘당에서 이치를 따져 구획(區劃)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수원부를 이제는 총융청에서 관할하지 않으므로 본부에서 납부하던 잡비(雜費)까지 합친 수미 900섬을 전처럼 총융청에 납입하도록 해서는 안 되니 이는 우선 본부에 남겨 두어 나중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으로 총융청과 수어청에 한 해씩 걸러 돌아가며 첨향조로 주었던 평안도와 황해도 소미 2000섬을 매년 1500섬씩 총융청에 떼어 주되, 첨향의 예대로 대미(大米 쌀)로 바꾸어 주어 급료 등으로 쓸 수 있게 하라고 수어청과 총융청 및 수원부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劃給兩西添餉小米一千五百石于總戎廳以爲水原府所納收朱之代

목 備邊司啓言水原府旣不管轄於總戎廳則所捧收米之代令廟堂論理區劃事有命矣水原府今不管轄於總戎廳本府所納收米竝雜費九百石不可使如前捧納此則姑保本府以待區處其代總戎廳與守禦廳間年輪回添餉條兩西小米二千石以每年一千五百石劃給總戎廳依添餉例換作大米以爲支放之地請分付守總兩營及水原從之

<일성록, 정조16년(1792) 12월 21일(을유)>

경제/재정

수원부가 납입하던 수미(收米)문제를 논의하다

강 총융청이 지급하는 급료조(給料條)와 월과대(月課代)의 전곡(錢穀) 운용 정식을 다시 정하였다.

목 ○ 선혜청 당상 서유린이 아뢰기를, "수원부에서 납부하던 총융청의 수미(收米)는 평안도와 황해도의 첨향소미(添餉小米)로 매년 급대(給代)하라는 뜻으로 묘당에서 초기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원가(元價)는 숫자를 채워 마련하였으니 미를 사들일 때 부족해질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본청이 급료조로 지급하는 미가 넉넉하지 못할까 매양 걱정입니다. 만약 미처 사들이지 못하였을 때 혹시라도 군향곡에 손대는 일이 있게 된다면 군량을 중시하는 뜻이 아니므로 선혜청이 매년 수송하는 월과대조(月課代條)의 미 800섬과 균역청이 격년으로 수송하는 400섬에 대해 총융청에서 작전(作錢)하여 월과를 조성할 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융통성 있게 분배하여 매년 1000섬을 지급하여 급료조로 900섬을 쓰게 하고 그 나머지 100섬과 이번에 급대한 평안도와 황해도의 소미 1500섬을 월과대로 작전하여 가져다 쓰게 하면 전(錢)과 미(米)를 쓰는 곳에 각기 절로 여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삼아 시행한다는 뜻으로 총융청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更定總戎廳支放月課錢穀經用之式

목 宣惠廳堂上徐有隣啓言水原府所納總戎廳收米以兩西添餉小米逐年給代之意自廟堂草記蒙允矣元價旣已準數磨鍊則貿取之除似無不足之慮而第本廳支放米條每患不敷若於未及貿取之時或有犯及餉穀之事則有非重軍食之意惠廳之每年輸送月課米八百石均廳之間年輸送四百石自本廳作錢入用於月課造成之時云此兩條通融分排以每年一千石上下使之需用於支放條九百石其餘一百石及今番給代兩西小米一千五百石以月課代作錢取用則錢米用處各自有裕以此定式施行之意請分付總廳從之

<일성록, 정조16년(1792) 12월 22일(병술)>

경제/재정

관서 별수고(別需庫)의 돈을 떼어 수원부에 넘겨주다

강 관서 별수고(別需庫)의 전(錢) 5000냥을 수원부에 떼어 보내 이아를 새로 건립하는 비용으로 삼도록 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의 이아를 새로 건립하는 데 들어갈 물력(物力)을 지금 구획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관서 별수고의 전 중에서 5000냥으로 한정하여 본부에 떼어 보내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劃送關西別需庫錢五千兩于水原府以爲貳衙新建之需

목 備局啓言水原貳衙新建物力不可不趁今區劃關西別需庫錢中限五千兩劃送本府事請分付允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1월 24일(무오)>

경제/재정

수원유수의 월봉 문제를 전교하다

강 수원유수 채제공은 중추부의 월봉(月俸)을 경기 감사의 예에 따라 수령하라고 명하였다.

목 ○ 채제공이 아뢰기를, "신이 그저께 입시하였다가 어두울 때 집에 돌아가서야 들으니, 창관(倉官)이 와서 녹패(祿牌)를 내어 달라고 청하였는데 부녀자들이 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이미 녹패를 내주었다고 합니다. 신이 현재 유수부를 맡고 있어 가만히 앉아서 후한 녹봉을 받는데, 또 중추부의 직함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경창(京倉)의 쌀을 이중으로 받는다면 실로 이익을 독차지하는 사람이라는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처럼 삼가 진달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정경(正卿)인 경기 감사도 으레 중추부의 직함에 붙여지기 때문에 월봉을 받는데, 하물며 대관인 경우이겠는가. 경은 안심하고 수령하라." 하였다.

강 命水原留守 蔡濟恭 西樞月俸依畿伯例領受

목 濟恭啓言臣再昨日入侍侵暮還家始聞倉官來請祿牌而婦女輩不待臣歸已爲出給矣臣見方待罪留府坐享厚廩而又以見帶樞銜之故疊受京倉之米則實有壟斷丈夫之嫌敢此仰達敎以正卿之畿伯例付樞銜受月俸況大官乎卿其安心領受

<일성록, 정조17년(1793) 1월 26일(경신)>

경제/재정

수원부에 구획된 곡물의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부의 상아(上衙)와 이아(貳衙)에 구획(區劃)한 곡물 중 부족한 미(米) 242섬은 본부에 있는 저치미(儲置米)를 떼어 주고 상아의 환곡 모조(耗條) 502섬은 부근 고을의 회부곡(會付穀)과 상진곡(常賑穀)의 조(租) 중에서 정해진 수량대로 떼어 보내라고 명하고, 이어서 내년부터는 절목에 의거하여 정해진 수량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라고 명하였다.

목 ○ 장용영 제조 정민시가 아뢰기를, "수원판관(水原判官) 김노성(金魯成)의 첩보(牒報)를 보니, '이번에 본부의 상아와 이아에 필요한 비용을 새로 구획한 곡물 중에서, 상아에 구획한 각 둔미(屯米) 24섬은 이미 상납하였거나 재결(災結)로 인정하여 탈면(頉免)해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환곡의 모조도 각 아문에서 이미 가져다가 사용하였으므로 부족한 양이 502섬이며, 이아에 구획한 궁결(宮結)의 작미(作米) 138섬과 둔미 80섬은 이미 상납하였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였습니다. 미와 조 등의 곡물을 각 아문에서 벌써 가져다가 사용하거나 상납하였다면 도로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이니, 올해에는 급대(給代)하여 수량을 채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아와 이아에 구획한 곡물 중 부족한 미 242섬은 본부에 있는 저치미 중에서 떼어 주고, 상아의 환곡 모조 502섬은 부근 고을의 회부곡과 상진곡의 조 중에서 이 수량대로 떼어 보내라고 경기 감영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절목에 의거하여 정해진 수량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문제도 수원부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水原府上貳衙區劃中不足米二百四十二石以本府所在儲置米劃給上衙還耗五百二石以附近邑會付常賑租準數劃送仍命自明年爲始依節目準數取用

목 壯勇營提調 鄭民始啓言伏見水原判官 金魯成牒報以爲今番本府上貳衙需用新區劃中上衙之各屯米二十四石或已上納或入災頉還耗亦自各衙門已爲取用故不足爲五百二石貳衙所劃宮結作米一

百三十八石及屯米八十石已爲上納何以爲之云矣米租等穀旣自各衙門已取用或上納則勢難還推今年則不可不給代充數上貳衙不足米二百四十二石則本府所在儲置米中劃給上衙還耗五百二石則附近邑會付常賑租中準此數劃送之意分付畿營自明年爲始依節目準數取用事請亦爲知委該府從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2월 9일(임신)>

경제/재정

수원부 건립시 소용된 재원의 상환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부의 이아를 건립할 때 구획한 관서의 전(錢)이 올라오기 전에는 외탕고(外帑庫)의 전을 우선 가져다가 사용하고 관서의 전이 올라오거든 즉시 도로 갚으라고 명하였다.

목 ○ 장용영 제조 정민시가 아뢰기를, "수원부의 이아를 지금 건립하려고 하나, 관서의 구획한 전이 아직 올라오지 않아서 공사가 지체된다고 하니, 달리 변통하여 제때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외탕고에 있는 전 중에서 우선 알맞게 헤아려서 변통하여 사용하고 관서의 전이 올라오거든 즉시 도로 갚으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水原府貳衙營建時區劃關西錢未及上來前外帑庫錢姑先取用待其上來卽爲還報

목 壯勇營提調 鄭民始啓言水原府貳衙今方經紀而關西區劃錢未及上來事役未免停滯云不可不從他推移以爲及時始役之地外帑庫所在錢中姑先量宜推移以用待關西錢上來卽爲還報之意請分付從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2월 9일(임신)>

경제/재정

수원의 이아(貳衙)에 필요한 노복과 요미(料米)에 관해 논의하다

강 수원의 이아에 필요한 남종 9명과 여종 6명을 마련해 내게 하고 요미(料米)는 비변사에서 좋은 쪽으로 구획해 준 뒤 새 절목에 추가로 기록하라고 명하였다.

목 ○ 장용영 제조 정민시가 아뢰기를, "수원부의 이아에서 사역(使役)할 남종과 여종을 상아에서 떼어 보내 준 숫자가 남종 7명, 여종 4명인데, 이 숫자로는 나누어서 각종 명목을 삼고 번차(番次)를 안배하여 사역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남종 7명과 여종 4명으로 사역하는 것은 참으로 매우 구차하여 모양새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부의 남종과 여종의 숫자도 본래 적어서 추가로 떼어 줄 수가 없으며, 달리 변통하려고 하지만 요미의 몫도 변통할 방도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별도로 처리할 방도가 없어서는 안 되니, 이아에 필요한 남종은 9명까지, 여종은 6명까지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마련해 내게 하고, 요미는 비변사에서 좋은 쪽으로 구획한 뒤 새 절목에 기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水原貳衙奴九名婢六名使之責立料米自備局從長區劃添載於新節目

목 壯勇營提調 鄭民始啓言水原貳衙使後奴婢自上衙劃送者奴爲七名婢爲四名以此分作各名色排番立役其勢末由云七名奴四名婢之使役果甚苟且不成樣而聞本府奴婢自來數少無以加劃雖欲從他變通而料條亦無推移之道云此不可無別般區處之道貳衙奴限九名婢限六名使之某條責立而料米則自備局從長區劃請使之載於新節目從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2월 9일(임신)>

경제/재정

삼남의 물자를 수원부로 이송하다

강 군기시와 수어청·총융청 두 청이 관할하는 삼남과 양서의 월과 조총과 약환 3년 치를 수원부에 이송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부의 궁도와 약환에 대한 일을 상의하여 상의 뜻을 여쭈라고 명하셨습니다. 본부가 유수부로 승격된 뒤로는 일의 체모가 더욱 중하므로, 군기(軍器)와 집물(什物)을 넉넉히 마련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군문이 비축해 둔 것은 경솔하게 덜어 내기가 어렵고, 지방의 경우에는 경기 각 읍진(邑鎭)의 군기가 본래 넉넉하지 않아서 변통할 수 없습니다. 군기시와 수어청·총융청 두 청이 관할하는 삼남과 양서의 월과 조총과 약환은 해마다 만들어 보내면 각 읍으로 나누어 보내는 것으로, 1개 읍당 조총 1, 2자루, 화약 4, 5근, 연환(鉛丸) 약간에 불과하니, 여러 고을로서는 이것이 있거나 없거나 그다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3년 치로 한정하여 수원으로 이송하되, 그중 궁전은 달리 변통할 곳이 없으므로 1년 치의 조총과 약환을 알맞게 헤아려서 덜어 내어 궁전으로 바꾸어 보낸다면, 공계(貢契)로서도 폐단이 없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移送軍器寺及守總兩廳所管三南 兩西 月課鳥 銃藥丸三年條于水原府

목 備局啓言水原府弓刀藥丸事有商議稟旨之命矣本府陞爲留府之後事體尤重軍器什物不可不優數備置而京軍門所儲者有難輕易除出外方則京畿各邑鎭軍器本不有裕無以推移軍器寺守總兩廳所管三南 兩西 月課鳥 銃藥丸乃是每年造送而分送各邑者一邑不過鳥銃一二柄火藥四五斤鉛丸若干箇在列邑有無不甚關緊限三年條移送水原其中弓箭無他推移處以一年條鳥銃藥丸量宜除出換作弓箭以送在貢契亦無爲弊之端請依此施行允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2월 22일(을유)>

경제/재정

수원의 세태(稅太) 수취를 연기시키다

강 수원의 세태(稅太)는 연기하여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받아들이라고 명하였다.

목 ○ 수원유수 채제공이 아뢰기를, "흉년의 백성 형편이 절박하다고는 하지만 전세(田稅)와 대동(大同)은 징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태는 가장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는 것으로, 시장이나 마을이나 간에 태라는 것은 거의 씨가 말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인 줄을 뻔히 알면서도 강제로 독촉하여 바치게 하는 것은 백성의 고통을 안쓰럽게 여기시는 성상의 훌륭한 뜻을 깨달아 시행하는 조치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전세와 대동은 정식 세금이므로 이에 대한 변통을 의논할 수가 없으니, 신이 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본부에 대한 일은 어찌 다른 도와 비교하겠으며, 어찌 전례가 있거나 없는 것을 따지겠는가. 특별히 연기하여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받아들이라." 하였다.

강 命水原稅太待秋退捧

목 水原留守 蔡濟恭啓言荒年民勢雖曰切急稅大同不可不捧而其中太穀最是龜輩括毛無論場市與村閭以太爲名者殆絕種矣明知其如此而勒使督納決非仰體如傷之德意雖然稅大同卽惟正之供弛張闊狹非可議到臣實不知所爲矣敎曰視本府豈比他道守何論有例無例特爲待秋退捧

<일성록, 정조17년(1793) 3월 10일(계묘)>

경제/재정

수원부의 대동미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부**에 봉류(捧留)한 대동미(大同米) 500섬을 본부에 빌려 주도록 허락하고, 이어 이를 옮겨 추대동(秋大同)으로 만들었다가 내년 봄이 되거든 상납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수원유수 채제공**이 아뢰기를, "본부는 환곡이 넉넉지 않은데 환곡을 받을 호구는 날로 증가하여 순차(巡次)를 안배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믿었던 것은 대동미 1500섬을 본읍에 봉류하라고 한 명이었습니다. 즉 앞으로 백성의 목숨이 끊어지게 될 때에 백성의 고통을 안쓰럽게 여기고 자식처럼 보호하시는 성상께서 반드시 특별히 가엾이 여겨 생각해 주시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호구에 분급할 순차가 끊어져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선혜청에서 사복시의 공인(貢人)에게 1000섬을 외수(外授)하도록 하여 공인들이 내려왔으므로 신이 과연 그 수량대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기인(其人)과 공인이 또 500섬을 외수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신이 만약 수량대로 내준다면 이른바 봉류한 곡물은 더 이상 1섬도 남지 않게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보릿고개처럼 긴급할 때에는 도랑과 골짜기를 전전하며 애타게 기다리는 백성의 목숨을 어떻게 구제하겠습니까. 신이 감히 정식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물을 한 고을에서만 사사로이 사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명목을 따져 보면 애당초 본부에 봉류한 곡물이기 때문에 4, 5개월 한도로 빌려 쓰려고 감히 이처럼 삼가 진달합니다."

하고, 선혜청 당상 정민시는 아뢰기를, "**수원**의 환곡은 전량을 분급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산향(山餉)과 군향(軍餉)의 유고한 몫 및 새로 구획한 부근 고을의 환곡 1000섬이 있으니, 편리한 대로 변통한다면 충분히 순차를 이어 분급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봉류한 곡물은 본래 대동으로, 내영(內營)의 군병을 추가로 선발한 뒤에 부족한 군향의 수량이 5000섬이었으므로 이 곡물로 보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미처 수량을 채우지 못한 것이 아직도 3000섬이나 되니, **수원부**에 지급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거론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동과 군향은 전부터 허락을 받아 환곡으로 분급한 전례가 없습니다."

하여, 내가 채제공에게 이르기를, "유사(有司)가 이와 같이 말을 하였지만, 경이 청한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물며 본부의 백성을 위한 것이니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경의 말대로 시행하라."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대동과 군향은 원래 허락을 받아 사용한 전례가 없는데도 대신이 이처럼 요청하여,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특별히 허락하는 비지(批旨)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500섬은 군향으로 만들어 올해 지급할 급료 비용으로 삼아야 하므로 결코 지급하도록 허락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께서 만약 특별한 은덕을 시행하시겠다면, 상납할 대동 중에서 3, 4백 섬까지 옮겨 추대동으로 만들어 우선 가져다가 사용하고 가을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거두어서 상납하게 한다면 변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강 許貸**水原府**捧留大同米五百石于本府仍命移作秋大同待明春上納

목 **水原留守 蔡濟恭**啓言本府還穀不敷還戶日增無以排巡而臣之所恃者大同米一千五百石有捧留本邑之命前頭民命近止之際以如傷若保之聖念必有所別般矜念之端故戶分絕巡不以爲慮日前自惠廳外援一千石於司僕貢人貢人下來臣果依其數許給矣居數日其人貢人又爲外授五百石下來臣若如數出給則所謂捧留者更無一石餘存矣若然則麥嶺緊急之際何以濟溝壑喁喁之命乎臣非敢以惟正之穀爲一邑之私原其名色初旣捧留本府之物故欲限四五朔貸用敢此仰達惠廳堂上鄭民始曰**水原**還穀旣以盡分又有山餉軍餉留庫條及新區劃附近邑還穀一千石則從便推移足以繼巡分給且捧留之穀本是大同而內營軍兵加哨之後軍餉不足之數爲五千石故以此穀補用而未及充數者尙爲三千石則許給該府非所可論且大同與軍餉自前無請得還分之例矣予謂**濟恭**曰有司之言雖如此卿請不可不顧況爲

本府之民乎依卿言爲之 民始曰大同軍餉元無請得之例而大臣乃有此請批旨特許依施但此五百石已作軍餉當爲令年支放之需決難許給自上若施特恩則上納大同中限三四百石移作秋大同姑爲取用待秋收捧上納則或可推移矣敎曰可謂朝三暮四雖作秋大同待明春上納
<일성록, 정조17년(1793) 3월 10일(계묘)>

경제/재정

수원의 방물(方物)에 대해 하교하다

강 수원부의 방물(方物)은 우선 하교하기를 기다리라고 명하였다.

목 ○ 예조 판서 민종현이 아뢰기를, "수원부가 유수부로 승격된 뒤로는 삼명일(三名日)의 방물을 봉진(封進)해야 할 듯하므로 한번 상에게 여쭈어 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우선 하교하기를 기다리라." 하였다.

강 命水原府方物姑待下敎

목 禮曹判書閔鍾顯啓言水原府陞爲留守之後三名日方物似當封進不可不一番稟定矣敎曰姑待下敎
<일성록, 정조17년(1793) 3월 10일(계묘)>

경제/재정

수원의 복호 사례를 참조하여 적용할 것을 명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전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를 소견하고, 이어 진위현의 자수(自首)한 은결(隱結)은 임자년(1792, 정조16) 조(條)부터 도로 내주고 원군(園軍)의 복호(復戶)는 3년간의 몫을 계산하여 급대(給代)하되 각 궁방의 면세(免稅)와 함께 다른 고을에 옮겨 떼어 주고 양향청의 둔세(屯稅)는 본현에서 거두어 납부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원소 밖의 백호 근처에 보토할 때와 화소에 통을 수축할 때의 차사원인 진위 현령 조윤식(曺允植)이 본현의 장교와 아전을 거느리고서 전담하여 부역하였으니, 그의 노고가 참으로 가상하다. 그는 직분상 할 일을 한 것이지만, 진위현의 장교와 아전 등에게 공로를 갚고 폐단을 제거해 줄 방도에 대해서는 경이 내게 물어 처리하라."
하니, 서정수가 아뢰기를, "진위현은 삼남으로 가는 큰길에 위치해 있고 고을의 재정도 본래 매우 빈약하여 달리 변통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듣기로는 경자년(1780, 정조4)과 신축년(1781) 사이에 약간의 자수한 은결이 있었다고 하니, 몇 해 전 안동(安東)의 예에 따라 임자년 조부터 도로 내주고, 원군의 복호는 수원의 예에 따라 경술년(1790)부터 임자년까지 3년간의 몫을 계산하여 급대하되 각 궁방의 면세까지 아울러 다른 고을에 옮겨 떼어 주고, 양향청의 둔세도 전처럼 본현에서 거두어 납부하게 한다면, 백성에게나 아전에게나 폐단을 제거하고 공로를 갚는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지금 아뢴 대로 즉시 신임 도백이 속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강 召見前京畿監司 徐鼎修于重熙堂仍命振威縣自首隱結自壬子條還爲出給園軍復戶三年條計數給代各宮房免稅移劃他邑糧餉廳屯稅自本縣收納

목 敎曰園所外白虎近處補土及火巢築筒時差使員振威縣令 曺允植率本縣校吏專當赴役其勤勞誠可尙渠雖職分內事該縣校吏等酬勞除弊之道卿其稟處鼎修啓言該縣處在三南孔道邑力本極殘薄無他變通之路而曾聞庚子辛丑年間有略干隱結自首云依年前安東例自任子條還爲出給園軍復戶依水原例自庚戌至壬子三年條計數給代而幷與各宮房免稅移劃他邑糧餉廳屯稅亦依前令本縣收納則於民於吏庶爲除弊酬勞之道矣從之敎以依此所奏卽令新伯斯速擧行
<일성록, 정조17년(1793) 4월 3일(을축)>

경제/재정

수원의 저치미(儲置米)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부의 저치미(儲置米) 100섬을 외탕고(外帑庫)에 옮겨 떼어 주라고 명하였다.

목 ○ 장용영 제조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외탕고의 물품 중 쌀로 가져다가 사용하는 몫은 올해 마침 각종 사역(事役)이 있어서 벌써 다 써버렸으므로 앞으로 사용할 밑천을 애써 마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부의 저치미 중에서 100섬까지 옮겨 떼어 주어 가져다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水原府儲置米一百石移劃于外帑庫

목 壯勇營提調 鄭民始啓言外帑庫米條今年適因各樣事役需用已盡前頭用下之資不可不拮據請以本府儲置米中限一百石移劃取用從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4월 17일(기묘)>

경제/재정

경기 소재 곡식을 수원부에 옮기는 문제를 논의하다

강 비변사가 구관(句管)하는 경기읍 소재의 곡식 2000섬을 수원부의 유고조(留庫條)로 명목을 옮겨 정하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 당상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수원의 환곡으로 이전(移轉)해 주는 일로 경기 감사와 상의하였는데, '먼저 5000섬을 이송해 주면 가을걷이 후에 변통해서 각 아문(衙門)에서 구관하는 곡식으로 분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변사가 구관하는 곡식의 경우 2000섬을 이송해야 합니다만, 원래 수량인 6000섬을 반으로 나눈 모곡(耗穀) 300섬 가운데 절반인 150섬을 경기 감영에서 매년 얻어다가 각종 재정지출에 보충해서 사용해 오고 있으니, 올해 만약 2000섬을 덜어 내서 원래 수량이 4000섬으로 줄어들면 반으로 나눈 모곡도 200섬에 불과해지고 경기 감영에서 절반을 가져다 쓰는 수도 저절로 줄어들게 되므로 이 점이 불편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감영의 각종 재정지출에 대해서는 생각해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00섬을 수원으로 이송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고조가 될 것이니 경기 소재의 4000여 섬 중에서 전례대로 3000섬을 분급한다 하더라도 두 곳에 있는 것을 통계해 보면 절반은 남겨 두고 절반은 분급한 수가 종전과 같아서 손실이 없습니다. 비변사에서 구관하는 곡식 중 2000섬을 수원에 이송하여 유고조에 더하여 보충하고, 경기에는 3000섬을 분급하여 전례대로 모곡을 취하여 쓰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綱 命畿邑所在備局句管穀二千石移作水原府留庫條

目 備局堂上鄭民始啓言水原還穀移轉事往復於京畿監司則以爲先移送五千石待秋似可推移而分排於各衙門句管穀則備局句管穀中二千石當爲移送而但元數六千石半分耗爲三百石其中折半一百五十石自畿營每年請得補用於支放之資今若除出二千石而元數減爲四千石則半分耗不過二百石畿營之折半取用之數自致減縮此爲難便云該營支放旣不可不念且二千石雖移送水原此當爲留庫條京畿所在四千餘石中雖依前以三千石分給通計兩處所在則半留半分之數自如而無損矣備局句管穀中二千石移送水原添補留庫條京畿則分給三千石依前取耗以用之意請分付從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6월 30일(신묘)>

경제/재정

수원에 해공(蟹貢)을 견감시켜주다

강 수원과 과천 두 고을의 해공(蟹貢)을 견감해 주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경기 고을에서 해공을 바칠 때가 닥쳤다. 수원부는 유수영(留守營)으로 승격한 뒤에 그 바치던 공물을 다른 고을에 나누어 소속시켰다고 하고 과천도 연로(輦路)에 있기 때문에 잡역을 면제해 주었다. 강가의 고을에서 바치는 해공이, 노량진(露梁津) 아병(牙兵)의 부역을 면제해 준 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중으로 역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니 수원과 과천의 해공을 금년부터 면제해 주라고 경기도에 분부하라.” 하였다.

綱 命蠲水原 果川兩邑蟹貢

目 敎曰幾邑蟹貢在卽而水原府升爲留營之後以其所貢分屬他邑云而果川亦以輦路除雜役沿江面蟹貢因露梁牙兵之除役將爲疊役云兩邑蟹貢自今年除之事分付該道

<일성록, 정조17년(1793) 7월 29일(경신)>

경제/재정

수원부가 관리하게 된 경기 감영 곡물을 나누는 문제를 논의하다

강 경기 감영의 순아병(巡牙兵) 습조(習操)도 함께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해당 감영의 곡부(穀簿)에서 수원부로 옮겨 소속시킨 모조(耗條)를 즉시 급대(給代)해 주고, 강화부(江華府)의 군향(軍餉) 가운데 1000섬 이내의 곡물을 교동부(喬桐府)로 옮기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 묘당으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정창순이 아뢰기를, “수원부가 유수부(留守府)로 승격된 뒤 수원부에 있었던 본영의 곡부가 모두 본부의 모조로 속하게 되어 장교와 군졸들에게 급료로 지급하는 재원을 급대해야 한다고 비변사에 논보(論報)하였습니다. 이는 급료로 지급하는 재원이니 구획(區劃)해서 급대해 주어야 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즉시 급대한 뒤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

綱 命畿營巡牙兵習操一體停止仍命該營穀簿移屬 水原府耗條卽爲給代江華軍餉限千石移轉喬桐便否令廟堂稟處

目 (…) 昌順曰臣營穀簿之在於水原府者陞留之後皆屬本府耗條將士支放之需不可不給代之意論報備局而此旣支放之需則區劃給代有不可已矣敎曰令廟堂卽爲給代後草記 (…)

<일성록, 정조17년(1793) 8월 20일(경진)>

경제/재정

수원으로 이속된 경기감영의 곡물 문제를 논의하다

강 경기 감영의 곡부에서 수원부의 모조로 옮겨 소속시킨 분량에 대해 급대해 주는 일은 경기 도내 상진곡(常賑穀)을 가지고 분배해서 수량에 맞추어 주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기 감사 정창순의 소계(所啓)로 인하여 수원부의 모조로 이속시킨 분량에 대해 구획하여 급대해 주는 일을 묘당으로 하여금 즉시 급대한 뒤 초기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현재 경기 고을의 곡부(穀簿)가 고갈되어 3000포(包)의 곡식을 변통하여 떼어 주기 어렵지만 해당 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도내 각 읍의 상진곡 중에서 읍마다 분배해서 이 수량에 맞추어 급대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綱 命水原府耗條給代以畿內常賑穀分排準給

目 備邊司啓言回京畿監司 鄭昌順所啓水原府耗條區劃給代事令廟堂卽爲給代後草記有命矣目今

畿邑穀簿枵然三千包穀有難推移劃給該道事勢亦不可不念請道內各邑常賑穀中逐邑分排準此數給代允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8월 21일(신사)>

경제/재정

수원유수가 청한 재결을 장계대로 허락하다

강 수원유수(水原留守)가 더 청한 재결 228결을 장계의 내용대로 떼어 주는 것을 허락하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유수 이명식(李命植)이 재결을 더 청한 장계에 대해 초기로 회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장본을 가져다 보니 '본부의 전답이 거의 다 풍작이나 양쪽 변의 바닷가는 사이사이에 염분이 많아 곡식이 안 되는 땅이 많고 소소한 재탈(災頉)을 합치다 보니 많아졌습니다. 호조가 내려 준 80결 외에 부족한 재결 228결을 특별히 더 떼어 주도록 묘당에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의 농사가 비록 대풍작이라고는 하지만 바닷가의 염분이 많아 곡식이 안 되는 땅과 작년에 사태(沙汰)로 무너져 아직 개간이 안 되어 계속 재탈이 된 것들은 사세가 실로 그러하고 또 더 청한 결수도 매우 합당하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떼어 주도록 허락하고, 내년 봄에 농사를 시작할 때 유념하여 권면해서 영재(永災)로 잡힌 결수를 보충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함께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綱 命水原留守加請災結二百二十八結依狀辭許劃

目 備邊司啓言水原留守 李命植災結加請狀啓有草記回啓之命矣取見狀本則以爲本府田畓擧皆登稔而兩邊濱海問多斥鹵小小災頉合而成多該曹所下八十結外不足災二百二十八結特爲加劃事請令廟堂稟處矣本府年事雖曰大登濱海斥鹵之地昨年汰落之姑未起墾仍爲災頉者事勢固然且其加請之數亦甚精約依狀請許劃趁明年東作使之着意勸耕以充永災事請一體申飭允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10월 7일(정묘)>

경제/재정

수원부의 환곡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부(水原府)의 임자년(1792, 정조16) 조(條) 환곡을 다른 읍의 예에 따라 받아들이지 말라고 명하였다.

목 ○ 8개 읍의 임자년 조 환곡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유지(有旨)를 수령하였다는 경기 감사 서용보(徐龍輔)의 장계로 인하여, 전교하기를, "백성들을 부린 것은 똑같다. 더구나 본부에 대해서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임자년 조 환곡을 다른 읍의 예대로 받아들이지 말도록 수원유수에게 하유하고 어제 내린 전교를 후록(後錄)하여 내려보내라. 그리고 8개 읍 중에 작년 조를 다 받아들인 곳이 있으면 그곳만 빠뜨려서는 안 되니 경기 감사는 와서 대령하게 하라."
하였다.

綱 命水原府壬子條還穀依他邑例勿捧

目 因京畿監司 徐龍輔八邑壬子條還穀勿捧有旨祗受狀啓敎曰役民則一也況本府乎壬子條還穀勿捧依他邑例爲之事下諭于水原留守昨日所下傳敎後錄下送而八邑中如有昨年條畢捧處則不可獨漏畿伯使之來待
<일성록, 정조17년(1793) 10월 19일(기묘)>

경제/재정

영남의 곡식으로 수원부에 이속하여 부족한 경기 감영의 곡식을 채우도록 하다

강 영남이 상평청과 진휼청의 모(麰)를 작전(作錢)한 것 중에서 6000냥가량을 경기 감영에 떼어 주어 수원부로 이전하는 곡식의 부족한 수량을 사서 채우라고 명하였다.

목 ○ 비국의 유사 당상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앞서 경기 각 읍에 있는 환곡 5000섬을 수원부로 이전하라는 뜻으로 통지하였습니다. 방금 경기 감사의 말을 들으니, 수원 부근 각 읍의 곡부(穀簿)가 다 부족하여 실로 이 수량을 채워 떼어 보낼 방도가 없는데 금년 농사가 풍년이 들었으니 만약 가전(價錢)을 구할 수 있어 편리한 대로 곡식을 사 보낸다면 민폐를 없애고 곡부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수원에 이전할 곡식을 이송하지 않을 수는 없고 부근 고을의 형편이 이와 같은 것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남이 상평청과 진휼청의 모 1만여 섬을 작전해 놓은 것이 있으니 그중에서 6750냥을 경기 감영에 떼어 주고 수원부와 상의하여 편리한 대로 사다가 원래 떼어 준 수량을 채우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綱 命嶺南常賑麰作錢中限六千兩劃給畿營貿充水原府移轉穀不足之數

目 備局有司堂上鄭民始啓言前以京畿各邑所在還穀五千石移轉水原府之意知委矣卽聞京畿監司言則水原附近各邑穀簿擧皆不足實無溲此數劃送之道今年年事豐登若得價錢從便貿穀以送則可以除民弊而添穀簿云水原移轉不可不移送而附近邑事勢如此則亦不可不願嶺南常賑麰萬餘石有作錢以置者就其中六千七百五十兩劃給畿營與該府商議從便貿取以充元劃之數似好矣從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10월 19일(기묘)>

경제/재정

광주의 향곡 문제에 대해 수원부가 자문해주다

강 아직 거두지 않은 광주(廣州)의 향곡(餉穀) 중에 절반을 정퇴(停退)하는 것을 특별히 허락하였다.

목 ○ 수어사 이문원(李文源)이 아뢰기를, "방금 광주 부윤 서유신(徐有臣)의 첩정을 보니, '나무를 심은 8개 고을의 임자년(1792, 정조16) 조(條) 정퇴한 환곡으로서 민간에 있는 것은 올해에는 거두지 말라고 순영(巡營)에서 특교로 인하여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본부에서 민간에 분급한 것은 모두 군향이고 원회부(元會付) 환곡은 총수가 500여 섬뿐이므로 세촌(細村) 1개 면에만 분급하였고 작년에 정퇴한 것은 100여 섬에 불과합니다. 그 밖의 20개 면에는 모두 군향곡으로 분급했기 때문에 정퇴한 것이 실로 5000여 섬이 됩니다. 지금 만약 순영의 회제(回題)대로 환곡만 논하고 군향은 논하지 않는다면 세촌 1개 면 외에 20개 면의 백성들만 모든 백성을 한결같이 돌보아 주시는 혜택을 입지 못하니 실로 어떻게 거행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무를 심은 고을들의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이번에 내리신 은전(恩典)은 참으로 전무후무한 특은인데, 광주 백성들만 빠뜨렸으니 서운하지 않을 수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수원부에 물어보니, '본부의 환곡도 모두 군향이지만 임자년에 정퇴한 것은 모두 거두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광주의 군향도 사리로 보아 한결같이 거행해야 하나 전부를 정퇴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도리어 후일의 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절반을 정퇴하는 것이 참으로 양쪽이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군향은 일의 체모가 중하니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소서."

하여, 내가 대신에게 물으니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성향(城餉)은 일의 체모가 환곡

과는 자별하지만, 정퇴할 수 없는 환곡은 없습니다. 광주 백성들이 모든 백성을 한결같이 돌보아 주는 혜택에서 빠졌다면 조정하는 정사가 없을 수 없습니다마는 올해처럼 풍년이 든 해에 많은 수량을 정퇴하는 것도 염려스러운 일이니, 절반을 정퇴하자는 청은 좀 과한 듯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다 같이 나무를 심은 고을인데 향곡이라는 것에 구애되어 모든 백성을 한결같이 돌보아 주는 은전을 받지 못한대서야 어찌 옳은 일이겠는가. 수어사가 아뢴 대로 아직 거두지 않은 향곡 가운데 절반을 정퇴하라." 하였다.

綱 特許停退廣州餉穀未捧中折半

目 守禦使 李文源啓言卽見廣州府尹 徐有臣牒呈則以爲植木八邑壬子條停退還穀之在民間者今年勿捧事自巡營因特敎知委而本府之分給民間者皆是軍餉至於元會還穀則都數只爲五百餘石故分給於細村一面而昨年停退不過百餘石其外二十面皆以軍餉穀分給故停退實爲五千餘石今若依巡營回題只論還穀勿論軍餉則細村一面外二十面之民獨未蒙一視之惠澤實未知何以擧行爲辭矣今此植木邑酬勞之典誠是曠絶之特恩而廣民之獨漏恐不無向隅之歎故問于水原府則以爲本府還穀都是軍餉而壬子停退一幷勿捧云臣意則廣州軍餉事當一例擧行而全數停退於民還爲後弊臣意則折半停退誠爲兩便而軍餉體重請下詢大臣處之予詢大臣左議政 金履素曰城餉事體雖與還穀自別而以無可停之還穀廣民見漏於一視之澤則不可無闊狹之政而如今豐登之歲多數停退亦屬可悶折半停退之請恐或稍過矣敎曰同是植木之邑而拘於餉穀未霑一視之典其可乎依守使所奏餉穀未捧中折半停退
<일성록, 정조17년(1793) 11월 24일(계축)>

경제/재정

수원의 향곡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부(水原府)의 향곡(餉穀)을 환자(還上)의 예에 따라 일체로 정퇴(停退)하라고 명하였다.

목 ○ 수원유수 이명식(李命植)의 장계에, "환곡을 운용하는 법에서 환곡과 향곡을 달리 취급하는데, 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전부 향곡이고 환곡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9일에 삼가 하유(下諭)를 받드니, 작년 치 체납된 환곡을 정퇴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신이 이 하유가 적힌 유지(有旨)를 잘 수령하였다고 장계를 올리면서 민간에 널리 알리겠다는 내용만 보고하였는데, 본부에는 이미 환곡이 없으니 이러한 내용을 갖추어 논하고 처분을 기다렸어야 참으로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신이 혼미하고 일 처리가 소홀하여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즉시 유지의 내용으로 민간에 통지했더니 지극히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도 모두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비로소 잘못을 알아차리고 즉시 민간에 다시 독촉하려다 보니 성상께서 특별히 진념하셔서 널리 탕척해 주신 은전에 어긋나고, 그대로 무단히 정퇴하려니 실로 법을 받들어 직무를 담당하는 신하의 도리가 아닙니다.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감히 사실에 의거하여 스스로 논열하고 황공한 마음으로 대죄하면서 연유를 급히 아룁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 '이 장계를 보니 매우 고풍스럽다. 어찌 이런 일로 죄인임을 자처하는가. 경은 대죄하지 말고 환곡의 예에 따라 일체로 시행하라.' 라는 내용으로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綱 命水原府餉穀依還上例一體停退

目 該留守 李命植狀啓以爲糶糴之法還餉各異本府之糴純餉無還而今十月十九日伏奉下諭有昨年條舊還停退之命臣祇受封啓時只以布諭民間之意陳聞而本府旣無還上則政宜具論此意以竢處分而

昏耗疏泛頓然忘却卽以有旨辭意知委民間則雖其至愚無知之流莫不感激歡欣矣久而後始爲覺得其昏錯卽欲更督民間則有違聖上特念曠蕩之恩仍又無端停退則實非微臣奉法守職之道左右思量萬萬罔措玆敢據實自列惶恐待罪緣由馳啓敎以觀此狀辭頗有古色何可以此引罪卿則勿待罪依還穀例一體施行事回諭
<일성록, 정조17년(1793) 11월 27일(병진)>

경제/재정

수원의 원소에 추가로 지정된 화소(火巢) 안 전답을 면세시키다

강 원소(園所)의 추가로 지정한 화소(火巢) 안 전답에 대해 전례대로 면세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 **수원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차사원(差使員) 조윤식(曺允植)의 말을 들으니, 추가로 지정한 화소 안에 전답이 있는데 8결(結) 39복(卜) 남짓이라고 합니다. 전답은 시가(時價)에 따라 매입한 결복(結卜)입니다. 원래 화소의 예에 따라 면세하라는 뜻으로 거조를 내어 호조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綱 命園所追定火巢內田畓依例免稅

目 **水原**前府使 **趙心泰**啓言聞差使員 曹允植之言追定火巢內有田畓而爲八結三十九卜零云田畓則從時價買得結卜依元火巢例免稅之意請出擧條知委該曹從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12월 1일(경신)>

경제/재정

수원부 체납 환곡에 대한 탕감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부(水原府)**의 체납된 환곡에 대한 탕감은 비변사의 관문 내용 대로 거행하고, 이후로 탕감할 때에 **수원부**로 승격되기 이전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체납된 환곡의 예에 따라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수원유수 이명식(李命植)**의 장계에, "비변사의 관문 안에 있는 체납된 환곡을 탕감하는 일에 대해서는, 본부가 이전 각 아문의 환곡에 대해서 작년에 절목을 새로 만든 뒤에 향곡(餉穀)으로 만들었으므로 지금은 환자(還上)라는 명색이 없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임자년(1792, 정조16) 조(條)를 만약 예전에 각 아문의 환자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 몫으로써 이번에 견감하는 것으로 돌린다면, 이 어찌 받아들이면 향곡이 되고, 포흠 내면 환곡이 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명실이 서로 혼동되어 거행하기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세전에 나무를 심은 8개 읍의 체납된 환곡을 받아들이는 한 조항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특별히 명하실 때에 신이 몽매하여 깨닫지 못해서 대죄(待罪)하는 장계를 나중에 올리기까지 하였으니 불가불 한 번 바로잡은 뒤에야 앞으로 현혹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영에서 감히 멋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이번에 견감하는 수는 비변사에서 분수(分數)를 정해 떼어 주기를 기다려 방곡(坊曲)의 환민(還民)들에게 각기 이름 아래에 직접 챙겨 줄여서 줄 계획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경의 장계 내용 가운데 '어찌 받아들이면 향곡이 되고, 포흠 내면 환곡이 되는 이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것은 또한 옳은 것 같다. 승격되어 유수가 있는 **수원부**가 된 것은 처음 있는 예(例)이니, 비변사의 관문 내용에 따라 거행하되 이후로 체납된 환곡을 탕감할 때에 **수원부**로 승격되기 이전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체납된 환곡의 예에 따라 하는 것을 경은 잘 알라고 회유하고, 이러한 뜻을 또한 묘당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하였다.

綱 命水原府舊還蕩減依備局關辭擧行此後蕩減時陞府以前未捧用舊還例

目 該留守 李命植狀啓以爲備邊司關內舊還蕩減事則本府前日各衙門還穀昨年節目新成之後作爲餉穀則今無還上名色而壬寅條未捧若以在前各衙門還上未捧條歸之今番蠲減中則是豈有捧則爲餉逋則爲還之理乎名實相混眩於擧行故歲前植木八邑舊還捧上一款特命勿捧之時臣矇不覺得至於追上待罪之啓不可不一番較正然後可無日後眩惑之事而自臣營有不敢擅便請令廟堂稟處而今此蠲減之數則待備局分數劃下坊曲還民等各其名下親執減給計料敎曰卿之狀辭中豈有捧爲餉逋爲還云者亦似然矣陞爲留府卽初有之例依備局關辭擧行此後舊還蕩減之時陞府以前未捧用舊還例卿其知悉事回諭以此意亦令廟堂知悉

<일성록, 정조18년(1794) 1월 6일(갑오)>

경제/재정

수원 등 읍에서 훈국의 군병에게 주는 겸료미태(兼料米太)를 지급토록 하다

강 훈국(訓局) 군병에게 주는 겸료 미태(兼料米太)는 수원과 인근 읍의 세곡(稅穀) 중에서 서로 바꾸어 가져다 쓰라고 명하였다.

목 ○ 호조 판서 심이지(沈頤之)가 아뢰기를, "훈국 군병에게 주는 겸료 미태는 으레 본조에서 떼어 보냅니다. 그런데 방금 훈국의 이문(移文)을 받아 보니 '화성의 성역에 필요한 역량(役糧)을 서울에서 마련하여 배로 운반할 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본부와 부근 읍의 세곡에서 미(米)는 1700섬까지, 태(太)는 700섬까지를 서로 바꾸어 가져다 쓴다면 양쪽이 다 편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은 서로 변통해도 무방할 듯한데 정공(正供)은 일의 체모가 매우 엄중한지라 한 번 상께 여쭙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구획(區劃)해야만 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綱 命訓局軍兵兼料米太以水原及附近邑稅穀中相換取用

目 戶曹判書 沈頤之啓言訓局軍兵兼料米太例自臣曺劃送而卽接訓局移文則華城城役役糧自京方措備船運多有難便之端若以本府及附近邑稅穀中米限一千七百石太限七百石相換取用則彼此俱便云京外之互相推移似無所妨而正供事體至重不可不一番經稟後區劃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2월 10일(무진)>

경제/재정

화성 역소의 사들인 미곡과 수원의 대동미를 서로 바꾸어 쓰도록 하다

강 화성의 역소(役所)에서 사들인 것으로 군기시(軍器寺)에 책정된 갑주미(甲冑米)를 본부의 대동미(大同米)와 섬수〔石數〕 대로 서로 바꾸고, 본부의 강 하류 지역 각처에 사 둔 쌀은 인근 백성이 받을 군향미(軍餉米)로 적절히 헤아려 바꾸어 쓰라고 명하였다.

목 ○ 감동 당상 조심태가 아뢰기를, "화성 역소의 무미태(貿米太)를 전세 미태(田稅米太)와 서로 바꾸도록 이미 윤허받았습니다. 그런데 군기시에 책정된 갑주미를 또 사서 현재 선혜청에 그대로 두었으니 선혜청에 납부할 수원의 대동미에서 섬수대로 서로 바꾸어 가져다 쓰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본부의 강 하류 지역 각처에도 쌀을 사서 둔 것이 있습니다. 인근 백성이 받을 군향을 이 무미(貿米)로 나누어 준 뒤 군향 창고에 있는 군향미를 역소에서 가져다 쓰면 아주 편리할 것입니다. 대개 무미와 군향미는 쌀의 품질에 별 차이도 없고 군향 창고에 있는 곡자(斛子)를 가지고 수량대로 나누어 준다면 촌민의 입장에서는 멀리 운반하는 폐단을 없애는 것이고 역소의 입장에서는 운반에 드는 비용을 버는 셈입니다. 적절히 헤아려 바

꾸어 쓰라는 내용으로 거조(擧條)를 내어 본부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리하니 이대로 하라. 묘당에서 즉시 공문을 보내 알리게 하라." 하였다.

綱 命**華城役**所貿得軍器寺甲冑米以本府大同米從其石數相換本府水下各處貿置米以傍近民人所受軍餉米量宜換用

目 監董堂上**趙心泰**啓言**城役**所貿米太以田稅米太相換事已爲蒙允而軍器寺甲冑米又爲貿得今方除留於惠廳 惠廳所納**水原**大同米中從其石數相換取用恐合便宜從之又啓言本府水下各處又有貿米以置者矣傍近民人所受軍餉以此貿米分給後餉倉所在軍餉米自役所取用十分方便概貿米餉米別無米色之精麤亦以餉倉斛子準量分給則在村民除遠輸之弊在役所得駄載之費量宜換用之意請出擧條知委本府敎以公私兩便依此爲之令廟堂卽爲行會

<일성록, 정조18년(1794) 2월 10일(무진)>

경제/재정

화성 성역에 필요한 역량(役糧) 문제를 논의하다

강 훈국(訓局) 군병에게 주는 겸료 미태(兼料米太)는 수원과 인근 읍의 세곡(稅穀) 중에서 서로 바꾸어 가져다 쓰라고 명하였다.

목 ○ 호조 판서 심이지(沈頤之)가 아뢰기를, "훈국 군병에게 주는 겸료 미태는 으레 본조에서 떼어 보냅니다. 그런데 방금 훈국의 이문(移文)을 받아 보니 '**화성**의 성역에 필요한 역량(役糧)을 서울에서 마련하여 배로 운반할 때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본부와 부근 읍의 세곡에서 미(米)는 1700섬까지, 태(太)는 700섬까지를 서로 바꾸어 가져다 쓴다면 양쪽이 다 편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서울과 지방은 서로 변통해도 무방할 듯한데 정공(正供)은 일의 체모가 매우 엄중한지라 한 번 상께 여쭙는 절차를 거치고 나서 구획(區劃)해야만 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訓局軍兵兼料米太以**水原**及附近邑稅穀中相換取用

목 戶曹判書 沈頤之啓言訓局軍兵兼料米太例自臣曺劃送而卽接訓局移文則**華城城役**役糧自京方措備船運多有難便之端若以本府及附近邑稅穀中米限一千七百石太限七百石相換取用則彼此俱便云京外之互相推移似無所妨而正供事體至重不可不一番經稟後區劃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2월 10일(무진)>

경제/재정

화성 역소에서 사들인 미곡의 문제를 논의하다

강 **화성**의 역소(役所)에서 사들인 것으로 군기시(軍器寺)에 책정된 갑주미(甲冑米)를 본부의 대동미(大同米)와 섬수〔石數〕 대로 서로 바꾸고, 본부의 강 하류 지역 각처에 사 둔 쌀은 인근 백성이 받을 군향미(軍餉米)로 적절히 헤아려 바꾸어 쓰라고 명하였다.

목 ○ 감동 당상 조심태가 아뢰기를, "**화성** 역소의 무미태(貿米太)를 전세 미태(田稅米太)와 서로 바꾸도록 이미 윤허받았습니다. 그런데 군기시에 책정된 갑주미를 또 사서 현재 선혜청에 그대로 두었으니 선혜청에 납부할 수원의 대동미에서 섬수대로 서로 바꾸어 가져다 쓰는 것이 편리하고 합당할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본부의 강 하류 지역 각처에도 쌀을 사서 둔 것이 있습니다. 인근 백성이 받을 군향을 이 무미(貿米)로 나누어 준 뒤 군향 창고에 있는 군향미를 역소에서 가져다 쓰면 아주 편리할 것입니다. 대개 무미와 군향미는 쌀의 품질에 별 차이도 없고 군향 창고에

있는 곡자(斛子)를 가지고 수량대로 나누어 준다면 촌민의 입장에서는 멀리 운반하는 폐단을 없애는 것이고 역소의 입장에서는 운반에 드는 비용을 버는 셈입니다. 적절히 헤아려 바꾸어 쓰라는 내용으로 거조(擧條)를 내어 본부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편리하니 이대로 하라. 묘당에서 즉시 공문을 보내 알리게 하라." 하였다.

강 命**華城役**所貿得軍器寺甲冑米以本府大同米從其石數相換本府水下各處貿置米以傍近民人所受軍餉米量宜換用

목 監董堂上**趙心泰**啓言**城役**所貿米太以田稅米太相換事已爲蒙允而軍器寺甲冑米又爲貿得今方除留於惠廳 惠廳所納**水原**大同米中從其石數相換取用恐合便宜從之又啓言本府水下各處又有貿米以置者矣傍近民人所受軍餉以此貿米分給後餉倉所在軍餉米自役所取用十分方便概貿米餉米別無米色之精麤亦以餉倉斛子準量分給則在村民除遠輸之弊在役所得駄載之費量宜換用之意請出擧條知委本府敎以公私兩便依此爲之令廟堂卽爲行會
<일성록, 정조18년(1794) 2월 10일(무진)>

경제/재정

화성의 결전(結錢) 문제를 논의하다

강 본부 근처를 경유하여 상납하는 **화성** 인근 고을과 삼남(三南)의 결전(結錢)을 역소에 곧바로 바치도록 하여 균역청에서 빌려다 쓸 10만 냥을 대신하라고 명하였다.

목 ○ 감동 당상 조심태가 아뢰기를, "역소에서는 초반에 수만 냥을 금위영과 어영청에서 빌려다 쓴 바 있으나 앞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점차 방대해질 형편이라 우선 10만 냥 이내의 돈을 균역청에서 빌려와야만 합니다. 그런데 10만 냥을 실어오는 데 드는 경비도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본부 근처를 경유하여 상납하는 인근의 경기 고을과 삼남 각 도의 결전을 모두 역소에 곧바로 바치도록 하는 것이 편리할 듯합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거조를 내어 균역청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華城**傍近邑及三南結錢路過本府近處者直納於役所以代均廳錢十萬兩貸用之數

목 監董堂上**趙心泰**啓言役所初頭數萬兩雖已取貸於禁御兩營來後需用勢將漸次浩汗不可不姑先限十萬兩貸來於均廳而十萬兩駄輸之費亦將不些傍近畿邑及三南各道結錢之路過本府近處者一併直納於役所恐涉方便請以此出擧條知委該廳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2월 10일(무진)>

경제/재정

화성 공역의 비용 문제를 논의하다

강 **화성(華城)**의 **성역(城役)** 때에 필요한 전(錢)은 10만 냥까지 균역청 등에 비축해 둔 돈을 우선 변통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갚으라고 명하였다.

목 ○ 영중추부사 채제공이 아뢰기를, "**화성**의 성역 때에 필요한 비용으로 금위영과 어영청 두 군영(軍營) 및 삼남의 결전(結錢)을 우선 빌려다 사용한 것이 15만 냥인데, 그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것이 8000여 냥뿐입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열흘 정도 투입할 비용에 불과한 것으로, 지금 변통하지 않는다면 공사를 정지해야 할 우려가 있습니다. 조정에서 전에 구획(區劃)해 준 수량이 아직도 14만 냥이 남아 있으나, 이는 연도를 안배하여 해마다 수입(收入)으로 잡아서 사용할 돈이므로 현재의 긴급한 비용에 보탤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균역청 등에 비축해 둔 돈이 있을 경우에는 10만 냥까지 우선 변통하여 사용하고 앞으로 해마다 수

입으로 잡아서 사용할 돈이 들어오거든 이걸로 갚게 한다면 편리하고 좋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華城城役時所用錢限十萬兩以均廳等椿置錢爲先推移以用待前頭克報

목 領府事 蔡濟恭啓言華城城役時所用禁御兩營 及三南結錢先爲貸下者爲十五萬兩內見今所餘只爲八千餘兩而此不過旬日容入若不及今變通將有停役之慮朝家前日所區劃之數尙餘十四萬而此是排年應入之物無補於目不緊需若於均廳等有椿置錢貸處限十萬兩爲先推移以用待前頭應入錢以此克報則似爲便好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5월 22일(무신)>

경제/재정

장용영이 관리하는 수원 등의 둔전에 대해 논의하다

강 장용영이 맡아 관리하는 각 둔전(屯田) 가운데서 새로 사들인 것과 서로 바꾼 전답(田畓)에 대해 전례대로 면세(免稅)하라고 명하였다.

목 ○ 장용영 제조 정민시가 아뢰기를, "본영이 맡아 관리하는 수원(水原), 평택(平澤), 봉산(鳳山), 정주(定州)의 각 둔전 가운데 새로 사들인 것과 서로 바꾼 전답 5결 30여 부(負)가 있습니다. 전례대로 면세하도록 호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綱 命本營所管各屯新買及相換田畓依例免稅

目 本營提調 鄭民始啓言本營所管水原 平澤 鳳山 定州各屯有新買及相換田畓五結三十餘負依例免稅之意請分付戶曹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6월 2일(정사)>

경제/재정

호조가 수원 등읍의 연분 사목을 바치다

강 호조가 연분 사목(年分事目)을 바쳤다.

목 ○ 호조가 아뢰기를, "금년의 연분 사목은, 농사 형편을 보고하는 장계를 가져다 살펴보고 전해 들은 내용을 참고하여 대신에게 나아가 문의한 뒤에 삼가 이렇게 마련하여 아룁니다. 지난번의 가뭄은 비록 여러 도가 마찬가지였다고는 하지만 재해로 인한 피해를 공평하게 살펴보니 실제로 잡을 만한 명목(名目)은 없었습니다. 경기에서 인천(仁川) 등의 고을과 수원부(水原府)의 바닷가 언답(堰畓)에 소금기가 스며들었는데 이것은 해마다 늘 있던 일입니다. 호서(湖西)에서 공주(公州) 등 고을의 저지대에 있는 농지가 침수되고 황간(黃磵) 등 고을의 하천 가에 있는 농지가 모래에 뒤덮였습니다. 석성(石城) 등의 고을에서는 벌레에 먹혀 곡식이 줄어들었고, 서천(舒川) 등의 고을에서는 염분의 피해와 벌레로 인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괄해서 말하면 몇몇 면(面)과 이(里)에 불과하고 또 비가 온 뒤에는 씻겨 나갔습니다. 호남에서는 전주(全州)와 고산(高山) 등 고을의 저지대에 있는 농지가 약간 침수되는 손실이 있었지만 곧바로 물이 빠졌고, 흥덕(興德) 등의 고을에서는 약간의 농지가 해충(蝷蟲) 때문에 손실을 입었고, 금산(錦山) 등의 고을에서는 잠시 우박이 내려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큰 피해는 아니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는 경주(慶州)와 안동(安東) 등의 고을에서 우박을 맞아 다른 작물을 대신 파종하였고, 칠곡(漆谷)과 자인(慈仁) 등의 고을에서는 조곡(早穀)이 충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농사를 완전히 망친 것은 아닙니다. 관서(關西) 지역에서는 덕천(德川) 등의 고을에서 우박의 재해가 있어

즉시 다른 작물을 대신 파종하기는 했지만 강변의 여러 고을은 가뭄의 피해를 유독 심하게 입었습니다. 북관(北關) 지역에서는 회령(會寧) 등의 고을이 가뭄의 피해가 가장 심한 데다가 벌레와 짐승의 피해까지 있었습니다. 해서(海西) 지역에서는 곡산(谷山) 등의 고을에 충재(蟲災)가 잠깐 생겼다가 금방 사라졌고, 황주(黃州) 등의 고을에는 우박이 잠시 내리다 지나갔으나 또한 큰 피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가뭄으로 땅이 말라 있던 끝에 큰비가 때맞추어 내리는 시기에 날씨가 찌는 듯이 더워서 매번 소소한 병패(病敗)가 있었지만 이는 한 고을 전체의 농지에서 실농(失農)한 것은 아니니 이 또한 도 전체의 재실(災實)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가뭄 끝에 비가 내려 각종 곡물이 지금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더하여 절기가 조금 늦어서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으니 최종 수확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각 도의 도신이 관내를 순시할 때가 머지않았고 곧바로 농지를 조사할 것이므로 사목의 반강(頒降)을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농지가 연해에 있는지 산골에 있는지에 따라 가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고 농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가져다 살펴보아 각 도를 분등하니, 기전과 호서가 가장 낫고, 관서와 해서가 또 약간 나으며, 호남과 관동이 그다음이고 영남과 관북은 심한 차등이 없습니다. 대체로 금년의 작황은 처음에는 팔도에서 고루 잘되었는데 중간에 가뭄의 피해로 약간 손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비가 내려 다시 소생하였습니다. 비옥한 평야 지대에 있는 농지는 전에 비해 더욱 풍년이지만 **수원(水源)**에서 조금 멀리 있는 곳은 다른 곳에 비해 조금 떨어집니다. 척박한 산골에 있는 토지 중에는 혹 거둘 것이 없을 염려가 있는 곳도 있지만 고을 전체를 종합하여 계산하면 심하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의 연분에 대해서는 경차관(敬差官)을 보내지 말고 전적으로 도신에게 맡기는 것으로 이미 연석에서 아뢰어 공문을 보내 알렸으니 자세히 조사하는 정사를 펼쳐서 당연히 충분히 신중하게 살필 것이고 배분하고 남는 것으로 환곡을 납부하는 것은 본래부터 응당 행해야 할 일이니 약간의 나머지가 있어도 과도하게 많지는 않을 듯합니다. 신이 각 연도 재결(災結)의 총수를 살펴보고 더욱 자세히 헤아려서 대략 참작하여 분배했습니다.

경기는 계축년(1793, 정조17)의 원총(元摠) 4만 4383결(結) 중에 재결로 인정해 준 것이 1000결이고 실결(實結)이 4만 3383결입니다. **수원부**는 계축년의 원총 6289결 중에 재결로 인정해 준 것이 150결이고 실결이 6139결입니다. 충청도는 계축년의 원총 12만 7033결 중에 재결로 인정해 준 것이 2100결이고 실결이 12만 4933결입니다. 전라도는 계축년의 원총 21만 4921결 중에 재결로 인정해 준 것이 4500결이고 실결이 21만 421결입니다. 경상도는 계축년의 원총 20만 7386결 중에 재결로 인정해 준 것이 4800결이고 실결이 20만 2586결입니다. 황해도는 계축년의 원총 7만 3419결 중에 재결로 인정해 준 것이 800결이고 실결이 7만 2619결입니다. 강원도는 계축년의 원총 1만 1419결 중에 재결로 인정해 준 것이 350결이고 실결이 1만 1069결입니다. 양계(兩界)는 재결로 인정하여 떼어 주는 규례가 없기 때문에 평안도는 기축년(1769, 영조45), 함경도는 병오년(1786)의 실결 총수를 기준으로 비총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재결을 결정하는 정사가 잘되었는지는 결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달린 것이 아니고 오직 얼마나 자세히 조사하는가에 달렸습니다. 여러 도의 도신들이 관내를 순시할 때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 결과 저 궁핍한 백성들이 우리 성상께서 백성의 고통을 내 몸에 있는 것처럼 여기고 백성을 어린아이 돌보듯 하는 은덕을 입지 못한다면 감히 직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법보다 백성을 중시하는 의리로 마련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해 주는 예(例)를 따르고 농지를 조사할 때 각별히 자세하게 조사해서 되도록 정확하고

간결하게 하지 않고 읍의 보고에만 의거해서 지나친 수량을 더 청한다면 결국에는 복주(覆奏)해서 시행하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저버린 죄가 어떠하겠습니까. 한전(旱田)의 경우는 1년에 두 번 경작하므로 원래 재결을 인정해 주는 규례가 없는데 여러 도의 각 읍에서 밭을 논이라고 하여 암암리에 멋대로 마감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부터 신칙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금년의 마감 때에 혹 잘못을 답습하여 섞어 넣는 폐단이 있다면 수령은 모두 마음대로 배분한 경우에 의거하여 벌을 시행한다는 내용으로 각별히 엄히 신칙하게 하소서.

천번(川反), 포락(浦落), 복사(覆沙)는 비가 온 뒤에는 항상 있는 재해이지만 포락이 일어나면 반대편에 진흙땅이 생기게 되고, 모래가 덮이는 복사가 일어나면 모래를 파내고 도로 경작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니 이런 곳에 대해서는 단지 그해에만 재결로 인정해 주도록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재탈(災頉)에 들어가면 영구히 노는 땅으로 만들려고 간교한 백성과 교활한 이서(吏胥)들이 한통속이 되어 농간을 부리므로 영구 재탈은 해마다 늘어나고 다시 경작하는 것은 숨기고 보고하지 않으니 이보다 더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해마다 천번, 포락, 복사가 많은 곳에 대해서 도신이 별도로 탐문하고 조사하며 창고마다 자세히 살펴서 은루결(隱漏結)을 찾아내어 실총에 입록(入錄)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각 도에서 헤아린 뒤에 진달하여 종전보다 등급을 낮추어 주게 한 것은 백성들에게 억울함이 없게 하려는 것일 뿐만이 아니며, 3년이 지난 뒤에 세금을 내게 하는 것 또한 세금을 경감하여 경작을 권장하려는 정사에서 나온 일입니다. 그런데 근래 간교한 무리들이 마음대로 농간을 부려서 작년에 도로 경작한다고 보고했던 것을 금년에는 다시 묵히는 땅이라고 보고하며, 토지의 자호(字號)를 바꾸어 묵히는 땅과 경작하는 땅을 뒤바꾸고 있으니 3년이 지난 뒤에 세금을 내게 하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 외에 화속전(火粟田)같이 새로 경작하게 된 전답도 적지 않지만 얼마 되지 않는 수량에 대해서까지 보고하도록 다그치는 것은 법의(法意)로 보아 오히려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금년에는 대개장(大槩狀)을 일시에 사실대로 성책(成冊)하여 올려보내게 하되 만약 숨기고 사목을 어기는 폐단이 있다면 해당 수령은 엄히 논죄(論罪)하며, 각 항의 응행 절목(應行節目) 등은 모두 전년의 사목에 따라 조목별로 사실대로 조사하여 마감할 때 낱낱이 거론하여 장계로 보고하라는 내용으로 엄히 신칙하도록 팔도와 양도(兩都) 및 **수원부**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綱 度支進年分事目

目 戶曹啓言今年年分事目取考農啓參以傳聞就議大臣謹此磨鍊以聞而向來惜乾雖云諸路之同然夷考災傷實無可執之名目京畿之仁川等邑及**水原府**之濱海堰畓醎氣透侵便是年年常有之事湖西之公州等邑汚下被浸黃礪等邑川邊沙覆石城等邑蠶蝌蹲縮舒川等邑醎害虫損總而言之不過如干面里而亦皆得雨洗滌湖南之全州 高山等邑卑下處之如干沈損旋卽水退興德等邑數坪蝌損錦山等邑霎時雹損俱非大段被害嶺南之慶州 安東等邑被雹代播漆谷 慈仁等邑早穀虫損俱非一坪之全棄關西之德川等邑雹災雖卽代播江邊數邑偏被旱乾北關之 會寧等邑被旱最酷兼有虫獸之害而海西之谷山等邑虫災之乍發旋寢黃州等邑雨雹之片時過去亦不足爲大害但久旱土乾之餘大雨時行之節日氣蒸鬱每有小小病敗而此非擧一邑全一坪所失則亦無關於一路災實而暵餘得雨各穀今始蘇醒重以節序差晩秋事尙遠畢竟成就雖不可預料諸道之行部不遠檢田在卽事目頒降不可遲淹故以其壤地之山沿量其被旱之劇歇考檢農報分等諸道則畿甸 湖西最尤關西 海西又差勝湖南 關東爲其次嶺南關北無甚差等大抵今年穡事始則八路均登中焉被旱稍損末乃得雨回蘇平野膏沃之地比前尤熟而水源稍遠之處視他稍殺山谷瘠薄之土亦或有不登之患而總計一邑不甚夥多矣今年年分勿送差官專委道臣已有筵

稟行會審覈之政必當十分審愼且俵餘還納自是應行之事則略有贏餘似不爲過濫之歸臣取考各年災總細加裁量略綽排比京畿癸丑元總四萬四千三百八十三結內給災一千結實結四萬三千三百八十三結水原府癸丑元總六千二百八十九結內給災一百五十結實結六千一百三十九結忠淸道癸丑元總十二萬七千三十三結內給災二千一百結實結十二萬四千九百三十三結全羅道癸丑元總二十一萬四千九百二十一結內給災四千五百結實結二十一萬四百二十一結慶尙道癸丑元總二十萬七千三百八十六結內給災四千八百結實結二十萬二千五百八十六結黃海道癸丑元總七萬三千四百十九結內給災八百結實結七萬二千六百十九結江原道癸丑元總一萬一千四百十九結內給災三百五十結實結一萬一千六十九結兩界則曾無劃結給災之規故平安道己丑年咸鏡道丙午年比總磨鍊矣災政善否不在結數之多寡惟在審覈之如何諸道道臣若於省部之時一毫放忽於檢覈之際使彼窮民不得蒙我聖上恫瘝若保之德意則其敢曰盡其職分乎特以寧失之義磨鍊皆從優例檢田之際若不另行爬櫛務從精約只憑邑報濫數加請則非但畢竟之覆奏勿施其爲辜負罪當如何旱田則以一年再耕之故元無給災之規而諸道各邑以田爲畓隱然冒勘自前申飭非止一再今年磨勘時如或有襲謬混入之弊則守令則一依擅分例施行事各別嚴飭川浦沙則雖是雨餘恒有之災而浦落泥生覆沙掘去亦是當然之事則此等處只許當年給災載於法典而一入災頃永作閑土狡民猾胥符同容奸永災則逐歲增加還起則隱匿不報事之痛駭莫此爲甚今秋則就各年川浦沙數多處道臣別歧探覈逐庫詳察搜括隱漏入錄實總而各道量後陳之降續非但使民無冤三年後出稅亦出於薄賦勸耕之政而近來奸猾輩恣意舞弄昨年報以還起今年曰以還陳改其字號變幻陳起未嘗有過三年出稅之效其他火粟加耕不爲不多而只以如干把束塞責報來揆以法意寧不寒心今年則大概狀一時從實修成册上送而如有隱匿違越事目之弊則當該守令從重論罪而各項應行等節一依年前事目逐段査實磨勘時枚擧狀聞之意八道兩都及水原府請嚴飭分付允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8월 21일(을해)>

경제/재정

화성 축성을 위한 부역 문제를 논의하다

강 화성 축성에 백성들을 부역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비국에서 널리 물어 초기(草記)하라고 명하였다.

목 ○ 우의정 이병모가 아뢰기를, “국가에 공역(公役)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백성들을 쓰는 것은 유사(有司)가 경비를 아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사(公事)가 있으면 앞다투어 달려가 부역하는 의리에 대해 백성들에게 틀을 잡아 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조에서 이미 행한 일들을 보면 뚜렷하게 입증이 됩니다. 지금 화성 축성의 성역(城役)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관계된 것이 어떠합니까. 그런데도 성상께서는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고 고심하며 숙고하시어 공사를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부역을 자원하는 무리들에게도 모두 일절 부역을 허락하지 않고 계십니다. 신이 어찌 성상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까마는 자식이 어버이의 일에 달려가는 것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러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국가에 큰 역사가 있는데 백성들에게 그것을 모르게 한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 같지만 크게 보면 폐단으로 흘러가게 할 뿐입니다.

백성들을 시기에 맞게 부려서 농번기를 빼앗지 않는 것은 성인이 백성들을 부리는 공명정대한 원칙이니, 굳이 꼭 ‘시기에 맞게’라고 하고 ‘빼앗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어찌 백성의 힘을 어쩔 수 없이 써야 한다면 반드시 시기에 맞게 부리고 농번기를 빼앗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조정에서 공역에 백성들을 부리지 않은 지 벌써 몇 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중하고도 큰 사역에 한결같이 백성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공명정대한 법이 크게 무너질 뿐 아니라 백성들이 점점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결국 쓸모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투입해야 될 역정(役丁)들을 헤아려서 전례대로 여러 도에 분배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봅니다. 여러 대신(大臣) 및 비국 재신(宰臣)들에게 널리 물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이러한 사리를 어찌 모르겠는가. 성왕(聖王)의 정치란 사람을 사랑하면서 백성을 부리는 데에 불과하다. 사랑하면서도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기에 맞게 부리면 될 것이다. 더구나 지금은 은혜를 다하고 사랑을 극진히 하였는데도 풍습은 무너지고 완악해졌으니 지금 상태를 통해서 오늘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면 이 부역에 이 백성을 쓰는 것에 어찌 굳이 허락을 아끼겠는가. 일찍이 어렵게 여기고 신중히 한 것은 대민(大民)과 소민(小民)들에게 먼저 그들을 부리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 신중히 하려는 나의 본뜻을 알게 하고자 해서였다. 경이 이미 자세하게 아뢰며 힘껏 청했으니 본사에서 널리 물어보고서 초기하라." 하였다.

강 命**華城城役**役民便否自備局博詢草記

목 右議政 李秉模啓言凡有國役必用民力非爲有司之惜費蓋欲範民於趨事赴公之義觀於國朝已行之事歷歷可徵矣顧今**華城城役**所重何如關係何如而以聖上不煩民力之苦心至意始役已久竝與願赴之類而一切不許臣豈不知聖意所在而第念子趨父事秉彝之所同然國有大役而使民不知則論其外面雖似便民揆以大體適足流弊大抵使民以時不奪農時卽聖人用民之大經大法而必曰以時曰不奪者豈不以民不可不用而必也使以時時不奪乎朝家之不役民不知其爲幾許年矣今於莫重莫大之役一例不用則不但經法之大壞竊恐民習積狃率歸於無用之地臣意則爲先酌量其容入役丁依例分排於諸道斷不可已請博詢諸大臣及備局諸宰而處之敎以此箇事理亦豈不知大抵聖王之政不過曰愛人而使民而已愛之能勿勞乎使之以時則可況今恩竭而愛克俗弊而習頑由今之樣矯今之宜是役是用何必斬許而曾所難愼者欲使大民小民先知所以難愼之本意也卿旣縷縷力請自本司博詢草記
<일성록, 정조18년(1794) 6월 28일(계미)>

경제/재정

화성(華城)에 부역한 장인들과 모군들에게 서늘한 날씨가 될 때까지 일을 정지하라고 명하다.

강 **화성(華城)**에 부역하고 있는 장인(匠人)들과 모군(募軍)들에게 날씨가 조금 서늘해질 때까지 일을 정지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령(傳令)하기를, "요즘의 찌는 듯한 더위는 최근 몇 년간 처음 있는 일이고 어제 오늘의 작열하는 태양은 요 근래에 처음 보는 것이다. 성을 쌓는 수고를 생각하면 자나 깨나 먹으나 쉬나 그저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걱정스러우니, 먹어도 맛을 모르고 잠을 자고 싶어도 불면에 시달릴 뿐이다. 일전에 척서단(滌暑丹)을 분급(分給)한 것은 그 어려움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붙인 것일 뿐이었으니, 이것이 어찌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성을 쌓는 이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지만 모군 한 사람이나 장인 한 사람이라도 더위를 먹거나 갈증에 시달린다면 이 어찌 성역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요즘 가슴앓이 증세 때문에 매일 열을 식히는 탕제를 복용하는 것을 일과로 삼은 지 이제 달포가 되었다. 이에 경들도 알겠지만 이 증세에는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더위를 견디며 부역하고 있는 장인들과 모군들을 염려하고 또 염려하다 보니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은 고사하고 도리어 노심초사하는 단서가 되었으니 증세 하나를 더하는 것 정도가 아니다. 경들은 이에 대해서 다른 것은 돌아볼 겨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모쪼록

이 뜻을 잘 헤아려, 성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각 곳과 돌을 뜨고 기와를 굽는 곳에서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되어 부역하는 무리들은 조금 서늘해질 때까지 일을 하지 못하게 하라. 비록 처서(處暑) 전이라도 서늘한 기운이 생겨나거든 상황을 보아서 다시 일에 착수하게 하여 지금 내가 저들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풀 수 있게 하라. 더구나 이 성을 축성하는 것은 국방의 경계를 견고히 하는 것과는 다르니 한편으로는 선침(仙寢)의 중한 바를 위해서이고, 또 한편으로는 행궁(行宮)의 중한 바를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이 공역은 일마다 민심을 기쁘게 하고 민력을 수고롭게 하지 않는 데 힘써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혹여 한 가지라도 백성을 병들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설령 공역(工役)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성과를 거두더라도 내 본뜻이 아니다. 거듭 모름지기 내 뜻을 잘 알고 즉시 변통한 뒤에 거행한 연유를 급히 장계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전령 한 건을 또한 베껴서 정리소(整理所)의 총리 대신(摠理大臣)에게 보여 주어서 상의하여 나의 명을 받들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강 命**華城**赴役匠募限涼生間停役

목 傳令曰近日炎熱近年初有昨今烈暘近日中初見言念**城役**築斯之勞寤寐食息懸懸憧憧對飯忘味欲睡惺惺前此分給滌暑之丹者特寓投醪之意而已此何足爲毫分利益於渠輩乎是城之役所重果如何也雖一募一匠如或飮暑而中暍是豈非**城役**所使之爲者哉朝家近以膈煩之症日服涼劑以爲課者今爲月餘而卽爾卿等所知此症最利於平心而念念於當暑赴役之匠募平心姑捨反爲勞思之端不啻如添一症卿等於此義當他不暇顧須體此意**城役**各所及浮石燔瓦 諸處露立暘曝之中而赴役之類限涼生間勿爲雖於處暑之前如得新涼觀勢亦卽董役以紓此時爲渠輩之勞思況是城之役異於爲關防固圉之計而一則爲仙寢之所重一則爲行宮之所重是役也事事當以悅民心寬民力爲務反或一有近於病民者設令工役有不日成之效非予本意更須知悉此意卽爲闊狹後以其擧行緣由馳啓宜當仍敎曰傳令一件亦卽謄示總理大臣以爲相議對揚之地

<일성록, 정조18년(1794) 7월 6일(신묘)>

경제/재정

균역청의 전(錢) 10만 냥을 화성(華城)에 빌려 주다

강 균역청의 전(錢) 10만 냥을 **화성(華城)**에 빌려 주게 하였다.

목 ○ **수원 유수 조심태**가 아뢰기를, "성역에 소요되는 물력을 균역청에서 빌려 온 것이 20만 냥인데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전부가 공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물종(物種)을 분배하고 조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번 물력을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은 송구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만 다시 균역청에서 10만 냥을 빌려 와야 물력이 부족하여 공역을 중단하는 폐단이 없을 것이기에 감히 우러러 진달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均廳錢十萬兩貸送於**華城**

목 **水原留守 趙心泰**啓言**城役**物力之貸用於均廳者爲二十萬兩而目下姑無成就者則此非盡入於工役許多物種分排措置之際所費浩汗物力每患苟艱臣不勝悚悶又限十萬兩貸得於均廳然後庶無乏財停役之弊故敢此仰達矣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7월 29일(갑인)>

경제/재정

수원유수가 성역의 역가와 관련해 장계하다

강 수원부에서 사들인 호남의 미(米)는 각각 지방관이 감색(監色)을 정하고 튼튼한 선척(船隻)을 빌려 수송하고, 선혜청의 공미(貢米)를 매입한 다음 본청의 태(太)를 작목(作木)한 것으로 환색(換色)하여 지급해서 장인(匠人)과 모군(募軍)의 옷감으로 만들게 하며, 이후로 만일 저류미(儲留米)를 환색하여 쓸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연석에서 나에게 묻고 나서 문적(文跡)을 마련한 연후에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성역(城役)에 지급하는 역가(役價)를 위해 금년 여름 사이에 호남의 순창(淳昌)·보성(寶城)·창평(昌平)·흥양(興陽) 등 읍에서 미를 사들였고 각 읍에 봉류(捧留)하고 있다는 보장(報狀)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내년 봄을 기다려 배로 운반해 오려 하는데 만약 관에서 힘을 빌려 주지 않으면 실로 소홀해질 염려가 많습니다. 역소(役所)에서 일을 맡아 처리할 장교를 정해서 보내거든 지방관이 별도로 감색을 정하고 튼튼한 선척을 빌려서 즉시 수송하라는 뜻으로, 거조(擧條)를 내어 본도의 도신에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역소의 장인과 모군에 대한 요조(料條)로 매달 용하(用下)하는 것이 그 수효가 많아서 유지해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달포 전에 공미 3330섬 남짓을 매입한 다음, 선혜청에서 다른 공인의 규례대로 30개월을 기한으로 창고에 분기별로 저류해 두는 것에 따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 올라올 때 장인과 모군들의 말을 들으니, '돌아보건대 지금은 바람이 거세고 서리마저 내리는데 한 겹 걸친 베적삼과 베 바지 외에는 참으로 실오라기 하나 몸에 두를 계책이 없으니, 매달 받는 고가(雇價) 대신에 목면으로 마련해 지급하여 제대로 몸을 가리고 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이 비록 추운 계절이지만 일을 멈추기는 어려우니 헐벗은 장인과 모군에 대해 진념하여 구휼해야 합니다. 그러나 허다한 목면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위에서 말한 역소의 용하를 위해 매입한 공미 30개월 조(條) 3330섬 5말을 선혜청에서 창고에 분기별로 제하고 저류해 둔 것에 따라 그 대신 1섬당 목면 3필씩 상정가(詳定價)대로 마련한 다음, 태를 작목하여 제하고 저류하는 조목으로 지급하게 하면, 선혜청에는 따로 손익을 계산해야 할 일이 없을 것이고 역소에는 매우 긴요하게 쓰일 것입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전교하기를, "이번에는 특별히 성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하도록 해 주었지만, 이는 계속 시행할 만한 방법이 아니다. 이후로 만일 미와 목을 부득이 서로 환색하고 저류한 것을 가져다 쓸 일이 있으면 반드시 연석에서 나에게 묻고 나서 문적을 마련한 연후에 거행하되, 한결같이 여러 도에서 조(租)와 모(牟)를 환작(換作)하겠다고 장계로 보고하거나 관사(官司)에 보고한 다음 나에게 물어 처리하게 하는 규례대로 거행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선혜청에 통지하게 하라." 하였다.

綱 命水原府所貿湖南米各自地方官定監色賃完固船隻輸送買得惠廳貢米以本廳太作木換色上下俾作匠募衣資此後如有儲留換用之事必經筵稟有文跡然後擧行

目 水原留守 趙心泰啓言爲城役所支放今年夏間貿米於湖南 淳昌 寶城 昌平 興陽等邑至受各邑捧留報狀將待開春船運以來而若不藉力於官實多疏虞之慮待役所定送幹事將校自地方官別定監色賃得完固船隻趁卽輸送之意請出擧條申飭本道道臣從之又啓言役所匠募料條逐朔用下者厥數夥然支計無路月前買得貢米二千三百三十石零自惠廳依他貢人例限三十朔從庫中隨等儲留以爲推用之地矣臣於上來時聞匠募等言顧今風高霜重單着布衫袴外實無絲身之策月受雇價之代以木綿磨鍊上下俾得掩體應役云云雖是寒節有難停役則亦脫匠募在所軫恤而許多木綿辦備無路上款役所買貢米三十朔條三千三百三十三右五斗自惠廳從庫中隨等除留其大每石木三疋依詳定價磨鍊以太作木條

除留者上下則在惠廳別無損益在役所爲用甚緊矣從之敎以今番則特爲**城役**所重有此許施而此非續續爲之者此後如値米木不得已互相換色儲留取用之事必經筵稟有文跡然後擧行一依諸道租年換作狀聞或報司稟處之例爲之事令廟堂該廳知悉
<일성록, 정조18년(1794) 9월 29일(계축)>

경제/재정

수원의 재결처리와 미곡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부(水原府)에서 재결(災結)을 배분하기 위해 추가로 청한 1144결(結) 5부(負) 6속(束)은 특별히 더 떼어 주고, 올해의 환향(還餉)과 신미(身米)는 가장 우심(尤甚)한 민호에 대해서는 절반을, 우심한 민호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지차(之次)인 민호에 대해서는 4분의 1을 정퇴(停退)하며, 올해의 환곡은 그에 상당하는 곡식으로 3분의 1까지 대신 바치게 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며, 진안(賑案)에 편입될 가난한 민호는 따로 뽑아내어 장계로 보고하되 경기 각 읍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였지만 수원부에서 장계로 청하는 데 들어가지 않았던 곳은 묘당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게 하고, 납미군(納米軍)에게 대전(代錢)하게 하는 일은 다시 유수(留守)로 하여금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게 하며, 이어 묘당에서 급대(給代)해야 할 수미(收米)가 얼마나 될지 미리 헤아리게 하라고 명하였다.

복 ○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의 장계에, "본부에서 재결로 잡아 원래 배분한 것 외에 더 해진 수효 1144결 5부 6속을 특별히 더 떼어 주어서 제때에 재결이 고루 배분되도록 하소서. 9월 22일의 윤음 가운데 부득이 정퇴해야 하는 것과 부득이 다른 것으로 대신 바치게 해야 하는 것은 등급을 나누어 장계로 보고하였습니다. 이곳과 저곳을 구분하는 것은 민호를 가려 뽑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고 전교하셨기 때문에 직접 민총(民摠)을 가지고 등급을 나누고 민호를 가려 뽑았습니다. 그 나머지 백성의 일은 조목조목 열거하여 보고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 뜻을 여쭈어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첫째, 올해의 환향과 신미는 가장 우심한 민호에 대해서는 절반을, 우심한 민호에 대해서는 3분의 1을, 지차인 민호에 대해서는 4분의 1을 정퇴하여 힘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 가운데 가장 빈궁하여 의지할 곳 없는 자는 진휼하여 구제하는 것이 급선무이므로 막 판관과 함께 충분히 상의하여 거행하였으니 차례차례 보고하겠습니다. 둘째, 본부는 평소 각 관사에 상납하는 전(錢)과 포(布)가 없고 각종 군정(軍丁)이 봉납(捧納)하는 신미는 장사(將士)들에게 급료로 지급하는 데 쓰이니 순전(純錢)으로 대신 바치게 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우심한 민호는 정퇴하는 이외의 나머지 수효에 대해 절반을 대전하게 하고 가장 우심한 민호도 아울러 대전하게 해 주되, 1말당 4전(錢)씩 준절(準折)하여 정하게 하소서. 셋째, 각종의 올해 환곡은 그에 상당하는 곡식으로 3분의 1까지 모두 대신 바치게 해 주소서. 넷째,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재결을 배분하는 것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해 주고 그 나머지 후록한 조건들도 이대로 시행하게 하라. 그중에서 가장 우심한 가운데 가장 우심하여 진안에 편입될 민호는 따로 뽑아내어 장계로 보고하되, 지척의 기내(畿內)에 대해서는 달리 더욱 유념해서 여러 가지로 특별히 견감하고 진휼해 주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본부처럼 중요한 곳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경기 각 읍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하였지만 본부에서 장계로 청하는 데 들어가지 않았던 곳은 묘당에서 다시 자세히 살펴서 일률적으로 시행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말을 만들어 알리도록 하라. - 경기 지역의 가장 우심한 곳에서 바쳐야 하

는 올해의 환곡에 대해 절반을 다른 것으로 대신 바치는 일은 우선 이대로 시행하게 하였다. - 납미군에게 한결같이 대전하게 하는 일은 급료를 지급하는 데 관계되므로 여타 각 읍의 규례를 쓰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유독 누락시키는 것도 매우 가련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다시 수신(守臣 유수)으로 하여금 의견을 갖추고 이치를 따져 장계로 보고하도록 분부하라. 이렇게 하면 산성(山城)의 향곡(餉穀) 가운데 정퇴(停退)해 준 것을 급대해야 하는데, 더구나 급대하지 않을 수 없는 수미의 경우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것은 묘당이 미리 유의해야 할 부분이니 아울러 잘 알게 하라." 하였다.

綱 命**水原府**俵災加請一千一百四十四結五負六束特爲加劃新還餉身米最尤甚戶折半尤甚戶三分一之次戶四分一停退新還以相當穀限三分一代捧推奴徵債限明秋防塞貧戶之將入賑案者別爲抄出狀聞畿甸各邑所已施而不入本府狀請者令廟堂更加看詳一例施行納米軍代錢事更令守臣論理狀聞仍令廟堂預商收米給代之需

目 該留守 **趙心泰**狀啓本府執災元分俵外加數一千一百四十四結五負六束特爲加劃以爲及時均俵之地九月二十二日綸音中不得不停退者不得不代捧者分等狀聞此疆爾界之區分莫要於抄戶爲敎故躬執民總分等抄戶其餘民事條列陳聞請令廟堂稟旨分付一新還餉身米最尤甚戶折半尤甚戶三分一之次戶四分一停退以爲紓力之地其中最貧窮無依者賑救爲急務方與判官爛商擧行鱗次登聞一本府素無各司所納錢布而各樣軍丁所捧身米係是將士給料之需純錢代捧其勢末由尤甚戶停退外餘數折半代錢最尤甚戶幷許代錢每斗四錢折定一各樣新還以相當穀限三分一幷許代捧一推奴徵債限明秋防塞敎以俵結依狀請許施其餘後錄條件亦令依此爲之其中最尤甚之最尤甚將入於賑案者別爲抄出狀聞而邦畿咫尺特加垂念有諸般拔例蠲恤之擧況本府所重乎已施於畿甸各邑而不入於本府狀請者令廟堂更加看詳一例施行之意措辭行會 畿甸最尤甚處新還折半代捧故依此施行至於納米軍之一幷代錢一款係是支放所需有難用他各邑之例獨漏亦甚可矜如何爲可更令守臣具意見論理狀聞事分付若此則城餉之停退者當給代況收米之尤不可不給代者乎此則廟堂預加留意處幷令知悉

<일성록, 정조18년(1794) 10월 11일(을축)>

경제/재정

수원부 소재 곡식을 총융청으로 이속시켜 운영한 일을 논의하다

강 경기 감사가 청한 총융청이 별도로 무미(貿米)한 군향(軍餉)의 원곡(元穀)은 전(錢)으로 바꾸어 거둔 다음 내년 가을을 기다려 작미(作米)하게 하고, 삭녕군(朔寧郡) 소재 각 아문의 직환(稷還)은 전으로 대신 바치게 해 준 다음 열읍(列邑)에 나누어 주고 내년 가을이 되거든 작조(作租)하게 하며, 칙수전(勅需錢)은 우선 몇 년 동안 기한을 늦추어 주고 원곡에 조금 여유가 생기면 도로 진휼청에 갚게 하고, 강도미(江都米)의 이전조(移轉條) 가운데 3000섬까지 금천현(衿川縣)에 떼어 준 다음 모곡(耗穀)을 취하여 관청 건물을 수리하고 새로 만든 도로를 보수하는 등의 공역(工役)에 쓰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셋째, 지난 정미년(1787, 정조11)에 본도의 칙수곡(勅需穀)을 처음 설치할 때 그 당시의 도신(道臣)이 연석에서 여쭈고 진휼청의 돈 1만 냥을 청해 얻은 다음 7000섬으로 작곡(作穀)하여 매년 모곡(耗穀)을 취하되 8년이 되면 비로소 그 본전(本錢)을 갚고, 그 나머지 곡식을 '영칙수(營勅需)'라고 이름 붙여 칙사가 왔을 때 들어가야 하는 비용으로 원래 회감(會減)하는 것 외에 부득이 영문에서 써야 할 경비의 재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금년이 벌써 8년의 기한이 되므로 의당 처음에 정한 정식대로 준하여 갚아야 하는데, 당초의 절목 가운데 미처 입록(入錄)하지 못한 열읍 각 역참(驛站)에 소속된 감색(監色)의 요미(料米)를 모두 이 중에서 마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 밖에 **수원부(水原府)** 소재 각 곡식을 옮겨 군

향(軍餉)으로 만들거나 광릉(光陵)에 행행(幸行)할 때 양주(楊州)와 포천(抱川) 두 읍에 모조(耗條)를 회감해 주는 등의 일 때문에 자연 감축되어 현재의 수효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만일 수량대로 본전을 갚게 되면 앞으로 필요한 경비에 반드시 어려움이 생길 것이니, 진휼청의 돈을 특별히 10년까지 그대로 빌려 써서 원곡에 조금 여유가 생긴 뒤 도로 갚을 수 있게 해 주소서. (…) 전교하기를, "총융청이 별도로 무미(貿米)한 향곡(餉穀)을 우선 전으로 대신 납부하게 하는 일, 칙수전에 대해 늦추어 주는 일, 강도미(江都米)의 이전조(移轉條)를 떼어서 금천현에 소속시키는 일은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고, 삭녕군의 직환(稷還)은 비록 1만 섬에 이르더라도 한결같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도록 아울러 묘당으로 하여금 즉시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綱 (…) 其一往在丁未年本道勅需穀創始也其時道臣筵稟請得賑廳錢一萬兩作穀七千石年年取耗待到八年始爲還報其本錢以其餘穀名曰營勅需作爲勅行時應入元會減外不得不自營門需用之資今年旣當八年之限所當依初定式準報而當初節目中未及入錄之列邑各站監色料米皆於此中磨鍊上下其外水原府所在各穀之移作軍餉光陵幸行時楊州 抱川兩邑耗條會減等事自爾見縮目下數爻差違初料今若準報本錢則來頭需用必致苟艱賑廳錢特令限十年仍貸以爲元穀稍裕後還報之地 (…) 敎以總戎廳別貿餉穀姑令以錢代納事勅需錢寬限事沁都米移轉條劃屬事竝依狀請施行朔寧稷還雖至萬石一從民願爲之事竝令廟堂郎爲分付

<일성록, 정조18년(1794) 10월 13일(정묘)>

경제/재정

총융청이 수원에서 받아오던 월과미 문제를 논의하다

강 총융청이 유향미(留餉米)를 가져다 방료(放料)로 쓰기를 청하여, 묘당이 전전(前前) 총융사에게 물은 다음 이치를 따져 내게 물어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목 (…) 또 아뢰기를, "초기에 대한 비지에, 이치를 따져 보고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올봄의 이전(移轉)과 관련한 절목 중에 '봉류(捧留)하거나 대전(代錢)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다른 아문의 곡물로 변통하여 급대하라.' 라고 계하하여 정식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월과미는 수원에서 받아 오던 것을 선혜청에서 급대하는 몫으로 해마다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것인데도 미리 지불한다는 이유로 선혜청에게 저지당하였고, 원곡을 각 고을에 봉류해 둘 때에도 모조만은 총융청으로 실어 오게 한 것은 급료로 지불할 수량이 부족할까 염려해서였는데 백성에게 폐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경기 감영에게 저지당하였으니, 실로 달리 손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유고조를 변통하는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유향미의 체모가 엄중할 뿐만이 아니지만 그간의 사정이 전과는 크게 달라 보환(保還)을 분급할 때 전(錢)으로 대신 유고해 두었다가 봄에 환곡을 나누고 가을에 환곡을 거두어들일 때에 도로 본미(本米)로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향곡을 모두 이전한 뒤이므로 본영에는 더 이상 환곡으로 나누어 줄 곡물이 없어서, 앞으로 돈을 곡물로 바꾸어 포흠 난 것을 보충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감히 진달하여 청할 엄두를 내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번에 비지에서 전교하신 내용이 매우 간곡하니 신이 어찌 감히 유향의 체모가 중하다는 이유로 덕의(德意)를 우러러 따를 방도를 생각지 않겠습니까. 우선 유고곡 1만 6000섬 중에서 1년 치 요미조를 헤아려 덜어내 가져다 쓰고, 전으로 대신 남겨 두었다가 가을에 도로 본미로 바꾸는 방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편의(便宜)할 듯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 뜻을 여쭈어 분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일전에 연석에서 경이 상주하는 말을 듣고 유고조 중에서 가져다 쓰는

것으로 이미 하교하였다. 내 뜻은 처음부터 그러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초기하였으니, 묘당으로 하여금 전전 총융사에게 물은 다음 이치를 따져 초기하여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綱 總戎廳請就留餉取用放料命廟堂問前前總使論理稟處

目 (…) 又啓言草記批旨有論理之命矣今春移轉節目中或有捧留代錢之時以他衙門穀推移給代事已爲啓下定式月課米卽**水原**給代條之逐年應下者而以其預下見阻於惠廳元穀捧留之時輸納耗條爲慮支放不足而以其民弊見阻於畿營實無他措手之道惟有留庫條推移一路非但留餉之事體嚴重其間事情與前大異保還分給之時以錢代留及當春糶秋糴還作本米矣今則餉穀盡爲移轉之後自臣營更無還分之穀物前頭之錢化爲穀充補欠逋將無其路此所以不敢爲陳請之計者也今者批敎若是諄複臣何敢以留餉之體重不思仰體德意之道乎姑就留庫一萬六千石中量其一年科條除出取用以錢代留還作本米之道從後更商處之似合使宜請令廟堂稟旨分付敎以日前筵中聞卿所奏以留庫條取用已有下敎者矣予意則自初如此以此草記令廟堂問于前前總使論理草記稟處

<일성록, 정조18년(1794) 10월 22일(병자)>

경제/재정

수원의 성역과 관련한 제반 문제를 논의하다

강 희정당(熙政堂)에서 대신(大臣)과 비변사 당상 및 윤대관(輪對官)을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에게 이르기를, "지난날 경모궁(景慕宮)에서 재계를 할 때 **화성**의 역사(役事)와 관련하여 물어본 것이 있었는데, 견해가 달라 하나로 결론짓지 못하였다. 이런 큰일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절기는 한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역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성 남문과 북문의 공사가 종결된 뒤에 재력이 좀 갖추어지기를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굳혔다. 준천(濬川)하는 일은 성역과 비교할 때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런데도 선조(先朝)에서는 두 번 세 번 백성들에게 여러 번 윤음을 내리셨다. 나는 **화성**의 성역에 대해 한 번도 일의 본말을 펴 보인 적이 없었다마는 지금 중도에 정지하고자 문자로 포고(布告)를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또한 우러러 선조의 뜻을 받드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여긴다. 경들은 여러 재신들과 각기 소견을 진달하라. 지난번에 중론이 일치하지 않은 것들을 오늘은 일치시켜 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는 윤음 한 통을 내주라고 명하였다. 부제조 윤행임(尹行恁)에게 읽게 하고 다 읽은 다음, 내가 이르기를, "내가 고심하는 것이 이와 같다.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채제공은 아뢰기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달리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좌의정 김이소(金履素)는 아뢰기를, "지금 생각해 보니, 신이 지난번에 아뢴 말씀은 한때의 얕은 소견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 윤음을 받들고 보니 전하의 지극한 정성과 측은히 여기시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실로 백성을 위하는 전하의 성스러운 덕을 우러르게 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과연 이전의 견해를 바꾸는 것인가?" 하니, 김이소는 아뢰기를, "이 공사는 백성을 부리는 공사가 아닌 만큼 흉년이라 해서 갑자기 중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에 그렇게 아뢰었던 것인데, 지금 삼가 윤음을 받들고 보니 더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이병모(李秉模)는 아뢰기를, "이 공사는 소중한 분을 위해 축성하는 것이고 정지하는 것 또한 전하의 성대한 덕입니다. 수백 마디나 되는 윤음을 받들어 읽어 보니, 이

는 바로 지난번에 하교하신 두 구절의 내용을 부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지난날 아뢴 것은 창졸간에 답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말이었던 만큼 신의 소견은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영중추부사 채제공은 아뢰기를, "삼가 윤음을 받들어 보니, 위로 자전과 자궁에 올리는 일상적인 공상(供上)마저 줄였다는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군사들에게 벼나 보리조차 밟지 못하게 했던 선왕의 성덕을 인용하기까지 하셨으니 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떠하다 하겠습니까. 비록 구황 정책에 대해 말하더라도 팔도의 굶주린 백성들이 어찌 모두 이 공사를 통해 먹고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구중궁궐의 광명한 불빛은 비추지 않는 곳이 없으니 공명정대한 의리와 지극하고 간절한 정성을 신이 받들어 따르지 않는다면 신은 옳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평지에서의 성역은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흙을 져 날라 품팔이하는 이들이나 술과 음식을 팔아 살아가는 부류들에 대해서는 유사(有司)가 편의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사람들이 모두 '이제 와서 갑자기 공사를 중지하면 다시 거행하기가 어렵다.' 한다. 그러나 사리를 따져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경이 이제 내 뜻을 따르겠다고 하니, '군대는 명분(名分)이 바르면 씩씩해진다.' 라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영중추부사의 말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내린 윤음 중의 많은 말씀들은 요컨대 경모궁에서 재계하던 때의 간략하고도 극진했던 처음 전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꼭 윤음을 받든 뒤에야 비로소 전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영중추부사는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내 말이 명분에 맞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영중추부사가 내 뜻을 따르기로 한 것은 실로 노성(老成)한 사람의 논의요, 경이 지난번의 견해를 고수하는 것도 매우 훌륭하다고 여긴다. 처음에는 비록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윤음 한 통을 여러 재신에게 내리도록 명하여 반시(頒示)하였다. 그런 뒤에, 호조 판서 심이지(沈頤之) 등이 차례로 나아와 아뢰었다. 내가 이르기를, "대신도 이미 별다른 이론(異論)이 없다고 하였다. 유수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신이 어찌 감히 중간에서 가타부타 말을 하겠습니까. 단지 마땅히 거행할 뿐입니다. 지금 비록 공사는 중지하더라도 남문과 북문 주변의 성역은 2, 3월이면 종결될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저께 유수의 말을 들으니, 양 군영의 정번미(停番米)가 과연 남아 있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금위영과 어영청으로 하여금 각각 1000섬씩을 **화성** 역소에다 떼어 주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지금처럼 쌀값이 금값일 시기에 쌀로 지급한다면 그들에게는 매우 편하고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땅이 녹은 후에 후탁의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 두면 10년 후에는 수확이 만 섬에 달할 것이라고 하니 이것은 만 명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성을 지키는 대비책으로 말하자면 어찌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내년이 되어야 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성과를 볼 날이 요원하니 사람들이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다. 성가퀴가 당장 쳐다보기에는 훌륭하겠지만 어찌 후탁을 마련하는 공사를 통해 공력을 조금 들이고도 큰 성과를 얻는 것만 하겠는가. 조충국(趙充國)이 둔전(屯田)을 시행하여 금성(金城)을 지

킬 방략으로 올린 것도 그러한 것이었다. 대체로 국경 밖의 모든 일은 장군이 제어하게 하는 것처럼, 재력의 출입을 묻지 않고 공사할 때의 근만(勤慢)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고 편의에 따라 거행하도록 맡겨 두었기 때문에 이처럼 속히 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내 평소에 본부를 의탁할 장소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하루 치의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올 때마다 하루가 즐거웠다. 그런데 지금 곳곳마다 재해를 당하여 백성들이 안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성역을 그만두지 않는다면 혹 이런저런 원망하는 소리가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성역에 애를 썼던 공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것이 공사를 중지하려는 논의를 제기한 이유이지, 또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경은 부디 내 뜻을 잘 알고서 편의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

綱 召見大臣備堂及輪對官于熙政堂

目 (…) 予謂**水原留守** **趙心泰**曰向日宮齊以**城役**事有所詢問而所見參差可否不一此等大事不害有異同之論矣節屆降冬役事浩繁南北**城役**了當之後則少待財力之可辦爲之未晩予見斷斷如是矣濬川比**城役**輕重何如而先朝再三臨民屢下綸音予於**華城**之役則一未嘗敷示其本末矣今欲中停故爲文字布告予則謂此亦仰述之一端也卿等與諸宰各陳所見向來衆論之不一者今日歸一可也命出綸音一通敎副提調 尹行恁讀奏訖予曰予之苦心如是卿等以爲如何**濟恭**曰至矣盡矣無他仰達之辭矣左議政金履素曰臣之向來所奏到今思之不過一時淺見及奉綸音至誠懇惻實仰爲民之聖德矣予曰然則果變前見矣履素曰是役非役民之役不必以荒年遽停故前日有所陳達而今伏奉綸音更無可達之辭矣右議政 李秉模曰是役也築爲所重停亦盛德奉讀屢百言絲綸此是向來下敎二句中敷衍出來者也臣之向日所奏有所商量非倉卒仰對者臣見無異於前矣**濟恭**曰伏奉綸音上減殿宮之常供至引勿踐禾麥之睿德所重尤如何雖以捄荒爲言八道飢口豈盡仰哺於是役哉九重光明之燭無所不照義理正大至誠懇惻臣若不爲將順則臣是不韙之人然平地**城役**不可仍置負土雇價酒食資生之類則有司之臣便宜爲之似好矣予曰人皆謂到今遽停再擧爲難云而參究事理未必其然卿今將順可謂師直爲壯秉模曰領府之言恐不然矣今日綸音中千言萬語要不出宮齊初敎之略而盡何必於奉綸音之後始可仰度聖意耶予曰領府亦是好名之人予言豈不師直也予曰領府之將順實是老成之論也卿之固守前見亦覺更好始雖參差卒乃爛漫甚可幸也命下綸音一通於諸宰頒示後戶曹判書 沈頤之等以次進奏訖予曰大臣旣無異同之論留守之意何如心泰曰臣何敢可否於其間乎但當擧行而已今雖停役南北城了當似在二三月矣予曰再昨聞留守言則兩營停番米果有剩置者云使各其營千石式付諸**城役**似好矣**濟恭**曰顧今米貴如金之時以米給之則在渠輩極甚便好矣予曰解凍後後托事不可不始十年後則將至萬石云是固萬人足食之糧也以守城之備言之豈曰無少補哉心泰曰明年始可作畓矣予曰久遠之效人未易信雉堞雖有目前觀瞻之美豈若後托役之事半功倍者耶趙充國 金城方略亦如是大抵閫以外將軍制之不問財力之出入不考工役之勤慢任其便宜擧行也故乃能速就予常以本府爲依歸之所若奏一日之功則便作一日之喜而目今災荒溢目民不奠居以不撤**城役**或不無有云云之說然則安有衆心成城之效乎此所以有停役之論而亦非爲浮費而然也卿須體念便宜爲之也 (…)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1일(을유)>

경제/재정

평안병영의 돈을 화성 역소로 보내는 문제를 논의하다

강 평안 병영은 다달이 마련하여 모은 돈 2만 냥을 **화성**의 역소(役所)로 실어 보내고, 금위영과 어영청 두 병영에서는 정번(停番)한 향군(鄕軍)의 요미(料米) 2000섬을 역소에서 가져다 쓰게 내주라고 명하였다.

목 ○ 영중추부사 채제공이 아뢰기를, "**화성**의 성역을 정지하라고 윤음을 내리셨으니, 신

은 의당 따를 뿐 감히 다른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남문루(南門樓)와 북문루**가 이미 창건되었고 양쪽 평지에 성가퀴를 세우는 일도 거의 자리가 잡혔습니다. 이는 산 위에서 하는 일과는 달라서 쌓는 일을 마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재력이 부족합니다. 평안 병영의 묵은 포흠조를 신해년(1791, 정조15) 봄부터 평안 병영으로 하여금 다달이 400냥씩 갖추어 내게 하였으니, 한 해에 5000냥이 모이게 되고 지금 4년이 흘렀으므로 2만 냥이 됩니다. 우선 이달 안으로 역소(役所)에 수송하여 납부하게 하소서. 그리고 4년 뒤에 또 전처럼 보충하게 하라는 내용으로 수신(帥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화성** 역소의 미조(米條)는 더욱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금위영과 어영청 두 영문의 향군에 대해 이미 정번하게 하였으니, 보릿가을인 6월이나 7월까지의 요미로 비축된 것을 양 병영에서는 각각 1000섬에 한하여 역소에서 가져다 쓰도록 내주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平安兵營月備錢二萬兩輸送于**華城役**所禁御兩營停番軍料米二千石自役所取用

목 領府事 **蔡濟恭**啓言**華城**停役綸音誕降臣當將順而已不敢更陳而第南北門樓旣已創建兩傍平地城堞幾皆就緖此與山上之役有異不可不畢築而財力垂乏平安兵營舊逋條自辛亥春使該營月備四百兩歲準五千之數今爲四年則當爲二萬兩爲先今月內使之輸納於役所又退四年如前充補之意請分付帥臣從之又啓言**城役**所米條尤艱禁御兩營鄕軍旣已停番限麥秋六七朔之間料米之留儲者兩營各限一千石自役所取用爲宜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1일(을유)>

경제/재정

수원부에게 대동미 1400섬을 떼어주다

강 **수원부**가 작년에 봉류(捧留)해 두었던 대동미 1400섬을 특별히 떼어 주어 본부의 경비로 보태 쓰게 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대전(代錢)으로 봉류하도록 허락하였다.

목 ○ 비국이 아뢰기를, "방금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의 장계를 보니, '본부의 가장 우심(尤甚)한 재해를 입은 의지할 데 없는 백성 650구(口)가 먹을 곡물을 겨울철에 맞추어 편리한 대로 공급하고, 환곡(還穀)과 진곡(賑穀)을 분류하여 1월 초순(初巡) 때부터 진휼을 한 다음 기구(飢口)의 총수와 나누어 준 곡물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함으로써 기민을 구휼하는 방도로 삼겠습니다. 여러 가지 납부미(納付米)는 이미 군교(軍校)들에게 지급할 급료(給料)로 책정되어 있거늘, 금년에 장계를 올려 청한 원래의 정퇴조(停退條) 및 대전조(代錢條)가 총 916섬 남짓입니다. 지금 기전(畿甸)의 예에 의거하여 지차(之次)와 우심(尤甚)인 지역에도 대전으로 납부할 것을 허락한다면 부족한 미(米)가 총 1902섬 남짓이 됩니다. 500섬은 본영에서 마련하여 급료를 지급하는 데 보태 쓰려고 합니다마는 이외의 부족한 수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작년에 봉류해 두었던 대동미 1400섬을 특별히 떼어 준다면 삼가 분배해서 지급하는 일이 곤란하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떼어 준 대동미에 대한 대전은 1섬당 6냥으로 쳐서 총 8400냥을 대전으로 봉류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 뜻을 여쭈어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군교에게 지급하는 급료는 전적으로 여러 가지 납부미에 의존하는데 대전이 이미 많아서 급료를 지급할 수가 없으니, 지금 이렇게 봉류해 둔 대동미 1400섬을 떼어 달라고 청한 것은 이보다 나은 계책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전한 것은 돈으로 봉류해 두었다가 앞으로 편의대로 작미(作米)하거나 돈으로 필요한 데에 쓰도록 해도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모두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綱 命水原府昨年捧留大同米一千四百石特爲劃付以補本府支放仍許以錢代留

目 備局啓言卽見水原留守 趙心泰狀啓則以爲本府最尤甚無依之民六百五十口拮据穀物趁冬節從便接濟正月初巡爲始分劈還賑飢口都數穀物追後登聞以爲賙賑之地至於諸般納米旣係軍校支放之需而今年狀請元停代及代錢條合爲九百十六石零今依畿甸例之次尤甚又許代錢則米邊不足合爲一千九百二石零而五百石則自本營方擬牽補支放此外不足之數本府昨年捧留大同米一千四百石特許劃付則謹當分排支計不至艱乏而代錢每石六兩合八千四百兩以錢代留事請令廟堂稟旨分付矣本府支放全資於諸般納米而代錢旣多無以支放則今此捧留大同米一千四百石許劃之請可謂計無出此至於代錢則以錢捧留以爲來頭從便作米或以錢需用之地俱無不可請竝依狀請施行允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4일(무자)>

경제/재정

화성 소속 해안가 언답(堰畓) 문제를 논의하다

강 화성유수는 화성(華城)에 소속된 인천(仁川)과 안산(安山) 사이의 언답(堰畓)에 대해 사실대로 세금을 매기라고 명하였다. 이어 경기 감사로 하여금 세전(歲前)이든 세후(歲後)든 상관하지 말고 백성들 형편의 완급을 살펴 편의대로 빈호(貧戶)를 뽑아 진휼하게 하고, 총융청에 신칙하여 인천에서 둔세(屯稅)를 지나치게 거두는 폐단을 엄히 금지시키게 하고, 해당 둔감(屯監)은 법사(法司)로 넘겨 조율(照律)하게 하였다. 이어 해당 장신(將臣) 신대현(申大顯)과 해당 도신 서용보(徐龍輔)를 추고(推考)하였다.

목 ○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금천(衿川) 등 4개 읍의 어사 유사모(柳師模)의 서계에서, 화성에 소속된 인천과 안산 사이 언답의 농작물들만 말라비틀어지는 상해를 특히 심하게 입었으나 수령이 마음대로 재결을 인정해 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화성유수에게 분부하여 사실대로 세금을 매기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각 도(道)에서 흉년을 보고해 온 정도가 차등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황급한 상황으로는 진정(賑政)의 시행을 내년 봄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고 하니, 세전이든 세후든 막론하고 빈호를 뽑아 진휼하는 일을 도신에게 맡겨서 백성들 형편의 완급을 자세히 살펴 편의대로 구휼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천 지역의 총융청 둔감이 세곡(稅穀)을 지나치게 거둔 일은, 총융청에 분부하여 각별히 엄히 금지하게 하고 해당 둔감에 대해서는 총융청에서 조사하여 신문한 다음 법사로 넘겨 조율하며, 신칙하지 못한 장신과 살피지 못한 도신은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華城留守 仁川 安山堰畓之屬華城者從實執卜仍令畿伯無論歲前後察民勢緩急從便抄賑飭總廳嚴禁仁川屯稅濫徵之弊該屯監移法司照律仍推該將臣申大顯該道臣 徐龍輔

목 左議政 金履素啓言衿川等四邑御史 柳師模書啓中仁川 安山堰畓之屬華城者偏受枯傷而土在之官不得任意給災云此則分付華城留守從實執卜爲宜各道告歉雖有差等以今遑急賑政不可遲待開春云無論歲前後抄賑事付之道臣審察民勢緩急從便救恤爲宜仁川地總廳屯監濫徵稅穀事分付該廳各別嚴禁該屯監查問該廳移法司照律不飭之將臣不察之道臣請重推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16일(경자)>

경제/재정

상실과 송자(松子)를 더 이상 여러 도에 요청하지 말라고 화성유수에게 명하다

강 가평군(加平郡)의 환곡과 신포를, 우심과 지차로 뽑힌 민호 중에서 차례로 뽑아 올려 분수(分數)를 정하여 정퇴하되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살펴 거행하게 하고, 양근군(楊根郡)

의 상의원(尙衣院) 시장(柴場)에서의 수세(收稅)와 사옹원 분원의 세미(稅米)와 본 고을 호역(戶役)에 대한 일은 각 해당 아문에 분부하여 도백과 상의하고 관문(關文)으로 물어 해당 군에 폐단이 없게 하고, 금위영과 어영청 소속의 양근과 가평 두 고을의 포보(砲保)에 대한 정전(情錢)은 절목에 의거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으며, 수어청에서 양근의 노(奴)인 아병(牙兵)의 신미(身米)를 더 거둔 일은 즉시 바로잡도록 하고, 양근에서 납부하는 상실(橡實)과 생갈(生葛)에 대해 정채를 징수한 일은 찾아내 민간에 지급하고 해당 수령은 적발하여 논죄하고, 비변사로 하여금 관문으로 관동(關東)과 양남(兩南)에 폐해가 되고 있는 곡절을 묻도록 하였다. 이어 **화성유수**는 상실과 송자(松子)를 더 이상 여러 도에 요청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목 ○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양근 등 2개 읍의 어사 정만석(鄭晩錫)의 서계에서 논한, 가평의 환곡과 신포를 우심과 지차로 뽑힌 민호 중에서 차례로 뽑아 올려 분수를 정하여 정퇴해 주는 일을 도신으로 하여금 다시 더 자세히 살펴 편리한 대로 거행하게 하소서. 양근의 서종면(西終面)에 있는 상의원의 시장에서 세금을 너무 지나치게 거두는 일과 남종면(南終面)에서 사옹원 분원에 내는 세미(稅米)와 본 고을의 호역에 대한 일은 각 해당 아문에 분부하여 도백과 상의하도록 하고, 이어 또 관문으로 해당 군에 물어 폐단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양근과 가평의 포보 및 금위영과 어영청 소속 군보(軍保)의 정채(情債) 액수가 다른 곳에 비해 불공평한 일은, 인정가(人情價)와 잡비(雜費)는 원래 절목과 정식이 있으니, 절목대로 시행하여 혹시라도 지나치게 거두는 일이 없게 하라고 각 영문(營門)에 분부하소서. 양근에 있는 수어청의 노(奴)인 아병에게 신미를 1말씩 더 거둔 일은, 수어청으로 하여금 즉시 바로잡아 그들만 지나치게 고통을 겪는 폐단이 없게 하소서. 양근에서 납부하는 상실과 생갈 등에 대해 정채를 징수하는 일은, 연전에 기내(畿內) 여러 고을에 이 일로 거듭 엄하게 신칙하여 금지하였는데 신칙한 글의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또 이런 일이 드러났으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도신에게 분부하여 각별히 엄하게 조사하여 일일이 찾아내 돌려주게 한 뒤에, 해당 수령은 적발하여 논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상실과 생갈에 대한 일은 전에 신칙하여 금지한 것이 어떠했는가. 더구나 소중한 분을 위한 일이므로 반드시 그 값을 후하게 지급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고자 한 데에야 말할 것이 있는가. 양근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관동의 어떤 고을과 양남의 병영과 수영이 관할하는 곳도 모두 그렇다고 한다. 양근에는 우선 도신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게 하고 삼도(三道)에는 본사(本司)에서 별도의 관문을 보내 알리게 하라. 폐단이 되는 곡절을 조정에서 이미 잘 알고 있으니 감히 속이거나 숨길 수 없을 것이다. 강원 감사 및 양도의 수신(帥臣)으로 하여금 우선 사실대로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지금은 **현륭원(顯隆園)** 조성을 위해 나무 심는 일을 거의 다 했으니 다시는 상실과 송자를 여러 도에 요구하지 말라고 관문으로 **화성유수**에게 신칙하도록 하라." 하였다.

강 命加平郡還布尤甚之次中以次抄上分數停退令 道臣詳察擧行楊根郡 尙方紫場收稅分院稅米本邑戶役事分付各該衙門與道伯相議關問該郡俾無弊端禁御營楊加兩邑砲保情錢依節目施行守禦廳楊根奴牙兵身米加捧事劃卽釐正楊根所納橡實 生葛徵價事推給民間當該守令摘發論罪令備邊司關問關東 兩南爲弊委折仍命**華城留守** 橡實松子更勿求請諸道

목 左議政 金履素啓言楊根等兩邑御史 鄭晩錫書啓中加平還布更於尤甚之次中次次抄上分數停退事令道臣更加詳察從便擧行楊根西終面 所在尙方紫場收稅太過事南終面分院稅米與本邑戶役事分付各該衙門與道伯相議仍又關問該郡俾無貽弊之端楊加兩邑砲保禁御營保情錢多寡不均事人情雜

費自有節目定式依節目施行無或濫觴之意分付各營門楊根所在守禦廳奴牙兵身米加捧一斗事令該廳卽爲釐正俾無偏苦之弊楊根所納橡實 生葛等徵價年前畿內諸邑以此飭禁不啻申嚴則飭墨未乾又此現發極爲駭然請分付道臣各別嚴覈一一惟給後當該守令摘發論罪從之敎以橡實 生葛事前此飭禁何如且況爲所重必欲厚給其價民不受弊則不但楊根爲然關東某某邑兩南兵水營所營皆若此去楊根則爲先令道臣査問狀聞三道則自本司別關行會爲弊委折朝家已稔知無敢欺隱令東伯及兩道帥臣首實狀聞今則植木幾皆爲之更勿以橡實松子求請於諸道事關飭華留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16일(경자)>

⑵ 교통

경제/교통

수원부 군문에서 쓰는 말에 대해 논의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도감 당상 서유린(徐有隣)과 정민시(鄭民始)를 소견하였다.

목 서유린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각 군문의 복마는 먼 지방에서 입파(立把)하여 대령하는 폐단이 있으니 이번에는 제감(除減)하고, 모든 사역에 관계된 것은 **수원부(水原府)**에서 고립(雇立)한 말을 가져다 쓰되 고가(雇價)는 회부곡(會簿穀)으로 회감(會減)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綱 召見都監堂上徐有隣 鄭民始于重熙堂

目 有隣啓言 (…) 又啓言各軍門卜馬遠地立待有弊今番則除減凡干使役以**水原府**雇馬取用而雇價則以會簿穀會減之意請分付從之 (…)

<일성록, 정조13년(1789) 7월 28일(임자)>

경제/교통

수원의 온행시 교통로 정비 문제를 논의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수원(水原)** 등 3개 읍의 암행 어사(暗行御史) 유문양(柳文養)·서영보(徐榮輔)를 소견하였다.

목 ○ 유문양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행행(幸行)할 때 도로(道路)를 정비하는 일과 교량(橋梁)을 축조하는 일은 본래 농부(農夫)가 당연히 행해야 할 일이나, 이번에는 조정에서 특별히 별례(別例)를 시행하여 쌀과 돈을 넉넉히 지급하였으므로, 100여 리(里) 되는 지역의 시골 장정과 농부가 모두 감축(感祝)하였습니다. 다만 듣건대, 농부 등이 '도로를 정비할 때 길가의 전답(田畓)이 길 안으로 많이 편입되었으므로 현재 가본(價本)을 마련하여 제급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였습니다. 생각건대, 어로(御路)의 넓이는 본래 정해진 파수(把數)가 있으며, 과천에서 **수원**까지는 바로 온행할 때의 직로(直路)입니다. 애당초 길을 낼 때에 한계를 정해 놓았으나 세월이 점차 오래되자 백성들이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점차 불법으로 경작하여 길이 좁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영여를 봉안할 때 길을 정비한 것도 그 옛길을 복구하여 규식에 맞추어 정비한 것에 지나지 않은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로가 민전(民田)에 혼입(混入)된 것을 전혀 모르고 도리어 민전이 어로에 혼입되었다고 생각하여 이처럼 가본을 받으려는 망녕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로에 불법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그 형률(刑律)이 가볍지 않습니다. 이제 밭주인이 누차 바뀌고 난 뒤에는 일일이 소급해서 밝혀내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어찌 그들의 뜻에 따라 가본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로(沿路)에서 본 것을 가지고 말을 하면, 원래 정해진 6파(把) 외에 간혹 밭을 침범하여 길을 넓힌 곳도 있었습니다. 이는 일의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구별을 하여 임시로 낸 길과 새로 낸 길에 혼입된 곳까지 아울러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여 전처럼 경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체로 민정(民情)이 이와 같은 상황이고 보면, 당초의 어로에 불법으로 경작한 것을 구실로 삼아서 그들의 희망을 꺾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건대, 행행할 때 도로를 정비할 경우에는 6파의 정식을 채우지 않더라도, 기마(騎馬) 5줄의 대열을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3개 읍의 지방관으로 하여금 이로써 기준을 삼아서 한계를 개정하게 하고, 이 외에 남는 땅도 농민에게 경작해서 먹고살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차라리 정당한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한 취지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거조를 내어 기백으로 하여금 편리한 대로 조치한 뒤에 상황을 장문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綱 召見水原等三邑暗行御史 柳文養 徐榮輔于重熙堂

目 文養啓言今番奉輿時及動駕時京鄕軍兵別無大段弊瘼而果川縣奉輿時館舍所設甲帳及環衛軍兵自鎭撫營 管理營分半擧行鎭撫營校卒九十名則每名齎送糧資一兩錢管理營校卒五十餘名則每名齎送糧資二兩錢客地留連糧資已竭百餘部甲帳之回還馱價亦無出處似不無彷徨愁歎之色臣謂回還馱價及留回糧不足者特令兩都守臣一一題給俾無呼冤之端似好矣敎以所奏甚好出擧條擧行後形止斯速狀聞又啓言幸行時道路修治橋梁造築自是田夫應行之役而今番則自朝家特施別例優給米錢百餘里之間村丁田夫莫不感祝而竊聞田夫等以爲治道時路傍田畓多入其中方俟價本之磨鍊題給云第念御路廣袤自有把數自果川至水原卽溫幸時直路也當初作路界限已定而歲月寢久民不畏法漸次犯耕以至狹窄今番奉輿時亦不過復其舊路準式修治則愚民輩全昧御路之混入於民田反謂民田之混入於御路有此受價之妄想御路犯耕其律不輕今於屢易田主之後雖難一一追究又豈可從以給價哉然以沿路所見言之元定六把之外間或有犯田廣拓之處雖以事勢不得不然此則宜令區別竝與權作路新作路處還屬本主如前耕墾而大抵民情旣如此則不可以當初御路之犯耕爲說以缺其望且念幸行時治道雖不滿六把之定式亦可容五騎之成列臣意則宜令三邑地方官以此爲準改定界限外此餘地亦許田民耕食不害爲寧失之義矣敎以出擧條令畿伯從便措置後形止狀聞事分付

<일성록, 정조13년(1789) 10월 10일(임술)>

경제/교통

분양마(分養馬) 관리에 소홀한 수원의 수령을 논죄하다.

강 태복시(太僕寺)의 분양마(分養馬)가 죽거나 비쩍 마르거나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았으면 그 수령을 차례로 논죄하라고 명하였다.

목 ○ 태복시가 아뢰기를, “법전에 ‘분양마가 죽거나 비쩍 마르거나 제대로 길들여지지 않았으면 수령을 논죄한다.’는 조목의 주(註)에 ‘1필(匹)이면 엄하게 추고하고, 2필이면 한 자급(資級)을 강등하고, 3필이면 두 자급을 강등하고, 4필이면 파직한다. 분양마가 죽거나 비쩍 마른 이유로 응당 두 자급을 강등해야 할 경우 당상은 자급을 강등하고 당하는 월록(越祿)한다. 해읍(該邑) 수령과 겸관(兼官)이 모두 유고(有故)하여 대행한 유향소(留鄕所)의 해당자가 있으면 그 죽은 말의 값을 추징하고, 비쩍 마른 경우에는 해당자를 다른 고을로 옮겨 형추하도록 한다.’ 하였습니다. 기유년(1789, 정조13)의 탈이 있는 각 고을에 대한 계목(啓目)을 후록(後錄)하니,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계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기는, 음죽(陰竹)은 1필이 병들어 상하고 수령이 최재수(崔在修)이며, 죽산(竹山)은 1필은 병들어 상하고 1필은 죽고 이상열(李尙說)이며, 마전(麻田)은 1필이 마르고 한문홍(韓文洪)이며, 안산(安山)은 1필이 죽고 이유칭(李惟稱)이며, 양근(楊根)은 1필이 죽고 유득공(柳得恭)이며, 지평(砥平)은 1필이 죽고 박영원(朴英源)이며, 여주(驪州)는 2필이 죽고 권이강(權以綱)이며, 영평(永平)은 1필이 죽고 이명섬(李命暹)이며, 수원(水原)은 1필이 죽고 김노영(金魯永)이며 (…)

綱 命太僕分養馬故失瘦瘠不馴守令以次論罪

目 司僕寺啓言法典內分養馬故失瘦瘠不馴守令論罪註曰一匹重推二匹降一資三匹降二資四匹罷職故失瘦瘠應降二資則堂上降資堂下越祿該邑守令與兼官俱有故而留鄕所當該則徵其故失價瘦瘠則

移他官刑推己酉年有頉各官啓目後錄請依此施行允之 京畿 陰竹一匹病傷崔在修 竹山一匹病傷一匹故失李尙說 麻田一匹瘦韓文洪 安山一匹故失李惟稱 楊根一匹故失柳得恭 砥平一匹故失朴英源 ▣州二匹故失權以綱 永平一匹故失李命暹 水原一匹故失金魯永 (…)
<일성록, 정조13년(1789) 12월 1일(임자)>

경제/교통

숙마 면급과 관련하여 수원부사를 언급하다

강 사복시 첨정(司僕寺僉正) 이정회(李廷恢)를 태거(汰去)하고, 이어 나문(拿問)하고 정죄(定罪)하였다.

목 ○ 병조가 아뢰기를, "하교하신 대로 사복시 첨정 이정회를 잡아들여 곡절을 조사해 보니, 그 공초(供招)에, '본시(本寺)는 매양 숙마(熟馬)를 면급(面給)하라고 하교하는 때에는 사변마(四邊馬)로 내주고, 혹은 장전(帳前)에서 면급하는 때에는 별변마(別邊馬)를 대령하는 것이 이미 근례(近例)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수원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에게 숙마를 면급하라는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사변마로 봉(封)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밤에 어람(御覽)하기 위해 말을 끌고 오라는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전례대로 별변마로 대령하고, 말을 바꾸어 들이겠다는 뜻으로 내승(內乘)에게 말하여 미품(微稟)하도록 하였는데, 지금 하교를 받들어 보니 몹시 황공한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근례가 어떤지를 우선 막론하고, 명색이 사변마라 해도 그 살찌고 마른지와 좋고 나쁜지는 오직 해시(該寺)가 어떻게 가려 주는가에 달려 있다. 당상이나 낭청 중에서 만약 돌보아 주는 뜻이 있다면 좋은 말로 바꾸어 주는 것이 본래 해시가 예사로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의 상전(賞典)은 사체가 어떠한데, 이른바 사변마 중에서 반드시 가장 느리고 둔한 말을 취해서 거행하였으니, 첨정의 소행은 너무도 통탄스럽고 놀랍다. 지금 조사하는 상황에서도 허물을 감추려고 꾸며 대기만을 일삼았으니, 죄 위에 죄를 더한다고 할 만하다. 더구나 화모색(禾毛色)에 관한 단자(單子)를 이미 계하(啓下)하였고 또한 이미 정원에서 간품(看品)한 뒤인데도 본색(本色)을 어람하는 데에 대령하지 않았으니, 더욱 너무도 터무니없는 일이다. 해당 낭청 이정회는 우선 태거하고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하여 조율하고 엄히 처리하게 하며, 해리(該吏)는 병조로 하여금 엄하게 곤을 치게 하라." 하였다.

綱 汰司僕僉正 李廷恢仍爲拿問定罪

目 兵曹啓言依下敎司僕僉正 李廷恢拿入査問委折則所供內以爲本寺每當熟馬面給下敎之時則以四邊馬出給而或當帳殿面給之時則別邊馬待令已成近例故今番**水原府使** **趙心泰**處有 熟馬面給之下敎故亦以四邊馬封置矣去夜以御覽次有牽入之下敎故果依前例以別邊馬待令而以換入之意言及內乘以爲微稟之地今承下敎惶恐震越無所容措云矣敎以近例之如此如彼姑無論名雖四邊馬其肥瘠與好否唯在該寺之擇給堂郎中如有顧藉之意則換給好馬自是該寺常事今番賞典事面何如而所謂四邊馬中必取最駑駘擧行僉正所爲萬萬痛駭今於査問之下惟事粧撰可謂罪上添罪況禾毛色單子已啓下亦已看品於政院之後不以本色待令於御覽尤萬萬無據該郎李廷恢爲先汰去令該府拿問照律嚴處該吏令兵曹從重決棍
<일성록, 정조13년(1789) 12월 2일(계축)>

경제/교통

수원 신읍의 위치가 대로에서 떨어진 문제에 대한 상소에 비답을 내리다

강 부사직 강유(姜游)가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목 ○ 상소의 대략에, "**수원(水原)**은 총융청의 외영(外營)이며 국가의 중요한 진(鎭)인데, 애당초 읍을 설치할 때 어찌하여 양남(兩南)으로 통하는 길의 요충지에 설치하지 않고 대로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설치하였습니까. 더욱이 성(城)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독산산성(禿山山城)**이 있으므로 급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보호할 계획을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독산산성과 새 읍의 거리가 10리나 될 정도로 멀어서 실로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보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욱이 대로를 놓아두고 대로에서 떨어진 곳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양남으로 통하는 대로는 소사(素沙)에서부터 하나의 길로 합쳐져서 **수원**에 이릅니다. 영남(嶺南) 우도(右道)의 거의 반절은 이 길을 거쳐서 올라오며, 호남(湖南)의 직로(直路)에는 전주성(全州城)만 있고, 호서(湖西)의 직로에는 공주성(公州城)과 홍주성(洪州城)만 있으며, 여기서부터 경성(京城)까지는 달리 성을 설치한 곳이 없으니, 매우 소홀히 한 것입니다. **수원** 새 읍은 대로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하물며 막중한 분을 봉안(奉安)한 지역이니, 별도로 성을 설치할 방도가 있어야겠습니다.

명나라 때 우리나라가 공로(貢路)를 바꾸어 주기를 청하였는데, 명나라 조정의 의논은 '공로를 정할 때 3, 4개의 큰 진을 우회하도록 했던 것은 깊은 뜻이 있어서였다.' 하고서는 공로를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이는 외국으로 하여금 관방(關防)의 중요한 진을 보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새 읍에 요새를 설치하여 원방(遠方)으로 하여금 또한 관방의 중요한 진을 알게 하는 것이 실로 먼 뒷날을 내다보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새 읍을 이설(移設)한 것은 잘 이룩한 일이라고 하겠지만, 성지(城池)와 같은 요새의 설치가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번에 이설한 김에 성지까지도 아울러 구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새 읍의 형세는 들판이 펼쳐진 지역이니, 더욱 성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고인들이 언제나 말하는 '금성탕지(金城湯池)'라는 것은 참호(塹壕)가 설치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적어서 언제나 산에 의지해서 성을 만들고 참호를 설치하지 못하니, 이는 옛 제도가 아닙니다. 이번 새 읍은 들판 속에 위치하였으니 과연 성을 쌓고 참호를 설치하게 한다면, 실로 성을 설치하는 제도에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읍에는 우물과 샘이 부족하다고 하니, 또 내참(內塹)을 설치하여 냇물을 끌어다가 참호를 만들어서 군대에 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참호를 이중으로 파서 요새를 설치할 방도로 삼는다면,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한 남한산성(南漢山城)보다 훨씬 이로울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성을 쌓아서 독산산성과 서로 호응하여 적을 견제할 수 있는 형세로 만듦으로써 뜻하지 않은 사태를 당했을 때에 협공할 수 있는 조건을 이루어 놓는다면, 포악하고 교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법에서 꺼리는 것임을 알고서는 감히 두 성의 사이를 엿보지 못할 것이니, 새 읍의 부근은 병화(兵火)를 입는 환란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성을 지킬 방도가 없는데 변란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해처럼 새와 짐승조차도 흩어져 사람의 자취가 없는 지경이 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진을 설치한 효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설사 갑론을박하는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리 대비하여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할 계획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견해를 밝히는 자 중에서 '읍치(邑治)도 오히려 생각처럼 할 수가 없는데 어찌 성을 쌓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는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옛날 임진년

(1592, 선조25) 이전에 왜적이 침범해 올 우려가 있자 1년 안에 영남에 있는 수십여 곳의 성을 개축(改築)하였습니다. 지금의 국력이 옛날만 못하기는 하지만 어찌 성 하나조차도 쌓지 못하겠습니까. 성의 크기는 미리 헤아리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성의 둘레가 7, 8리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상께서 고을과 백성을 아끼고 보살펴 주는 성대한 뜻에서 만일 백성에게 일을 시키되 3일을 넘지 않았던 전례를 쓰지 않고 고가(雇價)까지 아울러 계산한다면, 그 비용이 1리의 성을 쌓는 데 1만금 이상이 들 것입니다.

만약 돌로 성을 쌓자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것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흙으로 성을 쌓더라도 본래 무방합니다. 고려(高麗) 때에는 도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으나 역시 흙으로 쌓았습니다. 흙으로 쌓은 성이 도리어 주먹만 한 돌을 포개어 쌓은 것보다 튼튼하기 때문에 지금 안주(安州)의 외성(外城)도 흙으로 쌓았습니다. 만일 흙으로 쌓은 성 위에 또 여첩(女堞)을 설치하고 간간이 치성(雉城)을 설치해서 외적이 성에 기어 붙는 것을 살필 수 있도록 한다면, 방비하는 방도에 있어서 돌로 쌓거나 흙으로 쌓거나 차이가 없으며, 비용은 돌로 쌓을 경우보다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큰 공사를 일으켜서 일시에 완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또한 강도(江都)의 예에 따라서 해마다 일정하게 쌓도록 하되, 참호를 설치할 자리부터 우선 구획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집을 짓지 못하게 함으로써 후일 성을 쌓을 때 집을 허무는 폐단이 없게 해야겠습니다.

신이 또 듣건대, 지금 새 읍에 집을 지은 자들은 반이 유생이라고 하니 이것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비상의 사태를 당했을 때에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성을 지키기가 어려우니, 또한 경내(境內)의 군병(軍兵)을 모집해 들여서 집을 짓게 하고 복호(復戶) 500결(結) 안에서 절반을 덜어 내어 군병에게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성을 지킬 때가 되어 미처 외병(外兵)을 징발하지 못하더라도 이들로써 최초의 대변군(待變軍)을 삼을 만합니다. 또 각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새 읍 근처에 둔전(屯田)을 설치하게 하고 군병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되 군문에서 세금을 거두도록 한다면, 공(公)과 사(私)에 있어서 실로 둘 다 편리할 것이며, 전토(田土)가 없는 군병들도 반드시 앞을 다투어 모집에 응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신이 각 군문의 재력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르므로 감히 시행하기를 청하지는 못하겠으나, 생각한 것이 있었으므로 이처럼 덧붙여 진달합니다.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는 굽어살피시고 묘당(廟堂)에 하문하시어 재결하소서." 하여, 비답하기를, "상소의 내용을 묘당으로 하여금 회계(回啓)하여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강 副司直 姜游陳疏賜批

목 疏略曰水原乃總戎廳之外營而爲國家之重鎭當初設邑時何不置之於兩南路之要衝而置之於大路稍左處又不設城也無乃以禿山山城爲臨急入保之計耶今則禿山之城距新邑十里而遠實難倉卒入保又不可舍大路而左次也明矣蓋兩南大路自素沙合爲一路至于水原 嶺南右道幾半由此路上來而湖南直路只有全州城湖西直路只有公州 洪州城自此至京城無他設城處極爲疏漏而水原新邑旣據大路要衝況又奉莫重之地宜有別般制置之道矣明朝時我國請改貢路則廷議以爲貢路之迂回三四大鎭者有深意云而不許改路蓋欲使外國見關防重鎭而然也然則我國亦當設險於新邑使遠方亦知其關防之重鎭者實爲慮遠之道今此新邑移設乃是善成之事而但恨無城池之設險臣謂因此移設竝與城池而經紀宜矣新邑形便乃是開野之地則尤宜置城何者古人每曰金城湯池者卽設堙之謂也而我國山多野少每依山爲城而不得設堙非古制也今之新邑旣是野中果令築城設堙則實合置城之制且聞新邑井泉不足又設內堙引川爲壕以資軍旅汲水之地且爲重坎設險之道大勝於南漢築塘儲水之利矣今若築城於此與禿山之城爲角猗之勢當不虞之時而成夾攻之形則雖有築黠之賊亦知兵法之所忌不敢窺兩城之際

新邑旁近可免兵火之患矣如無守城之道而或値有警之時則必如龍蛇之歲將見鳥獸之散便作無人之境安有置鎭之效臣則以爲設有爭乙之論宜軫先甲之計矣議者若以爲邑居尙不得如意何可築城云爾則此有不然者昔在壬辰之前倭奴有來犯之慮則一年內改築嶺南城十餘處今之國力雖不如古獨不可經紀一城乎城之大小雖難預爲量概而雖止於七八里亦可矣然以聖上愛恤邑民之盛意如不用役民三日之例竝雇價計之則其費計不下一里萬金若以石城之多費難之則土城亦自不妨勝國則都城之重焉而亦且土築蓋土城之完實反勝於拳石之相累故今安州外城亦爲土築若於土城之上又設女堞而間置雉城以瞰外賊之傅城者則防守之道石與土無間而所費則大減於石築矣若以爲遽興大役難於一時訖功則且依江都例排年築之而先劃置塹之基使人不得築室俾無日後築城時毁撤之弊焉臣又聞之今之築室於新邑者半是儒生云此亦幸矣而第當緩急有難與此等人守城亦爲募入境內軍兵使之築室復戶五百結內折半除給軍兵以爲聊賴之地則或當守城之時雖未及調發外兵以此輩足爲最初待變軍而又使各軍門設置屯田於新邑近地使軍兵作農而自軍門收稅則於公於私實爲兩使軍兵之無田土者必爭應募而此則臣不知各軍門財力之如何雖不敢仰請施行而旣有所思第此附陳伏乞聖明俯賜鑑諒下詢廟堂而裁處焉批以疏辭令廟堂回啓稟處

<일성록, 정조14년(1790) 6월 10일(기미)>

경제/교통

수원의 교통로 문제를 논의하다

강 광주 부윤(廣州府尹) 홍성연(洪聖淵)을 파직하고, 이가환(李家煥)을 임명하였다. 비천(備薦)이다.

목 ○ 비국이 아뢰기를, "기읍(畿邑)을 경유하는 연로(輦路)를 닦는 역사는 미리 감동하고 신칙하지 않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비변사 낭청을 보내어 적간하게 하였는데, 회고(回告)에 '과천(果川)과 **수원(水原)** 두 고을의 도로는 우열이 판이하기는 하지만 **수원**이 제일이고 과천이 그 다음인데, 도로를 닦는 역사로 말하면 가을부터 역사를 시작하여 지금은 모두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광주(廣州)의 경우는 가을부터 지금까지 애당초 착수한 일이 없고 교량 여섯 곳도 모두 내버려두어 허물어지기도 하고 뚫어지고 깨진 곳도 많으며 쌓인 눈을 하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일전에 전최(殿最)에 대해 계하한 뒤에 부윤이 비로소 내려와 하룻밤 머물고는 곧바로 돌아가면서 부교(府校)를 남겨 두고 6개 면(面)의 민정(民丁)을 징발하여 6개 패(牌)로 역사를 시작하였는데 부교들이 조금이라도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태(笞)와 장(杖)을 마구 쳤습니다. 이에 역사에 동원된 백성들이 모두 모여 얘기하기를, 「날이 따뜻할 때에는 뭣 때문에 잠만 자고 살피지 않다가 이렇게 춥게 되자 백성들로 하여금 이 고생을 시키는가.」 하였습니다. 고가(雇價)는 한 푼의 전(錢)과 한 닙(粒)의 미(米)를 막론하고 애당초 볼 수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연로를 닦는 것은 전후로 얼마나 칙교하였는데 해부가 애당초 유념하지 않았으니, 이미 매우 놀랄 만합니다. 백성을 부릴 때에도 다만 입김으로 추위를 녹이는 고통만 있고 입에 풀칠하는 도움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백성을 징발하고 역사를 감동하는 것으로 말하면 얼마나 긴중한 것인데 직접 검험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교들에게 맡긴단 말입니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기대를 저버린 죄는 그대로 두고 논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해당 부윤 홍성윤은 우선 파출(罷黜)하고 그 죄상은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히 감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그 후임은 구전으로 즉시 차출하고, 하비하기를 기다려 당일에 내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강 罷廣州府尹 洪聖淵職以李家煥代之備薦也

목 備局啓言畿邑所經輦路修治之役不可不預爲董飭故發遣備郎摘奸則回告內果川 水原兩邑道路雖有優劣之判異水原爲最果川次之而若其修治之役自秋經始今皆了畢至於廣州自秋至今初無着手之事橋梁六處亦皆拋置或致傾圮或多穿破積雪無一掃開矣日前殿最啓下之後府尹始爲下來一宿卽還而留置府校調發六面民丁以六牌始役府校輩少不知意則笞杖狼藉役民等擧皆偶語曰日暄之時緣何事甘眠不省當此凍寒使民罹此苦也雇價則毋論分錢粒米初不得見云輦路修治前後飭敎何如而該府之初不動念已極可駭至於役民之際只有呵凍之苦了無糊口之助若其調發董役何等繁重而不思親檢付諸校輩其失職孤負之罪不可置而不論該府尹 洪聖淵爲先罷黜其罪狀請令攸司從重勘處允之敎以其代口傳卽爲差出待下批當日下送

<일성록, 정조14년(1790) 12월 21일(정묘)>

경제/교통

삼남의 대동태를 수원점에 묵게 하는 방도에 대해 논의하다

강 희정당(熙政堂)에서 차대를 행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차대를 하라." 하고, 내가 이르기를, "삼남의 대동태(大同駄)를 **수원점(水原店)**에 묵게 하는 일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정성을 다하여 영접하면 행려가 마땅히 묵을 것이니, 어찌 억지로 숙소를 정할 것이 있겠는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삼남에 관문을 보낼 경우에는 폐단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훈련대장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부사직(副司直)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삼남에 관문을 보낸다고 하는 것은 멀리 돌아서 와야 하는 궁벽한 고을 사람들을 모두 **수원**에 억지로 보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호남과 호서 여러 고을의 대동은 본래 **수원**으로 길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 진위(振威)부터 길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거리가 그다지 차이 나지 않으므로 샛길을 버리고 **수원**을 경유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사로운 행려의 경우에는 하룻밤을 묵거나 점심을 먹는 것을 막론하고 각각 원하는 대로 가게 해야지 억지로 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동태의 경우에는 바로 이속(吏屬)들이 영솔해서 오니, 각 해당 수령으로 하여금 미리 분명히 신칙해서 **수원**으로 와 반드시 묵게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대동포(大同布)와 대동목(大同木)은 외딴 점사(店舍)에서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보관하고 간수하는 것 역시 **수원**만 한 곳이 없습니다. 점막을 설치한 처음에는 각별히 더 보살펴 주어 편안히 살게 함으로써 읍치(邑治)를 번성하게 하는 데 일조(一助)가 되도록 하지 않을 수 없으니, 행려를 영접하는 데에 만약 수삼 년 동안 관력(官力)을 보태 주면 그 뒤에는 오라고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오게 될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상려(商旅) 이외에 관원의 행차도 모두 참(站)을 지나서 간다고 하는데, 이는 과연 무슨 까닭인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점민(店民)의 접대가 다른 점사와 차이가 없는데도 관원의 행차가 **수원**점에 묵지 않는 것은 잘못 전하고 잘못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렇다 저렇다 논하지 말고 속히 잘 처리해서 점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하라. 좌상이 이미 그곳에 집을 지었으니 바로 그 고을의 존위(尊位)이다. 시임 부사 역시 자상하고 꼼꼼하게 일을 할 것이니, 훈련대장도 **수원부사**에서 이미 체차되었다고 말하지 말고 **수원**에 대한 일들을 재임할 때와 같이 여겨서 시임 부사와 상의한 다음 좌상과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삼가 정성을 다해 논의해서 정하겠습니다." 하였다. (…)
강 行次對于熙政堂
목 (…) 予曰次對爲之予曰三南大同馱之止宿水原店事果何以爲之乎濟恭曰姑未決定矣予曰誠心延接則行旅自當止宿豈可勤定宿所乎濟恭曰至於發關三南則尤似有弊予曰訓將之意何如副司直 趙心泰曰行旅延接若籍數三年官力則其後當不招而自來矣予曰商旅外官行亦皆越岾而去云果何故也心泰曰店民之接待無異他店而官行之不爲止宿似因誤傳誤聞而然矣予曰勿論如此如彼從速善爲決處俾店民得以奠接也左相旣築室本土卽鄕中尊位時府使亦當詳密爲之訓將毋曰已遞邑倅凡於水原視若在任時與時府使商確而議決於左相可也心泰曰謹當竭誠講確矣予曰湖西鄭哥山訟事果孰非孰是耶刑判旣經道伯果知之乎權▣曰一洞壑俱是李哥買得之物而與鄭哥之墳爲八十餘步旣葬之冢似不可掘矣予曰鄭哥果似悍毒矣李哥之外家誰也何爲有勢也▣曰鄭哥不過鄕班李哥外家卽權濟應之一家矣予曰此山訟卽三次分付於道臣者而尙不決處屢煩登聞前後道臣事誠可怪矣▣曰捕廳罪人有刑配之命而此與尋常罪人有異自臣曺不敢擅便矣予曰其罪狀予亦未能記得而多年滯囚不必持難嚴刑三次絕島爲奴充軍可也開城留守 具庠曰日前下敎軫念臣營矯捄之方特命稟處矣予曰卿於每筵輒稱弊瘼故予於語次偶及之矣何嘗使卿稟處乎果有可稟乎庠曰日前擧條姑未下今則無可稟者矣予曰擧條果何事乎庠曰豆太耕請得事也予曰若得此則果能使松營復舊乎庠曰若得豆太耕作錢放債則庶可當一隅予曰擧條持入予曰臺臣進前予曰昨日聞有新啓是兩司合啓乎獻納 申大尹等曰然矣予曰果是何啓也大尹等曰卽簡賊孥籍啓辭矣予曰昨日傳啓尙不下批使臺臣經宿臺廳今日使之登筵者予欲有下詢於臺臣故也勿論在簡與李在簡苟有可討之罪則何爲而一向寂然無人說到在簡二字到今有何新出之罪案而發此新啓其故何也大尹等曰昨年孥籍之啓旣承依啓之聖批而傳旨久未下應行之典尙未擧行矣日前李運彬疏批有第二件事不允之敎前下批旨便歸勿施故臣等有此發啓矣予曰不允二字若改下貝將停此啓乎大抵李運彬疏已萬萬怪駭前則無一人聲罪在簡近日以來或疏或啓相繼迭發果是何故也憲臺則生疏而獻納則屢經臺職必當知其委折詳奏可也大尹曰臣則不入三司已爲朞年矣予曰朞年後除職云云卽謂予靳點也予果靳點矣臺臣姓名聞之已熟名曰申大某則似是士族而左右東西不可以士夫待之予之靳點者卽此也而敢以朞年後除職等說肆然奏達於前席臺臣事萬萬駭然此以下缺
<일성록, 정조15년(1791) 2월 29일(갑술)>

경제/교통

눈이 왔을 때 수원의 도로 관리 문제를 논의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하였다.
목 (…) 또 어영대장(御營大將) 조심태(趙心泰)에게 이르기를, "수원(水原)의 도로에 내린 눈을 쓰는 일은 민폐가 없지 않다. 그제 살짝 내린 눈도 모두 쓸었다고 하니 지나치다. 그런데 향교 앞길은 행행할 때에 들러서 배알하기도 하기 때문에 눈이 올 때마다 반드시 쓴다고 하니 더욱 지나치다. 이후로는 비록 큰길이라 하더라도 대설이 아니면 눈을 쓸게 하여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3개 읍의 지방관에게 분부하라."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고개 위로 새로 닦은 도로는 행인이 많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겉의 흙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만일 눈을 쓸지 않으면 내년 봄 얼었던 것이 녹을 때에 실로 진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관이 또한 이를 염려하였습니다." 하였다.
강 召見大臣備堂于誠正閣
목 (…) 又謂御將 趙心泰曰水原道路掃雪之役不無民弊如再昨微雪亦皆掃除云過矣至於鄕校前路

以幸行時或歷謁故每雪必掃云尤過矣此後則雖大路除非大雪勿令掃除以貽民弊事分付三邑地方官心泰曰嶺上新治之路行人多不由故膚土未固若不掃雪明春解凍時實有泥濘之慮故地方官亦以爲憂矣

<일성록, 정조16년(1792) 10월 30일(을미)>

경제/교통

태복시에서 수원의 말에 대해 보고하다

강 태복시(太僕寺)가 금년 임자년(1792, 정조16)에 각 도의 목장(牧場)에서 놓아기르고 있는 말의 수효를 올렸다.

목 (…) **수원(水原)**과 양성(陽城) 등의 감목관이 관할하는 두 군데 목장에는 암수 장마와 아마를 합쳐서 모두 136필이 있다. (…)

강 太僕進各道牧場今壬子留放馬畜數爻

목 (…) 水原陽城等監牧官所管二牧場牡兒雌雄馬竝一百三十六匹 (…)

<일성록, 정조16년(1792) 12월 10일(갑술)>

경제/교통

수원 앞바다에 표류한 조운선의 전복사건에 대해 논의하다

강 광양(光陽)과 순천(順天) 두 고을의 세선(稅船)이 늦게 선적한 사유에 대해 해당 도에 관문을 보내 묻고, 치패(致敗)한 뱃사람의 범법 여부에 대해 즉시 사실을 조사하라고 명하였다.

목 ○ 호조가 아뢰기를, "충청 감사 이형원의 이 장계를 보니, 서산 군수(瑞山郡守) 정시채(鄭時采)의 첩정에서 '광양과 순천 두 고을의 전세(田稅)로 거둔 미(米)와 태(太) 1010섬 남짓을 실은 배 한 척이 이달 2일에 **수원(水原)** 식도(息島) 앞바다에서 바람과 파도에 휩쓸려 태안(泰安) 만대도(萬岱島) 앞바다로 표류해 와 전복되었습니다.' 라고 한 것과, 태안 현감 한영규(韓永逵)의 첩정에서 '광양의 세선 한 척이 소근진(所斤鎭) 관할 구역 안의 만대도에서 치패되었다면 망을 보는 감관이 어찌 달려가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으로 말하면 본현의 경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것과, 소근 첨사(所斤僉使) 김명억(金命嶷)의 첩정에서 '서산과 태안 두 경계 사이에 물마루가 있어 피차간의 경계가 이미 분명하고, 선박을 치패시키는 초탄(草灘)이 웅도(熊島)에서 시작하여 오지포(烏之浦)까지 죽 이어졌으니 서산 관할이라는 것은 분명하여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한 것을 일일이 거론하고, 이어 '세선의 치패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렇다면 저쪽 관할이든 이쪽 관할이든 막론하고 속히 달려가 건져 내야 하는 법인데, 지금 이 고을과 진은 경계를 다투는 데 급급하여 건져 낼 것을 생각지 않다가 이미 수일이 지났으니 너무나 한심합니다. 지금 막 급하게 관문을 내어 서산과 태안 두 고을 및 소근 첨사에게 엄하게 신칙하여 힘을 합쳐 건져 내게 하고, 당진 현감(唐津縣監) 서유승(徐有升)을 별도로 구증 차사원(鉤拯差使員)으로 정하였으며, 또 본영의 편비(褊裨)를 파견하여 함께 감독하게 하여 기필코 수일 안에 수량대로 건져 내게 하고 치패된 곳의 경계도 구별하게 하였으니, 보고해 오기를 기다려 계속 진달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전 서산 군수 정시채, 전 소근 첨사 김명억은 모두 이미 체차되었다고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죄상을 담당 관사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태안 현감 한영규는 비록 후창(後倉)의 조선이 치패된 곳에 있었다고는 하나 곡물을 이미 수량대로 건졌는데도, 경계를 구분하는 일과 곡물을 말리는 일만 핑

계하면서 시급히 거행해야 할 일을 여러 날 동안 지체하였으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마땅히 논감(論勘)해야 하나 현재 건져 내는 일이 시급하니 일단 다 건져 내기를 기다려 진달하여 보고할 계획입니다. 배에 탔던 감관과 색리, 사격(沙格) 등이 배를 치패시킨 정황 및 **수원**과 당진의 호송 감관과 색리를 조사하는 등의 일은 다 건져 내기를 기다려 계속 계본을 작성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번의 이 광양, 순천은 모두 초운(初運)하는 고을로서 3월 안에 선적하였는데 6월에야 비로소 호서의 경내를 지났습니다. 해로(海路)는 바람을 살펴야 한다지만 어찌 이처럼 지체하였단 말입니까. 선격(船格)이 지체하며 농간을 부린 것은 본래 매우 잘못되었지만, 해당 고을이 선적하여 운송하는 시기를 넘긴 것은 그 죄가 더욱 큽니다. 광양 현감 이조범(李祖範), 순천 부사 홍술조(洪述祖)를 우선 파직하고,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여 엄하게 감처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고을이 늦게 선적하는 것을 제대로 살펴 신칙하지 못한 책임은 도신에게 있으니, 전라 감사 권엄(權엄)을 우선 엄하게 추고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서산 군수 정시채와 전 소근 첨사 김명억을 의금부로 하여금 잡아다 신문하여 엄하게 처리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태안 현감 한영규는 이미 후조창의 조선이 치패된 곳의 지방관으로서 방금 의금부로 잡아와 엄하게 신문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일단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호송했던 감관과 색리는 새 정식에 따라 엄하게 형신하여 원배(遠配)하고, 충청 감사 이형원은 그간 본도의 경내에서 조선이 연속적으로 치패되게 하고 연안의 고을에서 호송하는 것을 제대로 살펴 신칙하지 못한 잘못을 용서하기 어려우니 엄하게 추고해야 할 것입니다. 선격의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곡물이 어느 아문으로 보내질 것인지 구별하는 등의 일은 감사가 격식을 갖추어 장계로 보고하기를 기다려, 보고가 올라온 뒤 다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겠습니다."

하여,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광양과 순천에 내려간 선박이 과연 기일에 대어 내려갈 수 있었는데 해당 고을이 고의로 늦게 선적하고 늦게 출발시켰다면, 회계한 대로 해당 수령을 파직한 뒤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고, 전조(銓曹)로 하여금 구전 정사로 특별히 가리게 하고 하비하기를 기다려 하직 인사를 하게 하라. 만일 도중에서 지체한 죄가 뱃사람에게 있다면 우선 관문으로 그 곡절을 해당 고을에 묻고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 다시 초기하여 내게 물어 처리하라. 뱃사람의 범법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관사의 당상과 함께 즉시 사실을 조사하라." 하였다.

강 命光陽 順天兩邑稅船晩裝委折關問該道致敗船人之犯科與否卽爲査實

목 戶曹啓言觀此忠淸監司 李亨元狀啓則枚擧瑞山郡守 鄭時采牒呈以爲光陽 順天兩邑田稅米太一千十石零所載船一隻今初二日到**水原**息島前洋爲風潮所驅漂還於泰安萬岱島前洋覆役云泰安縣監 韓永逵牒呈以爲光陽稅船一隻若或致敗於所斤掌內萬岱島則候望監官何不馳告乎以此言之非本縣境可知云所斤僉使 金命嶷牒呈以爲瑞泰兩界之間水宗在焉彼此界限旣甚分明敗船之草灘始自熊島連亘鳥之浦則瑞山地界的然無疑云稅船致敗何等驚駭之事則毋論彼疆此界惟當趁速拯出而今此邑鎭之急於爭界不思鉤拯已至多日萬萬寒心今方星火發關嚴飭於瑞泰兩邑及所斤僉使處使之竝力鉤拯以唐津縣監 徐有升別定鉤拯差員又發臣營褊裨使之眼同董督期於不日準拯而敗船處境界亦令區別待其報來續當陳聞瑞山前郡守 鄭時采 所斤前僉使 金命嶷俱不可以已遞而有所容恕其罪狀令攸司稟處泰安縣監 韓永逵雖在後倉漕船致敗之所穀物旣已準拯則只事卞別境界諉托曝曬致使時急擧行之事以致屢日遲滯者萬萬駭然所當論勘而目下鉤拯時急姑待畢拯陳聞計料騎船監色沙格等敗船情節及**水原** 唐津護送監色究覈等事待畢拯續當修啓云矣今此光陽 順天俱以初運之邑裝載在於三月之內而六月始過湖境海路雖曰候風寧容如是稽緩乎船格之逗遛作奸固已痛惡而該邑之裝運過

時其罪尤大光陽縣監 李祖範 順天府使 洪述祖爲先罷職令該府拿問重勘該邑之晩裝不能察飭責在道臣 全羅監司 權▣爲先從重推考瑞山前郡守 鄭時采 所斤前僉使 金命嶷令該府拿問嚴處泰安縣監 韓永逵旣以後漕倉漕船致敗地方官方有拿來嚴問之命姑不擧論護送監色依新定式嚴刑遠配忠淸監司 李亨元漕船致敗前後相續於本道之境沿邑護送不能察飭之失有所難恕從重推考船格之情節鉤覈穀物之衙門區別等事請待具格登聞更爲稟處允之敎以光陽 順天下去船隻果能趁期下去而該邑故爲緩裝晩發則該倅依回啓罷拿令該曹口傳另擇待下批辭朝萬一中路逗遛罪在船人其委折先爲關問該道詳査報來後更爲草記稟處而船人犯科與否與該司堂上卽爲査實

<일성록, 정조17년(1793) 6월 13일(갑술)>

경제/교통

수원에 군마를 내려주다

강 탐라(耽羅)의 공마 281필을 나누어 주었다.

목 ○ 시원임 대신에게 3필, 시원임 각신에게 17필, 장용영 도제조 이하에게 19필, 수원유수에게 1필, 승지와 사관에게 8필, 장신(將臣)에게 5필, 별군직·승전 선전관·내승(內乘)에게 17필, 각 궁방에 8필, 규장각의 속관(屬官)에게 20필, 별간역에게 2필, 의관에게 1필, 무예청에 6필, 내각의 이례에게 1필, 전명 사알(傳命司謁)에게 1필, 각처에 30필을 나누어 주고, 사알에게 1필, 대령 별감에게 1필, 차비 별감에게 1필, 내관에게 17필, 후원에서 방목할 41필, 장용영에 두고 기를 10필, 훈련도감에 두고 기를 2필, 금위영에 두고 기를 1필, 어영청에 두고 기를 1필, 용호영에 두고 기를 1필, 수원의 군마로 30필, 내외시의 이례에게 2필, 본시에 34필을 내려 주었다.

綱 頒賜耽羅貢馬二百八十一匹

目 時原任大臣三匹時原任閣臣十七匹壯勇營都提調以下十九匹水原留守一匹承吏八匹將臣五匹別軍職 承傳宣傳官 內乘十七匹各宮房八匹閣屬官二十匹別看役二匹醫官一匹武藝廳六匹內閣吏隷一匹傳命司謁一匹各處頒賜三十匹司謁一匹待令別監一匹差備別監一匹內官十七匹後苑放牧四十一匹壯勇營留養十匹訓局留養二匹禁衛營留養一匹御營廳留養一匹龍虎營留養一匹水原軍馬三十匹內外寺吏隷二匹下本寺三十四匹

<일성록, 정조17년(1793) 7월 22일(계축)>

경제/교통

수원부에 수레 이용하는 제도를 마련케 하다

강 묘당은 수원부(水原府)에 수레를 이용하는 제도를 강구하라고 명하였다.

목 ○ 장령 정의조(鄭毅祚)가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들이 좁아서 수레로 운반하는 것이 편리하지 못하고 오직 북도의 함흥(咸興) 등 몇 곳에서만 백성들이 다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원부는 지형이 평평하고 넓어 함흥과 다를 바가 없고, 원소(園所 현륭원)를 옮겨 봉안한 후로는 일의 체모가 별다릅니다. 비단 관방(關防)으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고(府庫)가 지금 새로 거의 다 만들어지고 점포와 마을에 점차 사람이 모여들어 엄연히 한강 남쪽에 하나의 큰 도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사 간에 일용하는 어염(魚鹽)과 시초(柴草)를 마소로 실어 나를 때 늘 물자가 넉넉하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지금 함흥의 제도와 똑같이 수레 운송을 창안하고 이용하여 강과 바다의 산물과 남쪽과 북쪽의 재화를 실어 날라 유통시키고 교역을 손쉽게 하게 한다면 영읍에서 수용되는 물자와 주민이 살아가는 방도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묘당으로 하여금 수레를 이용하는 제도를

강구하고 계획의 시행을 지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綱 命廟堂講究**水原府**用車之制

目 掌令 鄭毅祚啓言我國山多野狹不利車運而惟北路之咸興諸處民皆習用**水原**一府地形之平衍與咸興無異一自園所移奉之後事體之自別不但以關防爲重官府倉庫今幾粉新布肆閱井漸以成聚儼然爲漢南一大都會而魚鹽柴草之公私日用者馬載牛輸之際每患不贍今若創用車運一如咸興之制使江海之產南北之貨往來委輸貿遷無難則其爲有益於營邑需用之資居民資生之道當如何哉請令廟堂講究車制指揮設施敎曰依啓

<일성록, 정조17년(1793) 10월 5일(을축)>

경제/교통

수원유수와 수원에 제주 공마를 지급하다.

강 제주(濟州)에서 공상(貢上)한 말 288필을 나누어 주었다.

목 ○ 각 궁방(宮房)에 9필, 시원임 대신(時原任大臣)에게 3필, 시원임 각신(時原任閣臣)에게 15필, 승지와 사관에게 5필, 장신(將臣)에게 5필, 장용영(**壯勇營**)의 도제조 이하에게 15필, **수원유수**에게 1필, 내승(內乘)·별군직(別軍職)·승전 선전관(承傳宣傳官)에게 18필, 규장각의 속관(屬官)에게 18필, 별간역(別看役)에게 2필, 의관(醫官)에게 1필, 무예청(武藝廳)에 6필, 내각의 이례(吏隷)에게 1필, 내사복시(內司僕寺)와 외사복시(外司僕寺)의 이례에게 2필, 내관(內官)에게 18필, 전명 사알(傳命司謁)에게 1필, 대령 별감(待令別監)에게 1필, 사알에게 1필, 차비 별감(差備別監)에게 1필을 내려 주었다. 나머지는 각처에서 두고 기를 34필, 장용영의 군마(軍馬) 30필, 내사복시에 두고 기를 20필, **수원**의 군마 50필, 본시(本寺)에 내린 31필이다.

綱 頒賜濟州貢馬二百八十八匹

目 各宮房九匹時原任大臣三匹時原任閣臣十五匹承史五匹將臣五匹**壯勇營都提調**以下十五匹**水原留守**一匹內乘 別軍職 承傳宣傳官十八匹閣屬官十八匹別看役二匹醫官一匹武藝廳六匹內閣吏隷一匹內外寺吏隷二匹內官十八匹傳命司謁一匹待令別監一匹司謁一匹差備別監一匹各處留養三十四匹**壯勇營**軍馬三十匹內寺留養二十匹**水原軍馬**五十匹下本寺三十一匹

<일성록, 정조18년(1794) 7월 29일(갑인)>

경제/교통

수원유수를 소견하여 마정을 논의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사복시 제조 서유방(徐有防)과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를 소견하고, **평신진(平薪鎭)**의 목장을 혁파한 다음 장용 외영(壯勇外營)의 둔전을 설치하고 마필(馬匹)은 여러 섬으로 이송하며 둔곡(屯穀)은 각 진(鎭)의 병선(兵船)과 방선(防船)이 돌아가며 실어 나르고 본진(本鎭)의 관청 건물을 고쳐 지을 때는 의송산(宜松山)의 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가져다 쓰게 하였다.

목 ○ **수원유수 조심태**가 아뢰기를, "**평신진**에 목장을 혁파한 다음 마필을 옮겨 외영에 떼어 주고 둔전을 설치하는 일은 전에 연석에서 여쭈어 정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을 수확기가 임박하고 세금 거둘 때가 머지않았으니, 이 시기에 분명하게 적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방해될 단서가 없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평신진**에 목장을 혁파하고 마필을 옮기는 일은 지금

이미 결정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목자(牧子) 500명 가운데 50명을 **창택장(倉宅場)**에 그대로 남는 목자로 분류하여 제외하면 나머지 장정은 450명입니다. 둔전을 설치한 후에 둔군(屯軍)이 없을 수 없으니 이 450명을 배정하여 둔군으로 삼으소서. 둔전을 설치한 각처에는 으레 신역(身役)을 징수하고 대오(隊伍)를 조직하여 우농(寓農)의 뜻을 두는 규례가 있으니, 이곳 역시 다른 지역의 규례대로 둔군으로 초(哨)를 조직하고 떼어 외영에 소속시켜서 훈련을 받게 하소서. 신역은 쌀 6되로 마련하여 정식을 삼고 외영에서 거두어들여 군병의 식량을 넉넉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지금 이미 목장을 혁파했으니 그 마필을 옮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세 목장에서 원래 기르던 말 550필 가운데 창택장에서 방목하는 100필을 제외한 나머지 450필은 지금 막 사복시 제조와 좋은 쪽으로 상의하여 **수원장(水原場)·홍원장(洪原場)**과 **남양(南陽)·대부(大阜)·영흥(靈興)·이작(伊作)·선감(仙甘)** 등 여러 섬 및 강화(江華)·초지(草芝) 등의 목장으로 분수(分數)를 정하여 이송하였습니다. 평신진의 목장을 완전히 외영에 소속시킨 뒤 창택장에서 그 가운데 약간의 마필을 방목하는 것은 사복시에서 전처럼 구관(句管)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역시 일체 외영에 부쳐서 기르는 대로 가져다 전마(戰馬)에 보충하는 것이 아마도 권도(權道)에 맞을 듯합니다. 시행하는 초기에 반드시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우고 절목을 의논하여 정한 다음 마적(馬籍)을 만들어 비치하고 영원히 준행해 나가면 실효가 있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둔전에 정해진 세금이 이미 1000포(包)에 가깝고 또 거두어들여야 할 둔군의 역미(役米)가 있어서 외영에 실어다 낼 때 배로 운송해야 하는데 튼튼한 배를 빌리는 것이 원래 쉽지가 않습니다. 인하여 삼가 생각건대, 각 진의 병선과 방선을 오랫동안 한강의 항진(港津)에 매어 두어서 썩고 벌레 먹도록 방치하는 것은 끝내 주즙(舟楫)을 정비하여 뜻하지 못한 근심에 대비하는 의리가 아닙니다. 돌아가며 바다에 띄워 실용에 쓰이도록 하자는 식자(識者)들의 논의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은 크게 흠이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는 본진의 병선으로 세곡(稅穀)을 실어 내도록 금년부터 정식을 삼아 거행하는 것이 앞서 시험한 요체에 맞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본진의 관청 건물이 거의 모두 허물어져서 고쳐지어야 한다는 논의가 한창인데 재목을 구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본진 경내에 있는 의송산의 바람에 쓰러진 소나무 가운데 필요한 만큼 수영(水營)에 보고하고 가져다 쓰라는 뜻으로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綱 召見司僕提調 徐有防 **水原留守** **趙心泰**于重熙堂罷平薪鎭牧場設置壯勇外營屯田馬匹移送諸島屯穀以各鎭兵防船輪回載運本鎭公廨改建時取用宜松山 風落木

目 **水原留守** **趙心泰**啓言平薪鎭罷牧移馬劃付外營設置屯田事曾有所稟定矣今則秋穫在卽收稅不遠趁此時指一定奪然後似無窒礙之端矣從之又啓言平薪鎭罷牧移馬今旣定奪蒙允而牧子五百名中五十名以倉宅場仍存牧子除之則餘丁爲四百五十名矣設屯之後不可無屯軍以此四百五十名把定爲屯軍而設屯各處例有捧身役作隊伍以存寓農之規此亦依他例以屯軍作哨劃屬外營俾受節制身役則以米六升磨鍊定式自外營捧上以裕兵食恐合事宜矣從之又啓言今旣罷牧則移其馬匹在所先務三場原牧馬五百五十匹內倉宅場所放一百匹除之餘馬四百五十匹今方與司僕提調後長相議分數移送於**水原** 拱原場 **南陽** **大阜** 靈興 伊作 仙甘諸島及江華 草芝等場而平薪一場曺屬外營之後倉宅場以其若干馬匹之放牧自司僕不可如前句管此亦一體付之外營隨其所養取補戰馬恐合權宜而設施之初必嚴立科條議定節目成置馬籍永久遵行則似有實效矣從之又啓言屯田定稅旣近千包且有屯軍役米

所捧者輸納外營之際勢將船運而賃得完固本自不易矣仍伏念各鎭兵防船之長掛漢港任其朽蠹終非整理舟楫以備不虞之義而輪回駕海俾作實用識者之議厥惟久矣迄今因循大是欠事從今以往以本鎭兵鎭兵船輸納稅穀事自今年定式擧行恐合先試之要矣從之又啓言本鎭公廨擧皆傾頹方謀改建而材木苟艱云本境所在宜松山 風落松中隨所入以爲報水營取用之意請知委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9월 29일(계축)>

경제/교통

평신진이 마정 문제를 수원유수에게 장계토록 하다

강 **평신진(平薪鎭)**의 목장을 혁파한 뒤 **창택장(倉宅場)**에서 말을 기르는 일에 대해 **화성유수(華城留守**)로 하여금 장계로 보고하게 하여 나에게 물어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목 ○ 사복시 제조(司僕寺提調)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가 진달한 말로 인하여 평신진의 목장을 혁파한 뒤 세 목장에서 원래 기르던 말 가운데 100필을 그대로 **창택장**에 남겨 기르면서 번식하게 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삼가 해당 첨사 김취명(金就明)의 첩보를 보니, '**창택장**에 본래 있던 말 36필을 제외하고 **대산장(大山場)**의 말 25필을 우선 이송하였습니다. 창택장 이외의 목장에서 이송되어 온 말과 창택장에 있던 말들이 흩어졌다 모였다 하며 무리를 지어 목장에서 나와 바다를 넘어 다니는 등 민간에 폐단을 끼치니 여기에 두고 기를 수가 없습니다. 원래의 말을 옮겨 놓을 때 이 말들도 함께 보내고 해당 마장의 토지를 경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수원유수**가 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장을 혁파한 뒤이니 본시(本寺)에서 결정하여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수원유수**로 하여금 장계로 보고하게 하여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平薪罷牧後倉宅場養馬事令**華城留守**狀聞稟處

목 司僕提調 徐有防啓言頃因**水原留守 趙心泰**陳達平薪罷牧後三場馬原數中一百疋仍留倉宅場牧養取息事已有所定奪矣伏見該僉使 金就明牒報則倉宅場本在馬三十六疋外大山場馬二十五疋先爲移送矣客馬主馬分合其群渡海出場作弊民間無以留養原馬移放時竝與此馬而同爲驅送該場土地許耕蒙利爲辭而此旣**水原留守**所陳達者則到今罷牧之後自本寺不可決處請令該留守狀聞稟處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18일(임인)>

⑶ 농수산업

경제/농수산업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수원의 밀도살 규례에 대해 언급하다

강 존현각에서 대신(大臣)과 비변사 당상을 인접(引接)하였다.

목 또 달언하기를, (…) “넷째, 농사의 근본은 소에 달려 있는데 향외(鄕外)에 밀도살이 성행하고 있으니, 현방(懸房)의 규례대로 팔도의 도사(屠肆)를 설치하지 않을 수 없는 곳에 성균관의 하례를 돌아가며 보내어 한결 같이 양도(兩都) 및 광주(廣州)와 **수원(水原)**의 규례처럼 밀도살을 조사하고 관에 알려 형배(刑配)하게 하고, 석채(釋菜)에 쓰이는 포우(脯牛) 역시 성균관의 하례로 하여금 사부(四府)의 규례대로 진배(進排)하게 하자는 일입니다. 서울과 지방에 밀도살을 금단하는 것은 엄히 신칙하는 조정의 명령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균관의 하례를 나누어 내려보내자는 소청은 참으로 실정에 어두운 논의이니 이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내가 그대로 따랐다.(…)

강 引接大臣備堂于尊賢閣

목 (…) 又達言其一務農之本在於牛畜而鄕外潛屠狼藉依懸房例輪送泮隸於八道不可不設屠處一如兩都及廣州水原例詗察潛屠告官刑配釋菜所用脯牛亦令拌隸依四府例進排事也京外潛屠之禁連有朝令之嚴飭而分送泮隸之請誠是迂闊之論此則請置之余從之 (…)

<일성록, 영조52년(1776) 1월21일(계사)>

경제/농수산업

수원 등의 전결에 진탈(陳頉) 여부를 조사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강 명정전(明政殿)에 나아가 친압(親押)을 행하고 이어 명릉(明陵)에 나아가 전알(展謁)하였다.

목 (…) 이의관이 아뢰기를, “신이 본부의 일 중에 또 한 가지 구제할 만한 폐단을 아뢸 것이 있습니다. 이른바 가경전(加耕田)이라는 것은 곧 화속전(火粟田) 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산전(山田) 중에서 묵은 땅으로 잡혀 폐기(廢棄)된 곳과 물가에 진흙이 쌓여 뭍이 된 곳을 토지가 없는 가난한 백성들이 간간이 개간(開墾)하여 추수를 하여도 세금을 내지 않는 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사는 백성들도 많이 모여 살게 되어 자못 즐겁게 살아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부가 검전(檢田)할 때 하나라도 적발되면 집복(執卜)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회부(會付)하고 난 뒤에는 그대로 실결(實結)로 인정하므로 세금을 바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경작해서 먹고살던 백성들이 태반이나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게 되어 밭에 경작할 사람이 없게 되었으니, 진실로 묵은 밭이 되는 대로 그에 따라 세금을 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회부(元會付)이기 때문에 여러 해를 묵혀서 폐기해 둔 밭에 대해 백징(白徵)하는 사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확실하게 징수할 곳이 없으면 검전한 면임(面任)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검전한 사람도 스스로 마련할 수가 없으면 또한 모두 면리(面里)에서 두루 징수합니다. 그래서 본부의 하도(下道) 7개 면(面) 백성 중에서 안산(安山)과 **수원(水原)** 등의 지역에 도망가서 사는 자가 수백 호(戶)나 됩니다. 신이 이제 그들의 밭이 묵은 밭인지 개간한 밭인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만, 진탈(陳頉)을 조사하여 보고한 뒤에 해조가 시행하도록 청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지역에서 아무 턱도 없이 세금을 징수하여 백성들이 정착할 수가 없으므로 감히 진달합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묘당에 내려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

綱 詣明政殿行親押仍詣明陵展謁

目 (…) 義寬曰臣於本府事又有一弊可捄者所謂加耕者卽火粟之類也山田之入陳廢棄者水濱之泥生處無土貧民間間起墾便作秋熟無稅之土故他境之民亦多聚居頗有樂生之心本府檢田之時一有現發則執卜過多及其會付之後仍作實結納稅甚難故耕食之民太半流離而田無可耕之人則固當隨陳減稅而以元會付之故多年陳棄者多有白徵之患指徵無處則徵稅於面任之檢田者亦皆遍徵於面里故本府下道七面逃接於安山 **水原**等地者爲屢百戶臣方查實其陳起計料而陳頃查報之後該曹之請施未必而保障之地白地徵稅民不得奠居故敢達矣敎曰下廟堂稟處 (…)

<일성록, 정조9년(1785) 9월 4일(경술)>

경제/농수산업

호조가 수원의 연분사목 문제를 보고하다

강 호조에 연분 사목(年分事目)을 판하하고, 이어 여러 도에 신칙하여 올해는 전부 묘당에 맡겨 연분을 제대로 매겼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한 바를 따라줄지의 여부를 정하게 할 것이라고 유시(諭示)하였다.

목 ○ 호조가 아뢰기를, “올해 연분에 대한 규정을 각 도의 장계를 살펴보고 소문을 참고하고 대신에게 나아가 상의하여 등급을 나누어 마련했습니다. (…) 여러 도의 농사를 총괄하여 논한다면 삼남은 일제히 풍년이 들어 거의 어느 곳이 낫고 못하고가 없으며 경기가 삼남의 다음이고 관동과 관북이 또 경기의 다음입니다. 양서(兩西)에 대해 말한다면 관서는 충분히 흉년을 면했으나 해서는 관서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연분에 관한 일을 전적으로 도신에게 맡기고 번거롭게 경차관(敬差官)을 내려보내지 않기로 이미 성상의 재결을 받아 공문으로 알렸으니 각 도의 도사(都事)가 복심(覆審)하는 일과 표본 읍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조사하는 일도 아울러 정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연분을 비교하여 재결을 인정해 주는 규정에 따라 충분히 헤아려 감히 다음과 같이 논열하며, **수원부(水原府)**는 대개장(大槩狀)을 순영(巡營)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계로 보고하도록 한 절목을 계하받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경기는 임자년(1792, 정조16) 원총(元摠) 4만 5857결 중에서 재결로 인정해 주는 결수(結數)가 800결이고 실결(實結)이 4만 5057결입니다. **수원부**는 임자년 원총 4953결 중에서 재결로 인정해 주는 결수가 80결이고 실결이 4873결입니다. (…)

그리고 양전(量田)한 뒤에 발생한 진전(陳田)을 강등(降等)하거나 강속(降續)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뿐만이 아니고, 3년 동안 감세해 주는 것도 경작을 유도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간교하고 교활한 무리들이 제멋대로 농간을 부려 작년에는 새로 경작한 것으로 보고하고 올가을에는 다시 진전이 되었다고 현록(懸錄)했다가 그 토지의 자호(字號)를 바꾸고 명색을 바꾸어 또다시 그해에 새로 경작한 토지인 것처럼 장부에 입록(入錄)하니, 3년 후에 조세를 내게 되는 효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밖에 화속전(火粟田)과 가경전(加耕田)도 꽤 많은데 다만 약간의 파속(把束)으로 책임이나 면하려고만 보고하니, 가록(加錄)하였다는 이름만 있을 뿐이고 조세를 거두는 실익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도신과 수령들은 전혀 살펴서 신칙하지 않고 그 폐단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세히 찾아내고 특별히 적발하여 결총(結摠)이 현저히 증가되는 효과가 있도록 하되, 만약 숨기고 보고하지 않아 사목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령을 드러나는 대로 엄히 처분하겠다는 뜻으로 팔도와 양도(兩都) 및 **수원부**에 엄히 신칙하여 분부하는 것이 어

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재결을 배분하는 정사는 생민(生民)의 화복(禍福)과 크게 관계된다. 재작년에는 도백에게 모두 넘기고 작년에는 한결같이 도백이 장계로 청하는 대로 따른 것은 대체로 상례를 따르지 않고 되도록 백성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었는데 실효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백성들의 고통과 폐막은 그대로라고 한다. 올해는 모두 묘당에 넘겨 연분을 제대로 매겼는지의 여부에 따라 청한 바를 따라줄지의 여부를 정하게 할 것이다. 이로써 여러 도에 관문(關文)을 보내 신칙하라." 하였다.

綱 判下年分事目于度支仍飭諸道諭以今年則一付廟堂隨其能否俾定從違

目 戶曹啓言今年年分事目取考各道狀啓參以所聞就議大臣分等磨鍊 (…) 總論諸道年事則三南一齊大熟幾無彼此之優劣而京畿爲三南之次關東 關北又爲畿甸之次以言乎兩西則關西優於免歉海西遜於關西而年分一事專委道臣不煩差官之下送已爲定奪行會各道都事覆審及抽柂一款幷爲停止謹遵比年給災之規十分商度敢此論列而水原府則大概狀勿由巡營直爲狀聞事節目啓下今年爲始別爲磨鍊京畿壬子元總四萬五千八百五十七結內給災八百結實結四萬五千五十七結水原府壬子元總四千九百五十三結內給災八十結實結四千八百七十三結 (…) 量後陳之降等降續非但使民無冤三年減稅亦出於導其耕墾之意而近來奸猾輩恣意舞弄昨年報以新起今秋懸以還陳字號互變名色相換又以當年新起樣入錄於帳簿未嘗有三年出稅之效其他火粟加耕不爲不多而只以如干把束塞責報來徒存加錄之名實無收租之益而道臣守令全不察飭一任其弊今年則詳細究得另加摘發俾結總顯有增益之效如有隱匿不報違越事目者則當該守令隨現嚴處之意八道兩都及水原府請嚴飭分付允之敎曰俵政大關生民休咎再昨年則一付之道伯昨年則一從其狀請者蓋欲勿循常例務歸便民而實效未聞隱瘼自如今年則當一付之廟堂隨其能否俾定從違以此關飭諸道

<일성록, 정조17년(1793) 8월 15일(을해)>

⑷ 광공업

경제/광공업

수원의 기와 굽는 일을 논의하다

강 수원부(水原府)의 기와를 굽는 일에 대해 도신을 신칙하라고 명하였다.

목 ○ 훈련대장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신은 수원부의 기와를 굽는 일에 대해 삼가 진달할 것이 있습니다. 신이 수원부사를 맡고 있을 때에 인근 용인(龍仁) 땅이 땔나무를 채취할 통로가 조금 넓기 때문에 지방관과 상의하여 가마를 만들어 기와를 구워 냈는데 기왓가마가 예전 그대로 있습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나무를 사는 방도는 도신이 해당 현(縣)을 신칙하여 해당 현으로 하여금 편리한 쪽으로 지휘하게 하는 것이 수원부에서 독자적으로 다른 읍 객지에서 경영하는 것보다 크게 보탬이 있습니다. 이로써 도신과 두 고을 수령을 신칙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水原府 燔瓦申飭道臣

목 訓練大將 趙心泰啓言臣以水原府 燔瓦事有仰達者矣臣於待罪時以隣近龍仁地柴路之稍廣與地方官設施燔出瓦釜自如顧今貿木之道道臣申飭該縣從便指揮較諸水原府之獨自經紀於他邑客地大有助焉以此申飭道臣及兩邑守令恐合事宜從之

<일성록, 정조15년(1791) 3월 18일(임진)>

⑸ 건설

경제/건설

교량 수보에 도차원으로 수원부사가 동원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가 주강(晝講)을 행하였다. 지경연사 정상순(鄭尙淳), 특진관(特進官) 서유경(徐有慶), 참찬관(參贊官) 이헌묵(李憲默), 시독관(侍讀官) 박천행(朴天行), 검토관 윤상동(尹尙東), 가주서 이조승(李祖承), 기사관 김봉현(金鳳顯), 별겸춘추 임석철(林錫喆), 종신(宗臣)인 안천군(安川君) 이계(李烓), 무신(武臣)인 부호군 서유대(徐有大)가 입시하였다.

목 ○ 《맹자(孟子)》를 강(講)하였다.

○ 내가 이르기를, “경기 감사는 입시하라.” 하니, 이형규(李亨逵)가 나아와 엎드렸다. 내가 이르기를, “비석(碑石)은 이미 다듬어 놓았는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이미 다듬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석품(石品)은 과연 어떻던가?” 하니, 좌부승지 김우진(金宇鎭)이 아뢰기를, “신이 조금 전에 들으니 호조에 있는 오석(烏石)을 가져갔다 하는데, 그렇다면 석품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이형규가 아뢰기를, “석품은 과연 좋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비각(碑閣) 대문(大門)의 현판에는 어떻게 쓸 것인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 ‘신축주림구기(辛丑駐臨舊基)’라고 쓰려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좋다. 그렇게 쓰도록 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실록을 봉안할 때에 조금이라도 민폐를 덜 수 있는 것으로 또 어떤 일이 있겠는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이 밖의 폐단에 대해서는 신이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영묘실록(英廟實錄)》을 받들고 나아갈 때에 쓰게 될 채여(彩輿)와 담을 궤자(櫃子)의 수를 별겸춘추가 알아 오라.” 하니, 임석철이 돌아와서 아뢰기를, “30여 개의 궤자를 쓰게 될 것이고, 채여도 궤자의 수와 같다고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미 하교를 받들었으면서 폐단을 없앨 방도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주대(奏對)하였으니, 어찌 감히 그럴 수 있단 말인가.”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교량(橋梁)은 실로 민폐가 되는 일이다. 행행 때마다 매번 수보(修補)하는데도 튼튼하지 못하니, 내가 깊은 곳에는 돌로 다리를 놓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10년간의 수보 비용으로 석재(石材)를 마련하여 처리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 저치(儲置)가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가 없는 듯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날씨가 이러하니, 비록 동풍(東風)이 분 뒤라고는 하지만 곡식들이 손상을 입을 염려는 없겠는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그동안 날씨가 매우 좋았으니 다른 염려는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외읍(外邑) 민정(民丁)들을 부역에 동원하는 일을 일절 금지하라. 이번에는 양주(楊州)의 순아병(巡牙兵)도 그만두고, 홍충도의 역마(驛馬)를 작년의 예대로 입파(入把)하라.”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연이어 신칙하는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부역시키는 일은 일절 없앴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도차원(都差員) 및 치거 차원(植炬差員)은 누구인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도차원은 **수원부사(水原府使)**이고 치거 차원은 부평 부사(富平府使)입니다.” 하였다.

강 御誠正閣行晝講 知事 鄭尙淳 特進官 徐有慶 參贊官 李憲默 侍讀官 朴天行 檢討官 尹尙東 假注書 李祖承 記事官 金鳳顯 別兼春秋 林錫喆宗臣安川君烓武臣副護軍 徐有大

목 講孟子○予曰京畿監司入侍李亨逵進伏予曰碑石已爲磨瘨乎亨逵曰今已磨出以待矣予曰石品果何如耶左副承旨 金宇鎭曰臣俄纔聞之則戶曹所在烏石得去云石品則似好矣亨逵曰石品果好矣予曰碑閣大門懸板何以書之乎亨逵曰以辛丑駐臨舊基書之矣予曰好矣依此書之予曰實錄奉安時可以除民弊之萬一者又有何事乎亨逵曰此外弊端臣姑未聞矣予曰實錄奉詣時當用彩輿容入櫝子之數別兼知入錫喆回奏當用三十餘櫝子而彩輿亦如櫝子之數云矣予曰旣承下敎之後不思除弊之道奏對如是安敢乃爾又敎曰橋梁事實爲民弊每當幸行輒爲修補而亦不堅緻如川深處則以石造橋似無妨矣亨逵曰如以十年修補之費料理石材則可以優如而儲瘨未敷故似無此等議論矣予曰日氣如此雖是東風之後禾稼能無受傷之慮乎亨逵曰日氣甚好似無他慮矣予曰民憂不可不念外邑民丁侵役之事一切禁止今番則楊州巡牙兵亦爲瘨之而洪忠道驛馬依昨年例入把亨逵曰連有飭敎故凡於役民之事一切除減矣予曰都差員及植炬差員誰某乎亨逵曰都差員則**水原府使**而植炬差員則富平府使矣

<일성록, 정조5년(1781) 8월 2일(임신)>

경제/건설

수원부의 비장들 이하의 시상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부(水原府)의 군기(軍器)와 성첩(城堞)을 수선할 때 일을 감동한 비장(裨將)들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목 ○ 병조가 아뢰기를, "**수원부**가 군기와 성첩을 수선하고서 4인에게 상을 줄 것을 청한 일은 아무래도 지나칩니다. 으뜸으로 포상할 사람에 대한 논상은 그만두고, 토교(土校)는 본부로 하여금 넉넉하게 시상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성첩, 해사(廨舍) 및 정기(旌旗), 기계(器械)가 모두 새로워졌다. 이는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이니 해당 부사가 한 일이 매우 가상하다. 일을 감동한 비장들에게 어찌 노고에 보답하는 일이 없어서 되겠는가. 가장 수고한 사람은 가자(加資)하고, 그다음은 승서(陞敍)하고, 그다음은 변장(邊將)에 제수하라고 정원으로 하여금 승전(承傳)을 봉입하게 하라." 하였다.

강 水原府軍器城牒修繕董事諸裨以下施賞有差

목 兵曹啓言**水原府**軍器城牒修繕而四人請賞終涉過濫首褒人論賞置之土校令本府請從優施賞敎以城牒廨舍及旋旗器械無不一新此近來所罕聞該府使事極爲可嘉董事諸裨豈無酬勞之擧首勞人加資其次陞敍其次邊將除授事令政院捧承傳

<일성록, 정조9년(1785) 8월 23일(경자)>

경제/건설

수원부 성첩 보수의 일을 논상하다

강 장양진(張陽鎭)에게 체가(帖加)하라고 명하였다.

목 ○ 병조가 아뢰기를, "**수원부(水原府)**의 성첩(城堞)을 보수할 때에 감독한 사람을 논상하는 데 대해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하교하기를, "장양진에게는 체가자(帖加資)를 성급(成給)하라." 하였다.

綱 命張陽鎭帖加

目 兵曹啓言**水原府**城堞修補時監董人論賞請上裁從之敎以張陽鎭帖加成給

<일성록, 정조11년(1787) 11월 8일(신미)>

경제/건설

수원 신읍(新邑)의 문제를 논의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영중추부사 김치인(金致仁), 판중추부사 서명선(徐命善), 천원도감 당상 서유린(徐有隣)·이재간(李在簡), 원소도감 당상 김이소(金履素)·정민시(鄭民始), 한성 판윤 김문순(金文淳),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을 소견하였다.

목 (…) ○ 서유방이 아뢰기를, "**미륵당참(彌勒堂站)**에 원우(院宇)를 설치하는 일을 최근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의 신읍(新邑)을 이미 팔달산 아래로 정했으니 차후 원소로 행행하실 때 지나는 거둥길의 차례가 궐문에서 과천(果川)까지가 30리이고 과천에서 **수원** 신읍까지가 40리이고 신읍에서 원소까지의 거리가 20리입이다. 주정소(晝停所)와 숙소는 본래 정해진 곳이 있으니 지금은 이곳에다가 단지 창고만 세워 **검암참(黔巖站)**의 예와 같이 임시로 머무는 장소로 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수원읍**을 옮길 때의 체목(體木)은 동협(東峽)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기로 이미 정탈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골짜기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가는 노정이 아주 멀어 운반해 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안면도(安眠島)가 **수원**과 해로로 불과 몇 번 순풍을 받으면 왕래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것이 가령 체목 200개 중에서 들보가 20주(株)이고 기둥이 180주라고 한다면 수효가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운반해 오기도 편리하고 가깝습니다. 본도(本島)에 있는 소나무를 바람에 쓰러진 것이거나 저절로 마른 것을 막론하고 이 수 한도로 허급(許給)하고 또한 지방관으로 하여금 배를 빌려 가져오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

綱 召見領府事 金致仁 判府事 徐命善 遷園都監堂上徐有隣 李在簡 園所都監堂上金履素 鄭民始 漢城判尹 金文淳 京畿監司 徐有防于誠正閣

目 (…) ○ 有防啓言彌勒堂設院事才已蒙允而今則**水原**新邑旣定於八達山下此後園所幸行時輦路次第自闕門至果川爲三十里自果川至**水原**新邑四十里自新邑距園所二十里晝停宿所自有元定處今則就此地只建倉舍以爲臨時駐蹕之所如黔巖站例似好矣從之又啓言**水原**移邑時體木取用於東峽所在者已有定奪而但自峽而江自江而海程道絕遠運致甚難臣意則安眠島距**水原**海路不過數帆風往來之地而目今所容入假令體木二百箇其中樑爲二十株柱爲一百八十株云矣數爻旣不太過運致又爲便近本島所在松木毋論風落自枯限此數許給而亦令地方官賃船取來似好矣從之 (…)

<일성록, 정조13년(1789) 7월 15일(기해)>

경제/건설

수원의 신읍(新邑) 조성 문제를 논의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도감 당상 정민시(鄭民始), 한성 판윤 김문순(金文淳), 광주 부윤 이형원(李亨元), **전 수원부사 이조원(李祖源)**을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이 전교를 가지고 경조의 여러 당상은 각 방(坊)의 부로(父老)를 대궐 아래에 불러 모아 내가 천원할 때 동원함으로써 차마 조금도 백성을 수고롭게 할 수 없다는 뜻을 상세하게 효유하고, 또한 각부(各部)의 방곡(坊曲)에 베껴 보냄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모르는 폐해가 없도록 하라. 효유할 때에 좌승지가 함께 나아가라."

하였다. 내가 또 이르기를, "광주 부윤(廣州府尹)이 이미 노정을 살펴보았는데,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형원이 아뢰기를, "과천(果川)에서 **미륵당(彌勒堂)**까지가 35리이고 **미륵당**에서 **수원**의 읍터를 새로 정한 곳까지가 20리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미륵**

당에 창고를 짓기로 결정하였는데 지금부터 시작하면 가을걷이에 방해가 없겠는가?" 하니, 이형원이 아뢰기를, "지금은 모군(募軍)을 고용하고 가을걷이 때는 또 서울서 모집한 일꾼을 쓰면 서로 방해될 염려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광주의 두 면을 이속(移屬)한 후에 군정(軍政)과 적정(糴政)은 폐단이 없겠는가?" 하니, 이형원이 아뢰기를, "두 면의 군액(軍額)이 500명에 가까운데 그중 납미(納米)하는 자가 300 여 명입니다. 이 300여 명 치를 타읍에 옮겨 배정한다면 타읍의 백성은 부담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다른 면에 옮겨 충당하는 것은 분명 되지 않을 정사이니, 마땅히 편한 쪽으로 처리해야 한다. 먼저 **수원**으로 이송할 민호와 전결(田結)의 수효를 기백과 함께 상의하여 써서 들이라. 그리고 창고를 계획하는 것도 헤아렸는가?" 하니, 이형원이 아뢰기를, "일전에 수어사와 상의하였으니 편한 쪽으로 주선하겠습니다."

하였다. 정민시가 아뢰기를, "**앵봉(鸎峰)**에 보낸 석공이 좀 전에 돌아왔는데, 돌을 뜨는 곳이 네 군데인데 해마다 사가(私家)에서 캐다 써서 혼유석(魂遊石)과 사대석(莎臺石) 등은 우선 논하지 않더라도 기타 석물감도 쓸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석소(大浮石所)를 형편상 강화부(江華府)로 준비해서 보내야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애초에 반대했던 것은 선격(船格)을 염려해서인데 사세가 이와 같으니 어찌할 수 없다."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강화에서 **수원**까지는 뱃길이 애초에 그다지 멀지 않은 데다 큰 바다를 지나지도 않으니 염려 없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대부석소에 낭청 한 명을 보내야겠다."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서직수(徐直修)가 부지런하고 성실하니 보낼 만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정자각의 석물은 그곳에서 떠낼 것인가?"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그것은 거기서 구해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방외인(方外人)으로서 택일한 송가(宋哥)는 술업(術業)과 인물이 과연 어떠한가?"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좀 전에 보니 나이는 근 70세이고 사람은 자못 노성한데 술업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실로 다른 길일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 일관의 뜻은 또한 어떠한가?"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10월 중으로는 다시 다른 날이 없다고 하는 금성위(錦城尉)의 말을 신도 들었는데, 송가와 여러 일관들의 말로는 모두 방서(方書)에 없다고 합니다. 이미 들은 이상 어찌 다시 날을 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방서에 없다면 틀림없이 전례 중에 상고할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이조원(李祖源)에게 이르기를, "동부승지의 말을 들으니 용인 현령(龍仁縣令 이조원의 아우 이지원(李祉源))이 풍수설(風水說)에 자못 생소하지 않다고 하던데 그러한가?" 하니, 이조원이 아뢰기를, "그가 어찌 생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수원**의 읍터를 새로 정한 곳을 본 적이 있는가?" 하니, 이조원이 아뢰기를, "신이 본읍을 맡고 있을 때에 여러 차례 올라가 보았는데 국세(局勢)가 과연 하늘이 낸 듯하여 비록 무지몽매한 눈으로 보아도 대지(大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정한 후에 신의 아우 편지를 보니 태평한 만세를 이로써 점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그 또한 그곳을 본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즉시 용인에 편지를 써서 내일 곧장 **수원**에 가서 함께 살피고 오도록 하라." 하니, 이조원이 아뢰기를, "신의 아우가 지사 박대량(朴大良)과 함께 이천(利川)에 갔기 때문에 내일 올라오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박대량이 올라온다면 함께 가서 살피는 것이 매우 좋겠다. 기백으로 하여금 즉시 용인 현령이 있는

곳에 분부하여 박대량과 함께 밤을 새워 올라온 뒤에 이어 와서 대령하게 하라.” 하였다. (…)

綱 召見都監堂上鄭民始 漢城判尹 金文淳 廣州府尹 李亨元前水原府使 李祖源于重熙堂

目 (…) 予曰此傳敎京兆諸堂招集各坊父老於闕下以予以遷園時役不忍一毫勞民之意詳細曉諭亦謄付於各部坊曲俾無一人不知之弊曉諭時左承旨同爲進去予又曰廣尹已看審程途遠近何如亨元曰自 果川至彌勒堂爲三十五里自彌勒堂至水原邑基新定處爲二十里矣予曰彌勒堂定以作倉自今始之則可無妨秋務乎亨元曰今則雇用募軍秋收時又用京募似無相妨之慮矣予曰廣州二面移屬之後軍政糶政可無弊端乎亨元曰二面軍額近五百而其中納米者爲三百餘名若移此三百餘名於他面則他面之民似多有疊役者矣予曰移充他面決是行不得之政當有從便區處之道先以移送水原之民戶結數與畿伯相議書入而倉舍經紀亦有料量乎亨元曰日前與守禦 使相議當從便拮据矣民始曰罽峯所送石工俄已還來浮石處有四而年年採用於私家魂遊莎臺等石姑無論其他石物無一可用者云今則大浮石所勢將治送於江華府矣予曰自初持難者爲慮船格事勢如此無奈何矣民始曰自江華至水原船路初不甚遠又經大洋似無慮矣予曰大浮石所亦當送一郎廳矣民始曰徐直修勤幹可送矣予曰丁字閣石物當自其處浮出乎民始曰此則或可得用矣予曰方外擇曰人宋哥術業人物果何如民始曰俄者見之則年近七十人頗老實而術業則未可知矣予曰果有他吉日云而諸日官之意亦如何民始曰十月內更無他日云錦城尉之言臣亦聞之而宋哥與諸日官之言皆以爲方書之所無云旣聞之後何可不更爲推擇乎予曰旣是方書所無則必有前例之可考者矣予謂祖源曰聞同副之言龍仁縣令頗不生疏於堪輿術云然否祖源對曰渠安得免生疏乎予曰水原新定處曾見之乎祖源曰臣待罪本邑時屢次登見局勢果是天作雖以菹昧之見亦知其爲大地而今番新定後見臣弟書則以爲太平萬歲從此可卜云渠亦似見之矣予曰須卽作書龍仁使之趁明日直往水原同爲看審以來祖源曰臣弟與地師 朴大良同往利川似難趁明日上來矣予曰朴大良果已上來則同往看審甚好使畿伯卽爲分付龍仁縣令所在處與朴大良同爲罔夜上來之後仍令來待 (…)

<일성록, 정조13년(1789) 7월 17일(신축)>

경제/건설

수원에서 석물을 떠내는 일에 대해 논의하다

강 강화 유수(江華留守)는 본영(本營)으로 돌아가라고 하유하였다.

목 ○ 강화 유수 윤승렬(尹承烈)이 석물을 떠낼 때에 참관하여 감동하기 위해서 본영을 떠나겠다고 장계한 데 대해, 하교하기를, “ ‘비국(備局)이 행회(行會)한 내용 중 참관하여 역사를 감동하라고 운운한 것은 대체적으로 검찰(檢察)하라는 뜻이니 어찌 굳이 본영을 떠나 그곳에 머물러서 민폐를 끼칠 것이 있겠는가. 이 뜻을 잘 알고서 즉시 본영으로 돌아가라. 공장에게는 공곡(公穀)으로 양료(糧料)를 넉넉히 지급하고, 운반할 때 사격(沙格)에게도 선가(船價)와 양료를 특례로 넉넉히 지급하며, 도감의 원역과 공장들이 폐단을 끼칠 단서에 대해서도 모쪼록 엄히 금하도록 하라.’ 는 내용으로 회유(回諭)하라.

‘수원(水原)의 앵봉(鴬峯), 화산(花山) 등에 별간역(別看役)과 석공(石工)을 보내 상을 내걸고 석물을 떠내게 하였는데 아직 수효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본부(本府)에서 떠내는 석물이 절로 수효가 줄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선운할 때의 폐단이 된다. 막중한 일에 민폐야 어찌 구애되겠는가마는 내가 걱정스러워 마지않는 것은 오직 한 지아비라도 곤욕을 당할까 하는 것이고, 더구나 대양(大洋)에서 선운하는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제 수원에서 석물을 떠낼 수효를 부석소(浮石所) 낭청으로 하여금 도감과 의논하여 상세하게 결정한 뒤에 선운하게 하라.’ 는 내용으로 일체 회유하라.

이 회유 한 통을 또한 경도감(京都監)으로 하여금 원소도감에게 베껴 전달하게 하라. ‘장교와 하리에게 양료를 지급하며, 선적하여 출발시키고 돌아와 정박한 상황을 장문(狀聞)하는 일 등에 대해 비국에서 행회한 것에 의거하여 거행하라.’ 는 내용으로 일체 심류(沁留)에게 회유하라.” 하였다. (…)

綱 諭沁留還營

目 江華留守 尹承烈以石物浮出時眼同監董次離營啓敎曰備局行會中眼同董役云者指大體檢察也何必離營往留以貽民弊此意知悉卽爲還營工匠則以公穀厚給糧料運致時沙格則船價糧料拔例厚給而都監員役工匠輩貽弊之端亦須嚴禁事回諭**水原地**鴈奉花山等處遣別看役及石工懸賞浮取姑未知數爻幾許本府浮出石物自司減數此乃爲船運時弊端也莫重之事民弊何拘而予之憧憧一念惟恐一夫之受困況大洋船運乎今則**水原**石物浮出數爻令浮石所郎廳往復都監詳細停當然後船運事一體回諭此回諭一通亦令京都監謄送園所都監校吏給糧裝發還泊形止狀聞等事依備局行會擧行事一體回論沁留處 (…)

<일성록, 정조13년(1789) 7월 20일(갑진)>

경제/건설

수원부사의 첩정을 살피다

강 진사 이운행(李運行)을 자리가 나는 대로 조용(調用)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의 장계에,

“새 읍 향교(鄕校)의 터로 합당한 곳이 있으면 다른 터로 옮겨 정하되 끝내 찾아내지 못하여 그대로 전의 터를 쓰게 되면 값을 후하게 지급해 준 뒤 터의 주인 이운행을 감영으로 올려보내라고 관문을 보냈습니다. 방금 **수원부사 조심태(趙心泰)**의 첩정(牒呈)을 보니, ‘널리 찾아보았지만 끝내 합당한 곳을 얻지 못하였으니 옮겨 정하는 문제는 어떻게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이운행은 집안 살림이 매우 가난하여 무덤을 옮길 수 없겠기에 돈 100냥을 지급해 준 뒤 감영으로 올려보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운행을 불러와서 상세히 물으니, 그가 3대 5개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가난한 유생이 5개의 무덤을 한꺼번에 이장하는 것은 본부에서 지급한 100냥의 돈으로는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당초 유지(有旨)에 이미 순영(巡營)에서 특별히 넉넉하게 지급해 주라는 하교가 있었기 때문에 200냥을 더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 재주와 식견은 잠깐 만나 보고서는 감히 그 속내가 어떠한지 분명하게 알 수 없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조심성 있고 찬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그 집안의 세덕(世德)을 생각하면 비록 빈궁하지 않다 해도 영읍(營邑)에서 도와주는 것이 그리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그와 같은 세가(世家)로 이와 같이 가난하니 3대의 5개 무덤을 한꺼번에 이장하는 것은 너무도 불쌍한 생각이 든다. 본영에서 획급한 것은 너무 적으니, 이 외에 미면(米綿) 및 장례에 필요한 잡물을 넉넉히 지급해 주어 그로 하여금 혼자 힘으로 마련하느라 애쓰지 않게 하라. 경도 경의 집안일이라 여기고 마음을 다해 거행하라. 남다른 재주와 식견이 있는지 잠깐 보고 어찌 알겠는가만, 세가의 자손인 그가 무슨 관직인들 해내지 못하겠는가. 더구나 본읍의 주인인 데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어제 대신이 연석에서 여쭌 뒤 마침 초사(初仕) 자리가 나게 되었으니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즉시 조용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綱 命進士李運行待窠調用

目 京畿監司 徐有防狀啓以爲新邑鄕校基址若有可合處移定他基終如不得仍用前基則厚給價本後

基址主人李運行起送之意發關矣卽接**水原府使** **趙心泰**牒呈則廣加尋看終未得可合處移定一款末由擧論而李運行家計至貧無以移窆故錢一百兩覓給而起送云矣招致詳問則渠以爲三代五冢移葬他處云貧儒五冢之一時移葬有非本府百兩錢所可經紀者當初有旨旣有自巡營拔例優給之下敎故加給二百兩其才識一款暫時接見雖不敢的知其所存之如何而外面則卽是謹拙安詳之人矣敎曰思渠家世德雖不貧窘營邑助力猶不至濫屑況以渠世閥貧寒如許而三代五冢之一時移葬極爲矜念卿營所劃太少此外優給米綿及營葬雜物俾渠勿以私力自辦卿亦看作卿家事盡心擧行表異之才識甁見何以知之而以渠世家何官不做乎況本邑主人乎昨日大臣筵奏之後適有筮仕窠待窠卽爲調用事分付
<일성록, 정조13년(1789) 8월 7일(경신)>

경제/건설

수원 등의 관사 수보 사역에 대해 재촉하다

강 **수원** 등 고을 관사(官舍)의 역사(役事)를 감동(監董)한 사람을 열록(列錄)하여 장문하라고 명하였다.

목 ○ 하교하기를, "과천(果川)의 관사를 수보(修補)한 데 대한 장계는 방금 들어왔으나, **수원**과 광주(廣州)는 아직까지 보고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도감의 사역(事役)과는 사체가 각각 다르므로 그들을 위로하고 권장하는 방도로 볼 때 즉시 시상해야 하니, 사역한 날짜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말고 경도감과 향도감(鄕都監)을 구분하여 비장(裨將)과 장교의 이름 아래에 각각 실제로 사역한 날짜를 기록해서 각각 즉시 장문하라고 **수원부사**와 광주 부윤에게 하유하라. 세 고을의 읍리 중에서 수보하는 데 가장 공로가 있는 자를 상세히 고찰해서 장문하라고 일체 기백(畿伯)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綱 命**水原**等邑官舍董役人列錄狀聞

目 敎曰果川官舍修補狀啓才已入來而**水原** 廣州尙不報來與都監事役事面各異其在慰悅而奬勸之道宜卽施賞勿拘多少分京鄕裨校名下各錄實役日子各卽狀聞事下諭于**水原府使** 廣州府尹三邑吏之最效營者詳考狀聞事一體下諭于畿伯
<일성록, 정조13년(1789) 9월 25일(무신)>

경제/건설

수원의 신읍에 행궁, 객사, 향교를 세우다

강 **수원(水原)** 신읍참(新邑站)의 행궁(行宮), 객사(客舍), 향교(鄕校)를 건립하였다.

목 ○ 신읍참의 행궁과 객사, 향교를 먼저 조성하였는데, 행궁이 27칸, 삼문(三門)이 5칸, 왼쪽 익랑(翼廊)이 9칸, 오른쪽 익랑이 6칸, 서쪽 행각(行閣)이 5칸, 누상고(樓上庫)가 10칸, 중문(中門)이 5곳, 내아(內衙)가 34칸, 중문이 4곳, 객사가 20칸, 중문이 2곳, 향교가 51칸, 중문이 1곳, 군수고(軍需庫)가 19칸 반, 공수(公須)가 7칸, 관청(官廳)이 5칸, 창사(倉舍)가 60칸, 각 처의 담장이 278칸이다.

綱 建**水原**新邑站行宮客舍鄕校

目 新邑站行宮及客舍鄕校先爲造成行官二十七間三門五間左邊翼廊九間右邊翼廊六間西邊行閣五間樓上庫十間中門五處內衙三十四間中門四處客舍二十間中門二處鄕校五十一間中門一處軍需庫十九間半公須七間官廳五間倉舍六十間各處墻垣二百七十八間
<일성록, 정조13년(1789) 9월 26일(기유)>

경제/건설

수원부사가 원소(園所)의 화소(火巢) 개척 완료 첩정을 보내다

강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이 원소(園所)의 화소(火巢)를 개척(開拓)하는 일을 마쳤다고 치계(馳啓)하였다.

목 ○ 장계에, "**수원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의 첩정(牒呈)에 '원소의 화소를 개척하는 일을 이달 19일부터 시작하여 20일에 마쳤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원문 548자 도삭(刀削)]

綱 京畿監司 徐有防以園所火巢畢役馳啓

目 狀啓以爲**水原府使 趙心泰**牒呈內園所火巢開拓今十九日始役二十日告畢(刀削)(刀削)

<일성록, 정조13년(1789) 10월 24일(병자)>

경제/건설

수원 행궁 건설의 부족한 부분을 살피다

강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관무재(觀武才) 및 초계 문신(抄啓文臣)의 지난 7월 친시(親試)를 행하였다. 친시의 시관은 김종수(金鍾秀), 오재순(吳載純), 서정수(徐鼎修), 정대용(鄭大容), 이만수(李晩秀), 윤행임(尹行任)이고, 관무재의 시관은 심이지(沈頤之), 김문순(金文淳), 서유대(徐有大), 이윤희(李潤禧), 신헌조(申獻朝), 백동원(白東遠)이다.

목 (…)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 행궁(行宮)**의 대체는 다 지었기는 하지만, 강무당(講武堂) 및 기타 공해(公廨) 등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많은데, 지난번에 청하여 얻은 것으로는 태반이 부족하여 현재 공역을 정지할 수밖에 없다는 탄식이 있습니다. 다른 각 읍에서 읍을 옮길 때 재목을 획급(劃給)하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는데, 더구나 행궁의 사체는 더욱 자별한 경우이겠습니까. 안면도(安眠島)의 풍락송(風落松) 중에서 130주(株)까지 특별히 더 지급함으로써 즉시 공역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

綱 御春塘臺行觀武才及抄啓文臣去七月朔親試親試試官 金鍾秀 吳載純 徐鼎修 鄭大容 李晩秀 尹行任觀武才試官 沈頤之 金文淳 徐有大 李潤禧 申獻朝 白東遠

目 (…) 又啓言**水原**行宮大體則雖爲了畢而講武堂及其他公廨之不可不營建者多而向來所請得太半不足見方有停役之歎他各邑移邑時材木劃給已有前例況行宮事體尤有自別乎安眠島 風落松中限一百三十株特爲加給以爲趁卽完後之地恐合事宜故敢此仰達矣從之 (…)

<일성록, 정조13년(1789) 11월 3일(을유)>

경제/건설

원소도감에서 사역한 수원의 석수를 거명하다

강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이 석수(石手)로서 첩가(帖加)를 만들어 줄 사람의 성명에 대해 장문(狀聞)하였다.

목 ○ 장계에, "원소도감(園所都監)에서 사역시킨 석수에 대해 각 도, 각 읍의 변수(邊首) 1인을 모두 첩가를 만들어 주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각 해읍에서 보고한 성명대로 열거하여 치계합니다.

양주(楊州)의 임비감(林比甘), 장단(長湍)의 임소남(林小男), **수원(水原)**의 전송무(全松茂), 죽산(竹山)의 안태운(安太運), 포천(抱川)의 김귀재(金貴才), 진위(振威)의 김점복(金點福), 안산(安山)의 지성대(池成大), 안성(安城)의 최시동(崔時同), 용인(龍仁)의 신덕진(申德鎭), 과천(果川)의 박칠금(朴七金)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오늘 정사에서 하비

하라.” 하였다.

綱 京畿監司 徐有防以石手帖加人姓名狀聞

目 狀啓以爲園所都監使役石手每道每邑邊首一人竝帖加成給事有命矣依各該邑所報姓名開錄馳啓楊州 林比甘 長湍 林小男 水原 全松茂 竹山 安太運 抱川 金貴才 振威 金點福 安山 池成大 安城 崔時同 龍仁 申德鎭 果川 朴七金 敎以今日政下批

<일성록, 정조13년(1789) 11월 6일(무자)>

경제/건설

수원 백성들의 집을 조성하는 문제와 이를 위한 급료문제를 논의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경기 감사 김사목(金思穆), 수원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를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읍 주변에 집을 지은 것은 몇 호나 되겠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지금 조금씩 집들을 엮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과연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본부(本府) 군졸에게 지급하는 급료의 수요에 대해 일찍이 하교한 것이 있는데, 무엇으로 구획(區劃)하고 얼마로 제한할지를 도백과 해당 수령은 충분히 상의하여 수일 안으로 등대(登對)하여 품처하라. 대저 나의 뜻은 수원 백성으로 하여금 넉넉히 은택을 입게 하려는 것일 뿐만이 아니다. 만일 수원 백성 때문에 피해가 이웃 고을에 미친다면 또한 똑같이 대우하여 은혜를 고르게 베푸는 도리가 아니다. 경은 모쪼록 나의 고심과 지극한 뜻을 헤아려서 모든 조처에 뜻을 받들 방도를 잘 생각하여 혹시라도 그 사이에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하라.” 하였다.

綱 召見京畿監司 金思穆 水原府使 趙心泰于重熙堂

目 予曰邑底作舍者當爲幾戶耶心泰曰今方稍稍結構而姑未知多寡之果何如也予曰本府軍卒支放之需曾有所下敎者以何區劃而限幾許道伯與該倅爛加商確數日間登對稟處大抵予意不但使水原民欲被厚澤而已若以水原之民故而害及隣邑則亦非所以一視均惠之道卿須體此若心至意凡於措劃之際克念對揚之道無或生弊於其間

<일성록, 정조14년(1790) 4월 15일(을축)>

경제/건설

새로 건립한 수원부의 공해(公廨)의 규모와 현황에 대해 논의하다

강 수원부(水原府) 읍치(邑治)의 공해를 건립한 데 대해 사악(賜樂)하여 낙성하도록 하고, 이어 역사(役事)를 감동(監董)한 사람을 등급을 나누어 장문하라고 명하였다.

목 ○ 새로 건립한 공해는 득중정(得中亭) 9칸(間), 대문(大門) 1칸, 진남루(鎭南樓) 6칸, 좌익문(左翊門) 3칸, 좌우의 익랑(翼廊) 6칸, 남익랑(南翼廊) 6칸, 북익랑(北翼廊) 5칸, 강무당(講武堂) 16칸, 와호헌(臥護軒) 15칸 반, 대문 1칸, 익랑 8칸, 장용영(壯勇營)의 전목고(錢木庫) 1칸, 잡물고(雜物庫) 2칸, 미고(米庫) 5칸, 비장청(裨將廳) 15칸, 향청(鄕廳) 19칸, 군향고(軍餉庫)의 대청 5칸 반, 고사(庫舍) 42칸, 고마고(雇馬庫)의 대청 4칸 반, 고사 6칸, 관청(官廳)의 대청 6칸 반, 고사 18칸, 어승마마구(御乘馬馬廐) 10칸, 군기대청(軍器大廳) 6칸, 군수고(軍需庫)의 미고 6칸, 군기총검고(軍器銃劍庫) 5칸, 명륜당(明倫堂) 10칸, 집사청(執事廳) 24칸 반, 초관청(哨官廳) 17칸, 방영군관청(防營軍官廳) 12칸, 토포군관청(討捕軍官廳) 19칸 반, 별효사청(別驍士廳) 6칸, 작청(作廳) 28칸, 영선(營繕) 10칸, 교방(敎坊) 6칸, 객사(客舍)의 익랑 4칸, 외삼문(外三門) 3칸, 외장원(外墻垣) 199칸이다.

○ **수원부사 조심태(趙心泰)**에게 전교하기를, "작년 겨울에 동헌과 향교, 객사 등 여러 곳을 새로 건립한 뒤에 상전(賞典)이 있었다. 그 뒤로 **득중정, 와호헌, 복내당(福內堂), 진남루, 강무당, 각청(各廳), 각창(各倉)** 등 수많은 공역은 작년 겨울보다 10배나 되니, 잔치를 열어 낙성식을 해야 한다. 또 잔치를 열어 낙성식을 할 때에 사악하며, 감동한 사람에 대해 논상(論賞)하는 것은 차례대로 거행할 일이니, 작년에 시상한 전례와 이번에 공로를 세운 비장(裨將)·향임(鄕任)·장교(將校)·이례(吏隷)를 등급을 나누어 후록(後錄)하여 장문하라. 그리 알고 거행하라. 그중 좌수(座首)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11개월 동안 공로를 세운 자가 있다고 하니, 일체 장문하라." 하였다.

강 建**水原府**治公廨賜樂落成仍命董役人分等狀聞

목 新建公廨**得中亭**九間大門一間鎭南樓六間左翊門三間左右翼廊六間南翼廊六間北翼廊五間講武堂十六間臥護軒十五間半大門一間翼廊八間**壯勇營**錢木庫一間雜物庫二間米庫五間裨將廳十五間鄕廳十九間軍餉庫大廳五間半庫舍四十二間雇馬庫大廳四間半庫舍六間官廳大廳六間半庫舍十八間御棄馬馬廐十間軍器大廳六間軍需庫米庫六間軍器銃劍庫五間明倫堂十間執事廳二十四間半哨官廳十七間防營軍官廳十二間討捕軍官廳十九間半別驍士廳六間作廳二十八間營繕十間敎坊六間客舍翼廊四間外三門三間外墻垣一百九十九間○敎**水原府使 趙心泰**曰昨冬東軒及鄕校客舍諸處新建後有賞典而其後**得中亭**也臥護軒也福內堂也鎭南樓也講武堂也各廳各倉也許多工役十倍於昨冬已設宴而落之又賜樂於落成設宴日監董人論賞卽次第事昨年施賞前例及今番效勞裨鄕校吏分等後錄狀聞事知悉擧行其中座首有首尾十一朔效勞者云一體狀聞

<일성록, 정조14년(1790) 5월 7일(정해)>

경제/건설

수원부의 공해 건립과 참여자에 대해 시상하다.

강 **수원부(水原府)**의 공해(公廨)를 건립할 때 감동(監董)한 사람에게 모두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득중정(得中亭), 와호헌(臥護軒), 복내당(福內堂), 진남루(鎭南樓), 좌익문(左翊門), 장남헌(壯南軒), 좌우의 익랑(翼廊), 강무당(講武堂), 명륜당(明倫堂), 객사(客舍)의 익랑, 각청(各廳), 각창(各倉) 등 공해 도합 360여 칸과 바깥 담장 200칸을 10개월 안팎에 걸쳐 완성하였다**. 역사(役事)가 거대하고 노고가 심하기로는 어찌 작년에 행궁(行宮)을 조성할 때의 역사에 비기겠는가. 감동한 비장(裨將)과 장교(將校) 이하에게 등급을 나누어 상전(賞典)을 시행해야 한다.

영건 도청(營建都廳)인 전(前) 부사(府使) 민광승(閔光升)은 상당직(相當職)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즉시 승서(陞敍)하여 조용(調用)하라. 책응 비장(策應裨將)인 가선대부(嘉善大夫) 홍신권(洪愼權), 외감(外監)인 절충장군(折衝將軍) 서정호(徐正祜)에게는 가자(加資)하라. 득중정, 진남루, 장남헌, 좌우의 익랑, 좌익문 등 여러 곳의 감동 비장(監董裨將)인 출신(出身) 조명신(曺命臣), 강무당 이하 여러 곳의 감동 비장인 절충장군 심종석(沈鍾祏), 와호헌 이하 여러 곳의 감동 비장인 한량(閑良) 조숭(趙崇)은 오늘 정사에서 오위장(五衛將)의 자리를 비워 조용하라. 간역 장교(看役將校)인 한량 이필재(李弼載)·이광춘(李光春), 절충장군 김지택(金之澤), 한량 이재운(李載雲), 절충장군 이문환(李文煥), 한량 오흥대(吳興大)·엄익무(嚴翊武), 향인(鄕人) 이명혁(李命赫) 등에게는 상가(賞加)하라. 감동 장교(監董將校)인 출신 김중려(金重麗), 한량 황일청(黃一淸)·김광서(金光瑞)·나천경(羅天經), 절충장군 이위(李渭)에게는 첩가(帖加)를 작성해 주라. 각처 도간역(各處都看役)인

유학(幼學) 유서신(柳瑞新)은 첨지(僉知)의 자리를 비워 의망하여 들이라. 그 나머지 간역하리(看役下吏) 등에게는 본도에서 특례로 후하게 시상한 뒤에 장문(狀聞)하라." 하였다.

강 水原府公廨監董人竝施賞有差

목 敎曰得中亭臥護軒福內堂 鎭南樓 左翊門 壯南軒左右翼廊講武堂 明倫堂客舍翼廊各廳各倉公廨合三百六十餘間外墻垣二百間告成在於十朔內外役鉅勞重豈比於昨年行宮造成之役乎監董裨校以下宜有分等賞典營建都廳前府使 閔光升相當職待窠卽爲陞敍調用策應裨將嘉善洪愼權外監折衝徐正祜加資得中亭鎭南樓 壯南軒左右翼廊左翊門諸處監董 裨將出身曺命臣 講武堂以下諸處監董裨將折衝沈鍾祐 臥護軒以下諸處監董 裨將閑良趙宲 五衛將今日政作窠調用看役將校閑良李弼載李光春折衝金之澤閑良李載雲折衝李文煥閑良吳興大 嚴翊武鄕人李命赫等賞加監董將校出身金重麗閑良黃一淸 金光瑞 羅天經折衝李渭帖加成給各處都看役幼學柳瑞新 僉知作窠擬入其餘看役下吏等自本道拔例從厚施賞後狀聞

<일성록, 정조14년(1790) 5월 8일(무자)>

경제/건설

수원 신읍 조성과 관련하여 논의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목 (…) 채제공이 아뢰기를, "수원의 새 고을에 가옥이 즐비해지는 데 성상께서 뜻을 두고 계신데, 가옥이 즐비해질 방도를 생각해 보건대 길의 좌우에 각 관사의 조방(朝房)을 차례로 짓는다면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전 부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전방(廛房)의 첫머리에 그 지형에 따라 각 관사의 조방을 차례로 새로 세우면 훨씬 보기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모두 10칸을 한도로 하여 짓는다면 들어가는 비용 또한 그리 대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조방을 만들려고 하면 마땅히 영문(營門)부터 먼저 시작해야 한다." 하니, 김문순이 아뢰기를, "만약 조방을 세운다면 병조의 조방이 어찌 감히 영문보다 뒤이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본부는 평소 집 짓는 목재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혹 목재를 마련하기 어렵지는 않겠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본부에서 서쪽으로 10리쯤 나가면 집 짓는 목재를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였다.

강 行次對于誠正閣

목 (…) 濟恭曰水原新治家舍櫛比聖意所在若思櫛比之道路上左右各司朝房次第營造得宜予曰前府使之意何如心泰曰廛房之頭仍其地形各司朝房鱗次創建則其在觀瞻似當一倍佳壯矣濟恭曰皆以十間爲限營建則所費亦不至大段矣予曰欲造朝房宜自營門先爲創始矣文淳曰若建朝房臣曺亦豈敢後於營門乎予曰本府素稱屋材之苟簡此或不至難辦乎心泰曰自本府西出十里許則屋材之貿得曾所不難

<일성록, 정조15년(1791) 1월 25일(경자)>

경제/건설

수원의 신읍으로 조성하는 문제에 대한 상소에 비답하다

강 사간 이운빈(李運彬)이 상소하여 체차해 주기를 청하고, 이어 여러 조목을 진달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목 (…) 수원(水原) 신읍에 관하여 신에게 한 가지 좋은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주한 가

호는 그 형편을 살펴보면 오래 견디며 안정될 수 없습니다. 신의 천견으로는, 서울과 지방을 막론하고 경대부(卿大夫)와 사서인(士庶人) 중에서 재력이 넉넉한 자들을 모집하여 집을 짓게 한다면 은택을 입는 자가 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들을 안주시키는 방법은 오직 상께 달려 있으니 신은 감히 번거로이 아뢰지 않겠습니다."
하여, 비답하기를, (…) 수원 신읍에 부유한 가호를 모집하여 이주하게 하는 일은 지금 애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두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지금 생각으로는 시일 내에 민가가 즐비하게 채워지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이 때문에 밤낮으로 마음이 답답하니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층 관심을 두고자 한다. 그대는 사직하지 말고 직임을 살피라." 하였다.

강 司諫 李運彬上疏乞遞仍陳諸條賜批

목 (…) 水原新邑事切有一得之見第今來接之戶顧其勢無以耐久而奠安以臣賤見無論京外卿士大夫士庶人募其饒厚者使之築室則沾漑者倍之若其住接之道惟在於上臣不敢煩陳批以 (…) 水原新邑富實戶募接事於此非不辛勤姑未就緖以今所料時日內難責櫛比之效此所以夙夜憧憧者更欲十分留意於將來之方矣爾其勿辭察職

<일성록, 정조15년(1791) 2월 13일(무오)>

경제/건설

나무 심는 문제에 대해 수원부사에게 하유하다

강 나무 심는 역에 대해 넉넉하게 값을 지급하도록 수원부사(水原府使)에게 하유(下諭)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 '선전관 여문영(呂文永), 오위장 김낙함(金樂咸), 전 부사 이경대(李敬大) 등이 이번 나무 심는 역에 대해 값을 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조령(朝令)이 있었는데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겠는가. 경은 즉시 넉넉하게 값을 지급하라.' 라고 수원부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강 命植木役優數給價事下諭水原府使

목 敎曰宣傳官 呂文永 五衛將 金樂咸前府使 李敬大等今番植木之役不願受價云朝令之下豈敢若是乎卿其卽爲優數給價事下諭于水原府使

<일성록, 정조15년(1791) 3월 16일(경인)>

경제/건설

수원 신읍 축성 문제를 상소한 것에 대해 언급하다

강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展拜)하고, 이어 재전(齋殿)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내게 물어 처리할 일이 무엇 있는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한두 상소에 대해 회계(回啓)할 것이 있으나 역시 긴급한 일은 아닙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누구의 상소이고 과연 무슨 일인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바로 강유(姜游)의 상소인데 수원(水原) 신읍(新邑)에 축성(築城)하기를 청한 일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갑자기 의논하기 어려우니 이후에 다시 내게 물어 처리하라." 하였다. (…)

강 詣景慕宮辰拜仍行次對于齋殿

목 (…) 予曰誰某之疏而果何事乎 濟恭曰卽是姜游之疏而請水原新邑築城事也予曰有難遽議從後更爲稟處也 (…)

<일성록, 정조15년(1791) 4월 25일(기사)>

경제/건설

수원 신읍으로 이주하는 백성에게 돈을 차용해 주는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水原) 신읍(新邑)은 공화(公貨) 2만 금(金)을 새로 이주한 장호(匠戶)에게 빌려 주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근래 듣건대 안성군(安城郡)의 공장(工匠) 등이 **수원** 신읍에 거주하기를 자원(自願)하였다고 한다. 저들이 자식처럼 자원해 온 것을 막아 물리칠 수는 없다. 다만 안성이 예전 모양 같지 않음을 비록 진념해야 할 것이나 조정에서 보기에 어찌 저쪽은 거주할 만한데 이쪽은 그러지 못할 이치가 있겠는가. 여기에서 신읍의 민산(民産)이 점점 왕성해지고 있음을 징험할 수 있으니 또한 매우 다행스럽다. 저들의 이미 이와 같이 자원한 이상, 온 것을 위로하고 그 생업을 마련해 주는 것에 대해 반드시 특례로 조처하는 방도가 있어야 즐비하게 부유해지는 효과를 기약할 수 있다. 비변사 낭청으로 하여금 이 뜻으로 좌상(左相)에게 구두로 전달하여 공화를 2만 금에 한하여 새로 이주한 장호 등에게 빌려 주게 하고, 이어 구획하는 아문과 대급(貸給)하는 연한에 대해 이치를 따져서 초기하게 하며, 초기에 대한 비답이 내리기를 기다려 즉시 정원으로 하여금 기백(畿伯)과 **수원부사(水原府使)**에게 하유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水原新邑以公貨二萬金許貸於新接匠戶

목 敎曰近聞安城郡工匠等自願絜居水原新邑云渠輩子來之願不可拒却但安城之不如舊樣雖屬軫念處自朝家視之有何彼可居而此不可之望乎於此益驗新治民產之漸開國運還覺甚幸渠輩自願旣如此則所以勞其徠而制其業須有拔例措置之方可期櫛比富盛之效令備郎以此意言于左相以公貨限二萬金許貸於新接匠戶等處仍以區劃衙門及貸給年限論理草記待批下卽令政院下諭于畿伯及水原府使處

<일성록, 정조15년(1791) 5월 6일(경진)>

경제/건설

수원 신읍 조성과 관련하여 복호와 둔전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 신읍(新邑)에 성을 쌓는 일 및 복호(復戶)와 둔전(屯田)에 관한 논의는 그만두라고 명하였다.

목 ○ 유사 당상 서유린·정창순·이병모·조정진 등이 아뢰기를, "사직(司直) 강유(姜游)의 상소에 대한 비지에서, 묘당으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소본(疏本)을 가져다 보니, '**수원** 신읍은 대로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성지(城池)가 없으니 신읍을 이설할 때 성지까지 아울러 구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신읍은 들판 가운데 있으니 성을 쌓고 참호를 설치해야 실로 성을 설치하는 제도에 맞습니다. 우물이 부족하니 또 내참(內塹)을 설치한 뒤 냇물을 끌어다가 참호를 만들면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한 남한산성(南漢山城)보다 훨씬 이로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독성산성과 서로 호응하여 적을 견제할 수 있는 형세로 만들면 뜻하지 않은 때를 만나더라도 병화(兵火)를 당하는 환란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의 크기는 7, 8리에 그치더라도 괜찮지만 만일 백성에게 일을 시키되 3일을 넘기지 않았던 전례를 쓰지 않고 고가(雇價)까지 아울러 계산한다면, 그 비용이 1리의 성을 쌓는 데 1만 금 이상이 들 것입니다. 만약 돌로 성을 쌓자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망설이신다면 흙으로 성을 쌓더라도 무방합니다. 또 일시에 완공하기가 어렵다고 여기신다면 또한 강도(江都)의 예에 따라서 해마다 일정하게 쌓되, 성의 참호를 설치할 자

리부터 우선 구획하여 사람이 집을 짓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신읍에 집을 지은 자들은 반이 유생이니 경내(境內)의 군병을 모집해 들인 뒤 복호(復戶) 500결(結) 안에서 절반을 덜어 내어 군병에게 주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소서. 또 각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신읍 근처에 둔전(屯田)을 설치하게 하고 군병으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되 군문에서 세금을 거두도록 한다면 전토(田土)가 없는 군병들도 반드시 앞을 다투어 모집에 응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성을 쌓는 일은 형편이 좋지 않은 때에 지나치게 일을 벌이는 것이고, 복호를 군병에게 나누어 주는 것과 신읍 근처에 둔전을 설치하는 등의 일도 갑자기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신이 마침 입시하지 않았으니 대신에게 물어보고 다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짧은 시간에 갑자기 논의하기 어려운 일이고 대신의 의견도 필시 그러할 것이니, 지금은 우선 그만두라." 하였다.

강 命置**水原**新邑築城及復戶屯田之議

목 有司堂上徐有隣 鄭昌順 李秉模 趙鼎鎭等啓言司直 姜游上疏批旨有令廟堂稟處之命矣取見其疏本則以爲**水原**新邑旣據大路要衝而但無城池新邑移設之時竝與城池而經紀宜矣且新邑旣是野中築城設堶實合置城之制而井泉不足又設內堶引泉爲壕大勝於南漢築塘儲水之利與**禿山**之城爲角猗之勢則雖當不虞之時可免兵火之患城之大小雖止於七八里而如不用役民三日之例竝雇價計之則其費計不下一里萬金若以石城之多費難之則土城亦自不妨又若難於一時訖功則依江都例排軍築之而先爲劃置城堶之基使人不得築室而今之築室半是儒生募入境內軍兵復戶五百結內折半除給軍兵以爲聊賴之地又使各軍門設置屯田於新邑近地使軍兵作農自軍門收稅則軍兵之無田土者必爭應募爲辭矣築城一款時屈擧贏復戶之分給軍兵近地之設置屯田等事亦非遽然議到之事而大臣適未入侍請問于大臣更爲稟處敎曰姑難遽議大臣意見亦必爲然矣今姑置之

<일성록, 정조16년(1792) 6월 30일(정유)>

경제/건설

수원의 둔토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 등 둔토(屯土)에 통(筒)을 수축하는 데 사용할 수통목(水桶木)으로는 안면도(安眠島)의 풍락송(風落松)을 충청 수영(忠淸水營)에서 수송하라고 명하였다.

목 ○ **장용영 제조 정민시**가 아뢰기를, "**수원** 등 둔토에 현재 통을 수축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수통목을 찾아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기둥이나 들보로 사용할 재목과는 다르므로 그다지 어렵지 않게 변통할 수 있을 듯합니다. 안면도의 풍락송 중 7그루까지 해당 수영의 돌을 운반하는 선박으로 즉시 수송하라고 충청 수사(忠淸水使)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水原**等屯土築筒所用水桶木安眠島 風落松自忠淸水營輸送

목 **壯勇營提調** 鄭民始啓言**水原**等屯土方有築筒之役而水桶木無以覓用此與棟樑之材有異其所推移似不甚難請安眠島 風落松中限七株以該營運石船卽爲輸送之意分付忠淸水使處從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2월 22일(을유)>

경제/건설

수원유수와 수원의 건립과 상업에 대해 논의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 청양 현감(靑陽縣監) 박영수(朴英秀)를 소견하였다.

목 ○ 박영수가 하직 인사를 한 것이다.
○ 차대(次對)의 탈품(頉稟)으로 인하여 전교하기를, "**수원유수**와 비변사 당상들이 대령하였으니 차대에도 참석하게 하라." 하였다.
○ 정원이 아뢰기를, "비변사 낭청이 와서 말하기를, '우의정 김이소(金履素)가 갑자기 다리에 병이 생겨 참석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안심하고 조리하라고 다시 비변사 낭청을 시켜 전유(傳諭)하게 하라. 비변사 당상은 들어왔을 듯하고 원임 대신도 조정에 나와야 할 것이니, 그대로 차대에 참석하게 하라." 하였다.
○ 내가 채제공(**蔡濟恭**)에게 이르기를, "본부를 유수부로 승격시키고 난 뒤에 모든 일이 과연 어떻게 되어 가는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전에 비해서 모양새가 다소 나아졌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아(貳衙)**를 건립하는 공사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물력(物力)은 부족할 우려가 없겠는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며칠 전에서야 주춧돌을 놓고 기둥에 들보를 얹었습니다만, 100여 칸을 새로 세우는 데 필요한 5000냥의 물력이 태반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구획(區劃)하여 공사를 완성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조금 전에 차대에 참석하게 하였으나, 우의정은 병으로 오지 못하였고 당상들은 입시하게 하였다. 고사(故事)에 의하면 원임 대신 1원이 으레 빈대(賓對)에 참석하였고, 고(故) 상신(相臣) 유척기(兪拓基)도 일찍이 봉조하(奉朝賀)로서 참석한 적이 있었다. 오늘 마침 경이 연석에 나왔고 조정의 계책 중에 신경을 써야 할 것도 있으니, 그대로 차대에 참석하라."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원임 대신이 차대에 참석하는 것을 신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 신은 오랫동안 지방에 있었으므로 조정의 계책과 관계된 일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석에 나오게 되었으니 참으로 무슨 사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상의 하교가 내렸으나 받들 수가 없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민사(民事)는 모두 조정의 계책이다. 경이 지금 시골에서 올라왔으니 만일 들은 것이 있으면 진달하라." 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신이 시민(市民)의 통공발매(通共發賣)에 대해 삼가 진달할 것이 있습니다. 대체로 이 일을 지속하거나 개혁하거나 간에 신을 칭찬하거나 비난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왈가왈부하며 마치 진퇴(進退)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하니, 나라의 기강과 백성의 습속이 참으로 놀랍고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연전에 이 정책을 시행하던 초기에는 수백 명의 시민이 신이 조정으로 나아가던 길에서 기다리다가 앞뒤를 가로막고서는 어수선하게 호소하고, 심지어 일제히 고함을 지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타이르기를, '문왕(文王)의 백성은 경작하는 자가 밭두둑을 양보하였다. 지금 성명(聖明)께서 위에 계시고 도성의 백성과 전국의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국가의 백성이니,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장사하거나 한곳에 자리를 잡고서 팔거나 간에 필요한 물건을 교역하는 것은 본래 일상적인 일이다. 그런데 시전(市廛)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기 물건을 가지고 매매하는 사람을 속박하고 축출하여 서울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니, 어찌 이와 같은 도리가 있겠는가. 그대들도 백성이고 저 난전(亂廛) 사람들도 백성이니, 조정에서 보살펴 주는 도리로 볼 때 어찌 피차의 차이를 두겠는가.' 하고, 이어서 엄한 말로 꾸짖어 물리쳤습니다. 근래에 갑자기 다시 소란을 일으켜 시민 70여 인이 **수원**에 와서 호소하기까지 하였으므로 모두 쫓아 보냈습니다.

근래에 김 판중추부사(金判中樞府事 김종수(金鍾秀))가 신에게 말하기를, ‘애당초 이 정책을 시행할 때에는 불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으므로 난전을 금하는 것은 폐단이 없을 수가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번 통공발매에 대한 견해는 모두 일리가 있으니,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경솔하게 의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였으니, 김 판중추부사의 의견도 신의 의견과 차이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신이 장단(長湍)의 적소(謫所)에 있을 때 황해도의 면상(綿商)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니 모두 ‘통공발매의 효과 때문에 작년 겨울에 도성의 목면값이 치솟지는 않았다.’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성이 생업에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정책을 시행했다가 곧바로 바꾼다면, 장사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반복해서 원통하다고 호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백 명 시전 사람들의 이익 때문에 저 팔도의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게 될 것이니, 이것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조정에서 법을 만든 취지로 말을 하더라도, 어찌 아침저녁으로 뒤바꾼다는 탄식이 없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임금은 인자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장수는 위엄으로 제압해야 한다.〔人君務仁 將帥以威〕’ 하였습니다. 성상께서 백성을 사랑하여 은덕을 널리 베푸신 것은 실로 성대한 덕입니다. 따라서 묘당에서는 참으로 조정을 높이고 기강을 떨치는 일을 급선무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저잣거리에서 장사하는 백성들의 무엄하고 이기적인 습속 때문에 번번이 정책이 바뀌어 한결같은 법을 굳게 지키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정을 높이고 기강을 떨치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요즘의 기강은 마치 물이 더욱 낮아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이 일로 말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논의가 많고 비난과 칭찬도 반반씩 섞여 있어서 이로운지 해로운지를 명확히 알 수 없었다. 경이 지난번 도성을 나갈 때에 시민 중에서 손가락질을 한 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또 경이 아뢰는 말을 들으니 백성의 습속이 참으로 해괴하다. 공시인(貢市人)은 도성의 근본이 되는 사람들이니 본래 특별히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기강을 중시한다. 그리고 그 일이 편리한지 여부도 상세히 몰랐기 때문에 전날 연석에서 이에 대한 말을 자주 꺼냈으나 끝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는 통공발매를 지속하거나 개혁하거나 간에 경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더라도 늦지는 않기 때문이었다.

대체로 조정의 조치는 본래 일의 체모가 있으니, 경이 이른바 ‘임금은 인자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장수는 위엄으로 제압해야 한다.’라고 한 말이 매우 좋다. 선대왕(先大王)께서는 깊고 두터운 은택을 팔도에 두루 펼쳤고 일반 백성을 사랑하는 데 최선을 다하셨다. 때로는 백성의 고통을 직접 하문하고 쌀과 고기를 나누어 주셨으나, 임금으로서의 존엄성은 여전하였다. 이제 내가 일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 어찌 감히 선조(先朝)의 만분의 일이라도 이어갈 수 있겠는가마는, 기강이 이렇게까지 무너졌는데도 아래에서는 원망을 떠맡더라도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없고 위에서는 은혜가 다하였다는 탄식이 있다. 이것이 어찌 옛날과 같지 않은 백성의 습속 때문만이겠는가. 조정의 책임이기도 하다. ‘은혜를 자기에게 돌리려고 한다면 원망은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恩欲歸己 怨將誰歸〕’라고 한 말을 내 입장에서 말할 필요는 없겠으나, 요즘의 풍습이 불행히도 이에 가깝다.

예를 들어 정주(政注)할 때의 일로 논하더라도, 망단자(望單子)에 남겨 두기도 하고 빼어 버리기도 하는 과정에서 한쪽을 도와주고 한쪽을 억누르는 것도 당파의 습속에 따라 갈라진 견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일개 전관(銓官)의 사적인 견해에서 나온 것으로, 결국 권위를 이용하여 전횡한다는 혐의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이 돌아가면서 서로 잘못

을 본받는 것도 여기에서 연유한 것일 수가 있으니, 어찌 개탄스럽지 않겠는가." 하였다. (…)

강 召見大臣備堂及靑陽縣監 朴英秀于誠正閣

목 英秀辭陛也○因次對頃稟敎曰水原留相與諸堂旣來待次對亦爲來會○政院啓言備邊司郎廳來言右議政 金履素猝患脚病不得來會云何以爲之乎敎以安心調理事更令備郎傳諭備堂似已入來原任亦當造朝次對仍爲來會○予謂濟恭曰本府陞爲留守之後凡百果如何濟恭曰比前貌樣差勝矣予曰貳衙之役今至何境而物力能無不足之患否濟恭曰日前始定礎上樑而百餘間新建五千兩物力太半不足云矣予曰某條區劃俾爲完役之地予曰俄令次對來會而右相病不能來諸堂已令入侍故事則原任一員例爲入參於賓對故相兪拓基嘗以奉朝賀進參今日卿適登筵廟謨應有留意者因爲次對可也濟恭曰原任之入參次對臣亦屢見而第臣許久在外凡係廟謨漠然無聞倉猝登筵實未知有何事務聖敎之下恐無以奉承也予曰民事莫非廟謨卿今自鄕上來如有所聞陳遠可也濟恭曰臣於市民通同發賣事有所仰達者矣大抵此事因革於臣無所加損而曰便曰否有若關係於進退者然國綱民習誠不勝瞿然慨歎年前設施之初數百市民要臣赴朝之路前後遮擁紛紜呼訴甚至於齊聲發喊之境故臣曉諭曰文王之民耕者讓畔方今聖明在上都城之民匝城之人均是國家赤子則行商坐販有無貿遷固是常事而苟非編名市廛則人之持己物賣買者縛之驅之使不得接跡於輦轂之下者寧有如許道理爾亦民彼亦民在朝家撫恤之道豈有彼此之殊乎因爲嚴辭呵斥矣近來忽復騷擾市民七十餘人至於來訴水原故竝爲遂送而頃者金判府語臣曰當初發令之時人或言其不便故答以亂廛之禁不能無弊今此通同之論儘有意見其間利害不可輕議云爾則金判府之論亦似無差異之見且臣在長湍謫所見海西綿商絡繹過去道路之言皆以爲通同賣買之效昨冬都下綿價以此之故不至騰踴民情之樂業卽此可見此事不爲則已旣發旋改凡爲商賈者必將反復稱冤爲此數百廛人之利貽彼八方小民之弊則此不可不念且以朝家法意言之豈無朝變夕改之歎乎古人有言曰人君務仁將帥以威聖上之愛恤黎元廣施仁恩實是盛德而廟堂則固當以尊朝廷振紀綱爲先務今若以市井小民無嚴自私之習輒爲所撓改不能固守一法則將何以尊朝廷振紀綱乎予曰今日紀綱可謂如水益下良可寒心雖以此事言之論說多端毁譽相半無以的知其利害聞卿向來出城時市民或有指點者矣今又聞卿所奏民習誠可駭然貢市人乃是都下根本固當另加撫恤然至於此等處予則以紀綱爲重且其事情之便否亦所未詳故前日筵席此言屢發而終不發落蓋毋論因革待卿議而決之亦爲未晩故耳大抵朝廷擧措自有事體卿所謂人君務仁將帥以威云者其說儘好先大王深仁厚澤淪浹八域愛恤小民靡不用極有時親詢疾苦分給米肉而堂陛之尊嚴則自如今予所以推恩施惠於小民者何敢仰述先朝之萬一而紀綱之委靡至於如此下無任怨之人上有恩竭之歎此豈但民習之不如古抑亦朝廷之責恩欲歸已怨將誰歸云者雖不必自上說道而近日風習不幸近之試以政注間事論之或存或拔之際其所扶折亦非若黨習歧異之論卽出於一銓官之私見終未免於作威福之嫌故小民之轉相效尤亦未必不由於此豈不慨然也哉 (…)

<일성록, 정조17년(1793) 3월 10일(계묘)>

경제/건설

원소(園所)의 식목 등 공역과 관련하여 시상하다

강 원소(園所)에 나무를 심을 때와 화소(火巢) 밖에 통(筒)을 수축하고 백호(白虎) 주변에 보토(補土)할 때 부역한 서울과 지방의 장교(將校)와 군병(軍兵)에게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였다.

목 ○ 나무를 심고 파종(播種)한 장용영의 장교인 지구관(知彀官) 조종(趙宗), 교련관(敎鍊官) 최정철(崔廷喆)·조명윤(趙明胤)·김오복(金鰲福)·박이한(朴理漢)·정도관(鄭道寬), 장용위 김백린(金白麟)·임백춘(林百春)·한필유(韓弼瑜)·한상오(韓相五), 별무사(別武士)

사정혁(史廷爀), 무사(武士) 박상엄(朴尙嚴) 이상에게는 각각 목(木) 1필(疋)을 지급하고, 사환군(使喚軍)인 겸사복(兼司僕) 손한광(孫漢光)·지태관(池泰寬)·김상업(金尙業)·이범산(李范山)·김진철(金鎭喆) 이상은 여러 해 동안 공로를 세웠으므로 각각 목 2필과 포(布) 1필을 지급하고, 초겸(初兼) 강덕득(姜德得)·강복득(姜福得), 구두군(九斗軍) 정수대(鄭壽大)·유성돈(兪性敦) 이상은 겸사복으로 올려 주고, 차성린(車聖麟)·금성률(琴聲律) 이상에게는 각각 목과 포 각 1필씩을 지급하고, 양명복(梁命福)·성춘번(成春蕃)·오태광(吳泰光)·여일득(呂日得) 이상에게는 각각 목 1필을 지급하고, 구두군 서광수(徐光修)·김복량(金福亮)·전수철(全壽喆), 삼두군(三斗軍) 정용득(鄭龍得)·장춘옥(張春玉)·임순태(任順泰) 이상에게는 각각 미 3말을 지급하였다. - 모두 향색(餉色)에서 지급하였다. -

○ 나무를 심고 보토한 훈련도감의 장교 길명복(吉命福)은 본국(本局)의 교련관의 자리를 가설하여 제수하였다가 빈자리가 나거든 실직(實職)으로 올려 주도록 하고, 윤계성(尹繼聖)은 해당 군영(軍營)에서 각별히 시상하도록 하였다. 나무를 심고 파종한 장교 정종완(鄭宗完)은 해당 군영에서 참작하여 시상하도록 하고, 사환군인 겸사복 박환(朴煥), 칠두군(七斗軍) 길철량(吉喆亮), 무료군(無料軍) 원성린(元聖麟) 이상은 해당 군영에서 시상하되, 그중 무료군은 원군(元軍)으로 올려 주고, 구두군 이하는 곧바로 겸사복으로 올려 주도록 하였다.

○ 나무를 심고 파종한 금위영의 장교 정사혁(鄭師爀), 유목(柳木)을 영운(領運)해 온 장교 이광민(李光敏)·김희문(金希文)·전대집(全大集) 이상에게는 해당 군영에서 시상하도록 하되, 이광민은 기유년(1789, 정조13)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영운하여 공로가 매우 많았으므로 교련관으로 올려 차하(差下)하였다가 빈자리가 나거든 실직으로 올려 주도록 허락하고, 사환군 3명은 해당 군영에서 목과 포로 시상하도록 하되, 구두군 이하는 곧바로 겸사복으로 올려 주도록 하였다.

○ 나무를 심고 보토한 어영청의 장교인 양화 별장(楊花別將) 김우정(金禹鼎)은 내년에 나무를 심을 때까지 우선 잉임하도록 하고, 장교 신숙(申曦)은 총융청의 교련관으로 올려 차하하도록 하고, 손흥운(孫興雲)은 첩가를 작성해 주고, 박인협(朴仁浹)·이진휘(李震輝)·윤덕성(尹德成) 이상은 해당 군영에서 참작하여 시상하도록 하고, 사환군인 겸사복 김필욱(金弼郁), 구두군 서복동(徐福東), 유목을 운반해 온 사환군 3명 이상은 해당 군영에서 시상하되, 구두군 이하는 곧바로 겸사복으로 올려 주도록 하였다.

○ 나무를 심고 보토한 **수원부**의 장교인 절충장군 서대철(徐大喆), 한량(閑良) 노철(盧喆)·안인문(安仁文), 보토하고 통을 수축한 장교인 가선대부 김지택(金之澤)·문세준(文世駿), 가의대부 최도의(崔道義), 절충장군 김인후(金仁厚), 한량 송운득(宋雲得), 나무를 심고 보토한 서리(書吏) 홍윤일(洪允一), 보토하고 통을 수축한 서리 이숙철(李淑喆) 이상은 첩가를 작성해 주도록 하고, 나무를 심은 장교인 절충장군 황일청(黃一淸), 가의대부 황계청(黃啓淸), 출신(出身) 차형원(車亨元) 이상은 각각 목과 포 각 1필씩을 지급하고, 파종한 장교인 가선대부 이득홍(李得弘)·차도항(車道恒), 절충장군 김용대(金龍大)·이익신(李翼臣), 한량 이재형(李再亨)·김정서(金廷瑞)·박흥손(朴興孫)·차석일(車錫一)·김효원(金孝元)·나상려(羅尙麗)·최광순(崔光純)·홍윤정(洪允禎) 이상은 각각 포 1필을 지급하고, 유목을 운반해 온 장교 6인은 각각 미 1말을 지급하고, 사환기수(使喚旗手) 2명은 각각 목과 포 각 1필씩을 지급하고, 본부의 관례(官隷) 578명은 미 10섬을 도거리로 지급하고, 전인(廛人) 201명은 미 5섬을 도거리로 지급하고, 나무를 심고 사초(莎草)를 입힌 원군(園軍) 120명, 전 경서원(京書員) 이동욱(李東郁) 이상은 미 6섬을 도거리로 지급하고, 원역(員役)

6인은 각각 포 1필을 지급하였다. - 모두 외탕고(外帑庫)에서 지급하였다. - 나무를 심고 보토한 총섭(摠攝)인 승려 자헌대부(資憲大夫) 철학(喆學)은 목과 포 각 1필씩과 호초(胡椒) 5되를 지급하고, 중군(中軍)인 승려 가선대부 도잠(道岑), 병방(兵房)인 승려 절충장군 신책(信策), 패장(牌將)인 승려 가선대부 융홍(戎弘)·승오(勝悟), 서기(書記)인 승려 태영(泰榮) 이상은 각각 목 1필과 호초 5되를 지급하고, 승군(僧軍) 86명은 각각 호초 3되를 지급하였다. - 목과 포는 별고(別庫)에서 지급하고 호초는 대내(大內)에서 내려 준 것으로 지급하였다. -

○ 나무를 심고 보토한 진위(振威)의 장교인 절충장군 김득선(金得先), 한량 김임득(金壬得), 색리(色吏) 유동무(柳東茂) 이상은 첩가를 작성해 주고, 관례 6명, 사환군 5명 이상은 각각 목 2필과 포 1필을 지급하였다. - 모두 별고에서 지급하였다. -

○ 전교하기를, "이번에 원소에 나무를 심고 파종한 일과 화소 밖에 통을 수축하고 백호 부근에 보토한 일은 공사가 매우 거창하고 소중한 분을 위한 일이므로 공로에 보답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차사원은 그들의 직분에 해당하는 일이고 나중에도 연이어 파종하고 나무를 심어야 하니, 이번에는 거론하지 말라. 그 나머지 서울과 지방의 장교와 군병에게는 판하한 대로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되, 첩가는 오늘 안에 구전(口傳)으로 하비(下批)하여 유지(有旨)와 함께 작성하여 보내 주라. **수원유수**가 사용한 전곡(錢穀)은 각 외탕고에 있는 전곡으로 지불하라고 장용영의 내영(內營)과 외영(外營)에 분부하라. 차사원이 진위현(振威縣)의 관할에 나무를 심은 데 대해서는 본현의 대동미(大同米) 80섬을 떼어 주라고 경기 감영에 분부하라." 하였다.

강 園所植木及火巢外築筒白虎邊補土時赴役京鄕將校軍兵分等施賞

목 植木播種**壯勇營**將校 知殼官 趙密 敎鍊官 崔廷喆 趙明胤 金鰲福 朴理漢 鄭道寬 壯勇衛 金白麟 林百春 韓弼瑜 韓相五別武士史廷嫲武士朴尙嚴以上各木一疋使喚軍兼司僕 孫漢光 池泰寬 金尙業 李范山 金鎭喆以上多年效勞各木二疋布一疋初兼姜德得 姜福得九斗軍鄭壽大 兪性敦以上陞禁兼司僕 車聖麟 琴聲律以上各木布各一疋梁命福 成春蕃 吳泰先 呂日得以上各木一疋九斗軍徐光修 金福亮 全壽喆三斗軍鄭龍得 張春玉 任順泰以上各米三斗幷餉色○植木補土訓局將校吉命福本局敎鍊官加設待窠陞實尹繼聖自該營各別施賞植木播種將校鄭宗完自該營參酌施賞使喚軍兼司僕 朴煥七斗軍吉喆亮無料軍元聖麟以上自該營施賞而其中無料軍陞元軍九斗以下軍直陞兼司僕○植木播種禁衛營將校 鄭師嫲柳木領運將校李光敏 金希文 全大集以上自該營施賞而李光敏則自己酉至今年逐年領運效勞甚多陞差敎鍊官待窠陞實使喚軍三名自該營木布施賞而九斗以下軍直陞兼司僕○植木補土御營廳將校 楊花別將 金禹鼎限明年植木姑爲仍任將校申曦 總戎廳敎鍊官陞差孫興雲帖加朴仁浹 李震輝 尹德成以上自該營參酌施賞使喚軍兼司僕 金弼郁九斗軍徐福東柳木運來使喚軍三名以上自該營施賞而九斗以下軍直陞兼司僕○植木補土**水原府**將校折衝徐大喆閑良盧喆 安仁文補土築筒將校嘉善金之澤 文世駿 嘉義 崔道義折衝金仁厚閑良宋雲得植木補土書吏洪允一補土築筒書吏李淑喆以上帖加植木將校折衝黃一淸嘉義黃啓淸出身車亨元以上各木布各一疋播種將校嘉善李得弘 車道恒折衝金龍大 李翼臣閑良李再亨 金廷瑞 朴興孫 車錫一 金孝元 羅尙麗 崔光純 洪允禎以上各布一疋柳木運來將校六人各米一斗使喚旗手二名各木布各一疋本府官隷五百七十八名米十石都給廛人二百一名米五石都給植木莎草園軍一百二十名前京書員李東郁以上米六石都給員役六人各布一疋幷外帑庫植木補土總攝僧資憲喆學木布各一疋胡椒五升中軍僧嘉善道岑 兵房僧折衝信策牌將僧嘉善戎弘 勝悟書記僧泰榮以上各木一疋胡椒五升僧軍八十六名各胡椒三升木布別庫胡椒內下○植木補土振威將校折衝金得先閑良金壬得色吏柳東茂以上帖加官隷六名使喚軍五名以上各木二疋布一疋竝別庫○敎曰今番園所植木播種及火巢外築筒白虎邊補土

工役甚鉅爲所重當有酬勞之擧而差員則渠之職分內事後當連有播植今番勿論其餘京鄕將校軍兵依判下分等施賞帖加則今日內口傳下批與有旨成送本府留守所入錢穀以外帑各庫所在上下事分付壯勇內外營差員振威縣所管植木以本縣大同朱八十石劃給事分付畿營
<일성록, 정조17년(1793) 4월 3일(을축)>

경제/건설

수원유수와 수원의 공역에 대해 논의하다

강 중희당에서 **수원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를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이번에 본부에는 비가 얼마나 내렸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측우기의 수심이 1치 4푼이었습니다. 외촌(外村)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으나 가까운 면들을 보면 모두 보습 날 하나 깊이만큼 적실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성역(城役)**은 어느 정도나 진척되었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그동안은 우선 공역을 중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비가 내렸고 그들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으므로 하루 이틀 사이에 석수(石手)와 목수(木手)들을 모두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현재 북문의 홍예(虹霓)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상량(上樑)은 언제쯤 하게 될 것 같은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내달 보름쯤이 될 것 같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번의 장용영 군마(軍馬)는 어떠하던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작년보다 질이 좋은 듯합니다. 그중에서도 보재(步才)가 조금 뛰어난 놈들이 많은데, 경군마(京軍馬)에는 못 미치지만 거두어 기르면서 보재를 훈련하면 충분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 중에 말을 바친 자들은 가계(家計)가 약간 여유로운 자들인데 그 덕분에 모두 마정(馬政)에 힘이 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친군위(親軍衛) 중에 마재(馬才)가 있는 자들이 있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교습(敎習)하면 반드시 성취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향군(鄕軍)에게 말을 지급하는 것은 팔도에 없는 은전인데 능히 차근차근 조련해 나가면 어찌 쓸 만한 인재가 없겠습니까마는 이는 전적으로 수신이 권장하고 조절하는 방도에 달렸습니다." 하였다.

조심태가 아뢰기를, "본부의 우열(右列) 군병은 내촌(內村)과 외촌에서 차출하는데, 시사(試射)에서는 아직 융통하여 과거 응시를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내촌과 외촌의 군병을 통합하여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하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탄식이 없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조만간 처분하겠지만 이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는 은혜라 하겠다." 하였다.

내가 또 이르기를, "성문의 간역(看役)은 누가 하고 있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남문은 김낙순(金樂淳)과 이방운(李邦運)이 맡고 있고, 북문은 이백연(李栢然)과 정우태(丁遇泰)가 맡고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향무사(鄕武士)들이 벼슬에 나아갈 길이 있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진달하였습니다만 아직 처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조(銓曹)에서 간간이 수용(收用)하면 좋을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초관(哨官)을 도목 정사(都目政事) 때마다 수용하는 것은 지나치다. 내영(內營)은 몇 도목 정사, 외영(外營)은 몇 도목 정사를 거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정식을 정해서 수용하면 좋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성역은 올해 안에 어느 정도나 쌓을 수 있겠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

기를, “올해 안에 1200여 보(步)를 쌓을 계획입니다만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계획대로 쌓을 수 있다면 앞으로의 일은 처음에 비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행궁(行宮)의 그림을 보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복도(複道)를 설치한 것 같은데 어찌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소박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그림으로 보면 정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림을 다시 그려서 바치라.” 하였다.

綱 召見水原留守 趙心泰于重熙堂

目 予曰今番雨澤本府何如耶心泰曰水深爲一寸四分外村姑未聞知而以近面觀之皆可爲一犂矣予曰城役至於何境乎心泰曰其間姑停而今則已得雨矣渠輩亦方顒望故一兩日間石手木手皆令下來而目今北門虹霓幾皆爲之矣予曰上樑當在何時乎心泰曰似在來月望間矣予曰今番軍馬何如耶心泰曰似勝於昨年矣其中亦多有步才之稍優者雖未及於京軍馬而若收養習步則足可用之渠輩則家計稍實者賴此而皆不費力於馬政云矣予曰親軍衛中有馬才者乎心泰曰教習則必當有成就者鄕軍給馬八道所未有之恩典若能次次操鍊豈無可用之才乎此則專在於守臣勸勵節制之方矣心泰曰本府右列以內外村差出而試射則姑無通融許赴之擧臣意則使之通內外許赴似無向隅之歎矣予曰從當處分而此可謂不費之惠矣予又曰城門看役誰耶心泰曰南門則金樂淳 李邦運北門則李栢然 丁遇泰矣予曰鄕武士有仕路乎心泰曰頃者仰達尙未蒙處分矣銓曹間間收用則好矣予曰哨官每都目過矣內營幾都目外營幾都目定式好矣予曰城役今年內當築幾何心泰曰今年內欲限一千二百餘步爲之爲計而姑未可知矣今年內此若如計築成則此後事比諸初頭似不難矣予曰行宮圖形自某至某有若複道者然何必如是爲之也務從質朴堅固好矣心泰曰以圖形觀之則雖若近巧而實則不然矣予曰更爲圖形以進可也
<일성록, 정조18년(1794) 7월 29일(갑인)>

경제/건설

수원부의 부속 관아 건설에 관하여 시상을 하다

강 수원부(水原府)의 부속 관아를 지을 때의 감동(監董)과 원납한 사람들에게 상전(賞典)을 시행하였다.

목 ○ 수원유수 이명식(李命植)의 장계에, “본부의 부속 관아를 지을 때 가장 수고한 감동과 원납한 사람들의 성명을 추후에 장계로 보고하겠다고 이전에 치계했습니다. 방금 전에 받아본 판관(判官) 김노성(金魯成)의 첩정에 가장 수고한 감동의 성명 아래에 각각 그들이 실역(實役)에 복무한 날짜를 현록(懸錄)하였고, 원납한 사람들의 성명과 원납전 수량을 성책(成冊)하여 보고하였으므로 수고한 감동은 실역에 복무한 정도를 따져서 3등급으로 나누고, 원납한 사람들은 원납전의 양에 따라서 4등급으로 나눈 다음 성명까지 아울러 열거하여 아래에 아룁니다.
〔감동한 사람들〕
1등 동역(董役)인 전 찰방 정윤조(丁胤祚)는 2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실역 일수는 119일입니다. 이미 동반직(東班職)을 거쳤으니 가자(加資)할 대상입니다.
1등 동역인 한량 윤효열(尹孝烈)·최준행(崔俊行)은 2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실역 일수는 119일입니다.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수용하게 할 대상입니다.
1등 동역인 가선대부(嘉善大夫) 이원성(李元盛)은 2월 26일부터 3월 29일까지, 총 실역 일수는 34일입니다. 첩가자(帖加資)를 만들어 줄 대상입니다.
1등 목수 도간역(木手都看役)인 절충장군 김도성(金道成)은 2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실역 일수는 119일입니다. 변장에 제수할 대상입니다.
2등 간역(看役)인 집사(執事) 가선대부 이위(李渭), 전 만호(萬戶) 백광욱(白光郁)은 2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실역 일수는 119일입니다. 상가(賞加)할 대상입니다.
2등 간역인 열교 군관(列校軍官) 한량 박계근(朴啓根)·최서룡(崔瑞龍), 도책응(都策應)인 서리(書吏) 김형택(金亨擇)은 2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실역 일수는 119일입니다. 첩가자를 만들어 줄 대상입니다.
3등 간역인 서리 박동흥(朴東興), 방재량(房再良), 최윤익(崔允益), 안천복(安天福)은 2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실역 일수는 119일입니다. 본부(本府)에서 특별히 직위를 올려 천전시켜서 수용할 대상입니다.
3등 번와 감관(燔瓦監官)인 금도 군관(禁盜軍官) 절충장군 김광서(金光瑞)는 3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실역 일수는 78일입니다. 벌목 감관(伐木監官)인 열교 군관 가선대부 권치명(權致明)은 2월 17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실역 일수는 62일입니다. 첩가자를 만들어 줄 대상입니다.
〔원납한 사람들〕
1등 절충장군 안처윤(安處潤)은 원주에 살며 원납전(願納錢)은 2000냥입니다. 변장에 제수할 대상입니다.
1등 전 현감 장택기(張宅基)는 부령(富寧)에 살며 원납전은 2000냥입니다. 병조 판서로 하여금 불러서 보고 후일 어전(御前)에 나아갔을 때 상께 여쭈어 처리하게 할 대상입니다.
2등 가선대부 김상진(金商振), 절충장군 김상원(金商遠)은 황주(黃州)에 살며 원납전은 각각 1500냥씩입니다. 오위장에 제수할 대상입니다.
3등 가선대부 주정리(朱正离)는 강화(江華)에 살고, 이춘형(李春亨)은 옹진(甕津)에 살며 원납전은 각각 1000냥씩입니다. 충장장(忠壯將)과 충익장(忠翊將)에 제수할 대상입니다.
4등 가선대부 홍서만(洪瑞萬), 양성택(梁聖澤)은 송도(松都)에 살며 원납전은 각각 500냥씩입니다. 자리가 비어 있는 위장(衛將)에 제수할 대상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 '본부의 부속 관아를 짓는 공사에 많은 수고를 하였으니 특례로 논상(論賞)하지 않을 수 없다. 원납하는 일의 경우 막중한 공사나 상영(上營)의 공사에도 모두 허락하지 않았지만, 부속 관아는 일의 체모가 조금 다르고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미 바쳤으니 또한 일률적으로 논상하지 않을 수 없다. 후록(後錄)한 대로 판하(判下)하고 정원에게 전지를 받들게 하였으니 경은 잘 알라.' 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綱 施**水原府貳衙**營建時監董及願納人等賞典

目 **水原留守** 李命植狀啓以爲本府**貳衙**營建時監董中最效勞人及願納人姓名追後狀聞之意前已馳啓而卽接判官 金魯成牒呈內監董最效勞人姓名下各其實役日子懸錄願納人姓名及納錢數爻修成册報來故監董效勞人計其實役之苦歇分三等願納人從其納錢之多寡今四等後姓名竝以開錄陳聞一等董役前察訪 丁胤祚自二月二十六日至六月二十六日合實役一百十九日旣經東班職加資一等董役閑良尹孝烈 崔俊行自二月二十六日至六月二十六日合實役一百十九日令軍門收用一等董役嘉善李元盛自二月二十六日至三月二十九日合實役三十四日帖加一等木手都看役折衝金道成自二月二十六日至六月二十六日合實役一百十九日邊將除授二等看役執事嘉善李渭前萬戶 白光郁自二月二十六日至六月二十六日合實役一百十九日賞加二等看役列校軍官閑良朴啓根 崔瑞龍都策應書吏金亨擇自二月二十六日至六月二十六日合實役一百十九日帖加三等看役書吏朴東興 房再良 崔允益 安天福自二月二十六日至六月二十六日合實役一百十九日自本府拔例陞遷收用三等燔瓦監官禁盜軍官折衝金光瑞自三月二十一日至六月初十日合實役七十八日伐木監官列校軍官嘉善權致明自二月十

七日至四月二十日合實役六十二日帖加願納人姓名秩一等折衝安處潤居原州願納錢二千兩邊將除授一等前縣監 張宅基居富寧願納錢二千兩令兵判招見後日登對時稟處二等嘉善金商振折衝金商遠居黃州願納錢各一千五百兩 五衛將除授三等嘉善朱正离居江華 李春亨居甕津願納錢各一千兩 忠壯忠翊將中除授四等嘉善洪瑞萬 梁聖澤居松都願納錢各五百兩 空闕衛將除授敎曰本府貳衙之役效勞旣多不可不拔例論賞至於願納一款莫重之役上營之役俱不許之貳衙則事面稍異令前亦旣捧之亦不可不一例論賞依後錄判下令政院捧傳旨卿其知悉事回諭
<일성록, 정조17년(1793) 8월 18일(무인)>

경제/건설

수원 관청 건설에 공이 있는 장택기(張宅基)를 가자하다

강 전 현감 장택기(張宅基)를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목 ○ 병조 판서 정호인이 아뢰기를, "전 현감 장택기를 하교하신 대로 불러서 보니 이력(履歷)은 변장(邊將)과 수령을 벌써 거쳤고 사람됨은 수용(收用)하기에 알맞았습니다. 게다가 이번 수원의 관청 건물을 지을 때 정성을 바친 것도 매우 가상하므로 가자하는 은전을 베풀어야 합니다. 은전에 관계된 일이라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綱 命前縣監 張宅基加資

目 兵曹判書 鄭好仁啓言前縣監 張宅基依下敎招見則履歷已經邊將守令爲人可合收用而今番水原公廨營建時其所效誠亦甚嘉尙合施加資之典事係恩典不敢擅便敢此仰遠從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8월 20일(경진)>

경제/건설

원소의 제정(祭井) 보수와 화소(火巢)의 경계 획정에 대한 수원유수의 별단을 검토하다

강 수원유수(水原留守) 이명식(李命植)이 원소(園所)의 제정(祭井)을 쌓아 보수하고 화소(火巢)의 경계를 정하는 데 대해 별단으로 급히 아뢰었다.

목 ○ 별단에, "이달 4일 승지가 입시하였을 때 연석에서 하신 하교에, '원소 제정의 담장이 갈라져 떨어진 곳이 많다고 하는데 가까운 시기에 식목을 할 것 같으니 그 때 원관(園官)이 식목 차사원과 같이 간심(看審)하여 쌓아 보수하게 하고, 소요되는 물력(物力)은 관천고(筦千庫)에 남겨 둔 것으로 지급한 후 별단으로 보고하라. 앞으로 담장이 약간 허물어진 것이나 기와가 약간 깨진 것은 예조에 보고할 필요 없이 원관이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는 관천고에 있는 것을 즉시 지급하여 보수할 수 있게 하고, 역시 별단으로 서계(書啓)하라. 그리고 이 연석의 하교는 원소의 등록과 본부의 등록에 올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원관에게 통지하여 제정 담장의 갈라져 떨어진 곳을 식목 차사원과 같이 간심한 뒤 이달 22일에 일을 시작하여 당일에 일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들어간 물력인 전(錢) 1냥은 관천고에 있는 것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별단에, "원소 안녕리(安寧里)의 화소 경계를 정하는 곳에 드는 물력과 고가(雇價)는 관천고에 있는 것으로 지급하라는 전령(傳令)을 수령한 상황은 이미 별단으로 작성하여 올렸고, 판관에게 통지하여 차사원과 같이 거행하였는데 군정(軍丁)은 부근 면에 적절히 분배하여 이달 22일 진시(辰時)부터 일을 시작하여 23일 유시(酉時)에 일을 끝마친 뒤 군정 335명에게 1인당 고가 1전씩 모두 합하여 전 33냥 5전을 전령의 내용대로 관천고에 있는 것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한 경계의 보수(步數)는 후록(後錄)하여 보고합니다." 하였

다.
○ 후록은 다음과 같다.
성황산(城隍山) 동쪽 기슭 밑 **가륵동(加勒洞)**부터 **조롱봉(鳥弄峯)**까지가 780보이고, 조롱봉부터 **작현리(鵲峴里)**까지가 422보이고, 작현리부터 진장(陣場) 모퉁이까지가 520보이고, 진장 모퉁이부터 방죽 초입까지가 759보이고, 방죽 초입부터 **독지현(禿旨峴)**까지가 253보로, 이상 2734보이다.
綱 **水原留守** 李命植以園所祭井補築火巢定界別單馳啓
目 別單以爲今月初四日承旨入侍時筵中下敎內園所祭井墻垣多破落處云而植木似在近其時園官與植木差員同爲看審補築物力則以筦千庫留在上下後別單以啓此後墻垣之若而剝落者蓋瓦之若而傷破者不必報禮曹園官報于本府本府則以筦千庫留在隨卽上下以爲修補之地亦爲別單書啓而以此筵敎載之於園所謄錄與本府謄錄矣知委園官祭井破落處與植木差員同爲看審後今月二十二日始役當日畢役而所入物力錢一兩則以筦千庫所在上下又別單以爲園所安寧里火巢定界處物力雇價以筦千庫所在上下事傳令祇受形止已爲別單修啓矣知委判官與差使員眼同擧行而軍丁則以附近面量宜分排自今月二十二日辰時始役至二十三日酉時畢役後軍丁三百三十五名每名雇價一錢合錢三十三兩五錢謹依傳令內辭意以筦千庫所在者上下而定界步數後錄以聞○後自**城隍山**東麓下加斬洞至鳥弄峯七百八十步自鳥弄峯至鵲峴里四百二十二步自鵲峴里至陣場隅五百二十步自陣場隅至堤堰初頭七百五十九步自堤堰初頭至禿旨峴二百五十三步以上二千七百三十四步
<일성록, 정조17년(1793) 10월 23일(계미)>

경제/건설
수원 성역에 원납한 인물들에게 특별히 은상을 베풀다
강 **수원** 성역에 필요한 물력을 원납(願納)한 사람들을 전조(銓曹)와 본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등급을 나누어 거두어 쓰되 그 가운데 여택조(呂宅祖)는 전조로 하여금 특별히 거두어 쓰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 **수원부사 조심태**가 아뢰기를, "신이 삼가 연석의 하교를 받들고 **수원부** 성역의 원납 문제에 대하여 영부사 채제공(**蔡濟恭**)에게 가서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본주 남북 성문의 문루를 설치할 때 재력을 바친 자가 6인인데, 상원(祥原)에 사는 진사 여택조가 자진해서 원납한 것이 돈 1만 냥과 철 1만 근이며, 평양(平壤)에 사는 절충장군 홍택순(洪澤淳)과 의주(義州)에 사는 출신(出身) 김성기(金聖基)가 각각 3000냥씩을, 평양에 사는 출신 임상진(任尙珍)이 2000냥을, 평양에 사는 유학(幼學) 이원첨(李元瞻)과 상원에 사는 유학 이명로(李命老)가 각각 1000냥씩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내 체차되어 돌아왔기 때문에 미처 보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원납한 물건이라 돌려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역을 시작할 때 돌을 뜨는 품삯과 돌을 운반하는 소의 값 등 제반 비용으로 내준 것이 거의 5, 6천 냥에 가까웠지만 이것을 변통하여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나머지 돈 6000냥은 집사청(執事廳)에 자물쇠를 채워 봉하여 두었습니다. 여택조의 돈 1만 냥은 그 자신이 서울의 여관에서 맡아 지키고 있은 지가 이미 반년이 지났으니 일의 체모로 헤아려 볼 때 매우 구차합니다. 이것을 이제는 유수영(留守營)에서 수량대로 받아 두고 뒷날 필요할 때 쓰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또 이들의 공로에 보답하는 방도로는 홍택순 등 5인은 전조와 본도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등급을 나누어 거두어 쓰되, 그 가운데 여택조는 반벌(班閥)인 데다가 원납한 액수가 뛰어나게 많으니 특별히 공로에 보답하는 것이 진실로 합당하겠으나 은상(恩賞)에 관한 일이라 꼭 집어서 청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

다.’ 하였습니다. 대신의 말이 이러하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그 가운데 여택조는 전조로 하여금 특별히 거두어 쓰게 하라. 이미 원납한 물건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전 유상의 말과 같다. 그런데 관청 건물에 받아 두기도 하고 서울 여관에서 맡아서 지키고 있다고 하니, 일의 체모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더구나 성역은 본부로서는 중대한 일 중에서 제일 급선무인데, 시작하자는 의논이 전 유상으로부터 나왔다고 하여 한결같이 가타부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른 것은 나라의 체모로 보아 한심한 일일 뿐만이 아니다. 비록 이보다 작은 사무라 할지라도 옛사람들이 논쟁하던 전당(殿堂)을 나가서는 화기(和氣)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생각해서라도 기필코 서로 호응해서 함께 일을 해야 마땅하거늘 더구나 본부의 소중함이 어떠한데 이와 같이 직무에 태만하며 꼭 제기하여 신칙하기를 기다린단 말인가. 내가 이 중신(重臣)에 대하여 크게 잘못 알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는 공적인 일을 우선하고 사사로운 일은 뒤로 미루는 뜻을 깊이 이해하여 혹시라도 전과 같은 일이 없도록 하라고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綱 命**水原城役**物力願納諸人銓曹及本道從其所願分等收用其中呂宅祖令該曹別般收用

目 前**水原府使** **趙心泰**啓言臣伏奉筵敎以**水原府** **城役**願納事往問于領府事 **蔡濟恭**則以爲本州南北城門樓設施時以財力效勞者爲六人而祥原進士呂宅祖自願錢萬兩鐵萬斤平壤折衝洪澤淳 義州出身金聖基各納三千兩平壤出身任尙珍納二千兩平壤幼學李元瞻 祥原幼學李命老各納一千兩而終緣遞歸雖未及登聞非但旣納之物無以還給始役時浮石工役及運石牛價等諸般用下殆近五六千此已萬萬難處餘錢六千兩銷鑰封置於執事廳宅祖錢萬兩渠自守直於京中逆旅者已過半年揆以事面尤涉苟簡此則及今自留守營如數捧置以待後日需用之時恐合事宜且以酬勞之道言之洪澤淳等五人自銓曹及本道從其所願分等收用而其中呂宅祖旣是班閥數且優多亶合拔例酬勞事係恩賞不得指的仰請云矣大臣之言如此敢此仰達矣從之敎曰其中呂宅祖令該曹別般收用旣納之物不可還給誠如前留相之言則或捧置於公廨或守直於京旅云者豈有如許事面乎況**城役**在本府卽重大之第先務而以欲始之議出於前留相一味不爲可否以至于今者不但國體之寒心雖少於此之事務宜思古人下殿不失和氣之意期於相應而共濟又況本府所重何如則若是泄泄必待提飭予於此重臣可謂太誤知矣此後深體先公後私之意莫或如前事嚴飭可也

<일성록, 정조17년(1793) 11월 16일(을사)>

경제/건설

수원성 성역에 원납한 사람들의 가자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성(水原城)의 성역(城役)** 때에 원납(願納)한 사람들 중에 아직 가자(加資)하지 못한 사람은 우선 가자한 뒤에 변장(邊將)의 자리가 나거든 조용(調用)하고 여택조(呂宅祖)는 오늘 정사에서 오위장으로 자리를 만들어 의망(擬望)해 들이라고 명하였다.

목 ○ 병조 판서 정호인이 아뢰기를, “전 **수원부사 조심태(趙心泰)**의 소계(所啓)에 있는 여택조 등 6인의 일은 이미 대신에게 가서 상의했으니 대신의 의견대로 거행해야 합니다마는 그 가운데 여택조와 임상진(任尙珍)은 모두 아직 가자되지 않았으니 우선 가자한 뒤에야 조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학(幼學) 이원첨(李元瞻)과 이명로(李命老)도 대신의 의견대로 전랑(殿郞)으로 뽑아 의망하라는 뜻으로 본조에서 해당 도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아직 가자하지 못한 사람은 가자한 뒤에 변장의 자리가 나거든 조용하고, 이미 가자된 사람은 우선 오위장에 제수(除授)하여 변장으로 조용하라.

그리고 여택조는 오늘 정사에서 오위장으로 우선 자리를 만들어 의망해 들이라." 하였다.
綱 命水原城役時願納人等未及加資人先爲加資後邊將待窠調用呂宅祖今日政五衛將作窠擬入
目 兵曹判書 鄭好仁啓言以前水原府使 趙心泰所啓中呂宅祖等六人事旣已往議于大臣所當依大臣議擧行而其中呂宅祖 任尙珍皆未及加資先爲加資然後方可調用至於幼學李元瞻 李命老亦依大臣議以殿卽差擬之意請自臣曺知委該道從之敎曰未及加資人加資後邊將待窠調用已加資人先除五衛將邊將調用至於呂宅祖今日政五衛將先爲作窠擬入
<일성록, 정조17년(1793) 11월 23일(임자)>

경제/건설

수원 성역을 위한 재원 문제에 대해 하명한 일을 확인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 및 어사 심낙수(沈樂洙)와 접위관(接慰官) 윤제동(尹悌東)을 소견하였다.

목 (…) 내가 훈련대장 조심태(趙心泰)에게 이르기를, "수원의 성역(城役)에 드는 물력을 두 군영의 향군들이 번(番)을 드는 대신 내는 돈에서 변통해 쓰는 일을 두 군영의 장신(將臣)들에게 물어 처리하려고 했는데, 어영대장은 어째서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어영대장은 구기(拘忌)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전에 두 군영의 장신과 상의했더니, '본영으로서는 구애되는 일이 없으며 향군에게도 유익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정민시가 아뢰기를, "이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모두 편리한 일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성역의 방략에 대해 경들이 잘 헤아려서 어떻게 하는 것이 편할지 토론하여 결정하라." 하였다.

綱 召見大臣備堂及御史 沈樂洙 接慰官 尹悌東于誠正閣
目 (…) 予謂訓鍊大將趙心泰曰水原城役物力旣欲以兩營鄕軍中停番錢推移以用將問於兩營將臣而處之御將何故不入來乎心泰曰御將聞有拘忌云矣臣向與兩營將臣相議則以爲在本營無拘礙在鄕軍亦多有益云矣民始曰此是公私兩便之政予曰城役方略卿等商量便否講定也
<일성록, 정조17년(1793) 11월 24일(계축)>

경제/건설

수원 성역과 관련하여 하문을 위해 비변사 당상들을 소견하다

강 비변사 유사 당상, 훈련대장, 어영대장, 영중추부사는 내일 와서 대령하라고 명하였다.
목 ○ 수원의 성역(城役)에 대해 물어볼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綱 命備局有司堂上訓御將 領府事明日來待
目 以水原城役有詢問事故也
<일성록, 정조17년(1793) 12월 5일(갑자)>

경제/건설

수원의 축성 문제로 채제공을 소견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과 비변사 당상 정민시(鄭民始)·심이지(沈頤之)·윤행임(尹行任)·조심태(趙心泰)를 소견하였다.

목 내가 이르기를, "수원에 축성(築城)하는 일은 경이 유수(留守)로 있을 때 경영했는데 중간에 경이 정승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중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생각으로는 10년이

면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만약 감동(監董)할 사람으로 쓸 만한 사람을 얻으면 굳이 10년까지 끌 것이 있겠는가. 모든 일은 먼저 규모를 정하는 것이 제일이고, 규모를 정하는 데는 미리 경영하는 것이 제일이고, 경영하는 데는 쓸 만한 사람을 얻는 것이 제일이다. 오늘 특별히 경들을 부른 것은 이 때문이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보장(保障)이 되는 곳에 성첩(城堞)이 없는 경우를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비록 작지만 만약 재력을 마련하기 어려워 그대로 중지했다고 하면 이는 진실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이 본부를 맡고 있을 때 항상 마음속으로 혼자서 만약 을묘년(1795, 정조19) 원행(園行) 때에 맞추어 완성된다면 매우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나무나 돌, 재력을 마련하는 데에는 본래 경상 비용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금위영과 어영청의 정번군(停番軍)들이 내는 돈을 가져다 쓴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조금도 문제 될 것이 없고 바로 군민(軍民)이 모두 편한 방도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시행하도록 허락하고 싶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본부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대해, 전부터 반드시 경상 비용을 번거롭게 쓰지 않으려는 성상의 뜻을 신들은 항상 흠앙하고 있습니다. 정번군들이 내는 돈을 가져다 쓰면 과연 매우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정번군들이 내는 돈이 몇 냥이나 되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1년에 2만여 냥은 될 것이며 10년까지만 계산하면 25만 냥은 될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만약 4, 5십만 냥을 얻는다면 넉넉히 공사를 완성할 수 있겠는가?" 하니, 채제공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30만 냥이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하고, 조심태는 아뢰기를, "들어갈 물력을 아직 헤아릴 수 없지만 신의 생각에는 30만 냥으로는 부족할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물력은 우선 이 수효로 잠정적으로 마련하면 충분하든 부족하든 그다음에 경영할 수 있으나 쓸 만한 사람을 얻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경의 생각에는 누구 합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훈련대장(訓鍊大將 조심태) 외에는 합당한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고을을 옮길 때부터 수고가 많은 데다가 감동하는 일에 익숙하니, 지금 만약 쓸 만한 사람을 고른다면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서울에 있으면서 감동할 것인가, 아니면 가서 머물면서 주관하여 시행할 것인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일의 체모가 중대하니 대신이 총괄하여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경 말고는 적임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내가 이르기를, "석성(石城)이나 초루(譙樓)와 치첩(雉堞)의 제도는 지금 이미 결정되었지만 돌을 뜨는 방도는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 이미 떠 둔 돌은 경들이 세전(歲前)에 운반해 두는 것이 편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앞으로 봄철이 되면 새로 돌을 뜰 것인데, 돌을 떠내는 곳은 거리가 몇 리나 되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3리나 7리 거리이지만 도로가 평탄하여 쉽게 운반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팔달산(八達山)** 건너편에 있는 곳이 읍에서의 거리가 3리에 불과하고 석재(石材)가 넉넉한 데다가 질도 좋아서 참으로 무진장(無盡藏)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지명이 바로 **공석면(空石面)**인데, 신은 항상 귀신이 굳게 감추어 두고 오늘을 기다린 것이니 이는 모두 성상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조심태에게 하교하기를, “조금 전 비지(批旨)에서 해당 당상이 내려가서 형편을 자세히 살피라는 하교를 하였는데, 이는 그 일을 중시하자는 뜻이니 경은 반드시 수일 안으로 내려가서 하루 이틀 머물더라도 기지(基址)와 물길을 상세히 두루 살펴보라. 그리고 그 밖에 자질구레한 절목에 관한 일은 대신과 상의하여 형편에 따라 조처하라.” 하였다.

綱 召見領府事 蔡濟恭備堂鄭民始 沈頤之 尹行任 趙心泰于誠正閣

目 予謂蔡濟恭曰數日以來日氣猝寒卿是老人得無所難乎濟恭曰自來背寒之症尙爾作苦矣予曰卿之此病自是本症矣濟恭曰然矣予曰水原築城之役卿居留時有所經紀而間因拜相未免中止予則以爲限十年可以告訖而若監董得人則何必拖至十年乎凡事莫如先定規模規模莫如預爲經紀經紀又莫如得其人矣今日特召卿等者此也濟恭曰保障之地未聞無城堞者我國雖小若謂以財力之難辦而仍爲中止則是誠不可使聞於他人臣之待罪本府時每於心中私自以爲若趁乙卯年園幸時告成則甚好云矣予曰木石與財力予意本不欲煩費經用而以禁御兩營停番軍錢取用則於公於私少無所礙而卽亦軍民兩便之道故果欲以此許施矣濟恭曰凡係本府事自前必欲不煩經費之聖意臣等之常所欽仰者停番錢取用果極便好矣予曰停番錢爲幾許兩乎心泰曰一年當爲二萬餘兩而限計十年則爲二十五萬兩矣予曰如得四五十萬財則優可告功耶濟恭曰臣意則三十萬兩足可爲之矣心泰曰所入物力姑未可料度而臣意則三十萬兩似不足矣予曰物力先以此數姑爲拮據足不足間可以次第經紀而得人最難卿意則誰有可合者也濟恭曰臣意則訓將外無可合者此人自移邑時效勞旣多且其慣熟於監董之事今若擇人無出此右矣予曰然則當在京而監董乎抑或往留而主管設施乎濟恭曰莫如作爲主人矣予曰果好矣而事體重大不可無大臣總察此則卿外無人矣予曰石城與譙樓雉堞之制今已決定浮石之道可以經紀矣已浮之石卿等旣以歲前運致爲便云然則來頭新浮之石必於開春後爲之而浮出處爲幾里耶心泰曰卽三里七里之地而道路甚平坦易運矣濟恭曰八達山越邊之地自邑相距不過三里而石材旣優且好可謂無盡藏矣其地名卽空石面臣常以爲神慳鬼秘以待今日者皆是聖孝格天而然云矣予敎心泰曰俄者批旨有該堂下去看審形便之敎此重其事之意也卿須數日內下去雖留一兩日其基址與水道詳細遍審其外小小節目間事就議大臣從便措處也

<일성록, 정조17년(1793) 12월 6일(을축)>

경제/건설

수원 성역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교하다

강 수원의 성역(城役)은 봄철이 되면 하되 조심태를 감동 당상(監董堂上)으로 삼고 채제공이 주관하여 총괄하여 살피고 금위영과 어영청의 번상군(番上軍)을 10년 동안만 번마다 1초(哨)씩 감하여 그 비용을 성역에 쓰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수원의 성역을 봄철이 되면 할 것이니, 비변사 당상 조심태를 감동 당상으로 차하(差下)하라. 사무를 총리(摠理)하는 것은 채 영부사가 주관하여 총괄하여 살피되, 도청(都廳)과 별간역(別看役) 등은 초기(草記)로 차정(差定)하라. 재력은, 어찌 경상 비용을 번거롭게 쓰겠는가. 금위영과 어영청의 번상군을 번마다 각각 1초씩 10년 동안만 감하여 우선 그 비용을 성역에 쓰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綱 命水原城役自開春後爲之以趙心泰爲監董堂上蔡濟恭主管總察禁御兩營番上軍限十年每番減一哨以其費用於城役

目 敎曰水原城役當自開春後爲之備局堂上趙心泰監董堂上差下事務之總理則蔡領府事主管總察而都廳及別看役等草記差定財力豈煩經費乎禁御兩營番上軍每番各減一哨限十年爲先以其費用用於城役事分付

<일성록, 정조17년(1793) 12월 6일(을축)>

경제/건설

수원 축성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다

강 **수원**의 축성은 석성(石城)으로 하되 성의 제도는 중국의 법을 본뜨고 고(故) 상신(相臣)의 논의를 널리 상고하고 상세히 헤아려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 **수원부사** 조심태가 아뢰기를, "**수원부**의 성역을 감동하라는 명을 방금 받들었습니다. 금위영과 어영청 군사들의 번을 면제하고 떼어 주신 돈이 28만 냥이니, 이것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석물을 떠내는 일은 봄철이 되기를 기다려 시작하고 금년 봄에 이미 떠 둔 석물도 세전에 운반해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시작하는 초기에 성을 쌓는 범절에 대하여 먼저 강구하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대개 남변과 북변은 석성으로 하고 동변과 서변은 토축(土築)으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통일하여 결정한 뒤에야 앞으로의 공역에 방해되는 단서가 없을 듯합니다. 또 성의 제도로 말씀드리면 치첩과 초루는 마치 새의 날개나 수레의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도 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성지(城址)는 산세(山勢)가 높지 않고 교야(郊野)가 평탄하여 곡성(曲城)과 초루가 힘을 얻기에는 더욱 알맞습니다. 대신이 방금 입시하였고 또 총리하도록 명하셨으니 하문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대신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영중추부사 채제공이 아뢰기를,

"성역을 내년 봄에는 해야 하니 성을 쌓는 범절을 미리 강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변과 북변을 석축으로 하는 것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동변과 서변의 경우는 그 기지가 대부분 주봉(主峯)과 안산(案山)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의논하는 자들이 모두 토축이 편리하다고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주봉과 안산은 하늘의 조화로 만들어진 땅이라 그곳의 흙을 파서 산의 맥(脈)을 상하게 할 수 없으니 멀고 먼 곳에서 흙을 떠 와야 할 형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공사 비용이 석축보다 도리어 많이 들 것이며 성의 체모로 말하더라도 석축이 토축보다 나을 것은 분명한 이치이니, 동변과 서변도 남변과 북변의 예에 따라 함께 석축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성이 있는데 치첩과 초루를 설치하지 않으면 결국 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줄을 안 이상 지금 한 가지라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선배들이 남긴 문집에도 이 문제에 대하여 논급(論及)한 것이 많으니, 일을 주관하는 신하로 하여금 널리 상고하고 상세히 논의하여 소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물길을 소통시키는 것이 끝까지 관심을 둘 문제인데, 신의 생각으로는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는 석교(石橋)를 놓되 견실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힘쓰고, 그런 뒤에 그 위에 성을 쌓아 평지에 쌓은 성과 이어 붙인다면 물이 넘치는 문제를 조금 없앨 수 있을 것이고 공사 비용이 수문(水門)과 홍예(虹蜺)로 하는 제도와 비교하면 훨씬 덜 들 것입니다. 이렇게 강구하여 정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쌓으려고 힘쓰지 말고 화려하게 쌓으려고도 힘쓰지 말고 기초를 튼튼히 쌓아 백년이나 천년이 지나더라도 흔들려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면 비로소 위급할 때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나머지 자질구레한 절목에 관한 문제는 감동하는 신하가 상황에 따라 변통하는 데 달려 있을 뿐인데, 어찌 연석에서 번거롭게 모두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의 말이 모두 좋다. 아뢴 대로 하라. 모든 일은 대강(大綱)이 선 뒤에야 규모가 정해질 것이며 그다음에 절목에 관한 일을 거행해야 할 것이다. 감동 당상을 이미 차하하라고 명하였으니, 그로 하여금 봄철이 된 뒤에 즉시 일을 시작하게 하라. 축성

의 대강은 형편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니, 감동 당상이 가까운 시일 내에 내려가서 기지를 정하되, 둥글게도 하지 말고 모나게도 하지 말고 보기 좋게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성의 제도에 따라 지세(地勢)를 잘 이용하는 방책에 따르도록 힘쓰라. 성역을 감동하는 대강은 편리하게 물건을 나르는 데 있으니, 경들은, 옛사람들이 남긴 무거운 물건을 끌거나 들어 올리는 방식을 미리 연구하여 시행하라. 재력을 모으는 대강은 우선 떼어 준 것 외에는 경상 비용을 번거롭게 쓰지 말고 원납(願納)을 억지로 받아 내지도 말고 양쪽이 다 편리한 방도를 다시 생각하라. 성의 제도나 모양의 대강은 위는 처마처럼 아래는 돌다리처럼 하고 옹성(甕城), 초루, 현안(懸眼), 누조(漏槽)와 해자(垓字)를 파고 성첩을 설치하는 것을 지형에 따라 배분하는 일은 멀리는 중국의 법을 본뜨고 가까이는 고 상신의 논의를 취하되, 경들도 반드시 널리 상고하고 상세히 헤아려 후대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조정에도 인재가 있었음을 알도록 하라." 하였다.

綱 命**水原**築城以石城爲之城制倣中國之法故相之論博考詳度擧行

目 前**水原府使** **趙心泰**啓言**水原府城役**監董事才已承命矣禁御軍除番先爲劃下之財力爲二十八萬數當就此始役而石物浮出待開春始役今春已浮之石亦當於歲前運入而趁此經始之初設築凡節宜先請定概南北邊石城及東西邊土築歸一停當然後來頭工役似無掣礙之端且以城制言之雉堞譙樓便若鳥翼車輪不可或廢今此城址山勢不峻郊野案平曲城譙樓尤宜得力矣大臣今方入侍且命總理請下詢處之予曰大臣之意何如領府事 **蔡濟恭**曰**城役**旣在來春則設築凡節不可不預爲講定南北邊石築無容更議至於東西邊則以其基址多占主峯與案山故議者皆以土築爲便更思之主峯案山天作之地不可掘鑿其土以傷山脈則其勢當於遠遠地取土以來若然則工費反有浮於石築而以城體言之石勝於土其理較然東西邊亦依南北邊一體石築似好有城而不設雉堞譙樓則與無城將無同旣知其然則今不可闕一我朝先輩遺集中亦多論及此事使主事之臣博考詳論俾免疏漏亦好最是水勢疏導終有關心臣意則從某至某鋪張石橋以堅實不動爲務然後築城其上與平地所築連傳則汎濫之患使可稍殺而以其工費較之於水門虹蜺之制則省力甚多以是講定亦似爲好若其第一要道不務速不務華堅築址根雖百千年無或搖動方可以得力於緩急矣餘外小小節目間事惟在監董之臣隨處通變而已顧何必盡煩於筵席乎予曰卿言皆好矣依爲之凡事先立大綱然後規模定而次第節目間事當擧而措之監董堂上已命差下使之開春後卽爲始役築城之大綱莫如形便該堂從近下去定其基址勿圓勿方勿念觀瞻務從因利乘勢之策董役之大綱在於便運而移輸卿等預究古人引重起重之遺式而行之鳩財之大綱先劃之外勿煩經費亦勿勒捧願納更思兩便之道制樣之大綱上如簷下若磴而甕城譙樓懸眼漏槽鑿濠設雉之隨地排分遠倣中國之法近取故相之論卿等亦須博考詳度俾後人知今日朝廷之有人可也

<일성록, 정조17년(1793) 12월 6일(을축)>

경제/건설

수원 성역 건설을 위해 감동당상(監董堂上)들을 소견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감동 당상(監董堂上) 조심태(**趙心泰**), 도청(都廳) 이유경(李儒敬), 경기 감사 서용보를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서용보에게 이르기를, "경은 다른 집 사람과 다르다. 특별히 홍릉을 봉심하라고 명한 것도 그 때문이다. 어제 언제 감영에 돌아왔는가?" 하니, 서용보가 아뢰기를, "인정(人定) 때 감영에 돌아왔습니다." 하였다.

내가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내일 **수원**에 내려가 형편을 간심(看審)할 것인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도청과 함께 가라. 그리고 화원(畫員)도 데리고 가서 도형(圖形)을 만들어 오되, 성지(城址)뿐만 아니라 읍내의

여리(閭里)와 산과 들 중에 시야에 들어오는 곳 모두 도형을 만들어 오라. 인가(人家) 중에 조금 큰 것도 아무개의 집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빠짐없이 자세히 그림으로 그려 오는 것이 좋겠다."

하고, 내가 이유경에게 이르기를, "**수원**의 성역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일전에 연석(筵席)에서 겨우 강마(講磨)하였는데, 내가 도청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맡긴다. 도청이 이미 출신하여 임금을 섬기고 있으니 이와 같은 일에 수고하지 않으면 다시 어떤 일로 은혜에 보답하겠는가." 하니, 이유경이 아뢰기를, "신이 감히 정성과 힘을 다하여 은혜의 만분의 일이나마 보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도청은 어떻게 경영하려고 생각하는가?" 하니, 이유경이 아뢰기를, "신이 당상의 말을 이미 들었습니다. 일전에 연석에서 하교하신 말씀이 지극히 온당한데 신이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현안(懸眼), 누조(漏槽), 치성(雉城), 옹성(甕城) 등의 문제와 물길을 석교(石橋)로 하느냐 홍예(虹蜺)로 하느냐 등의 문제는 과연 어떠하던가?" 하니, 이유경이 아뢰기를, "조금 전에 당상과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마는 대체로 지난번에 하교를 받든 뒤에 방략과 형편이 분명하고 명백하여 마치 눈앞에 있는 듯하니 이에 따라 거행하면 절로 잘 성취될 것이고 신들이 여러 가지로 헤아려 보았자 실로 별반 진달할 만한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성역에 대해서는 예로부터 논란이 많아 경륜이 있는 선비치고 이것을 가지고 말하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취사하고 재량하는 것은 오직 그 일을 맡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 그런데 대체로 보아서 축성하는 법은 기지(基址)를 튼튼하게 쌓는 것이 제일이다. 기지가 튼튼해야 비로소 그 나머지 제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성인데 성가퀴가 없으면 이는 쓸모없는 성이므로 치성은 반드시 쌓지 않을 수 없다. 옛사람들은 모두 옹성을 중하게 여겼다. 성문에 옹성이 없으면 역시 쓸모없는 성이라 할 것이니, 옹성도 쌓지 않을 수 없다. 단지 보기만 아름답게 하고 견고하고 치밀하게 쌓을 방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옳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적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병법은 먼저 남의 기(氣)를 꺾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소하(蕭何)가 미앙궁(未央宮)을 크게 지을 때에도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으면 중후한 위엄을 보일 수 없다.' 라고 했다. 그렇다면 성루(城樓)가 웅장하고 화려해서 보는 자로 하여금 기가 꺾이게 하는 것도 수성(守城)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안을 만드는 데는 벽돌로 쌓은 성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더러 말하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벽돌은 현안을 만들 수 있는데 돌은 어째서 현안을 만들 수 없단 말인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성인데 성가퀴가 없거나 성가퀴를 만들면서 현안을 만들지 않으면 모두 수성에 좋은 제도가 아니니 현안은 반드시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누조와 오성지(五星池)의 제도는 경과 도청이 상의하여 강구하라. 그래서 옛사람들의 좋은 제도가 모두 이 성에 갖추어진다면 후세에 보는 사람들도 반드시 오늘날의 조정에 인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신들이 정성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벽돌을 구워 쌓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나라 사람은 벽돌을 굽는 데 익숙하지 않아 쓸데없는 비용이 갑절이나 많이 들 것이니 대체로 석성만큼 편리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이유경이 아뢰기를, "본부의 토질이 벽돌에 적합하지 않고 더구나 근처에 석재가 있는데 어찌 구태여 벽돌을 굽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돌을 뜨는 데가 몇 리밖에 안 되는 곳에 있어서 실어 나르기가 편리하고, 또 영부사의 말을 들으니 돌을 뜨는 곳의 면 이름이 바로 **공석면(空石面)**이라고 하는데, 석물이 이 면에 감추어져 있다가 오늘날에 쓰이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영부사가 말하는 이 면의 이름이 공석인 것은 바로 돌이 비게 된다는 뜻이니, 참으로 그렇다면 하늘이 **수원성부(水原城府)**를 위하여 이런 기이한 조짐을 둔 것일 것이다.”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몇 년 전에 **앵봉(鸎峯)**의 돌을 가져다 쓴 것도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었는데 이번 **공석면**에 또 석재가 많으니 또한 이것은 하늘이 준 것으로, 실로 경사스럽고 다행한 일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성에 성가퀴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면 그 모양새가 반드시 구불구불 굴곡이 질 것이니, 평지 외에 산에 의지하는 곳이나 지형에 따라 굴곡진 곳은 성가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성가퀴를 만들 수 없는 네 모서리에는 대(臺)를 설치하거나 누(樓)를 쌓고 포(舖)를 쌓는다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성 밖의 형세를 살피기에도 편할 것이니 두 가지에 대해 모두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이나 이것은 경들의 능력에 달린 문제이다.”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삼가 성상께서 하교하신 대로 형편에 따라 받들어 거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어느 곳부터 먼저 일을 시작할 것인가?” 하니, 이유경이 아뢰기를, “먼저 문루(門樓)를 설치해야겠지만 기지를 쌓는 일도 아울러 거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석재도 자연 실어다 놓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며칠 전 거조(擧條)에 대한 비답에서 위는 처마처럼 아래는 돌다리처럼 하라고 말하였는데 경들은 제대로 이해했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이는 마치 규(圭 홀(笏))와 같은 제도로 경성(鏡城)의 성이 그와 같습니다.” 하고, 이유경은 아뢰기를, “경성은 신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왜(倭)의 성들도 그와 같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축성하는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성의 중간 부분［城腹］을 쏙 들어가게 하는 것은 완전하고 장구하게 하는 방도가 아니라고 한다. 내 말이 어찌 전적으로 바깥쪽으로 향하게 한다는 말이겠는가. 다만 아래에서 위로 조금씩 줄여 나가다가 성의 중간 부분에 이르러 조금씩 점차 펴지게 하여 옛 제도에 맞게 하자는 것이다.”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영남의 여러 성 중에 진주성(晉州城)에 있는 초루(譙樓)가 매우 좋다고 하니 사람을 보내 알아 오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함안 군수(咸安郡守) 심인(沈鎭)은 본래 재주와 슬기가 있다고 일컬어집니다. 곧 임기가 만료된다고 하니, 그로 하여금 몸소 가서 간심하고 나서 도형을 만들어 올라오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대로 하라. 초루는 몇 좌(座)나 만들 것인가?” 하니, 이유경이 아뢰기를, “네 모서리에 각각 1좌씩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장대(將臺)는 어느 곳으로 하려 하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팔달산(八達山)**이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사방을 훤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 밖의 형세를 살피기에 매우 편리하니 이곳으로 정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수문(水門)의 제도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홍예(虹蜺)가 편리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석교(石橋)가 편리하다고 하는데, 내 생각으로는 석교가 매우 완전하고 튼튼할 것이다. 다리 기둥이 앞뒤로 서로 떠받쳐 개의 이빨처럼 서로 맞물리는 모양으로 하면 좋을 것이다.” 하니, 이유경이 아뢰기를, “한북문(漢北門)도 석교로 만들었는데, 제도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석교로 하되 그 제도를 좋게 한다면 홍예보다 더 견실할 것

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보다 작은 일이라도 으레 이러쿵저러쿵 논란이 있게 마련인데 하물며 이처럼 더없이 큰 역사(役事)에서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일을 시작한 뒤에 여러 논의에 흔들린다면 참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규모가 일단 정해지면 반드시 굳게 지키고 흔들리지 말아야 비로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뜻은 이미 정해져서 결코 뜬소문을 믿지 않을 것이니 훈련대장도 반드시 그렇게 알고 여러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신이 이미 어명을 받들어 이 큰일을 주관하게 되었으니 설령 위에서 생각해 내신 계책을 받들게 된 경우라도 역소(役所)에 가서 미루어 생각했던 바와 어긋나는 점이 있으면 준행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물며 외간의 서로 다른 논의이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의 말이 참으로 매우 좋다.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 보유편(補遺編)**에 **수원 읍치를 북평(北坪)**으로 옮기고 성지(城池)를 건축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100년 전에 미리 이러한 논의를 하여 마치 오늘날의 일을 본 것처럼 한 것은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하였다. 내가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이번에 가거든 원소(園所)를 봉심하고 오라.” 하였다.

綱 召見監董堂上**趙心泰** 都廳 李儒敬 畿伯 徐龍輔于重熙堂

目 予謂徐龍輔曰以卿之異於他家人故特命奉審弘陵者此也昨日何時還營乎龍輔曰人定時還營矣予謂**趙心泰**曰明日將下往**水原**看審形便乎心泰曰然矣予曰然則與都廳同往而畵員亦爲帶去以爲圖形以來而非特城地圖形幷與邑內閭里及山野入望處皆爲圖形人家之稍大者亦記其某人之家詳悉圖畵以來好矣予謂李儒敬曰**水原城役**何等重大日昨筵中才有講磨而予以都廳謂瞭然故任之以此事都廳旣出身事君不於此等事效勞則更於何報效乎儒敬曰臣敢不竭誠殫力以報萬一乎予曰都廳之意如何經紀耶儒敬曰臣已聞堂上之言日前筵敎至爲穩當臣豈有別見乎予曰懸眼漏槽雉城甕城等事及水道之石搞虹蜺等事果如何耶儒敬曰俄與堂上亦有酬酢而大體向承下敎之後方略形便瞭然如在目中遵此擧行自當善成臣等多般商度實無別般意見之可達者矣予曰**城役**自古多有論難而經綸之士無不以此爲言取捨裁度惟在述者之能而大抵築城之法莫如堅築基地基地固然後方可及於其餘制度矣城而無雉是無用之城也雉城決不可不築也古人莫不以甕城爲重門無甕城亦可謂無用之城矣甕城又不可不築也徒爲觀瞻之美而不念堅緻之方固不可也而觀瞻之美亦有助於禦敵兵法貴乎先奪人之氣故蕭何大治未央宮亦曰非壯麗無以重威然則城樓雄麗使觀者奪氣亦爲守城之大助懸眼之制或曰非甓城不可爲也此則不然甓旣懸眼則石何以獨不得懸眼乎心泰曰城而無雉雉而不懸眼俱非守城之良制懸眼決不可不爲矣予曰漏槽五星池之制卿與都廳相議講究俾古人之美制成備於此城則後之覽者亦必知今日朝廷之有人也心泰曰臣等當竭誠爲之矣予曰或說多以燒甓以築爲便而東人不媚燒甓宂費倍多都不如石城之爲便矣儒敬曰本府土品不合於甓且傍近處旣有石材何必燒甓乎予曰浮石之所旣在數里之地運輸便當又聞領府事言浮石處面名卽空石面云石物之藏於是面而爲今日用者亦非偶然領府所云是面之名以空石乃石空之意者誠然矣天爲**水原**城府有此奇兆矣心泰曰年前罵峰石之取用亦非人力今此空石面之又多石材亦是天授也實爲慶幸矣予曰城旣設雉則其形當逶迤屈曲平地外依山處因地形而屈曲處則不必設雉至於四角之不可爲雉處或設臺或築樓築鋪則觀瞻之美瞭望之使兩盡其道此在卿等之能耳心泰曰謹當依聖敎從便奉行矣予曰始役堂先自何處乎儒敬曰當先設門樓而築基之役幷爲擧行如此之際石材亦自輸致矣予曰日前擧條批答中看上如簷下如磴之敎卿等能解見乎心泰曰此是如圭之制鏡城城如此矣儒敬曰鏡城臣未見之而聞倭城亦如是云此卽築城之美法也予曰不知者以爲城腹枵然非完久之道也予言豈是全然向外之謂乎惟在自下以上漸次以收至于城身之半

腹微微漸展以合古制也心泰曰然矣予曰嶺南諸城中晉州城看譙樓甚好云亦送人知來好矣心泰曰咸安郡守 沈鎭自有才譜之稱聞瓜期在卽云使之躬往看審仍爲圖形上來之地似好矣予曰依此爲之可也譙樓當爲幾座乎儒敬曰四角各設一座恐好矣予曰將臺將以何處爲之耶心泰曰八達山基地占得高處四望皆通甚便當於瞭望城外以此爲定似好矣予曰水門之制或曰虹蜺爲便或曰石橋爲便予意則石橋甚完固矣橋柱前後相拄爲犬牙相制之形好矣儒敬曰漢北門亦爲石橋而其制未甚好今若用石橋而善其制度則其堅實勝於虹蜺矣予曰雖小於此之事例有甲乙之論況此莫大之役乎始役之後如或動於諸議則做事誠難規模一定必須堅持勿撓然後方可做得予意已定決不爲浮言所疑信訓將亦須知此不撓諸說可也心泰曰臣旣奉承上命幹此大事設令有受成策於上者往至役所而有違所料則將不得遵行況外間異同之論乎予曰卿言甚好甚好柳馨遠磻溪隨錄補遺有移**水原**邑治于北坪建築城池之論百年之前預爲此論若覩今日事者豈非異乎心泰曰誠爲奇異矣予謂心泰曰今行奉審園所而來也
<일성록, 정조17년(1793) 12월 8일(정묘)>

경제/건설

수원 성역으로 인한 폐단을 엄금토록 하다

강 **수원**의 성역 때 각 도의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무더기로 모여드는 폐단을 금하라고 명하고, 이어 비변사에서 공문을 보내 알려 효유(曉諭)하라고 명하였다.

목 ○ 감동 당상 조심태가 아뢰기를, "신이 **수원부**의 성지(城址)를 간심하는 일로 내일 나가려고 하는데, 미리 여쭈어 정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개 기유년(1789, 정조13)에 읍치를 옮길 때 각 도의 백성들이 미어지게 무더기로 몰려들어 주객(主客)이 모두 곤란하여 마침내 나라에서 양식을 주어 돌려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성역을 할 때 또다시 풍문을 듣고 동요되어 틀림없이 과거에 하던 것처럼 서로 이끌고 몰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역은 10년을 기한으로 하여 점차로 경영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예컨대 일꾼을 모집하는 경우라도 읍 부근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분배하여야 일을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근의 백성들이 오고 가는 데 힘들여 수고하고 애만 쓸 뿐이니, 그들의 행동거지를 그대로 방임하여 끝에 가서 낭패를 보게 하기보다는 미리 먼저 통지하여 망동하지 말도록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으로 거조를 내어 비변사에서 각 도, 각 읍의 방곡(坊曲)에 공문을 보내 알리는 것이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綱 命**水原城役**時禁各道民人聞風坌集之弊仍命備局行會曉諭

目 監董堂上**趙心泰**啓言臣以**水原府**城地看審事明將出去而有一事預爲稟定者槪已酉年移治時各道之民駢塡坌集主客俱困末乃有自朝家給糧還送之擧以此推之**城役**時又復動於風聲相率輻輳必如前日之爲而今此**城役**旣限十年漸次經紀雖如募軍之類從其邑底庶可分排使役然則遠近之民徒費往來勞苦而已與其任渠輩行止以致畢竟狼狽不若預先知委俾勿妄動之爲愈以此意出擧條自備局行會各道各邑坊曲似有實惠矣從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12월 8일(정묘)>

경제/건설

수원부 성역의 도청(都廳)과 별간역(別看役)을 차하(差下)하였다

강 **수원부** 성역의 도청(都廳)과 별간역(別看役)을 차하(差下)하였다.

목 ○ 비변사가 전 병사(兵使) 이유경(李儒敬)을 도청으로, 전 부사 양훈(梁塤), 전 군수 박형(朴泂), 전 현감 정우태(丁遇泰)를 별간역으로 차하할 것을 계청(啓請)하여, 윤허하였

다.

綱 差下水原府 城役都廳及別看役

目 備邊司啓請前兵使 李儒敬 都廳差下前府使 梁塤前郡守 朴洞前縣監 丁遇泰 別看役差下允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12월 8일(정묘)>

경제/건설

수원의 형편을 논했던 유형원(柳馨遠)을 증직하다

강 증(贈) 집의(執義) 유형원(柳馨遠)에게 성균관 좨주(成均館祭酒)를 추가로 증직(贈職)하고, 이어 예조에 명하여 그의 사손(嗣孫)을 방문하고 보고하게 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고(故) 처사(處士) 증 집의 겸 진선(贈執義兼進善) 유형원은 그가 지은 《반계수록(磻溪隨錄)》 보유편(補遺編)에서 '수원도호부는 광주(廣州) 아래 지역인 일용면(一用面) 등을 더하고 읍치(邑治)를 북평(北坪)의 평야로 옮겨 내를 끼고 지세를 따르면 읍성(邑城)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가 규모 있는 읍치와 뛰어나게 좋은 평야를 더하면 참으로 큰 번진(藩鎭)이 될 기상이 있는 곳으로, 안팎으로 1만 호(戶)는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또 말하기를, '축성하는 공역에 드는 비용은 향군들이 정번(停番)할 때 내는 돈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대체로 그는 유용한 학문으로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저작을 남겼다. 기이하도다. 그가 수원의 형편을 논함에 있어서 읍치를 옮기는 계획과 축성하는 방략은 100년 전에 살았으면서도 오늘날의 일을 환히 알았던 것이고, 면(面)을 합치고 정번하는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부절(符節)처럼 착착 들어맞는다. 그의 글을 보고 그의 말을 적용하더라도 오히려 대단한 감회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그의 글을 보지 않아도 본 듯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이미 적용하고 있으니 그 사람이 생각하던 바가 진실로 풍부했던 것이다. 이 화성 한 가지 일만 보아도 나로서는 아침저녁으로 그를 만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옛일이 기억난다. 그 집안의 후사(後嗣)로 인하여 그에게 추은(推恩)할 때 의례적으로 호조 참판이나 참의를 증직하려 하자 상신(相臣)이 '의례적으로 주는 직함이 도리어 특별히 증직하는 것보다 못하니 이 선비에게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힘주어 말한 적이 있는데, 나는 그때 그 말을 옳게 여겼다. 더구나 지금은 그에 대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어찌 높이 들어 면려하는 은전을 빠뜨리겠는가. 성균관 좨주를 추가로 증직하고 예조로 하여금 그의 사손을 방문하고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綱 加贈贈執義 柳馨遠 成均館祭酒仍命該曹訪問其嗣孫以聞

目 敎曰故處士贈執義兼進善 柳馨遠其所撰磻溪隨錄補遺編曰水原都護府以廣州下道之一用等面移治於坪野臨川因勢邑城可築申之以邑治規模坪野大勝眞是大蕃鎭氣象地內外可容萬戶又言築城力役當籍鄕軍停番之需蓋其人有用之學著之爲經濟文字奇哉其論水原形便也移治之謨築城之略身在百年之前燭照今日之事與合面停番等節文細務亦皆鑿鑿如符契見其書而用其言尙謂之曠感其書不見而如見其言未聞而已用其人之所抱固富矣卽此華城一事在予可謂朝暮遇記昔其家後承之推恩也例贈戶曹佐貳相臣力言其例贈之銜反遜於特贈不可施於此儒嘗以其言爲是況今興思豈闕揭厲之典加贈成均館祭酒其嗣孫令該曹訪問以聞

<일성록, 정조17년(1793) 12월 10일(기사)>

경제/건설

수원의 성역 건설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강 화성(華城)의 문루(門樓)에 쓰이는 괴목(槐木)과 잡목(雜木)을 열읍의 곤수(閫帥)들에게

나누어 지정(卜定)한 데 대해 도백으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고 장계로 보고하게 한 뒤 나에게 물어 처리하고, 이어 양남(兩南)의 도신을 신칙해서 추호라도 민간에 폐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며, 감동 당상(監董堂上) 조심태(趙心泰)를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화성의 성역(城役) 때 문루에 쓰이는 괴목과 잡목에 대해 감동 당상 조심태가 연석에서 상께 여쭈어 양남 가운데 괴목과 잡목이 생산되는 여러 도에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호남의 우수영(右水營)에서 담당 구역의 원근을 따지지도 않은 채 도내의 각 읍과 각 시(寺)에 나누어 지정하고 나무를 베어다가 운반해서 바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수원과 연관된 모든 일에 대해 성상께서는 추호도 민간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셨고 감동 당상이 아뢴 말도 열읍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호남의 수사가, 통지한 관문의 내용을 잘못 보고 이렇게 열읍에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을 초래한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호남의 수사를 우선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도신에게 분부하여 관문의 내용대로 거행하라고 엄히 신칙하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연석에서 나에게 물어 지정할 때 나무의 그루 수를 분명히 말하고도 오히려 폐단이 될까 염려하여 얼마나 신칙하였던가. 그런데 호남의 곤수가 이렇게 거행하였으니 매우 놀랍다. 이 곤수가 이런 식이라면 다른 곤수도 알 만하다. 성역에 관한 일마다 되도록 폐단을 없애는 데 힘썼으니 어찌 영송(迎送)하는 데 따르는 폐단을 걱정이나 하였겠는가.

도백으로 하여금 관할하는 곤수들을 엄히 조사하고 장계로 보고하게 한 뒤 나에게 물어 처리하고, 양남의 도신에게도 관문을 보내 신칙하라. 감동 당상만 하더라도 연석에서 내린 칙교(飭敎)를 준수하여 간곡한 당부를 거듭 밝혔다면 어찌 이런 일이 생겼겠는가. 감동 당상을 우선 추고하라."

綱 命華城門樓所用槐雜木分定於列邑之諸閫令道伯嚴査狀聞後稟處仍飭兩南道臣俾無一毫貽弊於民間推監董堂上趙心泰

目 備邊司啓言華城城役時門樓所用槐雜木監董堂上趙心泰筵稟卜定於兩南所產諸道而今聞湖南右水營分定於道內各邑各寺無論道里之遠近使之斫取運納云凡屬水原事聖念不欲一毫貽弊於民間該堂所奏亦非列邑卜定則該水使誤看知委之關辭致此列邑繹騷之弊者萬萬駭然請當該水使爲先從重推考分付道臣依關辭擧行之意請嚴飭分付敎以筵稟卜定之時明言其株數而猶慮爲弊申飭何如則該閫擧行之如此極爲駭然此閫若此則他閫可知其在城役事事務從除弊之道何恤迎送乎令道伯嚴査管下諸閫狀聞後稟處兩南道臣處亦爲關飭而雖以監董堂上言之若遵筵飭申明叮托豈有是乎該堂爲先推考

<일성록, 정조18년(1794) 2월 10일(무진)>

경제/건설

화성 축조에 쓰일 목재 수송 문제 등을 논의하다

강 화성(華城) 성루에 쓸 서까래감은 안면도(安眠島)의 풍락송과 장산곶(長山串)의 금표(禁標) 밖 소나무를 가져다 쓰고, 영남과 호남 여러 섬의 괴잡목(槐雜木) 중에서 기둥감으로 합당한 것을 100그루만 조세선(漕稅船)에 덧붙여 실어 바치고, 성역(城役)을 시역(始役)해서 돌을 뜨고 터 닦기를 시작하기 위하여 고유제(告由祭)를 지낼 때 쓸 향축(香祝)과 폐백을 마련해서 내려보내고, 문루의 상량문은 문형이 지어 올리라고 명하였다.

목 ○ 감동 당상(監董堂上)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화성 성지(城址)를 간심한 뒤에

연석에서 하교하신 대로 총리 대신(摠理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하니, ‘성지를 고쳐 다시 정하는 것은 도형으로 볼 때 국면이 아주 좋아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없으나 내년 봄 시역한 뒤에 4개 성문의 문루와 초루(譙樓)를 짓는 데 들어갈 서까래감을 섬 소나무를 요청하여 허락을 받지 못하거나 수상(水上)의 금양(禁養)하는 곳에서 베어 오지 않으면 장차 문루 등을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각종 큰 목재 1000그루와 큰 서까래감 1200그루를 안면도 풍락송과 장산곶 금표 밖 소나무 중에서 베게 하여 도내의 병방선(兵防船)으로 실어 운반하되 베고 끌어내리는 값과 아울러 선격(船格)들의 양미(糧米)는 각각 본도의 공곡(公穀)으로 실제의 수효대로 회감(會減)하고 그 나머지 서까래감도 들어가는 대로 수상의 금양을 하는 곳에서 베게 하라는 뜻으로 비국에서 각 해당 도에 통지하여 제때에 가져다 쓰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대신의 의견이 이러하여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하여, 내가 대신에게 물으니 영의정 홍낙성이 아뢰기를, “그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배로 운반하는 데 드는 양식을 지급할 때에는 허와 실이 서로 뒤섞이는 폐단이 없도록 하고 실어서 배가 떠났을 때는 연유를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조심태가 아뢰기를, “성역을 할 때 성루 등을 짓는 데 필요한 재목은 이미 삼가 요청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허다한 재목을 안면도에서 베어 오면 나뭇가지가 아마 적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안흥진(安興鎭) 근처에는 석회석이 매우 많으니 이 나뭇가지를 배로 안흥진에 운반하여 안흥진 첨사로 하여금 석회석을 구워 보내게 한다면 굽는 데 드는 비용이 많지 않고 매우 긴요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대로 수신(帥臣)과 첨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석(空石 가마니)의 수용(需用)이 많을 듯한데, 이것은 값을 줘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1만 닢(立)만 호서 연변의 각 읍에 배정하여 배로 운반하여 보내라는 뜻으로 충청도 도신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조심태가 아뢰기를, “크고 작은 재목은 이미 요청하여 허락을 받았습니다마는 소나무는 재질(材質)이 비바람에 씻기면 쉽게 썩으니, 남북 층루(層樓)의 허다한 기둥을 비록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바깥쪽 기둥은 그다지 수효가 많지 않고 또 영남과 호남의 여러 섬은 본래 잡목이 나는 곳이니 각각 해당 도의 도신과 수신 및 통제사에게 통지하여 괴잡목 중에서 기둥감을 100그루만 베어다가 도내 조세선 편으로 수량을 나누어 부쳐 보내게 한다면 외도(外道)로 보아서는 그다지 폐가 되지 않고 성루 등을 만드는 데는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일찍이 감사를 지낸 사람도 소견을 말하라.” 하니, 행 사직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봉산 근처의 괴잡목 중에서 더러 기둥으로 합당한 재목이 있을 것입니다마는 전체를 덧붙여 싣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재단하여 다듬은 것으로 1개 정도라면 거의 덧붙여 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봉산은 모두 하도(下道)에 있으니 상도(上道)의 조세선인 경우에는 형편으로 보아 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조심태가 아뢰기를, “**화성**의 성역을 시역할 때 돌을 뜨는 것부터 각처의 터를 닦는 것까지 시역할 길일을 일관으로 하여금 잡게 하여 방금 초기(草記)했습니다마는 시역할 때 먼저 고유제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찬품(饌品)은 방서(方書)에 실려 있는 대로 마련하겠습니다마는 향축과 폐백은 상께서 재결하지 않을 수 없기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향축은 향실(香室)과 예문관에서 마련하여 내려보내고, 소중한 의미가 있는 것이니 폐백은 또한 해당 감(監)으로 하여금 마련하게 하라.” 하였다.

조심태가 아뢰기를, “향축과 폐백을 마련하는 일은 이미 비지(批旨)를 받들었습니다마는 문루와 장대(將臺)를 상량(上樑)할 때 상량문을 지어 일을 아름답게 꾸미는 조치가 있어야 하겠기에 감히 이렇게 아룁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문루의 상량 때에도 상량문의 절차가 있어야 하니, 미리 문형에게 알려서 지어 올리게 하라.” 하였다.

강 命華城城樓材椽以安眠島 風落松及長山串標外松取用嶺湖諸島槐雜木可合棟材者限百株漕稅船添載以納城役始役浮石開基告由祭時香祝幣措備下送門樓上樑文文衡撰進

목 監董堂上趙心泰啓言華城城址看審後依筵敎就議總理大臣則以爲城址改定觀其圖形局面恰好無容更議而但明春始役之後四城門樓及譙樓營建所入材椽若不請得島松又不斫取水上禁養處則將無以成造矣各項大材一千株大椽一千二百株就安眠島 風落松及長山串標外松許斫以道內兵防船載運而斫伐及曳下之價幷船格糧米而各以本道公穀從實數會減其餘材椽隨其所入水上禁養處許斫之意自備局知委各該道以爲及時取用爲好云大臣之議如此敢此仰達矣予問大臣領議政 洪樂性曰依此許施好矣從之敎曰船運給糧之時俾無虛實相混之弊裝載發船緣由使之狀聞心泰曰城役時營建材木旣已仰請蒙允矣許多材木斫取於安眠島則枝柯將不些且安興鎭近處灰石甚多以此枝柯船運於安興鎭使該鎭僉使煮灰以送則所費不多爲用甚緊依此分付於帥臣及僉使處且空石需用勢將夥然此則有價難覓限一萬立湖西沿邊各邑分定船運以送之意請知委該道道臣從之心泰曰大小材木旣已請得而但松材風雨磨洗易致朽損南北層樓許多棟樑雖不得一一擬議至於外棟不甚數多且嶺湖諸島自是雜木所產知委各該道帥臣及統制使處槐雜木棟材限百株斫取道內漕稅船便分數付送則在外道不甚爲弊在成造爲用甚緊矣予曰曾經監司亦陳所見行司直 鄭民始曰封山近處槐雜木或有可合棟柱之材而但全體則決難添載若裁截劈鍊者一箇則庶可添載而封山俱在下道至於上道漕稅船則勢不得載來矣從之心泰曰華城 城役始役吉日自浮石幷各處開基令日官推擇今方草記而始役之時當先行告由祭矣饌品依方書所載措備香祝幣不可不定奪故敢此仰達矣從之敎曰香祝則香室藝文館措備下送所重在焉幣則亦令該監措備心泰曰香祝幣措備事旣承批旨而門樓及將臺上樑時當有撰文賁飾之擧故敢此仰達矣敎曰門樓上樑時亦當有上樑文節次預令知悉文衡撰進

<일성록, 정조17년(1793) 12월 18일(정축)>

경제/건설

화성 축성에 공이 있는 자들을 시상하다

강 전(前) 부사(府使) 김처한(金處漢) 등 4인(人)을 **화성(華城) 성역(城役)** 때에 돌을 뜨고 돌을 운반하는 별감동(別監董)으로 차하(差下)하였다.

목 ○ 감동 당상 조심태가 아뢰기를, “성역 가운데 가장 긴급한 것은 돌을 뜨고 돌을 운반하는 일로 설을 쇤 뒤에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력도 있고 부지런하며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서 각자 책임을 지우지 않으면 허다한 석공(石工)과 차부(車夫)들을 검속할 수가 없습니다. 전 부사 김처한, 전 군수 조운상(趙雲祥)·구수한(具壽漢), 본부(本府)의 친군위 좌장(親軍衛左將)인 전 군수 이방운(李邦運)을 우선 돌을 뜨고 돌을 운반하는 별감동으로 차하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召見監董堂上趙心泰于重熙堂以前府使 金處漢等四人差華城城役時浮石運石別監董

목 監董堂上趙心泰啓言城役中最緊最急莫過於浮石運石歲後卽當始之若未得有履歷勤幹之人各自責任則許多石工及車夫輩無以檢束矣前府使 金處漢前郡守 趙雲祥 具壽漢本府親軍衛左將前郡守李邦運爲先浮石運石別監董差下使之擧行從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12월 21일(경진)>

경제/건설

화성 성역에 관련하여 논의하다

강 화성의 성지 및 남문과 북문의 성루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터를 닦을 때의 고유제 헌관은 유수나 감동 당상으로 삼고, 집사(執事)들은 본부의 판관 및 인근 읍의 수령으로 차정하여 설행하고, 돌을 뜨는 역사와 수문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고유제는 도청(都廳)을 헌관으로 삼고 본부의 판관 및 별감동(別監董)을 집사들로 차정하여 설행하고, 향축(香祝)은 각각 헌관이 받들고 가고 축문(祝文)의 첫머리와 말단은 독성산성(禿城山城)을 수축(修築)할 때 설행했던 제사의 예(例)에 따라 하고, 제물은 방서(方書)에 실려 있는 대로 본부에서 조처하여 마련한 다음 회감(會減)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제물을 정결히 마련하고서 향축을 내려보내기를 기다리라고 신칙하였다.

목 ○ 화성 성역의 총리 대신 채제공이 아뢰기를, "화성 성역의 역사를 시작할 각 길일을 지금 계하받았는데, 고유제는 각각 역사를 시작하는 날과 같은 날에 설행할 것입니다. 성지 및 남문과 북문의 성루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터를 닦을 때의 고유제 헌관은 유수나 감동 당상으로 삼고, 집사들은 본부의 판관 및 인근 읍의 수령으로 차정하여 설행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 돌을 뜨는 역사와 수문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고유제의 경우는 다소 차이가 있으니, 도청을 헌관으로 삼고 본부의 판관 및 별감동을 집사들로 차정하여 설행하고, 향축은 각각 헌관이 받들고 가고 축문의 첫머리와 말단은 임자년(1792, 정조16) 7월 독성산성을 수축할 때 설행했던 제사의 예에 따라 하고, 제물 역시 방서에 실려 있는 대로 본부에서 조처하여 마련하라는 뜻으로 거조(擧條)를 내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돌을 뜨는 역사를 시작하는 길일을 이달 7일에 하도록 초기에 대해서 이미 비답을 내렸다. 모레 수향(受香)해야 하니, 제물을 정결히 마련하고서 향축을 내려보내기를 기다리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먼저 본부에 관문을 보내어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華城城址及南北門城樓開基時獻官以留守或監董堂上爲之諸執事以本府判官及隣近邑守令差定設行浮石及水門始役告由祭以都廳爲獻官以本府判官及別監董差諸執事設行香祝各其 獻官賚奉以去祝文頭辭末端依禿城山城修築時設祭例爲之祭物依方書所在自本府措備會減仍飭精備祭物以待香祝下送

목 華城城役總理大臣 蔡濟恭啓言華城城役始役各吉日今將啓下而告由祭各於同日設行矣城址及南北門城樓開基時獻官以留守或監董堂上爲之諸執事本府判官及隣近邑守令差定設行恐合事宜至於浮石及水門始役告由差有間焉以都廳爲獻官以本府判官及別監董差諸執事設行而香祝各其獻官賚奉以去祝文頭辭末端依壬子七月禿城山城修築時設祭例爲之祭物亦依方書所載自本府措備之意出擧條分付何如從之敎以浮石始役吉日以今月初七日爲之事草記已下批再明日當受香祭物精備以待香祝下送事令廟堂爲先關飭本府

<일성록, 정조18년(1794) 1월 4일(임진)>

경제/건설

화성 성역의 길일을 정하다

강 비변사가 화성(華城) 성역(城役)에 대한 길일(吉日)을 여쭈어 정하였다.

목 ○ 본사가 아뢰기를, "화성 성역에 대한 각 길일을 일관(日官)에게 뽑게 하였더니, 성지(城址 성터)를 닦기 시작하는 것은 1월 25일 묘시(卯時)와 2월 13일 묘시가 길하고, 남문

(南門)과 북문(北門)의 성루(城樓)의 역사(役事)를 시작하는 것은 2월 13일 묘시와 16일 진시(辰時)가 길하고, 수문(水門)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2월 25일 묘시와 26일 진시가 길하고, 돌을 뜨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1월 7일과 13일이 길한데, 각각 역사를 시작하는 날에 고유제(告由祭)를 먼저 행합니다. 어느 날에 거행합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성지를 닦기 시작하는 것은 1월 25일에, 문루(門樓)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2월 16일에, 수문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26일에, 돌을 뜨는 역사를 시작하는 것은 1월 7일에 하라." 하였다.

강 備邊司稟定**華城城役**吉日

목 本司啓言**華城城役**各日令日官推擇則城址開基正月二十五日卯時二月十三日卯時爲吉南北城門樓始役二月十三日卯時十六日辰時爲吉水門始役二月二十五日卯時二十六日辰時爲吉浮石始役正月初七日十三日爲吉而各於始役日先行告由祭以何日擧行乎敎以城址開基正月二十五日門樓始役二月十六日水門始役二十六日浮石始役正月初七日爲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1월 4일(임진)>

경제/건설

화성 성역의 목재 문제를 논의하다

강 **화성(華城)**의 문루(門樓)에 쓰이는 괴목(槐木)과 잡목(雜木)을 열읍의 곤수(閫帥)들에게 나누어 지정(卜定)한 데 대해 도백으로 하여금 엄히 조사하고 장계로 보고하게 한 뒤 나에게 물어 처리하고, 이어 양남(兩南)의 도신을 신칙해서 추호라도 민간에 폐를 끼치는 일이 없게 하며, 감동 당상(監董堂上) 조심태(**趙心泰**)를 추고하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화성**의 **성역(城役)** 때 문루에 쓰이는 괴목과 잡목에 대해 감동 당상 조심태가 연석에서 상께 여쭈어 양남 가운데 괴목과 잡목이 생산되는 여러 도에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니 호남의 우수영(右水營)에서 담당 구역의 원근을 따지지도 않은 채 도내의 각 읍과 각 시(寺)에 나누어 지정하고 나무를 베어다가 운반해서 바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수원과 연관된 모든 일에 대해 성상께서는 추호도 민간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셨고 감동 당상이 아뢴 말도 열읍에 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호남의 수사가, 통지한 관문의 내용을 잘못 보고 이렇게 열읍에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을 초래한 것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호남의 수사를 우선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도신에게 분부하여 관문의 내용대로 거행하라고 엄히 신칙하여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연석에서 나에게 물어 지정할 때 나무의 그루 수를 분명히 말하고도 오히려 폐단이 될까 염려하여 얼마나 신칙하였던가. 그런데 호남의 곤수가 이렇게 거행하였으니 매우 놀랍다. 이 곤수가 이런 식이라면 다른 곤수도 알 만하다. 성역에 관한 일마다 되도록 폐단을 없애는 데 힘썼으니 어찌 영송(迎送)하는 데 따르는 폐단을 걱정이나 하였겠는가.
도백으로 하여금 관할하는 곤수들을 엄히 조사하고 장계로 보고하게 한 뒤 나에게 물어 처리하고, 양남의 도신에게도 관문을 보내 신칙하라. 감동 당상만 하더라도 연석에서 내린 칙교(飭敎)를 준수하여 간곡한 당부를 거듭 밝혔다면 어찌 이런 일이 생겼겠는가. 감동 당상을 우선 추고하라." 하였다.

강 命**華城**門樓所用槐雜木分定於列邑之諸閫令道伯嚴査狀聞後稟處仍飭兩南道臣俾無一毫貽弊於民間推監董堂上**趙心泰**

목 備邊司啓言華城城役時門樓所用槐雜木監董堂上趙心泰筵稟卜定於兩南所產諸道而今聞湖南右水營分定於道內各邑各寺無論道里之遠近使之斫取運納云凡屬水原事聖念不欲一毫貽弊於民間該堂所奏亦非列邑卜定則該水使誤看知委之關辭致此列邑繹騷之弊者萬萬駭然請當該水使爲先從重推考分付道臣依關辭擧行之意請嚴飭分付敎以筵稟卜定之時明言其株數而猶慮爲弊申飭何如則該閫擧行之如此極爲駭然此閫若此則他閫可知其在城役事事務從除弊之道何恤迎送乎令道伯嚴査管下諸閫狀聞後稟處兩南道臣處亦爲關飭而雖以監董堂上言之若遵筵飭申明叮托豈有是乎該堂爲先推考

<일성록, 정조18년(1794) 2월 10일(무진)>

경제/건설

화성 문루 건설의 목재 문제를 논의하다

강 화성의 문루(門樓)에 쓸 재목을 실은 배가 정박한 상황을 감동소(監董所)는 초기를 올리고 각 읍으로 무사히 돌아간 뒤 충청 수사는 장계로 보고하며, 이후로는 성역에 관계된 일로 운송할 경우 무사히 돌아온 상황을 각각 해당 도신과 수신이 모두 기록해서 장계로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목 ○ 충청 수사 이윤겸(李潤謙)이 화성의 문루에 쓸 재목을 베어 선적해서 보냈다고 급히 장계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성역이 중요하게 여기는 바를 위해서이기는 하지만 뱃길에 대해서도 온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었다. 지금 재목을 선적했다고 하니 무사히 정박한 상황을 감동소로 하여금 초기를 올리게 하고, 각 읍에 무사히 돌아간 뒤에도 해당 수신이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이 밖에 성역에 관계된 일로 철(鐵), 재목, 잡물(雜物)을 싣고 운송할 경우 무사히 돌아온 상황을 각각 해당 도신과 수신이 모두 기록해서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이러한 내용을 묘당으로 하여금 분부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華城門樓材木裝載船穩泊形止監董所草記穩還各邑後該帥臣狀聞此後事係城役運致者穩還形止各該道帥臣都錄狀聞

목 忠淸水使 李潤謙以華城門樓材木斫取裝發事馳啓敎以城役雖爲所重船路一念憧憧今聞裝載穩泊形止令監董所草記穩還各邑後亦令該帥臣狀聞此外載鐵載木載雜物事係城役運致者穩還形止各各該道帥臣都錄狀聞事令廟堂分付

<일성록, 정조18년(1794) 2월 12일(경오)>

경제/건설

화성 문루의 목재에 대한 장계를 보고 받다

강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가 화성(華城)의 문루(門樓)에 사용할 재목(材木)을 실은 충청 수영(忠淸水營)의 선박이 모두 도착하였다고 급히 장계한 데 대해,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나에게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목 ○ 장계에, "방금 별감동(別監董) 김처한(金處漢)이 급히 보고한 것을 보니, '목재를 실은 선박 30척이 지난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도착하여 이달 3일 조수 때에 모두 도착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수많은 선박이 아무런 폐단 없이 평온히 정박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근래에 선박으로 운송하는 일 때문에 늘 마음을 놓지 못하였는데, 목재를 싣고 수송하는 선박 30척이 서로 도와주기라도 한 것처럼 순조롭게 항해하여 평온히 정박했다고 하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장계로 보고하라.'라는

내용으로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강 水原留守 趙心泰以華城門樓材木忠淸水營所載船畢到馳啓命此後形止陸續登聞

목 狀啓以爲卽接別監董 金處漢馳報以爲載木船三十隻去二月初九日爲始次次來泊今月初三日汐水畢到泊云許多船隻之無弊穩泊誠極萬幸敎曰近以船運一念憧憧今聞三十隻載輸之利涉穩泊若有相助然何等喜幸此後形止陸續狀聞事回諭

<일성록, 정조18년(1794) 3월 4일(신묘)>

경제/건설

화성 문루의 목재 문제를 논의하다

강 화성(華城)의 문루에 사용할 괴목(槐木)과 잡목(雜木)은 전라 수영(全羅水營)의 병선(兵船)에 실어 운송하라고 명하였다.

목 ○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이 아뢰기를, "방금 전라 감사 이서구(李書九)가 보고한 것을 보니, '화성의 문루에 사용할 괴목과 잡목을 세선(稅船)에 얹어 실으려고 하는데, 크기가 큰 목재를 짐이 무거운 세선에 얹어 실을 경우에는 운송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선박을 운항하는 데에도 방해가 될 것입니다. 수영에 소속된 병선은 미연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처럼 막중한 일을 할 때에 잠시 사용하는 것은 임시변통하는 정사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마음대로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곡을 선적하는 것과 목재를 운송하는 것은 모두 소중하고 병선을 사용한 전례도 많으니 보고한 대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되, 튼튼한 선박을 고르고 성실한 사격(沙格)을 정하며, 집물(什物)과 여러 도구를 수영에서 마련해 주고 왕복할 때의 양식 밑천을 넉넉히 제급(題給)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착취하는 폐단이나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는 우려가 없게 하라고 각별히 도신과 좌수사(左水使)·우수사(右水使)를 엄히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華城門樓所用槐雜木以全羅水營兵船載運

목 領議政 洪樂性啓言卽見全羅監司 李書九所報則以華城門樓所用槐雜木將於稅船添載而以若體大之木物添付卜重之稅船非但不便於運載亦將有妨於行船水營所屬兵船雖是陰雨之備當此莫重之役一時使用不害爲權宜之政而有難擅便爲辭矣裝稅運木俱有所重兵船使用亦多前例依所報許施而船隻之擇以完固沙格之定以勤幹什物諸具之自營措備往回糧資之優數題給俾無一毫誅求之弊一分疏虞之歎事請各別嚴飭於道臣及左右水使處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3월 5일(임진)>

경제/건설

영남의 목재 운송에 대해 수원유수에게 자문하다

강 영남의 목재를 실어 운송하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를 수원유수에게 물으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방금 경상 감사 조진택(趙鎭宅)이 보고한 것을 보니, '화성(華城)의 문루(門樓)에 투입될 목재를 실어 운송하는 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 곳 조창(漕倉)의 각 선박에 추가로 실은 미가 250섬이고, 한 그루의 목재가 50섬의 무게에 해당하니, 원래 선적(船積)하는 곡물까지 아울러 계산하면 선박 한 척에 싣는 것이 거의 1300섬이 넘어 실로 운송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습니다. 호조와 균역청에서 환무(換貿)한 상진미(常賑米)는 원래 상납해야 하는 세미(稅米)와는 차이가 있으니, 3000섬을 덜어 이곳에 두었다가 내년 봄이 되거든 추가로 실어 올려보내는 것이 둘 다 편리하고 우려가 없는 방법이

되겠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호남도 병선(兵船)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영남도 이 전례를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아문(衙門)에 상납하는 것은 경상비용(經常費用)과 관계되니 내년까지 지체하며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바닷가의 영(營), 읍(邑), 진(鎭) 중에서 완고(完固)한 병선을 골라 목재를 운송하게 하고, 사격(沙格)을 골라 정하는 일과 양식을 넉넉히 지급하는 일은 호남의 예에 따라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영남의 바닷길이 호남에 비해서 더욱 멀고, 괴목(槐木)과 잡목(雜木)은 성질이 단단해서 이를 엮어 배를 만들면 뜨지도 않는다. 더구나 연전에 해서와 호남의 병선과 방선(防船)을 사용할 때 영읍(營邑)이 군졸과 백성에게 끼친 폐단이 한둘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징계하고 단속하기는 했지만 모두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 해 보는 영남에서 순조롭게 운항하여 정박하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그리고 근래 해당 도신이 거행한 것을 보면, 명령이 여러 읍에 먹혀들지 않았다. 봉진한 인삼(人蔘)을 살피지 못한 것이 일종의 그러한 사례라고 하겠다. 문루에 사용할 것이 소중하기는 하지만, 군졸과 백성의 폐해와 노고를 생각하면 시행하도록 허락하기가 어렵다. 즉시 유수에게 물어, 영남의 목재가 아니더라도 문루를 세울 수 있으면 실어 오지 말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미리 올해부터 선구를 수선하였다가 내년 봄이 되거든 운반하도록 해도 된다. 그리 알고 거행하라.”
하였다.

綱 命嶺南材木載運便否問于**水原留守**

目 備局啓言卽見慶尙監司 趙鎭宅所報則**華城**門樓所入木物載運係是時急之事而三漕倉各般添載米爲二百五十石一株木爲五十石之重則竝計元裝載一般所載恰過一千三百石實有難運之患戶均廳中換貿常賑米與元上納有異除置三千石待明年添載上送可爲兩全無虞爲辭矣湖南旣許兵舡使用則嶺南亦用此例爲宜且兩衙門上納有關經費不可遲待明年沿海營邑鎭中擇完固兵舡使之運木而沙格之擇定糧資之優給請依湖南例擧行敎以嶺南海程比湖南尤遠槐雜木性堅編舟則不浮況於年前海湖兵防舡使用時營邑之貽弊軍民其端不一今番則雖懲戢頗皆小心初當之嶺南安保其利泊穩旋乎且觀近來該道臣擧行威令不及列邑封蔘之不察卽其一事也門樓所用雖有所重言念軍民弊勞有難許施卽問于留守雖非嶺南木物如可爲之勿爲載來不然預自今年修葺舡具待明春運致亦可以此知悉擧行
<일성록, 정조18년(1794) 3월 8일(을미)>

경제/건설

영남의 재목 사용과 관련한 수원유수의 자문한 결과를 알리다

강 영남의 괴목(槐木)과 잡목(雜木)을 배에 실어서 바치지 말라고 삼현령(三懸鈴)으로 공문을 보내 알리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화성**의 문루(門樓)에 사용할 괴목과 잡목을 영남에 분정(分定)한 것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수원유수**에게 관문(關文)을 보내 물었습니다. **수원유수** 조심태가 보고하기를, ‘영남에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것은 방해되는 일이 많으니, 이 재목이 없더라도 호남에서 이미 베어 병선(兵船)에 싣도록 허락한 것으로도 가장 긴요한 층루(層樓)와 장대(將臺)에 충분히 안배하여 쓸 수가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애당초 분정한 수량이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호남에서 베어다가 운반한 것으로도 운용할 수가 있다면, 영남에서는 실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 정지하라고 도신과 통제사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여,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삼현령으로 공문을 보내 알리라.”하였다.

綱 命嶺南槐雜木勿爲載納事三懸鈴行會

目 備邊司啓言**華城**門樓所用槐雜木雖非嶺南分定足可爲之與否關問于留守處矣**水原留守 趙心泰**所報以爲嶺南舡運旣多掣礙則雖無此材以湖南所已斫許載兵舡者足可排用於最緊層樓及將臺云矣當初分定數旣不多湖南斫運可以運用則嶺南不必載來卽爲停止之意請分付道臣及統制使允之敎以三懸鈴行會

<일성록, 정조18년(1794) 3월 12일(기해)>

경제/건설

북한산성의 성역을 화성 성역이 끝난 이후에 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강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한림 소시(翰林召試)를 행하고, 감춘추관사 김이소(金履素), 대제학 홍양호(洪良浩), 홍문관 제학 정창순(鄭昌順), 지춘추관사 홍수보(洪秀輔)·권엄(權), 동지춘추관사 임시철(林蓍喆)·정대용(鄭大容), 대독관 윤제동(尹悌東)·이익모(李翊模)가 입시하였다. 대신과 비변사 당상 및 하직하는 수령을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수어사 이문원(李文源)에게 이르기를, "경의 아들이 이번에 급제하여, 경의 선친을 생각하니 더욱 추모하는 마음이 깊다. 어악(御樂)으로 전도(前導)하도록 한 것도 기쁨을 나타내려는 조치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어제 한림 권점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또 대교가 될 것이니, 관각(館閣)을 일시에 둘 다 맡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겠는가. 경이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지금 한림 소시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라."

하니, 이문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신의 집안이 받은 은혜와 영광은 드물게 있는 일입니다. 하루 안에 관각을 겸대(兼帶)한다면,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또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성상의 하교는 실로 후일 온전한 인재로 만들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수어사가 아뢴 말은 가득 차면 넘친다는 사실을 경계하고 복을 아껴서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니, 참으로 적절하다." 하였다.

이어 그의 아들 이존수(李存秀)는 한림 소시에 응시하지 말고 전(殿)에 올라 주서의 직임을 살피게 하라고 명하였다. 어영대장 이경무(李敬懋)가 아뢰기를,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성역(城役)**을 올해 안으로 완축(完築)하는 일에 대해서는 연석에서 여쭈어 정탈(定奪)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성(華城)**의 성역과 서로 겹쳐 장수(匠手)를 분배할 수가 없으니, 우선 **화성**의 성역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총융사도 소견을 진달하라." 하니, 총융사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신이 얼마 전에 공무 때문에 가서 보니, 성가퀴 중에 무너진 곳이 많아서 지금 개수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합니다. 애당초 5년에 1차례씩 개수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았으니, 올해를 넘기면 반드시 전에 비해서 배로 무너질 상황입니다. 공사할 곳이 크지가 않고 장수도 많이 투입할 일이 없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묘당에서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

강 御熙政堂 行翰林召試 監事 金履素 大提學 洪良浩 弘文提學 鄭昌順 知春秋 洪秀輔 權▣同春秋 林蓍喆 鄭大容 對讀官 尹悌東 李翊模 召見大臣備堂及下直守令

목 (…) 予謂 守禦使 李文源曰卿子今番唱第念及先卿尤庸曠感御樂導前亦出於賁餘之擧而昨日旣參翰圈今日又當爲待敎矣館閣之一時竝叨得無太過乎卿若欲不爲則方令勿赴翰試矣文源曰今番臣家恩榮已是罕有之事若於一日之內兼叨館閣則戒懼之心當復如何今此聖敎實出玉成不勝感祝矣予曰守使之奏可謂戒滿而惜福誠得之矣仍命其子李存秀勿赴翰試使之陞殿仍察注書 御將 李敬懋曰北漢**城役**今年內完築事已有筵稟定奪而**華城城役**相値匠手無以分排請姑待**華城**畢役後爲之予曰

總使亦陳所見總戎使 鄭民始曰臣於頃日因公往見則城堞多有頹圮處趁今修改恐不可已當初旣以五年一次修改爲定式矣若過今年則頹圮之倍前勢所必然役處旣非浩大匠手亦無多入之擧矣予曰令廟堂稟處 (…)
<일성록, 정조18년(1794) 3월 12일(기해)>

경제/건설

북한산성의 성역을 화성 성역이 끝난 이후에 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강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성역(城役)**을 연기하여 행하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에 대해 묘당에서 수원 유수에게 물어본 뒤에 헤아려서 나에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어영대장 이경무(李敬懋), 훈련대장 서유대(徐有大), 금위대장 이한풍(李漢豐) 등이 아뢰기를, "북한산성의 성역 중 계축년(1793, 정조17) 봄에 미처 다 쌓지 못했던 부분을 올해 안에 완축하는 일에 대해 그 당시 연석에서 여쭈어 정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성(華城)**의 성역과 서로 겹치기 때문에 서로 방해가 되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각종 장수(匠手)도 분배하여 부역(赴役)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산성의 성역은 우선 **화성**의 성역을 완료하고 난 뒤에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묘당에서 수원 유수에게 물어본 뒤에 헤아려서 나에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이경무가 아뢰기를, "홍화문(弘化門) 밖의, 백관(百官)이 공경히 맞이하는 곳에 돌을 깔고 사초(莎草)로 메우라고 명하셨으나, 공사할 곳이 매우 큽니다. 전에 이러한 공사는 세 영문(營門)에서 으레 모두 힘을 합쳐 거행하였으니, 이번에도 이대로 거행합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어영청의 상번(上番)하는 향군(鄕軍)을 1개 초(哨)마다 헤아려서 감하고 난 뒤에 동영(東營)과 집춘영(集春營)에 입직하는 군병의 명수(名數)에 대해서는 미처 연석에서 여쭙지 못했기 때문에 감히 멋대로 감하지를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초에서 부족한 수를 뽑아 번(番)을 보충해 왔으나, 군병의 형편으로 볼 때에 방해되는 면도 있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알맞게 헤아려 행하라." 하였다.

강 命北漢**城役**退行便否令廟堂問于**華城留守**參量稟處

목 御營大將 李敬懋 訓鍊大將 徐有大 禁衛大將 李漢豊等啓言北漢**城役**癸丑春未及畢築處今年內完築事伊時至有筵稟定奪而目下**華城城役**相値不但事勢之互相掣礙各樣匠手將無以分排赴役請北漢**城役**姑待**華城**完役後擧行敎以令廟堂問于**華城留守**參量稟處敬懋曰弘化門外百官祗迎處排石補莎事命下而役處浩大在前此等之役三營例皆合力擧行今亦依此爲之乎從之又啓言御營上番鄕軍每哨量減以後東營集春營入直名數未經筵稟不敢擅減竝哨補番而軍兵事勢亦涉掣礙何以爲之乎敎以量宜爲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3월 12일(기해)>

경제/건설

화성 문루에 쓰이는 목재 문제를 논의하다

강 전 전라 수사 이동식(李東植)을 파직하고, 이어 비변사 낭청을 시켜 좌의정에게 전유(傳諭)하도록 하였다.

목 ○ 전라 감사 이서구(李書九)의 장계에, "**화성(華城)**의 문루(門樓)에 쓸 재목을 여러 섬과 연해(沿海)의 봉산(封山)에서 베어 오도록 했던 것은 선박으로 운반하기에 다소 편리하기 때문이었는데, 수영의 아전과 장교가 이곳저곳을 거쳐 산골짜기의 고을까지 들어갔다

는 말이 본영(本營)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좌수영과 우수영에 관문(關文)을 보내 말을 잘 만들어 신칙하던 중에 엄히 조사하여 장계로 보고하라는 명을 삼가 받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좌수사 조명집(曺命楫)과 우수사 정언형(鄭彦衡) 등에게 관문을 보내 묻고, 전 우수사 이동식이 재임할 때의 병비(兵裨)를 잡아다가 조사하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좌수영에는 20그루가 분정(分定)되었으나, 원래 아전과 장교가 육지의 고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베어 온 일이 없었습니다. 우수영에는 30그루가 분정되었는데, 전 수사 이동식이 재임할 때에 다섯 군데로 길을 나누어 사람을 보내고 관문을 작성해 주되, 다섯 군데의 길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분배해 주기만 하고 중간에 경과할 읍진(邑鎭)의 이름을 써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전과 장교들이 재목을 널리 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거쳐 산골짜기의 고을까지 들어가게 되어 과연 능주(綾州)와 장성(長城) 등에서 몇 그루를 골라잡기도 하였으나, 곧바로 재목을 끌어다 운반하기에는 폐단이 있다는 이유로 벌목하지는 않았습니다. 길을 나누어 사람을 보낸 것은 재목을 널리 구하려는 뜻에서 나온 것일 뿐이고, 아전과 장교들이 우회하여 산골짜기 고을까지 간 것은 당시 우수사가 지시한 일이 아니지만, 애당초 관문을 보낼 때 고을 이름을 써넣지 않은 데다가 더욱이 장교를 내보낼 때 엄히 신칙하지 않아 제 맘대로 두루 돌아다니게 하였으니, 소홀히 한 잘못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아전과 장교는 본영에서 엄히 다스리겠습니다. 사실을 낱낱이 거론하여 보고하니, 묘당에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전 수사 이동식이 백성에게 폐단을 끼칠까 깊이 우려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아전과 장교를 다수 풀어놓아 제 마음대로 행동하게 내버려 두어 감히 관계도 없는 산골짜기의 고을에 폐해를 끼치게 한 행위는 대단히 놀랍다. 더구나 이른바 연해 고을에 분정한 곳이 포구(浦口)에서 2, 3십 리나 벗어나는 거리가 되기도 한다고 하니 더욱 놀랍다. 그의 죄상을 어찌 묘당이 나에게 물어 처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선 파직하고, 이어 의금부에서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게 하여 다른 도를 징계하도록 하라.

영남의 조선(漕船)에 더 실었다는 말도 어찌 말이 되겠는가. 묘당은 아직까지도 지난번에 내린 전교를 분부하지 않은 것인가? 근래 민사(民事)와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는 묘당의 원대한 계획을 듣기가 어렵다. 빈대(賓對)는 번번이 특교(特敎)를 내려야만 거행하고 비변사의 좌기(坐起)는 여전히 드문드문 여니, 이와 같아서야 어떻게 수고해야 할 때와 편안히 쉬어야 할 때가 뒤바뀌지 않겠는가. 이것이 좌의정에게 유감스러운 점이다. 또 완전하기를 요구하는 이번의 하교 때문에 의금부에 서명(胥命)하여 다시 번거롭게 수응하도록 한다면, 어찌 더욱 유감스러운 일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뜻으로 비변사 낭청이 좌의정에게 전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강 罷全羅前水使 李東植職仍令備郎傳諭于左相

목 全羅監司 李書九狀啓以爲**華城**門樓材木之斫取於諸島及沿海封山蓋爲其船運稍便而水營吏校迤入山邑之說及聞於臣營故發關左右水營措辭申飭際伏奉嚴査狀聞之命卽爲關問於左水使 曺命楫右水使 鄭彦衡等處及前右水使 李東植在任時兵神捉致査問則左水營二十株分定元無吏校遍行陸邑之事右水營三十株分定前水使 李東植在任時分五路發送成給關文而只以從某至某分排五路中間所經邑鎭不爲塡名吏校輩爲其廣求或迤入山郡果於綾州 長城等處擇執數株而旋以曳運之有弊不爲斫分路發送只出廣求之意山邑迂到雖非指揮之事當初發關不塡邑名出送將校又未嚴飭以致其任意周行未免疏忽當該吏校自臣營嚴治枚擧事實陳聞請令廟堂稟處敎以前水使 李東植之不體軫念民弊之意多縱吏校任其行止敢有不干山郡貽弊之擧者萬萬駭然況所謂沿邑分定處出浦道里遠或爲二三十里云者尤爲駭然其罪狀何待廟堂之稟處乎爲先罷職仍令該府拿問處之以礪他道嶺南漕船添載之

說亦豈成說乎廟堂至今不爲分付向下傳敎乎近來事關民事罕聞訏謨賓對輒須特敎籌坐依舊間闊如是而安得不勞佚倒置乎此所以慨然於左相者又或因此責成之敎胥命金吾更煩酬應尤豈非慨然處乎以此意令備郎傳于左相
<일성록, 정조18년(1794) 3월 17일(갑진)>

경제/건설

북한산성 공사에 대해 수원유수에게 자문한 결과를 보고하다

강 북한산성(北漢山城)의 공사는 약간 시일을 늦추어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근래에 삼영(三營)의 장신(將臣)이 아뢴 내용으로 인하여, 북한산성의 공사는 **화성(華城)**의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거행하는 문제에 대해 묘당에서 **수원유수**에게 물어본 뒤에 하나로 결론을 지어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교하신 대로 **수원유수**에게 관문(關文)을 보내 물었습니다.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가 보고한 것을 보니, '북한산성과 **화성**은 모두 관방(關防)의 중요한 지역이나, **화성**은 이제 공사를 시작하여 한창 진행 중이라서 석공(石工)을 변통할 길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화성**의 공사는 이제 축성(築城)을 시작하여 공장(工匠)을 변통할 길이 없고, 북한산성은 성첩(城堞)을 보수하는 일이지만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니, 일시에 거행하여 서로 방해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북한산성의 공사는 약간 시일을 늦추어 거행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綱 命北漢**城役**差侍來頭擧行

目 左議政 金履素啓言頃因三營將臣所啓北漢**城役**姑待**華城**完役後擧行事有令廟堂問于**華城留守**指一稟處之命故依下敎關問于留守處矣卽見**水原留守** **趙心泰**所報則以爲北漢 **華城**俱係關防重地而顧今始役方張石工之推移恐無其路云矣**華城**之役今已始築而工匠之推移旣無其路北漢則乃是城堞修補之事而姑未始役不可一時幷行以致相妨北漢**城役**差待來頭擧行之意請分付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3월 20일(정미)>

경제/건설

북한산성 공사와 관련해 수원유수의 보장(報狀)에 대해 언급하다

강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세 영문(營門)이 나누어 받은 북한산성(北漢山城)의 공사할 곳은 남은 재물과 인력을 총융청으로 이송하여 총융청에서 편리한 대로 보수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총융사 정민시가 아뢰기를, "며칠 전 빈대(賓對)에서 대신이 북한산성의 공사를 우선 중지하는 일에 대해 복계(覆啓)하여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원유수**의 보장(報狀) 중에서도 석수(石手)를 나누어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산성의 공사에는 석수를 많이 쓸 곳이 별달리 없습니다. 게다가 전 병조 판서 김문순(金文淳)이 5년으로 나누어 개축(改築)하는 것은 너무 불성실하므로 1년 안에 모두 축성하겠다고 삼가 진달하였으나, 마침 계절이 늦어진 탓에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벌써 시작해 놓은 공사를 **화성(華城)**의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그동안에 무너지는 곳은 더욱 무너지게 되고 재물과 인력은 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 군문(軍門)에서도 **화성**의 역소(役所)에 책응(策應)하여 장교들을 분배하는 것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니, 세 군문이 수축(修築)할 재물과 인력을 총융청으로 이송해 준다면 본청에서 편리한 대로 보수하여 자연히 일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뜻을 세 군문의 장신(將臣)과 의논하니 장신들도 모두 편리하고

좋다고 하였습니다. 세 군문이 공사하도록 나누어 받은 곳은, 남은 5분의 4의 재물과 인력을 마련하여 본청으로 수송해서 본청에서 즉시 수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綱 命訓禁御三營分受北漢**城役**處所餘物力移送總廳使之從便修補

目 總戎使 鄭民始啓言日前賓筵大臣以北漢**城役**姑置之事覆啓允下矣**水原留守**報狀中以石手勢難分用爲言而北漢**城役**別無多用石手之處且前兵判 金文淳以分五年改築太不誠實一年內畫築之意仰達而適因節晩未及擧行旣始之役若待**華城**畢役則其間頹圮處益致頹圮物力當倍入矣三軍門旣以策應**華城役**所將校輩分排爲難云若以修築物力移送則當自本廳從便修補自可竣事以此意往復于三軍門將臣則諸將臣皆以爲便好云三軍門分受役處所餘五分四物力磨鍊輸送以爲趁卽修築之地何如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3월 24일(신해)>

경제/건설

화성 문루의 사용될 목재 문제를 논의하다

강 충청 수사(忠淸水使) 이윤겸(李潤謙)은 재목의 운반을 마치거든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여 엄히 감처(勘處)하고 안흥 첨사(安興僉使) 왕한좌(王漢佐)는 도신을 시켜 엄하게 곤장을 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충청 감사 이형원(李亨元)의 장계에, "이번에 **화성(華城)**의 문루(門樓)에 사용할 재목을 선박으로 운반하는 일로 안면도(安眠島)의 백성에게 폐해를 끼친 경위에 대해 삼가 연석의 하교에 따라 믿을 만한 비장(裨將)을 나누어 보내 섬 안 백성의 사정을 세밀히 탐문하도록 하고 영진(營鎭)의 하속(下屬)을 잡아다가 곡절을 상세히 조사해 보니, '올해 1월 10일 이후에 수사가 별감동(別監董) 및 차사원(差使員)인 안흥 첨사와 함께 섬으로 들어가서 16일을 머물렀는데, 수사는 음식물을 비롯하여 필요한 물품을 스스로 마련해서 왔고, 수사가 데리고 온 수영의 하례(下隷)에게는 일일이 값을 지급하였으며, 별감동과 차사원에 대한 접대는 서산(瑞山)과 태안(泰安) 두 읍에서 돌아가며 거행하였고, 별감동과 차사원이 데리고 온 하속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일 등은 각 산지기(山直)에게 책임지고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차사원의 하속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폐해를 끼쳤습니다. 수사가 수영으로 돌아온 뒤에 섬 백성이 원통해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차사원이 데리고 온 하속 중에서 긴요하지 않은 자들을 도로 쫓아 보냈고, 그 이외에는 별달리 폐단이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번 차사원의 행차는 일시적인 임무가 아니라 여러 달 동안 섬 안에서 왕래하며 머물러야 하는 만큼 그의 도리로 볼 때에는 자신이 데리고 갈 하속을 줄이고 유념하여 살펴서 섬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행할 하속을 많이 데려갔고 그들을 단속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별감동과 차사원을 접대한 태안과 서산의 색리(色吏)들은 쌀만 가지고 와서 여러 달 동안 머무르며 일행에게 책응(策應)하게 하였으니, 온통 섬 백성만 착취당하는 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무리 어리석다고는 하지만, 어찌 감히 조정에서 전후로 신칙했던 훌륭한 뜻을 생각하지 않고 전례라는 핑계로 이처럼 방심하여 섬 백성에게 폐해를 끼쳐 원통함을 호소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하고 심지어 상에게 보고되는 일이 있게 하는 것입니까. 매우 통분스러운 일이므로, 안흥 첨사 왕한좌를 우선 파출(罷黜)하였으니, 그의 죄상을 담당 관사에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해 주소서. 수사 이윤겸은 직접 섬으로 들어갔으므로 산지기들이 책임지고 접대하는 폐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례로 여

기고서는 즉시 금지시키지 않아 이처럼 폐해를 끼치게 만들었으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의 죄상을 묘당에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해당 하속 등은 본영에 잡아다가 각별히 엄하게 형추(刑推)한 뒤에 경중을 나누어 조율(照律)하여 감처할 계획입니다. 이들을 감독할 위치에 있는 신도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으니, 참으로 대단히 황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해당 수사의 죄상은 묘당에서 초기로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 수사의 죄를 어찌 변장(邊將)에게 씌울 것인가. 해당 첨사는 파직하지 말고, 도신이 잡아다가 엄하게 곤장을 쳐서 징계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비변사가 아뢰기를, "재목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폐해를 끼칠까 염려하여 성상께서 밤낮으로 잊지 못하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엄히 신칙하였습니까. 그렇다면 이를 봉행하는 위치에 있는 자로서는 누구인들 감히 성상의 지극한 뜻을 알아채고서 백성에게 끼치는 폐해를 없애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해당 수사 이윤겸이 처음에는 진장(鎭將)을 단속하지 못하여 진장이 많은 하례들을 데리고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또 흐리멍덩하여 금지하고 살피지 못해서 읍이 여러 달 동안 접대해야 할 것을 산지기에게 책임지도록 하고 섬 백성에게 착취당하는 폐해를 입게 하였으니, 대단히 통분합니다. 운반을 마치거든 의금부에서 잡아다가 신문하여 엄히 감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命忠淸水使 李潤謙待材木畢運拿問嚴勘安興僉使 王漢佐令道臣從重決棍

목 該監司 李亨元狀啓以爲今此**華城**門樓材木船運事貽弊島民之由謹依筵敎分遣可信耳目細探島中民情捉致營鎭下屬詳査委折則今正月旬後水使與別監董及差員安興僉使同爲入島留十六日而水使支供自備而來所帶營隷隨名給價而別監董及差員支供瑞泰兩邑輪回擧行至於所率下屬供饋等節使各其山直擔當責出而差員下屬數多之故貽弊不少水使還營後知島民之稱冤差員所帶不緊名色已爲還逐而其外別無爲弊之端云蓋此差員之行非比一時之役閱月島中往來留連則在渠道理簡其所率惕念看檢無或貽弊而濫其隨率不能檢飭泰安 瑞山支供色吏輩只以米斗持來屢朔留連策應一行則誅求之弊專歸於島民渠雖愚迷焉敢不仰念朝家前後飭敎德意而謂以前例若是放心以致島民之貽弊呼冤至及於登聞者事極痛駭故安興僉使 王漢佐爲先罷黜其罪狀令攸司稟處水使 李潤謙則躬自入島旣知山直輩責供之弊視以前例不卽禁戢致此貽害之弊者誠爲可駭其罪狀令廟堂稟處當該下屬等捉致臣營各別嚴刑後分輕重照律勘處計料而臣旣在董率之地亦有不察之責誠不勝悚惶萬萬敎曰該水使罪狀令廟堂草記稟處水使之罪何責邊將該僉使勿罷令道臣拿致從重決棍懲礪分付○備局啓言運材之際或慮一毫貽害聖念夙宵憧憧何等申嚴則其在奉行之地孰敢不仰體至意俾除民弊而該水使 李潤謙初旣不能操束鎭將任他帶隷之多率終又矇不禁察以致邑供之閱月支饋責出於山直誅求害歸於島民者萬萬痛駭請待畢運令該府拿問嚴勘允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4월 23일(기묘)>

경제/건설

화성 문루의 사용될 목재 문제를 논의하다

강 충청 수사(忠淸水使) 이윤겸(李潤謙)이 **화성(華城)**의 문루(門樓)에 사용할 재목을 모두 선적하여 출발시켰다고 급히 장계한 데 대해, 물에 잠긴 2그루를 건져 내는 일을 즉시 중지하라고 명하였다.

목 ○ 장계에, "**화성**의 문루에 사용할 재목 중 아직 운반하지 못한 말단(末端) 111토막을

이달 19일에 병선(兵船)·방선(防船) 6척과 사선(私船) 3척에 모두 선적하여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마량진(馬梁鎭)에서 치패(致敗)된 방선에 선적하였다가 잃어버린 재목 중 원주(元株) 1그루와 말단 1토막을 아직도 찾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연이어 연변(沿邊) 각처에 관문을 보내고 또 비장과 장교를 신칙하여 보내 기어코 찾아서 건져 낼 계획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모두 선적하여 출발시켰다고 하니 다행이다. 어찌 물에 잠긴 2그루를 미처 찾아서 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연해(沿海)의 백성과 고을에 폐해를 끼칠 수 있겠는가. 건져 내는 일을 즉시 중지하라고 묘당에서 삼현령(三懸鈴)으로 **수원 유수** 및 두 도의 도신과 수신(守臣)에게 통지하게 하라." 하였다.

강 忠淸水使 李潤謙以**華城**樓材畢裝發馳啓命二株浮沈卽爲撤拯

목 狀啓以爲**華城**門樓材木未運末端一百十一土莫今月十九日兵防船六隻私船三隻畢裝發而馬梁鎭致敗防船所失材木中元材一株末端一土莫尙未推得誠爲惶悶連爲發關於沿邊各處又爲飭送裨校期於搜拯計料敎曰聞旣畢裝發可幸豈可以二株浮沈之未及搜拯以貽沿海民邑之弊乎卽爲撤拯事令廟堂三懸鈴知委留守及兩道道守臣

<일성록, 정조18년(1794) 4월 24일(경진)>

경제/건설

화성 문루의 사용될 목재 문제를 논의하다

강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을 하는 곳으로 재목을 수송할 때 나무를 함부로 베는 폐단에 대해 강원 감사를 신칙하였다.

목 ○ 강원 감사 심진현(沈晉賢)의 장계에, "비변사의 관문(關文)에 따라 '**화성**의 층루(層樓)와 문루(門樓) 2곳, 초루(譙樓) 10곳, 장대(將臺) 1곳에 들어갈 체목(體木)으로 쓸 부등(不等) 1115그루와 대연(大椽) 2050그루, 누대(樓臺)에 사용하기 위해 예비 체목으로 쓸 부등 500그루와 대연 1000그루 등, 도합 부등 1615그루와 대연 3050그루를 공적으로 금양(禁養)하거나 사적으로 금양하는 것을 막론하고 모두 벌목 감관(伐木監官)이 지목해서 표시한 그루 수대로 벌목하도록 허락하라.' 라는 내용으로 목재가 생산되는 고을인 금성(金城), 양구(楊口), 낭천(狼川) 등 고을에 관문을 보내 통지하였습니다. 낭천 현감 이동실(李東實)의 첩정(牒呈)에, '금성과 양구 등의 고을에서 벌목한 목재는 산골짜기의 물이 얕고 험해서 뗏목을 만들어 운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낱낱이 물에 떠내려 보내도록 한 뒤에 본현(本縣)의 방현포(芳峴浦)에 도착하였을 때 본현에서 벌목한 목재까지 함께 선적(船積)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본현에서 벌목한 것은 체목이 30그루이고, 금성에서 벌목한 것은 체목이 16그루, 대연목(大椽木)이 420그루이며, 양구에서 벌목한 것은 대연목이 26그루로, 도합 492그루입니다. 이를 6벌(筏) 반으로 나누어 만들어서 사공(沙工) 김대성(金大成) 등에게 주어, 4벌 반은 이달 18일에 발송하였고, 2벌은 이달 19일에 발송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아직 물에 떠내려 보내지 않은 목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연이어 신칙하여 계속 선적하여 발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 '소중한 분을 위해서 이처럼 벌목하도록 허락하였으나, 이를 빙자하여 함부로 벌목해서 산기슭이 민둥민둥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도백이 엄히 살필 일이다. 다만 내가 잊지 못하고 걱정하는 것은 포구에 나와 부역하는 백성이 농사에 방해받게 되는 점이다. 경이 유의해서 엄히 신칙하여 밤낮으로 애쓰는 나의 생각에 부응하도록 하라.' 라는 내용으로 회유하라." 하였다.

강 飭關東伯 **華城役**處材木輸運時濫斫之弊

목 江原監司 沈晉賢狀啓以爲依備邊司關**華城**層門樓二處譙樓十處將臺一處所入體木次不等一千一百十五株大椽二千五十株樓臺預備體木次不等五百株大椽一千株都合不等一千六百十五株大椽三千五十株毋論公私禁養處一從伐木監官執標株數許令斫伐之意發關知委於木產邑金城 楊口 狼川等邑矣狼川縣監 李東實牒呈內金城 楊口等邑所斫木物以峽水之淺險不得作筏箇箇流下到本縣芳峴浦幷與本縣所斫木物同爲裝發本縣所斫體木三十株金城所斫體木十六株大椽木四百二十株楊口所斫大椽木二十六株合四百九十二株分作六筏半沙工金大成等領授四筏半則今月十八日發送二筏則同月十九日發送云未流下木物今方連加董飭以爲陸續裝發之地敎以雖爲所重有此許斫若或憑藉濫斫山麓之濯濯道伯在所嚴察而所耿耿者出浦役民或致妨農卿其着意嚴飭以副宵旰之思事回諭 <일성록, 정조18년(1794) 4월 26일(임오)>

경제/건설

화성 문루의 사용될 목재 문제를 논의하다

강 전라 좌수사와 전라 우수사는 모두 승진시켜 서용(敍用)하고 재목을 선박으로 운반할 때 가장 수고한 영교(營校)는 상으로 한 자급(資級)을 올려 주고 선박의 군졸(軍卒)과 교리(校吏)는 해서(海西)의 예에 따라 거행하되 충청 수영(忠淸水營)이 선박으로 운반할 때의 교리에게도 함께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수원 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의 장계에, "충청 수영에서 **화성(華城)**의 문루(門樓)에 사용할 재목을 실어 보낸 선박이 도착하여 정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에 계속 급히 장계하였습니다. 치목소(治木所)의 별감동(別監董) 최명건(崔命健)의 첩정(牒呈)을 받아보니, '안면도(安眠島)의 재목을 실은 선박이 이제 정박을 마쳤습니다. 전후로 운반한 재목이 원주(元株)는 1000개이고 말단(末端)은 421개입니다. 전라도의 좌수영과 우수영에 분정(分定)했던 괴목(槐木)과 잡목(雜木)을 실은 방선(防船)과 병선(兵船) 6척이 조(組)를 이루어 모두 도착하였는데, 좌수영은 20그루를 바쳤고 우수영은 30그루를 바쳤으며, 원래 분정한 수량보다 2그루를 더 바쳤습니다.' 하였습니다. 수많은 재목이 일제히 무사하게 정박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호남의 좌수영과 우수영에 분정한 재목이 일제히 순조롭게 정박하였다고 하니 매우 다행이다. 두 수신(帥臣)의 공무를 봉행한 정성이 참으로 가상하니, 모두 승진시켜 서용하라. 가장 수고한 영교에 대해서는 이름을 물어 상으로 한 자급을 올려 주라. 병선과 방선의 군졸과 교리에게는 해서의 예에 따라 거행하라고 묘당에서 수원부와 좌수영·우수영에 공문을 보내 알리게 하라. 호서에서 무사히 운송을 마친 것도 다행이다. 선박 한두 척을 조심해서 운항하지 못한 죄는 수신에게 있으나, 도맡아서 고생한 자들은 교리와 선박의 군졸이다. 가장 수고한 영교 한 명에 대해서는 상으로 한 자급을 더해 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서 거행하라고 함께 공문을 보내 알리라." 하였다.

강 命全羅左右水使幷陞敍材木船運時首勞營校賞加船卒校吏依海西例擧行忠淸水營船運時校吏一體施行

목 **水原留守 趙心泰**狀啓以爲忠淸水營所載**華城**門樓材到泊形止前已陸續馳啓而卽接治木所別監董 崔命健牒呈則安眠材船今已畢泊前後材木元株爲一千箇末端爲四百二十一箇全羅道左右水營分定槐雜木所載防兵船六隻作艘幷到左水營則所納爲二十株右水營則所納爲三十株而元數外二株加納云許多材木之一齊穩泊誠甚欣幸敎曰湖南左右水營分定之一齊利泊極爲多幸兩帥奉公之誠可嘉幷陞敍首勞營校問名賞加兵防船卒及校吏依海西例擧行事令廟堂行會該府該閫湖西之無事畢運亦

可幸也一二船隻之不謹駕海罪在帥臣偏若者校吏船卒也首勞一校賞加其餘依他道例爲之事一體行會
<일성록, 정조18년(1794) 5월 8일(갑오)>

경제/건설

화성 축성시 인력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강 축성(築城)할 때 백성과 승군(僧軍)을 공사에 동원하게 해 달라는 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목 ○ 영중추부사 채제공이 아뢰기를, "나라에 큰 공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백성을 부리는 것이 국가에서 항상 시행해 왔던 규례입니다. 성인(聖人)도 '농한기를 이용하여 백성을 부린다.〔使民以時〕' 라고 하였으니, 어찌 일찍이 백성을 부리지 말라고 하였겠습니까. 이번 **화성**의 성역은 국가의 큰일입니다. 일의 체모로 말을 하면 나라에서는 백성을 부려서 공사를 알게 해야 하며, 도리로 말을 하면 백성으로서는 나라를 위해서 공사에 달려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상께서 백성을 애지중지하는 마음에서 한 사람이라도 고생시키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아직도 알맞게 헤아려서 백성을 부리라는 명을 내리지 않고 계시니, 이는 '사랑하면 수고롭게 하려고 해야 한다.〔愛之 欲其勞之〕' 라는 취지에 어긋납니다. 승군은 더욱이 이러한 일에 부려야 할 자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백성과 승군을 모두 묘당에서 거리의 원근을 헤아리고 수효의 다소를 균등하게 분배해서 며칠씩 성역에 징발하게 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는 일인 듯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경이 말하지 않더라도 일의 체모가 이렇다는 것을 어찌 모르겠는가. 그러나 본부의 성역에는 반드시 한 명의 백성도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하니, 나도 생각이 있어서이다." 하였다.

강 不許築城時役民役僧之請

목 領府事 **蔡濟恭**啓言國有大役則不得不使民有國通行之例也聖人亦曰使民以時曷嘗曰勿使民乎今番**華城城役**國之大事也以事體言之國不可不使民知役以道理言之民不可不爲國趨事而我聖上以如傷若保之意恐有一夫勞頓之弊尙不下量宜使民之令已有違於愛之欲其勞之義而至若僧軍尤是合用於此等處者臣意則民與僧幷令廟堂量其道里近遠均其數爻多寡使之限幾日調赴於**城役**恐是不可已之事敎以不待卿言豈不知事面之若此而本府**城役**必欲不勞一民予意有所在矣
<일성록, 정조18년(1794) 5월 22일(무신)>

경제/건설

화성 문루의 사용될 목재 문제를 논의하다

강 상류의 고을들에서 구입한 재목(材木)을 영남 우조창(右漕倉)의 조선(漕船)이 영남으로 돌아가는 편에 실어다가 **구포항구(鳩浦港口)**에 내려 주도록 하고 이어 감동(監董)하는 곳에서 이를 운반해서 사용하라고 명하였다.

목 ○ 영중추부사 채제공이 아뢰기를, "**화성**의 문루(門樓)에 들어갈 재목을 상류의 고을들에서 구입하여, 이제 수일 안으로 경강(京江)에 도착할 것입니다만, 재목을 싣고 강 위에 떠 있는 선박들이 모두 작아서 그대로 바다를 운항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영남 우조창의 조선이 이제 도착할 것이라고 하니, 그 조선이 영남으로 돌아가는 편에 재목을 실어다가 구포항구에 내려 주도록 한다면, 감동하는 곳에서 이를 당연히 공사하는 곳으로 운반해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둘 다 편리하다고 할 수 있으니, 호조 판

서로 하여금 참작하여 거행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上游諸邑所貿材木嶺南右漕倉船回還便載運卸下於鳩浦港口仍自監董所運用

목 領府事 蔡濟恭啓言華城門樓所入材木貿取於上游諸邑今方不日到泊於京江而所載水上船體皆挾小不可仍以涉海嶺南右漕倉漕船今將到泊云其順歸之便使之載運卸下於鳩浦港口則自監董所自當運致役所如此則公私可謂兩便使戶判酌量擧行之意請分付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5월 22일(무신)>

경제/건설

수원의 공역을 살피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안건을 여쭐 각신(閣臣) 및 수원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를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이번 별사(別使)는 동지사(冬至使)를 보낸 이후에 가게 될 것이다." 하니, 일제학(一提學)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아마도 4~6일 정도 뒤일 것 같습니다." 하였다. 검교직제학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상의원에는 각 색(色)으로 대령하는 별초(別綃)가 있는데 총수가 거의 40필 정도 됩니다. 그 사이에 혹 오래되어 변색된 것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도 그저 계속 보관해 두기만 한다면 실제로는 쓸모없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어쩌다가 이렇게나 많아졌는가?" 하니, 서유방이 아뢰기를, "근래에는 아예 따로 들이라는 하교가 없었기 때문에 차차 늘어나 이렇게까지 많아졌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상의원에도 유재(遺在)가 있으니 귀히 여길 만하다."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최근에 대내로 들이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히 유재가 생겼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각 색으로 각 2필씩 비치해서 대령할 몫으로 두고, 그 나머지는 모두 대내로 들이라." 하니, 서유방이 아뢰기를, "흰 비단실은 올해 연경(燕京)에서 사 온 것이 몹시 적습니다. 비망(備忘)은 근근이 채워 쓰고 있지만 정원에서 필요한 것은 진실로 구차한 상황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러한가? 비망의 용도 이외의 별초를 많이 짜지 않는다면 우선 급한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조심태에게 이르기를, "수원 화성 공사는 얼마나 진척되었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남루(南樓)와 북루(北樓)의 홍예(虹霓)는 이제 거의 완성되었고, 성가퀴로 말씀드리면 50보까지 먼저 축조하기 시작하였는데 높이는 7, 8층 정도 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현재의 재력으로는 부족할 염려가 없겠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아직은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관청을 어쩔 수 없이 더 지어야 하는 경우에는 도형(圖形)으로 그려 바치는 것을 허락하였다. 어제 이유경(李儒敬)이 올린 것을 보니 칸수가 너무 많았다. 불필요한 것은 없애고 꼭 필요한 것만 취해야 한다." 하고, 도형을 펼치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도형의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 더 짓고, 그 나머지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지우라."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도형을 그릴 때에 신도 함께 들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더 지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려 냈는데 지금 삼가 하교를 받들고 보니 비로소 불필요했던 것임을 분명히 알겠습니다. 이대로 봉행하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수원(水原) 행궁(行宮)은 칸수가 참으로 매우 많으니, 매년 장마와 해빙 뒤에 무너진 곳을 수선하는 일을 유수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이것은 조정에

서 별도로 지시하여 일을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진실로 성상의 말씀이 맞습니다. **화성** 공사에 대한 물력을 마련해 줄 때 이곳에 대해서도 똑같이 마련해 주어서 영구히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서유방이 아뢰기를, "연전에는 유수가 관청을 수리할 비용을 위해 매년 100냥씩 돈을 내서 보태 쓰는 것을 정식으로 삼은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으로는 일부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綱 召見稟事閣臣及**水原留守** **趙心泰**于重熙堂

目 予曰今番別使之行當在於冬至使之後矣一提學 鄭民始曰似不過四六日差後矣檢校直提學 徐有防曰尙方有各色待令別綃而都數殆近四十疋其間或有年久渝色者此若一向留置則實有無用之慮故敢此仰達矣予曰何爲而至此之多乎有防曰近來元無別入之敎故次次至於此多矣予曰尙方亦有遺在可貴矣民始曰近無內入故自然有遺在矣予曰各色各留二疋以爲待令件其餘幷內入可也有防曰白絲今年燕貿絕少備忘則僅僅充補而院中所用誠苟艱矣予曰然乎備忘外別綃不爲多織則似無窘急之患矣予謂心泰曰**城役**方到何境乎心泰曰南北樓虹霓今幾垂成而以城堞言之限五十步先爲始築亦到七八層矣予曰目今財力姑無不足之患乎心泰曰姑無此患矣予曰公廨之不得不添造者許令圖形以進矣日昨見李儒敬所上則間數太多不可不汰冗而取緊矣命展圖形謂曰從某至某略干間添造其餘從某至某則除之可也心泰 曰圖形時臣亦與聞而伊時以不得不添入圖出矣今伏承下敎始爲怳然矣當以此奉行矣予曰**水原**行宮間數許多每年水潦及解凍後頹圮處修繕一事不可責之於一留守此則自朝家別般指劃以給好矣民始曰誠如聖敎矣**城役**物力措劃時亦爲一體措劃以爲永久遵行之道斷不可已矣有防曰曾聞年前留守爲公廨修補之資每年以百兩所出錢補用事有所定式云未知其間如何用之而此則不可當一隅矣

<일성록, 정조18년(1794) 6월 25일(경진)>

경제/건설

화성을 쌓는 곳에 전령(傳令)하여 척서단(滌暑丹) 4000정(錠)을 나누어 주다

강 **화성(華城)**을 쌓는 곳에 전령(傳令)하여 새롭게 처방한 척서단(滌暑丹) 4000정(錠)을 나누어 주었다.

목 ○ 전령하기를, "날씨가 이처럼 무더운데 성 쌓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곳에서 공역을 감독하고 공역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치도록 일하며 숨을 헐떡일 모습을 생각하니, 밤낮으로 그 생각이 떠올라 한시도 잊을 수가 없다. 이러한데 먹는다고 맛이 있겠으며 눕는다고 편안하겠는가.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속이 타는 자의 가슴을 적셔 주고 더위 먹은 자의 열을 식혀 주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별도로 처방 하나를 연구해서 새로 약을 조제하여 내려보내니 받거든 즉시 장수(匠手)와 모군(募軍) 등에게 나누어 주어 속이 타고 더위 먹은 자들이 1정이나 반 정을 정화수(井華水)와 함께 복용하게 하라. 이 외에 구급 처방도 각별히 유의하여 열을 식히는 약제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보내 주어서 감독관이든 장인이든 군사든 한 명이라도 속이 타거나 더위를 먹는 일이 없도록 하여 궁궐에서 저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보이도록 하라." 하였다. - 척서단 4000정을 보냈다. -

○ **화성** 역사의 도청(都廳)인 전 별군직 이유경(李儒敬)의 별단에, "이달 26일 지구관(知慤官) 천석규(千錫圭)가 받들고 온 전령 1통에 척서단 4000정을 내려 주어 가서 전하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30정은 제가 공경히 받았고, 202정은 각처에서 역사를 살피는 별감동(別監董) 14원(員)과 감관(監官)·패장(牌將) 87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1107정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각 곳의 서리(書吏) 34인과 장수(匠手) 1073명에게 나누어 주었고, 2452정

은 각처의 역사에 배치된 모군(募軍) 2452명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이 삼가 전령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모두 장수와 모군 등에게 효유하니 모두가 손 모아 감축하며 감히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남은 척서단은 우선 책응소(策應所)에 두었다가 각각 장수와 모군 등에게 송부하는 대로 차차 나누어 줄 계획입니다. 이 외에 구료할 방도는 감동 당상이 계획해서 별도로 약국을 설치하여 열을 식히는 약제에 상당하는 것들을 많이 구비해 놓고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제급하여 속이 타고 더위 먹는 일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강 傳令于華城役所頒賜新方滌暑丹四千錠

목 傳令曰炎熱如此言念城役處董役赴役人衆之矻矻喘喘之狀宵旰一念不能晷刻暫弛而食豈甘寢豈便乎然雖如是懸念而何益於中暍者之潤肺飮暑者之滌熱乎另究一方新造下送祇受卽時分給匠手募軍等處中暍飮暑之類或調一錠半錠於井華水喫之外此救療之方各別留意多給相當淸暑之劑毋或有一校一匠一軍之中暍飮暑以紓九重念渠輩之心 滌暑丹四千錠○華城 役都廳前別軍職 李儒敬別單以爲本月二十六日知敦官 千錫圭齎奉傳令一度內下滌暑丹四千錠來傳故三十錠臣儒敬祇受二百二錠各處看役別監董十四員監官牌將八十七員處頒給一千一百七錠各役所書吏三十四人匠手一千七十三名處頒給二千四百五十二錠各處付役募軍二千四百五十二名處頒給臣謹以傳令內辭意字字曉諭於匠募等處則擧皆攢手感祝不敢言勞云餘數則姑留策應所各隨匠募等送付者次次頒給計料而外此救療之方因監董堂上經紀別設藥局多備淸暑相當之劑隨請題給以救中暑病暍之患

<일성록, 정조18년(1794) 6월 28일(계미)>

경제/건설

수원유수가 수원의 화성 공역을 장계하다

강 수원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가 화성 공역에 대한 일로 급히 장계하였다.

목 ○ 장계에, "어제 삼가 전령(傳令)의 내용을 받들어 정리소(整理所)의 총리 대신과 상의한 뒤에 상께 보고할 내용은 이미 별단을 만들어 아뢰고 나서 한편으로는 대신에게 급히 서찰을 보내고, 또 한편으로는 장인들과 모군들을 불러 모아 삼가 전령의 내용을 일일이 효유(曉諭)하였습니다. 이에 석공들은 말하기를, '돌을 뜨는 자와 돌을 쪼는 자를 막론하고, 이 일은 행로(行路)에서 노역해야 하는 일과는 달라서 헛간처럼 지붕을 덮어서 치목소(治木所)가 볕을 가리는 것처럼 한다면 갈증에 시달리는 어려움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고, 모군들은 말하기를, '저희들은 모두 일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터전이 없어서 이와 같은 날품팔이로 입에 풀칠하는 자들인데, 이 공역에 나온 지 이제 반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흩어져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떠돌이 지게꾼이나 마찬가지로 지내야 하니 또한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곳에 머물 방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움막을 치고 처자를 거느리며 살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어서 마치 뿌리내리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한창의 더위가 이미 지나서 서늘한 기운이 생길 날이 머지않았으니 지금은 우선 머뭇거리며 처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받아먹는 것을 끊어 버리면 굶주림이 절박해지니 규례대로 모군의 일을 하는 것은 감히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서 흙이나 돌을 떠다 팔면서 아침저녁 끼니를 때우려 합니다.' 하였습니다.

모두가 한소리로 이렇게 말했고 떠나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어서 대략 넉넉잡아 계산해 보더라도 삼분의 일 내외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비록 일정치 않게 모이고 흩어지는 무리들이라 하나 돌아갈 것을 원하지 않으니 지금 우선 일을 맡기더라도 그들을 보살피고 불쌍히 여기는 길에 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공인과 장인들은 석공이든 기와나 벽돌 굽는 사

람이든 막론하고 어제부터 초둔(草芚)과 장목(長木) 따위를 많이 모아서 시원한 공간을 널찍하게 지어서 더위를 피할 길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위 때문에 부역을 정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돌을 운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새벽과 저녁 서늘할 때에 운반해 올 수량을 줄이고 방편을 써서 실어 오게 한다면 소를 이용하든지 짊어지고 오든지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총리 대신의 회보(回報)도 신의 견해와 대략 비슷합니다. 이렇게 거행하는 것이 삼가 편리하고 마땅할 듯합니다. 이상의 연유를 급히 장계하여 아룁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그대로 시행하라고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綱 水原留守 趙心泰以城役事馳啓

目 狀啓以爲昨伏奉傳令內辭意往復總理大臣後登聞之由已爲別單以聞而一邊馳書於大臣一邊招聚匠募等謹以傳令內辭意一一曉諭則石工輩以爲毋論浮石與治石此與行走應役有異以廠以廡如治木所之蔽陽則可免中暍之患云募軍輩以爲渠等俱無恒產不過是傭賃糊口之類而赴此公役半年于玆今雖散而之他一般擔負亦無捨炎就涼之路且結幕而挈妻者居多殆若安土重遷況今節序已晏涼生不遠今姑遲徊以俟進退之外無他道理絶此仰哺阻飢丁寧如例立募雖不敢望土石取賣以爲朝夕謀食之策云同然一辭願去者甚少略綽計之不過爲三分一內外矣此雖聚散無常之徒旣不願歸則今姑任之不害爲軫恤之道工匠則不論石工瓦甓之手自昨多取草芚長木之屬廣作涼廡以爲避暑之道則不必因暑停役至於運石一款晨爽夕涼減其運數使之方便輸致則以牛以擔亦不至爲病總理大臣回報亦與臣見大略相同以此擧行恐涉便宜緣由馳啓敎以依此爲之事回論
<일성록, 정조18년(1794) 7월 8일(계사)>

경제/건설

수원유수가 화성 공역의 일을 장계한 것을 도로 내려보내고, 회유(回諭)를 다시 내려보내다.

강 승지 이우진(李羽晉)을 체차하였다. 이어 수원유수(水原留守)의 장본(狀本)을 도로 내려보내고, 회유(回諭)를 다시 써서 보내라고 명하였다.

목 ○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가 **화성** 공역에 대한 유지(有旨)를 수령하였다고 보고한 장계에 대해, 전교하기를, "회유(回諭)를 유지로 작성하여 보낼 때에 정원이 장계의 개략적인 내용을 낱낱이 들어 머리말을 작성하는 법이다. 그런데 유지를 수령하였다고 보고한 이 장계를 보니, 경(卿)은 '장인(匠人)과 모군(募軍)들에 대해 더위 때문에 공사를 멈추게 할 필요가 없겠다는 내용으로 급히 장계합니다.' 하였는데, 그 아래에 '그대로 시행하라고 회유하라.'라고 내가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이 어찌 동문서답이 아니겠는가.
근래 가뭄이 몹시 심하여 내가 밤낮으로 마음을 쓰고 있고, 무더위 속에서 **화성** 성역을 진행하는 데 대해 늘 염려하고 있다. 단비가 시원스레 내려 주는 일은 내 마음속 기도가 아직 하늘을 움직이지 못했으나, 힘겨운 축성 공사를 일단 날씨가 조금 서늘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어서 며칠 전에 우선 정지하라는 명을 내렸던 것이다. 수신(守臣)의 장본에, 모군의 무리 중 가솔을 거느린 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갖추어 진달하면서, 한데에서 일하는 것은 우선 정지하게 하더라도 새벽과 밤 서늘할 때에 돌덩이를 주워 나르게 하여 공역을 정지한 기간 동안의 품삯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청하였다. 이는 사정이 그럴듯하다. 회유 중에 그대로 하라고 한 하교는, 대개 일은 우선 정지하더라도 품삯은 계산해 주라는 것이었다. 내린 유지로 보면 앞으로 계속 부역을 독촉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내 본의와 상반된 것이 아니겠는가. 유지를 작성하여 보낸 해당 승지를 체차하고, 이 장계는 도로 내려보내며, 회유도 다시 써서 보내라." 하였다.

綱 遞差承旨 李羽晉仍命**水原留守**狀本還下送回諭更爲書送

目 以**水原留守** **趙心泰城役**事有旨祇受狀啓敎以凡回諭有旨成送也自政院枚擧狀辭之槪略爲頭辭而觀此祇受狀啓以卿以匠募等不必因暑停役事馳啓爲辭其下以依此爲之之意回諭云云者此豈非問東答西乎近以鋤旱之太甚夙宵用心又以劇熱**城役**一念耿耿霈霆之效雖未格方寸之禱而力役之姑待涼生不是難事數昨果有始停之命矣守臣狀本備陳募軍輩挈其家屬者進退維谷之狀仍請露處事役雖令姑停晨夜乘涼拾納石塊量給停日之雇價此則事情似然回諭中依此云云之敎槪指役雖姑停價則量給也以所下有旨觀之其將仍爲董督豈不與本意相反乎當該有旨成送承旨遞差此狀啓還下送回諭亦爲更爲書送

<일성록, 정조18년(1794) 7월 9일(갑오)>

경제/건설

수원의 목장과 석장들의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부(水原府)**의 목장(木匠) 인부와 석장(石匠) 인부들도 모두 그들의 뜻에 따라 **화성** 성역을 정지하게 해 주라고 하유하였다.

목 ○ **수원유수** 조심태(**趙心泰**)의 장계에, "가뭄이 수십 일 동안 계속되어 백성들의 애가 타므로 기우제를 13일부터 정성껏 설행할 계획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 '봄 가뭄이나 여름 가뭄도 애가 탄다고 하는데 하물며 김매기 철도 끝난 입추 절후의 가뭄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농사가 걱정스러우니 어느 겨를에 잠자고 밥을 먹겠는가. 일전에 **화성** 성역을 정지하는 일로 지시한 바 있는데 그사이 어떻게 거행했는가? 성역이 실로 급선무임은 틀림없으나 많은 사람을 부리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이다. 요즘 계속 햇볕만 비치는 상황을 감히 성역 때문이라고 끌어다 붙일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옛사람들이 오행(五行)을 끌어대어 설명한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백성을 수고롭게 하여 성읍(城邑) 쌓는 일을 일으키면 양기(陽氣)가 성해져서 가뭄이 생긴다고 하였다. 그러니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하는 일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이런 가뭄이 생긴 것인지 또한 어찌 알겠는가. 목장 인부와 석장 인부가 볕도 가려지고 처마도 있는 비교적 서늘한 곳에서 일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뜻에 따라 우선 일을 멈추게 하고 비가 오거나 서늘한 기운이 생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들이 시원한 것이 곧 내가 시원한 것이다. 이 내용으로 모름지기 다시 잘 알게 하라.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시행하고 그간의 연유를 추후에 장계로 보고하라.' 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綱 諭**水原府**木石匠夫亦從願停役

目 **水原留守** **趙心泰**狀啓以爲亢旱數旬民情渴悶祈雨祭自十三日虔誠設行計料敎曰春夏之旱尙云渴悶矧玆鋤後秋節言念三農何遑寢食乎日昨以停役一款有所指揮其間何以擧行**城役**固非不急之務其爲勤衆勞民則一也近日之恒暘非敢傅會於是而嘗見古人傅會五行之說勤衆勞民以起城邑陽氣盛故旱爲應亦安知不由於不能節勞佚致此旱耶雖於木石匠夫之入處庇蔽軒敞之所者從願姑停以待得雨或生涼則渠輩之爽豁卽予之爽豁此意更須知悉從便闊狹以其緣由從後狀聞事回諭

<일성록, 정조18년(1794) 7월 11일(병신)>

경제/건설

대사간 임제원(林濟遠)이 화성 성역의 폐단을 상소하다

강 대사간 임제원(林濟遠), 집의 이우제(李遇濟), 장령 한용탁(韓用鐸)·정의조(鄭毅祚), 교리 김선(金銑), 수찬 윤익렬(尹益烈), 부교리 강빈(姜儐), 지평 홍병신(洪秉臣) 등이 올

린 응지 상소(應旨上疏)에 대해, 모두 비답을 내렸다.

목 ○ 임제원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 **화성(華城)** **성역(城役)**은 몹시 중요합니다. 더구나 농번기에 관계되지 않게 인부를 모집하는 것은 흉년을 구제하는 정사에 혹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전에 없던 더위를 만난 때에 이 막대한 공사가 있게 되었으니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 재목(材木)과 돌을 나른다면 혹시라도 사람이나 가축들이 몸을 상하게 될 수 있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번에 성상께서 내린 전교 중에 성역을 우선 정지하라고 하신 것은 진실로 측은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령이 시작한 공사를 중지시키기 어렵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그 사정을 생각해 볼 때 그럴 만한 점이 없지 않지만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먼저 대체(大體)를 보아야 합니다. 어떤 곳에 성을 쌓고서 어떤 달의 일이라고 쓰는 것은 《춘추(春秋)》의 은미한 뜻이니, 한결같이 당초 전하의 전교에 따라 우선 조만간 시원한 기운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하늘의 견책에 답하고 농사철에 순응하는 도리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망녕된 말을 용서하시고 어리석은 생각들을 채택하여 주소서."

하여, 비답하기를, "응지 상소의 내용이 대중의 의견을 거의 따르지 않았고 절실한 말도 종종 많이 나오니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유념하겠다. 감시(監試) 초시(初試)의 날짜를 뒤로 미루어 치르는 일을 월초에 물어보고자 했는데 도리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 말하지 않았다. 지금은 시험 날짜가 머지않았으니 반대가 들끓게 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러나 우선 며칠 더 지켜보면 시험 날이 닥쳐서는 돌이키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니, 경의 의견을 대신(大臣)에게 물어 묘당으로 하여금 초기하게 하겠다.

성역(城役)에 관한 일은, 어찌 경의 말을 기다리겠는가. 내가 좌불안석으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이니, 지난번에 **수원 유수(水原留守)**가 기우제를 설행하겠다고 장계한 것에 대해 내가 〈홍범(洪範)〉의 오행설(五行說)을 끌어다 붙인 말까지 인용하여 타일렀다. 더구나 그 공사를 내가 원래부터 독촉하여 서둘러 해내고자 하지 않았던 것은 이 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었다. 다시 총리 대신(摠理大臣)과 그곳에 거류하고 있는 신하로 하여금 나의 이 뜻을 잘 알게 하여 성역을 아직 정지시키지 않은 곳이 있으면 서늘한 기운이 생길 때까지 성역을 일체 우선 정지하게 하겠다." 하였다. (…)

강 大司諫 林濟遠 執義 李遇濟 掌令 韓用鐸 鄭毅祚 校理 金鈺 修撰 尹益烈 副校理 姜儐 持平 洪秉臣等應旨上疏竝賜批

목 濟遠疏略曰 (…) **華城城役**自有所重況雇募無關於民時興作或補於荒政而適當無前之暑有此莫大之役輦材運石觸炎冒熱或不無人畜致傷之慮則向日聖敎中姑欲停役者亶出於眞實惻怛之心守臣之覆難想其事情雖不無意見有國之事先觀大體城于某地而書以某月者卽春秋之微旨則一依當初聖敎姑待早晩生涼恐有益於答天譴順人時之一道也願殿下恕其妄而採其愚也批以應旨之說頗不隨衆往往多切實之語極用嘉乃當體念監試初試退行事月初已欲提問而還涉如何故不言今則試日不遠能無掣肘之端而且姑觀數日尤難及期回旋以卿疏語問于大臣令廟堂草記**城役**事何待卿言一念憧憧者在此向因守臣禱雨之啓至引洪範五行傳傅會之說以喩之況其事功本不欲催督速就者爲是城之所重也更令總理之大臣及居留之臣知予此意或有未及停役處涼生間一體姑停 (…)

<일성록, 정조18년(1794) 7월 22일(정미)>

경제/건설

부수찬 박길원(朴吉源)이 화성 공역에 관련하여 상소하다

강 부수찬 박길원(朴吉源), 지평 남이익(南履翼), 부교리 박종순(朴鍾淳), 정언 신귀조(申

龜朝) 등이 응지의 상소를 올린 데 대해 모두 비답을 내렸다.

목 ○ 박길원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 아, 화성(華城)에 성을 쌓는 공역은 진실로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니, 첫째는 중대한 일이기 때문이요, 둘째는 먼 뒷날을 위한 계책이기 때문입니다. 공역이 일반 백성을 동원하는 데에 미치기도 전에 백성들이 스스로 모집에 달려와 재용으로 경비를 소모하지 않고도 일은 모두 질서가 있게 되었으니 예부터 영선(營繕)에서 이렇게 성대한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전하께서는 오히려 백성들의 수고를 아껴 줄 생각으로 더위가 닥치자 공역을 정지하라고 명하셨으니 이는 진실로 성대한 덕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수(留守)를 맡은 신하가 제대로 봉행(奉行)하지 못하고서 서늘한 밤중에 돌을 져 나르게 하여, 비록 더위를 먹어 병이 나는 염려는 없다지만 힘든 노역을 쉬지 못하게 한 것은 교화를 펴는 의리로 보아 크게 잘못된 것이니, 신은 개탄스럽습니다. 하물며 지금은 전에 없이 큰 가뭄이 들어 농사가 흉년이 들 것으로 예측되는데 비록 모집에 응한 백성일지라도 이런 시기에 공역을 독려하는 것은 재해를 만나 백성을 구휼하는 도리가 아닐 것이며 또한 하늘의 뜻을 공경히 받들어 측신수도(側身修道)하는 의리에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전에 내렸던 윤음을 다시 내리시어 우선 공역을 중단했다가 차차 농사 형편을 보아 가며 선후책(善後策)을 세우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덕의(德意)가 널리 퍼져 하늘도 감동하여 마음을 돌릴 것이니 지금의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덕을 닦고 자신을 반성하는 도리에 또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

강 副修撰 朴吉源 持平 南履翼 副校理 朴鍾淳 正言 申龜朝等應旨上疏竝賜批

목 吉源疏略曰 (…) 嗚呼華城築城之役是誠不可已之事一則有所重焉一則爲遠圖也而工役不及於齊民而人自趨募財用不耗於經費而事皆有緖自古營繕未有似此盛擧也然而我殿下猶軫節民勞佚之念乃有當暑停止之命此固盛德事而惜乎居留之臣不能奉行涼夜負石雖免病暍之憂力役不息殊失承流之義臣竊慨然矣況今亢旱無前穡事將歉雖是應募之民此時督役恐非遇災恤民之道亦乖敬天側修之義惟殿下更申前下德音姑令停役徐觀年事之豐歉別作善後之料商則庶幾德意洋溢天心感回在今日恐懼修省之道亦豈少補也哉 (…)

<일성록, 정조18년(1794) 7월 23일(무신)>

경제/건설

부수찬 이석하가 화성의 공역을 언급하며 총융청의 공역을 중단할 것을 상소하다

강 부수찬 이석하(李錫夏)가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목 (…) 아, 시급하지 않은 비용은 옛사람도 아꼈던 것이고 전례가 없는 일은 유사(有司)가 삼가는 것입니다. 저 총융청의 공역은 무에 그리 급한 일이기에 이토록 크게 벌인단 말입니까. 이름난 정원을 둘러싸고 큰 건물을 옆으로 잇고 빙 두른 담장과 높은 용마루는 곧바로 산의 중턱을 범하고 있습니다. 성상께서 계시는 궁궐이 실로 남산을 마주하고 있는데 산의 정맥(正脈)을 깎아 눌러서 대궐을 나란히 바라보니 어찌 온당치 못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부터 내려오던 건물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어 부족하지 않았는데도 경비의 지나친 낭비를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옛날부터 계획을 세울 때에는 널리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는데 모든 사람의 의견이 같아지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으니 이것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설령 이 일이 참으로 긴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처럼 가뭄을 걱정하는 시기에 막중한 화성(華城)의 공역도 오히려 중지하는 마당인데 일개 군영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슨 큰일이라고 자귀질과 톱질이 끊이지 않고 토목공사가 한창이니 완급과 경중의 분수로 보아 온당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른바 '택문(澤門)에 사는 얼굴빛 하얀 사람이 실로 우리의

이 공역을 일으켰다.’ 라고 한 것이 혹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자잘한 일들을 말하더라도 경재(卿宰)와 사대부의 집들이 대부분 내려다보이게 되어 어떤 사람은 문을 닫은 채 엎드려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이사를 하여 남산 일대의 집값은 매우 떨어지고 원망과 저주가 길에 가득하니 이 또한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총융청에 책유(責諭)를 내려 즉시 그만두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 여깁니다. (…)

강 副修撰 李錫夏上疏賜批

목 (…) 噫不急之費昔人所惜無前之擧有司所愼惟彼總營之役何事之急而若是張皇也包絡名園橫連巨屋繚坦峻甍直犯翠微蓬萊宮闕實對南山則斲斷正脈平瞰禁籞得無未安自來綜密非曰不足罔恤經費之過濫從古謨猷所貴博採而不待詢謀之僉同此已過矣而設令本事眞箇緊急當此憫旱之時莫重華城之役猶且中止一營所須此胡大事斧鋸不息土木方張其于緩急輕重之分臣未知其穩當古所謂澤門之晳實興我役者無或近是雖以細節言之卿宰士夫之家多被壓臨或閉戶而縮伏或賣宅而遷從終南一帶屋價甚低怨詛載路是亦不可以已乎臣謂責諭該營俾卽停輟宜矣 (…)

<일성록, 정조18년(1794) 7월 24일(기유)>

경제/건설

수원유수가 균역청 재원을 빌려 공역에 충당키를 주청하다

강 균역청의 전(錢) 10만 냥을 화성(華城)에 빌려 주게 하였다.

목 ○ 수원유수 조심태가 아뢰기를, “성역에 소요되는 물력을 균역청에서 빌려 온 것이 20만 냥인데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전부가 공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물종(物種)을 분배하고 조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번 물력을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은 송구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만 다시 균역청에서 10만 냥을 빌려 와야 물력이 부족하여 공역을 중단하는 폐단이 없을 것이기에 감히 우러러 진달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綱 命均廳錢十萬兩貸送於華城

目 水原留守 趙心泰啓言城役物力之貸用於均廳者爲二十萬兩而目下姑無成就者則此非盡入於工役許多物種分排措置之際所費浩汗物力每患苟艱臣不勝悚悶又限十萬兩貸得於均廳然後庶無乏財停役之弊故敢此仰達矣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7월 29일(갑인)>

경제/건설

화성의 상량문을 짓도록 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大臣), 예조 당상, 북평사(北評事), 장시 도사(掌試都事) 및 제주 사람 강성익(康聖翊)과 박중환(朴重煥)을 소견하였다.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 판중추부사 박종악(朴宗岳)과 김희(金憙),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예조 판서 홍양호(洪良浩), 참판 서매수(徐邁修), 북평사 박종순(朴鍾淳), 장시 도사 서유련(徐有鍊)이다.

목 (…) 이어서 전교하기를, “화성(華城)의 상량(上樑)이 머지않은 듯하니 가까운 시일 안에 상량문을 내려보내야 할 것이다. 대제학이 금폭(錦幅)에 반드시 직접 써서 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

강 召見大臣禮堂北評事掌試都事及濟州人康聖翊 朴重煥于誠正閣 領府事 蔡濟恭 判府事 朴宗岳 金憙 右議政 李秉模 禮曹判書 洪良浩 參判 徐邁修 北評事 朴鍾淳掌試都事 徐有鍊

목 (…) 仍敎曰華城上樑想不遠上樑文當從近下送大提學必親書於錦幅以送也 (…)

<일성록, 정조18년(1794) 8월 9일(계해)>

경제/건설

화성 북문루의 상량문을 보내다

강 화성(華城) 북문루(北門樓)의 상량문(上樑文)을 보냈다.

목 ○ 상량문은 다음과 같다.

"주(周)나라는 채전(采甸)을 세워 나라의 울타리로 삼았고한(漢)나라는 원읍(園邑)을 두어 묘역의 관리에 이바지하게 하였도다. 선조를 받들고 효도하기를 생각하면 반드시 선침(仙寢)을 겹겹으로 호위하여 깨끗한 제사를 정성스럽게 올리고, 줄기를 강하게 하고 가지를 약하게 함은 서울을 높이고 밖으로부터 오는 침모(侵侮)를 막기 위함이네. 이에 선침이 있는 고을에 이 무지개문〔虹霓門〕을 세우니, 이 화성대도호부(華城大都護府)는 실로 우리나라의 우부풍(右扶風)이로다. 바다를 등지고 한강을 바라보며 왕경(王京) 백리의 지역에 걸터 앉았고, 영남을 당겨 잡고 호남을 움켜쥐며 사방으로 통하는 큰길이 모이는 곳에 자리했도다.

아름답구나. 나라에 보배로운 산하 있었으니 과연 하늘이 성인을 위해 감추어 둔 곳이로다. 신령스러운 용이 턱 밑의 구슬을 희롱하니 종산(鍾山)의 기세 장엄하고 화려하며, 금련(金蓮)이 꽃술 속의 꽃받침을 토해 내니 용릉(舂陵)의 아름다운 기운〔佳氣〕 왕성하게 일어난다. 《청오(靑烏)》로 묏자리를 잡음에 미쳐 현귀로 이 새로운 읍을 정했도다.〔玄龜食玆新邑〕 전수(灤水)의 서쪽과 간수(澗水)의 동쪽에 도읍을 정한 것은 지리를 보아 터를 잡은 것이고 옛 패리(沛里)에서 이름을 취하여 신풍(新豐)이라 한 것은 백성의 뜻을 따르고 왕업을 높인 것이라. 산천은 그 위치를 바꾸지 않으니 오랫동안 임금의 행차를 보겠으며 닭과 개가 각각 그 집을 알고 있으니 엄연히 분유사(枌楡社) 모신 뜻을 이루었구나. 이에 구중궁궐에서는 달마다 어버이 뵙는 예를 행하시고 좋은 날을 가려 해마다 성묘하는 의식을 정하셨네. 친히 옥 술잔을 잡고 술을 따르니 사모하는 마음 끝이 없고, 궁검(弓劍)이 가까이 있으니 그리는 간절한 정성을 부치네.

산성으로 보낸 백성은 경술년(1790, 정조14)에 수레 멈추고 임금이 하신 말씀을 숭상하여 외우고, 월악산(月岳山)의 고승은 북쪽 언덕이 절을 세울 좋은 땅이라 전하였네. 백성이 길가에 끊이지 않고 따라오니 어찌 무릉(茂陵)의 호걸들을 번거롭게 할 것이며 집과 우물이 촘촘히 늘어섰으니 반쯤은 낙양 재상들의 동산 같구나. 진실로 성을 쌓고 못을 파지 않으면 어떻게 백성을 포용하며 사람을 기르겠는가. 해시계를 세워 해그림자를 재며 금여(金輿)를 멈추고 언덕에 올랐고, 산을 안고 시내를 둘러싸고 있으니 옥부(玉斧)를 날려 경계를 정하였네. 경사(卿士)가 따르고 서민(庶民)이 따라서 진실로 화합하니 이미 어진 도위(都尉)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알겠고, 사람이 꾀하고 귀신이 꾀하여 참여하니지난날 처사(處士)가 계획한 것과 은연중 맞는구나. 이에 태사(太史 관상감)에게 명하여 좋은 날을 받고 사공(司空)을 신칙하여 공역(功役)을 의논하였네.

숙지산(孰知山)에서 돌을 캐니, 기이하여라. 땅은 만 과(顆)의 돌을 바치고, 안면도(安眠島)에서 기둥 나무를 베어 오니 잠깐 사이에 바람은 큰 재목 천 장(章)을 보내왔네. 풍륭(豐隆 구름과 우레의 신)이 도끼를 휘두르니 어영차 소리 땅이 진동하고, 열결(列缺 번개)이 숯불에 부채질을 하니 풀무질 불꽃이 하늘로 솟는다. 먼저 남북의 방위를 정하여 드디어 남북으로 민호를 열었고, 북두칠성을 따라 위치를 바르게 하니 옥형(玉衡 북두칠성의 다섯째 별)이 아래로 드리웠으며, 명당을 살펴 지도를 만드니 현무(玄武)가 왼쪽으로 열렸다.

위에는 이층 누각을 세우니 구름 밖으로 높이 솟았고, 아래에 사방으로 통하는 길을 닦으니 널찍하여 두 대의 수레 나란히 지나겠구나. 법상(法象)은 낙서(洛書)의 하나를 따르고 범위는 도성의 3분의 1로 했네. 상현궁(上弦弓)같이 구불구불한 모습은 엄숙히 사방을 위협하는 기세요, 늘어진 버들잎같이 옆으로 길게 뻗은 곳은 완연히 만 마리 말을 맬 마당이로다. 마을에는 백 개의 가게를 여니 먹줄을 튕긴 듯 곧고, 논밭에는 세 갈래 길을 만드니 평평하기 숫돌 같구나. 내탕고의 돈으로 백성을 모집하고도 오히려 3일 동안 계속 일하는 걸 안타까워하고, 시냇물 끌어다 해자를 채워서 절로 7리(里)를 둘러싼 형세 이루었네.
어느덧 병졸을 모으고 군량을 높이 쌓고서 아문을 승격시켜 체통을 높이도다. 송도(松都 개성)와 심도(沁都 강화)의 제도를 본받아 관직은 유수로 칭하고, 장용 외사의 명칭을 겸하게 하여 품계를 장상(將相)과 나란히 했네. 수레바퀴가 서로 부딪치던 임치(臨淄)처럼 번성하여 사람마다 모두가 쌀밥에 생선국을 먹고, 한(漢)나라 호두(鄠杜)에 뽕나무와 삼이 얽혀 나듯 수많은 병사들은 탄자(彈子) 끼고 말을 달리네. 사람이 태어나 더욱 많아지니 인재를 기르는 방도를 두었네. 임금께서 친히 시험 보여 선비들을 등용하니 수많은 〈녹명(鹿鳴)〉의 준재들이요, 과녁을 설치하여 활쏘기를 시험하니 헌걸찬 〈토저(兎罝)〉의 간성(干城)이로다. 동쪽에 이 학사(李學士)의 옛집을 바라보니 나라에 충성할 뜻 다 함께 떨쳐지고 북쪽에 김 절도사(金節度使)의 옛 성벽을 바라보니 적개심이 다투어 일어나네.
어찌 팔다리 같은 하동(河東) 고을일 뿐이랴, 진양(晉陽) 같은 보장(保障)의 진(鎭)이 되리로다. 교산(喬山)에 소나무, 잣나무 울창하니 천년 제사의 향기를 보호하고, 호전(湖甸)과 기전(畿甸)의 수레와 배 모여드니 한 방면의 요충(要衝)을 차지했네. 푸른 봉우리에 구름 장막 펼치고 땅 가득한 인가의 연기 굽어보며, 높은 성루에서 봉생(鳳笙)을 연주하며 서울로 가는 벼슬아치 길이 전송하겠네. 구평중(寇平仲)은 술 마시고 도박하면서 변방의 먼지에 놀라지 않았고,두소릉(杜少陵)은 누각에 의지하여 멀리 임금 계신 곳을 바라보았지.
이제 팔달(八達)의 송가(頌歌)를 지어 여섯 아랑위(兒郞偉)의 노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어영차 들보 동쪽에 떡을 던져라 / 兒郞偉抛樑東
팔달산이 높으니 사방이 한결같구나 / 八達山高四望同
옥녀가 거문고 뜯으며 어느 곳에 내려왔나 / 玉女彈琴何處降
상서로운 구름이 붉은 해 바퀴를 받쳐 올리네 / 祥雲擎出日輪紅
어영차 들보 서쪽에 떡을 던져라 / 兒郞偉抛樑西
돛배는 끝이 없고 바다 구름은 낮은데 / 風帆無盡海雲低
버드내 일대는 그림 같은 봄이라 / 柳川一帶春如畫
뽕나무 무성한 그늘에서 뻐꾸기 운다 / 桑柘濃陰布穀啼
어영차 들보 남쪽에 떡을 던져라 / 兒郞偉抛樑南
하늘이 만든 능침엔 맑은 기운 가득 차고 / 天作仙園灝氣涵
만년의 주구 그 빛이 땅을 비추는데 / 萬歲珠丘光照地
늙은 용은 구슬을 희롱하며 깊은 못에 누워 있네 / 老龍閒弄臥深潭
어영차 들보 북쪽에 떡을 던져라 / 兒郞偉抛樑北
하늘에 닿은 큰길이 먹줄마냥 곧은데 / 連天大道如繩直
멀리서 임금이 내린 조서가 오니 / 丹綸遙自日邊來
빙견에는 오히려 검은 향안의 먹이 젖어 있네 / 冰繭猶霑香案墨
어영차 들보 위에 떡을 던져라 / 兒郞偉抛樑上
화산과 관악산이 우뚝 솟아 마주하니 / 華山冠嶽森相向

수많은 친위군은 어리진(魚麗陣)을 이루고서 / 親軍百隊像魚麗
성 머리에서 화각 울리며 임금 행차 맞이하네 / 畫角城頭迎玉仗
어영차 들보 아래에 떡을 던져라 / 兒郎偉抛樑下
환한 햇살 아래 늘어선 기와집들 / 日光照耀魚鱗瓦
김매는 노래 새참 먹으라는 소리 태평 세상 즐기니 / 鋤歌饁唱樂升平
들녘 가득 익은 곡식 보기 좋아라 / 好看黃雲盈四野
엎드려 바라오니 상량한 뒤에는 화려한 건물은 손상되지 않고 자물쇠는 더욱 튼튼하며, 구암(龜巖)과 봉수(鳳岫)는 멀리 정락성(井絡星)의 상서에 응하고 꽃봉오리〔花岑〕 버드내〔柳溪〕는 늘 금속(金粟)의 상서로운 기운을 띠게 하소서."
○ 대제학 홍양호(洪良浩)가 지어 바쳤다.
○ 이날 홍양호를 내각(內閣)으로 불러서 써서 바치게 하고, 이어 경기 감사에게 측근 비장(裨將)을 시켜 가져가게 하되, 오늘 출발하여 주교사(舟橋司)에서 자고 15일 아침에 **화성부**에 도착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강 齎送**華城**北門樓上樑文
목 上樑文周建采甸而作翰屛漢置園邑而供灑掃蓋奉先思孝必重衛仙寢而謹明禋而强輔弱支所以隆上都而禦外侮肆於桑梓之郡屹此虹蜺之門惟玆**華城**大都護州實是箕邦右扶風地負海臨漢跨王京百里之疆控嶺扼湖據孔道四達之會美哉國有山河之寶果然天設聖人之藏神龍弄頷下之珠鍾山之體勢壯麗金蓮吐鬚中之萼春陵之佳氣鬱葱迨靑烏卜我崇岡而玄龜食玆新邑西瀍東澗相地理而占基舊沛新豐順民情而奠業山川不改其列長瞻衣冠之遊雞犬各識其家儼成枌楡之社於是重宸推月覲之禮吉日定歲省之儀玉瓚親將不盡攀柏之慕弓劍孔邇常寓見墻之誠山城遺氓尙誦庚歲停鑾之敎月岳高釋曾傳癸岡卓錫之符士女襁趨奚煩茂陵豪傑之戶閭井櫛比半是浴陽卿相之園苟不築城而鑿池則何容民而畜衆正圭測景逗金輿而升虛包山絡川飛玉斧而定界卿從庶從之允協已驗賢都尉忱誠人謀鬼謀之與能暗契故處士經畫爾乃命太史而諏日勑司空而商功斲雲根於孰知之山異哉地獻萬顆拔虬棟於安眠之島倏爾風送千章豐隆運斤呼邪之聲動地列缺扇炭鼓鞴之燄烘霄先定子午之方遂闢乾坤之戶隨斗柄而正位玉衡下垂按明堂而成圖玄武左啓上起二層之閣高出浮雲下通十字之街闊容方軌法象履洛書之一範圍損都城之三彎回若上弦之弓儼有威四方之勢橫長類垂柳之葉宛是繫萬馬之場夫里開百堵之廛其繩則直阡陌設三條之路如砥斯平民募帑金猶惜用三日之力壕因溪水自成環七里之形於焉蒐卒乘而峙糗糧因之升衙門而尊體貌倣松沁兩都之制官稱居留兼**壯勇外使**之名秩竝將相臨淄之車轂相擊人皆飯稻而羹魚鄂杜之桑麻交加士多挾彈而走馬旣生齒之益盛故育才之有方臨軒進縫掖之群濟濟鹿鳴之髦俊張帳試決拾之藝赳赳兎置之干城東瞻李學士之遺庄咸勵忠國之志北眺金節度之故壘競起敵愾之心豈惟河東股肱之州抑爲晉陽保障之鎭喬山之松柏密邇護芬芷於千年湖甸之舟車相交扼咽喉於一面張雲幄於翠巘俯瞰撲地之烟花按鳳笙於麗譙長送朝天之冠蓋冠平仲之飮博邊塵不驚社少陵之倚樓北辰遙望玆成八達之頌聊助六偉之歌兒卽偉抛樑東八達山高四望同玉女彈琴何處降祥雲擎出日輪紅兒卽偉抛樑西風帆無盡海雲低柳川一帶春如盡桑柘濃陰布穀啼兒卽偉抛樑南天作仙園灝氣涵萬歲珠丘光照地老龍閒弄臥深潭兒卽偉抛樑北連天大道如繩直丹綸遙自日邊來冰繭猶霑香案墨兒卽偉抛樑上華山冠嶽森相向親軍百隊像魚麗畫角城頭迎玉仗兒卽偉抛樑下日光照耀魚鱗瓦鋤歌饁唱樂升平好看黃雲盈四野伏願上樑之後鳥革不騫魚鑰增重龜巖鳳岫遙應井絡之祥光花岑柳溪常帶金粟之瑞氣大提學 洪良浩製進○是日招致良浩於內閣俾書進仍命畿伯親裨齎往當日發行宿舟橋司十五日早抵**華城府**
<일성록, 정조18년(1794) 8월 13일(정묘)>

경제/건설

화성 각문의 상량문을 짓게 하다.

강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이 **팔달산(八達山)** 장대(將臺)의 상량문을 짓고 써서 바치게 하고, 전 유수 이명식(李命植)이 남문루(南門樓) 상량문을 지어 바치게 한 뒤 대제학 홍양호(洪良浩)가 글씨를 써서 바치게 하라고 명하고, 이어서 동문루(東門樓)와 서문루(西門樓)의 상량문은 **화성유수(華城留守)**가 그때 가서 내각에 보고하면 문임 중에서 지어 바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화성 북문루**의 상량문은 대제학 홍양호가 짓고 써서 바쳤다. 남문루의 상량이 25일쯤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판중추부사 이명식이 유수를 지냈으니 지어 바치게 하고 이어 대제학이 글씨를 쓰게 하라. **팔달산** 장대의 상량문은 체모로 보아 유상(留相)을 지낸 대신이 짓게 해야 할 것이니 채 영중추부사에게 지어서 써 바치도록 검서관을 시켜 전유(傳諭)하게 하되, 날짜는 유수에게 물어서 기한에 맞추어 써 들이게 하라. 동문루와 서문루의 상량문 또한 유수가 그때 가서 내각에 보고하게 하여 문임 중에서 지어 바치도록 내각과 유수에게 통지하라." 하였다.

강 命領府事 **蔡濟恭** 八達山將臺上樑文製進書進前留守 李命植製進南門樓上樑文後大提學 洪良浩書進仍命東門西門樓上樑文**華城留守**臨時報于內閣令文任中製進

목 敎曰**華城**北門樓上樑文大提學 洪良浩製進書進而南門上樑在於念五日間云判府事 李命植旣經留守使之製進仍令大提學書之八達山將臺上樑文則體貌所在當令大臣之曾經留相者製之蔡領府事製進書進令檢書官傳諭日子則問于留守趁期書入東門西門上樑文亦令留守臨時報于內閣 文任中製進事令內閣及留守知悉

<일성록, 정조18년(1794) 8월 20일(갑술)>

경제/건설

화성 남문루의 상량문을 보내다

강 **화성(華城)** 남문루(南門樓)의 상량문을 보냈다.

목 ○ 상량문은 다음과 같다.

"새 고을에 국방의 요새를 설치하니 높은 성이 우뚝 세워졌네. 층층 누각은 규모를 크게 잡아 화려한 집이 서로 마주하고 있구나. 이 어찌 한갓 사방에서 서울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려는 것뿐이리오, 실로 선침(仙寢)을 받드는 임금의 정성에서 나온 것이라네.

이 **화성** 한 구역은 예로부터 기전(畿甸)의 큰 진(鎭)이었다네. 서울과 100리도 안 되는 가까운 곳에 하늘이 좋은 지형을 설치해 주고 국방의 요새가 삼도의 교차점을 차지하니 땅은 지켜 막는 위치에 속해 있네. 육천의 병마를 거느리니 오히려 외도감(外都監)이란 명칭이 전하고 구십 개의 마을에 백성과 재물이 풍부하니 한나라 우부풍(右扶風)의 중요함에 뒤지지 않는구나.

주구(珠丘)를 옮겨 모신 뒤로부터 공경히 고향 그리는 마음 배나 더하여 만년토록 궁검(弓劍)을 호종하리니 다시는 도호부(都護府)의 옛 관아가 아니라네. 해마다 임금 행차 납시니 드디어 팔다리 같은 중요한 고을이 되어 새로운 규모를 만들었네. 여기 흐르는 물과 높은 언덕은 애연(藹然)히 한(漢)나라 고조(高祖)가 풍읍(豐邑)을 옮겨 지은 효도와 같고 이 땅을 가르고 정리하니, 아아, 주(周)나라 임금이 낙읍(洛邑) 세울 것을 도모함과 같구나.

동우(棟宇)가 크게 설치되어 어느덧 임금 행차 머무르고 백성들이 끊임없이 모여들어 이윽고 큰 도회지 되었네. 전곡(錢穀)과 갑병(甲兵)이 없는 것 없이 갖추어지고 사농공상 모든

백성이 반드시 여기에 있도다. 큰길에 가게 벌여선 광경은 어깨를 부딪치며 북적이던 제(齊)나라 시장의 모습이요 부(賦)를 지어 바치고 경서를 강론하니 성대한 노(魯)나라의 현가(絃歌) 소리 귀에 가득하구나. 태어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 거듭해서 노적을 쌓고 창고에 쌓아 두네. 일의 체모가 더욱 높아지니 어찌 성을 쌓고 연못을 파지 않겠는가. 남북으로 뻗은 거리마다 마을마다 편안히 살게 할 방도 다해야 하리니 큰 도회 이름난 성에는 본래 막아서 지키는 곳 있다네. 이에 무리를 모으는〔畜衆〕 《주역》의 상(象)을 본받고 이에 비 오기 전 집을 고치는 옛사람의 계책을 따른다네.

임금께서 수레 멈추고 이 언덕을 살피사 토규(土圭)로 경계를 정하고 호부(虎符)를 주어 일을 감독하게 하니 삼태기 들고 삽을 메고 공역에 달려갔네. 무진장한 석재 있으니 땅이 어찌 보배를 아끼겠으며 공사 재촉하는 북소리 멈추지 못하도록 백성들 스스로 바람처럼 달려갔네. 여도(輿徒 마부)가 부지런히 힘쓰니 아마도 귀신의 힘을 빌린 듯하고 장인(匠人)이 솜씨 다하니 잠깐 사이에 무지개문이 이루어졌구나. 북문의 누각이 완성되자마자 벌써 성 남쪽에 동우(棟宇)가 솟았네. 장얼(棖闑)이 법도에 맞으니 남북의 방위가 어긋나지 않고 완공 기일이 가까우니 늦은 밤까지 근심하던 임금님 마음이 놓인다. 안면도(安眠島)에서 재목을 가져오니 배와 수레가 날마다 편안히 실어 오는 것이 보이고 길이 교산(喬山)으로 통하니 황홀하여라, 달마다 의관을 내어 배알하는 행차〔衣冠之月出〕 보겠네. 모여든 남녀 백성 기쁜 얼굴로 서로 말하고 나그네도 모여들어 새로운 광경 구경하겠지.

금성탕지(金城湯池)는 가없는 기업(基業)을 길이 수호하고 푸른 집 붉은 용마루는 흔들리지 않는 기틀을 길이 안정시키리라. 멀리 쌀밥 먹고 고기 먹는 마을 끝까지 바라보니 별천지의 승경이요 빙 둘러 들어선 건 대부분 부귀한 집들이라 이 새 터전을 즐거워하리. 비록 보호하여 다스림은 강화, 개성과 나란하지만 위세만은 팔도에서 으뜸이라. 해자와 참호의 제도를 갖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백성을 편히 살게 하리오. 원침(園寢)을 높이는 위의 있으니 임금님 마음이 기쁘다. 공사의 비용은 모두 내탕금에서 나왔으니 진실로 빛나는 성덕을 펼쳐서 밝힌 것이요, 공역에 농사철을 빼앗지 않았으니 모두가 하늘처럼 감싸 주는 선대의 아름다운 덕이라 하네.

감히 상량의 노래를 지어 바쳐 장인들의 노고에 보답하노라.

어영차 들보 동쪽에 떡을 던져라 / 兒郎偉抛樑東
용연에서 아침 해가 붉게 떠오르니 / 龍淵曉旭先紅
온 나라에 상서와 화기가 성대하여라 / 盛得祥和一域
해마다 우순풍조 태평세월 누리리 / 年年順雨調風
어영차 들보 서쪽에 떡을 던져라 / 兒郎偉抛樑西
팔달산과 그 높이가 가지런한데 / 八達山高與齊
으뜸가는 좋은 밭엔 농우가 오락가락 / 上田耕牛來去
득중정(**得中亭**)의 화곡은 평평하고 낮구나 / 中亭畫鵠平低
어영차 들보 남쪽에 떡을 던져라 / 兒郎偉抛樑南
버들 냇가 봄이 오니 나무는 쪽빛이고 / 柳川春樹如藍
주구의 상설(象設)이 가까이 있으니 / 珠丘象設孔邇
아름다운 기운이 아침저녁 비치네 / 佳氣日夕來參
어영차 들보 북쪽에 떡을 던져라 / 兒郎偉抛樑北
붉은 구름 곧바로 서울을 가리키니 / 紅雲直指京國
노인들은 임금님의 행차를 기쁘게 맞이하고 / 父老歡迎翠華

봉인은 성덕을 축복하길 청하네 / 封人請祝聖德
어영차 들보 위에 떡을 던져라 / 兒郎偉抛樑上
높이 솟아 기전의 보장이 되었구나 / 屹然畿甸保障
뭇사람의 마음은 오래전에 성을 이루었으니 / 衆心久已成城
강구(康衢)의 노래와 나무꾼의 노래 서로 화답하였네 / 衢謠互答樵唱
어영차 들보 아래에 떡을 던져라 / 兒郎偉抛樑下
풍년 들어 들녘엔 누런 곡식 가득한데 / 豐歲黃雲滿野
삼사 문교에 현가 소리 드높고 / 文敎三舍絃歌
백 대열의 군용은 활과 말을 갖추었네 / 軍容百隊弓馬
엎드려 바라오니 상량한 뒤에 땅의 신령이 몰래 붙들어 주고 하늘의 복이 융성하게 내리고, 산과 강이 안과 밖이 되어 큰 나라를 에워싸 빛이 있게 하시며, 기둥과 서까래는 우뚝이 솟아 길이길이 견고하게 하소서."
○ 전 유수 이명식(李命植)이 지어 바쳤다.
○ 대제학 홍양호에게 써서 바치도록 하여 내사(內使)에 지시하여 경기 감영에 내주게 하고 경기 감영에서 당일로 **화성유수(華城留守)**에게 전해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남문의 상량이 내일이기 때문이다.

강 齎送**華城** 南門樓上樑文

목 上樑文伏以設重防於新邑有屹崇墉度宏規於層樓相對華構豈徒四方觀上都之美實出九重奉先寢之誠維玆**華城**一區從古畿甸雄鎭京師不百里而近天設形便關防處三道之交地屬控禦六千衆兵馬是總猶傳外都監之稱九十坊民物孔殷不讓右扶風之重奧自珠丘之移奉倍覺桑鄕之敬恭扈弓劍於萬年非復都護府舊治戒羽旄於每歲遂侈股肱郡新規某水某丘謁乎漢帝移豐之孝載彊載理椅歟周王作洛之圖棟宇孔安於焉停蹕繩輻相屬遂至成都錢穀甲兵之無不有焉士農工賈之必於斯也當街列肆雜然齊市之摩肩獻賦談經洋乎魯絃之盈耳生齒漸庶重之乃積乃倉事面益尊曷不斯築斯鑿南隣北陌宜盡奠接之方大都名城自有扞衛之所爰體大易畜衆之象聿追古人撤桑之謨駐蠻輿而胥原土圭定界援虎符而董事奮鍤赴功雲根效無盡之藏地豈愛寶鼛鼓奏弗勝之響人自趨風輿徒效勤倘神鬼之借力工技殫巧倏虹蜺之成形北門之樓纔完南城之棟已屹棖闌叶度子午之方位不差事功赴期乙丙之聖念稍弛材取安島穩見舟車之日輸路通喬山怳陪衣冠之月出士女闐而歡欣相告行族簇而觀瞻頓新金城湯池長護無疆之業翠夢丹桷永奠不拔之基眺望極稻魚之鄕別是勝概包絡多鍾鼎之宅樂此新居雖保釐肩於兩都獨威重首於八路苟不備壕塹之制俾民生處休則何隆園寢之儀於聖心有恔功費悉出內帑亶由睊德之宣昭力役不奪農時咸謂先休之覆燾敢效卽偉之頌用侑匠氏之勞兒卽偉抛樑東龍淵曉旭先紅盛得祥和一域年年順雨調風兒卽偉抛樑西八達山高與齊上田耕牛來去中亭畫鵠平低兒卽偉抛樑南柳川春樹如藍珠丘象設孔邇佳氣日夕來參兒卽偉抛樑北紅雲直指京國父老歡迎翠華封人請祝聖德兒卽偉抛樑上屹然畿甸保障衆心久已成城衢謠互答樵唱兒卽偉抛樑下豐歲黃雲滿野文敎三舍絃歌軍容百隊弓馬伏願上樑之後地靈潛扶夭休滋至山河表裏拱大邦而有光楹桷穹崇垂永世而維固前留守 李命植製進○命大提學 洪良浩書進使內使出付畿營使之當日傳致于**華城留守**以南門上樑在明日也

<일성록, 정조18년(1794) 8월 24일(무인)>

경제/건설

화성 성역에 소용되는 목재 운송선의 치패시 인명을 살린 사례를 논의하다.

강 남양(**南陽**) 사람 김오성(金五成)이 인명을 건져 살린 사실에 대해 수원 유수(**水原留守**)

에게 하유하여 그로 하여금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용보(徐龍輔)의 장계에, "남양 부사(南陽府使) 이익진(李翼晉)의 첩정(牒呈)에, 방금 본부 대부도(大阜島)의 약정(約正) 박흥창(朴興昌)의 문보(文報)를 보니,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에 쓸 목재를 실은 배 1척이 지난달 28일에 본부 경계에 도착하였다가 바람을 만나 치패(致敗)되어 목재와 선척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격(沙格) 등이 답판(踏板)에 올라타거나 돛을 붙잡고서 본도의 영전포(營田浦)에 도착하여 생사의 기로에 있었을 때, 동임(洞任)인 절충장군(折衝將軍) 김오성이 동민(洞民)을 모아 그들을 맞아들여 구조하였고 잃어버렸던 목재도 찾아내 건졌습니다.」 하였으므로 치패된 선척의 사격 김학기(金學起) 등을 자세히 조사하였는데, 그들이 보고에서 「저희들이 풍덕부(豐德府)에서 건져낸 떠내려갔던 목재 5주(株)를 싣고 화성을 향하였는데, 지난달 28일에 본부 계오도(鷄五島) 앞바다에 이르러 갑자기 대풍을 만나 끝내 치패되었습니다. 선척 및 재목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저희들 5명은 답판에 올라타거나 돛을 붙잡고서 물결을 따라 표류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김오성이 위급한 때에 앞장서서 구조한 데 힘입어 인명이 전부 살아났고 재목도 모두 건져 낸 것이 과연 확실합니다.」 하였으니, 김오성이 인명을 구조해 살리고 재목을 건져 낸 것이 참으로 대단히 가상한 일입니다. 재목은 따로 감색(監色)을 정하여 즉시 성역소(城役所)에 실어 바치게 하라는 뜻으로 엄히 신칙하여 제사(題辭)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성역에 재목을 나를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내 살린 것이 비록 법전에서 기록된 인원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장계로 보고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이에 낱낱이 거론하여 급히 장계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대단히 가상하다. 남양 사람 김오성의 일에 대해 유수에게 하유하여 그로 하여금 사실대로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南陽人金五成拯活事實下諭于水原留守處使之狀聞

목 京畿監司 徐龍輔狀啓以爲南陽府使 李翼晉牒呈內卽接本府大阜島約正朴興昌文報則華城城役所用材木所載舡一隻去月二十八日來到本府境逢風致敗材木與舡隻不知去向沙格等或騎踏板或着帆席轉到於本島營田浦死生未分之際洞任折衝金五成聚集洞民接應救活而所失材木亦爲搜拯云故詳細査問於敗舡沙格金學起等處則所告內渠等逢載豐德府所拯漂失材木五株運向華城去月二十八日到本府鷄五島前洋忽遇大風竟至致敗舡隻及材木不知去處渠等五名騎板着帆隨波漂蕩矣幸賴金五成之急難奔救人命全活材木準拯果爲的實云金五成之人命救活材木拯得誠極嘉尙材木則別定監色卽爲運納於城役所之意嚴飭題送城役輸材時拯活者雖未滿法典內名數必爲狀聞事旣有成命故玆以枚擧馳啓敎以極爲可嘉南陽人金五成事下諭于留守處使之據實狀聞

<일성록, 정조18년(1794) 9월 10일(무인)>

경제/건설

화성(華城) 팔달산(八達山) 장대(將臺)의 상량문(上樑文)을 보내다

강 화성(華城) 팔달산(八達山) 장대(將臺)의 상량문(上樑文)을 보냈다.

목 ○ 상량문은 다음과 같다.

"기내(畿內) 땅 천 리에 사는 백성들이여, 화합하여 새 도읍에 모였도다. 삼군(三軍)을 지휘하는 장수를 빼앗지 못함이여, 멀리 높은 장대가 서 있기 때문이네. 지금 누가 우리를 엿보겠는가. 중임을 맡을 자는 장수로다. 화성의 지세(地勢)여, 실로 우리나라의 관문이자 요새로다. 산하가 신령함을 드러내니 완연히 용과 봉황이 춤추는 임안(臨安)과 같고, 부로(父老)들이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니 마치 구령(緱嶺)의 생학(笙鶴) 소리 듣는 듯하네. 큰 나라

의 병풍이 되어 북쪽의 도성과 대궐이 멀지 않고, 겹으로 문을 내고 도적에 대비하니 삼남(三南)의 배와 수레가 모두 이르렀네. 아득히 산 높고 물 맑음이여, 김 장군(金將軍)의 굳센 혼백이 있는 듯하네. 오래되었도다. 하늘이 아끼고 땅이 감추어 둠이여, 유 처사(柳處士)의 뛰어난 식견이 귀신과 같네.

아, 우리 성명(聖明)께서 원대한 책략을 넓히심이여. 구름과 안개 자욱하여 땅 위 가득한 여염집에서 솟아오르고, 바람 불고 햇살 퍼지자 도성에서 연달아 조칙(詔勅)이 내려오네. 3리의 내성(內城)과 7리의 외성(外城)이여, 나라에 큰일 없을 때 처음으로 신묘한 계략을 내어 만들었네.한 명이 성문을 지키면 만 명이라도 열 수 없으니, 마치 강물이 흐르듯 나라의 복록이 이어지네. 이에 내탕금(內帑金)을 내리자 천군(千軍)이 뛸 듯이 기뻐하였고, 산에서 돌을 캐자 만 개의 돌덩이가 쏟아져 나왔네. **용연(龍淵)**에서 부는 서늘한 바람은 **성역(城役)**에 동원된 인부들의 비 오듯 흐르는 땀을 식혀 주었고, 구포(鷗浦)의 물결 잔잔하여 바다가 구름을 찌를 듯한 큰 재목을 바치는 것 같았네. 1천 개의 성가퀴 우뚝 솟아 나라의 위세와 함께 드높고, 1만 개의 몽둥이 튀어 올라 성을 다지자 뭇사람의 마음 붙잡아 함께 완성하였네. 편안할 때에도 위태로울 때를 잊지 않는 것이 귀하니 어떻게 하면 수성(守城)의 요점을 얻을 수 있는가. 어린아이 부르듯이 장수를 불러 어찌 한 태조(漢太祖)가 한 것처럼 하겠는가. 한번 물어보세, 대장을 맡을 자가 누구인가. 표요교위(驃姚校尉) 곽거병(霍去病)을 이곳에 있게 해야 할 것이네.

아, 팔달산 위를 바라보니 길이가 천 명의 장사가 앉을 만하네. 양치(楊峙)의 먼 들판 아득하지만 말과 소 오가는 모습 또렷이 알 수 있고 사둔(莎屯)의 녹음 푸르러 어리진(魚麗陣)과 조익진(鳥翼陣)을 배치한 듯 은은하네. 석성산(石城山)의 외로운 봉화는 매일 밤 평안함을 알리고 웅진(雄鎭)인 남한산성(南漢山城)은 천 년 동안 기각지세(掎角之勢)를 이루네. 사방으로 통하는 길［康］과 오방으로 통하는 길［莊］도 모두 손으로 가리킬 수 있고, 전군(前軍)과 후군(後軍)도 한 손 안에 들어오네. 예로부터 산을 먼저 점거한 자에게 공(功)이 있으니 어찌 장수를 잘 고르지 않고 적을 상대할 수 있겠는가. 우뚝 솟은 **화산(花山)**은 연화대(蓮花臺)를 깎아 만든 듯하고, 돌아 흐르는 **유천(柳川)**은 세류영(細柳營)에 진을 설치한 일이 생각나게 하네.

안개 낀 높은 곳에 마침내 깃발 날리고 북소리 울리는 높은 대를 쌓았네. 푸른 깃발과 붉은 깃발이 일렁이는 해와 별을 서로 비추고, 구름 타고 오르는 용 깃발과 바람 일으키는 호랑이 깃발이 빛을 내며 나부끼네. 외방을 막기 위해 중앙에 자리하고 부월(鈇鉞)을 짚고서 좌우를 둘러보네. 높은 곳에 올라 먼 곳을 바라보고 금단(金壇)에 기대어 주선하네. 생문(生門)과 사문(死門)으로 기이하게 변하는 용병술은 예측할 수 없고, 육벌(六伐)과 칠벌(七伐)로 적을 공격하니 기린각(麒麟閣)에 초상이 그려질 날을 기약하네. 백우선(白羽扇) 휘두르니 아기(牙旗) 세우고 호각 부는 시끄러운 소리 들리지 않네. 어가(御駕) 지나는 길이 곧으니 행차의 피리 소리 듣고 깃발 보면서 기쁘게 고하네. 바람에 흔들리는 초목도 그 위엄을 알고 산속의 명아주나 콩잎도 캐지 못하네. 대사(大事)를 부탁해 한 방면을 담당하니 조정에서 의지하고 믿는 것이 어떠하겠으며, 용맹한 군사 얻어 사방을 지키니 국가의 안위가 여기에 달려 있네. 어찌 당(唐)나라에서 선대의 능침을 돌본 것처럼 할 뿐이겠는가. 또한 주(周)나라 낙읍(洛邑)처럼 편안히 다스려야 할 것이네. 어느덧 집채가 우뚝하고 더욱더 명성과 위엄이 엄연하네. 높은 산 가파른 계단을 힘들이지 않고 칼을 짚고 오르니, 화려한 장대(將臺)가 높고 군사 지휘하는 자리도 편안하네. 산과 계곡 험준하여 안팎의 동정을 모두 알 수 있고 도랑은 깊고 성첩(城堞)은 높아 세세한 것까지 두루 살필 수 있네. 재주 있는 관원

이 용기를 내어 군사 앞에서 기예를 펼치고 군사들은 한마음으로 장대 위에 정신을 모으네. 지척 거리의 선침(仙寢)에서는 아름다운 기운이 언제나 일어나는 것을 오랫동안 볼 것이고, 아침저녁으로 행궁(行宮)에서 곳곳에서 상서로운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매양 가리키네. 삼가 병학(兵學)을 기록하여 대들보 올리는 소리를 돕네.

이영차 들보 동쪽에 떡을 던져라 / 兒郎偉抛樑東
동영(東營)의 아침 해 돋자 북소리 힘차고 / 春營朝日鼓聲雄
건장한 사내 참알(參謁)하며 신수를 자랑하니 / 健兒參謁誇身手
지취(志趣)는 허리춤의 오석궁(五石弓)에 있다네 / 意氣腰間五石弓
이영차 들보 서쪽에 떡을 던져라 / 兒郎偉抛樑西
하늘과 푸른 바다 끝없이 펼쳐졌고 / 浮天滄海失端倪
악인이 감히 봄 물결 일으키지 못하니 / 鯨鯢不敢春吹浪
긴 밤 누선(樓船)에 목성이 낮게 떴네 / 永夜樓船木宿低
이영차 들보 남쪽에 떡을 던져라 / 兒郎偉抛樑南
독성산의 나무에 해 질 녘 구름이 걸렸고 / 禿城山木暮雲參
일찍이 세자의 수레가 지나갔던 곳에서 / 曾經鶴駕從容處
백성들이 지금까지 흐르는 눈물 삼키네 / 民到于今涕淚含
이영차 들보 북쪽에 떡을 던져라 / 兒郎偉抛樑北
비 오지도 않았는데 어찌 홍예교의 그림자 곧게 섰는가 / 不雨何虹橋影直
성 머리에 징 소리 풀피리 소리 그치지 않으니 / 城頭不盡鐃笳聲
군문의 승전곡임을 알겠네 / 認是轅門勝戰曲
이영차 들보 위쪽에 떡을 던져라 / 兒郎衛抛樑上
전쟁 기운 사라지고 햇빛이 밝고 / 兵氣消爲化日朗
구름 속 선인의 춤추는 소매 한가로우니 / 雲裏仙人舞袖閒
거문고 안은 선녀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마주 보네 / 抱琴玉女嬌相向
이영차 들보 아래쪽에 떡을 던져라 / 兒郎偉抛樑下
가벼운 옷에 허리띠를 느슨히 매고서 한가롭게 지낼 때가 많고 / 輕裘緩帶多閑暇
명령이 지엄한 거리에는 다니는 사람이 적으니 / 令嚴街路少人行
밝은 달 떠오르자 격탁 소리 그치네 / 明月懸空擊柝罷

삼가 바라노니, 상량한 뒤에는 성루(城壘)의 정채(精彩)가 돌고 금성탕지(金城湯池)같이 견고한 성곽의 위세를 더하리라. 동도(東都 낙양)와 서도(西都 장안)가 천하를 진정시킴이여, 푸른 숭산(崇山)과 맑은 위수(渭水)요, 남군(南軍)과 북군(北軍)이 천문(天文)에 응함이여, 현무(玄武)와 구진(鉤陳)이로다. 무고(武庫)가 연이어 뻗으니 모두 한(韓)의 강한 활에서 나오고, 인정(仁政)이 널리 퍼지니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로 무장한 적을 맞서 싸우게 하리라. 음기(陰氣)가 닫히고 양기(陽氣)가 열려 장수가 거듭 명령하고 신칙하는 것을 들을 것이고, 강이 맑고 바다가 잔잔하여 만대토록 밝은 임금을 받들 것이다."

영중추부사 채제공이 지어 바치고 이어서 써서 바치자 내각으로 하여금 경기 감영에 내주어 그날로 **화성유수**에 전해 주게 하였으니, 장대의 상량식이 내일이기 때문이다.

강 齎送**華城** 八達山將臺上梁文

목 上梁文千里所止維民和會新大邑三軍不可奪帥迢遞臨高臺今此孰敢侮予其所托重者將曰惟**華城**地勢實爲靑丘關防山河效靈宛是臨安龍鳳之舞父老掩泣如聞綏嶺笙鶴之聲大邦維屛直北之城關匪遠重門以待三南之舟車竝臻漠然山高而水淸金將軍之毅魄如在久矣天慳而地秘柳處士之隻眼若神

猗我聖明克恢遠略雲委霧集湧出撲地之閭閻風揮日舒絡繹自天之綸綍三里城七里之郭創神機於迨天未陰一夫當萬夫莫開綿國祚於如川方至於是損帑金而千軍曲踊斲山石而萬顆爭來龍淵送涼役丁收成雨之汗鷗浦息浪海若獻干雲之村千堞崢嶸與國勢而竝峙萬杵騰躍攬衆心而共成所貴安不忘危何以守之得要如呼小兒拜寧或漢太祖與同借問大將誰宜令霍驃姚在此奧瞻山八達其上可坐長千夫之雄楊峙之迥墜蒼茫馬去牛來之歷歷可辨莎屯之邃檻蔥菁魚麗鳥翼之隱隱如排石城孤烽報平安於每夜南漢雄鎭作猗角於千年四達謂康五達謂莊盡入指點之際前軍曰茅後軍曰殿不出掌握之中古來先據山者有功豈可不擇將而予敵花山崒嵂怳若蓮花臺削成柳川瀅瀎尙想細柳營制置乃於烟嵐高處遂築旗鼓崇臺翠蕤紅旃蕩日星而相照雲龍風虎振光耀而交廻制外居中仗鈇鉞而顧眄登高望遠倚金壇而周旋生門死門豹韜之奇變莫測六伐七伐麟閣之丹靑有期白羽扇揮不聞喧於建牙吹角靑繩路直相告欣於聽籥瞻旄風前之草木知名山中之藜藿不採屬大事當一面朝廷之倚毗何如得猛士守四方王國之安危斯係夫奚但唐奉先灑掃抑亦爲周洛邑保釐於焉棟宇之屹然益復聲威之儼若丹梯縹緲不勞仗劍而登華構崔嵬且安運籌之坐山谿險固表裏全體之無不諳溝堞深崇傍曲纖毫之皆可悉村官賈勇逞枝藝於軍前衆旅同心湊精神於臺上仙寢咫尺長瞻佳氣之無時無行宮暮朝每指祥雲之起處起恭疏軍旅之學助擧兒郎之呼兒郎偉抛樑東春營朝日鼓聲雄健兒參謁誇身手意氣腰間五石弓兒郎偉抛樑西浮天滄海失端倪鯨鯢不敢春吹浪永夜樓船木宿低兒郎偉抛樑南**禿城**山木暮雲參曾經鶴駕從容處民到于今涕淚含兒郎偉抛樑北不雨何虹橋影直城頭不盡鐃笳聲認是轅門勝戰曲兒郎衛抛樑上兵氣消爲化日朗雲裏仙人舞袖閒抱琴玉女嬌相向兒郎偉抛樑下輕裘緩帶多閑暇令嚴街路少人行明月懸空擊柝罷伏願上樑之後彩變壁壘勢增金湯東西都之鎭坤維碧嵩淸渭南北軍之應天象玄武鉤陳武庫運延皆從出韓之强弓勁弩仁政旁達可以撻秦之堅甲利兵陰閉陽開聽元戎五申三令河淸海晏奉明主萬歲千秋領府事**蔡濟恭**製進仍爲書進使內閣出付畿營使之當日傳致于**華城留守**以將臺上樑在明日也

<일성록, 정조18년(1794) 9월 15일(기해)>

경제/건설

화성의 공역 문제를 논의하다

강 성정각에서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 우의정 이병모(李秉模), 유사 당상 심이지(沈頤之)·윤행임(尹行恁), 제주 목사(濟州牧使) 이우현(李禹鉉)을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박 판부사(朴判府事)가 몇 해 전에 관록(館錄)을 행한 뒤로 경과 서로 화합하지 못했던 것은 대개 경이 올린 상소의 한마디 때문이었다. 어찌하여 돌을 던져 쥐를 잡으려다가 그 옆에 있는 그릇을 깰까 염려하지 않는 것인가. 지난번 전교에서 마땅치 않은 점이 여러 가지라고 한 것은 이미 은미한 뜻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그 일은 유사(有司)를 맡은 신하도 모르는 것인데 어찌 스스로를 피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틀림없이 우상이 조만간 박 판부사를 만날 방도가 있을 것이니, 이번 사행에서 반드시 지난번 당전(唐錢)을 사 오는 일로 나라를 욕되게 한 잘못을 씻으라는 뜻으로 연석의 하교를 전하도록 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영부사(領府事)는 언제 출발하는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성묘하도록 특별히 허락해 주셨으니 성덕(聖德)을 흠앙합니다만, 다시 생각건대 공(公)과 사(私)에 차이가 있으므로 감히 마음대로 떠날 수가 없습니다. 또 삼가 좌상의 상소에 대해 내리신 비지(批旨)를 보건대 민폐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내년 봄에 내려갈 생각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의 행차는 비록 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틀림없이 유익한 점이 있을 듯한데 경의 말이 이러하니, 내년 봄에 행행할 때 그대로 **화성(華城)**에서 뒤처져

서 귀향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화성**의 **성역(城役)**은 현재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성문(城門)이 이미 완성되었는데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굉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

강 召見領府事 **蔡濟恭** 右議政 李秉模有司堂上沈頤之 尹行恁 濟州牧使 李禹鉉于誠正閣

목 (…) 予曰朴判府自年前館錄之後與卿不相合者蓋以卿疏中一句語也雖欲投鼠獨不念忌器乎向來傳敎中不概之多端云者已示微意矣本事有司之臣亦所不知則豈非自家之疲然處乎右相必有從近相逢之道以今行必洗向來錢事之辱國之意傳之筵敎可也予曰領府何日發行耶**濟恭**曰特許省楸欽仰聖德而更思則公私有異不敢擅離且伏見左相批旨則民弊不可不念明春下去爲計矣予曰卿行雖云有弊似必有益而卿言旣如此明春幸行時仍自**華城**落後下鄕亦似好矣**華城城役**方至何境耶**濟恭**曰城門則已成自南來者皆云宏壯矣 (…)

<일성록, 정조18년(1794) 9월 17일(신축)>

경제/건설

화성 공역의 문제를 살피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 약원 제조 서유방(徐有防), 호조 판서 심이지(沈頤之) 및 하직하는 수령 이여충(李汝忠)을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은 어찌 되어 가는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성루(城樓)를 새로 완성하자 눈부시게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높이는 경성(京城)의 동문보다 높고 7칸의 홍예(虹蜺)는 또한 경성보다 2칸을 더했는데, 신이 북문에서 낙성연(落成宴)을 베풀고 2층 누대에 올라 보니 아득히 천상에 앉아 있는 듯하였습니다. 장대(將臺) 역시 이미 일을 마쳤는데, 신이 올라가서 둘러보니 사방 20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마치 눈앞에 있는 듯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근래의 일들은 또한 역량을 발휘하였다고 할 만하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당초에 신들의 천박한 견해로는 아득히 갈피도 잡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몇 달 안에 누대(樓臺)와 치첩(雉堞)이 하루도 못 되어 완성된 것처럼 세워졌습니다. 무릇 경영하고 구획하는 방도가 전하의 심중에서 나오고 오직 결단하여 완성하셨으니, 신들은 흠앙해 마지않습니다." 하였다. (…)

강 召見領府事 **蔡濟恭** 藥院提調 徐有防 戶曹判書 沈頤之及下直守令李汝忠于誠正閣

목 (…) 予曰**華城城役**何如**濟恭**曰城樓新成煌然改觀矣其高高於京之東門而七間虹蜺又加於京城二間臣爲落成宴於北門登二層累沓然如坐上矣將臺亦已畢役臣登覽則四方二十里往來之人如在眼前矣予曰近日事亦可謂有力量矣**濟恭**曰以臣等當初賤見茫然若無就緖而數月之內樓臺雉堞有若不日成之者然凡所以經營區劃之方出自聖心惟斷乃成臣等不勝欽仰萬萬之至 (…)

<일성록, 정조18년(1794) 10월 8일(임술)>

경제/건설

화성 공역의 문제들을 논의하다

강 경모궁(景慕宮)에 나아가 전배하고, 대신(大臣)과 비변사 당상 및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을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오늘 여기서 경들을 인견하는 것은 **화성(華城)**의 성 쌓는 일에 대해 묻고자 해서이다. 당초 **성역(城役)**을 시작한 것은 본부가 소중한 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결정하여 공사를 시작한 것인데, 지금 돌이켜 생각건대 전에 없던 흉년을 만나 백성들 사정의 황급함이 가을, 겨울에도 이와 같으니 내년 봄의 사정을 알 만하다. 지난번

위에서 스스로 어공(御貢)을 절감하는 일을 가지고 연석에서 하문하였던 것은 대개 진실로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할 수 있는 방도를 다해야 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나는 성역을 정지하는 것이 현재 황정(荒政)의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 공사는 민력을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품삯을 주고 역군(役軍)을 고용하는 것이니 흉년에 먹을 것 없는 백성들이 도리어 이에 힘입어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중지한다면 저 인부들의 실망이 오히려 심할 것이다. 또 이 성은 소중한 점이 있으니 사소한 일로 갑자기 공사를 중지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한다.
그러나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소중한 것으로 말하자면 실로 원소(園所)의 공사와 차이가 있고, 또 품삯을 주고 역군을 고용하기 때문에 비록 민사(民事)에 방해가 없다고 하지만 혹독한 추위와 더위에는 한결같이 공사를 감독하기 어려우니, 여름 동안 특명으로 공사를 정지했던 것은 진실로 이 때문이었다.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 여러 도에 흉년이 들고 백성들의 사정이 황급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부세를 견감하여 보살펴 줄 대책을 강구하고 한편으로는 공사를 일으켜 운반하고 쌓는 일을 행한다면 결국 이는 행해질 수 없는 정사가 될까 걱정된다. 더구나 백관의 녹봉과 군병의 봉급 때문에 앞으로의 경비가 구차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지금의 성역이 비록 경비와 상관없지만 또한 이것을 미루어 저것에 보태는 일이 없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른 바 공사를 정지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공사를 정지하자는 것이 아니다. 들으니 남문과 북문의 공사는 자못 두서가 잡혔다고 하니 내년 봄 현륭원에 행차할 때가 되면 거의 공역을 마칠 수 있을 것이다. 이 공사를 마친 후 일단 정지하여 간역(看役) 및 역군과 공장(工匠)들로 하여금 1, 2년 동안 휴식하게 해서 재물이 모이고 민력(民力)에 여유가 생기거든 그런 뒤에 다시 공사를 시작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간역과 공장들 역시 바꿀 필요 없이 옛날 맡았던 일을 그대로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모두 시종 혜택을 입게 한다면 어찌 마땅하지 않겠는가. 나의 소견은 이와 같지만 또한 자신할 수 없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백성을 위하는 성의가 이처럼 간절하니 신은 너무도 흠앙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에 이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현재 공장과 모집한 역군은 팔도에서 모여든 자들인데, 지금 만약 돌려보낸다면 몇 년 후에 다시 모으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또 지난번에 서산(瑞山)의 백성 30명이 대오(隊伍)를 이루고 자원하여 성역에 나와 앞으로 입에 풀칠하고 몸을 의탁할 곳으로 삼았으니, 그들에게는 명줄에 관계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역을 중지하고 돌려보낸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낭패가 어떠하겠습니까. 이로써 보면 성역도 흉년을 구제하는 한 가지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를 세내어 돌을 운반하고 시설한 것이 적지 않은데 갑자기 중지한다면 훗날 들어가는 물력이 반드시 처음보다 배가 될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백성들이 모두 성역은 결코 중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유수 역시 큰 역사를 이미 시작했다가 갑자기 중간에서 그만두면 도리어 좋지 못한 말이 들릴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지금 국가나 개인이나 모두 재력이 결핍된 시기를 만났으니, 급하지 않은 일로 그만둘 수 있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 공사를 어찌 급하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마는 당초 10년을 기한으로 잡았으니 반드시 시일이 급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공장과 모군들이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하니, 좌의정 김이소(金履素)는 아뢰기를, “전하께서 백성을 걱정하는 성념에 신은 참으로 흠앙해 마지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역은 흉년에 조금도 장애가 되지 않으니 품삯을 주고 역군을 고용하였으므로 백성들은 노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영부사의 말을 들으니, ‘서산의 백성들은 자원하여 성역에 나와 앞으로 의탁할 생계로 여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역은 장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기민을 구휼하는 중요한 방법이 되니, 어찌 정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이병모(李秉模)는 아뢰기를, “성역은 소중한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의 형세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중지하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나누어 줄 녹봉이 부족한 것은 근심스럽지 않은 일이 아니지만 저것과 이것을 구획하는 것은 각기 다른 일입니다. 신이 참으로 깊이 생각하고 자세히 헤아려 보니, 성역을 일으키는 것은 흉년에 조금도 해로움이 없습니다.”
하였다. 행 사직 김지묵(金持默), 좌참찬 홍수보(洪秀輔), 행 사직 정호인(鄭好仁), 행 부사직 조종현(趙宗鉉), 병조 판서 구상(具庠), 행 부사직 서유방(徐有防), 예조 판서 민종현(閔鍾顯), 공조 판서 서정수(徐鼎修), 형조 판서 이득신(李得臣)이 아뢰기를, “남문과 북문은 머지않아 공역을 마칠 것이니 공비(工費)를 아낄 수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일의 체모로 말해 보면 막중한 큰 공역을 중간에 그만둘 수 없고 이해(利害)로 말해 보면 흉년에 고생하는 백성들이 여기에 의지하여 생계를 꾸려 가고 있으니, 대신의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일개 성(城)의 이해를 감안하여 말하면 비록 이와 같지만 일국(一國)의 이해를 감안하여 총괄적으로 논하면 그것이 어떨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하니, 행 부사직 이재학(李在學)은 아뢰기를, “성상께서는 성역이 흉년에 장애가 된다고 걱정하시어 반드시 중지하려 하십니다. 신의 생각에도 지금 우선 역사를 중지했다가 몇 년 동안 기다려 재물이 모이고 민력이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성역을 일으켜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하고, 행 부사직 심환지(沈煥之)는 아뢰기를, “신은 성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직접 보지 못했고 또 물력을 어떻게 계획하여 시행하는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감히 억지로 의견을 진달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한성부 우윤 서유신(徐有臣)은 아뢰기를, “백성을 걱정하는 간절한 성념으로 이렇게 성역을 정지하는 일로 하문하시니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지당합니다. 신의 소견으로는 역사를 정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행 부사직 조진관(趙鎭寬)은 아뢰기를, “주자(朱子)의 말에, ‘역사(役事)를 일으키는 것도 기근을 구휼하는 정책이 된다.’ 라고 하였으니, 흉년에 일으키는 성역은 백성들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나 또한 적임자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흉년에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지만 주자의 말은 재력이 여유가 있을 때를 말한 것이다. 만일 재력이 부족하다면 어찌 시행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였다.
예조 참의 윤행임(尹行恁)이 아뢰기를, “성역은 당초 7, 8년을 기한으로 잡았으니, 지금 흉년을 만나 백성을 걱정하는 성념으로 1, 2년 동안 잠시 중지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승지와 삼사(三司)도 소견을 진달하도록 하라.” 하니, 승지 이유경(李儒慶)은 아뢰기를, “성역에 들어가는 물력은 경상 비용을 사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 흉년이라고 하여 정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집의 허질(許晊)은 아뢰기를, “성역을 정지하는 것이 편리한지의 여부에 대해 신의 생각은 백성들에게 물어보아서 백성들이 기꺼이 역사에 나오겠다고 하면 정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대신(臺臣)의 말은 사리에 어둡다.” 하니, 교리 윤

광보(尹光普)와 정언 최시순(崔時淳)이 아뢰기를, “성역은 실로 흉년을 맞아 고단한 백성들이 입에 풀칠을 하는 기반이 되니 중지하는 것은 불가할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의론이 대략 고르지 않구나.” 하니, 이병모가 아뢰기를, “의론이 고르지 않은 점은 참으로 좋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그렇다. 비록 그렇지만 나는 한마디로 요약하여 성역을 중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일찍이 아침저녁으로 생각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서 재화를 운용하는 도리는 중국과 차이가 있다. 중국은 재화가 샘물처럼 유통되어 온 나라에 두루 퍼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용이 실로 부족하니 어떻게 억지로 장담할 수 있겠는가. 지금 성역을 정지하자는 의논이 나라의 재용에 반드시 보탬이 되지는 않더라도 백성의 생활에는 어찌 이로움이 없겠는가. 당초 내가 금위영과 어영청의 번전(番錢)을 정봉(停捧)하는 계획을 설행했는데 그 계획이 과연 고(故) 처사(處士)의 말과 합치하였으니, 비록 추측이 들어맞은 것이지만 참으로 또한 기이하였다. 그러나 금위영과 어영청이 10년 동안 모은 36만 냥을 이미 모두 가져다 사용했으니, 필경에는 어찌 숫자를 채우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균역청에서 빌려 쓴 것도 이미 많으니 다시 앞으로 어디서 가져다 쓸 것인가. 경들은 모름지기 재화를 마련할 방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하라.”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화성유수(華城留守)**의 말을 들으니, 20만 냥을 가용(可用)하면 성역을 마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당초 성역을 시작할 때는 20만 냥으로 역사를 마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들어간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근래 들으니 성 1칸을 쌓는 데 들어가는 돈이 1000냥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으면 깎고 또 깎아도 40만 냥 이상이 들어가야 완공을 기대할 수 있는데, 이 돈을 장차 어떻게 마련해 내겠는가. 영부사는 선입견을 고집하지 말고 모름지기 다시 심사숙고하도록 하라.
대저 그 지역은 모래와 돌이 많고 토질이 척박하여 돌을 떠내고 개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시험 삼아 경작하게 한 것이 수십 섬지기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 만일 몇 자까지 한정하여 부토(浮土)를 걷어 내고 백성이 경작하게 하면 10년이 되기 전에 비옥한 들이 되고 또 100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테니, 오래지 않아 **화성**에 들어가는 물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양잠은 농사의 기반이니 뽕나무를 많이 심어 의식(衣食)의 근본으로 삼는다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나는 나의 의견을 감히 자신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화성**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자나 깨나 늘 고심하는 것이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성역을 정지해야 한다는 말은 마땅하지 않은 듯합니다. 신이 **화성유수**로 있을 때 경영하여 마련해 놓은 물력이 체차되어 돌아온 뒤에 모두 소진되었고 새로 부임한 유수가 들인 물력이 또다시 이와 같으니, 이런 관점에서 말해 보면 역사를 정지하는 것이 어찌 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병모가 아뢰기를, “역사를 정지했다가 다시 시작하면 그 손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손실이 비록 많겠지만 이득은 반드시 곱절이 될 것이다. 외면적으로 말하면 역사를 정지하는 것이 구황 정책에 손익이 없을 듯하지만 말하지 않는 가운데 또한 백성들에게 이익이 있을 것이다. 또 일의 공효로 말하더라도, 초목을 헤치고 궁실을 짓는 것은 큰 역사인데 만일 단단히 마음먹고 역사를 일으켰다가 1, 2년 안에 급하게 마무리 짓게 되면 먼 훗날을 내다보는 계획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진주성(晉州城)은 고(故) 상신(相臣) 유성룡(柳成龍)이 중국의 성제(城制)를 모방하여 쌓은 것인데, 그 유고(遺稿)를 보

면 그의 재지(才智)와 역량은 실로 후인들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화성**의 제도 역시 진주성을 모방하여 견고하고 완전무결함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기대하려는 것이니, 어찌 급급하게 역사를 감독하여 오직 속히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는가. 만일 고 상신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반드시 내 말이 옳다고 했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문루(門樓)는 명랑(明朗)하던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명랑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지난번에 유수의 말을 들으니, '기와를 인 것이 도성의 문루만 못하고 재목이 쉬 상합니다.' 라고 하면서 허물을 와장(瓦匠)에게 돌렸는데, 이것이 어찌 와장의 죄이겠는가. 도성의 문루는 처마의 길이가 8, 9자 정도인데 이 문은 처마가 짧다고 하니 이는 일을 맡은 사람이 공역을 제대로 감동하지 못한 결과이다. 천거(川渠)는 참으로 성지(城址)에 장애가 없는데, 홍예(虹蜺)가 과연 석교(石橋)보다 좋던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석교보다 좋았습니다." 하였다.

내가 채제공에게 하교하기를, "성문과 장대(將臺)의 편액은 경이 모름지기 유의해야 할 것이다. 성역을 중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봄의 원행(園行) 때를 기다려 의논을 정할 것이니 경들은 모름지기 다시 생각하도록 하라. 나는 고집을 버리고 사람들의 말을 따를 것이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비록 만리 밖을 환히 살피시지만, 신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재삼 생각하시어 내년 봄 동가할 때가 되거든 친히 살펴보신 뒤에 결정하소서." 하였다. (…)

강 詣景慕宮展拜召見大臣備堂及領府事 **蔡濟恭**

목 (…) 予曰今日引見卿等於此者蓋欲問**華城城役**事也當初**城役**之創施爲本府之有所重也故決意始役而顧今歉荒無前民情遑急秋冬如此則來春可知向者以上自御供節減之事詢及筵中蓋出於苟利於民靡不用極之意予則以爲**城役**之停止爲目下荒政之一大先務也人皆曰是役也不煩民力給價雇軍荒歲無食之民乃反賴此而糊口今若中止則役夫輩之失望反有甚焉且是城也所重有在不可以些少事端遽然停止吾意則不然以所重言之則實有間於園所之役且給價雇軍雖曰無妨於民事而祈寒盛暑有難一例董役夏間之特命停役良以此也顧今諸路告歉民情遑急一邊講蠲減懷保之策一邊行與作運築之役終恐是行不得之政況百官之頒祿軍兵之支放前頭經用苟簡可知今此**城役**雖不關於經費而亦不無推此補彼之道予所謂停役者非謂卽今停役也聞南此門役頗有頭緖趁明春園行之時則庶可訖工此役訖後姑爲停止使看役及役軍工匠輩休息一二年以待財聚力裕之後更爲始役若夫看役人工匠輩亦不必換改仍舊任使使彼輩亦皆蒙終始之惠則豈不好哉予之所見如此而亦不能自信卿等之意何如**濟恭**曰殿下爲民之誠若是懇至臣不勝欽仰然而臣意則此役之中止甚重難目今工匠及募軍輩自八路來聚今若放遣則數年之後恐難復合向者瑞山民三十名作爲一隊自顧赴役將以爲糊口庇身之所在渠輩可謂命脈所關乃以停役遣歸則於渠狼具當如何以此觀之則**城役**亦爲救荒之一端且貰牛運石施設不少而遽然中止則日後物力之入必倍於當初矣予曰民皆曰**城役**必不可止留守亦以爲大役旣始遽爾中撤則反有妨於聽聞予則曰當此公私匱乏之時凡係不急之務可已則已此役豈可曰不急之務而當初限以十年則不必時日爲急且匠募輩之旣往還來何難之有左議政 金履素曰殿下憂民之念臣誠欽頌萬萬而**城役**少無妨於歉歲給價雇軍民不知役且聞領府之言瑞山之民自顧赴役以爲賴活之計云然則是役也不惟無害反爲恤飢之要道豈可停之乎右議政 李秉模曰**城役**非但所重之有在雖以事勢言之中止實難頒祿之不足非不可悶而彼此之區劃各異臣固深思詳度**城役**之與作少無害於荒年矣行司直 金持默左參贊 洪秀輔 行司直 鄭好仁 行副司直 趙宗鉉 兵曹判書 具庠 行副司直 徐有防 禮曹判書 閔鍾顯 工曹判書 徐鼎修 刑曹判書 李得臣曰南此門非久當訖不但工費之可惜以事體言則莫重大役不可中撤以利害言則荒歲窮民賴此資活大臣之言誠然矣予曰以一城之利害言之雖如此若以一國之利害統論之則吾未知其何如也行副司直 李在學曰聖上以**城役**之有妨於荒歲爲憂必欲停之臣則以爲

今姑停役稍待數年財聚民息之後更爲興作無妨矣行副司直 沈煥之曰臣旣未能親見**城役**之至於何境且物力設施未能詳知臣不敢强爲仰達矣漢城右尹 徐有臣曰以憂民惻怛之聖念有此停役之下詢聖敎誠至當矣臣則以爲停役好矣行副司直 趙鎭寬曰朱子之言曰興役爲救荒之策荒歲**城役**有益於民而亦在任事之得人也予曰荒年興役雖曰有益而朱子之言則謂其財力之有餘也若財力不足豈不難行乎禮曹參議 尹行恁曰**城役**當初以七八年爲限則今以歉歲爲民之聖念姑停一二年似無妨矣予曰承旨 三司亦陳所見承旨 李儒慶曰**城役**物力與經費所需各異不可以歉歲停止矣執義 許晛曰停役之便否臣意則以爲詢問於民民苟樂爲之赴則不可停矣予曰臺臣之言迂闊矣校理 尹光普 正言 崔時淳曰**城役**實爲荒民糊口之資中止恐不可矣予曰議論略有參差矣秉模曰議論之參差誠好矣予曰然矣雖然予則一言以蔽之曰停役爲好予嘗夙宵思之我國用財之道與中原有異中原則貨泉流行無處不在而至於我國則財用實不足豈可强爲大談乎在國用則未必有補而於民事則豈無所益乎當初予以禁御番錢停捧之計設施而其計果合於故處士之言雖曰億中而誠亦奇矣然而兩營十年所聚三十六萬兩已盡入用畢竟則豈不能充數而均廳貸用亦已多矣更將於何取用卿等須深思生財之方**濟恭**曰向聞**華城留守**之言可用二十萬兩完役云矣予曰當初始役之時謂以二十萬兩可以完役云矣卽今所入果至幾許耶近聞築城一間所入爲一午兩云如此則雖削之又削不下四十萬兩可期完役此將何以辦出乎領府勿以先入之見爲主須更深思也大抵其地多沙石土品斥鹵浮石墾土極難予試使起耕不過數十石落今若限數尺拓去浮土使民起墾則不出十年可成沃野又可得百倍之利非久當出**華城**所入之物力矣且農桑民業之本多植桑樹爲衣食之源則豈不美哉予非敢自信已見只以事關**華城**故寤寐思量靡不用極矣**濟恭**曰聖敎誠至當而至於**城役**之停恐非得宜臣待罪**華城**時其所經營措備之物盡爲消融於遞歸後其後新留守所費物力又復如是以此言之停役豈不及害乎秉模曰旣撤還始所失甚多矣予曰所失雖多所得必倍矣以外面言之則停役似無損益於荒政而不言之中亦有利益於民者矣且以事功言之披草萊作宮室役之巨者若銳意興作草草了當於一二年之內則有非萬年之計也晉州之城卽故相柳成龍之摸倣中國城制者也見其遺稿其才智力量實非後人可及今此**華城**之制亦所以摸倣晉城而欲其鞏固全完期於永奠豈可急急董役惟以速成爲主乎若使故相在此則必後吾言矣予曰門樓明朗乎**濟恭**曰明朗矣予曰向聞留守之言則以爲蓋瓦不如都城門樓材木易傷云而歸咎於瓦匠是豈瓦匠之罪哉都城門樓簷長爲八九尺而此門則簷短云此是任事人不善董工之致也川渠則固無妨於城址而虹蜺果勝於石橋耶**濟恭**曰勝於石橋矣予敎**濟恭**曰城門與將臺扁額卿須留意也若夫停役與否當待明春園行時定議卿等須更思也予則當舍已後人矣**濟恭**曰聖人雖明見萬里臣願加聖三思待明春動駕親審後決議焉 (…)
<일성록, 정조18년(1794) 10월 19일(계유)>

경제/건설

대사헌 이득신과 화성 성역의 일을 논의하다

강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상참(常參)을 행하고, 동지사로 가는 세 사신을 소견하였다.

목 (…) 대사헌 이득신(李得臣)이 아뢰기를, "우리 성상께서 전후로 세금을 견감해 주고 백성을 구휼해 주신 은택이 이미 두루 흡족하게 미쳤으므로 여러 도의 백성들이 아마 살 곳을 잃고 떠돌 우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성의 일정한 직업 없이 놀고먹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로 구제할 방책이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 무리들을 내년 봄의 **화성(華城) 성역(城役)**에 투입하여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한다면 구황정책의 한 가지가 될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화성**의 성역은 당초 계획할 때에도 소중히 여기는 분을 위한 것이었고 오늘날 공역을 정지하려는 것도 소중히 여기는 분을 위해서이지, 실로 재이를 잠재우고자 하는 방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모군(募軍)이 받은 돈 2전 5푼으로 곡식을 사서 입

에 풀칠을 하기란 풍년에도 어려운데 하물며 흉년에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경들이 늘 흉년에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을 기민 구제책이라고 말하지만, 이른바 흉년에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일개의 지방에서나 할 구황 정책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일국(一國)의 기근을 어찌 하나의 성 쌓는 공역으로 구제할 수 있겠는가. 주자(朱子)가 남강(南康)에서 행한 고사나 범중엄(范仲淹)이 절서(浙西) 지역을 다스린 공적에서도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만약 풍년에 저축해 두었다가 흉년을 맞아 토목공사를 일으킨다면 혹 보탬이 되겠지만 밑천으로 쓸 저축이 없다면 어떻게 흉년을 맞아 토목공사를 일으킬 수가 있겠는가. 《예기》에 '제사에 하급의 희생을 쓴다.' 하였고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 '길을 손보아 고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는 모두 옛사람들이 흉년에 백성을 배려한 뜻이었다. 그러니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지금 대사헌이 말한 놀고먹는 백성들을 성역에 투입하자는 논의는 한(漢)나라 때의 형벌인 성단용(城旦舂)과 같은 점이 있어서, 무익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소요시키는 단서가 되기에 알맞다. 이것이 어찌 시행할 만한 일이겠는가." 하니, 김이소가 아뢰기를, "이는 시행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득신에게 하교하기를, "대계(臺啓)는 체모가 중하므로, 참으로 중지할 수 없는 것이면 그 설을 끝까지 주장해야 한다." 하니, 이득신이 아뢰기를, "신이 연석에서 물러난 뒤에 다시 잘 헤아려 다 진달하겠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어찌 이런 대간의 체모가 있단 말인가."

하니, 이병모가 아뢰기를, "대사헌을 추고하소서." 하였다.

내가 세 사신에게 이르기를, "경들이 사신의 명을 띠고 만리 먼 길을 떠나게 되어 내 마음이 매우 안타깝다. 부디 잘 다녀오라." 하니, 홍양호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지금 멀리 대궐을 떠나게 되어, 실로 서운한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별사(別使)들이 빌려 가는 관서(關西)의 공용조(公用條)가 10년 내에는 장차 10만 냥에 이르게 될 것이므로 이것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경들은 부디 구획(區劃)할 방도를 깊이 생각하라. 모자를 수입해 오는 것이 만약 1000척(隻)을 채운다면 모세(帽稅)도 분명 부족한 폐단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근래 변방의 금령이 해이해져 수입해 온 모자가 새 나가는 폐단이 없지 않고 모세가 축나는 것도 실로 이 때문이다." 하였다. (…)

강 御熙政堂行常參召見冬至三使臣

목 (…) 大司憲 李得臣曰我聖上前後蠲恤之惠澤已盡浹洽諸道之民庶無失所之患而至於都城游手游食之民實無濟活之策臣意則使此輩付之明春**華城城役**俾得糊口之方似爲救荒之一端矣予曰**華城城役**之當初設施蓋爲所重今日之欲爲停役亦爲所重實非出於弭災之策也夫募軍之以二錢五分買穀糊口豐年猶難況歉歲乎卿等每以荒歲興作爲救飢之策而所謂荒歲之興作指一方之救荒而言若夫一國之飢豈可以一城之役而救之乎南康之故事浙西之治績概可知矣若儲畜於豐年興作於歉歲則容有利益者而若無積儲之可資豈可興作於荒歲乎禮曰祀用下牲傳曰道途不除此皆古人荒歲爲民之意則況興作之事乎今此憲長所陳游手之民驅之**城役**云者有若漢之城朝春非徒無益適足爲擾民之端是豈可行之事乎履素曰此行不得之事也予敎得臣曰臺啓體重固不可中止須畢其說得臣曰臣當筵退後更爲商量畢陳矣予曰豈有如許臺體乎秉模曰都憲推考予謂三使臣曰卿等萬里銜命予甚悵然須好爲往還也洪良浩等曰臣等今當遠離文陛下情實不勝耿結予曰別使之貸去關西公用條十年內將至十萬兩此誠可悶卿等須深思區劃之道大抵帽子之出來若滿千隻則帽稅必無不足之弊而近來邊禁解弛故帽子之出來者不無滲漏之弊帽稅之縮良以此也 (…)

<일성록, 정조18년(1794) 10월 29일(계미)>

경제/건설

화성 공역을 정지하는 윤음을 내리다

강 화성(華城) 성역(城役)을 감독하는 여러 신하들에게 윤음(綸音)을 내려 우선 공역을 정지하게 하였다.

목 ○ 윤음에, "화성 성역은 소중한 분을 위한 것이지만 그것을 정지하는 것도 소중한 분을 위해서이다. 화성에 원침(園寢)을 봉안(奉安)하면서부터 유수부(留守府)로 승격시켜 체모를 높이고 행궁(行宮)을 설치하여 우러러보며 의지하는 마음을 붙였다. 성지(城池)를 설치한 것은 이곳이 기호(畿湖) 지방의 요충지이기 때문도 아니고 5000병마(兵馬)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이에 경사(卿士)들과 의논하지도 않았고 재정에 관해서도 그 출입을 묻지 않고서 경영하기 시작하여 이곳에 성을 쌓고 참호를 팠는데, 남북의 망루가 장차 완공을 고하게 되었다. 만일 흉년이 들지 않아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는다면 이 역사는 계속해 나갈 뿐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지금 삼남(三南)과 기전(畿甸)은 한가을에도 굶주리다 못해 이리저리 떠돌고 서북의 변방 고을에서도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자전(慈殿)과 자궁(慈宮)에 진헌(進獻)하는 물자도 자전의 전교를 받들어 정지한 판국이다. 성역이 비록 중요하다 하더라도 절로 차등이 있기 마련인데, 이것은 정지하면서 저것은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식견이 있는 자가 아니더라도 안 될 일임을 알 것이다. 더구나 진헌에 쓰이는 이 물자는 100포, 1000꿰미에 지나지 않는데도 특별히 백성들과 고락을 함께한다는 뜻을 따라서 지출을 억제함으로써 백성들의 재물로 백성들을 돕도록 한 것이거늘, 수만의 물력(物力)이 필요한 성역의 경우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성역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으면 만들어 내면 되고 황정(荒政)에 필요한 물자는 창고를 열어 양식을 풀면 되니, 이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일로 서로 관련이 없다.' 라고 말하지 말라. 한 나라의 재화(財貨)는 일정한 수가 있어서 위에 있지 않으면 아래에 있고 밖에 있지 않으면 안에 있는 법이다. 그러니 한 해 동안 경작한 농민들이 내년까지 먹고살 양식이 아니라면 바로 진휼받을 백성들이 입에 풀칠할 밑천인 것이다. 경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확하며 진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지금 '우선 너희들이 경작하는 일과 진휼받는 문제는 차치해 두고 단지 나의 성역에만 종사하라.' 라고 한다면, 인화(人和)와 지리(地利)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인군(人君)의 도리로 볼 때 아마도 옳지 않을 것이다.

내년은 다른 해와는 다르므로 기쁨을 함께 나누려는 마음에서 은택을 널리 시행하고자 힘을 써서 조세 납부와 환곡의 상환을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였다. 한편으로는 가볍게 해 주고 줄여 주어 그 부담을 덜어 주려 하면서 한편으로는 긁어내고 짜내어 성역에 보태 쓰려 한다면, 관중(管仲)을 시켜 재화를 유통시키고 유안(劉晏)을 시켜 부세를 관리하게 하더라도 백성들을 해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어찌 내가 자전의 마음으로 마음을 먹는 도리이겠는가.

설령 전곡(錢穀)을 특별히 마련해 내어서 전체적인 골격이 머지않아 훌륭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굶주려 죽게 될 근심으로 온 나라 안이 다급한 판국에 한 고을에서는 공사장 인부들의 어기여차 일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다면, 갖은 힘을 다해 처자를 부양하고 있는 백성들이 '우리 임금은 어찌하여 성 쌓는 데 쓰는 마음을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쓰지 않으며, 성 쌓는 재물을 백성들을 살리는 데로 옮겨 쓰지 않는가.' 라고 하지 않겠으며, 또 '구중궁궐의 밝디밝은 불빛은 헐벗은 백성들의 모습은 비추지 않고 채색한 성루와 성첩만

비추는가.’ 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성은 금년에 쌓다가 내년에 쌓다가 10년이 걸리더라도 괜찮지만, 백성들은 하루 굶고 이틀 굶어 30일을 굶주리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지경에 이른다면 내가 비록 중한 일이라는 명분으로 응대하고 싶어도 어찌 감히 지난날 백성들을 사랑하고 돌보시어 연로(輦路)의 벼나 보리조차 밟지 못하게 하셨던 선왕의 덕스러운 뜻을 우러러 본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의논하는 자들은 ‘흉년에 토목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실제로는 진휼을 겸하는 것이니, 주자(朱子)가 남강(南康)에서 행한 고사(故事)와 범중엄(范仲淹)이 절서(浙西)에서 행한 행적을 살펴보고서 재현할 수도 있다.’ 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일개 수령이나 일개 장수로서 한 고을이나 한 진영을 구제한 정사일 뿐이다. 지금 나는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한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으니, 가깝게는 왕도(王都)와 기전의 백성부터 멀게는 아득한 바다와 변방 지역의 노약자, 부녀자, 절름발이, 귀머거리, 벙어리까지 모두가 나의 백성이다. 굶주려 누렇게 뜬 저 많은 사람들이 이미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장사도 하지 못하여 고향을 떠나 처자식을 데리고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한 성의 역사에서 품을 팔아서 먹고사는 것마저 불가능하다면, 그곳에 이르러서 살아남을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흉년이 들면 토목공사를 일으키지 않고 하급(下級)의 희생(犧牲)으로 제사 지낸다는 말을 나는 《예기》에서 읽었고, 누대나 정자에 칠을 하거나 꾸미지 않고 궁정 내의 길을 손보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을 나는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에서 보았다. 처한 일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상도(常道)와 권도(權道)를 적절히 쓰는 것이 이와 같다.
그러니 현재 상황에서는 황정(荒政)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쭉정이 벼와 한 치의 비단이라도 견감해 줄 만한 것은 견감하여 농사짓는 밑천으로 삼게 하고 취할 만한 것은 취해서 진휼에 돌린다면 백성들이 모두 재해에서 벗어나 나도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하늘이 또 풍년이 들게 해 주어 곡식을 많이 수확하면 주(周)나라를 돕기 위해 노(魯)나라 삼교(三郊)와 삼수(三遂) 지역의 백성들까지 스스로 이르고,주나라에서 들판에 백도(百堵)를 지어 올릴 때 인부들은 즐거워하고 담장은 우뚝 솟게 된 것처럼 될 것이다. 조치가 합당하고 기상이 평온할 경우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성(城)과 함께 굳건해질 것이니, 어찌 굳이 아침에 100대의 수레에 실어 나르고 저녁에 100마리 소로 수송하면서 더운지 추운지도 가리지 않고 넉넉한지 부족한지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백성들의 힘을 고갈시키고 백성들의 재물을 소모해 가며 독촉하고 몰아붙여 미치지 못할 듯이 해야만 하겠는가. 진헌하는 물자를 정지한 것은 우리 자전과 자궁을 위해서 은혜를 펴고자 함이었고, 성역을 정지하는 것은 우리 원침(園寢)을 위해서 은혜를 펴고자 함이다. 성인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나의 말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본부의 구황 방책에 대해서는 나도 생각해 둔 것이 있다. 성에 후탁(後托)을 마련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얽혀 있는 것이나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다지는 것과도 같아서 견실하고 두텁게 하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하다. 내년 봄 지맥(地脈)이 풀릴 때를 기다렸다가 북쪽 성 밖 지척의 거리에 있는 척박한 땅을 그 깊이를 살펴서 한 길 혹은 반 길쯤 파내되 대략 100곡(斛) 정도의 씨를 파종할 만한 면적을 헤아려 정하라. 그런 뒤에 그 흙을 거두어서 성의 몸체에 붙여서 5마리의 말과 2대의 수레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널찍하게 길을 만들고, 그 땅의 동남쪽 밭이랑을 종횡으로 농지정리한 다음 깊이 갈고 자주 김을 맨다면, 척박한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정국(鄭國)이 경수(涇水)를 끌어다 대고사기(史起)가 장수(漳水)를 업(鄴) 땅으로 대서 만든 것처럼 몇천 경(頃)이나 되는 성곽 근처의 좋은 땅을 넉넉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두 해가 지나지 않아서, 삽을 메고 구름처

럼 모여들어 도랑을 터서 물을 내려보내는 장관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공사를 할 때는 임금(賃金)을 날짜로 계산해 주지 말고 져 나른 짐을 기준으로 하되 푯말을 세워 거리를 계산해서 차등을 둔다면, 힘이 센 자는 100전(錢)도 족히 취할 수 있고 힘이 약한 자도 충분히 한 몸을 의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어찌 다만 부민(府民)뿐이겠는가, 적당한 거처 없이 동서남북으로 떠돌아다니며 품팔이해서 살아가는 자들도 모두 소문을 듣고 다투어 달려올 것이다. 이들이 움집을 짓기도 하고 혹은 가게를 차려 술이나 밥을 팔아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과 바꾼다면 이 또한 홀아비와 과부에게는 이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성은 만세토록 무너지지 않을 기반이 정해질 것이고, 백성은 만여 호가 기름진 땅을 얻을 것이며, 창고에는 만 명이 충분히 먹을 양식을 저장할 수 있을 것이니, 일거에 모든 이익이 다 갖추어지는 것이다. 어찌 참으로 아름답고 훌륭한 일이 아니겠는가. 아, 너희 **화성** 성역을 감독하는 신하들은 이 유시를 잘 듣고 모두 잘 알도록 하라." 하였다.

강 下綸音于**華城城役**董工諸臣姑令停役

목 綸音若曰**華城城役**爲所重也而其停亦爲所重也粤自妥奉園寢陞留府以尊體貌置行宮以寓膽依城池之設非爲畿湖要衝之地非爲五千兵馬之衆也於是謨不及卿士財不問出入經之營之築斯鑿斯南北樓櫓行將告功苟使歲不荒民不饑是役也有進無退而已顧今三南 畿甸方秋顚連西北邊郡亦奏艱食矣殿宮獻御猶且奉慈敎而停免則**城役**雖重自有層節此停而彼不停不待識者而知其不可矣況玆獻御之用恰不過百色千緡特循投醪之義樽節支計以民補民何況**城役**物力之以萬萬計者乎莫曰**城役**所費將無作有荒政所需發倉振廩判若兩歧各無相關一國財貨只有此數不在上則在下不在外則在內若非耕民嗣歲之糧卽且賑民糊口之資不耕胡穫不賑胡活而今乃曰姑舍汝耕賑只從我**城役**云爾則人和地利之分恐不當若是明年異於他年同慶之心務欲博施稅糴之減幾半常年矣一邊輕之蠲之以紓其力一邊櫛之剔之以求其益雖使管仲通貨劉晏治賦其不厲民者幾希此豈予以慈心爲心之道乎設令錢穀特地辦出楨榦不日完美丘壑之憂方急於八路呼邪之聲不撤於一府則惟彼盼盼然保抱瑣尾之民其不曰吾君何不以築城之心施之保民築城之財移之活民云乎又其不曰九重光明之燭不照於鶉衣鵠形而偏照乎粉樓雉堞云乎又其不曰城可使今年築明年築拖至十年民不可使一日飢二日飢忍及三旬云乎到此予雖欲以所重應之亦曷敢不仰體昔年愛恤元元勿踐輦路禾麥之德意乎議者以爲歉年興作實兼賙恤朱夫子 南康故事范仲淹 浙西已跡可按而復也此特一守一帥救得一郡一鎭之政耳今予以一國之君臨一國之民邇而王都甸服遐而溟渤塞漠老穉婦孺跛躄喑聾莫非予赤子旣不能使彼百千萬頷頤之類不農不商離土離鄕襁至岔集受傭仰食於一城之役則所至而所活者當爲幾箇人口役力不興祀以下牲予聞於禮臺榭不塗道途不除予見於傳小大經權之間隨處異用有若是矣爲今之道莫如聚會精神於荒政一事雖稊米寸帛之微可蠲者蠲可取者取或資於耕或歸之賑瘡痍畢起衽席快安而天又降康多黍多稌魯郊之三燈自至周原之百堵皆作役夫欣欣崇墉仡仡使做措便當氣象舒泰衆心所向與城俱固何必朝運百車暮輸百牛不問寒暑不顧饒乏竭民力耗民財督之迫之有若不及也哉獻御之停爲我殿宮而敷惠也**城役**之停爲我園寢而敷惠也聖人復起決知其不易予言然本府捄荒之策予亦有料量者存夫城之有後托猶木之蟠根屋之築址不可不堅且厚也明矣容待來春地脈融解之際若於北城外咫尺斥鹵之壤相其淺深鑿得一丈或半丈量定約播百斛之經界然後收其土粘付城身俾容五馬兩軌卽其地橫縱東南之畝深耕而易耨則瘠可使肥磽可使沃而贏得如鄭涇史鄴之幾千頃負郭良田不出一二年將見荷鍤成雲決渠降雨之美而方其役也雇直不以日而以負立表計遠近而差等則强者優取百錢弱者足庇一身此豈特府民往南北東西之不適有居傭保資生者皆可以聞風爭趨而或窖或肆爲酒爲食以其所有易其所無亦矜寡之利夫如是則城則奠萬世不拔之基民則獲萬家如膏之地倉則貯萬人足食之糧一擧而衆美具豈不誠休且美哉咨爾**華城城役**董工之臣靜聽此諭咸須諦悉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1일(을유)>

경제/건설

화성의 공역의 문제를 논의하다

강 희정당(熙政堂)에서 대신(大臣)과 비변사 당상 및 윤대관(輪對官)을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수원 유수 조심태(趙心泰)**에게 이르기를, "지난날 경모궁(景慕宮)에서 재계를 할 때 **화성**의 역사(役事)와 관련하여 물어본 것이 있었는데, 견해가 달라 하나로 결론짓지 못하였다. 이런 큰일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나쁠 것이 없다. 절기는 한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역사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성 남문과 북문의 공사가 종결된 뒤에 재력이 좀 갖추어지기를 기다렸다가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그렇게 생각을 굳혔다. 준천(濬川)하는 일은 성역과 비교할 때 얼마나 쉬운 일인가. 그런데도 선조(先朝)에서는 두 번 세 번 백성들에게 여러 번 윤음을 내리셨다. 나는 **화성**의 성역에 대해 한 번도 일의 본말을 펴 보인 적이 없었다마는 지금 중도에 정지하고자 문자로 포고(布告)를 하는 것이다. 나는 이 또한 우러러 선조의 뜻을 받드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여긴다. 경들은 여러 재신들과 각기 소견을 진달하라. 지난번에 중론이 일치하지 않은 것들을 오늘은 일치시켜 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는 윤음 한 통을 내주라고 명하였다. 부제조 윤행임(尹行恁)에게 읽게 하고 다 읽은 다음, 내가 이르기를, "내가 고심하는 것이 이와 같다.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채제공은 아뢰기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달리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좌의정 김이소(金履素)는 아뢰기를, "지금 생각해 보니, 신이 지난번에 아뢴 말씀은 한때의 얕은 소견에 불과하였습니다. 지금 윤음을 받들고 보니 전하의 지극한 정성과 측은히 여기시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실로 백성을 위하는 전하의 성스러운 덕을 우러르게 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과연 이전의 견해를 바꾸는 것인가?" 하니, 김이소는 아뢰기를, "이 공사는 백성을 부리는 공사가 아닌 만큼 흉년이라 해서 갑자기 중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전에 그렇게 아뢰었던 것인데, 지금 삼가 윤음을 받들고 보니 더 아뢸 말씀이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이병모(李秉模)는 아뢰기를, "이 공사는 소중한 분을 위해 축성하는 것이고 정지하는 것 또한 전하의 성대한 덕입니다. 수백 마디나 되는 윤음을 받들어 읽어 보니, 이는 바로 지난번에 하교하신 두 구절의 내용을 부연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지난날 아뢴 것은 창졸간에 답한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한 말이었던 만큼 신의 소견은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영중추부사 채제공은 아뢰기를,

"삼가 윤음을 받들어 보니, 위로 자전과 자궁에 올리는 일상적인 공상(供上)마저 줄였다는 말씀을 하시고 심지어는 군사들에게 벼나 보리조차 밟지 못하게 했던 선왕의 성덕을 인용하기까지 하셨으니 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떠하다 하겠습니까. 비록 구황 정책에 대해 말하더라도 팔도의 굶주린 백성들이 어찌 모두 이 공사를 통해 먹고살기를 바라겠습니까. 구중궁궐의 광명한 불빛은 비추지 않는 곳이 없으니 공명정대한 의리와 지극하고 간절한 정성을 신이 받들어 따르지 않는다면 신은 옳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평지에서의 성역은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흙을 져 날라 품팔이하는 이들이나 술과 음식을 팔아 살아가는 부류들에 대해서는 유사(有司)가 편의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사람들이 모두 ‘이제 와서 갑자기 공사를 중지하면 다시 거행하기가 어렵다.’ 한다. 그러나 사리를 따져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경이 이제 내 뜻을 따르겠다고 하니, ‘군대는 명분(名分)이 바르면 씩씩해진다.’라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하였다. 이병모가 아뢰기를, “영중추부사의 말은 옳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내린 윤음 중의 많은 말씀들은 요컨대 경모궁에서 재계하던 때의 간략하고도 극진했던 처음 전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찌 꼭 윤음을 받든 뒤에야 비로소 전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영중추부사는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내 말이 명분에 맞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영중추부사가 내 뜻을 따르기로 한 것은 실로 노성(老成)한 사람의 논의요, 경이 지난번의 견해를 고수하는 것도 매우 훌륭하다고 여긴다. 처음에는 비록 의견의 차이가 있었지만 결국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매우 다행한 일이다.” 하였다.

윤음 한 통을 여러 재신에게 내리도록 명하여 반시(頒示)하였다. 그런 뒤에, 호조 판서 심이지(沈頤之) 등이 차례로 나아와 아뢰었다. 내가 이르기를, “대신도 이미 별다른 이론(異論)이 없다고 하였다. 유수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신이 어찌 감히 중간에서 가타부타 말을 하겠습니까. 단지 마땅히 거행할 뿐입니다. 지금 비록 공사는 중지하더라도 남문과 북문 주변의 성역은 2, 3월이면 종결될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저께 유수의 말을 들으니, 양 군영의 정번미(停番米)가 과연 남아 있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 금위영과 어영청으로 하여금 각각 1000섬씩을 **화성** 역소에다 떼어 주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지금처럼 쌀값이 금값일 시기에 쌀로 지급한다면 그들에게는 매우 편하고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땅이 녹은 후에 후탁의 일을 시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해 두면 10년 후에는 수확이 만 섬에 달할 것이라고 하니 이것은 만 명이 넉넉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다. 성을 지키는 대비책으로 말하자면 어찌 보탬이 되지 않겠는가.” 하니, 조심태가 아뢰기를, “내년이 되어야 논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강 召見大臣備堂及輪對官于熙政堂

목 領府事 **蔡濟恭**曰日前修省之敎遇災側身之盛德臣等不勝欽仰而臣等職忝大官燮理之責尙矣無望尋常廟務只事瘝曠曾不能仰副憂勤之聖意今玆非時之雷果驗不職之罪誠不勝惶愧懍蹙矣予曰災不虛生莫非否德所召始於七月之旱重以八月之風繼之以十月之雷雖隱隱微微如聞如不聞而仁愛之警告則丁寧矣日夕悚惕自不能已矣予曰驚惕之中亦有因事發笑者昔在先朝筵臣有曰風惡云云者至伏承責敎向者洪秀輔以社稷 油遮日事用俚語於雨下故問備矣其後常參重臣以懲羹之意語天輒曰天主上天固當敬畏而主字豈非可怪乎 **濟恭**曰閭巷之間或用此等說矣予曰今秋以後民事關心賓對未必有別般訏謨而月六之數必行毋撤蓋欲盡我之心力今日召接亦出答天譴之意矣**濟恭**曰雖非賓對萬幾酬接豈有留滯之患而臣固所不遑暇逸之聖念矣予曰予於讀書時一日程課幾許遍午前了讀則必界舒泰如有所得今此賓對之進定亦類是也予謂**水原留守** **趙心泰**曰向日宮齊以**城役**事有所詢問而所見參差可否不一此等大事不害有異同之論矣節屆降冬役事浩繁南北**城役**了當之後則少待財力之可辦爲之未晩予見斷斷如是矣濬川比**城役**輕重何如而先朝再三臨民屢下綸音予於**華城**之役則一未嘗敷示其本末矣今欲中停故爲文字布告予則謂此亦仰述之一端也卿等與諸宰各陳所見向來衆論之不一者今日歸一可也命出綸音一通敎副提調 尹行恁讀奏訖予曰予之苦心如是卿等以爲如何**濟恭**曰至矣盡矣無他仰達之辭矣左議政 金履素曰臣之向來所奏到今思之不過一時淺見及奉綸音至誠懇惻實仰爲

民之聖德矣予曰然則果變前見矣履素曰是役非役民之役不必以荒年遽停故前日有所陳達而今伏奉綸音更無可達之辭矣右議政 李秉模曰是役也築爲所重停亦盛德奉讀屢百言絲綸此是向來下敎二句中敷衍出來者也臣之向日所奏有所商量非倉卒仰對者臣見無異於前矣**濟恭**曰伏奉綸音上減殿宮之常供至引勿踐禾麥之睿德所重尤如何雖以捄荒爲言八道飢口豈盡仰哺於是役哉九重光明之燭無所不照義理正大至誠懇惻臣若不爲將順則臣是不韙之人然平地**城役**不可仍置負土雇價酒食資生之類則有司之臣便宜爲之似好矣予曰人皆謂到今遽停再擧爲難云而參究事理未必其然卿今將順可謂師直爲壯秉模曰領府之言恐不然矣今日綸音中千言萬語要不出宮齊初敎之略而盡何必於奉綸音之後始可仰度聖意耶予曰領府亦是好名之人予言豈不師直也予曰領府之將順實是老成之論也卿之固守前見亦覺更好始雖參差卒乃爛漫甚可幸也命下綸音一通於諸宰頒示後戶曹判書 沈頤之等以次進奏訖予曰大臣旣無異同之論留守之意何如心泰曰臣何敢可否於其間乎但當擧行而已今雖停役南北城了當似在二三月矣予曰再昨聞留守言則兩營停番米果有剩置者云使各其營千石式付諸**城役**似好矣**濟恭**曰顧今米貴如金之時以米給之則在渠輩極甚便好矣予曰解凍後後托事不可不始十年後則將至萬石云是固萬人足食之糧也以守城之備言之豈曰無少補哉心泰曰明年始可作畓矣予曰久遠之效人未易信雉堞雖有目前觀瞻之美豈若後托役之事半功倍者耶趙充國 金城方略亦如是大抵閫以外將軍制之不問財力之出入不考工役之勤慢任其便宜擧行也故乃能速就予常以本府爲依歸之所若奏一日之功則便作一日之喜而目今災荒溢目民不奠居以不撤**城役**或不無有云云之說然則安有衆心成城之效乎此所以有停役之論而亦非爲浮費而然也卿須體念便宜爲之也予又曰吏議望近甚苟簡若欲新通則曾經禮議者幾人耶吏曹參判 黃昇源曰韓晩裕 趙鎭宅二人矣予曰旣有參判則不可廟薦勢將俟吏判之入來矣履素曰明年慶禮當前文衡 自多擧行之事而大提學 洪良浩今將出疆合有變通之道矣予曰事異常格若無前任文衡則傳諭於大臣而受薦者古例卽然矣然而文衡例皆自代近或有疏薦之例耶秉模曰故判書 尹鳳朝薦南有容而其時亦有疏薦之例矣**濟恭**曰疏薦後都堂會圈雖或有例云而未見有文蹟矣予曰文苑自當有相傳之故事卿等退考弘文館圈點册後如有文蹟之可據者自政院指一稟請可也予又曰玉堂先退取圈點册及文衡先生案 文苑故事送于睿廳也**濟恭**曰近聞以荒年之故牛價至賤而肉價反爲翔貴此蓋太半歸於酒家作肴之需云矣予曰年前聞卿所奏浚言于捕將使之嚴禁矣何又如是也昔在先朝賣飯者尙以治盜之律繩之況士買肴者乎禁之未久又如是太弛亦關紀綱平民則饕飧而食此不過遊食之輩使京兆一切痛禁宜矣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1일(을유)>

3. 사회(社會)

⑴ 가족

사회/가족

수원부에서 넘겨준 유민 문제를 논의하다

강 진청(賑廳)이 4개 도의 유민을 기영(畿營)에 넘겨서 호송하는 것에 대해 아뢰었다.

목 ○ 진청이 아뢰기를, "하교하신 대로, **수원부(水原府)**에서 넘겨준 유민이 황해도가 4명, 평안도가 3명, 원춘도가 8명, 함경도가 3명으로 도합 18명인데, 성인은 1명당 미(米) 3두(斗)를, 아이는 1명당 미 2두를 분급(分給)하고 첩문(帖文)을 규례대로 만들어 준 뒤에 기영의 장교(將校)에게 넘겨서 초입에 있는 역참인 고양(高陽), 양주(楊州) 등의 고을에 넘겨주어 차례차례 호송하게 하겠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각별히 엄히 신칙하고 잘 호송하여 태만하게 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綱 賑廳以四道流民出付畿營護送啓

目 賑廳啓言依下敎**水原府**領付流民黃海道四名平安道三名原春道八名咸鏡道三名合十八名壯每名米三斗弱每名米二斗分給帖文依例成給後出付畿營將校使之領付初到站高陽 楊州等邑次次護送敎以各別嚴飭善爲護送俾無不勤之弊

<일성록, 정조14년(1790) 2월 14일(을축)>

사회/가족

수원 응제시와 관련하여 해남 윤씨가의 처우에 대해 하명하다.

강 전(錢) 1000냥을 여러 윤씨(尹氏)들에게 획급(劃給)하여 거처를 정해 살 수 있게 하고, 응제(應製) 및 여러 과시(科試)는 비록 권속이 아니더라도 응시하도록 하였다.

목 ○ **수원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에게 전교하기를,

"경이 본부의 새 치소(治所)를 설치한 공로가 있어서 경의 집안 사람들이면 이주해서 살거나 서울에 살거나 간에 본읍의 과시에 전부 응시하도록 이미 허락하였으니, 윤씨야 말할 것이 있겠는가. 게다가 해남(海南)은 **수성(隋城 수원)**과 거리가 매우 멀지만 근래 시권에 이름을 기록한 자를 보니 윤지운(尹持運), 윤지섬(尹持暹), 윤지홍(尹持弘), 윤지철(尹持哲), 윤지익(尹持翼), 윤지식(尹持軾), 윤지상(尹持常), 윤지민(尹持敏) 등 8인의 성명이 있는데, 이 밖의 권속으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천리 길을 이동해 오느라 거처를 정할 겨를이 없었을 것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식목조(植木條)로 따로 등록한 전 1000냥을 특별히 획급하니, 경은 직접 살펴서 혹 집을 사 주기도 하고 물력을 사 주기도 하여 곧 집들이 늘어서서 마을을 이루게 하라. 순제(旬題)와 앞으로 다가오는 과시는 비록 권속이 아니더라도 그 조상의 직계 후손이 분명하면 모두 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라. 이 전교를 한 통 베껴서 주인집에 주라." 하였다.

강 劃給錢一千兩於尹氏諸人俾得奠居應製及諸科雖非挈眷亦許赴試

목 敎**水原府使** **趙心泰**曰卿於本府新治有制置之功卿家之人無論移接與京住旣許通同觀光於本邑科試況尹氏乎人況海南距隋城何等絕遠而以近日錄名於試券者觀之有尹持運 尹持暹 尹持弘 尹持哲 尹持翼 尹持軾 尹持常 尹持敏等八人姓名外此率眷之不入於錄名者亦必有之然則千里搬運不遑奠居可以推知植木條別錄錢一千兩特爲劃給卿其親執董察或買給家舍或贖給物力使卽比屋成村而旬題與來頭科試雖非挈眷者明是乃祖之直孫則竝許赴試事知悉此傳敎一通謄給主家

<일성록, 정조14년(1790) 12월 8일(갑인)>

사회/가족

수원 신읍의 유호(儒戶)와 무호(武戶) 성책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 신읍의 유호(儒戶)와 무호(武戶)에 대한 각각의 성책(成冊)을 다시 수정하여 보고하라고 신칙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수원부사 이경무(李敬懋)**의 첩정(牒呈)에 '본부의 유호 가운데 무시로 왕래하여 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류는 관문(關文)의 내용에 의거하여 모두 빼고 집을 지어서 가솔을 데리고 거주하는 부류만을 자세히 조사하니, 유호가 모두 89호인데 그 가운데 원호(元戶)는 77호이고 서로 바뀌어 들어온 집이 12호입니다. 무사 역시 유호의 예에 따라 샅샅이 조사하니 가솔을 데리고 완전히 정착한 부류가 26호입니다. 그래서 유생과 무사의 성명, 내력(來歷), 가사(家舍)를 성책해서 수정하여 첩보(牒報)합니다.' 하였습니다. 어람용(御覽用) 성책을 올려보내는 연유를 치계(馳啓)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이미 연석에서의 하교가 있었으니, 이 장계는 도로 내려보내 다시 수정하여 올려보내게 하라. 이렇게 한 뒤에 한 명이라도 하교를 따르지 않고 다시 혹 거주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무시로 왕래하다가 암행 어사나 비변사 낭청의 순시에 적발되면 **수원부사**는 마땅히 유위제서율(有違制書律)로 논죄하고 감사 역시 신칙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다시 자세히 그들을 탐문하고 각자 사세를 헤아려서 원하는 대로 다시 성책하여 바친다면 그 가운데 말한 것과 거주지가 상반된 자를 어찌 알기 어렵겠는가. 또한 모두 상세히 조사하여 다시 장계를 만들어 보고하도록 회유하라." 하였다.

강 飭**水原**新邑儒武各戶成冊改修正以聞

목 京畿監司 徐鼎修狀啓**水原府使** 李敬懋牒呈本府儒戶中往來無常奠居不實之類依關辭一倂扶去只築室挈眷居生之類十分査覈則儒爲八十九戶內元戶七十七戶代入十二戶武士亦依儒戶例査櫛則挈眷完接爲二十六戶儒武姓名來歷家舍成冊修正牒報矣御覽成冊上送緣由馳啓敎以旣有筵敎此狀啓還下送使之改修正上送如是之後一有不率敎又或居接不實去來無常而現發於繡衣 備郎之行該府使當以有違制書律論而道伯亦難免不飭之責更令詳問於渠輩俾各自量事勢依願更捧成冊其中言與居住之相反者豈難知之亦皆精査更爲狀聞事回諭

<일성록, 정조16년(1792) 7월 27일(갑자)>

⑵ 신분

사회/신분

수원부의 노비사역 문제를 논의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약원 도제조 홍낙성(洪樂性)과 경기 감사 김사목(金思穆)을 소견하였다.

목 ○ 김사목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은 대로변에 있고 일이 많은 고을이지만, 사역(使役)하는 노비(奴婢)의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사행(使行)이 빽빽이 겹칠 때가 되면 노비를 분배(分排)하여 공급할 수가 없어서 번번이 고용(雇用)을 하게 됩니다. 본부에 있는 호조와 내수사의 노비가 21구(口)이고, 부근의 안산(安山)에 있는 호조와 내수사의 노비가 61구이니, 이 중에서 알맞게 헤아려 제급(題給)한다면 도움이 될 방도가 있을 듯합니다. 감히 이처럼 삼가 진달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본부와 안산에 있는 내노비(內奴婢)와 시노비(寺奴婢)를 모두 본부에 소속시켜 사역시키고, 각 해당 선두안(宣頭案)과 총안(摠案)을 모두 바로잡으라고 호조와 내수사에 분부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원**은 고을을 옮긴 이후로 크고 작은 사행이 모두 고을 부근을 경유하기 때문에 노비를 사역시킬 때마다 언제나 부족한 것을 걱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장악원의 악공 1명을 해원(該院)에서 물려 보내고 본부로 하여금 대정(代定)하여 올려보내게 하나, 본래 숫자가 적은 노비인데다가 그마저도 모두 노약자이므로 추이(推移)할 수 없는 형세입니다. 본부처럼 대로변에 있고 일이 많은 고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념해 주는 방도가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악공 1명을 채워서 보내는 일은 영구히 혁파한다면, 해원(該院)으로서는 감해진 숫자가 그다지 대단하지 않고 본부로서도 덕을 보는 것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이처럼 삼가 진달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召見藥院都提調 洪樂性 京畿監司 金思穆于重熙堂

목 政院以藥院三提調請對啓敎曰老人之連日入來不可不見都提調留待提調以下退去○樂性曰外間傳說皆以爲邦慶當在今朔小大臣民莫不蹈舞以待而設廳之命尙今未下其爲泄菀何可勝達自今日本院諸凡擧行竝依例爲之臣之都提調之任亦命遞改提調亦爲許遞另加擇差之意特下傳敎區區之望也予曰果未的知何可設廳乎樂性曰萬口同傳無不歡忭豈非眞的乎聖意臣固仰揣而此乃宗國莫重莫大之慶也設廳寧可遲乎予曰設如外間云云凡百如常不用藥餌何必設廳乎予當稟告慈宮而使卿等知之矣○思穆啓言**水原**以孔路劇邑使役奴婢極甚數少若當使星稠疊之時無以分排供給輒致雇用本府所在戶曹及內需司奴婢二十一口附近安山所在戶曹及內需司奴婢六十一口就此中量宜題給則似有裨益之道敢此仰達矣敎曰本府及安山內奴婢寺奴婢竝屬本府使役各該宣頭案及總案竝釐正事分付戶曹 內需司又啓言**水原**移邑之後大小使行皆由邑底故奴婢使役每患不足之中掌樂院樂工一名自該院退送使之代定上送而本來數少之奴婢亦皆老弱其勢末由推移路榜劇邑宜有別般軫念之道今此一名樂工之充送一款永爲革罷則在該院所減無甚大段在本府所賴亦爲不少敢此仰達矣從之

<일성록, 정조14년(1790) 6월 6일(을묘)>

사회/신분

수원의 내노비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의 내노비(內奴婢)는 그 대신 다른 노비를 바치는 것을 허락하되 각별히 골라서 바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부사직 조심태(**趙心泰**)가 아뢰기를, “이번에 내노비를 부근의 고을에서 **수원** 소속으로 바꾸어 정하게 한 일은 본읍을 진휼하려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생각건대 **수원** 부근은 모두 가난한 고을이라서 그 노비들을 그 수대로 본읍 소속으로 바꾸어 정하는 것은 형편상 어찌해 볼 방도가 없습니다. 처음 노비를 본읍으로 옮겨 떼어 주도록 한 때부터 그 대신 다른 노비를 바치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는 것은, 관노비로 자신을 판 자들은 모두 신원이 불확실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부류이다 보니 이들을 대신 바치고 면제받은 뒤에 만약 도주라도 하면 다른 노비를 다시 바치라고 하거나 당자(當者)에게 일을 시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그 대신 다른 노비를 바치도록 할 때 각별히 골라서 바치도록 하고 당자는 더 이상 침해하지 못하도록 과조(科條)를 엄격히 정하는 것이 사의에 맞을 것입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水原**內奴婢許代各別擇納

목 副司直 **趙心泰**啓言今此內奴婢從附近邑換定係是軫恤之特恩而第念**水原**附近俱是瘦殘薄邑以其奴婢如數換定其勢末由自移劃之初有代納之議而賣身者無非無根著不奠居之類臣意則許代之時使之各別擇納而無得更侵當者事嚴立科條恐合事宜矣從之

<일성록, 정조15년(1791) 1월 25일(경자)>

⑶ 향촌

사회/향촌

희정당에서 수원에 사는 좨주 송덕상을 소견하다.

강 희정당(熙政堂)에서 좨주 송덕상(宋德相)을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옛날 정자(程子)가 감찰 어사(監察御史)가 되었을 적에 황제가 자주 소견하였는데, 물러갈 적에는 반드시 이르기를, ‘자주 면대(面對)하기를 바라는 것은 짐이 항상 경을 만나보고 싶어서이다.’ 하였다. 그 뒤 어느 날 조용히 사대(賜對)하여 정오가 되어서야 나오자, 환시(宦侍)가 말하기를, ‘어사 는 상께서 아직 식사하지 않은 것도 모르는가?’ 하였다. 이제 경을 접견한 지 비록 꽤 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우리 조가(朝家)의 법(法)은 이런 무리들을 엄히 단속하는 것이 곧 성헌(成憲)이 되었고, 나 또한 여기에 마음을 두어 화(禍)를 막는 방도를 조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어, 지금 환시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자는 거의 없다. 그러나 경을 접견하는 연석(筵席)을 처음 열었고, 또 한전(寒殿)에 입시하여 저녁 내내 이야기를 주고받느라 매우 피로할 것으로 생각한다. 잠시 물러갔다가 다시 입시하도록 하라.”

하니, 송덕상이 아뢰기를, “신이 초야(草野)로부터 와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라면 단지 한 번 천안(天顔)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선배들이 이미 행한 전례가 있기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청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나를 바라보라.” 하였다. 이어 잠시 물러가 있도록 명하였다. 조금 있다가 다시 들어왔다.

내가 이르기를, “경이 이미 연석에 나왔으니,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시 진달하도록 하라.”

하니, 송덕상이 아뢰기를, “조금 전에 진달한 것은 대강(大綱)만을 대충 말씀드린 것인데, 짧은 시간 동안에 실로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혹 시무(時務)에 관계되는 것이 있어도 신은 이미 지위를 벗어나 정사에 간여한다는 경계가 있고, 또 교제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함부로 다 털어놓는다는 혐의가 있으므로, 아직 감히 망녕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원컨대, 진달한 세 가지 조항에 유의하여 더 한층 곰곰이 생각하소서.”

하여, 내가 이르기를, “진달한 세 가지 조항의 일은 모두 매우 절실한 것이니, 감히 깊이 유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경이 비록 실직(實職)은 없으나 지금 유현(儒賢)으로 조정에 나왔으니, 어찌 지위를 벗어나 정사에 간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경이 비록 연석에 처음 나왔지만 내가 경에 대해 이미 자세히 들었으니 일찍부터 알고 지낸 것과 다름없는데, 또한 어찌 교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후로는 다시 이 같은 말을 하지 말라.”

하니, 송덕상이 아뢰기를, “비록 어리석은 소견이 있더라도 갑자기 다 진달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다시 진달하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수원(水原)**에 살고 있는가?” 하니, 송덕상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경은 선정(先正)의 몇 세손이 되며, 직파(直波)인가?” 하니, 송덕상이 아뢰기를, “4대손인데, 신은 지파(支派)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유신(儒臣)이 비록 직명(職名)이 없더라도 개강(開講) 때 경연관 으로 들어와 참석한 전례가 있는가?” 하니, 승지 홍국영이 아뢰기를,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차가운 집에 거처하면 반드시 불편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약간의 쌀과 고기와 시탄(柴炭)을 전례에 따라 실어 보내

게 했는데, 경은 어찌하여 지나치게 사양하는가."
하니, 송덕상이 아뢰기를, "옛날의 이른바 고기와 쌀을 보내 준 것은 곧 어진 이를 예우하는 은전(恩典)인데, 이것이 어찌 사람마다 함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부득이 삼가 받기는 했습니다만, 더욱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

강 召見祭酒 宋德相于熙政堂

목 (…) 予曰昔程子爲監察御史也帝數賜召見及退必謂曰頻求對朕欲常常見卿其後一日從容賜對正始女出宦侍曰御史不知上未食乎云今卿之晉接雖至移時我朝家法嚴束此輩便作成憲予亦留心於是防閑之道未嘗少忽今之時庶無宦者此等之言然見卿初登筵席且値寒殿入侍竟夕酬酢想多勞憊矣少退更入也德相曰臣自草野來耿耿愚忠只在於一瞻天顔且有先輩已行之例敢仰請矣予曰瞻望也仍命少退少頃還入予曰卿旣登筵所欲言者更爲陳達德相曰俄者所陳草草大綱而造次之間固難畢陳且此外或有關係時務者臣旣有出位干政之戒又有交淺言深之嫌故姑不妄爲之說雖願留意於所陳三條深加思繹焉予曰所陳三條事俱甚切實敢不體念乎卿雖無實職今以儒賢造朝豈可謂出位干政且卿雖登初筵予聞卿已熟無異於曾識亦豈可謂交淺乎此後則更勿如此道也德相曰雖有愚見不可猝乍間可以畢陳從當更達矣予曰居在<u>水原</u>乎德相曰然矣予曰卿於先正爲幾世孫而爲直派乎德相曰四代孫而臣則爲支派矣予曰儒臣雖無職名開講時前例以經筵官入參乎承旨 洪國榮曰然矣予曰冷邸居處想必齟齬故特命有司以略干米肉柴炭援例輸送矣卿何過讓德相曰古所謂饋肉繼米卽是禮賢之典此豈人人冒當者乎不得已祗受而益無所措矣 (…)

<일성록, 정조2년(1778) 12월 12일 (무진)>

사회/향촌

사변가주서 장지현이 수원에 사는 호조참판 송덕상의 일을 아뢰다

강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 장지현(張至顯)이 호조 참판 송덕상(宋德相)의 부주(附奏)로 치계(馳啓)하였다.

목 장계하기를, "삼가 성상의 유시(諭示)를 받들고 **<u>수원(水原) 동북면(東北面) 만의촌(萬義村)</u>**의 호조 참판 송덕상이 사는 곳에 가서 전유(傳諭)하니, '근시(近侍)가 멀리까지 와서 성상의 유시를 전하였는데, 위로하고 불러 주시니 삼가 채 반도 읽기 전에 감격하고 황송하여 몸 둘 곳이 없습니다. 신하의 의리상 어찌 감히 시일을 끌면서 편안함만을 생각하겠습니까마는, 현재 병세가 사실 길에 오를 가망이 없으므로 병이 낫기를 조금 기다렸다가 삼가 달려나가겠습니다.' 하였기 때문에 감히 이를 치계합니다. 신은 방향을 바꿔 여주(驪州)의 이조 참의 김양행(金亮行)이 사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하였다.

강 事變假注書 張至顯以戶曹參判 宋德相附奏馳啓

목 狀啓以爲敬奉聖諭馳往傳諭于<u>水原</u>東北面萬義村 戶曹參判 宋德相所住處則以爲近侍遠臨傳宣聖諭勞問招徠奉讀未半感惶罔措在臣之義豈敢遲延時日以爲偃便而目下病狀實無登塗之望稍俟病間謹當趨造云故敢此馳啓轉向驪州 吏曹參議 金亮行所住處事

<일성록, 정조3년(1779) 3월 4일(무자)>

사회/향촌

사변가주서 유임주가 수원에 사는 호조참판 송덕상의 일을 아뢰다.

강 사변가주서 유임주(兪任柱)가 호조 참판 송덕상(宋德相)의 부주(附奏)로 아뢰었다.

목 서계(書啓)하기를, "신이 성상의 비답을 받들고 <u>수원(水原) 만의촌(萬義村)호조 참판 송덕상이 머물고 있는 곳</u>에 가서 전유하였더니, '신의 병세가 더 고통스러워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전에 외람되이 사본(辭本)을 올렸는데, 상소가 미처 이르기도 전에 특별히 근시(近侍)를 보내시어 돈유(敦諭)하여 불러 길에 오르기를 독촉하시니, 응당 즉시 일어나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병세로는 실로 스스로 힘쓰기가 어려워 감히 이 상소를 사관 의 회계(回啓) 중에 덧붙여 진달하는 한편, 자취가 임금의 명령을 어기는 데 관계되므로 벌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근시에게 명해 이전의 상소에 대한 비답을 전유하여 자못 집안에서 부자간에 가르치는 것처럼 특별한 보살핌을 더하시니, 감격의 눈물이 쏟아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말미를 청하여 잠시 나온 것은 본래 오래 있을 계획이 아니었는데, 우연히 병 때문에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잊지 못하고 있는 마음이 어찌 감히 하루라도 우리 전하를 잊겠습니까. 지금 한창 여러 모로 몸조리하며 치료하고 있으니, 열흘 안에 만약 조금이라도 나으면 삼가 응당 이달 그믐 사이에는 기어서라도 조정에 나아가 하찮은 정성을 드러내겠습니다. 내린 조서(詔書)는 신이 의당 별지에 받들어 대답하여 돌아가는 사관 편에 부쳐서 올려보내야 하겠으나, 감당하지 못할 바가 있으므로 며칠 내로 따로 도모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강 事變假注書 兪任柱以戶曹參判 宋德相附奏啓

목 書啓以爲臣奉聖批傳諭于<u>水原</u>萬義村 戶曹參判 宋德相所住處則以爲臣病勢添苦日前冒上辭本而疏未及達特遣近侍敦召促行惟當劃卽起發而目下症情實難自强敢以此狀附達於史官回啓中而跡涉違慢誅譴是俟又命近侍傳諭前疏之批而加以異眷殆若家人父子間敎詔者然感淚交迸不能自已也臣之請由暫出本非久計偶因賤疾不免遲徊而耿耿寸忱豈敢一日忘我殿下也哉今方多般調治旬日之間倘或少差謹當以此月晦間匍匐趨朝以暴微悃所降天札臣宜具別幅奉對而附上於史官之回有所不敢當於日間別有所仰圖者云矣

<일성록, 정조3년(1779) 3월 16일(경자)>

사회/향촌

사변가주서 김성준(金聖準)이 수원에 사는 이조판서 송덕상(宋德相)의 일을 아뢰다

강 사변가주서 김성준(金聖準)이 이조 판서 송덕상(宋德相)의 부주(附奏)로 치계(馳啓)하였다.

목 장계하기를, "신이 성상의 비답을 받들고 <u>**수원(水原)** 만의촌(萬義村)의 이조 판서 송덕상이 머물고 있는 곳</u>에 가서 전유하였더니, '신이 진심을 털어놓아 외람되이 번독스럽게 하여 바야흐로 위엄 있는 처벌을 기다리고 있던 중 뜻밖에 근시(近侍)가 먼 곳에 와서 성상의 비답을 전하니, 자상하신 하교가 귀신을 울릴 만합니다. 신이 목석(木石)이 아니니, 어떻게 마음을 걷잡을 수 있겠습니까. 신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아, 신에게 종전에 내리신 특별한 대우와 지금의 은혜로운 유시는 군신(君臣)의 관계가 성립된 이후로 드물게 있는 것입니다. 신이 감격하여 보답하기를 도모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단지 이것은 차지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직임이므로 이미 무릅쓰고 받들기 어려운데다가 지금 신의 병이 추위를 만나 더 위독해져 오랫동안 앓아 자력(自力)으로는 명을 좇을 수 없습니다. 삼가 병이 조금 낫기를 기다려서 다시 글을 들여보내 거듭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강 事變假注書 金聖準以吏曹判書 宋德相附奏馳啓

목 狀啓以爲臣奉聖批馳往傳諭于<u>水原</u>萬義村 吏曹判書 宋德相所住處則以爲臣披肝冒瀆方俟威罰不意近侍遠臨傳宣聖批縷縷辭敎可泣鬼神臣非木石何以爲懷不覺感涕交迸噫臣於從前殊遇及今恩

諭自有君臣以來所罕有者臣之感激圖報曷有窮已只是匪據之重任旣難冒膺且今賤疾値寒添劇長時委痛無以自力趨命謹當稍俟病間更入文字申暴血懇云矣
<일성록, 정조3년(1779) 10월 9일(기미)>

사회/향촌

김익이 수원의 송덕상(宋德相)과 온양의 맹지대(孟至大)의 일을 논의하다.

강 연화당(讌華堂)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목 (…) 김익이 아뢰기를, "맹지대의 본말은 신이 실로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송덕상이 수원(水原)에 있을 때 맹지대는 온양(溫陽)에 거주하고 있었으니 서로 거주하는 곳이 멀었고, 또 맹지대는 일찍이 신의 집에 왕래하면서 매번 송덕상을 비판하고 비웃는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스승으로 섬겼다는 말은 실로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

綱 行次對于讌華堂

目 (…) 熎曰至大之本末臣實詳知德相在水原至大居溫陽相居旣遠且至大嘗往來於臣家故每多譏笑德相之言師事之說實不襯當矣 (…)
<일성록, 정조8년(1784) 윤3월 6일(신유)>

사회/향촌

수원 진목리(眞木里)에 사는 금성부원군(錦城府院君)의 봉사손 문제를 논의하다

강 경기 감영은 금성부원군(錦城府院君)의 봉사손을 방문(訪問)하라고 명하였다.

목 ○ 한성부가 아뢰기를, "금성부원군의 봉사손을 오부(五部)로 하여금 두루 찾고 탐문하게 하였더니, '봉사손 박사윤(朴師潤)이 수원(水原) 진목리(眞木里)에 살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수원부로 하여금 방문하게 하라는 뜻으로 경기 감영에 분부하소서." 하여, 하교하기를, "상세히 조사해서 장문하라고 경기 감사에게 분부하라." 하였다.

綱 命畿營訪問錦城府院君奉祀孫

目 漢城府啓言錦城府院君奉祀孫令五部遍搜探問則以爲奉祀孫師潤居在水原眞木里云請令水原府訪問之意分付畿營敎以詳査狀聞事分付畿伯
<일성록, 정조10년(1786) 2월 27일(신축)>

사회/향촌

수원에 거주하는 금성부원군의 직계자손에 대해 논의하다

강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이 금성부원군(錦城府院君 박용(朴墉))의 직계 자손에 대해 계문하였다.

목 ○ 서유방이 아뢰기를, "수원부사(水原府使) 정동준(鄭東浚)의 첩정(牒呈) 내에, '박사윤(朴師潤)은 본부(本府)의 초장면(草長面) 진목리(眞木里)에 거주하였는데,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의 어린 아들 박쾌손(朴快孫)은 나이가 지금 13세로, 현재 용인(龍仁) 하동촌(下東村) 어비동(魚肥洞)의 전씨(全氏) 성을 가진 사람의 집에 있으며, 박사윤의 동생 박사열(朴師說)은 정유년(1777, 정조1)에 죽었고, 동생 박사망(朴師望)은 나이가 지금 40세로, 진위(振威) 회화정리(檜花亭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낱낱이 적어 치계합니다." 하였다.

綱 京畿監司 徐有防以錦城府院君直派子孫啓聞

目 有防啓言水原府使 鄭東浚牒呈內朴師潤居生於本府草長面眞木里丙申已故其子童蒙 快孫年今

十三方在龍仁下東村魚肥洞全姓人家師潤弟師說丁酉故弟師望年今四十居生於振威檜花亭里枚報馳啓
<일성록, 정조10년(1786) 3월 3일(정미)>

사회/향촌

수원부로 유입된 해서의 유민 호송문제를 논의하다

강 경기 감사 김사목(金思穆)이 해서(海西)의 유민(流民)을 호송(護送)한 상황에 대해 치계(馳啓)하였다.

목 ○ 장계에, "본도의 각 읍에 와서 머무르고 있는 서북의 유민에 대해서는 돌아가기를 원하는 자와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전에 이미 구별하여 치계하였습니다. 그 뒤에 해서의 유민으로서 **수원부(水原府)**에서 본토로 돌려보낸 자가 25구(口)로, 규례대로 밥을 주고 차정첩(差定帖)을 발급하여 장리(將吏)를 정해서 앞의 역참(驛站)으로 호송하였습니다." 하였다.

강 京畿監司 金思穆以海西流民護送形止馳啓

목 狀啓以爲西北流民之來接本道各邑願歸不願歸者前已區別馳啓而伊後海西流民之自**水原府**還歸本土者二十五口依例饋飯帖定將吏護送前站
<일성록, 정조14년(1790) 5월 23일(계묘)>

사회/향촌

수원 원행길의 연로 유생들의 봉장 문제를 언급하다

강 이명오의 상소를 도로 내주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사액도 받지 않은 서원의 위차를 올리고 내리는 문제가 어찌 아뢸 일이겠는가. 지난번 **수원**으로 가는 연로(輦路)에서 제생(諸生)들이 올린 봉장(封章)을 보고 정원에 부쳤다. 처음 소본(疏本)을 보니 매우 설만하기에 소두(疏頭)를 성균관으로 하여금 죄상을 따져 밝히게 하였는데, 모든 일은 마땅히 예전대로 따르게 하였다. 그런데 도백이 일제히 호소하는 일에 대해 흐리멍덩하게 판결하여 감히 그들로 하여금 상소하여 호소하게 하였고, '상께서 처분하시기를 기다리라.' 라는 등의 말로 제급(題給)한 것은, 어찌 이와 같은 일의 체모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해당 도신에 대해서는 정원에서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를 봉입해서 서용하지 않는 형전을 시행하라.

지방의 유생들이 상소한 것에 대해 태학에서 '근실(謹悉)' 이라고 써 주기를 기다린 다음 봉입하도록 한 것은 선조(先朝) 때 수교(受敎)한 확고한 법이다. 그런데 상소의 어구가 잘못되었는데도 태학에서는 한마디도 수정하라는 말이 없었으니, 역시 매우 놀라운 일이다. 해당 재임(齋任)에게도 벌을 주라고 성균관에 분부하라. 이는 비답으로 내리는 말이 아니니 원래의 상소는 도로 내주라." 하였다.

강 命李明五疏還給

목 敎曰未賜額書院位次陞降事是豈上聞者乎向於**水原**輦路見諸生之封章付之政院矣始見疏本屑越甚矣疏頭令本館糾罪凡事當從舊道伯之漫漶於齊訴敢以使之疏籲以待自上處分等語題給者寧有如許事體乎當該道臣自政院指名捧現告施以不敍之典方外疏擧之待太學謹悉許捧卽先朝受敎金石之典則疏中句語難免爽誤太學之無一言及於釐改者亦甚駭然當該齋任施罰事分付成均館此非賜批之說原疏還給
<일성록, 정조15년(1791) 2월 22일(정묘)>

사회/향촌

수원에 사는 공자의 후손을 소견하다

강 희정당에서 대신, 비변사 당상 및 경기전 참봉(慶基殿參奉) 공윤동(孔允東)을 소견하였다.

목 (…) 내가 공윤동에게 이르기를, "그대의 공씨 성이 동쪽으로 건너온 이래 대대로 **수원(水原)**에 살고 있는데 묘소 터가 완연히 남아 있고 단(壇)의 은행나무도 교목(喬木)을 이루었으니,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성인(聖人)의 후예로서 만일 스스로 힘써 시(詩)와 예(禮)로써 칭송을 받는다면 세도(世道)의 다행일 것이다. **수원**에 살고 있는 공씨 성은 몇 집이며,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는 파(派)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공윤동이 아뢰기를, "**수원**에 살고 있는 자들은 30여 집인데, 중간에 용인(龍仁)으로 많이 옮겨 갔으며, 영남의 경우는 공성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수원**에 공성(孔聖)의 영정(影幀)을 봉안한 사당이 있어 선조 때 사액(賜額)하신 일이 있다고 들었다. 내 생각에는, **중규면(中逵面) 구정촌(九井村)**이 우리나라로 건너와서 처음 살았던 마을이니, 영당(影堂)을 이곳으로 옮겨 설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내가 승지 이가환(李家煥)에게 이르기를, "경기 감영으로 하여금 사적(事蹟)을 상세히 탐문하여 즉시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강 召見大臣備堂及慶基殿參奉 孔允東于熙政堂

목 (…) 予謂孔允東曰自爾孔之東來世居**水原**墓址宛在壇杏成喬誠非偶然以聖人後裔若能自勉以詩禮見稱則世道之幸也孔姓之居**水原**者幾家散在他處者幾派耶允東曰居**水原**者三十餘家而間多流寓於龍仁至於嶺南則孔姓者甚多矣予曰聞**水原**有孔聖影幀奉安之室有先朝賜額予意則中逵面九井村旣是東來初居之鄕則影堂之移設於此處似好矣**濟恭**曰聖敎誠至當矣予謂承旨 李家煥曰令畿營詳探事蹟俾卽狀聞可也

<일성록, 정조16년(1792) 9월 5일(신축)>

사회/향촌

수원유수 채제공에게 성묘를 위한 말미를 허락하다

강 **수원유수 채제공**에게 성묘할 수 있는 말미를 주도록 허락하고, 이어서 규례대로 요전상(澆奠床)을 갖추어 보내 주라고 명하였다.

목 ○ 채제공이 아뢰기를, "신의 부모의 분산(墳山)이 죽산(竹山)에 있는데, 다소 날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 한번 성묘하려고 합니다. 다만 유영을 떠나는 날짜에 대해 치계(馳啓)하는 것은 황공하니, 감히 2, 3일의 말미를 주시기를 청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청한 대로 다녀오라. 요전상을 규례대로 갖추어 보내라고 도백에게 분부하겠다." 하였다.

강 許**水原留守** **蔡濟恭**省墓之暇仍命澆奠床依例備送

목 **濟恭**啓言臣之父母墳山在於竹山地稍待日暖欲爲一番省掃而直以離營日子馳啓有所惶恐敢請數三日由暇矣敎以依請往還澆奠床依例備送事分付道伯

<일성록, 정조17년(1793) 1월 26일(경신)>

⑷ 의식주

사회/의식주

수원으로 이주시킨 인민의 정착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水原)의 관속들을 편안히 정착시킬 대책을 모두 일반 백성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거행하라고 신칙하였다.

목 ○ 하교하기를, "수원으로 이주시킨 인민 중에서 일반 백성은 본래 값을 받고 재목을 모아서 힘닿는 대로 집을 지을 수 있었으나, 관속들은 장교나 읍리, 하례나 종을 막론하고 반드시 모두 일에만 골몰하느라 몸을 빼낼 길이 없었을 것이니, 어느 겨를에 집안일을 처리하기까지 하였겠는가. 현재 서리가 점차 더 내려 추위를 재촉하는 기미가 있으니, 그들이 편안히 정착할 수 있는 방책을 잠시라도 늦출 수가 없다. 이 전교(傳敎)를 가지고 지방관으로 하여금 효유하게 하고 그들이 머물러서 살 대책을 모두 일반 백성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하여 한 사람도 추위에 떠는 탄식이 없게 하라고 수원부사에게 하유(下諭)하고, 이어서 거행한 상황을 이치를 따져 장문(狀聞)하게 하라." 하였다.

綱 飭水原官屬輩安接之策一如小民擧行

目 敎曰水原搬移人民小民則自可受價鳩材隨力造舍而官屬則無論若校若吏若隷若奴必皆役役無抽身之路奚暇及於料理家事見今霜令漸緊有催寒之意其所安接之方蹙時不可緩以此傳敎令地方官曉諭所以支接之策一如小民俾無一人呵凍之歎事下諭于水原府使擧行形止仍令論理狀聞

<일성록, 정조13년(1789) 9월 25일(무신)>

⑸ 윤리 · 풍속

사회/윤리 · 풍속

여주(驪州)와 수원(水原)와 진휼을 논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경기 감사 정상순(鄭尙淳)을 소견하였다.

목 내가 이르기를, “경기 감사는 앞으로 나오라.” 하고, 내가 이르기를, “경은 경기도를 여유 있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니, 나는 이후로 근심을 떨쳐 버릴 수 있겠다.” 하니, 정상순이 아뢰기를, “신은 재주가 없는데 이 지역을 외람되이 맡았으니,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경기도 안에 진휼해야 할 고을이 몇 곳이나 되는가?” 하니, 정상순이 아뢰기를, “여주(驪州)와 **수원(水原)** 두 고을인데, 굶주리는 인구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각 능의 봉심은 언제쯤 할 것인가?” 하니, 정상순이 아뢰기를, “부임한 후에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번 능행(陵幸) 때 액속(掖屬)의 무리들이 소란을 일으키는 폐단이 있으면 일마다 장계를 올려 아뢰도록 하라.” 하니, 정상순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강 召見京畿監司 尙淳于誠正閣

목 予曰畿伯進前予曰卿則可以恢恢於京畿一道矣予從此庶可忘憂矣尙淳曰臣旣無才猥任方面唯當竭力矣予曰畿內設賑邑爲幾處乎尙淳曰驪州 **水原**兩邑而飢口亦不甚多矣予曰各陵奉審則當於何間爲之乎尙淳曰到任後欲爲卽發矣予曰今番陵幸時掖屬輩如有作孼之弊隨事狀聞可也尙淳曰當依聖敎爲之矣

<일성록, 정조2년(1778) 2월21일(임자)>

사회/윤리 · 풍속

수원부사 민종현(閔鍾顯)의 보고를 논하다

강 **수원부(水原府)**가 군향 미태(軍餉米太)의 유고(留庫) 중에서 가분(加分)하게 해 달라는 청을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목 영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방금 **수원부사 민종현(閔鍾顯)**이 비국(備局)에 보고한 내용을 보니, ‘보리농사가 흉작이 되어 민간의 형편이 곤궁하니 본부(本府)의 군향 미태의 유고 중에서 3분의 2에 한하여 특별히 가분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군향이 비록 중대하나 민정(民情)도 생각해야 하니 유고 중의 미태 3분의 1을 가분하도록 허락하여 농량(農糧)을 보조해 주어 착실히 농사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절반을 특별히 가분하게 하라.” 하였다.

강 許施**水原府**軍餉米太留庫中加分之請

목 領議政 徐命善啓言卽見**水原府使** 閔鍾顯報備局辭緣則以爲麥農失稔民間艱窘本府軍餉米太留庫中限三分二特許加分爲請矣軍餉雖重民情亦念留庫米太三分一許令加分請助給農糧着實勸課敎以折半特令加分

<일성록, 정조6년(1782) 4월 25일(신묘)>

사회/윤리 · 풍속

수원의 흉년 문제를 논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윤대관(輪臺官) 및 경기 감사 이형규(李亨逵), 남양 부사(南陽府使) 이동엽(李東燁), 예조 판서 정민시(鄭民始), 감인 당상(監印堂上) 정창성(鄭昌聖)을 소견(召見)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남양의 농사가 매우 참혹하게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 무릇 위로할 때에 반드시 안정시킬 방도를 다해서 한 명의 백성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근심에 이르는 이가 없게 더욱더 정성을 다하여 황정(荒政)을 잘 베풀도록 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기내(畿內)의 농사 형편은 과연 어떻다고 하던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남양(南陽)과 수원(水原)이 유독 큰 흉년을 당한 고을이라 하더라도 김포(金浦)와 통진(通津) 등의 고을도 크게 흉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대용같이의 부실함도 백성들이 농사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결과인데, 집재(執災)할 때에 혹 허실이 섞이는 폐단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이제 도신으로 하여금 조속히 순찰을 위해 출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폐단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경은 되도록 빨리 감영으로 돌아가서 마련하여 분등하라."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그믐 전에 모쪼록 감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경이 순행 길에 환곡(還穀)의 분수(分數)와 늦게 씨를 뿌린 작물에 대해 세금을 줄여 주는 것에 대해서 덕의(德意)를 선포하라."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이번 여름의 맥환(麥還)은 분수를 정하여 정퇴(停退)하였으므로 민정(民情)이 이에 힘입어 편안하였습니다. 이제 이 가을 환곡을 맥환의 전례에 따라 한다면 거의 안정시키는 방도가 될 것이니, 대신(大臣)에게 하문(下問)하여 하교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의 말이 좋다. 대저 믿는 것은 오직 민정인데 이제 이 기전(畿甸)이 더욱 큰 흉년을 당하였다. 그 구호할 방도는 가까운 데로부터 먼 곳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경은 이렇게 밤늦게까지 걱정하는 나의 마음을 이해해서 굶주려 죽는 백성들에 대한 근심을 구제하도록 하라."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이와 같으시니 신이 감히 왕명을 받들어 그 뜻을 널리 백성에게 알리지 않겠습니까. 삼가 수령에게 신칙하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북도(北道)로 봉심(奉審)하러 가는 것은 언제 하직 인사를 할 것인가?"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16일에 하직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환곡을 분수를 정하여 정봉(停捧)하는 것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이미 해당 당상과 의논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다른 도의 환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승지 조시위(趙時偉)가 아뢰기를, "영남이 비록 흉년을 고하였다고 하지만 정퇴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오랫동안 경을 못 보았으므로 특별히 부르게 한 것이다. 인쇄하는 일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는가?" 하니, 정창성이 아뢰기를, "전문(箋文)은 아직 인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추조(秋曹)가 이조·병조에 반해 비교적 무게가 있는 점이 있으니, 그 정령(政令)을 논하자면 백성들의 기쁨과 슬픔이 모두 이에 달려 있다." 하니, 승지 이재학(李在學)이 아뢰기를, "과연 그렇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기내(畿內)의 농사가 이미 큰 흉년을 당하였으니 농사를 생각하면 걱정스럽기 그지없다." 하니, 정창성이 아뢰기를, "산골 고을이 조금 낫다고 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환곡을 분수를 정하여 정봉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가?" 하니, 정창성이 아뢰기를, "백성들에게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우심읍을 뽑아내

어 정봉하여야 할 것이다." 하였다.

綱 召見輪臺官及京畿監司 李亨逵 南陽府使 李東燁 禮曹判書 鄭民始監印堂上鄭昌聖于誠正閣

目 予曰南陽年事聞甚慘歉云凡於勞來之際必盡安集之方無使一民以致顚連之患益加殫誠善爲荒政也予曰畿內農形果何如云耶亨逵曰南水原雖曰獨凶金浦 通津等邑亦値大歉云矣予曰代播之不實亦是民人懶農之致而至於執災之際或有虛實相蒙之弊今使道臣欲爲趁早發巡者爲慮此弊也卿其從速還營磨鍊分等也亨逵曰晦前某條還營矣予曰卿於巡路以還穀之分數晩播之蠲稅宣布德意也亨逵曰今夏麥還分數停退故民情賴安今玆秋還依麥還例爲之則庶爲安集之道下詢大臣下敎宜矣予曰卿言好矣大抵所恃者惟民情而今此畿甸尤値大歉其所接濟之方宜有自近而及遠卿其體此宵旰之憂以濟捐瘠之患也謹當申飭守宰矣予曰北道奉審之行何當辭朝乎民始曰十六日欲爲下直矣予曰還穀之分數停捧果何如民始曰已與該堂酬酌矣予曰他道還穀何以爲之乎承旨趙 時偉曰嶺南雖曰告歉似不至停退之境矣予曰久未見卿故使之時召耳印役今至何境乎昌聖曰箋文姑未入印矣予曰秋曹與吏兵曹反有較重論其政令生民休戚都在是矣承旨 李在學曰果然矣予曰畿內年事已致大歉言念民事不勝憂悶矣昌聖曰峽邑稍勝云矣予曰還穀分數停捧果何如昌聖曰在民則爲惠大矣予曰當以尤甚邑抄出停捧矣

<일성록, 정조6년(1782) 8월 11일(을해)>

사회/윤리 · 풍속

윤음의 인쇄본을 반포할 것을 명하다

강 새로 인쇄한 윤음을 경기 감사에게 보내어 반포하라고 명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경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유하는 윤음을 새로 인쇄하였으니 경기 감영에 인본(印本) 2건과 사본(寫本) 1건을 유지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라. 광주부(廣州府)·수원부(水原府)는 각각 인본 6건, 사본 2건, 여주목(驪州牧)·파주목(坡州牧)·양주목(楊州牧)·부평부(富平府)·남양부(南陽府)·인천부(仁川府)·장단부(長湍府)·통진부(通津府)·안산군(安山郡)·안성군(安城郡)·고양군(高陽郡)·김포군(金浦郡)·교하군(交河郡)·용인현(龍仁縣)·진위현(振威縣)·양천현(陽川縣)·과천현(果川縣)·금천현(衿川縣)·이천현(利川縣)은 각각 인본 6건과 사본 1건, 죽산부(竹山府)·교동부(喬桐府)·가평군(加平郡)·삭녕군(朔寧郡)·마전군(麻田郡)·영평현(永平縣)·지평현(砥平縣)·포천현(抱川縣)·적성현(積城縣)·연천현(漣川縣)·양성현(陽城縣)·양근현(楊根縣)·영종진(永宗鎭)은 각각 인본 6건을 나누어 보내되, 감사에게 함께 봉하여 보내서 그로 하여금 반포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新印綸音送于京畿監司處頒布

목 敎曰新印諭京畿大小民人綸音京畿監營印本二件寫本一件成有旨下送廣州府 水原府各印本六件寫本二件驪州牧 坡州牧 楊州牧 富平府 南陽府 仁川府 長湍府 通津府 安山郡 安城郡 高陽郡 金浦郡 交河郡 龍仁縣 振威縣 陽川縣 果川縣 衿川縣 利川縣各印本六件寫本一件竹山府 喬桐府 加平郡 朔寧郡 麻田郡 永平縣 砥平縣抱川縣積城縣 漣川縣 陽城縣 楊根縣 永宗鎭各印本六件頒送而同封送于監司處使之頒布

<일성록, 정조6년(1782) 8월 12일(병자)>

사회/윤리 · 풍속

수원, 광주 등의 읍에 진휼을 논의하다

강 성정각에서 약원(藥院)의 입진(入診)을 행하고, 이어 판중추부사 정홍순(鄭弘淳) 및 하직하는 수령(守令)과 변장(邊將)을 소견하였다. 도제조 서명선(徐命善), 제조 정민시(鄭民

始)가 입시하였다.

목 (…) ○ 하교하기를, “하직하는 수령과 변장들은 남아서 기다리게 하고, 칠원 현감(漆原縣監)은 오늘 안으로 하직 인사를 하게 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경이 무사히 갔다 와서 참으로 다행스럽다.” 하니, 정홍순이 아뢰기를, “휴가를 얻은 덕분에 성묘할 수 있었으니 너무도 황공하고 감격스럽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연로(沿路)의 민정(民情)은 어떠하던가?” 하니, 정홍순이 아뢰기를, “수원(水原), 광주(廣州) 등 여러 읍은 이미 진휼을 설행하였는데, 들러서 수령들을 만나 보니 진휼(賑恤)할 사람이 점차 줄어들고 유망(流亡)했던 자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점은 매우 다행입니다만, 작년의 흉년은 100년 동안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백성들이 이미 흉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던가?” 하니, 정홍순이 아뢰기를, “누차 조세를 줄여 주고 구휼하는 정사를 펴셨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연로의 백성들이 대신(大臣)이 가는 줄 몰랐다고 하니, 이것이 매우 가상하다.” 하니, 정홍순이 아뢰기를, “이런 흉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행장을 거창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

綱 行藥院入診于誠正閣仍召見判府事 鄭弘淳及下直守令邊將 都提調 徐命善 提調 鄭民始

目 (…) ○敎曰下直守令邊將留待漆原縣監使之今日辭朝予曰卿無事往還誠可幸矣弘淳曰獲蒙恩暇得省墳墓不勝惶感矣予曰沿路民情何如弘淳曰水原 廣州等諸邑已設賑而歷見守宰則賑口漸減流者還入云可幸而昨年歉荒百年內初有之歲也予曰民旣値歉何以居生予弘淳曰屢下蠲恤之政故民皆安堵矣予曰沿路民人不知大臣之行云是甚可嘉矣弘淳曰値此歉歲何可張大作行乎 (…)

<일성록, 정조7년(1783) 2월 20일(신사)>

사회/윤리 · 풍속

수원부의 진휼미 요청을 허락하다

강 군향 미태(軍餉米太) 가운데 3분의 2를 가분하는 것에 관한 수원부(水原府)의 청에 대해,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목 부사직 정상순이 아뢰기를, “수원부사(水原府使) 민종현(閔鍾顯)이, 진읍(賑邑)의 민정(民情)이 다급한 상황이라며 본부(本府)의 군향 미태 유고분 4400석 남짓 가운데 3분의 2를 특별히 가분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비국에 보고해 왔습니다. 대신에게 가서 의논하였더니, 좌상의 뜻은 ‘본부의 민정이 몹시 불쌍하지만, 기백(畿伯)이 이미 도 전체의 유고분 가운데 절반을 가분하게 해 달라고 청하였으니 본부의 향곡(餉穀)만 그 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지금 또한 이 예에 따라 절반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지금 백성들의 식량과 농량(農粮)을 전적으로 환곡을 분급하는 데 의지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유고분의 수량이 많지도 않으니, 어찌 굳이 아끼겠는가. 보고한 대로 3분의 2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강 許施水原府軍餉米太三分二加分之請

목 副司直 鄭尙淳啓言水原府使 閔鍾顯以賑邑民情之遑急請本府軍餉米太留庫四千四百石零中限三分二特許加分事報備局而就議大臣則左相之意以爲本府民情雖甚可矜畿伯旣以通一道留庫中折半加分爲請本府餉穀不必異同今亦依此例以折半許施爲宜云何以爲之敎以目今民食農糧專靠還分一事況今留庫之數不敷何必靳持依所報三分二許施也

<일성록, 정조7년(1783) 2월 25일(병술)>

사회/윤리 · 풍속

수원의 기근에 대해 논하다

강 성정각에서 경기 감사 이형규(李亨逵)를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이당(李溏)을 권무군관(勸武軍官)에 전령(傳令)하는 일을 나는 반드시 하지 말고자 했으나, 훈장이 확고한 뜻을 갖고 하므로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그간 성상께서 배려해 주신 것만도 지극히 황공하고 감격스러웠는데, 일이 이미 여기에 이르렀으니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순심(巡審)하는 일은 이미 다 끝났는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동도(東道)와 서도(西道)를 먼저 순심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민정(民情)은 어떻던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민정은 조금도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진민(賑民)들이 전과는 크게 다릅니다. 신이 동번(東藩)에 재직하던 때도 진정(賑政)을 펼 때였는데, 기민(飢民)이 누락되지 않고 진휼 물력(物力)이 넉넉하기가 이번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보리농사는 어떠한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가을보리는 매우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봄보리도 잘 파종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노농(老農)들의 말은 어떻던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보리농사는 이미 풍년을 점칠 수 있고, 가을 농사도 좋은 징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현재의 봄 가뭄이 해가 되지는 않겠다던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아직까지는 무방(無妨)하다고 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진휼곡이 넉넉하지 않은 읍은 어떻게 조처했는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여유 있는 읍의 환곡을 진읍(賑邑)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여유 있는 읍의 백성들이 원망하지는 않겠는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수령은 비록 반대하는 뜻으로 보고하기도 하지만, 백성들은 어렵게 여기지 않는 듯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수원(水原)**은 기구(飢口)가 어찌 그리도 많은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옛날 진법(賑法)을 기준으로 한다면 뺄 만한 사람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올해는 **수원**만이 아니라 다른 읍도 그러한데, 대개 백성들을 돌보아주고자 하는 조정의 의지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수령들이 모두 덕의(德意)를 받들려는 마음을 가져 차라리 지나치게 할지언정 혹 빠뜨림이 있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곤궁함을 겪지 않아 흉년으로 굶주리는 기색이 없습니다." 하였다. (…)

綱 召見京畿監司 李亨逵于誠正閣

目 予曰李溏勸武予則必欲勿爲而訓將決意爲之予亦無奈何矣今則何以處之耶亨逵曰前後聖念極爲惶感而事已至此更無他意矣予曰巡審之行已盡爲之耶亨逵曰東西道先爲巡審矣予曰民情若何亨逵曰民情少無所損今年賑民比前大異臣之待罪東藩時亦當賑政而飢口之無漏賑事之裕足未有若此之時矣予曰麥農如何亨逵曰秋年則極茂春年亦善爲耕種云矣予曰老農之言如何亨逵曰麥農已占豐登秋事亦多嘉徵云矣予曰今春旱能不爲害云耶亨逵曰姑無所妨云矣予曰賑穀不敷之邑何以區劃亨逵曰方以有裕邑還穀移轉於賑邑矣予曰有裕邑民情能無怨乎亨逵曰守令則雖或防報民情則似不以爲難也予曰**水原**飢口何乃太多也亨逵曰比諸古之賑法多有可拔者而今年則非但**水原**他邑亦然蓋朝家軫恤曠絕于古故爲守令者皆以奉承德意爲心寧使有濫惟恐或漏是以民不顚連子無凶荒之色矣 (…)

<일성록, 정조7년(1783) 2월 28일(기축)>

사회/윤리 · 풍속

수원의 작황과 진휼에 대해 논의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승지 민종현(閔鍾顯), 동래 부사(東萊府使) 이의행(李義行), 교동 부사(喬桐府使) 이문덕(李文德)을 소견하였다.

목 ○ 하직 인사를 한 것이다.

○ 내가 이의행에게 명하기를, "변경의 중요한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남다른 곳이니, 매우 조심하여 중임을 맡긴 나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또 이문덕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내려가서 신중히 다스려 나의 지극한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좌승지가 임소(任所)에서 올라온 뒤로 처음 본다. **수원(水原)**은 작년의 흉작이 어떠하였으며, 가엾은 나의 백성들은 굶주려 죽는 사태를 면하였는가?" 하니, 민종현이 아뢰기를, "조정의 진휼하는 은택을 입어 다행히 노약자가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태를 면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올라올 때에 본 농사의 형편은 어떠하던가?" 하니, 민종현이 아뢰기를, "비가 고르고 흡족하게 내려서 풍년이 될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형(地形)이 자못 높고 빗물이 부족하여 이앙(移秧)하지 못하였으며 더러 이앙한 곳이 있더라도 대부분 말라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면 농사는 참으로 매우 고민스럽습니다." 하였다.

綱 召見承旨 閔鍾顯 東萊府使 李義行 喬桐府使 李文德于誠正閣

目 辭陛也○予命義行曰邊境重地與他自別十分操心無孤重寄又謂文德曰汝往汝愼無負至意予曰左承旨自任所上來後初見矣**水原**昨年凶歉何如而哀我民斯得免損瘠之患乎鍾顯曰得家朝家賙賑之澤幸免老弱顚連之患矣予曰上來時農形如何鍾顯曰雨水均洽雖謂之豐占地形頗高雨澤不足未得移秧或有已移者亦多枯槁因此不雨則民事誠甚悶然矣

<일성록, 정조7년(1783) 6월 19일(기묘)>

사회/윤리 · 풍속

수원의 기민과 진휼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강 성정각에서 전(前) 경기 감사 이형규(李亨逵)를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수원(水原)**은 본래 기내(畿內)의 대읍(大邑)인데, 기민(飢民)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승지 민종현(閔鍾顯)이 아뢰기를, "7000여 인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이 진휼을 잘하여 백성이 이 덕에 살게 되었으니,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하니, 민종현이 아뢰기를, "이것은 성상의 은택이 미친 덕분입니다. 신이 힘을 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요즘 가뭄을 걱정하느라 아침저녁으로 근심스럽고 바쁜데, 대각(臺閣)이 입을 다물고 있어 정원에는 임금에게 아뢰는 소장(疏章)이 없고, 묘당(廟堂)이 적막하여 빈연(賓筵)에서는 군신이 화합하는 미덕(美德)을 볼 수 없다. 이는 참으로 내가 스스로 반성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정에 있는 신하들에 대해서도 개탄스럽다." 하니, 승지 서용보(徐龍輔)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 부분까지 하교하시니, 기쁘고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내가 절용(節用)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도 그러한 다스림이 아래까지 파급되지 않는다. 여항(閭巷)에서는 사치하는 풍조가 점차 성해진다고 하니, 그렇다면 내가 절

용하는 의미가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한번 내가 거처하는 전각(殿閣)과 입고 있는 옷을 보라. 전각은 아름다운 색깔로 채색하지 않았으며, 복색은 삼베와 모시옷을 자주 빨아 입는다. 이것은 바로 내가 고심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어찌 소박한 것을 스스로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겠는가." 하였다.

강 召見前京畿監司 李亨逵于誠正閣

목 (…) 予曰水原自是畿內大邑飢民爲幾何承旨 閔鍾顯曰爲七千餘人矣予曰卿善於賙賑民賴以生予甚嘉尙矣鍾顯曰此乃聖上恩澤之所暨臣何力之有予曰近日以憫旱一事夙夜憂勤而臺閣含默公車無登徹之章廟堂寂寥賓筵無吁咈之美是誠予自省之處而在廷諸臣亦可慨也承旨 徐龍輔曰聖敎及此不勝喜幸予曰予非不節用而治不下究聞閭巷之間侈風漸盛云予之節用之意果安在哉試看予所居之殿所御之服金碧不施布苧屢澣卽予苦心予豈自誇其朴素也

<일성록, 정조7년(1783) 6월 22일(임오)>

사회/윤리 · 풍속

수원의 가뭄과 진휼에 대해 논의하다

강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친압(親押)을 행하고, 이어 이문원(摛文院)에 나아가 재숙(齋宿)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홍충도 연해(沿海)의 6, 7개 읍에는 이번에 끝내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하니, 일이 매우 괴이하다." 하니, 서명선이 아뢰기를, "수원(水原)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양주(楊州)와 장단(長湍)은 어떠하다고 하는가?"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일찍 모내기한 곳은 조금 낫지만 나머지는 가망이 없다고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광주(廣州)는 어떠하다고 하는가?"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중도(中道)는 흉년을 면치 못하였고 상도(上道)와 하도(下道)는 조금 낫다고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호남(湖南)은 어떠하다고 하는가?"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노령(蘆嶺) 이상은 매우 가망이 있으나 노령 이하는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근래 진구(賑口)가 많아졌지만 옛날에 비하면 적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작년의 진정(賑政)은 대체로 적지 않았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수원의 대동세(大同稅)에 대해 입이 있는 자는 모두 말할 것이다." 하니, 서유린은 아뢰기를, "정퇴(停退)하는 일은 안 될 듯합니다." 하고, 정민시는 아뢰기를, "정봉(停捧)의 피해가 실로 적지 않습니다." 하였다.

내가 호판에게 영희전에 달려가 봉심하고 오라고 명하였다. 서유린이 봉심한 뒤에 입시하여 아뢰기를, "오시(午時)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실로 시간이 촉박할 염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공사를 시작하는 시간을 이안(移安)하기 전으로 당겨 모쪼록 공사를 끝내도록 하라." 하였다.

綱 御仁政殿行親押仍詣摛文院齋宿

目 (…) 予曰洪忠道沿海六七邑今番雨澤竟未霑及云事極怪訝矣命善曰水原亦不雨云矣予曰楊州長湍則何如云耶民始曰早移秧處稍勝而其餘則無望云矣予曰廣州何如云乎民始 曰中道未免歉荒上下道稍勝云矣予曰湖南何如云耶民始曰蘆嶺以上頗有望嶺以下則無餘地云矣命善曰近來賑口之夥然於古罕有矣予曰昨年賑政槪不少矣予曰水原大同事有口者皆言矣有隣曰停退一節恐似不可矣民始曰停捧之害果不少矣予命戶判馳詣永禧殿奉審以來有隣奉審後入侍奏曰始役爲午時實有窘束之慮何以爲之乎予曰役時進定移安前某條訖役可矣

<일성록, 정조7년(1783) 7월 16일(을사)>

사회/윤리 · 풍속

수원의 양인 이종회(李宗晦)의 상언을 포상하도록 명하다

강 각 해사가 행행할 때 받아들인 상언에 대해 복계(覆啓)하였다.

목 (…) ○ 예조가 아뢰기를, "안동(安東)의 절충장군(折衝將軍) 권명신(權命新)의 상언은 인륜(人倫)에 관계되는 중대한 일이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후사(後嗣)를 세우도록 특별히 허락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양인 이종회(李宗晦)가 상언한 일은 정려를 시행하여 권장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막중한 은전에 관계되므로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충신의 집안에 이렇게 충성스런 종이 있으니 이런 은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될 것이다. 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綱 各該司以幸行時上言覆啓

目 (…) ○禮曹啓言安東折衝權命新上言事係人倫重事請上裁敎以特許立後又啓言水原良人李宗晦上言事合施旌閭以示勸奬而莫重恩典請上裁敎以忠臣之家有此忠奴此等恩典不宜斬惜依回啓施行 (…)

<일성록, 정조8년(1784) 8월 19일(임인)>

사회/윤리 · 풍속

수원 사람 이경운(李景雲)의 상언에 대해 처결하다

강 각 해사(該司)가 행행(幸行)할 때 받은 상언(上言)에 대해 복계(覆啓)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水原)에 사는 이경운(李景雲)의 상언에 대해 조사하여 처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선원록(璿源錄)》을 수정할 때 해당 서리(書吏)가 15냥의 돈을 요구하였으니 이루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는데, 사소한 일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상달(上達)하기까지 하였으니, 백성의 습속이 통분스럽고 놀랍습니다. 법을 살펴서 징계하고, 해당 서리는 법사(法司)로 이송(移送)하여 엄히 감처하며, 침탈하는 습속에 대해서는 감결(甘結)을 보내 엄히 금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하교하기를, "해당 서리를 해읍(該邑)으로 내려보내서 규정 이외로 징수한 값을 일일이 추징하여 돌려준 뒤에 풀어 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강 各該司以幸行時上言覆啓

목 備邊司啓言水原 李景雲上言有査處之命矣璿源錄修正時該吏索錢十五兩不勝支堪云不過些少至於上達民習痛駭照法懲礪該吏移法司嚴勘侵漁之習請捧甘嚴禁允之敎以該吏下送該邑所捧徵科外之價一一徵給後放送事分付 (…)

<일성록, 정조8년(1784) 10월 1일(계미)>

사회/윤리 · 풍속

수원에 기민을 구휼하다

강 각도가 기민(饑民)의 수와 곡식 수를 올렸다.

목 ○ 경기 각읍의 세 차례 진휼 결과, 기민이 2만 8147구(口)이고, 미(米)는 221석(石) 13두(斗) 7승(升) 5사(夕)이고, 당미(唐米)는 65석 14두이며, 조(租)는 655석 12두 9승 5홉(合)이고, 직(稷)은 107석 14두 5승이며, 태(太)는 273석 3두 8승 6홉 5사이고, 모(牟)는 307석 9두 6승이며, 염(鹽)은 41석 3두 2승 6사이고, 장(醬)은 48석 12두 8승이며, 곽(藿)

은 7540닢이다.
○ 광주(廣州)는 기민이 2545구이다. - 미는 23석 1두이고, 태는 65석 10두 4승이며, 모는 49석 3두 8승 5홉이고, 염은 6석 9두 7승 1홉이며, 장은 1석 6두이고, 곽은 699닢이다. -수원(水原)은 기민이 6389구이다. - 미는 106석 7두 4승 7홉이고, 조는 81석 10두 3승이며, 모는 164석 10두 7승 5홉이고, 염은 2석 13두 2승 6홉이며, 장은 18석 4두 2승 9홉이고, 곽은 2129닢이다. (…)
綱 各道進饑口穀數
目 京畿各邑三巡饑民二萬八千一百四十七口米二百二十一石十三斗七升五夕唐米六十五石十四斗租六百五十五石十二斗九升五合稷一百七石十四斗五升太二百七十三石三斗八升六合五夕麰三百七石九斗六升鹽四十一石三斗二升六夕醬四十八石十二斗八升藿七千五百四十立○廣州饑民二千五百四十五口米二十三石一斗太六十五石十斗四升麰四十九石三斗八升五合鹽六石九斗七升一合醬一石六斗藿六百九十九立 水原饑民六千三百八十九口米一百六石七斗四升七合租八十一石十斗三升麰一百六十四石十斗七升五合鹽二石十三斗二升六合醬十八石四斗二升九合藿二千一百二十九立 (…)
<일성록, 정조11년(1787) 1월 29일(무술)>

사회/윤리 · 풍속
수원의 기민을 구휼하다
강 경외(京外)에서 기민(饑民)의 호구(戶口)와 곡식 수량을 올렸다.
목 ○ 진휼청(賑恤廳)이 오부(五部)에 1차 발매(發賣)하였는데, 원호(元戶)가 7811호(戶), 미(米)가 1396석(石) 2두(斗)이다.
○ 중부(中部)는 원호가 439호, - 미가 79석이다. - 동부(東部)는 원호가 1312호, - 미가 223석 14두이다. - 남부(南部)는 원호가 1700호, - 미가 298석 7두이다. - 서부(西部)는 원호가 3122호, - 미가 570석 9두이다. - 북부(北部)는 원호가 238호이다. - 미가 224석 2두이다.
○ 경기의 각읍에 진휼을 3차 시행하였는데, 기민이 4만 622구(口)이고, 미가 257석 10두 6승(升) 7홉(合), 당미(唐米)가 48석 3승, 조(租)가 732석 6두 9승, 태(太)가 799석 10두 7승, 모(麰)가 498석 6두 6승 5홉이고, 직(稷)이 85석 6두 6승, 이모(耳麰)가 38석 8두, 염(鹽)이 71석 2두 1승 7홉 1사(夕)이고, 장(醬)이 59석 3두 4승 7홉, 곽(藿)이 1만 2016닢이다.
○ 광주(廣州)는 기민이 3110구, - 미가 54석 4두 7승 4홉, 태가 62석 5두, 모가 26석 5승 5홉, 염이 8석 1두 6승 2홉, 장이 1석 11두 4승, 곽이 877닢이다. -수원(水原)은 기민이 1만 1563구, - 조가 315석 4두 8승 5홉, 태가 324석 9두, 모가 162석 10두 5승, 미가 23석 1두 8승 9홉, 염이 20석 1두 9홉, 장이 18석 1두 2승, 곽이 3855닢이다. (…)
綱 京外進饑口穀數
目 賑廳五部初巡發賣元戶七千八百十一米一千三百九十六石二斗○中部元戶四百三十九米七十九石 東部元戶一千三百十二米二百二十三石十四斗 南部元戶一千七百米二百九十八石七斗 西部元戶三千一百二十二米五百七十石九斗 北部元戶二百三十八米二百二十四石二斗○京畿各邑三巡饑民四萬六百二十二口米二百五十七石十斗六升七合唐米四十八石三升租七百三十二石六斗九升太七百九十九石十斗七升麰四百九十八石六斗六升五合稷八十五石六斗六升耳麰三十八石八斗鹽七十一石二斗一升七合一夕醬五十九石三斗四升七合藿一萬二千十六立○廣州饑民三千一百十口米

五十四石四斗七升四合太六十二石五斗麰二十六石五升五合鹽八石一斗六升二合醬一石十一斗四升藿八百七十七立 水原饑民一萬一千五百六十三口租三百十五石四斗八升五合太三百二十四石九斗麰一百六十二石十斗五升米二十三石一斗八升九合鹽二十石一斗九合醬十八石一斗二升藿三千八百五十五立 (…)
<일성록, 정조11년(1787) 2월 30일(무진)>

사회/윤리 · 풍속

수원의 기민을 구휼하다

강 서울과 지방에서 기민(飢民)의 호구(戶口)와 진휼한 곡식의 수량을 올렸다.

목 ○ 진휼청이 5부(部)에 두 차례 발매(發賣)하였는데, 원호(元戶)는 9481호(戶)이고 미(米)는 1701석(石) 11두(斗)이다.

○ 중부(中部)의 원호는 553호이고, - 미는 98석 4두이다. - 동부(東部)의 원호는 1611호이고, - 미는 275석 9두이다. - 서부(西部)의 원호는 3729호이고, - 미는 691석 1두이다. - 남부(南部)의 원호는 2089호이고, - 미는 361석 2두이다. - 북부(北部)의 원호는 1499호이다. - 미는 275석 10두이다. -

○ 경기 각읍에 세 차례 진휼하였는데, 기민은 4만 1705구이고, 미는 325석 5두 5승 7홉(合), 당미(唐米)는 218석 13두 5홉, 조(租)는 654석 3두 9승 7홉 5사(夕), 태(太)는 530석 13두 6승 1홉, 직(稷)은 110석 3두 1승 5홉, 모(麰)는 426석 1두 7승, 염(鹽)은 63석 13두 8승 6홉, 장(醬)은 68석 9승 5홉, 감곽(甘藿)은 1만 2274닢이다.

○ 광주(廣州)의 기민은 3953구이고, - 미는 54석 11두 1승, 태는 103석 14두 6승, 모는 38석 7두 7승, 염은 10석 4두 3승 5홉, 장은 2석 3두 3승, 감곽은 1111닢이다. -수원(水原)의 기민은 1만 2081구이고, - 당미는 123석 5두, 조는 331석 14두 7승 5홉, 태는 218석 13두 5승, 미는 27석 12두 1홉, 염은 21석 3두 4홉, 장은 18석 9두 6승 1홉, 감곽은 4028닢이다. (…)

綱 京外進饑口穀數

目 賑廳五部再巡發賣元戶九千四百八十一米一千七百一石十一斗○中部元戶五百五十三米九十八石四斗 東部元戶一千六百十一米二百七十五石九斗 西部元戶三千七百二十九米六百九十一石一斗 南部元戶二千八十九米三百六十一石二斗 北部元戶一千四百九十九米二百七十五石十斗○京畿各邑三巡賑饑民四萬一千七百五口米三百二十五石五斗五升七合唐米二百十八石十三斗五合租六百五十四石三斗九升七合五夕太五百三十石十三斗六升一合稷一百十石三斗一升五合麰四百一十六石一斗七升鹽六十三石十三斗八升六合醬六十八石九升五合甘藿一萬二千二百七十四立○廣州饑民三千九百五十三口米五十四石十一斗一升太一百三石十四斗六升麰三十八石七斗七升鹽十石四斗三升五合醬二石三斗三升甘藿一千一百十一立 水原饑民一萬二千八十一口 唐米一百二十三石五斗租三百三十一石十四斗七升五合太二百十八石十三斗五升米二十七石十二斗一合鹽二十一石三斗四合醬十八石九斗六升一合甘藿四千二十八立 (…)
<일성록, 정조11년(1787) 3월 29일(정유)>

사회/윤리 · 풍속

수원의 기민을 구휼하다

강 경외(京外)에서 기민(飢民)의 호구(戶口)와 곡식 수량을 올렸다.

목 ○ 진휼청이 오부(五部)에 세 차례 발매(發賣)하였는데, 원호(元戶)가 9697호(戶), 미

(米)가 1711두(斗)이다.
○ 중부(中部)는 원호가 53호, - 미가 98석 7두이다. - 동부(東部)는 원호가 1712호, - 미가 294석 6두이다. - 서부(西部)는 원호가 3751호, - 미가 695석 7두이다. - 남부(南部)는 원호가 2122호, - 미가 367석 7두이다. - 북부(北部)는 원호가 1520호, - 미가 279석 8두이다. - 위장소(衛將所)의 원역(員役)이 39호이다. - 미가 10석 6두이다.
○ 경기에 세 차례 분진(分賑)을 시행하였는데, 기민이 4만 464구(口)이고, 미가 176석 9두 9승(升) 6홉(合), 당미(唐米)가 240석 6두, 조(租)가 574석 7두 6승 5홉, 태(太)가 601석 12두 5승 6홉, 직(稷)이 92석 12두 6승 5홉, 모(麰)가 430석 3두 4승 7홉 5사(夕), 목맥(木麥)이 77석 6두 8승 4홉, 염(鹽)이 85석 2두 2승 2홉 4사, 장(醬)이 43석 1두 3승 1홉, 감곽(甘藿)이 1만 2052닢이다.
○ 광주(廣州)는 기민이 4208구, - 미가 58석 10두, 태가 108석 10두, 모가 40석 13두 5승, 염이 10석 10두 9승 8홉, 장이 2석 5두 8승, 곽이 1227닢이다. -수원(水原)은 기민이 1만 1792구, - 미가 48석 5두 8승, 당미가 120석 3승, 조가 109석 8두 5승, 태가 205석 11두 8승, 염이 31석 3승 8홉, 장이 7석 12두 9승 2홉, 곽이 3931닢이다.
綱 京外進飢口穀數
目 賑廳 五部三巡發賣元戶九千六百九十七米一千七百十一斗○中部元戶五十三米九十八石七斗 東部元戶一千七百十二米二百九十四石六斗 西部元戶三千七百五十一米六百九十五石七斗 南部元戶二十一百二十二米三百六十七石七斗 北部元戶一千五百二十米二百七十九石八斗衛將所員役三十九戶米十石六斗○京畿三巡分賑饑民四萬四百六十四口米一百七十六石九斗九升六合唐米二百四十石六斗租五百七十四石七斗六升五合太六百一石十二斗五升六合稷九十二石十二斗六升五合麰四百三十石三斗四升七合五夕木麥七十七石六斗八升四合鹽八十五石二斗二升二合四夕醬四十三石一斗三升一合甘藿一萬二千五十二立○廣州饑民四千二百八口米五十八石十斗太一百八石十斗麰四十石十三斗五升鹽十石十斗九升八合醬二石五斗八升藿一千二百二十七立 水原饑民一萬一千七百九十二口米四十八石五斗八升唐米一百二十石三升租一百九石八斗五升太二百五石十一斗八升鹽三十一石三升八合醬七石十二斗九升二合藿三千九百三十一立 (…)
<일성록, 정조11년(1787) 4월 29일(병인)>

사회/윤리 · 풍속
수원의 기민을 구휼하다
강 경기, 호남, 영남, 관동의 도신(道臣)이 진휼(賑恤)을 마쳤다는 것으로 치계(馳啓)하였다.
목 (…) ○ 수원(水原)은 원진을 12차 시행하였는데, 기민이 도합 4만 1825구이다. - 각곡은 3003석 2두 5승 7홉인데, 그중에 1601석 14두 6승 7홉은 상진곡이고, 1351석 2두 9승은 보진곡이고, 50석은 절충장군(折衝將軍) 나치검(羅致儉)이 자원(自願)한 보진곡이다. (…)
綱 京畿 湖南 嶺南 關東道臣以畢賑馳啓
目 (…) ○水原元賑十二巡合饑民四萬一千八百二十五口各穀三千三石二斗五升七合內一千六百一石十四斗六升七合常賑穀一千三百五十一石二斗九升補賑穀五十石折衝羅致儉自願補賑 (…)
<일성록, 정조11년(1787) 5월 22일(무자)>

사회/윤리 · 풍속
수원부 의녀의 도망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부(水原府)에 이속(移屬)한 의녀(醫女)가 도망간 폐해를 신칙하였다.

목 ○ 수원부사 조심태에게 전교하기를, "정배(定配)한 죄인이 도망가면 해당 수령을 반좌(反坐)하는 것이 본래 상법(常法)이다. 지난번 특교로 인하여 이속한 의녀는 정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정원에서 전교를 내리기를 더욱 얼마나 엄절히 하였는데 도망하는 대로 내버려 두어 여전히 경중(京中)에 머물고 있으니 어찌 이러한 기강이 있단 말인가. 비록 이미 잡아가기는 했지만 당초 방수(防守)를 성심으로 하지 않아서 놓쳐버리는 일이 있게 되었으니 경은 검칙하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특별히 참작해 줄 것이니 이에 의거하여 잘 알고 앞으로 각별히 유념해서 혹여라도 전처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게 하라. 이 일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이미 연석에서 말을 해서 액정서에서도 조사하여 아뢰었으니 이제는 참으로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보고 듣고서 놀라 탄식함이 어떠하겠는가. 부득이 다시 정원에서 기영(畿營)을 엄히 신칙할 것이니 앞으로 다시 소홀히 처리한다면 엄한 감처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강 飭水原府移屬醫女逃躲之弊

목 敎水原府使 趙心泰曰定配罪人之逃躲該守令之反坐自有常法向來因特敎移屬之醫女無異定配自政院下敎尤何等嚴截則任其逃躲依舊留接於京中寧有如許紀綱乎雖云已爲捉去當初不謹防守致此遺失卿之不能檢飭之責在所難免而今番則特爲參酌依此知悉此後各別惕意無或如前泛忽此事無人不知旣發於筵中掖庭署亦已査奏到今眞所謂掩不得如是之際聽聞所及其爲駭歎當如何不得已更自政院嚴飭畿營此後更或泛忽難免重勘

<일성록, 정조14년(1790) 10월 8일(을묘)>

사회/윤리 · 풍속

수원 유생 중에 독서에 힘쓰지 않고 응제에 차술할 생각하는 자가 많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약원 제조와 수원 어사(水原御史)를 소견하였다. 제조 이갑(李), 부제조 홍명호(洪明浩), 어사 신헌조(申獻朝)가 입시하였다.

목 (…) 이어서 신헌조에게 이르기를, "별단(別單) 외에 다른 일은 없는가?" 하니, 신헌조가 아뢰기를, "이미 별단에 다 열거하였으니 다시 상달할 만한 것은 없고, 민정은 읍내와 외촌을 막론하고 수원 한 지경에 은택이 두루 미쳐 특별히 심각한 폐단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곳에 집을 짓고 생활하는 유생 중에 편안히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독서에는 힘쓰지 않는 자들이 많아 **응제(應製) 때마다 차술(借述)**하여 대신할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공부를 권장하는 깊은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 이것이 매우 개탄스럽습니다." 하였다.(…)

강 召見藥院提調及水原御史于誠正閣 提調 李▣ 副提調 洪明浩 御史 申獻朝

목 (…) 仍謂申獻朝曰別單外無他事乎獻朝曰己悉於別單更無可達而民情則無論邑內與外村水原一境恩澤洽洽別無弊瘼矣但尋室居生之儒生輩多有優閑度日不勤做讀者每當應製之時不無借述代入之弊莫體勸課之至意是甚慨然矣

<일성록, 정조16년(1792) 2월 11일(경술)>

사회/윤리 · 풍속

수원 화재의 이재민들을 구휼하다

강 수원(水原)의 화재를 당한 백성들에게 작년의 전례대로 따로 휼전(恤典)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가 아뢰기를, “**수원부사** 이경무(李敬懋)의 첩정(牒呈)에, ‘읍내 북리(北里)에 사는 순령수(巡令手) 이종놈(李種老味)의 집이 이달 24일 유시(酉時)에 화재를 당하여 불이 정복실(鄭福實)의 집 등 6호(戶)에 옮겨 붙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새로 살림을 차린 민호가 농사철을 당하여 살 곳을 잃었으니 너무나 가엾습니다. 원래의 휼전 외에 편의대로 집을 지을 재목과 개초(蓋草)를 제급(題給)하는 등 여러모로 주선하라는 뜻으로 엄히 신칙하여 통지했습니다. 원래의 휼전은 호조로 하여금 회감(會減)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이미 별단에 대해 판하(判下)한 것이 있으니, 작년에 8호가 화재를 당했을 때의 전례대로 따로 휼전을 시행하라고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강 命水原失火民人依昨年例別施恤典
목 京畿監司 徐鼎修啓言該府使 李敬懋牒呈以爲邑內北里居巡令手李種老味家今二十四日酉時失火延及鄭福實等六戶云新接民戶之當農失所萬萬矜悶元恤典外從便題給家材蓋草等多般拮據之意嚴飭知委元恤典請令該曹會減敎以已有判下於別單者依昨年八戶例別施恤典事回諭
<일성록, 정조16년(1792) 3월 27일(병신)>

사회/윤리 · 풍속

수원부의 노인들에게 예물과 자급을 지급하다

강 100세 및 8, 9십 세 노인에게는 미육(米肉)을 세찬(歲饌)의 예대로 제급하고, 그중 100세 노인인 전 지사(知事) 이여상(李如尙)은 특별히 한 자급을 올려 주고 의자(衣資)를 넉넉히 지급하며, 문관, 음관(蔭官), 무관으로 도류(徒流)나 파삭(罷削) 이하의 죄명 및 사서(士庶)로서 도류나 경죄(輕罪)를 지은 사람은 모두 탕척(蕩滌)해 주며, 유생으로서 정거(停擧)된 자도 용서하라고 명하였다.
목 (…) 100세 노인 부류 - 광주(廣州)의 전 동지(同知) 이명기(李命起)는 103세, 유학 이춘징(李春徵)의 어미 이씨(李氏)는 103세, 양주(楊州)의 전 동지 이담(李淡)은 100세, 정헌대부(正憲大夫) 정귀건(鄭貴健)은 108세, 죽산(竹山)의 가선대부 한선이(韓善伊)는 104세, 남양(**南陽**)의 전 동지 최창도(崔昌道)는 100세, 이천(利川)의 통정대부(通政大夫) 김진경(金鎭景)은 100세, 가평(加平)의 정헌대부 김중기(金重基)는 107세, 양근(楊根)의 절충장군(折衝將軍) 윤성욱(尹聖郁)의 어미 김씨(金氏)는 101세, 영평(永平)의 전 동지 김득명(金得明)은 103세로 각각 미 5두, 대구어 3미, 염 3두씩이다. -
일찍이 실직을 지낸 80세 이상인 부류 - 광주 128인, 양주 12인, 파주(坡州) 31인, 교동(喬桐) 5인, **수원(水原)** 46인 (…) 사서인으로서 90세 이상인 부류 - 광주 10인, 양주 19인, 여주(驪州) 15인, 파주 2인, 교동 6인, **수원** 6인 (…)
강 (…) 京畿百歲老人秩 廣州前同知 李命起年一百三幼學李春徵母李氏年一百三楊州前同知 李淡年一百正憲鄭貴健年一百八竹山嘉善韓善伊年一百四**南陽**前同知 崔昌道年一百利川通政金鎭景年一百加平正憲金重其年一百七楊根折衝尹聖郁母金氏年百一永平前同知 金得明年一百三各米五斗大口魚三尾鹽三斗曾經實職年八十以上秩 廣州一百二十八人楊州十二人坡州三十一人喬桐五人**水原**四十六人 (…) 士庶年九十以上秩 廣州十人楊州十九人驪州十五人坡州二人喬桐六人**水原**六人 (…)
<일성록, 정조16년(1792) 6월 18일(을유)>

사회/윤리 · 풍속

수원의 재해 정도를 경기 감사가 장계하다

강 경기와 관북의 재실의 등급을 나누는 일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협농(峽農)과 야농(野農)에는 상호 득실이 있지만 이 읍과 저 읍에는 그리 심한 우열이 없으니, 통틀어 말하면 다 흉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양천(陽川)의 경우 작년 농사에 이미 큰 흉년을 겪었는데 금년 재해의 형편이 또 참혹한 흉년이 되었고, 부평(富平)은 양천처럼 한 경내가 온통 재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연해의 4개 면이 거의 모두 물에 잠겼으므로 이 두 읍은 우심재에 두었습니다. 이 밖의 각 읍은 협농과 야농의 사이에 재결(災結)과 실결(實結)이 섞여 있으니 그 가운데서 약간 읍을 지적해 낸 다음 억지로 구별하여 초실(稍實)로 지목하는 것은 끝내 분명하게 조사하여 밝히는 도리가 아니므로, 한결같이 모두 지차에 두었습니다.

재상(災傷)의 형편에 대해서는 수재(守宰)를 엄히 신칙하여 직접 전야(田野)를 점검한 다음 면과 리에 따라 등급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올해의 각종 재결은 5411결 83부(負) 9속(束)인데 연해 지역의 여러 해 구탈(舊頉)로 잡혀온 전답을 일체 마감한 것이 493결 89부 7속이니, 도합 5905결 73부 6속입니다. 이 재총(災摠)을 호조에서 내려 준 3500결과 비교해 보면 부족한 것이 2405결 73부 6속이니, 특별히 수효대로 더 떼어 주기를 허락해 주소서. 백성들의 고충에 관계되는 일은 아래에 조목별로 열거하니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 뜻을 여쭈어 분부하게 하소서.

〔우심재 2개 읍〕

양천(陽川)·부평(富平)

〔지차 35개 읍진(邑鎭)〕

양근(楊根)·금천(衿川)·고양(高陽)·김포(金浦)·진위(振威)·인천(仁川)·여주(驪州)·광주(廣州)·양주(楊州)·남양(**南陽**)·양성(陽城)·통진(通津)·**수원(水原)**·음죽(陰竹)·죽산(竹山)·교하(交河)·안산(安山)·교동(喬桐)·풍덕(豐德)·장단(長湍)·과천(果川)·이천(利川)·안성(安城)·연천(漣川)·파주(坡州)·지평(砥平)·적성(積城)·마전(麻田)·삭녕(朔寧)·영평(永平)·용인(龍仁)·양지(陽智)·포천(抱川)·가평(加平)·영종(永宗)(…) 셋째, 지차 35개 읍진 가운데 양근·금천·고양·김포·진위·인천·여주·광주·양주·남양·양성·통진·**수원**·음죽 등 14개 읍은 수재를 당한 면리인데 재해로 손상된 것이 우심재읍의 우심재면이나 우심재리와 다르지 않으니 당년의 환향을 3분의 1까지, 지차리 및 지차면의 우심재리는 4분의 1까지 정퇴해 주소서. 환향을 다른 곡식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은 모두 이 외의 21개 읍진과 함께 우심재면리·지차면리·초실면리를 막론하고 3분의 1까지 그에 상당하는 곡식으로 준절하여 대신 바치고 다음 해 가을이 되거든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해 주소서. (…)

강 命京畿 關北災實分等依狀請施行

목 京畿監司 徐鼎修狀啓以爲峽農野農互有得失此邑彼邑無甚優劣統以言之擧未免告歉至於陽川昨秋穡事旣經大無今年災形又判慘歉富平雖不至如陽川之全一境被災而沿海四面擧皆水沈此兩邑則置之尤甚此外各邑峽野之間災實相參就其中指出若干邑强加區別目之以稍實終非綜核之道一倂置之之次災傷形止嚴飭守宰躬檢田野依面里分等各樣今災爲五千四百十一結八十三負九束沿海地流來舊頉一體磨勘者爲四百九十三結八十九負七束合爲五千九百五結七十三負六束以此災總較諸地部所下三千五百結則其所不足爲二千四百五結七十三負六束請特許如數加劃至於事係民隱者條列于左幷令廟堂稟旨分付○尤甚二邑 陽川 富平 之次三十五邑鎭 楊根 衿川 高陽 金浦 振威 仁川 驪州 廣州 楊州 **南陽** 陽城 通津 **水原** 陰竹 竹山 交河 安山 喬桐 豐德 長湍 果川 利川 安

城 漣川 坡州 砥平 積城 麻田 朔寧 永平 龍仁 陽智 抱川 加平 永宗 (…) 一之次三十五邑鎭中楊根 衿川 高陽 金浦 振威 仁川 驪州 廣州 楊州 **南陽** 陽城 通津 **水原** 陰竹等十四邑被水面里其所災損無異尤甚邑尤甚面尤甚里新還餉限三分一之次里及之次面尤甚里限四分一停退還餉代穀則幷與外此二十一邑鎭毋論尤甚之次稍實面里限三分一以相當穀準折代捧待明秋還作本色 (…)
<일성록, 정조16년(1792) 9월 27일(계해)>

사회/윤리 · 풍속

수원 등의 기민을 구제토록 명하다

강 **수원** · 광주(廣州) · 금천(衿川) · 과천의 기민을 가려내어 양식을 백급(白給)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어가가 지나간 뒤에는 은혜로운 정사가 있어야 한다. 더구나 작년 농사에 서 굶주림으로 고생하는 본부 해서(海西)의 민정이 호서와 다르지 않다고 하니 이 밖에 다른 고을 역시 미루어 알 수 있다. 도백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가장 굶주리고 곤궁한 백성을 가려내어 양식을 백급함으로써, 조정에서 본부의 지방을 위해 고을 백성들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뜻을 보이게 하고, 어가가 지나는 광주와 금천 역시 이대로 시행하라. 과천의 길을 닦는 역사는 민력이 배로 들어가는 일이다. 일체 기민을 가려내어 양식을 백급하라는 내용으로 분부하라." 하였다.

강 命抄**水原** 廣州 衿川 果川飢民白給糧資

목 敎曰駕過之處當有惠政況昨年穡事本府海西民情之顧頷無異於湖西云外此他面亦可推而知令道伯抄其最飢困者白給糧資以示朝家爲本府地方推及坊內民人之意廣州 衿川輦路面亦依此爲之至於果川治道之役民力倍入一體抄飢白給事分付
<일성록, 정조17년(1793) 1월 13일(정미)>

사회/윤리 · 풍속

수원부의 환곡 분급을 추가로 허락하다

강 **수원부**의 환곡을 더 분급하도록 특별히 허락하였다.

목 ○ **수원유수** 채제공이 아뢰기를, "이처럼 춘궁기를 맞아 백성의 굶주림이 날로 심해지고 있는데, 그들을 구제할 방도로는 환곡에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의 환곡은 본래 넉넉지 않은 데다가 올해 환곡을 받을 호구(戶口)로 날마다 추가로 등록된 숫자도 작년에 비해서 거의 배나 되므로, 각종 창고의 곡식으로 모조리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11순(巡)을 안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내의 군향(軍餉)과 산성(山城)의 창환(倉還)은 어떠한 명목이든지 간에 절반을 유고(留庫)하도록 한 법을 고수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분급할 수량을 얼마로 할지는 앞으로 백성의 상황이 얼마나 다급한지를 살펴보아야 결정할 수 있겠으나, 환곡을 더 분급하는 것과 관계되는 일이므로 감히 이처럼 삼가 진달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特許**水原府**還穀加分

목 **水原留守** **蔡濟恭**啓言當此窮春民飢日甚其所接濟之方惟還穀是恃本府穀數自來不敷而今年還戶之日日追付者比昨年殆近倍數以各樣倉穀雖傾庫磨鍊而無以排十一巡矣府內軍餉及山城倉還無論某樣名色勢將不得守半留之法若其分數之或多或少觀前頭民勢緩急可以決定而事係加分故敢此仰達從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3월 10일(계묘)>

사회/윤리 · 풍속

수원유수 채제공이 성묘 때 요전상을 갖추도록 명하다

강 수원유수 채제공(蔡濟恭)이 죽산(竹山)에 성묘하러 갈 때에 요전상(澆奠床)을 갖추어 주라고 명하였다.

목 ○ 채제공이 죽산에 성묘하러 가는 일로 급히 장계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대신이 오늘 길을 떠난다고 하니 요전상을 갖추어 주라고 경기 감영에서 오늘 안으로 해당 고을에 통지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水原留守 蔡濟恭 竹山省掃時澆奠床備給

목 濟恭以竹山地省掃事馳啓敎以大臣今日作行云澆奠床備給事令畿營今日內知委該邑

<일성록, 정조17년(1793) 4월 8일(경오)>

사회/윤리 · 풍속

수원유수가 버려진 아이에 대한 구휼을 보고하다

강 수원유수 이명식(李命植)이 유기아(遺棄兒)와 관련하여 양식을 지급한 일로 급히 보고한 데 대해, 다시 유기아를 더 찾아보라고 신칙하였다.

목 ○ 장계에, “부내(府內) 북리(北里)에 유기된 3세 남자 아이 1명에게 젖을 먹인 여인에게 양식을 지급하였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요미(料米) 1되씩 도합 쌀 2말 9되, 장 2홉씩 도합 장 5되 8홉, 미역 2닢씩 도합 미역 58닢을 본부에서 규례에 따라 제급(題給)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본부는 신설된 유수영(留守營)으로서 체모가 남다르니 조정의 명령을 봉행함에 있어서도 더욱 자별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백성을 돌보는 정사에 속하는 일이니 다른 도에 비하여 열 배나 더 마음을 써야 할 것이다. 부내의 면리(面里) 중에 유기아가 어찌 이 한 명에 그치겠는가. 더 마음을 다잡고 찾아서 나의 뜻을 널리 알리는 실효를 거두도록 하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綱 水原留守 李命植以遺棄兒給糧馳啓飭更加搜訪

目 狀啓以爲府內北里遺棄三歲男兒一口飼乳女給糧自去七月初一日至二十九日每日料米一升合米二斗九升醬二合合五升八合藿二立合五十八立自本府依例題給矣敎以本府以新設留營體貌自異其所奉行朝令尤當自別又況事屬恤民之政十倍加意於他道爲可府內面里豈止有此一口更加着意搜訪俾有對揚之實效事回諭

<일성록, 정조17년(1793) 8월 2일(임술)>

사회/윤리 · 풍속

노부모를 모시는 수원유수 이명식에게 재물을 하급하다

강 기로소의 신하 가운데 노부모를 모시고 사는 윤방(尹坊)의 집에 옷감과 음식물을 넉넉히 실어 보내고, 내외가 해로하는 이명식(李命植), 홍양호(洪良浩), 홍억(洪檍), 조환(趙瑍), 송제로(宋濟魯)의 집에 옷감과 음식물을 제급(題給)하고, 5대가 함께 연석에 오른 구윤명(具允明)에게 옷감과 연수(宴需)를 특별히 실어 보내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오늘 진전한 기로소의 신하들 가운데 지중추부사 윤방은 늙은 부모를 모시고 있는데, 건강하고 기력이 좋다고 한다. 듣자 하니 매우 희귀한 일이니, 옷감과 음식물을 제급하고 정부인(貞夫人) 남씨(南氏)에게도 넉넉히 실어 보내라. 수원유수 이명식, 행

사직 홍양호·홍억, 행 부사직 조환, 지돈녕부사 송제로가 내외가 해로하고 있으니, 예조로 하여금 옷감과 음식물을 제급하게 하라고 분부하여 연로한 사람을 존중하여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뜻을 보이라. 능은군(綾恩君) 구윤명은 한집에서 5대가 함께 연석에 오른 것은 더욱 희귀하다는 생각이 든다. 옷감과 연수를 특별히 실어 보내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綱 命耆臣中奉老人尹坊家衣資食物優數輸送偕老人李命植 洪良浩 洪檍趙煥宋濟魯家衣資食物題給五世同登筵席人具允明衣資及宴需拔例輸送

目 敎曰今日進箋耆社諸臣中知中樞 尹坊奉老康旺云聞甚稀貴衣資食物題給貞夫人南氏優數輸送水原留守 李命植 行司直 洪良浩 洪檍 行副司直 趙煥 知敦寧 宋濟魯內外偕老令該曹衣資食物題給事分付以示尊年惠養之意綾恩君 具允明一堂五世之同登筵席尤覺稀貴衣資及宴需拔例輸送事分付

<일성록, 정조17년(1793) 12월 12일(신미)>

사회/윤리 · 풍속

수원유수 이명식(李命植)과 그 부인에게 세찬을 지급하다

강 봉조하(奉朝賀) 정존겸(鄭存謙),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의 집에는 세찬(歲饌) 외에 옷감과 먹을거리를 더 보내고, 능은군(綾恩君) 구윤명(具允明)의 집에도 세찬을 더 보내고, 경재(卿宰)로서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내외가 해로(偕老)한 자에게는 각각 세찬 외에 명주［紬］ 1필(疋)씩을 주고, 문관·음관·무관인 조관(朝官)으로서 가선대부(嘉善大夫) 이하와 시종(侍從)으로서 당상 이상 및 중서인(中庶人)으로서 해로한 자에게도 세찬을 더 주고, 서울과 지방의 사서인으로 해로하였으나 나이가 80세가 되지 못한 자에게도 똑같이 가자하여 오늘 정사에서 동지중추부사의 자리를 가설하여 의망해 들이고, 그 밖에는 경중(京中)의 예(例)에 따라 세찬을 더 주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정 봉조하, 영의정, 채 영중추부사의 집에는 해당 조로 하여금 세찬 외에 옷감과 먹을거리를 더 보내게 하고 이어서 안부를 물은 다음 초기하게 하라. 능은군 구윤명의 집에도 세찬을 더 보내라. 수원유수(水原留守) 이명식(李命植)과 정경부인(貞敬夫人) 심씨(沈氏), 전 판서 홍억(洪檍)과 정경부인 김씨(金氏), 전 판서 홍양호(洪良浩)와 정경부인 정씨(鄭氏), 전 판서 이민보(李敏輔)와 정경부인 서씨(徐氏), 지중추부사 유당(柳戇)과 정부인(貞夫人) 황씨(黃氏), 전 지중추부사 서병덕(徐秉德)과 정부인 박씨(朴氏), 전 판서 조환(趙瑍)과 정부인 김씨, 지돈녕부사 송제로(宋濟魯)와 정부인 엄씨(嚴氏), 전 판서 이복영(李復永)과 정부인 구씨(具氏), 전 참판 김익휴(金翊休)와 정부인 조씨(趙氏), 전 병사 조규진(趙圭鎭)과 정부인 김씨, 언춘군(彦春君) 김인서(金麟瑞)와 정부인 김씨 등 문관, 음관, 무관인 경재로서 내외가 해로한 자가 12인이나 되니, 세찬 외에 각각 명주 1필씩을 주라. (…)

綱 命奉朝賀 鄭存謙 領議政 洪樂性 領府事 蔡濟恭家歲饌外加送衣資食物綾恩君具允明家歲饌亦爲加送卿宰年七十以上內外偕老者歲饌外各給紬一疋文蔭武朝官嘉善以下侍從堂上以上及中庶偕老者亦命加給歲饌京外士庶之偕老而年未滿八十者一體加資今日政同知加設擬入其外則依京中例加給歲饌

目 敎曰鄭奉朝賀 領議政蔡領府事家令該曹歲饌外加送食物衣資仍令存問以來後草記綾恩君具允明家歲饌亦爲加送水原留守 李命植貞敬夫人沈氏前判書 洪檍貞敬夫人金氏前判書 洪良浩貞敬夫人鄭氏前判書 李敏輔貞敬夫人徐氏知事 柳戇貞夫人黃氏前知事 徐秉德貞夫人朴氏前判書 趙瑍貞夫人金氏知敦寧 宋濟魯貞夫人嚴氏前判書 李復永貞夫人具氏前參判 金翊休貞夫人趙氏前兵使

趙圭鎭貞夫人金氏彦春君金麟瑞貞夫人金氏文蔭武卿宰內外偕老者爲十二人之多歲饌外各給紬一匹 (…)
<일성록, 정조18년(1794) 1월 1일(기축)>

사회/윤리 · 풍속

혼기가 지나도 혼인하지 못한 수원의 백성들에 대해 논의하다

강 **수원판관(水原判官)** 김노성(金魯成)에게 혼기(婚期)가 지났는데도 혼인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 보고 군정(軍政) 또한 중군(中軍)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하나 바로잡으라고 신칙하였다.

목 ○ **수원유수(水原留守)** 이명식(李命植)의 장계에, "방금 **본부의 판관 김노성**의 첩정(牒呈)을 보니, 이번 동등(冬等)에 혼기가 지났는데도 혼인하지 못했던 본부 경내의 부류에게 정식에 따라 곡물을 도와서 지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인하지 못했던 부류의 성명 및 도와서 지급한 곡물을 후록(後錄)하여 급히 아룁니다."
하였다.

○ 후록한 별단에, "**장족면(長足面)** 과부 김씨(金氏)의 딸 나이가 22세인데 용인(龍仁) 임광로(林光老)와 계축년(1793, 정조17) 10월 25일에 혼기가 지나 혼인하였고, **삼봉면(三峯面)** 가선대부 이성윤(李誠潤)의 손자 이일손(李日遜)의 나이가 30세인데 남양(**南陽**) 이원지(李源之)의 딸과 계축년 11월 3일에 혼기가 지나 혼인하였고, **장족면** 과부 윤씨(尹氏)의 아들 유학(幼學) 이원대(李元大)의 나이가 38세인데 과천(果川) 송광철(宋光喆)의 딸과 계축년 12월 28일에 혼기가 지나 혼인하였고, **부내(府內)의 북리(北里)** 과부 장 조이(張召史)의 아들 양인(良人) 최진(崔鎭)의 나이가 31세인데 **태촌(苔村)** 김대춘(金大春)의 딸과 계축년 12월 25일에 혼기가 지나 혼인하였고, **오정면(梧井面)** 양인 김대로(金大老)의 아들 김만춘(金晩春)의 나이가 31세인데 남양 홍수경(洪壽景)의 딸과 계축년(1793, 정조17) 12월 17일에 혼기가 지나 혼인하였고, **광덕면(廣德面)** 유학 이득보(李得輔)의 아들 이윤대(李允大)의 나이가 30세인데 아산(牙山) 나완빈(羅完彬)의 딸과 계축년 10월 18일에 혼기가 지나 혼인하였고, **광교면(光敎面)** 양인 이태득(李泰得)의 나이가 33세인데 안산(安山) 송중대(宋仲大)의 딸과 계축년 11월 21일에 혼기가 지나 혼인하였습니다. 이상 7인에게 각각 미(米) 1섬씩을 도와서 지급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이른바 지방관이 성심으로 찾아보아서 누차 신칙한 조령(朝令)을 봉행하였다면 어찌 30세의 노총각과 노처녀가 머리를 올리지 못하고, 장가가지 못한 자가 응시(應試)하는 일이 있겠는가. 이렇듯 만홀하게 거행해 놓고 감히 감영에 보고하는 말에 이처럼 규례에 따라 말을 만들었으니 너무도 놀랍다. 다른 군(郡)일 경우에도 감히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본부에 새로 창설한 판관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렇지만 자꾸 잇따라서 감죄(勘罪)하는 것 또한 구차하니 우선 처분하지 말라.
원행(園行)하고 궁으로 돌아온 뒤에 판관으로 하여금 방방곡곡 백성의 집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마다 고찰하고 사람마다 찾아내어 혹 한 사람의 홀아비도 없게 하라. 근래에 들으니 군정(軍丁)에 편입시키는 것을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한다. 조령을 내린 초기여서 이를 제기하여 하교하지는 않았으나 또한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뒤섞여 그렇게 되었을 것이니, 이것 또한 판관이 중군에게 맡기지 말고 이번에 두루 다닐 때에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와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중군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하라. 이와 같이 한 뒤에도 만약 부지런히 거행하지 못했다는 말이 들리면 해당 판관은 기필코 엄히 감처할 것이니, 이러한 내용으로 회

유하라.” 하였다.

綱 命喬桐府移轉穀以營賑穀劃補常賑穀不足之數此後弘濟院支勅時使客支待竝蠲除任譯驛卒輩以乾糧上下楊州牧軍物令守廳區劃修補

目 京畿監司 徐龍輔啓言昨年喬桐府移轉各穀前道臣在任時以常賑穀區劃之意有所仰陳已以沿邑所在推移入送而道內常賑穀自來不敷各樣公用專靠於此則今番移粟之多數除出誠爲可悶至於營賑穀自是備荒之資而年年生耗自有餘蓄以此移報事甚便當矣從之龍輔曰在前勅行之時弘濟院支站以水原等十一邑分排擧行矣一自水原分司之後支勅一款亦當移定於站屬各邑而畿邑事力自來凋殘勢無以加數分定只有一事可以變通者弘濟站去京城未滿十里政府及問安承旨 中使之行雖有外邑文供之例有各無實徒歸下輩侵漁之資雖以觀察使 遠接使行言之京都咫尺之地各自傳食不至甚難自今定式無諭政府 承旨 中使 觀察使 遠接使外邑支待一竝蠲除至於任譯驛卒等竝以乾價上下則庶可爲移此補彼之道矣從之龍輔曰昨年元陵幸行時因楊州牧使 李東馨所啓本府所在守禦廳軍兵布帳銅爐口等物年久朽弊措備無策某樣錢中無邊貸下拮据修補事有令道臣論理稟處之命矣此係陰雨之備其所措處不容少緩而臣營事力自來凋殘本無錢貨之可以推移貸下者且是守廳所管軍物令該廳從長區劃卽速補完恐合事宜矣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1월 8일(병신)>

사회/윤리 · 풍속

수원부의 추은, 해로할 노인의 수를 보고하다

강 이조와 병조에서 서울과 지방의 추은(推恩)할 사람과 해로(偕老)한 사람들의 총수를 다시 수정하여 아뢰었다.

목 ○ 이조와 병조가 아뢰기를, “각 도의 추은할 노인과 해로한 노인의 총수에 대한 초기를 계하받고 성책(成冊)을 다시 살펴보니 해로한 노인의 수에 차이가 있어서 다시 초기합니다.”

하였다.

○ 초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성부는 추은할 노인이 581명이고 해로한 노인이 794명이다.

경기는 추은할 노인이 2200명이고 해로한 노인이 4694명이다.

수원부는 추은할 노인이 153명이고 해로한 노인이 364명이다.

개성부는 추은할 노인이 80명이고 해로한 노인이 92명이다.

강화부는 추은할 노인이 104명이고 해로한 노인이 178명이다.

충청도는 추은할 노인이 1817명이고 해로한 노인이 2384명이다.

경상도는 추은할 노인이 3668명이고 해로한 노인이 6700명이다.

전라도는 추은할 노인이 2994명이고 해로한 노인이 6934명이다.

제주는 추은할 노인이 373명이고 해로한 노인이 84명이다.

평안도는 추은할 노인이 5107명이고 해로한 노인이 1만 2456명이다.

황해도는 추은할 노인이 3446명이고 해로한 노인이 9636명이다.

강원도는 추은할 노인이 2740명이고 해로한 노인이 3358명이다.

함경도는 추은할 노인이 1962명이고 해로한 노인이 2140명이다.

서울과 지방의 추은할 노인이 2만 4425명이고 해로한 노인이 4만 9814명으로, 모두 합하여 7만 4239명이다.

綱 吏兵曹以京外推恩及偕老人總數改修正啓

目 吏兵曹啓言諸道推恩老人及偕老老人總數草記啓下而更考成册則偕老數爻有相左者更爲草記○漢城府推恩老人五百八十一偕老老人七百九十四京畿推恩老人二千二百偕老老人四千六百九十四水原府推恩老人一百五十三偕老老人三百六十四開城府推恩老人八十偕老老人九十二江華府推恩老人一百四偕老老人一百七十八忠淸道推恩老人一千八百十七偕老老人二千三百八十四慶尙道推恩老人三千六百六十八偕老老人六千七百全羅道推恩老人二千九百九十四偕老老人六千九百三十四濟州推恩老人三百七十三偕老老人八十四平安道推恩老人五千一百七偕老老人一萬二千四百五十六黃海道推恩老人三千四百四十六偕老老人九千六百三十六江原道推恩老人二千七百四十偕老老人三千三百五十八咸鏡道推恩老人一千九百六十二偕老老人二千一百四十京外推恩老人二萬四千四百二十五人偕老老人四萬九千八百十四合爲七萬四千二百三十九人
<일성록, 정조18년(1794) 8월 13일(정묘)>

사회/윤리 · 풍속

화성 공역 정지의 뜻을 밝히며 조세 견감과 구휼의 윤음을 내리다.

강 호서의 백성들에게 조세를 견감하여 구휼해 주는 윤음을 내렸다.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과 물선(物膳)을 우심재읍에는 내년 보릿가을까지 면제해 주었다. 신역으로 내는 미·포·전을 우심재읍의 가장 우심한 민호에는 모두 정퇴해 주고 우심한 민호에는 절반은 정퇴하고 절반은 대전(代錢)으로 내게 하며, 우심재읍의 지차인 민호 및 지차읍의 가장 우심한 민호에는 3분의 1은 정퇴하고 3분의 2는 대전으로 내게 하였다. 환향을 우심재읍의 가장 우심한 민호와 우심한 민호 및 지차읍의 가장 우심한 민호에는 이미 정퇴한 것 이외의 나머지에 대해서도 적당히 헤아려서 조절해 주었다. 대동을 우심재읍의 우심한 면리(面里)에는 절반을 기한을 물려서 받아들이고, 우심재읍의 지차인 면리 및 지차읍의 우심한 면리에는 3분의 1을 기한을 물려서 받아들이게 하였다. 결전(結錢)을 우심재읍 및 지차읍의 우심한 면리에는 절반을 내년 가을까지 정퇴하였다. 어세(漁稅)·염세(鹽稅)·선세(船稅)를 연해의 우심재읍에는 전 수량을 내년 가을까지 정퇴하고, 연해의 지차읍에는 절반을 내년 가을까지 정퇴하였다. 내사복시(內司僕寺)의 노비 신공 및 구전(口錢)을 우심재읍에는 전 수량을 내년 가을까지 정퇴하였다.

목 (…) 지난달에 견감하고 면제해 준 정사는 방법을 강구해 본 것에 불과하니 어찌 주먹구구로 한 억측이 적중하기를 바라겠는가. 이와 같이 하면 충분히 안정시켜 살릴 수 있다는 것이 묘당의 의논이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와 같이 하면 구제할 수 있다는 것이 도백의 장계이나, 그 또한 믿을 수 없다. 보지 않아도 본 것과 같고 천리 밖의 일을 섬돌 앞의 일과 같이 생각하고 있기에, 근신(近臣)을 대신 보내어 너희들에게 위유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갓난아이들이다. 갓난아이가 어미의 무릎을 맴돌며 잠시도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가 젖을 먹여 주기 때문이니, 오늘 너희들이 먹여 주기를 바라는 것이 어찌 갓난아이가 젖을 그리워하는 정도일 뿐이겠는가. 그러니 위유사의 행차에 수반하여 무엇을 주어서 기쁘게 할지 무엇을 구해다가 그 바람에 부응해 줄 것인지를 생각할 뿐, 번잡한 경용(經用)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중요한 공물(貢物)도 염려할 겨를이 없다. 화성의 성역은 능침(陵寢)을 수호하기 위한 일인데도 오히려 역사(役事)를 정지하였다.

호서는 훌륭한 사대부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으로, 모두가 초야에서 글을 읽어 고금의 일에 통달하였을 것이니 아마 나의 고심과 간절한 정성을 알고 있을 것이다. 내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직 하늘이 우리 백성들을 돌봐 주고 나의 부덕을 이유로 재앙을 내리지

말고 재변을 상서로 바꾸어 단비와 순한 바람을 내려 주시고 풍년이 들 상서(祥瑞)를 내려 주셔서 배불리 먹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더구나 간지로 을묘년이 되는 내년(1795, 정조19)은 하늘이 내린 경사가 중첩되어 많은 우리 백성들과 함께 경하하고 함께 즐길 때이니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

강 下湖西蠲恤綸音三名日方物物膳尤甚邑限明年麥秋停免身米布錢尤甚邑最尤甚戶一竝停退尤甚戶折半停退折半代錢之次戶及之次邑最尤甚戶三分一停退三分二代錢還餉尤甚邑最尤甚戶尤甚戶之次邑最尤甚戶已停退外量宜闊狹大同尤甚邑尤甚面里折半退捧之次面里及之次邑尤甚面里三分一退捧結錢尤甚邑及之次邑尤甚面里折半限明秋停退漁鹽船稅尤甚沿邑全數之次沿邑折半限明秋停退內寺奴婢貢及口錢尤甚邑全數限明秋停退

목 (…) 前月蠲免之政摸索而已何望拳霔之億中如斯足以奠活廟議也予未爲然如彼可以濟救道啓也亦莫之信不見如見千里而階前惟有替遣近侍慰諭爾等爾等赤子也赤子纔慈母之膝不欲斯須離側爲其哺乳也今日爾等之望哺奚翅赤子之戀乳則於其往而伴其行何贈以悅之何求以副之經用之繁不暇顧供獻之重不暇念**華城城役**爲仙寢拱護也尙亦停役湖西士大夫之冀北也林下讀書通古達今竊庶幾知予苦心血誠予何多誥惟天眷顧我民不以予否德而轉災爲祥降之以甘雨和風錫之以兩歧九穗含哺之喜跂足而待又況太歲乙卯天庥申命偕我元元同慶同樂者乎 (…)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3일(정해)>

사회/윤리 · 풍속

화성 성역의 정지를 언급하며 대사간 박기정(朴基正)이 상소하다

강 대사간 박기정(朴基正)이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목 (…) 농사가 흉년이 들었다고 한번 고하고부터 성상의 애타는 생각은 오직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조차도 오히려 정지하였고 어공(御供)의 음식물이나 약재도 견감(蠲減)하였으며, 간혹 대간(臺諫)의 말로 인하여 절약하라는 전교를 특별히 내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귀를 기울이고 들어 봐도 한마디 말도, 한 가지 일도 묘당에서 복주(覆奏)하여 시행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임금의 뜻을 받드는 도리가 참으로 이와 같단 말입니까. 임금은 있되 신하는 없다는 탄식이 오늘에 생겨난 말은 아니지만 신은 이에 대해 묘당을 위하여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강 大司諫 朴基正上疏賜批

목 (…) 一自年事之告歉我聖上憧憧一念惟在元元**華城城役**猶且亭止御供膳藥又爲蠲減間因諫臣之言特下節省之敎而側聽屢日未見一言一事之自廟堂覆奏施行者訏謨之地對揚之道固如是乎有君無臣之歎非今斯今而臣於此尤不勝其爲廟堂慨然也 (…)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7일(신묘)>

사회/윤리 · 풍속

화성에 소속된 해안가 재해를 입은 지역의 실정을 별단으로 올리다

강 경기 일대 암행 어사와 적간한 사관이 서계와 별단을 올렸다.

목 (…) 이상의 암행 대상 고을 중 인천은 9개 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 관계로 우심한 재해를 입은 민호가 가장 많습니다. 인천과 안산 사이에 예전에는 수백 섬을 파종할 만한 호조의 언답(堰畓)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화성(華城)**에 소속되었는데, 소금땅이라서 작물이 심하게 말라비틀어졌으므로 수확하고 나서도 완전히 버려두거나 수확하지 않은 채 내

팽개쳐 두니, 그곳의 거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수령은 이미 마음대로 재결을 인정해 주기가 어렵고 세금을 걷는 아전도 하소연하는 대로 돌보아 주지 못하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원통하여 고장(告狀)을 작성합니다마는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시든 줄기와 병든 이삭을 들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보이며 모두들 백징당할 것이 걱정이라고 하고 있으니,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황정(荒政)으로 시행할 만한 것에 관계되는 것은, 전후의 견감해 준 은전만으로도 이미 지극합니다. 각 도에서 흉년이라고 보고한 것이 비록 차등이 있으나 지금과 같은 황급한 상황으로는 진대(賑貸)하는 정책을 오는 봄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듯합니다. 각 해당 수령으로 하여금 현재 굶주림으로 부황이 든 부류들을 뽑아내서 세전(歲前)이든 세후(歲後)든 막론하고 어느 때든 진휼하여 굶어 죽는 일은 면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일 듯합니다."
하였다. (…) 원소(園所)에 필요한 것 및 **화성** 성역에 필요한 것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본가(本價)를 반드시 넉넉하게 지급하여 혹 조금이라도 민간에 폐단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소서. (…)

강 畿路暗行御史摘奸史官進書啓別單

목 (…) 右枓邑之中仁川九面治海最多被災尤甚仁安之間舊有戶曹堰畓屢百石種今屬**華城**而醎磋之地偏受枯傷或已收而全棄或未穫而抛置居民無以賴活土在之官旣難任意給災收稅之吏又不隨所顧恤民人稱冤具狀無路自達至以矮莖病穗逢人輒示俱道白徵之可悶所見極可矜憐凡係荒政之可施者前後蠲惠之典靡不容極各道告歉雖有差等以今遑急之狀賑貸之政恐不可遲待開春令各該守宰抄出目下頷頗之類毋論歲前後不時賙賑俾免捐瘵恐爲急務 (…) 園所所用及**華城城役**所需雖至細者必厚給本價無或一半分貽弊於民間 (…)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16일(경자)>

4. 문화(文化)

⑴ 사상

문화/사상

수원에서 올라오는 유현(儒賢)을 대우하다

강 유현(儒賢)이 올라올 때 말을 주라고 명하였다.

목 하교하기를, "이번 달이 그믐이 되어 가니 유현이 스스로 길을 떠날 것이다. 수원(水原)에서 올라올 때 말을 주라고 경기 감사 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강 命儒賢上來時給馬

목 敎曰今月將晦儒賢自當登途自水原上來時給馬事下諭于京畿監司

<일성록, 정조3년(1779) 3월 27일(신해)>

문화/사상

수원부사 민종현 등에게 하유하다

강 경기 감사 이형규(李亨逵)와 수원부사(水原府使) 민종현(閔鍾顯) 등에게 하유하였다.

목 (…) 또 하교하기를, " '유지(有旨) 가운데 오자(誤字)는 수원본(水原本)을 가지고 바로잡고, 언본(諺本)은 1건(件)을 먼저 내려보내라. 이것을 순찰이 도착할 때에 경이 가지고 가서 효유하고, 열읍(列邑)은 윤음이 도착하면 속히 반포하고 언본은 내려보내기를 기다렸다가 또한 즉시 전하여 반포하도록 하라.' 는 내용으로 경기 감사 이형규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 '경은 평소 언문으로 바꾸는 데 익숙한데, 본원(本院) 안에는 동부승지가 번역한 것만 있으니 말이 아니게 되었다. 경이 순찰하러 가서 묵는 역참(驛站)에서 틈을 내어 반드시 바로잡은 다음 열읍에 두루 포고하도록 하라. 다 바로잡은 뒤에는 1건을 장계를 갖추고 원본을 베껴서 올려 보내도록 하라.' 는 내용으로 경기 감사 이형규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또 수원부사 민종현에게 내려보내는 윤음을 가지고 하교하기를, " '경은 이 윤음을 수령하거든 즉시 진본(眞本)과 언본 두 본을 베껴 내서 방방곡곡에 두루 포고하여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혹시라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만일 마음을 쓰지 않고 소홀히 함이 있으면 경도 꾸짖고 신칙하는 데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라. 본부(本府)가 가장 심하게 재황(災荒)을 당하여 경내 백성들의 목숨이 모두 경에게 달려 있으니, 경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게을리하지 말고 성실을 다하여 구휼함으로써 지방관으로 임명된 책임에 부응하도록 하라.' 는 내용으로 별유(別諭)하라." 하였다. (…)

강 諭京畿監司 李亨逵 水原府使 閔鍾顯等處

목 (…) 又敎曰有旨中誤字同異水原本釐正而諺本則一件先爲下送此則巡到時卿齎往諭列邑則綸音到則星火頒布諺本則待下送亦卽傳布事下諭于京畿監司 李亨逵處又敎曰卿素嫺諺譯而院中只有同副所翻譯者殆不成說卿於巡到宿站乘隙必也釐正遍布列邑可也畢釐正後一件具狀啓謄書上送事下諭于京畿監司 李亨逵處又以水原府使 閔鍾顯處下送綸音敎曰卿秖受此綸音仍卽謄出眞諺兩本遍布坊曲俾大小民人無或有不聞不知之弊苟有泛忽卿亦難免責飭惕念擧行本府最被災荒境內民命悉付於卿卿其蚤夜不懈竭誠賙救以副分憂之責事別諭(…)

<일성록, 정조6년(1782) 8월 12일(병자)>

문화/사상

수원에서 모사한 송시열의 영정에 관해 논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승지 이형원(李亨元)을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승지가 평산(平山)에서 왔는데, 지금은 향속(鄕俗)이 진정되었는가?" 하니, 이형원이 아뢰기를, "윤음(綸音)이 반포된 뒤로 비록 목석같이 완악한 자들도 모두 잘못을 후회하고 징계되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것은 치우친 의론을 일으킨 문제가 아니라 바로 향전(鄕戰)이니, 저 변지(邊地)의 사람을 또한 더욱 징계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이형원이 아뢰기를, "과연 성상의 하교와 같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영당(影堂)이 이미 철거되었는가?" 하니, 이형원이 아뢰기를, "철거되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영당의 설치는 언제 시작되었다고 하는가?" 하니, 이형원이 아뢰기를, "경진년(1760, 영조36)에 처음 건립되었는데 영본(影本)은 수원(水原)의 매곡서원(梅谷書院)에서 모사(模寫)해 왔다고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영본은 지금 누가 가지고 갔는가?" 하니, 이형원이 아뢰기를, "선정(先正 송시열(宋時烈))의 봉사손(奉祀孫)이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영당은 다른 곳과는 자별해서 바로 우암(尤庵)의 영본이 보관된 곳인데,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듯하다." 하니, 이형원이 아뢰기를, "이곳은 선정이 머무르던 곳도 아니고, 단지 매우 궁벽한 변지일 뿐입니다. 당초 창건한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철거한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綱 召見承旨 李亨元于誠正閣

目 予曰承旨自平山來未知今則鄕風或靜鎭耶亨元曰自綸音頒布之後雖頑如木石莫不悔尤懲創矣予曰非偏論乃鄕戰彼邊人亦加懲戢爲好矣亨元曰果如聖敎矣予曰影堂已爲撤去乎亨元曰撤去矣予曰影堂之設始於何時云乎亨元 曰庚辰始建而影本則摸來於水原 梅谷書院云矣予曰影本今誰將去耶亨元曰先正奉祀孫持去云矣予曰影堂與他自別乃是尤庵影本藏安之所則撤去似涉如何矣亨元曰此非先正杖屨之所到特是山窮水盡之僻陬荒裔當初創建全沒意味撤去何害

<일성록, 정조7년(1783) 3월 6일(정유)>

문화/사상

수원 유학 허주(許鑄)의 상언을 논의하다

강 유사 당상(有司堂上) 서유린(徐有隣)이 나만강(羅萬綱) 등의 상언(上言)에 대해 복계(覆啓)하였다.

목 ○ 서유린이 아뢰기를, (…) 수원(水原)의 유학 허주(許鑄)가 상언한 그의 시조인 옛날 가락국의 수로왕(首露王)을 신라와 고려 시조를 모신 숭덕전(崇德殿)과 숭의전(崇義殿)의 예에 따라 입묘(立廟)해 달라는 일은, 가락국은 하나의 소국(小國)에 불과하여 신라의 시조가 일방(一方)에 은택을 널리 입히고 고려 시조가 삼한(三韓)을 통합한 것에 같이 비교할 수 없으니 입묘하여 융숭하게 보답하는 것은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시행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가 아뢴 것 중에 능군(陵軍)의 위전(位田)을 조정에서 획급해 달라는 것과 재궁(齋宮)과 향실(享室)을 향인(鄕人)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신에게 분부하여 김해부(金海府)를 신칙해서 초목(樵牧)을 금하고 세랍(歲臘)에 제사 지내는 일을 유의하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그대로 따르고 하교하기를, "엄히 다스릴 필요가 없으니 모두 감죄(勘罪)하지 말라." 하였다. (…)

綱 有司堂上徐有隣以羅萬綱等上言覆啓

目 有隣啓言(…) 水原幼學許鑄上言渠之始祖故駕洛國首露王依新羅高麗始祖崇德崇義兩殿例立廟事駕洛國不過一小國不可比同於新羅始祖之澤流一方高麗始祖之統合三韓則立廟崇報非所可論勿施渠之所告中旣有陵軍位田之朝家劃給齋宮享室之鄕人主管云此則分付道臣申飭金海府樵牧之禁歲臘之祭使之着意擧行 (…) 從之敎以不必深治竝勿勘罪

<일성록, 정조9년(1785) 2월 9일(기축)>

문화/사상

수원 향교 제문을 직접 짓다

강 수원부(水原府) 향교의 제문을 직접 짓겠다고 경기 감사에게 회유(回諭)하였다.

목 ○ 해당 감사 서유방(徐有防)이 수원 향교의 건립을 마쳤으니 향축(香祝)을 해조로 하여금 마련해서 내려보내게 해 줄 것을 치계(馳啓)하였으므로, 이렇게 명한 것이다.

綱 以水原府鄕校祭文親撰之意回諭畿伯

目 該監司 徐有防以水原鄕校營建垂訖香祝令該曹磨鍊下送馳啓有是命

<일성록, 정조13년(1789) 9월 13일(병신)>

문화/사상

수원부 초시 방목을 치계하다

강 경기 감사가 수원부(水原府)의 초시(初試) 방목(榜目) 가운데 60세 이상인 사람을 사제(賜第)하는 것으로 주(註)를 달아 치계하였다.

목 ○ 부사과 김파수(金把秀)·김오채(金五彩), 별무사(別武士) 김정구(金廷九), 별효사(別驍士) 김상경(金尙絅), 한량 이지겸(李智謙)·김태위(金泰位)·이도주(李道胄)·이억(李億), 양인 서광운(徐光云) 등 9인은 나이가 60이 넘었으므로 특교로 사제한다.

綱 京畿監司以水原府初試榜中六十歲以上人賜第懸註馳啓

目 副司果 金把秀 金五彩別武士金廷九別驍士金尙絅閑良李智謙 金泰位 李道胄 李億良人徐光云等九人以年過六十特敎賜第

<일성록, 정조14년(1790) 1월 17일(무술)>

문화/사상

수원에서 문무과 별시를 설행하고 백성을 위해 수원부사에게 하유하다

강 득중정(得中亭)에 나아가 문무과 별시(文武科別試)를 설행하고 과천현(果川縣)으로 환차(還次)하였다.

목 ○ 융복(戎服)을 갖추고 득중정에 나아가 문무과 별시를 설행하였다. 시관(試官) 이하가 뜰에 들어와 예를 행하였다. - 문시관(文試官)은 채제공(蔡濟恭), 정민시(鄭民始), 서유린(徐有隣), 오재순(吳載純), 홍양호(洪良浩), 서정수(徐鼎修), 김재찬(金載瓚), 정동준(鄭東浚), 이만수(李晩秀), 홍문영(洪文泳), 정만시(鄭萬始), 유문양(柳文養), 허전(許㙫), 김조순(金祖淳)이고, 무시관(武試官)은 서명선(徐命善), 이갑(李), 서유대(徐有大), 유효원(柳孝源), 김익빈(金益彬), 조집(趙嶪), 신의현(申義顯)이다. -"고굉군(股肱郡)"으로 부제(賦題)를 삼았다. 수원(水原)에서는 3인을 취하고, 과천(果川)과 광주(廣州)에서는 각각 1인을 취하라고 명하였다. 광주의 이덕승(李德升)이 삼하(三下)를 받아 거수(居首)하였고, 오성근(吳聖根)이 과천 사람으로 입격하였고, 신덕우(辛德羽), 김성운(金星運), 조만원(趙

萬元) 3인이 모두 **수원** 사람으로 입격하였는데, 창명(唱名)하였다. (…)
또 전교하기를, "이번 행행 때 본부의 새 치소(治所)를 두루 살펴보건대, 관해(官廨)는 비록 모양새를 갖추기는 하였지만 민가는 아직 두서를 이루지 못하였다. 그중에 이른바 대충 지어 놓은 집이라는 것은 움집이나 움막이 아니면 달팽이 껍데기 같기도 하고 게딱지 같기도 하였다. 지금의 형편으로 헤아려 보건대 집들이 즐비하고 거리가 번화하여 엄연히 서울 근교의 큰 도회지가 되는 것은 진실로 짧은 시일에 기대하기 어려우니, 만약 별도로 백성들을 흥기시켜 모여 살게 할 수 있는 방도를 강구하지 않으면 내가 어찌 마음을 편히 하고 생각을 쉴 수 있겠는가. 환어하는 날에 교를 멈추고 부로를 불러 물었지만 어리석은 백성이 대답할 바를 알지 못하였다. 새 치소를 옛 고을보다 낫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조정의 조치에 달려 있으니, 묘당의 신하들은 십분 상세히 따져서 빈대(賓對)할 때에 품주하라.
대체로 백성들을 모집하여 들어와 살도록 하고자 한다면 의당 먼저 생업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생업을 만들어 주고자 한다면 의당 먼저 그 마음을 기쁘게 해 주고 그 삶을 즐겁게 해 주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도는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해 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백성들을 힘써 권면하여 교역하도록 하는 것이니, 반복하여 생각해 보더라도 이 두 가지 방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원소의 국내(局內)·국외(局外)에 새로 속하는 토지의 지가(地價)를 너무도 바듯하게 정해서 백성들이 억울해하는 마음이 없지 않다고 한다. 이 문제는 지방관이 별도로 조사해서 넉넉히 마련해 주고, 완전히 모여들어 자리를 잡게 되기를 조금 기다려 또 힘써 경작하게 하는 것 이외에 다시 직접 장사하여 이익을 보도록 한다면 장차 집집마다 면모가 달라지는 효과가 있게 될 것이다. 숙소에 나아가 머물면서 이 일이 잊혀지지 않아서 이에 또 촛불을 밝히라고 하고 거듭 유시(諭示)하는 것이니, 지방관은 유지(有旨)를 수령한 뒤에 부로를 모아 놓고 하나하나 효유하라. 소민(小民)의 경우에는 성과를 거두기가 쉬우니 위와 같이 한다면 혹 안정시킬 수 있겠고, 전(廛)을 받고자 하는 대민(大民)의 바람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몰아붙일 만한 사안이 아니다. 지방관은 연석(筵席)의 하교대로 또한 즉시 백성들에게 전해 알도록 함으로써 본부의 사민(士民)을 위해 항시 잊지 않고 있는 나의 고심과 지극한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본도의 감사와 **수원부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綱 御**得中亭**行文武科別試還次果川縣

目 具戎服御**得中亭**設文武科別試試官以下入庭行禮訖文試官 **蔡濟恭** 鄭民始 徐有隣 吳載純 洪良浩 徐鼎修 金載瓚 鄭東後 李晩秀 洪文泳 鄭萬始 柳文養 許曉 金祖淳 武試官 徐命善 李▣ 徐有大 柳孝源 金益彬 趙嶢 申義顯 以股肱郡爲賦題命**水原**取三人果川 廣州各取一人廣州 李德升三下居首吳聖根以果川入格辛德羽 金星運 趙萬元三人俱以**水原**入格唱名 (…) 又敎曰今幸周覽本府新治官廨雖成規模民家未就頭緖其中所謂若爾造舍者非窖非卡則似蝸殼似蟹匡以今所料度屋閭之櫛比街卷之繁庶儼然爲畿輔大都會固難期以時月若不別講另究其興勸萃集之方予豈可便心而弛思乎還駕之日駐轎召問父老民之雖雖不知所對新治之勝於舊邑惟在朝家措劃廟堂之臣十分商確賓對時敷奏大抵欲募入則宜先制產欲制產則宜先悅其心樂其生太上經界其次懋遷反復思惟無出於二者園所局內外新屬土地地價過於撙節民情不無抑鬱云此則地方官別般查出優加拮据而稍待完聚定居又使力作之外更售手販之益則將有比屋改觀之效進住宿次餘意憧憧玆又呼燭申諭地方官祗受後聚會父老一一曉告小民易爲力如右則或可安頓大民受廛之願非可指的而臼勒地方官依筵敎亦卽傳知以副予爲本府士民綣綣懃懃之苦心至意事下諭于本道監司 **水原府使**又敎曰此傳敎揭板又以眞諺翻謄分給邑底人民元傳敎中土價事不可不卽爲添給與道伯相議爲之曹允植明日上送待下去卽爲擧行手販事卽府使筵奏之事也此則錢貨稍待完聚區劃次依筵敎傳知事卽富民之願入而造成瓦家

廣占土地使邑底櫛比俾小民沾漑其功其勞當有所另酬至於士族若能或瓦或芧眞箇築居以爲永居而挈眷買庄者不拘入籍之限亦不拘設科元規當自數年內以後或於駐宿時只邑底儒武居入設試文武試技儒生則或一二人二三人當賜直赴武士則從矢數竝許直赴如是而占科之後便卽移去或有家而不爲居生則是豈特自歸欺君之科雖已通籍亦當拔去或嚴勘此亦不可不知此一款各別傳知於京外遠近紙尾書下一通錄送道伯處

<일성록, 정조14년(1790) 2월 11일(임술)>

문화/사상

수원에 있는 청해백(靑海伯)의 치제 문제를 논의하다

강 창빈묘(昌嬪墓) 및 고 상신 정태화(鄭太和) 등의 묘와 청해백(靑海伯) 이지란(李之蘭)의 사당에 치제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지금 듣건대, 청해백의 사당이 **수원**에 있는데 선조(先朝)에 온천에 행행하셨을 때 특별히 치제하라고 명하시고 화상(畵像)을 들여놓았으며 어제찬(御製贊)을 내리셨다고 한다. 그 계술(繼述)하는 도리에 있어서 어찌 빠뜨릴 수 있겠는가.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고, 이어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사당을 수리한 뒤에 장문하게 하라." 하였다. (…)

○ 예조가 아뢰기를, "**수원**에 있는 청해백의 사당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게 하는 날짜는 이달 18일로 하여 받들었으면 한답니다. 집사관(執事官)을 본도로 하여금 차정(差定)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지방관을 헌관(獻官)으로 삼아 주전(廚傳)의 폐단을 제거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

綱 致祭于昌嬪墓及故相鄭太和等墓靑海伯祠

目 (…) ○敎曰今聞靑海伯祠在**水原地**先朝溫幸特命致祭推入畵像下御製贊云其在追述之道豈可闕焉遣官致祭仍令本官修葺後使之狀聞 (…) ○禮曹啓言**水原地**靑海伯祠遣官致祭日子則今十八日祗受云執事官請令本道差定敎曰以地方官爲獻官以除廚傳之弊 (…)

<일성록, 정조14년(1790) 2월 12일(계해)>

문화/사상

수원 문과의 시지를 하명하다

강 **수원(水原)** 문과의 시지(試紙)는 대호지(大好紙)를 사용하고, 무과 초시의 과녁 배수(排數)는 편리한 대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이번 **수원** 문과의 시지는 전례대로 대호지를 쓰라고 미리 분부하라. 그리고 무과 초시의 과녁은 8과녁과 10과녁을 막론하고 취품(取稟)하지 말고 편리한 대로 거행하되, 상황을 추후에 장문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綱 命**水原**文科試紙用大好紙武科初試貫革排數從便擧行

目 敎曰今番**水原**文科試紙依前例用大好紙事預爲分付武科初試貫革無論八貫革十貫革勿爲取稟從便擧行形止追後狀聞事分付

<일성록, 정조14년(1790) 1월 7일(무자)>

문화/사상

수원의 응제시권을 고하하다

강 팔도 유생의 응제(應製) 시권(試券)을 고하(考下)하였다.
목 ○ 차상(次上) 이상 989인을 뽑았다.
경기는 **수원(水原)**의 유학(幼學) 조윤(趙崙)이 이하(二下)로 거수(居首)하였다. - 이하 4인, 삼상(三上) 9인, 삼중(三中) 17인, 삼하(三下) 42인, 차상(次上) 334인이다. - (…)
綱 考下八道儒生應製試券
目 取次上以上九百八十九人京畿**水原**幼學趙崙二下居首二下四人三上九人三中十七人三下四十二人次上三百三十四人 (…)
<일성록, 정조14년(1790) 3월 6일(병술)>

문화/사상
수원 유생들의 응제시권을 고하하다
강 **수원** 읍내 유생의 응제(應製) 시권(試券)을 고하(考下)하였다.
목 ○ "본조 **수원부사**가, 본부에 경숙하는 날 동헌의 편액을 장남이라고 쓰고, 내당의 편액을 복내라고 쓰고, 사정의 편액을 득중이라고 써서 문미에 걸게 한 뒤에 관찰사 이하는 모두 문밖에서 하마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도록 명한 것에 대해 사례하는 것으로 의작하라. [擬本朝**水原府使** 謝於宿次本府之日 御書東軒扁曰壯南 內堂扁曰福內 射亭扁曰得中 揭于楣仍命觀察使以下 皆於門外下馬以爲式]"로 전제(箋題)를 삼고, "이 조짐 보며 풍년을 기뻐한다.[對此欣登歲]"로 부제(賦題)를 삼고, 해당 부사는 시권을 거두어 올려보내라고 명하였다.
친히 채점하였다. 전교하기를, "**수원** 읍내 유생을 시취(試取)할 때에 전(箋)에서 삼중(三中)을 받은 유학(幼學) 심수진(沈綏鎭)에게는 대장지(大壯紙) 3권(卷), 필(筆) 5지(枝), 묵(墨) 2홀(笏)을, 삼하(三下)를 받은 유학 조만원(趙萬元)에게는 장지(壯紙) 2권을, 차상(次上)을 받은 유학 이동익(李東翼)·조국인(趙國仁)에게는 각각 지(紙) 1권을, 초차상(草次上)을 받은 유학 이득양(李得養), 진사(進士) 이익년(李益年)에게는 각각 선자(扇子) 2병(柄)을 사급(賜給)하라. 부(賦)에서 이하(二下)를 받은 유학 신덕우(辛德羽)에게는 《팔자백선(八子百選)》 1건(件)을, 삼상(三上)을 받은 유학 조륜(趙崙)에게는 대장지 2권, 필 3지, 묵 2홀을, 삼중(三中)을 받은 유학 심건(沈鍵)·이홍덕(李弘德)에게는 각각 장지 1권, 선자 2병을, 삼하를 받은 유학 윤치경(尹致慶)에게는 장지 1권, 선자 1병을, 차상(次上)을 받은 진사 박간(朴暕), 생원(生員) 박사영(朴師永), 유학 윤연(尹衍)·김낙연(金樂淵)·이동간(李東簡)·박주양(朴周陽)·이동표(李東杓)·이영석(李永錫)·심정진(沈鼎鎭)에게는 각각 선자 2병을 사급하라." 하였다.
綱 考下**水原**邑內儒生應製試券
目 以擬本朝**水原府使**謝於宿次本府之日御書東軒扁曰壯南內堂扁白福內射亭扁曰得中揭于楣仍命觀察使以下皆於門外下馬以爲式爲箋題以對此欣登歲爲賦題命該府使收券上送親考訖敎曰**水原**邑內儒生試取時箋三中幼學沈綏鎭大壯紙三卷筆五枝墨二笏三下幼學趙萬元 壯紙二卷次上幼學李東翼 趙國仁各紙一卷草次上幼學李得養進士李益年各扇子二柄賦二下幼學辛德羽 八子百選一件三上幼學趙崙大壯紙二卷筆三枝墨二笏三中幼學沈鍵 李弘德各壯紙一卷扇子二柄三下幼學尹致慶壯紙 一卷扇子一柄次上進士朴暕生員朴師永幼學尹行 金樂淵 李東簡 朴周陽 李東杓 李永錫 沈鼎鎭各扇子二柄賜給
<일성록, 정조14년(1790) 4월 16일(병인)>

문화/사상

수원과 관련한 상언들을 판하하다.

강 각 해사(該司)에 상언(上言) 126도(度)를 판하하였다.

목 (…) **수원(水原)**의 유학 유황(柳熀)은 우성전(禹性傳)에게 시호(諡號)를 내려 달라는 일이다. (…) 청주의 유학 이동규(李東奎)는 금성대군(錦城大君)과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사우(祠宇)를 **수원**으로 옮겨 짓게 해 달라는 일이다. (…) 또 아뢰기를, "경모궁(景慕宮) 주변의 전복(典僕) 이홍필(李弘弼) 등의 상언에, '저희들이 모입(募入)된 뒤 다행히 성상의 은혜를 입어서 제도(諸道)에 무판(貿販)하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습니다. 정미년(1787, 정조 11) 봄에 대신(大臣)이 연석에서 아뢰어 철회되었는데 원춘도와 충청도가 무판하는 것을 영속(營屬)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폐해가 반인(泮人)보다 심하다고 비국에 논보(論報)하였기 때문에 반인으로 하여금 전처럼 거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금년 봄 청주(淸州)에 내려가니 이례(吏隷)들이 침어(侵漁)하고 가렴주구하였으므로 철회하고 돌아와서 비국에 하소연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칙해서 절목(節目)을 정하고 관문을 보내어 신칙하니, 병영 및 본관(本官)이, 「전복이 철회하고 돌아간 것은 소 값이 뛴 것에서 비롯된 것이고 지금 복속시킨다면 반드시 곧 철회하는 폐단이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지금 이 감영이 처음에는 관례(官隷)가 반인에게 소속되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논보하더니 관문이 도착하고 나서는 도리어 전례대로 하는 것만 못하다고 하고, 원춘 감영 및 동래부(東萊府)는 백성의 호소로 인하여 비국에서 변통해 주었는데 저희들에게는 판결해 준 일이 없습니다. 원래 거주하는 전복으로서 반주인(泮主人)이라고 일컫는 자들이 스스로 장악한 물건으로 여기니 제도(諸道) 영곤(營閫)의 무판하는 곳에서 일체 거행하게 하여 외읍(外邑)으로 하여금 스스로 여탈을 주관할 수 없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제도의 영곤에서 무판하는 것을 철회한 것은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니 결코 다시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충청 병영을 가지고 말하더라도 저들이 내려갔으면 설사 침어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본래 천천히 앞날을 내다보았어야 할 것인데 서둘러 철회하고 돌아와 해곤(該閫)이 변통하는 대로 맡겨 두고 나서는 또다시 무판을 하러 가기를 원하니 매우 놀랍습니다. 이것은 시행하지 마소서. 충청 감영은 처음에는 반인에게 소속되기를 원해 놓고는 곧 또 그 전례를 그대로 따르자고 청하여 일이 전도되었으니 이것은 관문을 보내 조사한 뒤에 품처하게 하고, 원춘 감영 및 동래부는 전에 백성의 호소로 인하여 과연 이미 반인에게 소속되게 하였으니 양도(兩都), **수원(水原)**, 광주(廣州) 등에서처럼 각각 반주인이 거행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똑같이 대하는 의리로 볼 때 저쪽의 것을 빼앗아 이쪽에 주기 어려우니 우선은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 이조가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유학 유황(柳熀) 등의 상언에, '우성전(禹性傳)은 경학(經學)과 행의(行義)로 사림(士林)의 추앙을 받았고 임진왜란 때 창도하여 의병을 일으키고 자신은 군중(軍中)에서 죽었으니 절의가 뛰어납니다. 사시(賜諡)의 은전을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우성전은 평소 명신(名臣)으로 일컬어져서 이미 아경(亞卿)의 관질(官秩)을 증직하였습니다. 추증하고 사시하는 것은 사체가 더욱 중요하니 우선 들어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또 아뢰기를, "청주(淸州)의 유학 이동규(李東圭)의 상언에, '금성대군(錦城大君)과 안평대군(安平大君)의 사우(祠宇)를 **수원**에 옮겨 세웠으니 다시 사패(賜牌)를 내려 달라고 이렇

게 호소합니다.’ 하였습니다. 지금 사패를 가볍게 의논하기 어렵지만 처한 곳에 따라서 사우를 영건(營建)하는 것이 안 될 것은 없을 듯하니, 원하는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금성대군과 안평대군을 하나의 사우에 같이 모셔도 예에 안 될 것은 없으니 이로써 분부하고 관원을 보내 치제하게 하라. 제문(祭文)은 지어 내릴 것이다.” 하였다. (…)

강 判下上言一百二十六度于各該司

목 (…) 水原幼學柳熀爲禹性傳賜謚事 (…) 淸州幼學李東奎爲錦城大君 安平大君祠宇移建水原事 (…) 又啓言宮底典僕李弘弼等上言以爲渠等募入之後幸蒙天恩得以諸道貿販爲業丁未春大臣筵稟撤還原春 忠淸 兩道以貿販之使營屬擔當弊甚於泮人論報備局故使泮人如前擧行今春下往淸州爲吏隷輩侵漁掊克停撤而來訴備局以飭定節目闕飭則兵營及本官以爲典僕撤歸由於牛價之騰踊今若復屬則必有旋撤之弊云今玆監營初則以官隷願屬泮人之意論報及關到之後反以爲不如仍舊原春監營及東萊府則因民訴自備局變通而渠等處無決給之故原居典僕之稱爲泮主人者自爲掌握之物矣諸道營閫貿販處使之一體擧行使外邑不得自主與奪爲辭諸道營閫之撤還貿販蓋出戒濫觴之意決不可更許雖以忠淸兵營言之渠旣下往則設有侵漁之端固當徐觀來頭而汲汲撤歸及該閫從他變通之後又復願去者極爲可駭此則勿施忠淸監營之始願屬之泮人旋又請其仍舊事涉顚倒此則關問後稟處原春監營及東萊府前因民訴果已許屬泮人一依兩都水原廣州等處各其泮主人擧行云其在一視之義有難奪彼與此請姑置之允之 (…) ○吏曹啓言水原幼學柳熀等上言以爲禹性傳以經術行義爲士林之所推當壬辰倭亂倡起義兵身殲軍中節義卓然請加賜謚之典禹性傳素稱名臣而旣贈亞卿之秩加贈賜謚事體尤重請姑置之從之 (…) 又啓言淸州幼學李東圭上言以爲錦城大君 安平大君祠宇移建水原還下賜牌事有此呼籲云到今賜牌有難輕議而隨所居之地營建祠宇恐無不可從願施行之意請分付敎以錦城大君 安平大君合奉一祠於禮無不可以此分付遣官致祭祭文當製下 (…)

<일성록, 정조14년(1790) 10월 3일(경술)>

문화/사상

용주사의 건립과 관련한 인물들을 시상하다

강 화산(花山)에 용주사(龍珠寺)를 세우고 지방관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목 ○ 용주사의 제각(祭閣)은 6칸, 중문(中門) 3개, 안쪽 담장 16칸이고 법당(法堂)은 9칸, 칠성각(七星閣)은 6칸, 중문 1개, 안쪽 담장 10칸이며 향로전(香爐殿)은 12칸, 중문 1개, 바깥 중문 1개, 안쪽 담장 11칸이며 선당(禪堂)은 39칸, 승당(僧堂)은 39칸, 누각은 15칸이며 삼문(三門)의 익랑(翼廊)은 모두 17칸이며 용가(舂家)가 2칸, 중문 3개, 바깥 담장 212칸, 새로 판 석정(石井)이 50칸, 연지(淵池)가 1곳이다. 이상 145칸이고 중문은 9개이고 담장은 249칸이다.

○ 전교하기를, “지방관인 수원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에게 내구마(內廐馬) 1필을 면급(面給)하고, 도간역(都看役)인 이인 찰방(利仁察訪) 조윤식(曺允植)은 기읍(畿邑)의 수령에 제수하고, 도책응 영비(都策應營裨)인 전 현감 구수한(具壽漢)은 수령 자리에 승서(陞敍)하여 조용(調用)하고, 불정(佛幀)을 주관하여 감동(監董)한 전 찰방 김홍도(金弘道), 영부사과(永付司果)로서 감동한 절충장군 김득신(金得臣), 사과(司果) 이명기(李命基), 현판(懸板)을 감동한 전 첨사 이명예(李命藝)는 해조로 하여금 미(米)와 포(布)를 후하게 제급(題給)하게 하고, 불상(佛像)을 감동한 궁속(宮屬) 황덕순(黃德淳)과 윤흥신(尹興莘)은 첩가(帖加)하고, 책응 겸 감역(策應兼監役)으로 본부의 비장(裨將)인 한량 신숙(申曦)은 작년

원역(園役) 때부터 지금까지 수고한 것이 매우 많았는데 상전(賞典)을 여태 거론하지 않았으니 오위장(五衛將)에 가자하고 오늘 정사에서 자리를 비워 조용하도록 하라.
본부 교련관인 가선대부 서정우(徐正祐)는 작년의 원역과 그 후의 읍역(邑役)과 금번 용주사의 역에 애를 가장 많이 썼으니 변장(邊將)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즉시 조용하고, 목역(木役)을 감동한 가선대부 조의수(曺毅秀)는 변장에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하고, 한량 염덕복(廉德福)은 첩가하고, 원납인(願納人)인 오위장 박만첨(朴萬瞻)은 힘을 다한 것이 이미 이와 같으니 수령에 제수하고, 절충장군 함취인(咸就仁)과 가선대부 이동원(李東源)은 오위장에 오늘 정사에서 자리를 비워 조용하되 이동원은 그 마음이 가상하니 앞으로 천전(遷轉)하여 수용하고, 목수(木手)를 간역한 통정대부(通政大夫) 김도성(金道成)은 금위영 장교로 승차(陞差)하게 하라.
간역한 본부의 장교인 절충장군 황계청(黃啓淸)과 한량 홍명순(洪命淳), 부석(浮石)을 간역한 본부의 장교인 가선대부 조득경(趙得卿), 한량 이정은(李廷殷), 노야(爐冶)를 간역한 본부의 장교인 한량 안윤집(安允執)과 김유빈(金有彬), 치석(治石)을 간역한 본부의 장교인 절충장군 김중려(金重麗)와 김치상(金致祥), 토역(土役)을 간역한 본부의 장교인 한량 김취성(金就成)과 차노수(車路修), 목재를 손질하고 운반하는 것을 간역한 본부의 장교인 사과 김천일(金天鎰), 석물(石物)을 영운(領運)한 본부의 장교인 한량 김광수(金光秀), 번와(燔瓦)를 간역한 본부의 장교인 사과 서치삼(徐致三)은 실역(實役)한 것이 1년에 가깝거나 100일이 넘으니, 모두 첩가하라.
간역한 훈국 장교인 출신 한두완(韓斗完)은 해영(該營)으로 하여금 미와 포를 시상하게 하고, 조각(雕刻)을 겸간역(兼看役)한 강화의 장교인 전 별장 차계운(車繼運)은 첩가하여 경영문(京營門)으로 하여금 시험 삼아 등용하게 하고, 영리(營吏) 이종대(李宗大)는 본도 도백으로 하여금 특례로 시상한 뒤에 장문하게 하고, 고자(庫子) 김덕봉(金德奉)은 우선 해조로 하여금 미와 포를 후하게 제급하게 하고, 본부의 도색리(都色吏) 최윤익(崔潤益)·임시춘(林時春)·나치영(羅致英)·나문대(羅文大)와 작년 원역의 색리 등에게는 비록 첩가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이후 읍역과 용주사 역에 이들이 애를 쓴 것이 매우 많으니 특별히 모두 첩가하고, 임승(任僧)인 철학(哲學)은 가자하여 특별히 승통(僧統)에 제수하고, 사일(獅馹)·존책(尊策)·신행(愼行)·승오(勝悟) 등은 가자하고, 서기승(書記僧)인 도잠(道潛)은 본관으로 하여금 미와 포를 제급하게 하고, 임승인 홍상(弘尙)과 월신(月信) 등은 가자하고, 목수 편수승(木手邊首僧) 만겸(萬謙)과 쾌성(快性) 등은 가자하고, 각 차비승(差備僧) 우평(宇平) 등 5명, 증명(證明)과 진환(震環) 등 7명, 송경계(誦經戒)를 처음 만든 편수승(邊首僧) 상겸(尙謙), 화정(畵幀)을 편수한 민관(旻寬)과 화승(畵僧) 등은 첩가하고, 간역으로 용주사에 기거를 원하는 승려 풍일(豐一) 등 50명은 본관으로 하여금 미와 포를 제급하게 하라.
서울의 석수 도편수(石手都邊首)인 양인 표성기(表聖起)와 오충선(吳忠善), 서울의 석수 도편수인 통정대부 한시웅(韓時雄)과 양인 최유토리(崔有土里), 서울의 야장 편수(冶匠邊首)인 양인 이귀복(李貴福), 서울의 이장 편수(泥匠邊首)인 양인 박수돈(朴秀敦) 등은 첩가하고, 서울의 가칠장 편수(假漆匠邊首) 김윤세(金允世), 서울의 개장 편수(蓋匠邊首) 민광엽(閔光曄), 서울의 번와장 편수(燔瓦匠邊首) 김광손(金光孫) 등은 해조로 하여금 미와 포를 각별히 후하게 시상하게 하고, 서울의 소목장(小木匠) 이득재(李得才), 서울의 가칠장 박수복(朴壽福), 서울의 각수(刻手) 4명, 서울의 골로장(骨露匠) 5명은 해조로 하여금 목(木)과 포를 각각 1필씩 시상하게 하고, 모군 도등패(募軍都等牌) 김만성(金萬成), 역소(役所)의

사환(使喚)과 기수(旗手) 4명은 본관으로 하여금 각별히 후하게 시상하되 본관에서 거행하게 하고, 미와 면(綿)은 그 실제의 수량으로 논열(論列)하여 장문하게 하라." 하였다.

강 建花山 龍珠寺命地方官以下施賞有差

목 龍珠寺祭閣六間中門三內墻垣十六間法堂九間七星閣六間中門一內墻垣十間香爐殿十二間中間一外中門一內墻垣十一間禪堂三十九間僧堂三十九間樓閣十五間三門翼廊竝十七間春家二間中門三外墻垣二百十二間新鑿石井五十間淵池一處以上一百四十五間中門九墻垣二百四十九間○敎曰地方官水原府使 趙心泰內厩馬一匹面給都看役利仁察訪 曺允植畿邑守令除授都策應營裨前縣監具壽漢守令窠陞敍調用佛幀主營監董前察訪 金弘道永付司果 監董折衝金得臣 司果 李命基懸板監董前僉使 李命藝令該曹米布從厚題給佛像監董宮屬黃德淳 尹興莘帖加策應兼監役本府裨將閑良申曦自昨年園役至今效勞甚多賞典尙未擧論加資五衛將今日政作窠調用本府敎鍊官嘉善徐正祐昨年園役伊後邑役今番寺役勤勞最多邊將待窠卽爲調用木役監董嘉善曺毅秀邊將待窠調用閑良廉德福帖加願納人五衛將 朴萬瞻效力旣如此守令除授折衝咸就仁嘉善李東源 五衛將今日政作窠調用而東源其心可嘉此後遷轉收用木手看役通政金道成今禁衛營將校陞差看役本府將校折衝黃啓請閑良洪命淳浮石看役本府將校嘉善趙得卿閑良李廷殷爐冶看役本府將校閑良安允執 金有彬治石看役本府將校折衝金重麗 金致祥土役看役本府將校閑良金就成車路修治村木輸運看役本府將校司果金天鎰石物領運本府將校閑良金光秀 燔瓦看役本府將校司果 徐致三實役或近一年或過百日竝帖加看役訓局將校出身韓斗完令該營米布施賞雕刻兼看役江華將校前別將 車繼運帖加令京營門試用營吏李宗大令本道伯拔例施賞後狀聞庫子金德奉爲先令該曹米布從厚題給本府都邑吏崔潤益 林時春 羅致英 羅文大昨年園役色吏等雖不帖加其後邑役寺役此輩效勞甚多特竝帖加任僧哲學加資特除僧統獅馹 尊策 愼行 勝悟等加資書記僧道潛令本官米布題給任僧弘尙 月信等加資木手邊首僧萬謙 快性等加資各差備僧字平等五名證明 震環等七名誦經戒初造僧邊首 尙謙盡幀邊首旻寬畵僧等帖加看役願居僧豐一等五十名令本官米布題給京石手都邊首良人表聖起 吳忠善京石手都邊首通政韓時雄良人崔有土里京冶匠邊首良人李貴福京泥匠邊首良人朴秀敦等帖加京假漆匠邊首金允世京蓋匠邊首閔光曄京燔瓦匠邊首金光孫等令該曹米布各別從厚施賞京小木匠李得才京假漆匠朴壽福京刻手四名京骨露匠五名令該曹木布各一疋施賞募軍都等牌金萬成役所使喚旗手四名今本官各別從厚施賞自本官擧行米綿以其實數論列狀聞

<일성록, 정조14년(1790) 10월 6일(계축)>

문화/사상

용주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수원부사에게 전교하다

강 용주사 승려 철학(哲學)을 승통(僧統)으로 정하고, 이어 수원부사 조심태는 부처 공양에 드는 비용 및 승도(僧徒)가 호구(糊口)할 식량을 헤아려서 치계하라고 전유하였다.

목 ○ 수원부사 조심태에게 전교하기를, "본사(本寺)의 사체는 수호하는 일이 전적으로 승도에게 달려 있으니 기거를 원하는 승려 중에 임승(任僧)인 철학을 특별히 승통으로 정하여 통솔할 수 있게 하라. 승도 교지(僧徒敎旨)는 작성하여 보낼 것이니 다른 사찰의 근거할 만한 전례를 상세히 물어 열록(列錄)하여 치계하라. 이렇게 한 뒤에 차정하고 태거하는 일은 아래에서 하는 것이 아니니, 이 밖에 모든 합행조건(合行條件)을 절목으로 만들어서 또한 즉시 치계하여 계하받을 수 있게 하라.

기거를 원하는 승려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한시가 급하니 위전(位田)에 한하여 수세(收稅)할 때까지 호구할 방도를 각별히 헤아려서 아뢰도록 하라. 승도의 호구만 그러할 뿐 아니라 부처 공양에 드는 비용도 마련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이 뜻을 잘 알라. 금번에

승도들에게 가자하는 교지 및 첩가(帖加), 첩문(帖文)을 정원으로 하여금 모두 봉해서 내려 보내게 하면, 교지는 즉시 분급하고 공명(空名)으로 내려보낸 첩가는 경이 써넣어 나누어 주라." 하였다.

강 以龍珠寺僧哲學定僧統仍諭水原府使 趙心泰以佛養所需及僧徒糊口之資商量馳啓

목 敎水原府使 趙心泰曰本寺事體守護之節專在於僧徒願居僧中任僧哲學特定僧統以爲統率之地僧徒敎旨當爲成送而他寺可據前例詳問列錄馳啓如是之後差汰非自下爲之外此凡百合行條件成出節目亦卽馳啓以爲啓下之地願居僧之接濟一時可悶限位田收稅間糊口之方各別商量以啓僧徒糊口不但爲然佛養所需亦不可不磨鍊此意知悉今番諸僧加資敎旨及帖加帖文令政院都封下送校旨卽爲分給帖加以空名下送卿其塡頒

<일성록, 정조14년(1790) 10월 7일(갑인)>

문화/사상

수원의 용주사 승려에게 법호를 내리다

강 용주사(龍珠寺) 승려에게 법호(法號)를 내렸다.

목 ○ 수원부사 조심태(趙心泰)에게 전교하기를, "화산(花山) 용주사 수승(首僧)의 칭호는 '호종연교 보혜정각 엄정비니 원융법계 총지제방 대법사 겸 팔로도승통 경기도 수원부 화산 용주사 도총섭(護宗演敎普慧正覺嚴淨毗尼圓融法戒摠持諸方大法師兼八路都僧統京畿道水原府花山 龍珠寺都摠攝)'으로 정하고, 위차(位次)는 밀양(密陽) 표충사(表忠祠)의 승통(僧統)보다 1등을 더하고, 호령(號令)을 행하는 것은 남한산성(南漢山城)과 북한산성(北漢山城)의 총섭보다 1등을 더하고 아울러 그 절제(節制)는 본사(本寺) 도승통에게 듣게 하였다. 새로 차정할 때는 예조에서 첩문(帖文)을 만들어 주고 표충사의 예를 따라야 하지만 본사는 사체가 자별하니 첩문을 쓰지 말고 관교(官敎)로 거행하고, 다소간의 합행조건(合行條件)은 절목을 만들어 본부에서 후록(後錄)하여 장문하도록 하라. 인신(印信) 1과(顆)는 전례대로 예조로 하여금 만들어 보내게 할 것이니 이러한 뜻을 일일이 거론하여 즉시 이문(移文)을 보내 가져다 쓰고, 부사는 이 전령(傳令)을 본부에 써서 걸어두도록 하라." 하였다.

강 賜龍珠寺僧法號

목 敎水原府使 趙心泰曰花山 龍珠寺首僧稱號以護宗演敎普慧正覺嚴淨毗尼圓融法戒總持諸方大法師兼八路都僧統京畿道水原府花山 龍珠寺都總攝爲定位次則比密陽表忠祠僧統加一等行號今則比南北漢總攝亦加一等竝令聽其節制於本寺都僧統處新差時自禮曹成給帖文當依表忠祠例而本寺事體自別勿用帖文以官敎擧行多少合行條件成節目自本府後錄狀聞印信一顆依例令禮曹造送而枚擧此意卽爲移文取用以此傳令府使書揭本府

<일성록, 정조14년(1790) 10월 9일(병진)>

문화/사상

용주사 승통 차정에 관해 수원부사에 전교하다

강 승려 사일(獅馹)을 용주사 승통(僧統)에 차정(差定)하였다.

목 ○ 수원부사 조심태에게 전교하기를, "본사의 철학(哲學)이 승통이 되어야 하므로 어제 전교에서 철학으로 차정하였는데 나중에 들으니 그가 이미 다른 승려에게 사양했다고 한다. 강요할 필요는 없으니 철학은 북한산성 총섭(摠攝)에 우선 차정하여 앞으로 순차를 따라 수용할 수 있게 하고 이 뜻을 해영(該營)에 분부하라. 본사의 승통은 사일로 차정하고 표충사 총섭을 겸대하라고 해읍에 분부하라. 승려 만겸(萬謙)은 애를 쓴 것이 매우 많으니 표충사

총섭에 곧 차정하라고 역시 분부하고, 승려 쾌성(快性)도 똑같이 애를 썼으니 남한산성 총섭에 차정하라고 해영에 분부하라. 본사 승통을 차출하는 절목에 반드시 본사 승려 중에서 특별히 가려 승차(陞差)하는 것으로 말을 만들어 작성하여 저들이 기꺼이 나아가서 오랫동안 있게 하라. 교지는 사체가 자별하니 새로 차출할 때는 본부에서 성명을 별단으로 올려서 어보(御寶)를 찍어 내려보낼 수 있게 하라." 하였다.

강 以僧獅馹差定**龍珠寺**僧統

목 敎**水原府使** **趙心泰**曰本寺哲學當爲僧統昨日傳敎以哲學差定而追聞渠旣推讓於他僧不必强之哲學則北漢總攝姑爲差定以爲來頭循次收用之地仍以此意分付該營本寺僧統則以獅馹幾定表忠祠總攝兼帶之意分付該邑僧萬謙效勞甚多表忠祠總攝隨卽差定之意亦爲分付僧快性之效勞同然南漢總攝差定之意分付該營本寺僧統差出節目中必以本寺僧中另擇陞差措辭成出俾渠輩樂赴而久居敎旨事體自別新差時自本府姓名別單以爲安寶下送之地

<일성록, 정조14년(1790) 10월 10일(정사)>

문화/사상

수원부사에게 용주사 승려 단속을 신칙하다

강 **수원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는 **용주사(龍珠寺)**의 승도(僧徒)를 엄히 단속하라고 신칙하였다.

목 ○ **수원부사 조심태**에게 전교하기를, "본사(本寺)를 중시하는 것은 원침(園寢)을 호위하기 때문이고, 중시하는 것이 이와 같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체통을 높여서 도통(都統)으로 사호(賜號)하고 인신(印信)을 주조해 주었다. 체모가 또 이와 같다면 저들로서는 단속하고 검칙하는 방도에 더욱 갑절 조심하여 죄과를 범함이 없어야 했다. 그런데 근래 남쪽에서 전해 오는 말을 듣건대, 절의 중들이 소란을 피워 폐단을 끼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한다. 여러 가지 죄과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일일이 다 말하지 않겠으나, 이후로 본사의 중이라고 칭하면서 만에 하나 다시 완악하고 사나운 짓을 했다는 말이 들리면 통승(統僧)은 엄하게 다스리고 신칙하지 못한 지방관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원속(園屬)의 경우는 그 사체가 절의 중보다 중하지만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다스리도록 한 법식을 별도로 전교를 내려 지방관으로 하여금 그 위령(威令)을 전적으로 행사하도록 하였는데, 하물며 승도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승도들을 단속하는 권한을 경에게 모두 위임할 것이니, 경은 그리 알고서 이 전교를 본사에 게판(揭板)하여 단속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게 하라. 이 밖에 평민에게 불공스럽게 군다거나 지방에서 기세를 부린 자들은 일일이 적발되는 대로 통렬히 다스려서 막중한 곳을 호위하는 사찰로 하여금 혹시라도 손가락질을 받게 하지 말라. 본부(本府)의 거행이 부지런한지 태만한지는 살피는 조처가 따를 것이다. 아울러 모쪼록 삼가고 유념하라." 하였다.

강 飭**水原府使** **趙心泰**嚴戢**龍珠寺**僧徒

목 敎**水原府使** **趙心泰**曰本寺所重以衛護園寢也所重如此也故不得不尊其體統賜號都統鑄給印信體貌又如此則在渠輩團束檢飭之道尤當倍加小心無抵罪過近聞南來傳說寺僧之作孼貽弊之端不一而足種種干科姑不一一索言而此後稱以本寺僧萬有一更以頑悍二字及聞則統僧重治不飭之地方官難免其責如園屬之事面比重於寺僧者有罪推治之式別下傳敎使地方官專其威令況僧徒乎僧徒操切之方悉委於卿卿其知悉以此傳敎揭板本寺俾有斂戢之實效外此不恭於平民使氣於方外者一一隨現痛懲使莫重處衛護之寺刹母或爲指目本府擧行勤慢自當有考察之擧幷須惕念

<일성록, 정조14년(1790) 10월 20일(정묘)>

문화/사상

수원부사가 용주사 승임(僧任)등에게 지급한 내역을 장계하다

강 수원부사(水原府使) 조심태(趙心泰)가 용주사(龍珠寺) 승임(僧任) 등에게 지급한 재원에 대해 열거하여 치계하였다.

목 ○ 장계에, " '독성(禿城)에 유고(留庫)된 둔향(屯餉)의 미(米)·태(太) 중에서 각각 1000포(包)씩 즉시 가분하도록 하되, 이는 내년 가을에 모조를 취할 것이니 먼저 본부에 저장해 놓은 미·태로 수량에 맞추어 획급하라.' 는 유지(有旨)를 지수(祗受)하고서, 먼저 본부에 유고된 미 100석, 태 100석을 추이(推移)하여 떼어 내서 승통(僧統)·승임(僧任) 및 일반 승도(僧徒)에 대해 다음 달부터 시작하여 맥추(麥秋) 전까지 6개월 동안 지급할 재원을 일일이 마련하여 분급하였습니다. 승임의 자리 수, 거주하기를 원하는 승도의 명수(名數), 요미(料米)와 요태(料太)의 두수(斗數)에 대해 후록(後錄)하여 치계합니다.

총섭승(摠攝僧) 1명에게는 매달 삭료와 지필묵가(紙筆墨價)를 합하여 미 8두와 미 7두 대신 태 14두씩 도합 1석을 지급하였습니다.

제각 수직 감관승(祭閣守直監官僧) 1명, 제각 수직 고지기승(祭閣守直庫直僧) 1명, 불존 수좌승(佛尊首座僧) 1명, 유나 겸 전좌승(維那兼典座僧) 1명, 불향 차지승(佛享次知僧) 1명, 양방 주복승(兩房住伏僧) 2명, 조포승(造泡僧) 1명, 수승(首僧) 1명, 병방승(兵房僧) 1명, 서기승(書記僧) 1명, 삼보승(三寶僧) 1명, 수청승(隨廳僧) 1명, 기수 겸 산지기승(旗手兼山直僧) 4명, 종두승(鍾頭僧) 1명, 지공승(支供僧) 2명 등 이상 임승(任僧) 20명에게는 매달 삭료로 미 4두, 태 2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거주하기를 원하는 일반 승도 50명에게는 매달 삭료로 미 3두, 태 2두씩을 지급하였고, 부목한(負木漢) 3명에게는 매달 삭료로 미 4두, 태 4두씩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임승 21명, 거주하기를 원하는 일반 승도 50명, 부목한 3명에게 매달 지급하는 것은 미 16석 10두, 태 11석 1두이니, 6개월 분량을 합하여 마련하면 미 100석, 태 66석 6두입니다. 남은 태 33석 9두는 메주를 쒀서 장(醬)을 담그는 데 쓰도록 양방승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였다.

강 水原府使 趙心泰以龍珠寺僧任等支接之資開錄馳啓

목 狀啓以爲禿城留庫屯餉米太中各千包卽許加分此是來秋取耗者先以府儲米太準量劃給事有旨祗受先以本府留庫米一百石太一百石推移除出僧統僧任及凡僧來月爲始限麥秋前六朔支接之資一一磨鍊分給僧任窠數願居僧名數料米太斗數後錄馳啓總攝僧一名每朔料紙筆墨價幷米八斗米七斗代太十四斗式合一石祭閣守直監官僧一名祭閣守直庫直僧一名佛尊首座僧一名維邦兼典座僧一名佛享次知僧一名兩房住伏僧二名造泡僧一名首僧一名兵房僧一名書記僧一名三寶僧一名隨廳僧一名旗手兼山直僧四名鍾頭僧一名支供僧二名以上任僧二十名每朔料米四斗太二斗式願居凡僧五十名每朔料米三斗太二斗式負木漢三名每朔料米四斗太四斗式以上任僧二十一名願居凡僧五十名負木漢三名每朔米十六石十斗太十一石一斗合六朔支計磨鍊則米一百石太六十六石六斗餘太三十三石九斗燻造沈醬次兩房僧處上下

<일성록, 정조14년(1790) 10월 22일(기사)>

문화/사상

수원부 유생을 주제로 한 초계문신의 과시 시권을 고하하다

강 초계 문신의 과시(課試) 시권을 고하(考下)하였다.

목 ○ “본조의 수원부 유생 등이 ‘어찌하면 넓은 집 천만 칸을 얻어서 천하의 가난한 선비들을 크게 감싸 주어 모두들 다 기쁜 얼굴을 하게 하리.’로 어제를 삼은 것을 사례하는 것으로 의작하라.［擬本朝水原儒生等 謝以安得廣廈千萬間 大庇天下寒士俱歡顔 爲御題］”로 전제(箋題)를 삼았는데, 직각 서영보(徐榮輔)가 삼중(三中)으로 거수하였다.

강 考下抄啓文臣課試試券

목 以擬本朝水原儒生等謝以安得廣厦千萬間大庇天下寒士俱歡顔爲御題爲箋題直閣 徐榮輔三中居首

<일성록, 정조14년(1790) 12월 17일(계해)>

문화/사상

수원 유생의 호소를 받아들여 육신묘와 박태보(朴泰輔)의 서원에 치제케 하다

강 육신묘(六臣墓)와 박태보(朴泰輔)의 서원에 치제하고 고 현감 신규(申奎)를 증직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연(輦)을 타고 오는 길에 눈에 들어왔으니 어찌 추모의 감회를 이길 수 있겠는가. 육신묘와 고 충신 박태보의 서원에 모레 승지를 보내어 치제하게 하라. 원우(院宇)가 그 옆에 있다고 하니 마땅히 감구(感舊)하는 뜻을 표해야 할 것이다. 사충사(四忠祠)에도 승지를 보내어 모레 치제하게 하라. 제문은 더러 거친 데가 많으나 수정할 필요는 없고 지어 내린 것을 모두 향실(香室)에 주어 정서(正書)하게 하고, 승지는 동부승지가 나아가도록 하라. 일전에 연석(筵席)에서, 연을 타고 오는 길에 육신의 사당을 지나게 되어 고 현감 신규가 소를 올려 건의한 일에 대해 감회가 일어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 말한 것이 있다. 옛적 숙묘조(肅廟朝) 때 단묘(端廟)를 복위시키는 예(禮)를 거행하면서 성조(聖祖)께서 하교하신 것이 분명히 국사(國史)에 실려 있으며, 선조(先朝) 때 또 온릉(溫陵)을 복위하는 예를 거행하였는데 전후의 성대한 의식이 모두 신규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신규에 대해서는 아직도 증직하거나 그의 후손을 등용한 일이 없었으니 이는 아마 겨를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마침 또 수원의 여러 선비들이 일제히 호소하는 것을 보았고 그의 사판(祠版)이 본부에 있으나 주인집이 빈한하여 비바람을 가리지 못하고 향화(香火)를 이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을 들으니 매우 불쌍하고 가엾은 생각이 든다. 이조로 하여금 특별히 대시(臺侍)로 증직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六臣墓及朴泰輔書院致祭故縣監 申奎贈職

목 敎曰輦路入矚豈勝曠感六臣墓及故忠臣朴泰輔書院再明日遣承旨致祭院宇在其傍宜表感舊之意四忠祠亦爲遣承旨再明日致祭祭文間多潦草不必洵洗皆令以製下者付之香室正書承旨同副進去日前筵中以輦路之過六臣祠起感於故縣監 申奎抗疏建白事有言於入侍諸臣者昔肅廟朝特擧端廟復位之禮聖祖下敎昭載國乘先朝又擧溫陵復位之禮前後盛典皆從申奎之議奎之尙無贈職錄後之事蓋因未遑今日適又見水原多士齊籲之擧而聞其祠版在本府以主家之貧寒風雨不蔽香火難繼云甚可矜念令該曹特贈臺侍

<일성록, 정조15년(1791) 1월 17일(임진)>

문화/사상

수원에 있는 성묘(聖廟)의 유지(遺址)를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라고 명하다

강 경기 감사는 수원 구정촌(九井村)에 있는 성묘(聖廟)의 유지(遺址)를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고, 예조에 신칙하여 공자(孔子)의 후예로서 용인(龍仁)에 사는 직파(直派)를 찾아서

초기(草記)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공성(孔聖 공자)의 후예로서 우리나라로 온 사람들이 **수원 중규면(中逵面) 구정촌**에 살았는데, 성인(聖人)의 사당이 있었다. 이후에 또 명현(名賢)이 있었으니 바로 고 대사헌 공서린(孔瑞麟)으로, 그들 중에 가장 벼슬이 높고 명성이 난 사람인데, 그 후손이 용인의 도헌(都憲 대사헌) 묘소 아래로 옮겨 가 살았다. 이번에 수용(收用)하는 일로 인하여 생각이 나서, 성균관 당상에게 물어 조사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사실이 과연 그렇다고 하였다. 성묘의 유지와 집터가 지금까지도 버젓이 **수원**에 있어 옛일을 잘 아는 노인들이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는 바인데, 어찌 그리도 늦게 깨달았는지 모르겠다. 묘당으로 하여금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여 특별히 편비(褊裨)를 보내 형지(形址)를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게 하라. 그리고 공성의 후예로 용인에 사는 직파를 찾아 초기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체하고 있으니, 예조를 신칙하라.” 하였다.

강 命畿伯圖上**水原**九井村聖廟遺址飭禮曹孔裔之在龍仁直派尋問草記

목 敎曰孔聖後裔之東來者居于**水原**之中逵面九井村有聖人之廟焉後又有名賢焉卽故大司憲 孔瑞麟最其中官高名聞之人也其後孫徙居龍仁 都憲墓下令番因收用事思之問于泮堂使之考奏矣事實果然云而廟址家垈尙今宛在於**水原地**爲故老所指點何覺之晩也令廟堂分付該道臣別遣褊裨圖上形址孔裔之在龍仁直派有尋問草記之命而尙令遲滯申飭該曹

<일성록, 정조16년(1792) 9월 2일(무술)>

문화/사상

수원에 궐리사(闕里祠)를 세우는 문제를 논의하다.

강 경기 감사에게, **수원부(水原府)**의 궐리(闕里) 옛터에 집 한 채를 지어 내각(內閣)에 봉안한 성상(聖像)을 함께 안치하고 이름은 ‘**궐리사(闕里祠)**’라고 한 다음 봄가을로 제사를 모시되 제품(祭品)은 대략 이성(尼城 이산(尼山)) 궐리사의 규례대로 하며, 서원을 지키는 재생(齋生)은 대대로 이 고을에 사는 공씨(孔氏)를 시키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공씨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맨 먼저 **수원**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이 읍지(邑誌)에 실려 있다. 일전에 도신으로 하여금 그곳의 형편을 그림으로 그려 올리게 했는데 살펴보니 과연 기이하였다. ‘궐리’라는 사우(祠宇)가 있고 은행나무가 있고 대대로 사는 후손이 있었다. 또 궐리에서 수십 리 떨어진 곳에 새로 지은 영당(影堂)이 있다고 한다. 문헌공(文獻公)에게 시호를 내린 뒤로 조정에서 공씨 집안에 대해 높이고 보답하는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도백으로 하여금 궐리 옛터에 집 한 채를 지어 내각에 있는 성상을 봉안하고 영당의 도상(圖像)도 모셔와 함께 안치한 다음 ‘궐리사’라고 부르게 하라. 사우의 편액은 직접 써서 내리겠다. 봄가을로 지방 수령에게 향축(香祝)을 내려 제사를 모시게 하고 제품은 대략 이성 궐리사의 규례대로 하되 정갈하고 간략하게 하라. 이렇게 정식을 삼고 보면 이른바 새로 지은 영당은 고을 유생들이 사사로이 세운 것에 불과하고 또 더구나 간직했던 도상을 함께 봉안하게 되면 재목과 석물(石物)도 당연히 이곳에다 옮겨 세워야 할 것이니, 어찌 감히 사사로이 제향을 드릴 수 있겠는가. 서원을 지키는 재생은 대대로 이 고을에 사는 공씨를 시키고 다른 유생은 감히 섞이지 못하게 해서 분쟁의 단서를 막게 하라. 이 전교를 써서 강당에 게시하라. 궐리사를 건립하여 도상을 봉안하는 날짜는 금년 내에 예조로 하여금 길일을 잡아 거행하게 하라.” 하고, 이어 묘당으로 하여금 해당 도(道)에 공문을 보내 알리게 하였다.

강 命畿伯就**水原府** 闕里舊址建一屋子以內閣妥安聖像同爲奉藏號曰闕里祠春秋行祀祀品略倣尼

城闕里祠例守院齋生使孔氏世居是里者爲之

목 敎曰孔氏之東來首居於**水原地**載在邑乘日前令道臣圖上形便矣見之果然奇異有闕里之祠焉有銀杏之樹焉有世居之裔焉又於距闕里數十里地有新建影堂云文獻公宣謚之後朝家崇報於孔族者宜有拔例之擧令道伯就其闕里舊址建一屋子妥安聖像在內閣之本而影堂本奉來同藏號曰闕里祠祠扁當書下春秋降香祝於地方官行祀祀品略倣尼城闕里祠例務從精約如是定式之後所謂新建之影堂不過邑儒私設者且況藏本同奉則村石亦當移彼建此豈敢私享乎至於守院之齋生以世居是里之孔氏爲之他儒則無敢混處俾禁爭端以此傳敎書揭講堂建閣妥像日子以今月今年內令禮曹卜吉擧行仍令廟堂知委該道

<일성록, 정조16년(1792) 10월 3일(무진)>

문화/사상

수원에 궐리사를 조성하는 일을 논의하다

강 **수원(水原)의 궐리사(闕里祠)**에 성상(聖像 공자상(孔子像))을 봉안(奉安)할 날짜와 사당을 세우는 일과 관련된 각 항목의 날짜를 예조로 하여금 길일(吉日)을 가리고 하비하기를 기다려 유수에게 하유(下諭)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수원부 유수 채제공(蔡濟恭)**의 장계에, "**본부의 삼미면(三美面)**에 **궐리사**의 터를 닦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시기적으로 몹시 추운 겨울이 닥쳐서 그대로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이제는 날씨가 다소 따뜻해지고 터를 잡았던 곳이 녹았기 때문에 한창 목재와 돌을 모아서 다시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별도로 사람을 보내 적간하게 하니, 마침 겨울철이라 터를 다지는 일 등을 대충대충 하는 바람에 그다지 단단하게 되지 않아서 이처럼 땅이 녹는 때가 되자 기울어진 초석(礎石)이 간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옛터에 그대로 사당을 세울 수가 없는 형세입니다. 터를 닦을 날짜, 주춧돌을 세울 날짜, 기둥을 세울 날짜, 기둥에 대들보를 올릴 날짜, 성상을 봉안할 날짜를 예조로 하여금 다시 잡아서 내려보내게 해 주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성상을 봉안할 날짜와 사당을 세우는 일과 관련된 각 항목의 날짜를 예조로 하여금 길일을 가려 초기하고 하비하기를 기다려 유수에게 회유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水原** 闕里祠望像奉安日子及營建各日令該曹擇吉待下批回諭于留守

목 **水原府**留守 **蔡濟恭**狀啓以爲本府三美面闕里祠開基始役而時値嚴冬仍爲停役矣今則日氣稍暖基址解凍故今方鳩聚材石更爲經營計料而別遣摘奸則地定等節適値冬節草草杵築不甚堅硬當此解凍之時礎石間多傾仄者勢不可仍舊建祠開基定礎立柱上樑及奉安日子令該曹更爲推擇下送敎以聖像奉安日子及營建各項日子令該曹擇吉草記待下批回諭留守處

<일성록, 정조17년(1793) 2월 21일(갑신)>

문화/사상

수원부에 성상(聖像) 봉안에 관한 의절을 내려보내다

강 예조는 내각과 광덕면(廣德面)에 봉안(奉安)한 성상(聖像)을 옮겨 봉안하는 데 대한 의절(儀節)을 각 1건씩 써서 **수원부(水原府)**로 보내라고 명하였다.

목 ○ **수원유수(水原留守)** 채제공(**蔡濟恭**)의 장계에, "**궐리사(闕里祠)**의 공사가 지금 막 끝났습니다. 봉안할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각에 봉안한 성상을 받들고 올 때의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조에서 지시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광덕면에 봉안한 성상을 받들고 올 때에는 공씨(孔氏)들에게 거행하게 합니까, 아니면 관부(官府)에서 위의(威儀)를

갖추어 거행합니까? 만약 위의를 갖추어 거행한다면 어떤 식례(式例)를 참조해야겠습니까? 예조에서 마련하여 분부하게 해 주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봉안할 날짜는 6월 초로 길일을 잡으라고 예조 판서가 입시했을 때 하교하였는데, 아직까지도 통지하지 않아 이처럼 장계하는 일이 있게 하였다. 예조 판서가 소홀히 하는 것이 이러한 식이다. 즉시 예조에서 이러한 뜻을 낱낱이 거론하여 본부에 공문을 보내 알리게 하라. 내각과 광덕면에 봉안한 성상을 옮겨 봉안하는 데 대한 의절을 각 1건씩 써서 보내라고 예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강 命禮曹以內閣及廣德面所奉聖像移安儀節各一件書送于水原府

목 水原留守 蔡濟恭狀啓以爲闕里祠工後今方垂畢奉安日子隔日無多內閣所安聖像奉來時節次必自儀曹有所指揮而廣德面所奉聖像奉來之際使諸孔氏擧行乎抑自官府具威儀擧行乎若具威儀則當旁照何樣式例乎請令該曹磨鍊分付敎曰奉安日子以六月初擇吉之意禮判入侍已有下敎則尙不知委致有此狀啓之擧 禮判之疏忽類如許卽令該曹枚擧此意行會本府內閣及廣德面所奉聖像奉安儀節各一件書送事分付該曹

<일성록, 정조17년(1793) 4월 25일(정해)>

문화/사상

수원의 궐리사에 대해 논의하다

강 궐리사(闕里祠)를 짓는 데 들어간 전(錢)과 미(米)는 우선 진휼청(賑恤廳)의 창고에 남아 있는 전으로 실어 보내고 영남(嶺南)의 전은 가을이 되거든 직접 진휼청에 바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비국이 아뢰기를, "방금 수원유수(水原留守) 채제공(蔡濟恭)이 올린 장계를 보니, 궐리사의 영건(營建)을 마쳤으나 투입된 물력을 경기 감영에서 구획(區劃)하는 일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명목의 본영의 상납전(上納錢)과 상납미(上納米)를 가지고 변통하여 용하(用下)하였는데, 전이 1840냥이고 미가 12섬 남짓이니, 담당 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본부가 처음 만들어진 관계로 이러한 물력을 마련할 길이 없으므로 다른 곳에서 처리해야 될 형편이나 이미 서울에 상납할 몫을 먼저 가져다 썼으니 즉시 마련한 뒤에야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영남 지방의 모곡을 작전한 몫 중에서 2000냥까지 구획해 주어 대신 채울 수 있게 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회록(會錄)하게 하소서. 모곡을 작전한 것은 도신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상납하게 하셨으니, 우선 진휼청의 창고에 남아 있는 돈을 전량 본부에 실어 보내고 영남의 전은 가을이 되거든 곧바로 진휼청에 바치게 하라고 분부하소서." 하여, 윤허하였다.

강 命闕里祠營建所入錢米先以賑廳留庫錢輸送嶺南錢則待秋直納該廳

목 備局啓言卽見水原留守 蔡濟恭狀啓則以爲闕里祠營建告訖而所入物力自畿營無區劃之事故不得已以臣營諸般上納錢米推移用下而錢爲一千八百四十兩米爲十二石零令攸司區處爲辭矣本府係是草刱此等物力措辦無路勢將從他區處而旣以京上納條先爲取用則趁卽拮據然後可無掣礙之端嶺南耗作錢條中限二千兩許劃以爲充代之地如有零餘使之會錄而耗作錢因道啓許令待秋上納矣先以賑廳留庫錢依此數輸送本府嶺南錢則待秋直納該廳事請分付允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5월 12일(계묘)>

문화/사상

수원 궐리사의 제향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 궐리사(闕里祠)에 봄가을로 올리는 제향을 공씨(孔氏)로서 대대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주관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예조가 아뢰기를, "수원부 궐리사에 보낼 제품(祭品)을 지금 마련해야 합니다. 《속오례의(續五禮儀)》 중 계성사(啓聖祠)의 봄가을 절향(節享)의 도식(圖式)을 가져다 살펴보니, 변(籩)과 두(豆)가 각각 두 개씩이고 보(簠)와 궤(簋)는 각각 한 개씩이며, 시성(豕腥)과 양성(羊腥)이 각각 한 개씩이고 작(爵)이 세 개이며 폐백을 사용했습니다. 이 규례를 참작하여 행하는 것이 검약하게 하는 뜻에 부합할 듯합니다. 그러나 폐백을 쓰는 것까지 계성사의 예에 따르는 것은 예의 뜻을 헤아려 볼 때 타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성(尼城)의 궐리사로 말하더라도 또한 폐백을 쓰는 절차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제품은 보·궤·변·두를 각각 한 개씩으로 하고 작을 세 개로 하며, 폐백은 없고 축문은 있는 것으로 하라. 축문과 향(香)은 봄가을로 내려보내고, 공씨로서 대대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행실이 뛰어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세 번 술잔을 드리게 하고, 또 그 가운데 한 사람으로 하여금 축문을 읽게 하며, 또 몇 사람을 집사(執事)로 삼도록 하라.

향축을 조정에서 내려 주는 경우 일의 체모가 특별하므로 유생이 그 제사를 주관할 수는 없다고들 말한다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지방 고을의 이와 비슷한 제의(祭儀)를 향반(鄕班)이 대신 행하기도 하는데 더구나 공자(孔子) 사당에 공씨가 제향을 올리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기필코 공씨로 하게 하려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예는 갖추되 의식은 간소하게 하려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의 분란을 제거하려는 뜻이다. 이 초기와 관련한 내용으로 수원유수에게 분부하고 사당을 세울 초기에 내렸던 전교도 아울러 게판(揭板)하라. 그리고 사당을 지키거나 사당 일을 맡아 보는 유생도 공씨로서 대대로 사는 자가 아니면 절대로 거론하지 말라. 이 궐리사는 조정의 지시를 받으니 원장(院長)이라는 칭호는 더욱 엄하게 금하여야 하니 이렇게 분부하라." 하였다.

綱 命水原闕里祠春秋奠獻令孔氏世居人主之

目 禮曹啓言水原府闕里祠祀品今當磨鍊而取考續五禮儀中啓聖祠春秋節享圖式則籩豆各二簠簋各一豕羊腥各一爵三用幣矣傍照是例似合於從約之義而至於用幣一節亦遵啓聖祠之例揆諸禮義恐未得當雖以尼城 闕里祠言之亦無用幣之節何以爲之敎以祭品則簠簋籩豆各一爵三而無幣有祝祝與香春秋下送令孔氏世居中行尊者一人獻三爵又其中一人讀祝又數人爲執事雖以降香祝事體自別儒生不可主祀云而此則不然外邑似此祭儀鄕班猶或替行況孔廟以孔氏奠獻有何不可乎此乃一則必欲孔氏之意一則禮備而儀簡之意一則除來頭紛拏之意也以此草記分付該守臣處竝與當初建祠傳敎揭板而守儒任生如非孔姓世居者切勿擧論此祠關由朝廷則至於院長稱號尤當嚴禁以此分付

<일성록, 정조17년(1793) 7월 24일(을묘)>

문화/사상

수원 궐리사의 제향 문제를 논의하다

강 궐리사에서 의례적으로 쓸 축문의 두사(頭辭)에 헌관의 이름을 써넣는 정식을 대신에게 문의하여 초기하고, 제향을 지낼 날짜는 봄가을의 마지막 달 상정일(上丁日)에 설행하며 제품(祭品) 중 녹포(鹿脯)와 율황(栗黃)은 다른 제물로 바꾸어 쓰라고 명하였다.

목 ○ 예조 판서 김상집이 아뢰기를, "수원 궐리사에 봄가을로 향축을 내리고 제향을 시행하도록 이미 명을 내리셨습니다. 의례적으로 쓸 축문을 예문관으로 하여금 지어 내게 해야 하는데, 헌관에 대해서는 이미 공씨 성을 가진 사람 가운데서 차출하라고 명하셨으니 축문

의 두사 중에 ‘근견신(謹遣臣)’ 아래에 ‘유학 모(幼學某)’라고 써넣는 것은 일의 체모로 볼 때 대단히 온당치 못합니다. 이에 감히 우러러 여쭙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대신에게 물어 초기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제향을 지낼 날짜도 연석에서 여쭌 다음 통지해야 합니다. 이성(尼城)의 궐리사의 경우 3월과 9월 상정일에 설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제품(祭品)의 정식을, 변(籩) 한 개, 두(豆) 한 개로 판하(判下)하셨습니다. 이 제사에는 녹포와 율황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녹포는 지방에서 마련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고례(故例)에도 다른 제물로 바꾸어 쓴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도록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예조가 아뢰기를, “대신에게 문의하여 초기하라고 명하셔서 낭청을 보내 시원임 대신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영의정 홍낙성은 말하기를, ‘본래 전례(典禮)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억측으로 대답할 수가 없으니 관각(館閣)의 제신들에게 원용할 만한 예를 널리 상고해 보게 한 다음 재결하소서.’ 하였고, 좌의정 김이소는 말하기를, ‘서울과 지방의 여러 제향에 비록 매번 관원을 보내 대신 행하게 하지만 궐리사에는 특별히 선성(先聖)의 후손을 보내 제향을 올리게 한 것은 실로 우리 성상께서 예제(禮制)에는 없으나 의리를 생각해서 제기하신 성대한 은전(恩典)에서 나온 것이니 「유학 모」라고 써넣는다 해도 무슨 온당치 못하다는 혐의가 있겠습니까. 성상의 전교 중에서 「지방 고을의 이와 비슷한 제의(祭儀)를 향반이 대신 행하기도 하는데 더구나 공자(孔子) 사당에 공씨가 제향을 올리는 것이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라고 하신 말씀은 참으로 옳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번 이 축문의 두사에 「유학 모」라고 써넣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의논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봉조하(奉朝賀) 정존겸(鄭存謙)과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은 모두 병 때문에 헌의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판중추부사 박종악(朴宗岳)은 말하기를, ‘신의 생각도 좌상의 의견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대신의 의견이 이와 같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견대로 하라.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옳다.” 하였다.

綱 命闕里祠例用祝文頭辭書塡獻官之式問議大臣草記行祀日子以春秋季朔上丁設行祀品中鹿脯栗黃換品代用

目 禮曹判書 金尙集啓言**水原**闕里祠春秋降香祝行祀事已有成命矣例用祝文當令藝文館撰出而獻官旣命以孔姓人差出則祝文頭辭中謹遣臣下書塡幼學某揆以事體極涉未安故敢此仰達矣敎以問議大臣草記又啓言行祀日子亦當筵稟後知委而尼城闕里祠則以三九月上丁日設行云請依此定式從之又啓言祀稟定式以一籩一豆判下矣事當以鹿脯栗黃用之而鹿脯非鄕曲可備之物故例亦有換品代用之事請今亦依此知委從之○禮曹啓言悶議大臣草記有命矣發遣郎廳問議于時原任大臣則領議政 洪樂性以爲素昧典禮無以臆對乞令館閣詣臣博考可援之例而裁處焉云左議政 金履素以爲京外祠享雖皆遣官攝行至於闕里祠之以先聖後孫使之奠獻者實出於我聖上義起之盛典則雖以幼學書塡豈有未安之嫌乎聖敎中外邑似此祭儀鄕班猶或替行況孔廟以孔氏奠獻有何不可乎者誠爲允當臣意則今此祝式頭辭之幼學書塡恐無更議之端云奉朝賀 鄭存謙 領府事 **蔡濟恭**俱病未獻議云判府事 朴宗岳以爲臣與左相 之議別無異同云大臣之議如此請上裁敎以依大臣議施行從多可也

<일성록, 정조17년(1793) 7월 25일(병진)>

문화/사상

수원의 궐리사의 축문식을 정하다

강 **수원 궐리사(闕里祠)**의 축문식(祝文式)을 정하였다.

목 ○ 예조가 아뢰기를,

"**수원 궐리사**의 축문식에 대해 문헌을 자세히 상고하여 초기(草記)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삼가 《오례의(五禮儀)》의 축판조(祝版條)를 상고해 보니, 문선왕(文宣王 공자(孔子))을 향사(享祀)할 때의 축문에서는 '조선 국왕 성 휘(朝鮮國王姓諱)'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의 향축(香祝)을 내려 주는 곳으로 말해 보면, 숭인전(崇仁殿),삼성사(三聖祠), 역대 시조묘(始祖廟)의 축문에 모두 압(押)을 두어 내려보냈습니다. 이번 궐리사의 축문식을 이 예대로 거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綱 定**水原**闕里祠祝式

目 禮曹啓言**水原**闕里祠祝式詳考文蹟草記事命下矣謹考五禮儀祝版條文宣王享祀時祝文稱朝鮮國王姓諱且以他道降香祝處言之崇仁殿 三聖祠及歷代始祖廟竝皆有押今此闕里祠祝式請依此擧行允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9월 1일(신묘)>

문화/사상

수원 궐리사의 향사 문제를 논의하다.

강 **수원 궐리사**의 춘추 향사 때에 지방관인 **수원판관(水原判官)이** 초헌(初獻)을 하고 공씨(孔氏)가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을 하며 향사일은 길일을 잡아 설행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으라고 명하였다.

목 ○ 승지 서매수(徐邁修)가 아뢰기를, "**수원 궐리사** 제향 때의 축문에는 압(押)을 두는 것으로 예조에서 초기하여 윤허 받았습니다. 당초에 **궐리사**를 설치한 이유는 자손들이 살고 있는 데다가 궐리라는 지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당을 지키고 분향(焚香)하는 것을 공씨의 자손에게 주관하게 한 바에야 춘추 향사도 공씨에게 주관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듯합니다. 더구나 축문식 가운데 대압(代押)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매우 중대하니 향리에 사는 유학(幼學)이 명을 받들어 대신 행하는 것은 외람되기도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한결같이 이성(尼城) 궐리사의 예대로 향촉(香燭)과 제품(祭品)은 관에서 갖추어 보내고, 향실에 나아가 대압하는 일은 그만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고 봅니다. 신이 해당 방의 승지로 마침 보잘것없는 견해가 있기에 감히 이렇게 우러러 아룁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경의 말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관하여 간언한다는 의리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 예조에서 초기하여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 예조가 아뢰기를, "**수원 궐리사** 제향 때의 축문에 대압하는 일에 대해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성의 궐리사는 선비들이 사적으로 봉안한 곳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선조(先朝) 신해년(1731, 영조7)에 본현(本縣)의 영정을 향교(鄕校)에 봉안하라고 하교하셨고, 곧이어 고(故) 유신(儒臣) 박필주(朴弼周)의 상소로 인하여 여러 도에 있는 공자의 영정까지 다 이곳에 봉안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성 궐리사는 애당초 조정과는 관련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 궐리사를 창건한 것은 일의 체모가 이와 다릅니다. 읍지(邑誌)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으므로 이곳의 형세를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라고 조정에서 특별히 명하고, 이어 내각(內閣)에 안치되어 있는 공자의 영정을 옮겨 봉안해서 영당본(影堂本)과 함께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에 전교하여 궐리사라는 편액을 써서 내리시기도 하였고, 봄가을로 지방관에게

향축을 내리도록 하교하셨습니다. 비록 제품을 거창하게 마련할 것까지는 없으므로 정결하고 간소하게 하도록 하고 재생(齋生)이 분란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공씨에게만 부탁하셨으나, 어필(御筆)로 사당에 편액을 써서 내리신 뒤에 또 전후로 내린 전교를 전부 게판(揭板)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를 어찌 유생들이 사적으로 설립한 사당과 함께 논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공씨가 사당을 지키고 있다는 이유로 춘추 향사를 한결같이 이성의 예대로 공씨에게 주관하게 한다면, 처음부터 성상의 뜻에 따라 세워졌고 편액을 써서 내리는 성대한 은전을 받은 이 궐리사를 애당초 조정에 알리지 않았던 이성의 궐리사와 차이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미 향축을 내리라는 내용으로 게판한 전교까지도 자연 도로 취소될 것이니 온당치 못한 일인 듯합니다.

축문식 가운데 대압하는 것은 일의 체모가 중대하지만 사(祀)인 삼성사와 묘(廟)인 역대 시조묘 같은 곳에도 모두 대압이 있으니 지금 궐리사에 대해 이 예대로 마련해도 안 될 것이 없을 듯합니다. 영정은 위판(位版)과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반대하는 근거로 내세우지만, 영정이나 위판이나 다 똑같이 영령이 깃든 것이라 향축을 내려 제사 지내기로 한 이상 축문식에 구애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향리에 있는 유학이 명을 받들어 대신 행하는 것은 과연 외람되다는 혐의가 없지 않아서 지난번 본조의 초기에 대한 비지(批旨)에서 '향축을 내리는 것은 일의 체모상 자별하기 때문에 유생이 제사를 주관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다. 외읍(外邑)의 경우 이와 비슷한 제사 의식을 향반(鄕班)이 오히려 대신 거행하기도 하는데 더구나 공자의 사당에 대해 공씨에게 제수를 받들어 제사 드리게 하는 것에 무슨 불가한 점이 있겠는가.' 하시고는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라고 명하셨는데, 대신들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다만 전후로 내리신 전교대로 거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두 의견이 다 통하지만 공씨가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직의 유무는 상관이 없다. 다만 축문식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그럴 만도 하다. 지방관인 **수원판관**이 초헌을 하고 공씨가 아헌과 종헌을 하라고 분부하며, 제향일은 길일을 잡아 행하라. 이러한 내용으로 정식을 삼도록 하라." 하였다.

綱 命水原闕里祠春秋享祀時地方官判官初獻孔氏亞終獻享日卜吉設行著爲式

目 承旨 徐邁修啓言水原闕里祠祭享時祝文以有押自該曹草記允下矣當初設施爲其子孫之所居也兼有闕里之此名也而守祠焚香之節旣令孔氏子孫主之則春秋享祀亦令孔氏主之恐合事宜況祝式中代押事體至爲重大鄕居幼學之奉命替行亦涉猥越臣意則一依尼城闕里祠例香燭祭品自官備送香室代押一款置之似好臣是該房而適有微見敢此仰達敎曰卿言足備執藝之義令該曹草記稟處○禮曹啓言水原闕里祠祭享時祝文代押一款有稟處之命矣尼城闕里祠則直是士子輩私自虔奉之所故曾在先朝辛亥有本縣影幀奉安于鄕校之敎而旋因故儒臣朴弼周之疏諸道孔聖影幀竝命仍奉此可見其初不闕由於朝廷也至於水原闕里祠之創建事體與此不侔自朝家旣以邑乘之可徵特命圖上其形便仍使移奉內閣所妥之聖像與影堂本同藏伊時傳敎亦以書下闕里祠扁春秋降香祝於地方官有所下敎矣雖以祭品之不必張大俾務精約齋生之易致紛拏只付孔氏而御筆扁祠之後又命以前後傳敎竝爲揭板則是豈可竝論於儒生輩私設之祠哉到今善以孔氏守祠之故而春秋享祀又令一依尼城之例使孔氏主之則以當初建祠之聖意書扁之盛典而將與初不關由朝廷之尼城祠無所異同況其已爲揭板之降香祝傳敎亦當自歸於還寢者恐或未安至於祝式代押事體非不重大而如三聖祠之爲祠歷代始祖廟之爲廟而皆有代押則今此闕里祠之依此磨鍊似無不可雖或以影幀異於位版爲持難之端而毋論影幀位版均是妥靈之所而旣已降香行祭則祝式一事恐不必相礙至若鄕居幼學之奉命替行果不無猥越之嫌而向於臣曹草記批旨若曰雖以降香祝事體自別儒生不可主祀云而此則不然外邑似此祭儀鄕班猶或替行況孔

廟以孔氏奠獻有何不可乎仍命收議大臣而亦無異辭臣意則只當謹依前後所下傳敎擧行矣敎以兩說皆通而孔氏之主祀貴矣不係於有官無職但祝式之特難亦或然矣地方官判官初獻孔氏亞終獻事分付享日卜吉爲之以此定式
<일성록, 정조17년(1793) 9월 2일(임진)>

문화/사상

수원부에 머물면서 시취를 시행하다

강 현륭원(顯隆園)에서 돌아와 수원부(水原府)에 머물면서 본부의 유생과 무사를 시취하였다.

목 ○ 군복을 갖추고 재실을 나가 말을 탔다. 협련은 가후 금군(駕後禁軍)으로 마련하고, 장용 외사(壯勇外使)가 별군관(別軍官) 및 본부의 마군과 보군을 거느리고 오리정(五里亭)에서 선상(先廂)이 되고, 다음에는 훈련대장이 난후 마병(攔後馬兵)을 거느리고 다음에는 장용대장이 선기대(善騎隊) 1개 초를 거느리고 모두 선상이 되고, 금위대장이 금군진(禁軍陣) 및 가전 별초(駕前別抄)를 거느리고 후상(後廂)이 되고, 그 나머지 장용영의 경보군(京步軍)과 향보군(鄕步軍), 금위영의 향군(鄕軍)은 장수가 거느리고 편리한 대로 대오를 지어 길을 떠나라고 명하였다. 내가 배양치(培養峙)에 이르러 말에서 내려 한동안 지체하며 머물렀다. 승지 이유경(李儒敬)에게 명하여 산 아래에 사는 백성을 불러 성황산(城隍山) 뒤쪽 봉우리의 이름을 물으라고 하였다. 말을 타고 수원부에 이르렀다. 장용 외사인 유수(留守) 이명식(李命植)이 별군관, 친군위(親軍衛), 입방군(入防軍)을 거느리고 득중정(得中亭)의 오른쪽 길에 주둔하고, 장용 내사(壯勇內使)가 각 장수와 기고(旗鼓)를 거느리고 마주 보며 왼쪽 길에 주둔하였다. 내가 원문(轅門)을 경유하여 득중정에 나아갔다. 내사와 외사 이하 내외 영문의 장수들이 군례(軍禮)로 반열을 따라 와서 알현하였다. 이어 시장(試場)을 설치하였다. 문시관(文試官) 및 무시관(武試官), 무거자(武擧子)가 마련한 의주(儀註)대로 예를 행하였다. 승지 서영보(徐榮輔)에게 명하여 장남헌(壯南軒) 뜰에 유생들을 가지런히 정돈하게 하였다. "풍패(豐沛) 고을인 수원에는 공후와 재상감이 많다.〔沛市多公侯相〕"로 부제(賦題)를 삼았다. 문시관은 어제(御題)를 받들고 장남헌에 나아가 걸라고 명하였다. 유생들이 마련한 의주대로 예를 행하였다.

綱 還次水原府試本府儒武

目 具軍服出齋室乘馬挾輦則駕後禁軍壯勇外使率別軍官及本府馬步軍五里亭爲先廂次訓將率攔後馬兵次壯勇大將率善騎隊一哨俱爲先廂禁將率禁軍陣及駕前別抄爲後廂其餘壯營京鄕步軍禁營鄕軍將領率領從便作行予行至培養峙下馬留連良久命承旨 李儒敬招山下居民問城隍山 後峯峯名乘馬至水原府 壯勇外使 留守 李命植率別軍官親軍衛入防軍箚駐於得中亭之右路壯勇內使率各將領旗鼓相向箚駐於左路予由轅門御得中亭內外使以下內外營將領以軍禮隨班參現仍設試場文試官及武試官武擧子行禮如儀命承旨 徐榮輔整齊儒生於壯南軒庭以沛市多公侯相爲賦題命文試官奉御題詣壯南軒懸揭儒生行禮如儀
<일성록, 정조18년(1794) 1월 14일(임인)>

문화/사상

화성 향교에 알성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강 중비(中批)로 이석조(李奭祚)를 정언에 제수하고, 이어 내일 사은한 뒤에 화성의 창방한 문과·무과의 신은과 함께 향교(鄕校)에 내려가서 알성(謁聖)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70세도 드물다고 하겠는데 하물며 80세이겠는가. 전적 이석조의 학문과 지식은 내가 채점할 때에 익히 알았으며 지처(地處)도 좋았다. 정언에 제수하고 이어 내일 사은한 뒤에 **화성** 향교에 내려가 알성하게 하라. 본부(本府)의 창방한 문과와 무과의 신은도 모두 이 예에 따라 행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 中批李奭祚 正言仍命明日謝恩後與**華城**唱名文武下泩鄕校謁聖

목 敎曰七十猶云稀貴況八十乎典籍 李奭祚文識慣知於御考之時地處亦好正言除授仍令明日謝恩後下泩**華城**鄕校謁聖本府唱名文武皆依此例爲之事分付

<일성록, 정조18년(1794) 3월 10일(정유)>

문화/사상

화성 공도회에서의 시취 문제를 논의하다

강 **화성(華城)**의 공도회(公都會)에서 시취(試取)하는 정식을 정하였다.

목 ○ 예조가 아뢰기를, “**수원(水原)** 공도회의 정식을 가져다 살펴서 초기한 데 대한 비지에서 유수를 역임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초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유수를 역임한 사람들에게 물으니, 영중추부사 채제공(**蔡濟恭**)은 ‘**화성에 공도회**를 처음으로 설행하는 것은 특별히 위로하고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번에 대비과(大比科)를 치르는 해를 당하여 무장이 유수라는 이유로 설행하지 못한다면 유생들의 답답한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서울에서 유신(儒臣) 중에 문장으로 이름난 자를 차임해 보내 기일에 맞춰 시취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고, 판중추부사 이명식은 ‘**화성의 공도회**는 초시를 치르고 복시(覆試)를 설행하는데 초시는 사흘이고 복시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지금 날짜가 임박하여 초시와 복시를 구분해 거행하는 것도 불편한 점이 많아 나흘 동안 연속해서 시취해야 할 형편입니다. 무장은 시험을 주관할 수 없고 겸유수(兼留守)도 옮겨 설행하는 데 합당하지 않다면, 별도로 경시관(京試官)을 차정해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유수를 역임한 사람들의 의론이 이와 같으니 상께서 재결해 주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다시 좋은 방도를 생각건대, 전에 유수를 지낸 재상 가운데 일찍이 규장각의 직책을 거친 자가 영중추부사이니, 내각으로 하여금 패초하여 시제(試題)를 내서 내려보내도록 하고, 이어서 시임 유수로 하여금 사흘을 나누어서 시취한 뒤에 시권(試券)을 내각에 올려보내게 하고, 내각에서 미품(微稟)한 뒤에 구두로 전달하여 그로 하여금 들어와서 시권을 채점하게 하라. 시험에 참가하는 대독관(對讀官)은 시임 초계 문신 중에서 승보시(陞補試)의 예에 따라 시관으로 하여금 두 사람을 차출하라고 분부하라. 앞으로 유수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시원임 각신(時原任閣臣)과 문임(文任) 가운데에서 예조로 하여금 나의 뜻을 물어 초기해서 한 사람을 차출하게 하되 이번의 예대로 고시(考試)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으라. 이번에 실시하는 공도회의 복시는 본부에서 일반적으로 과거를 설행했던 것과 다르고 경기에 본받을 만한 전례도 있으니 복시는 거행하지 말고, 우등(優等)한 사람을 뽑아 점수를 합산하여 출방(出榜)하는 것을 내각 및 본부에 일체 분부하라.” 하였다.

강 定**華城公都會**試取之式

목 禮曹啓言**水原**公都會取考定式草記批旨內問于曾經留守草記事命下矣問于曾經留守則領府事**蔡濟恭**以爲**華城**之創設公都會所以別致慰悅而今當大比之歲以武將之爲留守不得設行則其抑鬱當如何也自京差遣儒臣中有文名者及期試取恐似無妨云判府事 李命植以爲**華城公都會**有初擇有覆試初試爲三日覆試爲一日今則日子已迫分初覆擧行亦多難便勢當連試四日矣武將不可主試兼留守亦不合移設則別定京試官以送之外似無他道云矣曾經留守之議如此請上裁敎以更思有好道理前留相

中曾經閣職者領府也令內閣牌招出題下送仍令時留守分三日試取後試券上送于內閣 內閣微稟後言送使之入來考券參試之對讀官則時任抄啓文臣中依陞試例令試官劃出二人事分付此後留守如今番時則時原任閣臣及文任中令禮曹稟旨草記差出一人依今番例考試事定式至於覆試則異於本府設場亦有畿甸可倣之例除之取其優等計劃出榜事一體分付內閣及本府
<일성록, 정조18년(1794) 9월 15일(기해)>

문화/사상

화성 공도회의 시권 문제를 논의하다

강 화성부(華城府) 공도회의 시권(試券)이 올라올 때 출방(出榜)한 뒤에 문적을 살피는 규식을 정하였다.

목 ○ 내각이 아뢰기를, "방금 화성 공도회 시관인 전 유수 원임 제학 채제공(蔡濟恭)이, 이번 공도회의 시권이 올라온 뒤에 시권을 채점하여 출방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공도회의 규정에는 반드시 세 번의 식년에 작성된 호적을 대조한 뒤에야 입격을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에 있는 호적을 왕래하게 하는 것은 폐단이 있고, 경조(京兆)의 낭관으로 하여금 화성부에서 올린 화성의 세 번의 식년 동안 작성된 호적을 가지고 대령하게 하고 집을 짓고 거주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적(原籍)대로 시행하라는 수교(受敎)와 정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본부의 판관도 집을 지은 데 대한 성책을 가지고 대령하게 하여 일체 상고하도록 하고, 출방할 때는 본부의 서리와 경기 감영의 영리(營吏) 가운데 여러 차례 도회(都會)를 거쳐서 규례를 약간 아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령하게 하며, 방목(榜目)에 들어가는 종이와 붓, 먹은 본각에서 가져다 쓰되, 이후로 도성으로 올라와서 시권을 채점할 때에는 그대로 정식으로 삼아 시행하라고 경조와 화성, 경기 감영 등에 통지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강 定華城府公都會試券上來時出榜考籍之式

목 內閣啓言卽者華城公都會試官前留守 原任提學 蔡濟恭以爲今此公都會試券上來後當爲考券出榜而公都會之規必准三式戶籍然後方許入格本府所在件泩來有弊使京兆郎官特該府所上華城三式帳籍待令至於築室居生之類一依原籍施行旣有受敎定式此則本府判官持築室成册亦令來待以爲一體憑考之地出榜時本府書吏畿營營吏之累經都會稍諳規例者一人使之待令榜目所入紙地筆墨取用於本閣此後上來考券之時仍爲定式施行事知委於京兆 華城 畿營等處恐合事宜
<일성록, 정조18년(1794) 9월 21일(을사)>

문화/사상

화성 공도회의 시권문제를 논의하다

강 화성(華城)의 공도회(公都會)에 입격한 사람 가운데 비봉(祕封)을 잘못 적은 자는 특별히 용서하라고 명하였다.

목 ○ 영중추부사 채제공이 아뢰기를, "화성 공도회의 시권(試券)을 조금 전에야 탁방(拆榜)했는데, 비봉에 거주지를 적지 않거나 아비의 관직과 이름을 적은 자가 있었습니다. 이는 근래의 응행 식례(應行式例)와 다르니 비록 입격했더라도 격례를 어긴 죄로 과시(科試)의 방목(榜目)에서 빼 버려야 할 듯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이번에는 영(令)을 시행하고 처음 보는 시험이니 특별히 용서하고, 차후로는 착오가 없게 하라는 뜻으로 본부(本府)의 유생들에게 통지하라." 하였다.

강 命華城公都會入格人中誤書祕封者特爲分揀

목 領府事 **蔡濟恭**啓言**華城公都會**誠券俄纔折榜而秘封或不書某處居住或具書父職父名此與近來應行式例不同雖已入格似當以違格拔去矣敎以今番則係是令初特爲分揀此後俾勿錯誤之意知委本府儒生等處

<일성록, 정조18년(1794) 9월 24일(무신)>

문화/사상

화성 공도회의 규례에 맞춰 경기의 공도회를 진행하도록 하다

강 경기의 공도회(公都會)는 각 지역의 수령이 관아의 뜰에 해당 읍의 응시자를 모아 내려 보낸 시제(試題)로 시험을 보이고 시권(試券)을 거두어 순영(巡營)에 올려보내게 한 다음 순영에서 내각(內閣)으로 보내어 대읍(大邑)은 3인(人)을, 중읍(中邑)은 2인을, 소읍(小邑)은 1인을 시취하게 하고, 그 가운데 가난한 유생은 양식을 주어 올려보내면 도사(都事)로 하여금 경기 신영(新營)에서 도시(都試)를 보이고 시권을 거두어 들여보내게 한 다음 **화성(華城)**의 공도회 규례대로 원임 직제학 서유방(徐有防)으로 하여금 고시(考試)하게 해서 초초(初抄 1차)의 서제(書題)는 17일에 해당 도에 내려보내어 19일에 시취하고 재시(再試)의 서제는 시취할 때 내려보내며 강(講)은 또한 **화성**의 규례대로 제술(製述)로 시행하도록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용보(徐龍輔)의 장계에, "도내 유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공도회는 늘 흉년을 만나면 상에게 여쭈어 물려서 행하기를 청하는 것이 근래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금년은 시소(試所)가 모두 재해를 입은 읍에 있으니, 먼 지역의 유생들이 여러 날 동안 양식을 싸 들고 와서 머물게 되면 실로 주객이 모두 힘들어질 염려가 있습니다. 공도회는 지금 우선 기한을 물렸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함께 시취하도록, 예조로 하여금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 '폐단이 생기겠지만 내년은 다른 해와 달라서 식년과(式年科)라도 초시(初試)까지 아울러 보게 해야 한다. 이번 공도회는 각 지역의 수령이 관아의 뜰에 해당 읍의 응시자를 모아 내려보낸 시제로 시험을 보이고 시권을 거두어 순영에 올려보내게 한 다음 순영에서 내각으로 보내어 대읍은 3인을, 중읍은 2인을, 소읍은 1인을 시취하게 하겠다. 그 가운데 가난한 유생은 양식을 주어 올려보내면 도사로 하여금 경기 신영에서 도시를 보이고 시권을 거두어 들여보내게 하겠다. 도백(道伯)은 백성의 일로 경황이 없을 테니 어느 겨를에 시권을 채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시취하는 데 도사가 주시관(主試官)이 되는 것은 가벼우니, 도백을 역임한 사람이 성균관의 직임을 맡아서 **화성** 공도회의 규례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원임 직제학 서유방으로 하여금 고시하게 해서 초초의 서제는 17일에 해당 도에 내려보내어 19일에 시취하고, 재시의 서제는 시취할 때 내려보내며, 강은 또한 **화성**의 규례대로 제술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라. 도성의 지척에서는 힘없는 백성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데, 더구나 선비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 뜻을 기읍(畿邑) 30개 주(州)의 제생(諸生)으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라는 내용으로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강 命京畿公都會各其守令聚該邑擧子於官庭以下送之題捧券上送于巡營自巡營送于內閣大邑取三人中邑取二人小邑取一人其中貧儒給糧上送令都事都試於新營捧券入送依**華城公都會**例令原任直提學 徐有防考試初抄書題十七日下送該道十九日試取再試書題臨時下送講則亦依**華城**以製述爲之

목 京畿監司 徐龍輔狀啓以爲道內儒生公都會每當歉歲稟請退行已成近例今年試所俱在災邑遠地儒生多日齎糧往來留連實有主客俱困之慮公都會今姑退限待明秋同爲試取事令該曹稟處敎以爲弊果然而明年異於他年雖是式年之科當令幷觀初試矣今番則各其守令聚該邑擧子於官庭以其下送之

題捧券上送于巡營自巡營送于內閣大邑取三人中邑取二人小邑取一人其中貧儒給糧上送令都事都試於新營捧券入送而道伯役役於民事何暇考券如是試取則都事主試輕矣曾經道伯且帶成均之任依**華城公都會**例令原任直提學 徐有防考試初抄書題十七日下送該道十九日試取再試書題臨時下送講則亦依**華城**以製述爲之事分付邦畿咫尺小民猶施惠況多士乎此意令畿邑三十州諸生知悉事回諭
<일성록, 정조18년(1794) 10월 15일(기사)>

⑵ 과학

문화/과학

수원의 강우가 유독 적은 것에 대해 논의하다

강 연화당(讌華堂)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목 ○ 영의정 정존겸(鄭存謙)이 아뢰기를, “일전의 비가 도처에 흡족하게 내렸다고 하니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기내(畿內)만 두루 흡족하게 내렸을 뿐만 아니라 어제 홍충도의 장계(狀啓)를 보니 또한 마찬가지였다. 농사일을 생각하면 대단히 다행스러운데, **수원(水原)**만 유독 흡족하게 내리지 않은 것이 또한 괴상하다.” 하였다.

정존겸이 아뢰기를, “비변사 낭청 권정우(權正遇)가 영남을 경유하여 일전에 올라왔는데, 영남의 민정(民情)은 타도(他道)보다는 조금 낫고 호남의 맥농(麥農)은 이미 풍년을 점칠 수 있지만 불안한 조짐이 없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비록 도신(道臣)의 장계로 살펴보더라도 전염병이 사그라지지 않아 백성의 사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매우 불쌍하고 염려된다. 이번 비는 적시에 고르게 적셔 주어 풍성한 가을 수확을 점칠 수 있게 되었으니 만금보다 더 값지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구선복(具善復)이 아직까지 이렇게 처의(處義)하는 것은 이미 지나치고, 수의(收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더욱 의의가 없다.” 하니, 우의정 김익(金熤)이 아뢰기를, “정세(情勢)가 아무리 편안하기 어렵더라도 신칙하는 하교를 내렸는데 아직까지 출사(出仕)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지나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근래 전조(銓曹)는 ‘호대(互對)’ 두 글자로 하나의 규모를 삼아 배망(排望)할 즈음에는 비교하여 따지기를 너무 정교하게 하고 주의(注擬)할 때는 조그만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다. 이것은 비유하면 마치 단청(丹靑)이 화려하게 여러 문양이 뒤섞여 있고 본디 바둑돌을 포석하고 새끼로 물건을 꿰는 것처럼 정연한 것이 아님과 같으니, 어찌 이와 같은 정격(政格)이 있단 말인가.” 하니, 좌의정 이복원(李福源)은 아뢰기를, “근일 전조에 있는 신하는 눈앞의 비난을 면하고자 재주의 우열과 인품의 가부는 따지지 않고 한 명은 저쪽 한 명은 이쪽으로 하여 오직 짝을 맞추기만을 구하여 어느새 잘못된 규례가 되었으니, 갑자기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하고, 김익은 아뢰기를, “무릇 일에 폐단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이 있는 법입니다. 그 원인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반드시 먼저 전조에 적임자를 얻어야만 재주를 헤아려 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고, 정존겸은 아뢰기를, “지난번 소통(疏通)의 취지로 말씀하신 성상의 하교가 간측하고 진지하였으니 조정의 신료라면 누군들 감읍(感泣)하지 않았겠습니까마는, 전조에 있는 신하들은 더욱 삼가고 유념하여 봉행해야 합니다. 이판(吏判)이 지금 입시해 있으니 또 신칙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방금 이미 하교하였는데 서로 짝을 맞추는 것은 전형(銓衡)의 원칙에 매우 위배되는 것이다. 이판은 한 나라의 총재(冢宰)로서 백관의 취사(取捨)를 총괄하는데, 어찌 구차히 짝을 맞추려고 하여 비방이나 면하기를 도모한단 말인가. 또 벼슬길이 막혔다는 탄식이 오늘 같은 적이 없으니 소통하는 정사에 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비록 벼슬길이 막힐 처지와 위태로운 자취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 제방(隄防)에 관계된 자가 아니면 또한 반드시 그 단점을 버리고 그 장점을 취하여 오늘 한 정사를 행하고 내일 한 정사를 행하여 제대로 거행해야 할 것이니,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 어찌 끝내 버려질 물건이 있겠으며, 사람들에게는 어찌 생각을 고칠 아름다움이 없겠는가.”

하니, 이조 판서 이재간(李在簡)이 아뢰기를, “신이 감히 성상의 뜻을 받들어 선양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전형의 책임은 신이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소통하는 즈음에 제방을 손상시킬 것이 두렵기 때문에 누차 현직을 맡았음에도 한결같이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지난번 김종수(金鍾秀)가 전조에 있을 때 소통시키기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내어 대신(大臣)과 상의하여 감별하여 서용(敍用)하려고 하였지만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때 기록한 것을 가져다 보도록 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추조(秋曹)의 녹계(錄啓)는 어느 때나 결말을 지을 수 있겠는가?” 하니, 형조 판서 조시준(趙時俊)이 아뢰기를, “2월부터 시작하였는데 아직 마감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가 이 일로 아침부터 밤까지 자세히 살펴보느라 틈이 없는데 마감할 기약이 없으니 자못 염려스럽다.” 하니, 정존겸이 아뢰기를, “호판(戶判)이 추판(秋判)이었을 때 판하(判下)하신 문서를 얻어 보았는데, 매번 밤이 매우 깊은 뒤에야 내리셔서 밤낮으로 지나치게 고심하신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본래 유사(有司)가 있으니 정력을 지켜 기르시고 지나치게 마음을 쓰지 말도록 하소서.”

하여, 내가 이르기를, “사람 목숨은 지극히 중한 것인데 옥안(獄案)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니, 어찌 충분히 헤아리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미진하다는 탄식이 있게 하겠는가.”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발매(發賣)는 1순(巡)만 남았는데 진휼을 마친 뒤에는 민정(民情)이 황급해할 문제는 없을 수 있겠는가?” 하니, 한성부 판윤 김이소(金履素)가 아뢰기를, “춘궁기가 이미 다하였고 보리농사가 장차 여물게 될 것이니, 이후로는 전처럼 궁핍하지는 않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부관(部官)의 근태 여부를 상세히 고찰하였다가 나중에 하문할 때 주대(奏對)하도록 하라.” 하였다.

강 行次對于讌華堂

목 領議政 鄭存謙曰日前雨澤到處洽足云誠爲萬幸矣予曰不但畿內之周洽昨見洪忠道狀啓亦爲同然言念民事萬幸而水原之獨未浹洽者亦可怪也存謙曰備郎 權正遇由往嶺南日昨上來以爲嶺南民情稍勝他道湖南麥農已有豐占而但不無不安之漸云矣予曰雖以道臣狀啓觀之濡染之不息死亡之相續可知已殊可矜悶今番之雨適時均洽其占有秋不啻萬金之可直也予曰具善復之尙此處義已過矣而收議之不參尤無義矣右議政 金熤曰情勢雖難安飭敎之下尙不出仕萬萬過當矣予曰近來銓曹以互對二字爲一副當規模排望之際較計太巧注擬之間毫忽是爭譬如丹靑耀然斑文錯了自非其石布而繩索豈有如許政格左議政 李福源曰近日居銓之臣欲免目前之誚不問才謂之優劣人品之可否一彼一此惟求對耦便成謬規猝難釐改矣熤曰凡事之有弊者必有其源欲捄其源必先得人於銓曹可得量才而授任矣存謙曰向以疏通之意聖敎懇摯凡在廷臣孰不感泣而居銓之臣尤當惕念奉行吏判今此入侍又爲申飭似宜矣予曰俄旣下敎而其所對待之擧殊幸銓衡之義吏判爲一國之冢宰總百僚之取舍焉用苟求對耦圖免誚謗乎且壅閼之歎莫若近日疏通之政不可少忽雖在枳塞之地鼈甀之蹤自非關係堤防者亦須棄其所短取其所長今日行一政明日行一政以爲修擧之地則世豈有終棄之物人豈無改圖之美乎吏曹判書 李在簡曰臣敢不對揚聖意而銓衡之責非臣所堪疏通之際恐傷堤防故屢叨見職一未修擧矣予曰向來金鍾秀居銓時抄出可合疏通之人欲與大臣相議甄用而未果云取見其時所錄也予曰秋曹錄啓何時可以出場乎刑曹判書 趙時俊曰自二月爲始而尙未收殺矣予曰予以此事自早至夜考閱無隙而了勘無期殊可悶也存謙曰戶判爲秋判時得見判下文書而每下於夜闌更深之後伏想過用宵旰之憂矣此等之事自有有司存焉護養睿精無過聖慮也予曰人命至重獄案多疑豈不十分詳思以致一毫未盡之歎乎予曰發賣只餘一巡畢賑之後民情得無遑汲之患否漢城判尹 金履素曰春窮已盡麥農將登此後似不如前窘給矣予曰部官勤慢詳細考察日後俯詢時奏對也

<일성록, 정조8년(1784) 윤3월 10일(을축)>

문화/과학

선전관이 수원의 재해정도를 보고하다

강 선전관(宣傳官)을 나누어 보내 기전(畿甸), 해서(海西), 관동(關東)의 농사 형편을 살피게 하였다. 선전관 김후(金煦)는 광주(廣州), 이천(利川), 음죽(陰竹), 여주(驪州), 원주(原州), 지평(砥平), 양근(楊根), 가평(加平), 포천(抱川), 영평(永平), 양주(楊州), 연천(漣川), 삭녕(朔寧), 마전(麻田), 적성(積城), 철원(鐵原), 김화(金化)에 나아가고, 김익빈(金益彬)은 금천(衿川), 인천(仁川), 남양(南陽), 안산(安山), 수원(水原), 용인(龍仁), 양지(陽智), 죽산(竹山), 안성(安城), 양성(陽城), 진위(振威)에 나아가고, 이신경(李身敬)은 고양(高陽), 교하(交河), 파주(坡州), 장단(長湍), 송도(松都), 금천(金川), 평산(平山), 풍덕(豐德), 교동(喬桐), 강화(江華), 통진(通津)에 나아갔다.

목 (…) ○ 선전관 김익빈이 장계하기를, "금천(衿川)은, 연강의 침수된 곳은 각 곡식이 남김없이 사라지고 저지대에 있는 동답(洞畓 동네의 공동 소유로 된 논)은 더러 침수된 곳이 있었으나, 수재를 당하지 않은 곳에서는 풍작(豐作)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남양, 안산, 수원 등의 고을은 모두 바닷가에 있는 지역으로 재해를 입은 정도가 가장 심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은, 장마 전에 수확했던 추모(秋麰)는 농량(農糧)에 다 써 버렸고 장마 뒤에 반쯤 거두어들였던 춘모(春麰)는 썩거나 떠내려가 버려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각 고을이 모환을 징수한 것은 절반이나 3분의 2였는데,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매우 민망합니다."

하고, (…)

綱 分遣宣傳官審察畿甸 海西 關東農形 宣傳官 金煦 廣州 利川陰竹驪州 原州 砥平 楊根 加平 抱川 永平 楊州 漣川 朔寧 麻田 積城 鐵原 金化 金益彬 衿川 仁川 南陽 安山 水原 龍仁 陽智 竹山 安城 陽城 振威 李身敬 高陽 交河 坡州 長湍 松都 金川 平山 豐德 喬桐 江華 通津

目 (…) ○宣傳官 金益彬狀啓衿川則沿江水沈處各穀消融無餘洞畓汚下處或有水沈之患而無水災處則可期登稔之望仁川 南陽 安山 水原等邑皆是濱海之地被災最甚民情則潦前所穫之秋麰已盡於農糧潦後半收之春麰或腐或溧所收無幾各邑麰還所捧或折半或三分二言念民事誠甚可悶 (…)

<일성록, 정조11년(1787) 6월 17일(계축)>

문화/과학

수원부에 측우기와 주척(周尺)을 내려보내다

강 수원부(水原府)에 측우기 및 주척(周尺)을 내려보냈다.

목 ○ 수원유수 이명식(李命植)의 장계에, "본부에는 이달 13일에 먼지잼이 내린 뒤 14, 5일 이틀 동안에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내의 방리(坊里)가 50개 면(面)인데 탄강(呑江) 아래쪽 바닷가에 위치한 30여 개 면은 13일에 비가 골고루 흡족하게 내려 과연 부족하다는 탄식이 없습니다. 반면에 수원부 근처와 탄강 위쪽의 여러 면은 그날 내린 비가 겨우 먼지잼에 불과했으므로 논의 작물에까지 손상이 가지는 않았지만 밭에 심은 여러 곡물 중 모래땅이나 메마른 고지대의 것은 더러 혹 병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원하게 비가 한번 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비가 내린 곳에는 조도(早稻 올벼)가 한창 익어가고 중도(中稻 중벼)는 이삭이 패었고 만도(晩稻 늦벼)는 싹이 터서 각종 밭작물과 함께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 '바다 근처 30개 면에는 비가 고르게 내렸다니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다. 이후에 농사 형편을 보고할 때에는, 수원부 이내 및 원근 각 면에 혹 이번처럼 지역에 따라 강우량이 차이가 날 경우 낱낱이 구별하여 장계로 보고하도록 하라. 여러 도(道)와 양도(兩都)에서는 비가 내린 상황을 모두 측우기 수심이 몇 치 몇 푼이었다고 장계로 보고하니, 본부에서도 이에 따라 하라. 측우기와 주척은, 경의 아들이 해당 방에 있으니 호조에서 가져오게 해서 이 유지(有旨)까지 함께 내려보낼 것이니 경은 잘 수령하라.' 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綱 下送測雨器及周尺于水原府

目 水原留守 李命植狀啓以爲本府今月十三日浥塵雨後十四十五兩日更無所得境內防里爲五十面而水下濱海三十餘面十三日所得之雨俱能浹洽果無未足之歎府下近處水上諸面伊日所得不過浥塵而已畓穀則雖未至有損田種雜穀則沙石高燥之處稍或受病故一霈更下方此顒俟至於已得雨之處向熟之早稻發穗之中稻胚胎之晩稻與各種田穀俱善成就矣敎曰近海三十面之均沾實爲萬幸此後農形則府內及遠近各面或若今番之彼寡此多枚擧區別以聞諸道兩都得雨形止皆以測雨器分寸啓聞本府亦依此爲之測雨器與周尺卿子旣在該房取來戶曹與此有旨同爲下送卿其祗受事回諭

<일성록, 정조17년(1793) 7월 17일(무신)>

문화/과학

수원의 강수량과 농사 작황에 대해 보고하다

강 수원유수 이명식(李命植)이 수원부의 농사 형편에 대해 급히 장계하였다.

목 ○ 장계에, "이달 13일에 비가 내렸어도 두루 흡족하지는 못했고 그 후 열흘이 지나도록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논의 작물은 물론이고 탄강(呑江) 위쪽과 아래쪽 여러 면에도 별로 크게 손상된 것이 없습니다. 조도(早稻)는 간간이 수확하였고 중도(中稻)는 여물어 가고 있으며 만도(晩稻)는 간혹 이삭이 팼습니다. 밭작물인 두(豆)와 태(太)의 경우 낮은 습지대의 것은 그나마 좀 수확할 가망을 보이면서 한창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마는 건조한 고지대의 것은 거의 대부분이 누렇게 말라 소생할 기약이 없습니다. 이런 농사 형편을 생각하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 '어제의 단비가 과연 골고루 적셔 주었는가? 방곡에 두루 물은 다음 논열하여 장계로 보고하라.' 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綱 水原留守 李命植以本府農形馳啓

目 狀啓以爲今月十三日所得雨澤旣未周徧其後一旬之內尙此慳閟畓穀則毋論水上水下面別無致損之可論旱稻間間刈取中稻向熟晩稻間或發穗至於田穀豆太則下濕處猶有成就之望方張起花結顆而高燥處頗多枯黃蘇醒無期言念民事誠爲悶然矣敎以昨日喜雨果得均霑乎遍問坊曲論列狀聞事回諭

<일성록, 정조17년(1793) 7월 23일(갑인)>

문화/과학

수원유수가 수원의 기후와 농사상황에 대해 장계하다

강 수원유수(水原留守) 이명식(李命植)이 본부의 비가 내린 상황과 농사 형편에 대해 급히 보고하였다.

목 ○ 장계에, "이달 28일 신시(申時)에 비가 오기 시작하여 잠시 후에 개었습니다. 본부가 위치한 곳에 내린 비는 먼지를 축일 정도도 못 되어 측우기의 수심이 겨우 1푼이었기 때문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각 면에서 보고한 것을 받아 보니 탄강(呑江) 위쪽과 아래쪽 지역을 막론하고 내린 비가 거의 모두 먼지를 축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읍치에서 10리쯤 떨어진 탄강 위쪽 3개 면과 70리쯤 떨어진 탄강 아래쪽 2개 면은 내린 비가 호미자락은 된다고 합니다. 달포에 걸쳐 가문 끝에 이처럼 단비가 내렸으니 농사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오늘 단비가 두루 흡족하게 내릴 것인데 과연 얼마만큼 내렸는지, 그리고 부내(府內)와 원근 각 면의 비 온 뒤의 농사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 상세히 장계로 보고하라고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綱 水原留守 李命植以本府雨澤農形馳啓

目 狀啓以爲今月二十八日申時始雨霎時開霽府下所得未滿浥塵測雨器水劣容一分故未卽馳啓矣卽接各面所報則毋論水上水下所得擧皆爲浥塵其中距邑治十里許水上三面及七十里許水下兩面所得爲一鋤跨月旱餘得此甘澍言念民事誠甚萬幸矣敎以今日甘澍當遍洽所得果如何而府內遠近各面雨後農形詳細狀聞事回諭

<일성록, 정조17년(1793) 8월 1일(신유)>

문화/과학

수원유수가 수원의 강우(降雨) 상황을 보고하다

강 수원유수 이명식이 본부의 비가 내린 상황에 대해, 급히 보고하였다.

목 ○ 장계에, "이달 1일 묘시(卯時)에 처음으로 가랑비가 내리다가 곧 그쳤으나 사시(巳時)에 이르러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쏟아지기도 하여 측우기의 수심이 1치 8푼이었으며, 현재 검은 구름이 사방을 덮고 있고 간간이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와 부근에 비가 내린 상황을 우선 이렇게 급히 보고합니다. 비 오기를 간절히 바라던 끝에 이렇게 한번 쏟아졌으니 농사로 보아서는 천만다행입니다." 하였다.

綱 水原留守 李命植以本府雨澤馳啓

目 狀啓以爲今初一日卯時始有廉纖之雨旋又止歇至巳時仍爲霏微或霆下測雨器水深爲一寸八分而見今陰雲四塞間間點滴故府下所得先此馳啓顒望之餘得此一霈民事萬幸矣

<일성록, 정조17년(1793) 8월 2일(임술)>

⑶ 지리·경관

문화/지리 · 경관

수원의 지세를 논하다

강 양주(楊州) 행영(行營)에 나아가 양주와 포천(抱川) 두 읍의 유생들에게 시험 보이고, 이어 연무당(演武堂)에 나아가 두 읍의 무사들에게 시험 보였다. 문소(文所)의 시관(試官)은 박종악(朴宗岳), 서유린(徐有隣), 심환지(沈煥之), 이문회(李文會), 심진현(沈晉賢), 남공철(南公轍), 김조순(金祖淳)이고, 무소(武所)의 시관은 채제공(**蔡濟恭**), 조심태(**趙心泰**), 이주봉(李周鳳), 이요헌(李堯憲)이다.

목 (…) 또 채제공에게 이르기를, "이곳은 평소 대지(大地)라고 일컬어지지만 오히려 험한 산의 무시무시한 기운이 있어서 옛사람이 왜 이곳을 취하였는지 몰랐었는데, 지금에 와서 보건대, 그 취함이 어긋나지 않음을 크게 깨달았으니 매우 다행스럽다. 우리나라는 100리(里) 되는 넓은 들이 없는데, 큰 들이 평탄하게 펼쳐져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서 기상이 웅장한 것이 어찌 **수원(水原)**만 한 곳이 있겠는가. 그런데 어제 광릉에 전알하였을 때 조산(朝山)이 혈을 향해 마치 공손하게 읍을 하는 듯한 모습이 **수원**과 대략 같았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수원**은 천 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땅으로, 영릉(英陵) 및 광릉과 견줄 만합니다." 하였다. (…)

강 御楊州行宮試楊抱兩邑儒生仍御演武堂試兩邑武士文所試官 朴宗岳 徐有隣 沈煥之 李文會 沈晉賢士南公轍 金祖淳武所試官 **蔡濟恭** **趙心泰** 李周鳳 李堯憲

목 (…) 又謂**濟恭**曰此處素稱大地而猶未免劫氣未知古人何所取而到今見之尤覺取舍之不差甚奇幸我國無百里開野而平臨大野四面回抱氣像雄偉豈有如**水原**者乎昨謁光陵朝帶拱揖與**水原**略同矣**濟恭**曰**水原**則是千載一遇之地可與英陵 光陵比方矣 (…)

<일성록, 정조16년(1792) 9월 12일(무신)>

5. 화성(華城)

(1) 행궁

화성/행궁

화성의 작문(作門)까지 당마(塘馬)를 배립(排立)하라고 명하다.

강 궐문 밖으로부터 재실(齋室)의 작문(作門)까지 당마(塘馬)를 배립(排立)하라고 명하였다.

목 ○ 궐문 밖으로부터 재실의 작문까지 도합 23개 당(塘)으로 나누어 정하되, 1당은 통화문(通化門) 밖에, 2당은 흥인문(興仁門)에, 3당은 왕십리(往十里)에, 4당은 살곶이리〔箭串里〕에, 5당은 뚝섬〔纛島〕에, 6당은 부교(浮橋) 남쪽에, 7당은 압구정(狎鷗亭)에, 8당은 사평(沙坪)에, 9당은 반포리(盤浦里)에, 10당은 유현(杻峴)에, 11당은 태봉(胎峯) 앞에, 12당은 과천(果川)의 작문에, 13당은 냉정(冷井)에, 14당은 갈산(葛山)에, 15당은 자잔동(自棧洞)에, 16당은 사근(沙斤)의 종참(終站)에, 17당은 **미륵당(彌勒堂)**에, 18당은 진목정(眞木亭)에, 19당은 **화성(華城)**의 작문에, 20당은 **상류천(上柳川)**에, 21당은 고집리(庫執里)에, 22당은 배양동(培養洞)에, 23당은 재실의 작문에 정하였다. 통화문으로부터 뚝섬까지의 5개 당은 금위영의 기사(騎士)로 1당마다 3명씩을, 부교로부터 **화성의 작문**까지의 14개 당은 훈국(訓局)의 별정 마병(別定馬兵)으로 1당마다 3명씩을, 상류천으로부터 재실의 작문까지의 4개 당은 훈국의 별대 마병(別隊馬兵)으로 1당마다 3명씩을 배립하였다.

강 命自闕門外至齋室作門排立塘馬

목 自闕門外至齋室作門合二十三塘一塘通化門外二塘興仁門三塘往十里四塘箭串里五塘纛島六塘浮橋南邊七塘狎鷗亭八塘沙坪九塘盤浦里十塘杻峴十一塘胎峯前十二塘果川作門十二塘冷井十四塘葛山十五塘自棧洞十六塘沙斤終站十七塘彌勒堂十八堂眞木亭十九塘**華城作門**二十塘上柳川二十一塘庫執里二十二塘培養洞二十三塘齋室作門自通化門至纛島五塘禁衛營騎士每塘三名自浮橋至**華城作門**十四塘訓局別定馬兵每塘三名自上柳川至齋室作門四塘訓局別隊馬兵每塘三名

<일성록, 정조14년(1790) 2월 7일(무오)>

화성/행궁

행궁의 현액들을 명명하다.

강 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친히 제사 지내고 이어 내외(內外)의 청룡(靑龍)과 백호(白虎)를 친히 살폈다.

목 ○ 아침에 비가 와서 일찍 출발하지 못하였다. 동헌의 당호(堂號)를 '**장남헌(壯南軒)**', 내아(內衙)의 편호(扁號)를 '**복내당(福內堂)**', - 조충국(趙充國)이 말한 '거조가 외부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지면 복이 내부에서 생긴다'는 뜻을 취한 것이다. - 사정(射亭)의 편호를 '**득중정(得中亭)**'이라고 친히 썼다.

전교하기를, "옛날 선조(先朝) 때 어가가 **수원(水原)**에 머물렀을 적에 어필(御筆)을 현판으로 걸도록 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또 고사를 따라 편호를 써서 내려서 '장남헌'을 동헌에 걸며, '복내당'을 내아에 걸며, '득중정'을 사정에 걸도록 하니, 지방관인 **수원부사**로 하여금 잘 알게 하라. 문루(門樓)는 '**진남루(鎭南樓)**'로 본부의 부사가 써서 걸며, 중삼문(中三門)은 '**익좌문(翊左門)**'으로 수가하는 제신(諸臣) 중에 일찍이 부사를 거친 사람이 써서 걸며, 외삼문(外三門)은 '**중약문(重鑰門)**'으로 본도의 도백이 써서 걸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綱 詣顯隆園親祭仍親審內外龍虎

目 朝雨不得早發親書東軒堂號曰壯南軒內衙曰福內堂取趙充國擧措得於外福生於內之意也射亭曰得中亭敎曰昔在先朝駕次水原有御筆揭板之擧今又追故事書下扁號以壯南軒揭于東軒福內堂揭于內衙得中亭揭于射亭令地方官水原府使知之門樓以鎭南樓本府使書揭中三門以翊左門隨駕諸臣中曾經府使人書揭外三門以重鑰門本道伯書揭事分付 (…)

<일성록, 정조14년(1790) 2월 9일(경신)>

화성/행궁

화성의 작문(作門)까지 당마(塘馬)를 배립(排立)하라고 명하다

강 궐문 밖에서부터 재실(齋室)의 작문(作門)까지 당마(塘馬)를 안배하여 세우라고 명하였다.

목 ○ 궐문 밖에서부터 재실의 작문까지 도합 22개 당(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당은 궐문 밖, 2당은 종각(鍾閣), 3당은 남대문(南大門), 4당은 석우(石隅), 5당은 만천(蔓川), 6당은 노량 행궁(露梁行宮) - 이상의 6당은 매번 유진하는 영으로 거행하였다. - 으로 정하였다.

7당은 금불암(金佛庵), - 노량 행궁에서 5리이다. - 8당은 봉천리(奉天里), - 5리이다. - 9당은 사당리(舍堂里), - 5리이다. - 10당은 남태령(南泰嶺), - 6리이다. - 11당은 과천(果川)의 작문, - 5리이다. - 12당은 냉정(冷井), - 4리이다. - 13당은 갈산(葛山), - 6리이다. - 14당은 자잔동(自棧洞), - 5리이다. - 15당은 사근(沙斤)의 종참(終站), - 5리이다. - 16당은 미륵당(彌勒堂), - 5리이다. - 17당은 진목정(眞木亭), - 7리이다. - 18당은 화성(華城)의 작문 - 7리이다. ○ 이상의 12당은 별도로 마병(馬兵)을 정하였다. - 으로 정하였다.

19당은 상류천(上柳川), - 5리이다. - 20당은 고집리(庫執里), - 5리이다. - 21당은 배양동(培養洞), - 5리이다. - 22당은 재실의 작문 - 5리이다. ○ 이상의 4당은 수가하는 별대 마병(別隊馬兵)으로 거행하였다. - 으로 정하였다.

1당마다 마병 3명을 배정하되 금불암에는 인가가 없으므로 마병 1명과 화병(火兵) 1명을 더 정하고 경기 감영에서 임시 건물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정식을 삼았다.

○ 궐문 밖에서 노량 행궁까지는 1당마다 금위영의 기사(騎士) 3명과 어영청의 기사 1명 모두 4명씩을, 금불암에서 화성 행궁까지는 1당마다 훈련도감의 별정 마병(別定馬兵) 3명씩을, 상류천에서 재실의 작문까지는 1당마다 훈련도감의 별대 마병 3명씩을 안배하여 세웠다.

강 命自闕門外至齋室作門排立塘馬

목 自闕門外至齋室作門合二十二塘一塘闕門外二塘鍾閣三塘南大門四塘石隅五塘蔓川六塘露梁行宮 以上六塘每以留陣營擧行七塘金佛庵 露梁行宮五里八塘奉天里五里九塘舍堂里 五里十塘南泰嶺 六里十一塘果川作門五里十二塘冷井 四里十三塘葛山 六里十四塘自棧洞 五里十五塘沙斤終站 五里十六塘彌勒堂 五里十七塘眞木亭 七里十八塘華城作門七里○以上十二塘別定馬兵十九塘上柳川 五里二十塘庫執里 五里二十一塘培養洞 五里二十二塘齋室作門五里○以上四塘隨駕別隊馬兵擧行每塘以馬兵三名排定而金佛庵則無人家故加定馬兵一名火兵一名自畿營造給假家以爲定式○自闕門外至露梁行宮每塘禁衛營騎士三名御營廳騎士一名合四名自金佛庵至 華城行宮 訓局別定馬兵每塘三名自上柳川至齋室作門訓局別隊馬兵每塘三名

<일성록, 정조16년(1792) 1월 23일(계사)>

화성/행궁

화성의 작문(作門)까지 당마(塘馬)를 배립(排立)하라고 명하다

강 궐문 밖에서 재실(齋室)의 작문(作門)까지 당마(塘馬)를 안배하여 세우라고 명하였다.

목 ○ 궐문 밖에서부터 재실의 작문까지 도합 22개 당(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당은 궐문 밖, 2당은 종각, 3당은 남대문, 4당은 석우(石隅), 5당은 만천(蔓川), 6당은 노량 행궁(露梁行宮), - 이상 6당은 매번 유진(留陣)하는 영(營)으로 거행하였다. - 7당은 금불암(金佛庵) - 노량 행궁에서 5리이다. -, 8당은 봉천리(奉天里) - 5리이다. -, 9당은 사당리(舍堂里) - 5리이다. -, 10당은 남태령(南泰嶺) - 6리이다. -, 11당은 과천(果川)의 작문 - 5리이다. -, 12당은 냉정(冷井) - 4리이다. -, 13당은 갈산(葛山) - 6리이다. -, 14당은 자잔동(自棧洞) - 5리이다. -, 15당은 사근(沙斤)의 종참(終站) - 5리이다. -, 16당은 미륵당(彌勒堂) - 5리이다. -, 17당은 진목정(眞木亭) - 7리이다. -, 18당은 **화성(華城)**의 작문 - 7리이다. ○ 이상 12당은 별도로 마병(馬兵)을 정하였다. -, 19당은 상류천(上柳川) - 5리이다. -, 20당은 고집리(庫執里) - 5리이다. -, 21당은 배양동(培養洞) - 5리이다. -, 22당은 재실의 작문 - 5리이다. ○ 이상 4당은 수가하는 별대 마병(別隊馬兵)으로 거행하였다. - 으로 정하였다.

매 1당마다 마병 3명을 배정하되 금불암은 인가가 없기 때문에 마병 1명과 화병(火兵) 1명을 더 배정하고 경기 감영에서 임시 건물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정식을 삼았다.

○ 금년에는 훈련도감이 유진하기 때문에 궐문에서 재실의 작문까지 모두 훈련도감에서 거행하고, 도로를 다시 배정한 뒤에는 봉천리의 1당은 거론하지 않고 도합 21당으로 정하였다.

강 命自闕門外至齋室作門排立塘馬

목 自闕門外至齋室作門合二十二塘一塘闕門外二塘鍾閣三塘南大門四塘石隅五塘蔓川六塘露梁行宮以上六塘每以留陣營擧行七塘金佛庵 露梁行官五里八塘奉天里 五里九塘舍堂里 五里十塘南泰嶺 六里十一塘果川作門五里十二塘冷井 四里十三塘葛山 六里十四塘自棧洞 五里十五塘沙斤終站五里十六塘彌勒堂五里十七塘眞木亭 七里十八塘**華城作門**七里○以上十二塘別定馬兵十九塘上柳川 五里二十塘庫執里 五里二十一塘培養洞 五里二十二塘齋室作門五里○以上四塘隨駕別隊馬兵擧行每塘以馬兵三名排定而金佛庵則無人家故加定馬兵一名火兵一名自畿營造給假家以爲定式○今年則訓局留陣故自闕門至齋室作門皆自訓局擧行道路改定後奉天里一塘不爲擧論合二十一塘 <일성록, 정조17년(1793) 1월 11일(을사)>

화성/행궁

화성의 읍호를 정하고 어필 전액을 내려보내다

강 내각은 **화성(華城)** 행궁(行宮)의 어필 편액(御筆扁額)을 새겨서 **수원부**로 내려보내라고 명하였다.

목 ○ 이해 1월 13일에 현륭원(**顯隆園**)에 나아가 전알(展謁)하려고 할 때 하루 전날 **수원부**에서 유숙하면서, **수원부**를 유수부로 승격시키고, 행궁을 만들고, 유수를 두고, 읍호를 '**화성**(**華城**)'이라고 정하였다. 21일에 편액을 써서 **장남헌(壯南軒)**에 걸게 하되, 각신(閣臣)과 공조 참판 조윤형(曺允亨)에게 명하여 새기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이날 **수원부**로 내려보내 이달 29일에 게판(揭板)하게 하고, 인본(印本)은 병풍으로 꾸며서 원소(園所)의 재전(齋殿), 행궁의 외탕고(外帑庫), 내각에 보관하게 하였으며, 또 하나를 장첩(粧帖)하여

주합루(宙合樓)에 보관하게 하였다.

강 命內閣刻御筆**華城**行宮扁額下送于**水原府**止

목 是歲正月十三日將詣**顯隆園**展謁前一日宿次**水原府**治陞府爲行宮置留守號曰**華城**二十一日書扁揭于**壯南軒**命閣臣及工曹參判曺允亨監刻以是日下送于**水原府**以是月二十九日揭板印本粧屛藏于園所齋殿行宮外帑庫內閣又粧一帖藏于宙合樓

<일성록, 정조17년(1793) 2월 26일(기축)>

화성/행궁

화성의 작문(作門)까지 당마(塘馬)를 배립(排立)하라고 명하다

강 궐문(闕門) 밖에서 재실(齋室)의 작문(作門)까지 당마(塘馬)를 안배하여 세우라고 명하였다.

목 ○ 1당(塘)은 궐문 밖에, 2당은 종각(鍾閣)에, 3당은 남대문(南大門)에, 4당은 석우(石隅)에, 5당은 만천(蔓川)에, 6당은 노량(露梁) 행궁(行宮)에, - 이상은 어영청(御營廳)의 주마 기사(走馬騎士)를 1당마다 3인씩 안배하여 세운다. - 7당은 금불암(金佛巖)인데 - 마병(馬兵) 5명을 안배하여 세운다. - 노량 행궁에서 5리이고, 8당은 사당리(社堂里)인데 금불암에서 5리이고, 9당은 남태령(南泰嶺)인데 사당리에서 6리이고, 10당은 과천(果川)의 작문인데 남태령에서 5리이고, 11당은 냉정(冷井)인데 과천의 작문에서 4리이고, 12당은 갈산(葛山)인데 냉정에서 6리이고, 13당은 자잔동(自棧洞)인데 갈산에서 5리이고, 14당은 사근(沙斤)의 종참(終站)인데 자잔동에서 5리이고, 15당은 **미륵당(彌勒堂)**인데 사근의 종참에서 5리이고, 16당은 진목정(眞木亭)인데 미륵당에서 7리이고, 17당은 **화성(華城)**의 작문인데 진목정에서 7리이고, - 이상은 훈련도감의 별수가 마병(別隨駕馬兵)을 1당마다 3명씩 안배하여 세운다. - 18당은 상류천(上柳川)인데 **화성의 작문**에서 5리이고, 19당은 고집리(庫執里)인데 상류천에서 5리이고, 20당은 배양동(培養洞)인데 고집리에서 5리이고, 21당은 재실의 작문인데 배양동에서 5리 - 이상은 별대 마병(別隊馬兵)을 1당마다 3명씩 안배하여 세운다. - 이다.

강 命自闕門外至齋室作門排立塘馬

목 一塘闕門外二塘鍾閣三塘南大門四塘石隅五塘蔓川六塘露梁行宮以上御營廳走馬騎士每塘三人七塘金佛巖馬兵五名自露梁行宮五里八塘社堂里五里九塘南泰嶺六里十塘果川作門五里十一塘冷井四里十二塘葛山六里十三塘自棧洞五里十四塘沙斤終站五里十五塘彌勒堂五里十六塘眞木亭七里十七塘**華城作門**七里以上訓局別隨駕馬兵每塘三名十八塘上柳川五里十九塘庫執里五里二十塘培養洞五里二十一塘齋室作門五里以上別隊馬兵每塘三名

<일성록, 정조18년(1794) 1월 12일(경자)>

화성/행궁

은약헌(隱若軒)에서 각신들을 소견하다

강 **은약헌**에서 각신들을 소견하였다.

목 ○ 제학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이번에 비변사 낭청의 적간 가운데 각 군영의 군사로서 요패(腰牌)만 있고 장표(掌標)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 비변사 낭청이 모두 많이 입파한 것으로 논하였습니다. 그런데 군병들은 이미 요패가 있기 때문에 애당초 장표를 만들어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장표가 없다고 해서 붙잡는다면 많은 군병들이 누군들 장표가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상께서 이미 굽어 살피셔서 이와 같은 부류가 모두 용서를 받았

습니다만, 신의 생각에는 군병에게 장표를 지급하는 것은 실로 염려스럽습니다. 그들이 이미 요패가 있으면 많이 입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니, 장표를 사적으로 남에게 주어서 몰래 거느리고 오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하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였다.

검교직각 윤행임(尹行任)이 아뢰기를, "일전에 주원(廚院 사옹원(司饔院))의 아전이 와서 보고 말하기를, '매번 원행할 때에 사기(砂器)를 가지고 각 참(站)에서 대령하는데 《원행정례》를 바로잡을 때에 누락되어 장표를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엄히 신칙하실 때에는 적간할 때에 쉽게 적발되어 붙잡힐 것이니, 추후라도 1개(箇)를 내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라간(水剌間) 소속에게 사기를 대령한 곡절을 물었더니, 2년에 한 번 진배(進排)하는데 오래된 사기는 본원의 하속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과천참(果川站)은 기명(器皿)이 비록 부족하지만 **수원(水原)**은 여유가 있으니, 이후로는 과천참에서만 대령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綱 召見諸閣臣于隱若軒

目 提學 鄭民始曰今番備郎摘奸中各營軍士之有腰牌而無掌標者皆以濫把論云軍兵旣有腰牌故初無掌標成給之規若以無掌標而捉之則許多軍兵孰非無掌標乎自上己爲俯燭如此之類皆蒙分揀而臣意則軍兵之給掌標實爲可慮渠輩旣知有腰牌之不歸濫把則安知不以掌標私自授人而潛爲率來乎予曰卿言是矣檢校直閣 尹行任曰日前廚院吏來見曰每於園幸時持砂器待令於各站而見漏於定例釐正時掌標不爲磨鍊如今番嚴飭之時易爲現捉於摘奸請追出一箇故問砂器待令之委折於水剌間所屬則間二年進排而舊件則分給於本園下屬云矣予曰果川站器皿雖不足**水原**則有餘此後使之只於果川站待令好矣

<일성록, 정조18년(1794) 1월 14일(임인)>

화성/행궁

화성의 의미를 밝히다

강 **은약헌(隱若軒)**에서 과차(科次)를 행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원소(園所 현륭원(**顯隆園**))가 있는 곳은 **화산(花山)**이고 이 **수원부는 유천(柳川)**이다. 화(華) 땅을 지키는 사람이 요(堯) 임금에게 축원한 뜻을 취하여 이 성의 이름을 **화성(華城)**이라고 하였는데 또 글자의 음이 화(華) 자와 화(花) 자는 통용된다. 화산의 뜻은 대체로 800개의 봉우리가 이 산 하나를 둘러싸 보호하는데 둥글게 둘러싼 형세가 마치 꽃잎과 같다고 하여 이렇게 이른 것이다. 그렇다면 **유천성(柳川城)**은 남북을 조금 길게 해서 버들잎 모양처럼 만들면 참으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성상께서 이렇게까지 하교하시니 신은 흠앙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강 行科次于隱若軒

목 (…) 予曰園所花山也此府柳川也取華人祝聖之意名此城曰**華城**且字音華與花通用也花山之義蓋以八百峯巒拱護一岡圓正如花辨之謂也然則柳川之城南北稍長如柳葉則實有意義矣**濟恭**曰聖敎至此臣不勝欽仰矣

<일성록, 정조18년(1794) 1월 14일(임인)>

화성/행궁

화성역소(華城役所)에 대해 논의하다

강 화성 역소(華城役所)의 도청(都廳) 인신(印信)은 예조에서 받아 가고 도청 이하 별감동(別監董)과 패장(牌將), 원역(員役) 등의 양미(糧米)는 공곡(公穀)으로 회감(會減)하며 본부의 판관 김노성(金魯成)을 책응 도청(策應都廳)에 차하(差下)하라고 명하였다.

목 ○ 감동 당상 조심태가 아뢰기를, "이번에 화성의 성터 공사를 시작한 뒤 도청을 그대로 역소에 머물게 해야 하는데 문첩(文牒)이 오갈 때 신빙성 있는 표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조의 인신 1과(顆)를 받아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도청 이하 별감동과 패장, 원역 등의 양미를 역소에서 마련하여 공급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일의 체모를 존중하는 방도로 볼 때에도 공곡으로 회감하여 지출하도록 하는 것이 진실로 체통에 맞기에 우러러 아룁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이번의 성역(城役)이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만큼 본부의 관원 중에 이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판관 김노성을 책응 도청에 차하하여 함께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華城役所都廳印信自禮曹受去都廳以下別監董及牌將員役等糧米以公穀會減本府判官 金魯成策應都廳差下

목 監董堂上趙心泰啓言華城城址今番始役後都廳當仍留役所而文牒去來之際不可無憑信之跡請禮曹 印信一顆受去從之又啓言都廳以下 別監董及牌將員役等糧米非但自役所措備供億之爲難其在尊事面之道以公穀會減上下亶合體段故仰達矣從之又啓言今此城役旣在本府則本府官員宜有主張之人請判官 金魯成策應都廳差下使之眼同擧行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1월 22일(경술)>

화성/행궁

수원유수가 화성 문루의 재목에 관해 장계하다

강 수원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가 화성(華城)의 문루(門樓)에 사용할 재목(材木)을 실은 충청 수영(忠淸水營)의 선박이 모두 도착하였다고 급히 장계한 데 대해,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나에게 보고하라고 명하였다.

목 ○ 장계에, "방금 별감동(別監董) 김처한(金處漢)이 급히 보고한 것을 보니, '목재를 실은 선박 30척이 지난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도착하여 이달 3일 조수 때에 모두 도착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수많은 선박이 아무런 폐단 없이 평온히 정박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근래에 선박으로 운송하는 일 때문에 늘 마음을 놓지 못하였는데, 목재를 싣고 수송하는 선박 30척이 서로 도와주기라도 한 것처럼 순조롭게 항해하여 평온히 정박했다고 하니, 매우 기쁘고 다행스럽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장계로 보고하라.'라는 내용으로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綱 水原留守 趙心泰以華城門樓材木忠淸水營所載船畢到馳啓命此後形止陸續登聞

目 狀啓以爲卽接別監董 金處漢馳報以爲載木船三十隻去二月初九日爲始次次來泊今月初三日汐水畢到泊云許多船隻之無弊穩泊誠極萬幸敎曰近以船運一念憧憧今聞三十隻載輸之利涉穩泊若有相助然何等喜幸此後形止陸續狀聞事回諭

<일성록, 정조18년(1794) 3월 4일(신묘)>

화성/행궁

수원 화성 문루 축조의 재목을 운송한 일에 대해 논의하다

강 전라 좌수사와 전라 우수사는 모두 승진시켜 서용(敍用)하고 재목을 선박으로 운반할 때 가장 수고한 영교(營校)는 상으로 한 자급(資級)을 올려 주고 선박의 군졸(軍卒)과 교리(校吏)는 해서(海西)의 예에 따라 거행하되 충청 수영(忠淸水營)이 선박으로 운반할 때의 교리에게도 함께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수원유수(水原留守) 조심태(趙心泰)의 장계에, "충청 수영에서 화성(華城)의 문루(門樓)에 사용할 재목을 실어 보낸 선박이 도착하여 정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에 계속 급히 장계하였습니다. 치목소(治木所)의 별감동(別監董) 최명건(崔命健)의 첩정(牒呈)을 받아보니, '안면도(安眠島)의 재목을 실은 선박이 이제 정박을 마쳤습니다. 전후로 운반한 재목이 원주(元株)는 1000개이고 말단(末端)은 421개입니다. 전라도의 좌수영과 우수영에 분정(分定)했던 괴목(槐木)과 잡목(雜木)을 실은 방선(防船)과 병선(兵船) 6척이 조(組)를 이루어 모두 도착하였는데, 좌수영은 20그루를 바쳤고 우수영은 30그루를 바쳤으며, 원래 분정한 수량보다 2그루를 더 바쳤습니다.' 하였습니다. 수많은 재목이 일제히 무사하게 정박하였으니 참으로 매우 다행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호남의 좌수영과 우수영에 분정한 재목이 일제히 순조롭게 정박하였다고 하니 매우 다행이다. 두 수신(帥臣)의 공무를 봉행한 정성이 참으로 가상하니, 모두 승진시켜 서용하라. 가장 수고한 영교에 대해서는 이름을 물어 상으로 한 자급을 올려 주라. 병선과 방선의 군졸과 교리에게는 해서의 예에 따라 거행하라고 묘당에서 수원부와 좌수영·우수영에 공문을 보내 알리게 하라. 호서에서 무사히 운송을 마친 것도 다행이다. 선박 한두 척을 조심해서 운항하지 못한 죄는 수신에게 있으나, 도맡아서 고생한 자들은 교리와 선박의 군졸이다. 가장 수고한 영교 한 명에 대해서는 상으로 한 자급을 더해 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서 거행하라고 함께 공문을 보내 알리라." 하였다.

綱 命全羅左右水使幷陞敍材木船運時首勞營校賞加船卒校吏依海西例擧行忠淸水營船運時校吏一體施行

目 水原留守 趙心泰狀啓以爲忠淸水營所載華城門樓材到泊形止前已陸續馳啓而卽接治木所別監董 崔命健牒呈則安眠材船今已畢泊前後材木元株爲一千箇末端爲四百二十一箇全羅道左右水營分定槐雜木所載防兵船六隻作艘幷到左水營則所納爲二十株右水營則所納爲三十株而元數外二株加納云許多材木之一齊穩泊誠甚欣幸敎曰湖南左右水營分定之一齊利泊極爲多幸兩帥奉公之誠可嘉幷陞敍首勞營校問名賞加兵防船卒及校吏依海西例擧行事令廟堂行會該府該閫湖西之無事畢運亦可幸也一二船隻之不謹駕海罪在帥臣偏若者校吏船卒也首勞一校賞加其餘依他道例爲之事一體行會

<일성록, 정조18년(1794) 5월 8일(갑오)>

Ⅱ. 남양(南陽)

1. 정치(政治)

⑴ 왕실

정치/왕실

현륭원 행행과 관련하여 남양부의 예차 인원을 절목으로 아뢰다.

강 비국이 현륭원의 향관에게 말과 노자를 주는 것에 대한 절목(節目)으로 아뢰었다.

목 ○ 절목은 다음과 같다.

현륭원에 제향을 올릴 때의 헌관과 대축에게 말과 노자를 주는 것, 봉상시의 하속에게 노자를 주는 것에 대해 참작하여 마련하였다.

1. 헌관과 전사관 겸 대축에게는 각각 기마(騎馬)와 복마(卜馬) 각 1필(匹)씩을 준다.

1. 헌관에게는 대신(大臣)이나 정1품의 종친(宗親)·의빈(儀賓)으로 나아가게 할 때면 노자로 매일 2냥을 주고, 종1품 이하의 헌관과 전사관 겸 대축에게는 매일 1냥을 주되, 각각 맡고 있는 아문(衙門)에서 마련하여 준다. 그러나 여러 관사의 직임을 겸대하고 있더라도 중첩해서 지불하지 못하며, 전곡(錢穀)이 없는 아문을 맡고 있을 경우에는 선혜청에서 내주고, 각사가 접대하는 것은 특별히 금칙한다.

1. 제물을 가지고 가는 봉상시의 고지기(庫直)와 숙수(熟手)에게는 노자를 1명당 매일 각각 3전(錢)씩 주되, 선혜청에서 본사(本司)가 성책(成冊)하기를 기다려서 마련하여 내준다.

1. 헌관과 전사관 겸 대축이 데리고 가는 하례(下隷)는 하나같이 정례에 따라 명수(名數)를 참작하여 정하고 노자는 1명당 매일 각 3전씩 주되, 각각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아문에서 내준다. 전곡이 없는 아문일 경우에는 또한 선혜청에서 각사가 성책하기를 기다려 마련하여 내준다.

1. 역인(驛人)과 역마(驛馬)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나가는 각 읍에서 규례대로 공궤(供饋)한다.

1. 향배 서리(香陪書吏)는 호조와 병조의 서리로 돌아가며 차정(差定)하고 노자는 매일 3전씩 주되, 각각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본사에서 마련하여 내준다.

1. 집사(執事) 2원과 예차(預差) 1원은 **남양(南陽)**·인천(仁川)·안산(安山)·진위(振威)·용인(龍仁)·양성(陽城)·과천(果川)·양지(陽智)·금천(衿川) 등 9읍의 수령으로 본도에서 돌아가며 차정한 뒤에 계문(啓聞)하고, 지방관이 만일 경재(卿宰)가 아닐 경우에는 원래 차정한 예차를 대령하게 한다.

1. 헌관과 전사관 겸 대축에게는 노자를 주도록 하였으므로 원소(園所)에서 접대하는 절차를 모두 없애고, 그들이 데리고 가는 하속들에게도 노자를 주도록 하였으므로 종전에 찬물(饌物)을 지급했던 전례도 없앤다. 이와 같이 정식을 삼은 뒤에도 원소의 하속에게 돈이나 접대 등을 요구하는 일이 있으면, 헌관 이하를 엄하게 논감(論勘)한다.

○ 전교하기를,

"이 절목을 각 해사(該司)와 본읍에 통지하여 각각 이 정식에 따라 거행하게 하되, 제향을 올릴 때 지방관은 집사관(執事官)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모두 하루 전에 나아가 반열에 참가하여 모든 일을 살피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 備局以**顯隆園**享官給馬盤纏節目啓

목 節目 **顯隆園**祭享時獻官 大祝給馬盤纏及奉常寺下屬盤纏酌量磨鍊一獻官 典祀官兼大祝各給騎卜馬各一匹一獻官以大臣及正一品宗親儀賓進去時盤纏每日二兩從一品以下獻官及典祀官兼大祝每日一兩各以所帶衙門磨鍊以給雖兼數司毋得疊下無錢穀衙門自惠廳出給各司支供另加禁飭一奉常寺祭物載去庫直熟手盤纏每名每日各三錢自惠廳待本司成册磨鍊出給一獻官 典祀官兼大祝所帶下隷一依定例名數酌定而盤纏每名每日各三錢自各其衙門出給無錢穀衙門亦自惠廳待各司成册磨鍊出給一驛人馬自所經各邑依例供饋一香陪書吏以戶兵曹書吏輪回差定而盤纏每日三錢自各其本司磨鍊出給一執事二員及預差一員以**南陽** 仁川 安山 振威 龍仁 陽城 果川 陽智 衿川九邑守令自本道輪回差定後啓聞地方官如非卿宰則以元定預差待令一獻官 典祀官兼大祝旣有盤纏自園所支供之節一併除減所帶下屬亦給盤纏從前支給饌物之例亦爲除減如是定式之後或有侵責園屬之事獻官 以下從重諭勘敎以以此節目知委各該司及本邑俾各依此定式擧行而祭享時地方官雖非執事官必皆前一日進去參班看檢諸事事分付

<일성록, 정조14년(1790) 5월 17일(정유)>

정치/왕실

현륭원의 향관으로 남양 등 수령이 교대로 차임되다

강 현륭원(**顯隆園**) 향관(享官)을 **남양(南陽)** 등 4개 고을 수령으로 번갈아가며 채워 차임하는 것으로 정식(定式)을 삼았다.

목 ○ 경기 감사 김희(金憙)가 현륭원의 동지 향관을 차정(差定)하는 것에 관하여 아뢴 데 대해, 전교하기를, "마땅히 인근 고을 수령으로 돌아가며 차정해야 하겠지만 근 100리의 지역으로 나누어 배정하는 것이 어찌 정식의 본뜻이겠는가. 이 장계를 도로 내려보내고 이후로는 **남양**·안산(安山)·진위(振威)·용인(龍仁)으로 돌아가며 차정하라. 예차(預差)는 수령으로 채워 차임하지 말아서 고을을 비우는 폐단을 초래하지 않게 하라. 본부의 중군(中軍)은 지금 사대부와 무관의 이력(履歷)의 계제가 되니, 원래 정하여 둔 예차 중군에게 혹시 실제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해당 부사로 하여금 장계를 올려 변통하여 후임을 차출해 줄 것을 청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 **顯隆園**享官以**南陽**等四邑守令輪回塡差著爲式

목 京畿監司 金憙以**顯隆園**冬至享官差定啓敎曰當以附近邑守令輪回差定而以近百里地分排是豈定式之本意乎此狀啓還下送此後以**南陽** 安山 振威 龍仁輪回差定預差則勿以守令塡差以致曠官之弊本府中軍今爲士夫武弁履歷堦爲元定預差中軍或有實故之時令該府使狀請變通差代事分付

<일성록, 정조14년(1790) 11월 12일(무자)>

⑵ 행정

정치/행정

남양부사가 입시하다

강 남양부사(南陽府使)가 입시하였는데, 내가 시좌하였다.

목 없음

강 南陽府使入侍余侍坐

목 없음

<일성록, 영조51년(1775) 10월 21일(을미)>

정치/행정

이응혁(李應爀)을 남양부사로 삼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서명선이 나왔다.

목 ○ 이계(李溎)를 형조 판서로, 이의철(李宜哲)을 홍문관 제학 으로, 정광한(鄭光漢)을 동지경연사 로, 이최원(李最源)을 조경묘 참봉(肇慶廟參奉) 으로, 서유신(徐有臣)을 충청 감사 로, 권륜(權綸)을 인동 부사(仁同府使) 로, 이상운(李商運)을 익릉 참봉(翼陵參奉) 으로, 조영(趙嶸)을 위원 군수(渭原郡守) 로, 한용화(韓用和)를 강서 현령(江西縣令) 으로, 윤광(尹珖)을 구성 부사(龜城府使) 로, 이응혁(李應爀)을 **남양부사(南陽府使)** 로, 구세적(具世勣)을 장연 현감(長淵縣監) 으로, 신치권(申致權)을 낙안 군수(樂安郡守) 로 삼았다.

강 有政 吏曹判書 徐命善進

목 以李溎爲刑曹判書 李宜喆爲弘文提學 鄭光漢爲同經筵 李最源爲肇慶廟參奉 徐有臣爲忠淸監司 權綸爲仁同府使 李商運爲翼陵參奉 趙嶸爲渭原郡守 韓用和爲江西縣令 尹珖爲龜城府使 李應爀爲南陽府使 具世勣爲長淵縣監申 致權爲樂安郡守

<일성록, 영조52년(1776) 5월 11일(계미)>

정치/행정

이조가 남양부사의 고과를 아뢰다

강 이조가 경외(京外)의 전최(殿最)에 대해 낮추어 고과(考課)한 것을 아뢰었다.

목 ○ 해조(該曹)가 아뢰기를, "오늘 본조의 개탁을 위한 좌기에서 경외의 포폄 계본을 상고해 보았는데,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응혁(李應爀)**에 대해서는 '어찌 자잘한 비방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로 평가하였으니, 의당 중고(中考)를 주어야 하는데 상고(上考)를 주어 성상께서 수고로이 점을 찍어 내리시게 하였습니다. 천안 군수(天安郡守) 윤기동(尹耆東)에 대해서는 '개혁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로 평가하였고, 전주 판관(全州判官) 이태원(李太源)에 대해서는 '비록 분명한 점은 부족하나'로 평가하였고, 고성 현령(固城縣令) 홍병성(洪秉聖)에 대해서는 '어찌 시작할 때 신중하지 못하였단 말입니까. 결과가 좋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로 평가하였고, 성현 찰방(省峴察訪) 이언우(李彦祐)에 대해서는 '보고하는 내용이 체모를 손상하였습니다.'로 평가하였고, 선공감 감역관 이현모(李顯模)에 대해서는 '어찌하여 고용된 장정(壯丁)을 살피지 않았단 말입니까.'로 평가하였고, 선공감 부봉사 김한눌(金漢訥)에 대해서는 '고용된 장정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로 평가하였고, 현릉 참봉(顯陵參奉) 윤광재(尹光梓)에 대해서는 '작은 비방은 의당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로 평가하였으니, 모두 의당 하고(下考)를 주어야 하는데 중고를 주어 성상께서

수고로이 점을 찍어 내리시게 하였습니다. 각도의 도신과 해조 당상에 대해서는 정원에서 이미 조사하여 추고하였으니 지금 논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남양부사** 이응혁에 대해서는 중고를 시행하고, 천안 군수 윤기동, 전주 판관 이태원, 고성 현령 홍병성, 성현 찰방 이언우, 선공감 감역관 이현모, 선공감 부봉사 김한눌, 현릉 참봉 윤광재에 대해서는 모두 정식에 의거하여 하고를 시행하소서." 하여, 윤허하였다.

강 吏曹以京外殿最降孝啓

목 該曹啓言今日本曹開坼坐起考見京外褒貶啓本則**南陽府使** 李應嫮以豈信瑣謗爲日則宜寘中考而寘諸上考致勤點下天安郡守 尹耆東以勉在東薪爲日全州判官 李太源以雖欠端的爲目固城縣令洪秉聖以何不謹始宜勉善後爲目省峴察訪 李彦祐以報辭損體爲目繕工監役 李顯模以盍察雇丁爲目繕工副奉事 金漢訥役以雇丁不檢爲目顯陵參奉 尹光梓以微謗宜警爲目則竝宜寘下考而眞諸中考致勤點下各道道臣該曹堂上政院旣已察推今無可論**南陽府使** 李應嫮中考施行天安郡守 尹耆東全州判官 李太源 固城縣令 洪秉聖 省峴察訪 李彦祐 繕工監役 李顯橫 繕工副奉事金漢訥顯陵參奉 尹光梓竝依定式請下考施行允之

<일성록, 영조52년(1776) 12월 24일(신유)>

정치/행정

윤면구(尹勉矩)를 남양부사로 삼다

강 도목정사에 대해 하비(下批)하였다. 이조 판서 이휘지(李徽之), 참판 권도(權道), 병조 판서 홍낙성(洪樂性), 참판 이재간(李在簡), 참의 이의익(李義翊)이 나왔다.

목 (…) 윤면구(尹勉矩)를 **남양부사(南陽府使)**로 (…)

강 (…) 尹勉矩爲**南陽府使** (…)

<일성록, 영조52년(1776) 12월 29일(병인)>

정치/행정

경기감사가 남양부사의 전최(殿最)를 개탁하다

강 제도(諸道)의 전최(殿最)를 개탁(開坼)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조시준(趙時俊)의 계본에, **남양부사(南陽府使) 윤면구(尹勉矩)**에 대해서는 다스림이 어찌 옛날보다 못하겠는가마는 비방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고, 마전 군수(麻田郡守) 김경택(金景澤)에 대해서는 백성을 부지런히 진휼하였으나 의당 나누어 준 환곡에 대해 살펴야 한다고 하고, 양천 현령(陽川縣令) 안종인(安宗仁)에 대해서는 명성은 진실로 그대로지만 병이 간혹 정사를 하는 데 방해되는 점이 있다고 하고, 진위 현령(振威縣令) 김사혼(金思渾)에 대해서는 문사(文士)의 본색은 있으나 관리의 재간은 끝내 소루하다고 하고, 중림 찰방(重林察訪) 신한빈(申漢彬)에 대해서는 병으로 직임을 행하기 어렵다고 하여 모두 중(中)을 주었으며, 양지 현감(陽智縣監) 이경극(李敬克)에 대해서는 시골의 간사한 무리는 비록 제거하였지만 아전 들의 횡포가 또한 근심된다고 하여 하(下)를 주었다.

강 開坼諸道殿最

목 京畿監司 趙時俊啓本**南陽府使** 尹勉矩治何損昔謗必有因麻田郡守 金景澤匪解求蒭宜察分糶陽川縣令 安宗仁譽固自如病或有妨振威縣令 金思渾文士本色吏幹終疏重林察訪 申漢彬病難供職竝中陽智縣監 李敬克鄕奸雖祛吏橫亦悶下忠淸監司 徐有隣啓本忠州牧使 尹得霖誠固著績飭乃求備扶餘縣監 李素愛民旣切恤鄰是勖永春縣監 李匡說恤隱斯摯稽報宜略保寧縣監 鄭弘德允矣敏▣勉之在嚴竝中黃海監司 李性源啓本遂安郡守 鄭潤弼志則勤勵政或柔善松禾縣監 任靖周豈不恬謹

浸多迂闊竝中 任靖周點下 靑丹察訪 權啓述昏不事事下江原監司 金履素啓本高城郡守 尹得弘旣勤邑事奚忽隣糴杆城郡守 洪啓瑞爲治雖鍊失囚宜警楊口縣監 尹寅國職雖無闕報或疏忽竝中全羅監司 李普行啓本南原府使 宋載德譽聞素著謹約可勉井邑縣監 金顯材政自無瑕報或損體茂長縣監 申昕旣能勤孜宜加審愼務安縣監 南紀雲大體固好小疵宜略和順縣監 李顯紀惠能撫摩勉在振刷海南縣監 李恒林數遞流弊浮謗奚信葵樹察訪 辛普謙姑無顯疵碧沙察訪 申濟立馬宜愼竝中慶尙監司 李▣祥啓本晉州牧使 鄭致儉治自鍊熟杖或過重固城縣令 沈鏶敗局初當多謗宜恕靈山縣監 成德雨吏奸未鋤新到之故金泉察訪 申大尹郵屬宜察竝中昌原府使 吳載重事或顚遽非直生疏軍威縣監 金載仁客何干政民實受害機張縣監 李尙蕃引滿妨務傍政招謗自如察訪 朴東俊事有難恕竝下平安監司 徐命膺啓本博川郡守 李尙顯醇弊也弛橘酸鮒骨寧遠郡守 李延弼勤勵麤疏長短不掩竝中宣川府使 李徽遠一懦難醫郡猾舞智下咸鏡監司 趙重晦 啓本會寧府使 鄭與曾雖曰老鍊奈多昏錯茂山府使 李煜大體固善倉奸宜察洪原縣監 李仁鎭治固勤勵事或要衒輸城察訪 康堯愼馬政或疏竝中端川府使 李鎭璧還賑多錯柔闇之故下

<일성록, 정조1년(1777) 6월 15일(기유)>

정치/행정

유인철(柳仁喆)을 남양부사로 삼다

강 도목정사(都目政事)를 하비(下批)하였다. 이조 판서 이중호(李重祜), 참판 권도(權禱), 병조 판서 이휘지(李徽之), 참판 서호수(徐浩修), 참의 정술조(鄭述祚)가 나왔다.

목 (…) 유인철(柳仁喆)을 **남양부사(南陽府使)**로(…)

강 (…) 柳仁喆爲**南陽府使** (…)

<일성록, 정조1년(1777) 7월 2일(을축)>

정치/행정

남양부사를 소견하다

강 수령(守令), 변장(邊將), 찰방(察訪), 초사인(初仕人), 복직(復職)한 사람들을 흥정당(興政堂)에서 소견하였다.

목 (…) **남양부사(南陽府使) 유인철(柳仁喆)**이 앞으로 나왔다. 내가 이르기를,

"**남양**이 잇달아 흉년을 당하여 고을의 폐해와 백성들의 고통을 구제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하니, 내려가서 잘 다스려 조정에서 위임한 뜻에 부응하라." 하였다. (…)

강 召見守令邊將察訪初仕復職人于興政堂

목 (…) **南陽府使** 柳仁喆進前予曰**南陽**連値凶荒邑弊民瘼難以救濟云下去善爲以副朝家委卑之意(…)

<일성록, 정조1년(1777) 7월 3일(병인)>

정치/행정

남주로(南柱老)를 남양부사로 삼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홍낙순(洪樂純)이 나왔다.

목 ○ 심발(沈壡)을 공조 참판 으로, 이병모(李秉模)를 호조 참판 으로, 박천준(朴天俊)을 명릉 참봉(明陵參奉) 으로, 윤인철(尹寅喆)을 장릉 참봉(莊陵參奉) 으로, 이제원(李悌源)을 희릉 참봉(禧陵參奉) 으로, 정동유(鄭東愈)를 동몽교관(童蒙敎官) 으로, - 박천준 이하는 모두 초사(初仕)이다. -남주로(南柱老)를 **남양부사(南陽府使)** 로 삼았다.

강 有政 吏曹判書 洪樂純進

목 以沈壎爲工曹參判 李秉模爲戶曹參判 朴天俊爲明陵參奉 尹寅喆爲莊陵參奉 李悌源爲禧陵參奉 鄭東愈爲童蒙敎官 天俊以下竝初仕也 南柱老爲南陽府使

<일성록, 정조2년(1778) 11월 1일(정해)>

정치/행정

경기감사가 남양부사를 전최(殿最)하다

강 각 도의 전최(殿最)를 개탁(開坼)하였다.

목 ○ 하교하기를, "이방 승지와 병방 승지는 포폄 계본을 가지고 입시하라." 하였다.

○ 경기 감사 정창성(鄭昌聖)의 계본에, "용인 현령(龍仁縣令) 유익성(柳翼星)은 어찌 깊이 주벌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속히 물러나게만 하면 됩니다. 하(下)입니다. 인천 부사(仁川府使) 김근행(金謹行)은 정사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추쇄(推刷)를 보고하는 것이 어찌 진실되지 못하며, 죽산 부사(竹山府使) 유춘빈(柳春馝)은 진휼에는 실로 칭찬이 많으나 정사는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적으며, 남양부사(南陽府使) 남주로(南柱老)는 관아에서 하속(下屬)들을 단속하지 못하니 백성들이 어찌 비방을 그치겠습니까. 가평 군수(加平郡守) 박진수(朴晉壽)는 조세 감면의 은혜를 베푼 것은 가상하지만 강직함에 힘을 써야 하며, 마전 군수(麻田郡守) 이구영(李耉永)은 통치의 규정은 대략 정했으면서 환곡에 관한 정사는 어찌 신칙하지 않으며, 양근 군수(楊根郡守) 김재화(金載華)는 마음은 비록 백성을 위하지만 일에 더러 헤아림이 부족합니다. 양천 현령(陽川縣令) 김이용(金履容)은 잘 다스린다는 소리는 익히 들었지만 몰래 자리를 비우는 것은 경계했으면 하며, 양성 현감(陽城縣監) 홍복호(洪復浩)는 형벌을 쓰는 것은 경계시켜야 하나 다스림은 정성을 다하며, 양재 찰방(良才察訪) 조경원(趙慶遠)은 마정(馬政)을 신칙해야 합니다. 이상은 모두 중(中)입니다." 하였다.

(…)

강 開坼各道殿最

목 敎曰吏兵房承旨特褒貶啓本入侍○京畿監司 鄭昌聖啓本龍仁縣令 柳翼星何足深誅只宜速去下仁川府使 金謹行爲政斯可報推盍實竹山府使 柳春馝賑固多譽政或鮮終南陽府使 南柱老衙不戢屬民何弭謗加平郡守 朴晋壽蠲惠可尙剛克是勉麻田郡守 李耉永治規粗定還政盍飭楊根郡守 金載華心雖爲民事或欠商陽川縣令 金履容治聲稔聞潛曠欲警陽城縣監 洪復浩刑宜示警治則盡誠良才察訪 趙慶遠馬政宜飭幷中洪忠監司 李命植啓本天安郡守 李成玉治理或偏綜詳有譽文義縣監 李宜耆報沒要領治欲殫竭恩津縣監 申韺錯是由隣譽自隘境連山縣監 朴宗厚實績愈著久曠何執懷仁縣監 宋瑋明何不動忍可觀初政永同縣監 尹昌柱民誣何卞賑政居最幷中黃海監司 徐有寧啓本康翊縣監 李宗魯可尙勤苦勉在威率中江原監司 李亨逵啓本平陵察訪 金應麟終露本色下銀溪察訪 鄭衡臣引嫌太過中全羅監司 鄭一祥啓本寶城郡守 閔養洙雖乏善狀亦無大過古阜郡守趙武範釐弊難期引義無怪樂安郡守 金致五旣當敗局宜愼誤著珍山郡守 沈逵政固有才檢或不審萬頃縣令 李柱延宜體前警以圖後效金溝縣令 尹翊烈政有氣力勉在詳穩光陽縣監 鄭駿來威能束薪禁胡弛松龍安縣監權尙禧恤飢稱惠捧罹致謗玉果縣監 洪允喆初手雖生誠意可尙興德縣監 白光澤屢最奚恃浮謗宜恤井邑縣監 鄭喆淳治自不苟病或有妨高敞縣監 趙貞相宜勉奉職毋負疏滯求禮縣監 朴明煥亦足治民倘能戢鄕長水縣監 金載七所貴疏拙終欠振刷鎭安 縣監 李觀城本自醇謹盍勉剛果興陽縣監 申禹相政多可稱稅臭厥載海南縣監 李恒林事或做錯坐不識丁靑巖察訪 白宗赫馬政宜飭碧沙察訪 吳彦儁瑣誚姑略幷中慶尙監司 李在簡啓本固城郡守 辛錫範濫杖諱檢一何顚錯宜寧縣監 李彦光過於柔善吏喜民咨眞寶縣監 李齊鵬直是天眞奈非吏才漆原縣監 宋興錫引滿爲病謗言多聞幷下永川郡守

金道淳恬雅可尙剖決或滯榮川郡守 金載岳賑譽已多剛克宜勉彦陽縣監 朴長濾所貴安詳差欠振刷軍威縣監 兪漢炅 過而能改事有可恕靈山縣監 宋準明新譽方聞少柔何傷昌寧縣監 兪漢寧賑績固優査牒或疏安義縣監 李復永賙飢頗勤辦穀稍擾長水察訪 慶明運擅離宜警召村察訪 沈謹之文報或稽幷中平安監司 金鍾秀啓本渭原郡守 金漢升治無善狀報何文餘江東縣令 具修溫政無統紀刑或妄濫幷下龜城府使 金光泰誠切蘇瘵才短馭悍中咸鏡監司 徐浩修啓本三水府使 洪雨輔旣勞於賑何疏於羅利城縣監 金宗煜差欠綜察所貴質實幷中
<일성록, 정조3년(1779) 6월 15일(정묘)>

정치/행정

이의로(李宜老)를 남양부사로 삼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참의 박우원(朴祐源)이 나왔다.

목 ○ 남현로(南玄老)를 대사성으로, 이의로(李宜老)를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유광익(柳光翼)을 음죽 현감(陰竹縣監)으로 삼았다.

강 有政 吏曹參議 朴祐源進

목 以南玄老爲大司成 李宜老爲**南陽府使** 柳光翼爲陰竹縣監
<일성록, 정조4년(1780) 3월 22일(신축)>

정치/행정

강유(姜游)를 남양부사로 삼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참의 이경양(李敬養), 병조 판서 홍낙성(洪樂性)이 나왔다.

목 ○ 송민재(宋民載)를 지평으로, 변득양(邊得讓)을 홍주 목사(洪州牧使)로, **강유(姜游)를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심위진(沈威鎭)을 대흥 군수(大興郡守)로, 이양채(李養采)를 괴산 군수(槐山郡守)로, 이진(李璡)을 청양 현감(靑陽縣監)으로 삼았다. (…)

강 有政 吏曹參議 李敬養 兵曹判書 洪樂性進

목 以宋民載爲持平 邊得讓爲洪州牧使 姜游爲**南陽府使** 沈威鎭爲大興郡守 李養采爲槐山郡守 李璡爲靑陽縣監 (…)
<일성록, 정조5년(1781) 2월 29일(임신)>

정치/행정

남양부사의 상소에 비답을 내리다

강 **남양부사(南陽府使) 강유(姜游)**가 상소하여 본부의 지형(地形)을 진달하고 이어 축성(築城)할 것을 청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목 ○ 상소의 대략에, "신이 본부를 맡고 있는 중에 조적(糶糴)의 일이나 전정(田政)으로 인하여 경내(境內)를 두루 다녀보았습니다. 대체로 지형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어 해안 방어의 요충지인데 하나의 관방도 설치한 것이 없으니, 신이 실로 이를 애석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강도(江都)가 이미 있으니 이제 보장(保障)을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이는 지리(地利)와 관계되는 것이니 또한 성명(聖明)께서 재량하여 선택하는 데 달려 있을 뿐입니다.

본부의 읍기(邑基)는 두 산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만약 읍기에 축성하여 가로로 끊는다면 이는 수비할 만한 요해지(要害地)가 될 것입니다. 만약 현재 상황이 어렵고 공사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어렵게 여기신다면 신은 토성(土城)으로 쌓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니, 토성

의 견고함은 주먹돌을 포개어 쌓은 성보다 도리어 낫기 때문입니다. 만약 토성의 위에 또 여첩(女堞)을 설치하고 사이에 치성(雉城)을 두어 외적(外賊)이 성(城)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살피도록 한다면, 방수(防守)하는 방도에 있어서 석성(石城)과 토성은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공사 비용으로 말하면, 본부의 환곡이 수만여 곡(斛)이나 되어 그 수가 많다 보니 모곡(耗穀)이 모곡을 낳아 도리어 백성들의 폐해가 되고 있으므로, 만약 이 수효를 덜어서 일처리를 잘하는 신하에게 맡겨 알맞게 헤아려 사용하게 한다면 경조(京曹)가 번거롭게 책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이 이 땅을 지키고 있으니, 또한 녹봉을 덜고 재물을 모으면 공장(工匠)의 한 달 치 양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서생(書生)이니 어찌 감히 군대의 일에 대해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감히 상소를 갖추고 본부의 지도까지 덧붙여 올립니다. 삼가 바라건대 묘당에 하문하시어 재결해 주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그대가 진달한 것을 가지고 지도를 살피며 비교해 보았으나 형편을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렵다. 원소(原疏)를 지도와 함께 묘당에 내려 여러 장신과 함께 충분히 상의한 뒤 한 가지로 결정하여 복계(覆啓)하게 함으로써 참작하여 재결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강 **南陽府使** 姜游疏陳本府地形仍請築城賜批

목 疏略曰臣待罪本府或因糶事或因田政周行疆內大抵地形三面環海乃海防之要衝而無一關防之設置者臣實惜之然旣有江都則今不必保障之疊設而此係地利則亦惟在聖明之裁擇矣至若本府邑基介在兩山之間若築城於邑基而橫截則此爲要害可守之地也若以時絀力鉅難之則臣以爲土城亦自不妨蓋土城之完還勝於拳石之相累若於土城之上又設女堞而間置雉城以瞰外賊之傅城者則防守之道石與土無間矣至於工費本府還穀爲數萬餘斛其數旣多耗上生耗反爲民弊若捐此數而付之幹事之臣使之量宜用之則當不煩京曹之策應臣旣守土亦當捐廩鳩財可以辦工匠一月之糧矣臣書生也何敢與議於軍旅之事而乃敢具疏幷附本府地圖而上之伏乞下詢廟堂而裁處焉批以將爾所陳按圖較看而形便有難遙度原疏幷地圖下廟堂與諸將臣爛商使之畫一覆啓以爲參量裁處之地

<일성록, 정조5년(1781) 12월 24일(임진)>

정치/행정

남양부사의 입시를 명하다

강 **남양부사**는 당일로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목 없음

강 命**南陽府使**當日入侍

목 없음

<일성록, 정조6년(1782) 8월 10일(갑술)>

정치/행정

남양부사를 개차하다

강 **남양부사(南陽府使)** 강유(姜游)를 개차(改差)하였다.

목 ○ 영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남양부사** 강유가 요사이 신병으로 아문(衙門)의 일을 폐하고 있을 때가 많다고 합니다. 지금 우선 개차하고, 해조로 하여금 각별히 가려서 차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改差**南陽府使** 姜游

목 領議政 徐命善啓言**南陽府使** 姜游近以身病多有廢衙時云今姑改差請令該曹各別揀差從之

<일성록, 정조6년(1782) 8월 10일(갑술)>

정치/행정

이동엽(李東燁)을 남양부사로 삼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이성원(李性源), 참판 정일상(鄭一祥)이 나왔다.

목 ○ 박천행(朴天行)을 부교리로, 정연순(鄭淵淳)을 수찬으로, 한광회(韓光會)를 판의금부사로, 홍낙명(洪樂命)을 예문관 제학으로, **이동엽(李東燁)을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강 有政 吏曹判書 李性源 參判 鄭一祥

목 以朴天行爲副校理 鄭淵淳爲修撰 韓光會爲判義禁 洪樂命爲藝文提學 李東燁爲**南陽府使**

<일성록, 정조6년(1782) 8월 10일(갑술)>

정치/행정

남양부사에게 내려 보낸 윤음을 가지고 하교하다

강 경기 감사 이형규(李亨逵)와 수원 부사(**水原府使**) 민종현(閔鍾顯) 등에게 하유하였다.

목 (…) 또 **남양부사(南陽府使) 이동엽(李東燁)**에게 내려보내는 윤음을 가지고 하교하기를, "'수령이 이 윤음을 수령하거든 곧이어 즉시 진본과 언본 두 본을 베껴 내서 방방곡곡에 선포하여 모든 백성들이 혹시라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만일 혹시라도 마음을 쓰지 않고 소홀히 함이 있으면 죄과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가 엄히 신칙하라. 본부는 흉년을 혹심하게 당하였으니 더욱 충분히 구휼해야 할 것이다.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백성들이 소문을 듣고 도로 모이게 하되, 절대로 다그쳐 단속해서 돌려보내지 말라. 아직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사는 곳에서 편히 지내도록 보존하고 고난을 면할 것을 기약하게 하라. 감사는 순찰하러 도착한 뒤에 특별히 직접 신칙하라.' 는 내용으로 경기 감사 이형규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

강 諭京畿監司 李亨逵 **水原府使** 閔鍾顯等處

목 (…) 又以**南陽府使** 李東燁處下送綸音敎曰守宰祇受此綸音仍卽謄出眞諺兩本宣布坊曲小大民人無或有不聞不知之弊苟或有泛忽難免罪過以此監司嚴飭本府酷被歉荒尤當十分賙救民之流亡者使之聞風還集切勿迫束刷還未離散者使之安堵保存期免顚連監司迫到後另加面飭事下諭于京畿監司 李亨逵處 (…)

<일성록, 정조6년(1782) 8월 12일(병자)>

정치/행정

새로 인쇄한 윤음을 남양부에 내려 보내다

강 새로 인쇄한 윤음을 경기 감사에게 보내어 반포하라고 명하였다.

목 ○ 하교하기를, "경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유하는 윤음을 새로 인쇄하였으니 경기 감영에 인본(印本) 2건과 사본(寫本) 1건을 유지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라. 광주부(廣州府)·수원부(**水原府**)는 각각 인본 6건, 사본 2건, 여주목(驪州牧)·파주목(坡州牧)·양주목(楊州牧)·부평부(富平府)·**남양부(南陽府)**·인천부(仁川府)·장단부(長湍府)·통진부(通津府)·안산군(安山郡)·안성군(安城郡)·고양군(高陽郡)·김포군(金浦郡)·교하군(交河郡)·용인현(龍仁縣)·진위현(振威縣)·양천현(陽川縣)·과천현(果川縣)·금천현(衿川縣)·이천현(利川縣)은 각각 인본 6건과 사본 1건, 죽산부(竹山府)·교동부(喬桐府)·가평군(加平郡)·삭녕군(朔寧郡)·마전군(麻田郡)·영평현(永平縣)·지평현(砥平縣)·포천현(抱川縣)·적성현

(積城縣)·연천현(漣川縣)·양성현(陽城縣)·양근현(楊根縣)·영종진(永宗鎭)은 각각 인본 6건을 나누어 보내되, 감사에게 함께 봉하여 보내서 그로 하여금 반포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新印綸音內閣史庫玉堂賜給
목 敎曰新印京畿綸音內閣二件外奎章閣一件五處史庫各一件政院 玉堂各一件賜給
<일성록, 정조6년(1782) 8월 12일(병자)>

정치/행정
남양부사 이동엽(李東燁)을 소견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약방 제조와 하직하는 수령을 소견하였다. 도제조 서명선(徐命善), 제조 서유린(徐有隣)이 입시하였다.
목 (…) 내가 수령은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하였다. 남양부사(南陽府使) 이동엽(李東燁)이 나와 엎드리자, 내가 이르기를, "본읍의 농사는 어떠하며, 이미 이앙한 곳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이동엽이 아뢰기를, "가뭄으로 인한 재해는 자못 혹독하지만 이미 이앙한 곳이 3분의 2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민정은 작년에 비하여 어떠한가?" 하니, 이동엽이 아뢰기를, "지나치게 소란스럽기는 하나 농사는 작년에 비하여 분명히 낫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조금 전 기백이 입시하였을 때에도 하교하였으나, 기우제는 경사(京師)에서 하는 것을 따라서 할 필요 없이 하나같이 본읍의 민정을 따라서 융통성 있게 거행하라."
하였다. (…)
강 召見藥房提調及下直守令于誠正閣 都提調 徐命善 副提學 徐有隣
목 (…) 予命守令進前南陽府使 李東燁進伏予曰本邑年事何如已移秧者爲幾何東燁曰旱災則頗酷而已移秧者爲三分二矣予曰民情比昨年何如東燁曰騷動雖過年事比昨年顯勝予曰俄者畿伯入待亦已下敎而祈雨祭不必視京師爲之一從本邑民情而進退可也 (…)
<일성록, 정조7년(1783) 6월 25일(을유)>

정치/행정
경기감사와 남양의 재해와 관리의 자질에 대해 논의하다
강 성정각에서 선혜청 당상 정민시(鄭民始)와 경기 감사 심이지(沈頤之)를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풍덕(豐德)과 통진(通津) 등의 읍은 우심(尤甚)한가?" 하니, 심이지가 아뢰기를, "풍덕과 통진은 본래 야답(野畓)이 많기 때문에 애초에 씨앗을 뿌리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남양(南陽)의 충재가 실로 걱정스럽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근일 동풍(東風)이 부니 또한 크게 해로울 것이다. 그러나 바람이 분 뒤에 비가 조금 내린다면 말라 상한 싹이 다소 소생할 텐데, 비가 내릴 기미도 없으니 매우 걱정스럽다." 하니, 심이지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기읍의 수재(守宰) 중에 누구의 치적(治積)이 현저한가?" 하니, 심이지가 아뢰기를, "신이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수재 중에 만일 걸맞지 않은 자가 있으면 조금도 용서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니, 심이지가 아뢰기를, "진실로 백성에게 해가 되는 자가 있으면 어찌 감히 용서하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남양부사(南陽府使)는 반드시 잘 다스릴 것이다." 하니, 심이지가 아뢰기

를, “숙련된 자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지난번에 차사원(差使員)으로 올라왔는데, 재읍(災邑)의 수령은 오래 고을을 비워 두어서는 안 되므로 즉시 내려보냈다.” 하였다. (…)

강 召見宣惠堂上鄭民始 京畿監司 沈頤之于誠正閣

목 (…) 予曰豐德 通津等邑爲尤甚乎頤之曰豐德 通津本多野畓故初不付種處多矣而南陽之蟲災實爲可悶予曰近日東風亦爲大害矣風餘小雨則枯傷之苗少可還蘇而亦無雨意甚可悶也頤之曰然矣予曰畿邑守宰中誰有治績顯著者乎頤之曰臣待罪日淺未能詳知矣予曰守宰中如有不稱者毋少饒貸頤之曰苟有爲害於民者何敢寬假乎予曰南陽府事必善治矣頤之曰熟習矣予曰頃以差使員上來而災邑守令不可久曠已卽下送矣 (…)

<일성록, 정조7년(1783) 8월 11일(경오)>

정치/행정

남양부사와 감목관에게 《자휼전칙》을 반사(頒賜)하다.

강 《자휼전칙》을 반사(頒賜)하였다.

목 (…) 경기는 감사(監司)에게는 장황한 백면지에 인쇄한 것 1건을, 도사(都事), 중군(中軍), 광주 부윤(廣州府尹), 양주 목사(楊州牧使), 파주 목사(坡州牧使), 여주 목사(驪州牧使), 수원 부사(水原府使), 부평 부사(富平府使), 남양부사(南陽府使), 인천 부사(仁川府使), 장단 부사(長湍府使), 죽산 부사(竹山府使), 풍덕 부사(豐德府使), 교동 부사(喬桐府使), 통진 부사(通津府使), 교하 군수(交河郡守), 양근 군수(楊根郡守), 안산 군수(安山郡守), 삭녕 군수(朔寧郡守), 안성 군수(安城郡守), 마전 군수(麻田郡守), 고양 군수(高陽郡守), 김포 군수(金浦郡守), 용인 현령(龍仁縣令), 진위 현령(振威縣令), 영평 현령(永平縣令), 양천 현령(陽川縣令), 지평 현감(砥平縣監), 포천 현감(抱川縣監), 적성 현감(積城縣監), 과천 현감(果川縣監), 금천 현감(衿川縣監), 연천 현감(漣川縣監), 음죽 현감(陰竹縣監), 양지 현감(陽智縣監), 양성 현감(陽城縣監), 이천 현감(利川縣監)에게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인쇄한 것 1건씩을, 연서 찰방(延曙察訪), 평구 찰방(平丘察訪), 중림 찰방(重林察訪), 경안 찰방(慶安察訪), 도원 찰방(桃源察訪), 영종 첨사(永宗僉使), 화량 첨사(花梁僉使), 덕포 첨사(德浦僉使), 주문 첨사(注文僉使), 월곶 첨사(月串僉使), 여현 첨사(礪峴僉使), 덕적 첨사(德積僉使), 초지 첨사(草芝僉使), 장봉 만호(長峰萬戶), 제물 만호(濟物萬戶), 인화보 만호(寅火堡萬戶), 용진 만호(龍津萬戶), 덕진 만호(德津萬戶), 남양 감목관(南陽監牧官), 수원 감목관(水原監牧官), 광주 중군(廣州中軍), 유영 별장(留營別將), 성기 별장(城機別將), 동림 별장(東林別將), 문수 별장(文殊別將), 장산 별장(長山別將), 임진 별장(臨津別將), 삼전 별장(三田別將), 양화 별장(楊花別將), 한강 별장(漢江別將), 노량 별장(露梁別將), 마월둔 별장(馬越屯別將), 전탄둔 별장(箭灘屯別將), 역대둔 별장(驛垈屯別將), 매마치둔 별장(每馬峙屯別將), 성산둔 별장(城山屯別將), 대동둔 별장(垈洞屯別將), 일소둔 별장(一所屯別將), 마촌둔 별장(馬村屯別將)에게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휴지에 인쇄한 것 1건씩을 사급하라. (…)

강 頒賜字恤典則

목 敎曰字恤典則頒賜件 (…) 京畿監司 白綿紙粧縹一件都事中軍廣州府尹 楊州牧使 坡州牧使 驪州牧使 水原府使 富平府使 南陽府使 仁川府使 長湍府使 竹山府使 豐德府使 喬桐府使 通津府使 交河郡守 陽根郡守 安山郡守 朔寧郡守 安城郡守 麻田郡守 高陽郡守 金浦郡守 龍仁縣令 振威縣令 永平縣令 陽川縣令 砥平縣監 抱川縣監 積城縣監 果川縣監 衿川縣監 漣川縣監 陰竹

縣監 陽智縣監 陽城縣監 利川縣監各不粧白綿紙一件延曙察訪 平丘察訪 重林察訪 慶安察訪 桃源察訪 永宗僉使 花梁僉使 德浦僉使 注文僉使 月串僉使 礪峴僉使 德積僉使 草芝僉使 長峰萬戶 濟物萬戶 寅火堡萬戶 龍津萬戶 德津萬戶 南陽監牧官 水原監牧官 廣州中軍 留營別將 城機別將 東林別將 文殊別將 長山別將 臨津別長 三田別將 楊花別將 漢江別將 露梁別將 馬越屯別將 箭灘屯別將 驛垈屯別將 每馬峙屯別將 城山屯別將 垈洞屯別將一所屯別將 馬村屯別將各不粧白休紙一件 (…)
<일성록, 정조7년(1783) 11월 12일(기해)>

정치/행정

이익순(李翼純)을 남양부사로 삼다

강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조 판서 이재간(李在簡)이 나왔다.

목 (…) ○ 김용겸(金用謙)을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使)로, 서유린(徐有隣)을 동지성균관사(同知城均館事)로, 이익순(李翼純)을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강 有政 吏曹判書 李在簡進

목 (…) ○以金用謙爲同敦寧 徐有隣爲同成均 李翼純爲南陽府使
<일성록, 정조8년(1784) 5월 1일(을묘)>

정치/행정

학성군(鶴城君)과 그 자손인 남양부사 이익순(李翼純)을 소견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학성군(鶴城君) 이유(李楡)를 소견(召見)하였다.

목 내가 이르기를, "궐내에 와서 대령하고 있는 학성군의 자손을 모두 입시하게 하라." 하였다. 부호군(副護軍) 이언희(李彦熙),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익순(李翼純), 충장장(忠壯將) 이철순(李喆純), 업무(業武) 이규순(李奎純), 업유(業儒) 이언항(李彦恒)·이언성(李彦性)이 차례로 성명을 아뢰었다. 내가 이언성에게 묻기를, "그대는 소원이 있는가?" 하니, 이언성이 아뢰기를, "총융청의 별군관(別軍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 내가 총융청이 차출하라고 명하였다.

강 召見鶴城君楡于重熙堂

목 予曰今日李廷熽家致祭時承旨亦爲進去乎承旨 徐龍輔曰申退後欲爲進參矣予謂鶴城君楡曰昨日賜宴傳敎卿見之乎楡曰感泣無以仰對矣予曰卿家自來不敷宴需何以辦備乎楡曰今方經紀矣予曰當入幾何云耶楡曰如有半千之財庶可容入矣予曰自內司當送五百金以助宴需也予曰鶴城君子孫來待人竝使入侍副護軍 李彦熙 南陽府使 李翼純 忠壯將 李喆純業武李奎純業儒李彦恒 李彦性以次奏姓名予問彦性曰汝有所願乎彦性曰願爲總戎廳 別軍官矣予命總廳差出
<일성록, 정조8년(1784) 9월 2일(갑인)>

정치/행정

흥양과 남양의 감목관을 서로 바꾸다

강 흥양(興陽)의 감목관(監牧官) 백성일(白成一)은 서로 자리를 바꾼 날부터 사진한 날수를 계산하라고 명하였다.

목 ○ 하교하기를, "흥양의 감목관 서이수(徐理修)와 남양(南陽)의 감목관 백성일은 서로 자리를 바꾸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이번에 의약(議藥)할 때 백문창(白文昌)은 공로가 많았다. 감목관 백성일은 좋은 지역으로 서로 자리를 바꾸게 하였으니, 서로 자리를 바

꾼 날부터 사진한 날수를 계산하라고 해시(該寺)에 분부하라." 하였다.
강 命興陽監牧官 白成一自相換日計仕
목 敎曰興陽監牧官 徐理修 **南陽監牧官** 白成一相換又敎曰今番議藥白文昌多有效勞監牧官白 成一善地旣令相換自相換日計仕事分付該寺
<일성록, 정조8년(1784) 10월 14일(병신)>

정치/행정

남양의 하리를 처분한 사례를 들어 칙사의 전례 문제를 논의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 나아가 초계 문신(抄啓文臣)의 응제(應製)를 행하고 이어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목 ○ (…) 내가 유사 당상(有司堂上)은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하였다. 정일상(鄭一祥)·서유린(徐有隣)·조시준(趙時俊)이 나아와 엎드렸다. 내가 이르기를, "지난번 칙사(勅使) 접대에 든 물자를 회감(會減)하는 일로 전교(傳敎)한 바가 있었다. 다시 생각건대 관서(關西)는 회외곡(會外穀)이 있다고 하니 절로 추이(推移)하여 채울 수 있겠고, 경기는 경청(京廳)에서 회감하면 또한 변통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해서(海西)는 회외곡 명색(名色)도 없고 경청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니 민읍(民邑)을 침해할 염려가 없을 수 있겠는가. 대저 이번 칙사의 행차는 전에 없던 나라의 경사에서 말미암은 것이므로 과연 신칙한 거조가 있었는데, 외읍(外邑)의 거행에 지나친 곳이 많았다. 게다가 해서의 경우는 들쑥날쑥 일정치 않다고 하므로 한번 정례(定例)를 만들지 않아서는 안 되겠기에 호판으로 하여금 좋은 쪽으로 바로잡게 하였다. 다만 정례가 나온 뒤에는 민읍에 유익함만 있고 원망은 없게 해야 제대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번에 제도(諸道)에 관문(關文)을 보내어 물었다고 하였는데, 성책(成冊)이 이미 올라왔는가?"

하니, 정일상이 아뢰기를,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사(京師) 건은 이미 가닥을 잡았는가?" 하니, 정일상이 아뢰기를, "아직 바로잡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지난번에 원접사(遠接使)의 말을 들으니, 기백(箕伯)이 '회외곡이 부족한 곳은 요역(徭役)을 견감(蠲減)해 주고서 받는 전(錢)과 흉년을 대비하는 태(太)를 가지고 채우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이는 조정에서 알 바 아니지만, 당초 설시(設施)한 것이 백성을 위하려는 목적에서 나왔고 8, 9년 동안 불린 이자도 모두 백성에게서 나왔는데 이제 칙사 접대에서 감색(監色)이 축낸 것을 백성의 물건에서 가져다 쓰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 연석(筵席)의 하교를 기백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 해서에 회외곡이 없으면 어떻게 구처(區處)할지의 여부를 상세히 물어보도록 하라."

하니, 서유린이 아뢰기를, "하교하신 대로 두 도신에게 상세히 통보하겠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지난번에 구응(具膺)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한 듯하다. 물가(物價)를 정하는 일은 완전히 정하였는가?" 하니, 정일상이 아뢰기를, "아직 완전히 정하지 못하였는데, 제읍(諸邑)의 성책(成冊)이 도착하기를 기다려서야 서로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차용(借用)하는 문제는 내 생각에 굳이 막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한때 차용하는 물건까지 다 만들어 두려면 수령은 필시 손쓸 길이 없을 것이다." 하니, 조시준이 아뢰기를, "만약 막지 않는다면 각 읍이 서로 추이(推移)할 때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번 **남양(南陽)** 하리(下吏)의 방석(方席)에 대한 일은 과연 경의 말과 같지만, 읍 안에서 추이하면 어찌 이러한 폐단이 있겠는가.” 하니, 서명선이 아뢰기를, “일체 막는다면 도리어 폐단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 읍 안에서 추이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추이하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 조시준이 아뢰기를, “민간에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듯하므로 제도(諸道)에서 이것을 막는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정례를 잘 만든다면 이후 칙사의 행차에서는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저 나라 사람들이 비록 전에 비하여 초실(稍實)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례를 내어 보여 주면 절로 말이 없게 될 것이다.” 하니, 서명선이 아뢰기를, “지금까지 정례가 없었던 것은 대단한 궐전(闕典)이니, 이 시점에서 만드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였다. (…)

강 御誠正閣行抄啓文臣應制仍行次對

목 (…) 予命有司堂上進前鄭一祥 徐有隣 趙時俊進伏予曰頃以勅需會減事有所傳敎而更思之關西則有會外云自可推移充給京畿則自京廳會減亦可以闊狹而海西則無會外名色又不關由於京廳得無侵及民邑之慮乎大抵今番勅行旣由於無前邦慶故果有提飭之擧而外邑擧行多有過濫處且聞海西則參差不齊云不可無一番定例故已令戶判從長釐正而定例出後使民邑有益無怨然後方可謂得體矣向來關問諸道云矣成冊已爲上來乎一祥曰未及上來矣予曰京師件已爲就緖否一祥曰姑未及釐正矣予曰頃聞遠接使言箕伯以爲會外不足處欲以蠲徭錢備荒太充給云予意則不然此非朝家之所知而當初設施旣出爲民八九年生殖皆出於民今爲支勅監色之無面取用民物事涉無謂以此筵敎使箕伯知之海西若無會外則如何區處與否詳問有隣曰當依下敎詳報於兩道臣矣予曰向來具膺未能禘聽矣物價定價一款已爲完定否一祥曰姑未及完定當待諸邑成冊之來到可以參互決定矣予曰借用一款予意則不必防塞矣一時借用之物盡爲造寘則守令必無措手之路矣時俊曰若不防塞則各邑互相推移之際似有生梗之慮矣予曰今番**南陽**下吏方席事果如卿言而自邑中推移則豈有此弊乎命善曰一切防塞則反有生弊之慮自邑中推移之物許其推移好矣時俊曰恐有貽弊民間之慮故諸道以此防塞矣予曰定例善爲之則此後勅行可以按而行之矣彼人雖或以比前稍實爲言出示定例則自當無辭矣命善曰至今無定例大是闕典及此爲之恐合事宜矣 (…)

<일성록, 정조9년(1785) 1월 10일(경신)>

정치/행정

정지환(鄭趾煥)을 남양부사로 삼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조시준(趙時俊), 참의 김우진(金宇鎭)이 나왔다.

목 ○ 이동욱(李東郁)을 집의로, 송전(宋銓)을 헌납으로, 서유련(徐有鍊)을 정언으로, 정만시(鄭萬始)·이석하(李錫夏)를 교리로, 신대승(申大升)을 병조 참판으로, **정지환(鄭趾煥)을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조윤대(曺允大)를 겸사서(兼司書)로 삼았다.

강 有政 吏曹判書 趙時俊 參議 金宇鎭進

목 以李東郁爲執義 宋銓爲獻納 徐有鍊爲正言 鄭萬始 李錫夏爲校理 申大升爲兵曹參判 鄭趾煥爲**南陽府使** 曺允大爲兼司書

<일성록, 정조9년(1785) 9월 26일(임신)>

정치/행정

남양부사를 파출하다

강 **남양부사(南陽府使)** 정지환(鄭趾煥)을 파출(罷黜)하였다.

목 ○ 정지환이 신병(身病)을 이유로 정장(呈狀)하여, 이조가 계청(啓請)하여 파출한 것이

다.

강 罷黜**南陽府使** 鄭趾煥

목 趾煥以身病呈狀吏曹啓請罷黜也

<일성록, 정조9년(1785) 10월 16일(임진)>

정치/행정

변지건(卞至健)을 남양부사로 삼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참의 심풍지(沈豐之)가 나왔다.

목 ○ 안성빈(安聖彬)을 대사간으로, 홍낙연(洪樂淵)을 장령으로, 변지건(卞至健)을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강 有政 吏曹參議 沈豊之進

목 以安聖彬爲大司諫 洪樂淵爲掌令 卞至健爲**南陽府使**

<일성록, 정조9년(1785) 10월 18일(갑오)>

정치/행정

남양부에 노인직을 하사하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참판 이병모(李秉模), 참의 조정진(趙鼎鎭)이 나왔다.

목 (…) ○ 한성부가 조관(朝官)으로 80세, 사서(士庶)로 90세인 사람의 성명 별단을 아뢴 데 대해, 하교하기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오늘 정사에서 하비하게 하라." 하였다. 또 내시 노인직(內侍老人職)의 성명 별단을 아뢴 데 대해, 하교하기를, "내시 노인직은 일찍이 전례가 있었는가? 해조가 조사해서 만약 전례가 있으면 하비하라고 이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남양부(南陽府)** - 전 군수 박재수(朴載洙), 자헌대부 홍계덕(洪啓德) 등 11인이다. (…) 모두 가자하라고 비하(批下)하였다.

강 有政 吏曹參判 李秉模 參議 趙鼎鎭進

목 (…) ○漢城府以朝官年八十士庶年九十人姓名別單啓敎曰令該曹今日政下批又以內侍老人姓名別單啓敎曰內侍老職曾有前例乎該曹相考前例如有之下批事分付吏曹 (…) **南陽府** 前郡守 朴載洙資憲洪啓德等十一人 (…) 竝加資批下

<일성록, 정조10년(1786) 2월 15일(기축)>

정치/행정

노인직에서 누락된 남양인 7인에게 구전으로 하비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을 소견(召見)하였다.

목 ○ 서유방이 아뢰기를, "각 고을의 응자 노인(應資老人) 가운데 광주(廣州)의 전 별장(別將) 강귀징(姜貴徵) 등 2인과 **남양(南陽)**의 첨지중추부사 이태주(李泰周) 등 7인, 포천(抱川)의 사족(士族) 심씨(沈氏), 이천(利川)의 첨지중추부사 김오남(金五男) 등 3인이 누락되었다고 추후에 보고가 왔습니다. 그들의 나이와 전함(前銜)을 상고해 보니 모두 끼어야 할 부류들인데, 까닭 없이 누락되면 혼자만 제외되었다는 탄식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감히 아룁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해조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하비(下批)하게 하라." 하였다.

강 召見京畿監司 徐有防于誠正閣

목 有防啓言各邑應資老人中廣州前別將 姜貴徵等二人**南陽** 僉知 李泰周等七人抱川士族沈氏利

川 僉知 金五男等三人謂以落漏追後報來考其年歲前銜具是應參之類而無故見漏不無向隅之歎故敢達矣敎以令該曹口傳下批
<일성록, 정조10년(1786) 4월 28일(신축)>

정치/행정

칙사 행차시 호행대장으로 남양부사를 임명하다

강 영접도감(迎接都監)이 칙사 행차 때 삼도(三道) 각무 차사원(各務差使員)의 별단(別單)으로 아뢰었다.

목 (…) 경기도의 각 차비 차사원

호행 대장은 **남양부사(南陽府使) 변지건(卞至健)**이고, 일로 도차사원은 풍덕 부사(豐德府使) 오재형(吳載衡)이고, 봉칙 차사원은 여현 첨사(礪峴僉使) 장서휘(張瑞翬)와 중림 찰방(重林察訪) 유대현(劉大鉉)이고, 배칙 차사원은 연천 현감(漣川縣監) 위광익(魏光翼)이고, 사물영래 차사원(賜物領來差使員)은 음죽 현감(陰竹縣監) 최재수(崔在修)이고, 영봉군뢰기수 차사원(迎逢軍牢旗手差使員)은 덕포 첨사(德浦僉使) 고달문(高達門)이고, 대강인부 연장배사물 대강복물 차사원(擡扛人夫緣裝陪賜物擡扛卜物差使員)은 연서 찰방(延曙察訪) 한성환(韓聖煥)이고, 내군물 군위군 차사원(內軍物軍威軍差使員)은 적성 현감(積城縣監) 이덕무(李德懋)이고, 기복마 차사원(騎卜馬差使員)은 도원 찰방(桃源察訪) 송규서(宋奎瑞)이고, 상칙 인마 보종나장 차사원(上勅人馬步從羅將差使員)은 평구 찰방(平丘察訪) 장세경(張世經)이고, 부칙 인마 보종나장 차사원(副勅人馬步從羅將差使員)은 양재 찰방(良才察訪) 홍하준(洪夏俊)이고, 임진과섭선창 차사원(臨津過涉船槍差使員)은 본진 별장(本津別將) 황도영(黃道永)이다. 도로 교량 차사원(道路橋梁差使員)은 각각 그 지역의 지방관인 양주 목사(楊州牧使) 윤행원(尹行元), 고양 군수(高陽郡守) 정동원(鄭東元), 파주 목사(坡州牧使) 홍인묵(洪仁默), 장단 부사(長湍府使) 이관현(李觀賢)이다. (…)

강 迎接都監以勅行時三道各務差使員別單啓

목 (…) 京畿各差備差使員 護行大將 **南陽府使** 卞至健一路都差使員 豐德府使 吳載衡奉勅差使員 礪峴僉使 張瑞翬 重林察訪 劉大鉉陪勅差使員 漣川縣監 魏光翼賜物領來差使員 陰竹縣監 崔在修迎逢軍牢旗手差使員 德浦僉使 高達門擡扛人夫緣裝陪賜物擡扛卜物差使員 延曙察訪 韓聖煥內軍物軍威軍差使員 積城縣監 李德懋騎卜馬差使員 桃源察訪 宋奎瑞 上勅人馬步從羅將差使員 平丘察訪 張世經 副勅人馬步從羅將差使員 良才察訪 洪夏俊 臨津過涉船槍差使員本津別將 黃道永道路橋梁差使員各其地方官楊州牧使 尹行元 高陽郡守 鄭東元 坡州牧使 洪仁默 長湍府使 李觀賢 (…)
<일성록, 정조10년(1786) 8월 7일(정미)>

정치/행정

남양부사 등이 연명으로 올린 상소에 비답을 내리다

강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 충청 감사 김광묵(金光默), 경기 도사(京畿都事) 장지현(張至顯), 광주 부윤(廣州府尹) 유강(柳堈), 양주 목사(楊州牧使) 윤행원(尹行元), 여주 목사(驪州牧使) 이문원(李文源), 파주 목사(坡州牧使) 홍인묵(洪仁默), 교동 부사(喬桐府使) 남헌철(南憲喆), 수원 부사(**水原府使**) 정동준(鄭東浚), 장단 부사(長湍府使) 이관현(李觀賢), 부평 부사(富平府使) 윤기동(尹耆東), 인천 부사(仁川府使) 서간수(徐簡修), 죽산 부사(竹山府使) 신속(申曉), **남양부사(南陽府使) 변지건(卞至健)**, 이천 부사(利川府使) 심규(沈

銈), 풍덕 부사(豐德府使) 오재형(吳載衡), 통진 부사(通津府使) 구종(具綜), 고양 군수(高陽郡守) 이소(李素), 안산 군수(安山郡守) 이후원(李厚源), 가평 군수(加平郡守) 조광규(趙光逵), 안성 군수(安城郡守) 이천목(李天穆), 마전 군수(麻田郡守) 이보첨(李普瞻), 김포 군수(金浦郡守) 유한위(兪漢緯), 양근 군수(楊根郡守) 이광덕(李光德), 삭녕 군수(朔寧郡守) 황창원(黃昌源), 교하 군수(交河郡守) 이의강(李義綱), 양천 현령(楊川縣令) 서명규(徐命珪), 영평 현령(永平縣令) 오재경(吳載絅), 진위 현령(振威縣令) 이항연(李恒演), 용인 현령(龍仁縣令) 이목영(李牧永), 금천 현감(衿川縣監) 홍희영(洪喜永), 양성 현감(陽城縣監) 이두원(李斗源), 양지 현감(陽智縣監) 한광전(韓光傳), 포천 현감(抱川縣監) 유득공(柳得恭), 적성 현감(積城縣監) 이덕무(李德懋), 연천 현감(漣川縣監) 위광익(魏光翼), 과천 현감(果川縣監) 이현도(李顯道), 지평 현감(砥平縣監) 윤수익(尹守翼), 음죽 현감(陰竹縣監) 최재수(崔在修)가 연명으로 상소하고, 연서 찰방(延曙察訪) 한성환(韓聖煥), 양재 찰방(良才察訪) 홍하준(洪夏俊), 평구 찰방(平丘察訪) 장세경(張世經), 중림 찰방(重林察訪) 고정환(高廷煥), 경안 찰방(慶安察訪) 문극효(文極孝), 도원 찰방(桃源察訪) 송규서(宋奎瑞)가 연명으로 상소한 데 대해, 모두 비답을 내렸다.

목 ○ 이에 앞서 서유방 등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아, 역적 구선복(具善復) 숙질(叔姪)과 역적 김우진(金宇鎭) 부자(父子)는 정권(政權)과 병권(兵權)을 장악하고 속셈을 체결하여 [원문 25자 도삭] 매우 다행스럽게 자전의 전교가 대대적으로 선포되자 의리가 크게 밝아졌으며 천도는 매우 환해서 죄인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요망한 역적이 겨우 승복하였는데 형률은 갑자기 작처(酌處)하는 데에 그쳤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원문 138자 도삭]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억지로 거스르고 일제히 호소하는 말을 힘써 거부하여, 합문을 굳게 닫고 상선을 들지 않으시며 명령이 전달되지 않고 조정이 거의 텅 비게 되었으니, 어찌 성명의 세상에 이처럼 정도에서 벗어난 거조를 하실 줄 생각하였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합문을 닫고 상선을 물리치라고 한 명을 특별히 거두시어 여망에 부응해 주소서."

하였고, 김광묵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하늘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여 문효세자(文孝世子)께서 갑자기 신료(臣僚)들을 버리셨으니 팔도의 백성들이 마치 살고 싶지 않은 듯이 원통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계속해서 의빈(宜嬪)의 상을 당함으로 인해 여론은 큰 기대를 단념하게 되었으며 주상의 형세는 위태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방금 왕대비전께서 내리신 언문 전교를 삼가 보니, 수백 마디의 자세한 말씀은 모두가 종묘사직을 위하고 난신 역적을 성토하려는 괴로운 마음과 지극한 정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5월의 변고와 9월의 상사(喪事)는 온 세상 사람들이 원통해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 사람들의 의혹을 증폭시켰으니, 만약 그 근본을 찾아본다면 [원문 40자 도삭] 삼사의 청을 속히 윤허하시어, 위로는 자전의 깊은 근심을 늦추어주시고 아래로는 나라 사람들이 일제히 호소한 데 대해 부응해 주소서." 하였고, 김광묵 등 이하의 상소 내용도 위와 같았는데, 모두 비답하기를, "조정 신하들에 대한 비답에서 자세히 하유하였다. 이러한 거조는 매우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강 京畿監司 徐有防 忠淸監司 金光默 京畿都事 張至顯 廣州府尹 柳煓 楊州牧使 尹行元 驪州牧使 李文源 坡州牧使 洪仁默 喬桐府使 南憲喆 **水原府使** 鄭東浚 長湍府使 李觀賢 富平府使 尹耆東 仁川府使 徐簡修 竹山府使 申曛 **南陽府使** 卞至健 利川府使 沈銈 豐德府使 吳載衡 通津府使 具綜 高陽郡守 李素 安山郡守 李厚源 加平郡守 趙光逵 安城郡守 李天穆 麻田郡守 李普瞻 金浦郡守 兪漢緯 楊根郡守 李光德 朔寧郡守 黃昌源 交河郡守 李義綱 楊川縣令 徐命珪 永平縣令 吳載絅 振威縣令 李恒演 龍仁縣令 李牧永 衿川縣監 洪喜永 陽城縣監 李斗源 陽智

縣監 韓光傳 抱川縣監 柳得恭 積城縣監 李德懋 漣川縣監 魏光翼 果川縣監 李顯道 砥平縣監 尹守翼 陰竹縣監 崔在修聯疏延曙察訪 韓聖煥良才察訪洪夏俊 平丘察訪 張世經 重林察訪 高廷煥 慶安察訪 文極孝 桃源察訪 宋奎瑞聯疏幷賜批

목 先是有防等疏略曰噫逆復之叔侄賊宇之父子秉軸握兵連肚結腸(刀削)何幸慈旨誕宣義理大明乾道孔昭罪人斯得妖竪纔已輸款刑章遽止酌處古今天下寧有是哉(刀削)强咈群情力拒齊籲以至閤門堅閉常膳不御命令不通朝著殆空豈意聖明之世有此過中之擧乎伏願特寢閉閤却膳之命以答輿望焉光默疏略曰皇天不弔文孝世子奄棄臣僚八域冤號如不欲生繼以宜嬪喪逝群情斷於顒望主勢阽於凜綴卽伏見王大妃殿諺敎縷縷數百言罔非爲宗社討亂賊之苦心至誠也五月之變九月之喪不但率普之冤酷益增中外之疑惑苟求其本則(刀削)亟允三司之請上紓慈殿之深憂下副國人之齊籲焉光默等以下疏意上同幷批以逆臣之批悉諭此擧出於萬不得已也

<일성록, 정조10년(1786) 12월 15일(갑인)>

정치/행정

경기감사가 남양부사를 전최(殿最)하여 올리다

강 희정당(熙政堂)에서 서울과 지방에서 올린 전최(殿最)를 개탁(開坼)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이 올린 전최에서, **남양부사(南陽府使) 변지건(卞至健)** - 명성은 비록 높지만 허둥대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경책(警責)해야 한다. - 을 중(中)에 두었다.

전(前) 충청 감사 김광묵(金光默)이 올린 전최에서, 도사(都事) 이사겸(李思謙) - 폄좌(貶坐)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집이 멀기 때문이었다. - 을 중에 두었고, 영동 현감(永同縣監) 권이경(權以經) - 집재(執災)가 적으니 백성에게 가혹하게 한 듯하다. - 을 하(下)에 두었다. (…) ○ 경기 감사 서유방이 올린 도내(道內)의 겸영장(兼營將)에 대한 포폄 계본(褒貶啓本)으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어찌 제목(題目)이 없는 등제가 있단 말인가. 다른 도의 규례대로 마감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강 開坼京外殿最于熙政堂

목 京畿監司 徐有防殿最**南陽府使** 卞至健 聲聞雖騰忙錯宜警中忠淸前監司 金光默殿最都事 李思謙 不參貶坐家遠之故中永同縣監權以經執災之少已疑刻民下 (…) ○因京畿監司 徐有防道內兼營將褒貶啓本敎曰豈有無題之等第依他道例磨勘事分付 (…)

<일성록, 정조11년(1787) 6월 15일(신해)>

정치/행정

남양부사를 개차하여 임명하다

강 도목 정사(都目政事)를 행하였다. 이조 판서 윤시동(尹蓍東), 참의 이집두(李集斗), 병조 판서 김이소(金履素), 참판 김재순(金載順), 참의 유의(柳誼), 참지 이기(李夔)가 나왔다.

목 (…) ○ 이비(吏批)에, 정만시(鄭萬始)를 응교로, 정술조(鄭述祚)를 동지돈녕부사로, 어재소(魚在沼)를 김화 현령(金化縣令)으로, 서유용(徐有容)을 영동 현감(永同縣監)으로, 이영원(李英瑗)을 영양 현감(英陽縣監)으로, 이득준(李得駿)을 선천 부사(宣川府使)로, 서영보(徐英輔)를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 하교하기를, "그는 이력(履歷)도 없는 데다가 지금은 구휼(救恤)을 치른 뒤이니, 이러한 시기에 수령을 서투른 사람에게 맡겨 두기가 어렵다. **남양부사** 서영보를 개차하고 다시

의망하여 들이라.” 하였다. (…) 왕한정(王漢禎)을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

강 行都政 吏曹判書尹耆東參議李集斗兵曹判書金履素參判金載順 參議 柳誼 參知 李夔進

목 (…) ○吏批以鄭萬始爲應敎 鄭述祚爲同敦寧 魚在沼爲金化縣令 徐有容爲永同縣監 李永瑗爲英陽縣監 李得駿爲宣川府使 徐英輔爲**南陽府使**○敎曰旣無履歷且經賙救此時守令難付生手**南陽府使** 徐英輔改差更爲擬入 (…) 王漢禎爲**南陽府使** (…)

<일성록, 정조11년(1787) 6월 22일(무오)>

정치/행정

남양부사를 다시 내려보내다

강 중희당에서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을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근래 듣건대, **남양부사(南陽府使)**가 서울에 올라와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즉시 내려가게 하라.” 하였다.

강 召見京畿監司 徐有防于重熙堂

목 予曰近聞**南陽府使**上京久留云卽令下送也

<일성록, 정조11년(1787) 10월 14일(무신)>

정치/행정

남양부의 5인에게 노인직을 가자하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오재순(吳載純)이 나왔다.

목 (…) **남양부(南陽府)** - 사서인 업무(業武) 김수창(金守昌) 등 5인이다. (…) 이상에 대해 모두 노인직(老人職)을 가자(加資)하는 것으로 하비(下批)하고, 부녀(婦女)는 봉작(封爵)하였다. (…) ○ 하교하기를, “서울과 지방의 노인직을 연례대로 가자할 사람에 대해 오늘 정사를 열어 하비하였다. 노인의 일은 지체해서는 안 되니, 기발(騎撥)이 있는 곳은 기발로 전하고 기발이 없는 곳은 삼현령(三懸鈴)으로 행회(行會)하되, 도착 즉시 일일이 분급(分給)한 뒤에 장문(狀聞)하게 하라. 이후에도 이대로 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잘 알고서 해조와 각 해도에 분부하게 하고, 이어서 또 신칙하여 지체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강 有政 吏曹判書 吳載純進

목 (…) **南陽府** 士庶業武金守昌等五人 (…) 竝老職加資下批婦女封爵 (…) ○敎曰京外老職年例加資人今日已開政下批老人之事不可遲待有撥騎處傳撥無撥騎處三懸鈴行會到卽一一分給後狀聞後亦依此爲之事令廟堂知悉分付該曹及各該道仍又申飭俾勿遲滯

<일성록, 정조12년(1788) 1월 2일(을축)>

정치/행정

경기감사에게 남양부가 보고한 내용을 조사토록 명하다

강 기백(畿伯)은 **남양부(南陽府)**가 보고한 내용의 곡절에 대해 조사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이 장계하기를, “방금 광주 부윤(廣州府尹) 이태영(李泰永), 양주 목사(楊州牧使) 윤시동(尹蓍東), 여주 목사(驪州牧使) 이계(李溎), **남양부사(南陽府使) 왕한정(王漢禎)**, 안성 군수(安城郡守) 이천목(李天穆), 양성 현감(陽城縣監) 이익(李榏), 양지 현감(陽智縣監) 한광전(韓光傳)이 보고한 것을 보니, ‘무신년(1728, 영조4)의 장사(將士)로서 생존해 있는 사람을 출정(出征)했는지 유진(留陣)했는지 수성(守城)했는

지를 막론하고 모두 관정(官庭)으로 불러와서, 이미 가자(加資)한 자에게는 관교(官敎)를 반급(頒給)하고 가자하지 않은 자에게는 쌀과 고기를 반급한 뒤 주찬(酒饌)을 마련하고 풍악을 베풀어 각기 흠뻑 취하고 배불리 먹게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하교하기를, "구갑(舊甲)을 맞아 옛 공적을 기념하고자 이와 같이 하도록 별유(別諭)한 바 있었는데, 이 장본(狀本)을 보니 **남양부**도 일체 보고해 왔다. 해당 수령은 별군직(別軍職)으로서 서울에 있는데, 어찌 관가(官家)로 데려와 풍악을 베풀고 음식을 먹여 보낼 수 있었겠는가. 겸관(兼官)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인가, 유향배(留鄕輩)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한 것인가? 이 중에 한 가지 경우일텐데 이에 대한 말이 없이 뒤섞어 놓아 마치 관정으로 불러와서 직접 거행한 것처럼 보고해 왔으니, 너무도 놀랍다. 해당 부사의 치적(治績)에 대해서는 근래 제대로 못하는 점을 보고받은 것이 많으니 그것만도 통탄스럽고 놀라운데, 조정의 명령이 내린 상황에서 거행한 것이 또 이와 같았으니 예사롭게 처리해서는 안 되겠다. 그 곡절을 경이 즉시 조사하여, 이치를 따져 죄를 청하는 내용으로 장문(狀聞)하라." 하였다.

강 命畿伯行查**南陽府**報辭委折

목 京畿監司 徐有防狀啓以爲卽接廣州府尹 李泰永 楊州牧使 尹耆東 驪州牧使 李湜 **南陽府使** 王漢禎 安城郡守 李天穆 陽城縣監 李棭 陽智縣監 韓光傳所報則戊申將士生存者毋論出征留陣守城一併招致官庭已加資者頒給官敎未加資者頒給米肉辦酒饌設風樂使之各盡醉飽敎曰値舊甲感舊事有此別諭之擧而觀此狀本**南陽**一體報來該倅以別軍職在京則豈率致渠家而設樂饋送乎抑使兼官爲之乎使留鄕輩替行乎有一於此無措辭混同以招致官庭親執擧行樣報來者極爲駭然大抵該府使治績近來多有不治之入耳者已極痛駭朝令之下擧行又如此不可尋常處之其委折卿其卽爲行查論理請罪狀聞

<일성록, 정조12년(1788) 4월 9일(신축)>

사회/행정

남양인 중 팔장사의 자손에게 회량미를 지급하다

강 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별군직(別軍職)의 취재(取才)를 행하였다.

목 (…) ○ 진휼청(賑恤廳)이 아뢰기를, "팔장사의 자손들에게 회량미(回糧米)를 제급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남양(南陽)의 박사덕(朴思德)**, 통진(通津)의 박충좌(朴忠佐), 영종(永宗)의 조명준(趙明濬), 광주(廣州)의 장세겸(張世謙)·장세유(張世瑜)·장계택(張繼宅)·장계문(張啓文)·장세항(張世恒), 양주(楊州)의 장지운(張枝雲)에게는 각각 미(米) 1두를, 회양(淮陽)의 신광윤(申光潤)·신경옥(申敬鈺), 평양(平壤)의 김순심(金舜心)·김성신(金聖臣)·김우신(金禹臣)·김필상(金弼尙), 강동(江東)의 김순효(金舜孝)에게는 각각 미 3두를 분급(分給)하겠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3두는 너무 적으니 각각 5두를 주고, 양식을 마련할 비용도 주도록 하라." 하였다.

강 御春塘臺行別軍職取才

목 (…) ○賑恤廳啓言壯士子孫回糧米題給有命矣**南陽** 朴思德 通津 朴忠佐 永宗 趙明濬 廣州 張世謙 張世瑜 張繼宅 張啓文 張世恒 楊州 張枝雲各米一斗淮陽 申光潤 申敬鈺 平壤 金舜心 金聖臣 金禹臣 金弼尙 江東 金舜孝各米三斗分給敎以三斗太少各給五斗仍給糧資之需

<일성록, 정조12년(1788) 4월 27일(기미)>

정치/행정

신상권(申尙權)을 남양부사로 삼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참판 홍병찬(洪秉纘), 병조 판서 이문원(李文源)이 나왔다.

목 ○ 권도(權導)를 공조 판서로, 이재학(李在學)을 참판으로, 이의행(李義行)을 지의금(知義禁)으로, 신상권(申尙權)을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이재학(李在學)을 부총관으로 삼았다.

강 有政 吏曹參判 洪秉纘 兵曹判書 李文源進

목 以權導爲工曹判書 李在學爲參判 李義行爲知義禁 申尙權爲南陽府使 李在學爲副總管

<일성록, 정조12년(1788) 9월 8일(병인)>

정치/행정

남양부사와 감목관에게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을 반하(頒下)하다

강 《가체신금사목(加髢申禁事目)》을 반하(頒下)하였다.

목 ○ 하교하기를, "《가체신금사목》을 종친부(宗親府), 의빈부(儀賓府) 및 문관은 시종(侍從) 이상, 무관은 변지과(邊地窠) 이상, 음관은 목사(牧使) 이상, 문관과 음관과 무관 중 현재 벼슬하고 있는 인원, 오부(五部)의 방계(坊契)에는 호조에서 인출한 건(件)을 내각에서 반급(頒給)하라. 충의청(忠義廳), 관상감(觀象監), 내의원(內醫院), 양의사(兩醫司), 사역원(司譯院), 도화서(圖畫署), 사자청(寫字廳)의 계사(計士), 녹사(錄事), 율관(律官)과 내수사(內需司) 등의 잡직(雜職)으로 현재 벼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각각 해당 사(司)의 제조 및 당상으로 하여금 친히 집행하여 각각 해당 사에서 인출해서 일일이 분급(分給)한 뒤에 나누어 준 사람의 성명을 별단에 갖추어 초기하거나 혹은 와서 여쭙게 하라고 해방은 거듭 분명히 분부하라. 각 영(營)의 당상 장관(堂上將官) 이하 및 호위청과 포청도 조금 전에 구전으로 하교한 대로 각각 해당 영의 대장으로 하여금 결재하여 서명해서 분급한 뒤에 분급한 사람의 성명을 별단에 갖추어 초기하게 하라고 또한 분부하라." 하였다. (…) 남양부사(南陽府使) 신상권(申尙權) (…) 남양 감목관(南陽監牧官) 장필한(張弼漢) (…) 각 1건을 사급하고, 또 170건을 내려 감영 이하 읍·진·역·목에 각 1건을 보관하고, 열읍에 각 3건을 사급하여 방곡(坊曲)의 지역을 효유하고, 대읍(大邑) 5개 읍에는 각 2건을 더 지급하고, 또 본각에서 말을 잘 만들어 행회한 다음 반급(頒給)한 상황을 장문하게 하라. (…)

강 頒下加髢申禁事目

목 敎曰加髢申禁事目宗親儀賓及文以侍從以上武以邊地以上蔭以牧使以上文蔭武時仕人員五部坊契當自內閣以戶曹印出件頒給而忠義廳 觀象監 內醫院 兩醫司 司譯院 圖書署 寫字廳 計士 錄事律官內需司等雜職時仕令各其司提調及堂上親執自各其司印出一一分給後以分給人姓名具別單草記或來稟事該房申明分付各營堂上將官以下及扈衛廳 捕廳亦依俄下口傳下敎令各其營大將著銜分給後以其分給姓名具別單草記事亦爲分付 (…) 又下八十四件令該道各該營閫邑鎭驛牧藏置京畿亦難開板 (…) 南陽府使申 尙權 (…) 南陽監牧官 張弼漢 (…) 各一件賜給又下一百七十件監營以下邑鎭驛牧各藏一件列邑各賜三件以爲曉諭坊曲之地大邑五邑則各加給二件亦自本閣措辭行會畢頒給形止使之狀聞 (…)

<일성록, 정조12년(1788) 10월 12일(경자)>

정치/행정

남양의 5인에게 노인직을 가자하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이갑(李), 참판 이재학(李在學), 참의 이홍재(李洪載), 병조 판서 이문원(李文源)이 나왔다.

목 (…) 남양(南陽) - 내시인 전 상세(尙洗) 김익령(金益齡), 사서인 유학(幼學) 홍이재(洪二再) 등 5인이다. (…) 이상에 대해 모두 노직(老職)을 가자하는 것으로 하비(下批)하고, 부녀(婦女)는 봉작(封爵)하였다.

강 有政 吏曹判書 李▣ 參判 李在學 參議 李洪載 兵曹判書 李文源進

목 (…) 南陽 內侍前尙洗金益齡士庶幼學洪二再等五人 (…) 竝老職加資下批婦女封爵

<일성록, 정조13년(1789) 1월 2일(기미)>

정치/행정

이언신(李彦蕞)을 남양부사로 삼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김이소(金履素), 참판 김광묵(金光默)이 나왔다.

목 ○ 홍언철(洪彦喆)을 사간으로, 박기정(朴基正)·이석하(李錫夏)를 장령으로, 김재익(金載翼)을 교리로, 이보천(李普天)을 부교리로, 이희관(李羲觀)을 수찬으로, 안책(安策)을 부수찬으로, 권회(權恢)를 헌납으로, 이언신(李彦蕞)을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강 有政 吏曹判書 金履素 參判 金光默進

목 以洪彦喆爲司諫 朴基正 李錫夏爲掌令 金載翼爲校理 李普天爲副校理 李羲觀爲修撰 安策爲副修撰 權恢爲獻納 李彦蕞爲南陽府使

<일성록, 정조13년(1789) 10월 27일(기묘)>

정치/행정

남양의 홍수택 등에게 노인직을 가자하다

강 정사(政事)가 있었다. 이조 판서 홍양호(洪良浩), 참판 민종현(閔鍾顯)이 나왔다.

목 (…) 남양(南陽) - 조관인 전 만호 홍수택(洪受澤), 사서인 유학 홍응조(洪應祚) 등 4인 - (…) 이상에 대해 모두 노직을 가자하는 것으로 하비(下批)하고, 부녀는 봉작하였다.

강 有政 吏曹判書 洪良浩 參判 閔鍾顯進

목 前同知 李聖師加嘉義前參議 宋濟魯前府使 李樣通政南聚五前僉知 徐命瑞前五衛將 金弘濟竝加嘉善前持平 曹霖前都事 李景行前司諫成 胤儉前別提 沈得彬前宣傳官 金大有前參奉 李膺擧前牧使 朴師沃幼學宋純相加通政聖師以下老職師沃純相侍從臣父年七十也 (…) 南陽 朝官前萬戶 洪受澤士庶幼學洪應祚等四人 (…) 竝老職加資下批婦女封爵

<일성록, 정조14년(1790) 1월 2일(계미)>

정치/행정

남양 등의 장관 구근 문제를 논의하다

강 삼영(三營)의 별무사, 파주(坡州)와 양주(楊州)의 장관 중 구근(久勤)한 자는 한 번의 도정(都政)을 건너서 수용하고, 그 외 경기와 지방의 구근한 자는 두 번의 도정을 건너서 수용하라고 명하였다.

목 ○ 병조가 아뢰기를, "서울과 지방 각 군문의 구근에 대해 대신(大臣)에게 나아가 의논한 뒤에 분등하고 이정(釐正)해서 아뢰라고 명하셨습니다.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에게 나아가 의논하니, '금위영과 어영청의 별무사, 사지 금군(事知禁軍)은 한 번의 도목을 건너서 수용하고 능마아(能麼兒), 겸낭청(兼郎廳), 파주·장단(長湍)·양주·남양(南陽)·죽산(竹山)의 장관은 두 번의 도목을 건너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변통할 때 세 번의 도목을 건너 천전하는 것으로 기한을 정한 것은 간간이 수용하는

임시 융통보다 매우 나은 것으로, 저들에게는 참으로 다행인데도 오히려 만족할 줄 모르고 분분하게 호소한 데다가 또 기한을 당겨 정하려고 하니 매우 놀랍습니다. 이것은 또한 관방(官方)이니 계속해서 변통해서는 안 되고 또 저들의 노역(勞役)은 전에 비해 더한 것이 없는데 한 번의 도목을 건너거나 두 번의 도목을 건너 천전하는 것으로 고친다면 본래 부족한 구근과(久勤窠)는 분배하여 수를 채울 수 없고 도리어 가장 고생하고 가장 수고롭게 구근한 자들이 억울하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양영(兩營)의 별무사, 사지 금군, 능마아, 겸낭청, 파주·장단·양주·**남양**·죽산의 구근은 일체 세 번의 도목을 건너 천전한 이전의 정식대로 준행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금위영과 어영청 양영의 별무사 원액이 훈국에 비해 비록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미 삼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지방의 구근과 함께 간간이 수용되는 것은 억울한 단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더구나 지금 이른바 세 번의 도목을 건넌다는 것은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에 정해진 기한 없이 간간이 수용하던 때만 못하니, 어느 모로 보나 융통해 주어야 한다. 수의(收議)대로 한 번의 도목을 건너 천전하는 것으로 기사년(1749, 영조25)에 계하(啓下)한 별단에 즉시 고쳐 부표(付標)하라. 파주는 방어사가 있는 중요한 진(鎭)이고 또 영릉(永陵)이 있는 곳이며, 양주는 비록 방영(防營)은 아니지만 중요하기는 마찬가지이니, 또한 한 번의 도목을 건너서 수용하라. 그 밖에 서울과 지방의 구근을 막론하고 세 번의 도목을 건너 천전하는 것은 도리어 수용하지 않는 것만 못하니, 그들이 미욱하고 변변치 못하여 반드시 모두 고례(古例)를 알지는 못하더라도 어찌 억울한 마음이 없겠는가. 모두 두 번의 도목을 건너 시행하는 것으로 또한 기사년 별단 가운데에 부표하고, 기사년 별단에 계하한 것과 금번에 부표하여 정식으로 삼은 것을 본조 및 각영(各營)으로 하여금 게판(揭板)하게 하여 거행하는 데에 헛갈리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강 命三營別武士坡州 楊州將官久勤間一都政收用其外京鄕久勤間二都政收用

목 兵曹啓言京外各軍門久勤就議于大臣分等釐正以聞事有命矣就議于左議政 **蔡濟恭**則以爲禁御兩營別武士事知禁軍間一都目能麽兒兼郎廳坡州 長湍 楊州 **南陽** 竹山將官間二都目收用爲宜云第向來變通時以間三都目定限大勝於間間收用之臨時闊狹則於渠輩誠幸矣猶不知足紛紛呼訴又欲進定期限者極爲痛駭此亦官方不可續續變通且渠輩勞役比前無加改之以間一都目或二都目則自來不足之久勤窠將無以分排充數反致最著最勞久勤之稱冤臣意則兩營別武士事知禁軍能麽兒兼郎廳坡州 長湍 楊州 **南陽** 竹山久勤竝以間三都目依前定式遵行似合事宜敎以禁御兩營別武士元額比訓局雖折半不及旣稱三營則與外方久勤通同間間收用足爲抑菀之端況今所謂間三都目在渠輩反不若已前間間收用時之無定限以此以彼宜有闊狹依收議以間一都目卽爲改付標於己巳年啓下別單而坡州以防禦重鎭又是永陵地方也楊州雖非防營所重一也亦爲間一都目收用其外則無論京久勤鄕久勤間三都目反不如不爲收用渠輩迷劣未必皆知古例則亦豈無抑菀之心乎幷以間二都目施行亦於己巳別單中付標己巳別單啓下及今番之付標定式卿曺及各營使之揭板俾無眩於擧行之弊
<일성록, 정조14년(1790) 12월 18일(갑자)>

정치/행정

원소의 식목과 관련하여 남양부사의 노고를 치하하다

강 나무를 심은 수령 이하에게 노고에 보답하는 은전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나무를 심은 수령들의 노고에 대하여 재작년 행행 때부터 이미 앞날의 근만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하교를 한 일이 있는데 오늘 직접 살펴보고 충분히 대략 짐작할 수 있었다. 작년 봄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하여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 것이 가장 많은 곳은

양성(陽城)이고, 작년 가을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하여 가장 견고하게 잘 쌓은 곳은 광주(廣州)이다. 대수롭지 않은 노고에 보답할 때도 오히려 승자(陞資)하는 은전이 있는데 하물며 지극히 귀중하고 지극히 공경해야 할 곳에서 거행한 일이겠는가. 노정이 100리에 가까워서 몸소 감독하고 손수 심지 못하여 각 고을의 수령으로 하여금 내 대신 수고를 하게 하였으니 그들의 노고에 어찌 범연히 보답할 수가 있겠는가. 양성 현감 윤광석(尹光碩)은 부사로 오늘 정사에서 조용하고, 전 광주 부윤 홍성연(洪聖淵)은 가자(加資)하라. 그 외에도 수령으로서 작년 봄과 가을에 다음으로 수고한 사람은 수원 부사이나 이곳의 지방관이므로 거론하지 말라. 또 그 다음은 **남양부사(南陽府使)**이다. 연로한 사람이 두 번이나 인원을 차출하는 일을 주관하였으니 숙마(熟馬) 1필을 사급하라. 안산 군수(安山郡守) 이유칭(李惟稱)과 전 진위 현령(振威縣令) 이협성(李協聖)은 재작년 가을부터 세 번이나 이 일을 주관하였으니 모두 4품직에 승서하라. 또 그 다음인 용인 현감(龍仁縣監) 신석(申昔)은 두 번 이 일을 주관하였으니 아마(兒馬) 1필을 사급하고 전 과천 현감(果川縣監) 이명걸(李命杰)은 상현궁(上弦弓) 1장(張)을 사급하라. 홍대영(洪大榮)은 길 닦는 문제는 그만두고라도 이미 나무 심을 때에 그가 조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근만을 고과한다면 홍대영은 태만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처분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으니 거론하지 말라. 그 나머지 차사원, 비장, 장교 등에게는 판하(判下)한 대로 시상하라. 자원해서 나무 심는 것을 조령(朝令)으로 금하는 것이지만 조령이 내리기 전에 나무 심은 수원의 업유(業儒) 김낙성(金樂成)은 당초에 맨 먼저 물력을 내놓아 심은 것이 자그마치 9만여 그루에 이르고 또한 대부분 튼튼하게 뿌리를 내렸으니 오늘 정사에서 오위장에 자리를 만들어 조용하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전에 이미 넉넉하게 값을 쳐 주었으며 간은(干恩)하는 일은 없애야 하니 모두 거론할 것이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 본부의 출신(出身) 여문영(呂文永)은 1만 그루나 심었고 뿌리를 잘 내린 것이 반을 차지한다. 지난번에 이번 행행에서 상전(賞典)을 내리겠으니 제품(提稟)하라는 명이 있었다. 초사로 병조로 하여금 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조용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施植木守令以下酬勞之典

목 敎曰植木守令之勞自再昨年幸行時旣有更考來頭勤慢之敎而今日親審足可領略以昨春首勞完根最多者陽城是也以昨秋首勞堅築最勝者廣州是也尋常酬勞猶有陞秩之典況此至重至敬處擧行之事乎程塗近百里未能躬董而手植使各邑倅爲此替予勞之擧其所酬勞豈可泛然陽城縣監 尹光碩 府使今日政調用廣州前府尹 洪聖淵加資其餘守令昨春與秋次勞爲**水原**而係是地方官勿論又其次**南陽府使**以年老之人再管差員之役熟馬一匹賜給安山郡守 李惟稱 振威前縣令 李協聖自再昨秋三管是役幷四品職陞敍又其次龍仁縣監 申昔再管是役兒馬一匹賜給果川前縣監 李命杰上絃弓一張賜給洪大榮不待治道已於植木時知其不小心若考勤慢大榮非慢而何處分未久勿論其餘差使員裨將將校等依判下施賞自願植木雖以朝令禁之令前植木人**水原**業儒金樂成當初首先出力所植至於九萬株之多亦多完根今日政五衛將作窠調用其餘人前已優給價本俾除干恩幷無可論其中本府出身呂文永萬株之植根完居半向以今幸當下賞典有提稟之命初仕令該曹待窠調用

<일성록, 정조15년(1791) 1월 17일(임진)>

정치/행정

남양부사를 파출하다

강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언신(李彦藎)**을 파출(罷黜)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가, 이언신이 실제로 병을 앓고 있어서 억지로 근무하기 어

려우므로 어쩔 수 없이 파출하였다고 치계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정관을 패초하여 정사를 열어서 그 후임을 각별히 가려 차임(差任)한 다음 내려보내게 하라.” 하였다.

강 罷黜南陽府使 李彦瓘

목 京畿監司 徐鼎修以彦瓘實病難强不得已罷黜馳啓敎以政官牌招開政各別擇差下送

<일성록, 정조15년(1791) 6월 26일(기사)>

정치/행정

구명원(具明遠)을 남양부사로 삼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참판 민종현(閔鍾顯)이 나왔다.

목 ○ 이태형(李太亨)을 부수찬으로, 이이상(李頤祥)을 지의금부사로 삼았다.

○ 남양부사의 망통(望筒)으로 인하여 전교하기를, “비록 이처럼 매우 뛰어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찌 적합한 사람이 없겠는가. 이 자리는 폐읍(弊邑)이고, 또 직무를 오래도록 방치하였으니, 특례로 각별히 가려 의망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2차 정사를 하였다. 구명원(具明遠)을 남양부사로 삼았다.

강 有政 吏曹參判 閔鍾顯進

목 以李太亨爲副修撰 李頤祥爲知義禁○因南陽府使望筒敎曰雖非如是高出豈無可合之人乎係是弊邑又屬瘝曠拔例各別擇擬事分付○再政以具明遠爲南陽府使

<일성록, 정조15년(1791) 6월 26일(기사)>

정치/행정

현륭원의 식목에 공이 있는 남양인에게 시상을 하다

강 현륭원(顯隆園)에 나무를 심을 때 역사(役事)를 감동(監董)한 원관(園官), 열읍의 수령과 장교(將校)와 색리(色吏) 등에게 모두 차등 있게 시상하고, 이어서 스스로 준비하여 나무를 심은 고을에 대해서는 모두 공곡(公穀)으로 회감(會減)하고 값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현륭원에 나무를 심으면서 기유년(1789, 정조13)부터 올해까지 8개 읍의 민력을 동원하여 다행히 완성하였으니, 그 일을 중히 여기는 도리로 볼 때 등급을 나누어 공로를 기억하는 일을 어찌 늦출 수 있겠는가. 영(令) 윤수익(尹守翼)은 가는 곳마다 성실하고 부지런하였으니 가상하다. 그가 1차례 나무 심는 것을 감동한 것이 다른 사람이 수차례 한 것보다 나으니, 임기가 차기를 기다려 준직(準職)에 승서(陞敍)하라. 영 홍최영(洪最榮)은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므로 거론하지 마라. 차사원(差使員)인 금천 현감(衿川縣監) 홍취영(洪就榮)은 4년 연속 간검(看檢)하였으니 역시 승서하라.

나무를 심은 고을의 지방관 중 안산 군수(安山郡守) 이유칭(李惟稱)과 용인 현감(龍仁縣監) 신석(申昔)은 4차례 연속 간검하였으니,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우직(右職)에 조용(調用)하라. 광주 부윤(廣州府尹) 심진현(沈晉賢)은 측근에서 나간 자로서 몸소 성 쌓는 일을 간검하였으니, 대내(大內)에서 내린 표피(豹皮) 1령(令)을 사급(賜給)하라. 과천 현감(果川縣監) 김이중(金履中)은 공로가 가장 드러났지만 이미 승전(承傳)이 있었으므로 거론하지 마라. 남양부사(南陽府使) 구명원(具明遠)은 본래 훌륭한 수령이며 나이도 많은 자로서 부지런히 공무를 봉행하였으니 더욱 가상하다. 방어사(防禦使)에 제수하라. (…) 남양(南陽)의 감동 향소(監董鄕所)인 유학 홍윤덕(洪允德), 감동한 장교인 한량 박창근(朴昌根)·황세문(黃世文)은 4차례 나무 심는 것을 감동하였으므로 상으로 한 자급을 올려 주었다. (…)

강 顯隆園植木時董役園官列邑守令校吏等竝施賞有差仍命列邑自備植木者皆以公穀會減給價
목 敎曰顯隆園植木自己酉至今年用八邑民力幸得告成其在重其事之道分等紀勞豈可或緩乎令尹守翼誠勤到處可尙一次監植勝於他人之數次待準瓜準職陞敍令洪最榮日淺勿論差使員 衿川縣監 洪就榮連四年看檢亦爲陞敍植木列邑地方官安山郡守 李惟稱 龍仁縣監 申昔連四次看檢待窠右職調用廣州府尹 沈晉賢出自邇列躬檢版鍤內下豹皮一令賜給果川縣監 金履中勞雖最著旣有承傳勿論南陽府使 具明遠自是良手年多者奉公之勤尤可嘉防禦使差除 (…) 南陽監董鄕所幼學洪允德 監植將校閑良朴昌根 黃世文四次賞加 (…)
<일성록, 정조16년(1792) 4월 4일(임인)>

정치/행정

남양인에게 노인직을 가자 한 것과 죄인들의 현황을 아뢰다

강 100세 및 8, 9십 세 노인에게는 미육(米肉)을 세찬(歲饌)의 예대로 제급하고, 그중 100세 노인인 전 지사(知事) 이여상(李如尙)은 특별히 한 자급을 올려 주고 의자(衣資)를 넉넉히 지급하며, 문관, 음관(蔭官), 무관으로 도류(徒流)나 파삭(罷削) 이하의 죄명 및 사서(士庶)로서 도류나 경죄(輕罪)를 지은 사람은 모두 탕척(蕩滌)해 주며, 유생으로서 정거(停擧)된 자도 용서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오늘은 큰 복에 감축하고 원자의 장수를 기원하는 날이니 기쁨을 표시하는 뜻으로 볼 때 마땅히 경사를 함께 나누는 거조가 있어야 한다. 경외(京外)의 100세 이상인 노인에게는 미육을 세찬의 예대로 제급하고, 일찍이 실직(實職)을 지낸 8, 9십 세와 사서인으로서 90세 되는 사람에게는 미두(米斗)를 역시 세찬의 예대로 제급하고, 경재(卿宰), 시종(侍從), 문관, 음관, 무관의 조관(朝官)으로서 도류 및 파삭 이하의 죄명이 있는 사람은 모두 탕척하고, 사서로서 도류나 경죄를 지은 사람은 모두 풀어 주고, 유생으로서 정거된 사람은 용서해 주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그중에 조관으로서 100세 노인인 전 지사 이여상은 특별히 한 자급을 올려서 이조로 하여금 구전(口傳)으로 하비(下批)하게 하라. 미육 외에 의자를 넉넉히 지급해 주고, 이어 낭관으로 하여금 문안하게 하여 나이 많은 이를 존중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 하였다. (…) [경기]

100세 노인 부류 - 광주(廣州)의 전 동지(同知) 이명기(李命起)는 103세, 유학 이춘징(李春徵)의 어미 이씨(李氏)는 103세, 양주(楊州)의 전 동지 이담(李淡)은 100세, 정헌대부(正憲大夫) 정귀건(鄭貴健)은 108세, 죽산(竹山)의 가선대부 한선이(韓善伊)는 104세, 남양(南陽)의 전 동지 최창도(崔昌道)는 100세, 이천(利川)의 통정대부(通政大夫) 김진경(金鎭景)은 100세, 가평(加平)의 정헌대부 김중기(金重基)는 107세, 양근(楊根)의 절충장군(折衝將軍) 윤성욱(尹聖郁)의 어미 김씨(金氏)는 101세, 영평(永平)의 전 동지 김득명(金得明)은 103세로 각각 미 5두, 대구어 3미, 염 3두씩이다. -

일찍이 실직을 지낸 80세 이상인 부류 - 광주 128인, 양주 12인, 파주(坡州) 31인, 교동(喬桐) 5인, 수원(水原) 46인, 장단(長湍) 11인, 남양 13인, 풍덕(豐德) 1인, 통진(通津) 6인, 이천 6인, 고양(高陽) 2인, 안산(安山) 1인, 안성(安城) 1인, 마전(麻田) 1인, 양근 3인, 교하(交河) 1인, 양천(陽川) 1인, 영평 5인, 용인(龍仁) 2인, 금천(衿川) 2인, 양성(陽城) 1인, 포천(抱川) 1인, 적성(積城) 2인, 과천(果川) 6인, 연천(漣川) 3인, 지평(砥平) 1인, 음죽(陰竹) 3인에게 각각 미 5두씩이다. -

사서인으로서 90세 이상인 부류 - 광주 10인, 양주 19인, 여주(驪州) 15인, 파주 2인, 교동

6인, 수원 6인, 장단 35인, 부평(富平) 4인, 인천(仁川) 2인, 죽산 5인, **남양** 11인, (…) 각각 미 5두씩이다. -

이상 100세 노인 부류 10인, 일찍이 실직을 지낸 80세 이상인 부류 295인, 사서인으로서 90세 이상인 부류 273인에게 미 192석 10두, 대구어 30미, 염 2석을 제급하였다. (…)

○ 금부가 아뢰기를, "도배(徒配)한 죄인인 홍천현(洪川縣)의 양훈(梁塤), 원주목(原州牧)의 신오(申晤), 송화현(松禾縣)의 이홍운(李鴻運), 장련현(長連縣)의 남해원(南海源), 평산부(平山府)의 채현일(蔡顯一), 봉산군(鳳山郡)의 서윤재(徐潤載), 태안군(泰安郡)의 우척하(禹拓夏), 연산현(連山縣)의 성치봉(成致鳳), 아산현(牙山縣)의 장집소(張集紹), 비인현(庇仁縣)의 한용탁(韓用鐸), 공주목(公州牧)의 성정주(成鼎柱), 당진현(唐津縣)의 신광승(申光升) 한산군(韓山郡)의 김최환(金崔煥), 해남현(海南縣)의 민수익(閔修益)과 유(流) 3000리로 정배한 죄인인 해남현의 채현구(蔡顯九), 울산부(蔚山府)의 김희채(金熙采), 창원부(昌原府)의 구수온(具修溫)과 정배(定配)한 죄인인 서천군(舒川郡)의 맹지대(孟至大)와 투찬(投竄)한 죄인인 **남양부(南陽府)**의 현중조(玄重祚)와 유찬(流竄)한 죄인인 남해현의 유의(柳誼), 강진현(康津縣)의 신응호(申膺祜), 삭주부(朔州府)의 이석하(李錫夏), 창성부(昌城府)의 홍병익(洪秉益), 종성부(鍾城府)의 박길원(朴吉源)과 그 지방에 정배한 죄인인 창원부의 유문식(柳文植), 진산군(珍山郡)의 신사원(申史源)과 찬배한 죄인 의흥현(義興縣)의 이치중(李致中), 장기현(長鬐縣)의 송징일(宋徵一)과 투비(投畀)한 죄인인 양주목(楊州牧)의 이서구(李書九), 충군(充軍)한 죄인인 선천부(宣川府)의 윤진오(尹進五) 등을 모두 풀어 주라고 각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였고, 죄명을 탕척하고 향리(鄕里)로 방축(放逐)한 죄인인 허상(許鏘)과 아직 잡아오지 못한 죄인인 백치 첨사(白峙僉使) 고수익(高壽翼), 전 경산 현감(慶山縣監) 신광호(申光祜), 전 하양 현감(河陽縣監) 홍낙교(洪樂敎), 전 수문장 정하(鄭夏), 전 구산 첨사(龜山僉使) 이운택(李雲澤), 전 적량 첨사(赤梁僉使) 권응필(權應弼), 전 제포 만호(薺浦萬戶) 김경리(金擎履) 등은 죄명을 일체 탕척하였습니다."

하였다. (…)

○ 형조의 도류(徒流) 이하의 형을 받고서 풀려난 부류는 다음과 같다. [경기]

무기한 정배한 광주부(廣州府)의 이대철(李大喆), 양주목(楊州牧)의 정혁주(鄭赫周) - 조흘강(照訖講)에서 동생을 위해 대강(代講)하였다. - 와 안질(安耋), - 조흘강에서 조카를 위해 대강하였다. - 죽산부(竹山府)의 박응섭(朴應燮), - 조흘강에서 호적(戶籍)이 어긋났다. - 교동부(喬桐府)의 김금동(金今同), - 어용겸(魚用謙)이 데리고 간 하인이다. - 여주목(驪州牧)의 진춘기(秦春起), 지평현(砥平縣)의 양익대(梁益大), 음죽현(陰竹縣)의 김대흥(金大興), 풍덕부(豐德府)의 이성갑(李聖甲) - 나졸(羅卒)로서 공인(貢人)을 토색했다. - 과 충군(充軍)한 풍덕부의 한희풍(韓希豐), - 종각 습독(鍾閣習讀)이다. - 인천부(仁川府)의 황인혁(黃仁赫), **남양부(南陽府)**의 박인협(朴仁浹) - 전교(傳敎)로 인하여 충군하였다. - 이다. (…)

강 命百歲及八九十歲老人米肉依歲饌例題給其中百歲老人前知事 李如尙特加一資優給衣資文蔭武徒流罷削以下罪名及士庶徒流輕罪竝蕩滌儒生停擧亦爲分揀

목 敎曰今日卽仰祝純嘏俯祈永命之日也其在志喜之意當有同慶之擧京外百歲以上老人米肉依歲饌例題給曾經實職年八九十士庶年九十米斗亦依歲饌例題給卿宰侍從文蔭武朝官徒流及罷削以下罪名竝蕩滌士庶徒流輕罪竝放儒生停擧分揀事分付又敎曰其中朝官百歲老人前知事 李如尙特加一資令該曹口傳下批米肉外優給衣資仍令郎官存問以示尊年之意 (…) 京畿百歲老人秩 廣州前同知李命起年一百三幼學李春徵母李氏年一百三楊州前同知 李淡年一百正憲鄭貴健年一百八竹山嘉善

韓善伊年一百四南陽前同知 崔昌道年一百利川通政金鎭景年一百加平正憲金重其年一百七楊根折衝尹聖郁母金氏年百一永平前同知 金得明年一百三各米五斗大口魚三尾鹽三斗曾經實職年八十以上秩 廣州一百二十八人楊州十二人坡州三十一人喬桐五人水原四十六人長湍十一人南陽十三人豊德一人通津六人利川六人高陽二人安山一人安城一人麻田一人楊根三人交河一人陽川一人永平五人龍仁二人衿川二人陽城一人抱川一人積城二人果川六人漣川三人砥平一人陰竹三人各米五斗士庶年九十以上秩 廣州十人楊州十九人驪州十五人坡州二人喬桐六人水原六人長湍三十五人富平四人仁川二人竹山五人南陽十一人 (…) 各米五斗以上百歲老人十人曾經實職年八十以上二百九十五人士庶年九十以上二百七十三人米一百九十二石十斗大口魚三十尾鹽二石 (…) 禁府啓言徒配罪人洪川縣 梁塤 原州牧 申晤 松禾縣 李鴻運 長連縣 南海源 平山府 蔡顯一 鳳山郡 徐潤載 泰安郡 禹拓夏 連山縣 成致鳳 牙山縣 張集紹 庇仁縣 韓用鐸 公州牧 成鼎柱 唐津縣申光升韓山郡 金最煥 海南縣 閔修益流三千里定配罪人海南縣 蔡顯九 蔚山府 金熙采 昌原府 具修溫定配罪人舒川郡 孟至大投竄罪人南陽府 玄重祚流竄罪人南海縣 柳誼 康津縣 申膺祜 朔州府 李錫夏 昌城府 洪秉益 鍾城府 朴吉源卽其地方定配罪人昌原府 柳文植 珍山郡中史源竄配罪人義興縣 李致中 長鬐縣 宋徵一投畀罪人楊州牧 李書九充軍罪人宣川府 尹進五等竝放送事分付各該道臣而罪名蕩條逐鄕罪人許鎔未及拿來罪人白峙僉使 高壽翼 慶山前縣監 申光祜 河陽前縣監 洪樂敎前守門將鄭夏 龜山前僉使 李雲澤亦梁前僉使 權應弼 薺浦前萬戶 金擎履等罪名一體蕩滌 (…) 刑曹徒流以下放送秩京畿不限年廣州府 李大喆 楊州牧 鄭赫周 照訖講爲弟代講 安耋 照訖講爲姪代講 竹山府 朴應燮 照訖講戶籍相左 喬桐府 金今同 魚用謙帶率下人 驪州牧 秦春起 砥平縣 梁益大 陰竹縣 金大興 豊德府 李聖甲 以羅卒討索貢人充軍豊德府 韓希豊 鍾閣 習讀 仁川府 黃仁赫 南陽府 朴仁浹 因傳敎充軍 江原道徒年 (…)
<일성록, 정조16년(1792) 6월 18일(을유)>

정치/행정

안숙(安橚)을 남양부사로 삼다

강 2차 정사를 하였다.

목 ○ 정만시(鄭萬始)를 부응교로, 윤우열(尹羽烈)을 부교리로, 이병정(李秉鼎)을 예조 참판으로, 이동욱(李東郁)을 병조 참판으로, 이조승(李祖承)을 형조 참판으로, 강응환(姜膺煥)을 경상 좌수사로, 구명원(具明遠)을 창성 부사(昌城府使)로, 안숙(安橚)을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강 再政

목 以鄭萬始爲副應敎 尹羽烈爲副校理 李秉鼎爲禮曹參判 李東郁爲兵曹參判 李祖承爲刑曹參判 姜膺煥爲慶尙左水使 具明遠爲昌城府使安 橚爲南陽府使

<일성록, 정조16년(1792) 9월 5일(신축)>

정치/행정

구담(具紞)을 남양부사로 삼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참의 조윤대(曺允大)가 나왔다.

목 ○ 박우원(朴祐源), 홍성연(洪聖淵), 홍인호(洪仁浩), 임제원(林濟遠), 이수하(李秀夏), 서영보(徐榮輔)를 승지로 삼았다. 이재학(李在學)을 이조 참판으로, - 정범조(丁範祖)와 심환지(沈煥之)는 새로 통망(通望)된 사람이다. - 유강(柳炕)을 대사간으로, 이동직(李東稷)을 집의로, 유운우(柳雲羽)를 사간으로, 조언철(趙彦哲)을 장령으로, 장지면(張至冕)을 지

평으로, 홍성연(洪聖淵)을 곡산 부사(谷山府使)로, 구담(具紞)을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강 有政 吏曹參議 曺允大進

목 以朴祐源 洪聖淵 洪仁浩 林濟遠 李秀夏 徐榮輔爲承旨 李在學爲吏曹參判 範祖 煥之新通也 柳炯爲大司諫 李東稷爲執義 柳雲羽爲司諫 趙彦哲爲掌令張至冕爲持平 洪聖淵爲谷山府使 具紞爲南陽府使

<일성록, 정조16년(1792) 9월 6일(임인)>

정치/행정

남양인에게 노인직을 내리다

강 노인직(老人職)에 대해 하비(下批)하였다.

목(…) 남양(南陽) - 사서인으로 절충장군 김세중(金世仲) 등 3인, 사과(司果) 박대복(朴大福)이다. - (…) 이상은 모두 노인직으로 가자하도록 하비하고, 부녀자는 봉작(封爵)하였다.

강 老職人下批

목 (…) 南陽 士庶折衝金世仲等三人司果 朴大福 (…) 竝老職加資下批婦女封爵

<일성록, 정조17년(1793) 1월 2일(병신)>

정치/행정

남양부사 구담(具紞)을 경기 병마좌방어사에 단부하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참판 심환지(沈煥之)가 나왔다.

목 ○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를 수원부 겸유수(水原府兼留守)에 단부(單付)하고, 남양부사(南陽府使) 구담(具紞)을 경기 병마좌방어사(京畿兵馬左防禦使)에 단부하고, 전 안산 군수(安山郡守) 신석(申昔)을 안성 군수(安城郡守)에 단부하였다. - 승전(承傳)에 따른 것이다. -

강 有政 吏曹參判 沈煥之進

목 京畿監司 徐鼎修 水原府 兼留守單付南陽府使 具紞 京畿兵馬左防禦使單付安山前郡守 申昔 安城郡守單付承傳也

<일성록, 정조17년(1793) 1월 16일(경술)>

정치/행정

남양 겸방어사의 밀부를 선전관이 전해주게 하다

강 남양 겸방어사(南陽兼防禦使)의 밀부(密符)는 선전관이 가지고 가서 전해 주게 하고 유서(諭書)는 어보(御寶)를 찍은 뒤에 정원의 하리(下吏)가 가지고 가서 전해 주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정원의 계청(啓請)으로 인하여 윤허한 것이다.

강 命南陽兼防禦使密符使宣傳官賚傳諭書安寶後使院吏賚傳

목 因政院啓請允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1월 16일(경술)>

정치/행정

이익진(李翼晉)을 남양부사로 삼다

강 정사가 있었다. 이조 판서 김사목(金思穆)이 나왔다.

목 ○ 이석하(李錫夏)를 교리로, 이익진(李翼晉)을 **남양부사(南陽府使)**로 삼았다.

강 有政 吏曹判書 金思穆進

목 以李錫夏爲校理 李翼晉爲**南陽府使**

<일성록, 정조17년(1793) 11월 24일(계축)>

정치/행정

전 남양부사 구담(具紞)을 전례로 선전관 구재숙(具載肅)을 개차(改差)하다.

강 선전관 구재숙(具載肅)을 개차(改差)하였다.

목 ○ 병조가 아뢰기를, "방금 선전관청의 첩보를 받아 보니 전 **남양부사(南陽府使)** 구담(具紞)이 탐장(貪贓)으로 법전에 따라 천망(薦望)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아들인 구재숙도 탐리(貪吏)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천망에서 뺐다고 합니다. 선전관 구재숙을 선전관청에서 이미 탐리의 자식이란 이유로 천망에서 뺐으니, 개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改差宣傳官 具載肅

목 兵曹啓言卽接宣傳官廳牒報則**南陽前府使** 具紞以貪贓依法典拔薦其子載肅亦以貪吏之子拔薦云矣宣傳官 具載肅該廳旣以貪吏子拔薦請改差允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11월 30일(기미)>

정치/행정

원소의 식목과 보토에 공이 있는 남양인을 시상하다

강 원소(園所)에 나무를 심고 보토(補土)할 때 감동(監董)한 원관(園官) 이하에게 차등 있게 시상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이번 원소에 나무를 심고 파종하며 제정(祭井)의 석축(石築)을 개수하고 동구(洞口)와 화소(火巢)의 안팎에 보토할 때의 재물과 인력은 완천고(筦千庫)에서 지불하고 상격(賞格)은 외탕고(外帑庫)에서 지불하라고 장용내영(壯勇內營)에서 외영(外營)에 분부하라. 원관(園官)인 영(令) 조경진(趙景鎭)이 누구의 아들이던가. 수령의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려 직위를 올려 차하(差下)하라. 영 홍후영(洪後榮)은 날짜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 거론하지 말라. 원역(員役)과 원군(園軍) 등에게는 판하(判下)한 대로 외탕고에서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라. 차사원(差使員) 조윤식(曺允植)은 해가 갈수록 그 노고가 더욱 두드러지지만, 수령에 제수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이제 우선 시상하지 말라. 차사원 장세환(張世紈)은 연전에 나무를 심는 일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변장에서 체차되어 올라왔으나, 앞으로 나무를 심을 때까지 우선 기다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그에게도 시상하지 말라. 나머지 서울 각 군영(軍營)의 장교(將校)와 군졸(軍卒)에게는 각 해당 군영에서 규례를 참고하여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게 하라. **남양(南陽)** 사람인 김수창(金守昌)과 청양(靑陽) 사람 최동이(崔同伊)는 기유년(1789, 정조13) 이후로 연이어 공로를 바쳤고, 평창(平昌) 사람 송필수(宋必秀)는 3년 연속 공로를 바쳤으니, 통정대부(通政大夫)의 첩가(帖加)를 작성해 주라. 안성(安城)의 읍교(邑校) 절충장군 장소(張簫)·안진복(安鎭福)은 상으로 한 자급(資級)을 더해 주라. 절충장군 이세국(李世國)과 이세부(李世孚)는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첩가를 작성해 주라. 읍리(邑吏) 이인욱(李仁郁)은 통정대부의 첩가를 작성해 주라. 모두 오늘 구전

정사로 하비(下批)하라.” 하였다.

강 園所植木補土時監董園官以下施賞有差

목 敎曰今番園所植木播種及祭井改石築洞口火巢內外補土時物力自筦千庫上下賞格自外帑庫上下事令壯勇內營分付外營園官令趙景鎭是誰之子守令待窠陞差令洪後榮日淺勿論員役園軍等當依判下自外帑庫分等施賞差使員 曺允植其勞年年愈著除郡屬耳今姑置之差使員 張世紘年前爲植木邊將無端遞來姑待來頭植木次今番則亦爲置之其餘京各營校卒各該營考例分等施賞南陽人金守昌 靑陽人崔同伊己酉以後連爲效勞平昌人宋必秀連三年效勞通政帖加成給安城邑校折衝張簫 安鎭福賞加折衝李世國 李世孚 嘉善帖加邑吏李仁郁通政帖加今日口傳下批

<일성록, 정조18년(1794) 3월 18일(을사)>

정치/행정

남양인 김오성(金五成)을 특별히 시상하다

강 수원의 절충장군(折衝將軍) 김오성(金五成)에게 특별히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목 ○ 수원 유수 조심태의 장계에, “경기 감사 서용보(徐龍輔)의 장계로 인하여, 절충장군 김오성이 인명을 건져서 살려 낸 일을 사실대로 장계로 보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달 3일에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익진(李翼晉)**이 보내온 첩정(牒呈)에, ‘사공과 격군(格軍)들을 불러들여 조사하니, 강화(江華) 황청포(黃淸浦)의 뱃사람 김학기(金學紀)·김종달(金宗達)·유봉운(劉奉云)·정복이(鄭福伊)·정득이(鄭得伊) 등이 고하기를, 「**성역(城役)**에 쓸 목재 5그루를 풍덕부(豐德府)에서 배로 운반하다가 지난달 28일 대양(大洋)에서 치패(致敗)되었는데, 배와 목재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저희들은 갑판과 돛에 의지한 채 표류하여 대부도(**大阜島**) 영전포(營田浦)의 포구에 이르러 생사의 기로를 헤매고 있을 때 영전포의 동리에 사는 김오성이라는 자가 동네 백성들을 모아 즉시 구해 주었으므로 모두 살아났고 물에 떠내려갔던 목재도 모두 건져 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김오성이 비록 대단히 가상하지만 거센 파도를 무릅쓰고 배를 타고서 구조하여 살려 낸 것과는 차이가 있는데, 장계로 보고하여 상을 줄 것을 청하였으니 법과 전례에 어긋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고을에서 체문(帖文)을 발급하여 곡식을 준 뒤에 본영에 보고하여 처리하라는 뜻으로 말을 만들어 제사(題辭)를 작성하여 보내겠습니다. 사공과 격군 등은 참으로 대단히 불쌍하니 역시 본영에서 넉넉히 뱃삯을 주겠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곡식을 제급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니, 특별히 시상한 뒤에 경기 감영에 보고하여 감사가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강 命**水原**折衝金五成別般施賞

목 該留守 **趙心泰**狀啓以爲因京畿監司 徐龍輔狀啓有折衝金五成拯活人命事據實狀聞之命矣本月初三日**南陽府使** 李翼晉牒呈內沙格等招致查問則江華黃淸浦船人金學紀 金宗達 劉奉云 鄭福伊 鄭得伊等所告**城役**所材木五株自豐德府船運去月二十八日致敗於大洋船隻材木不知去處渠等因緣橋板與帆席漂到**大阜島**營田浦口方在死生未分之際本浦洞人金五成者聚集洞民卽地救出得以全活所漂林木亦皆極出云五成雖極嘉尙與冒險濤乘船救活有異而狀聞請賞有違法例故自該邑帖給穀包後報臣營區處之意措辭題送沙格等誠切可矜亦自臣營優給船料敎以不可題給穀包而止別船施賞後報營狀聞事回論

<일성록, 정조18년(1794) 9월 13일(정유)>

정치/행정

남양 등에 파견된 암행어사와 사관이 별유하다

강 경기 각 고을 암행 어사와 적간(摘奸)하러 간 사관(史官)에게 별유(別諭)하였다. 광주(廣州)·죽산(竹山)·양성(陽城)의 어사 박윤수(朴崙壽), 고양(高陽)·파주(坡州)·장단(長湍)·풍덕(豐德)의 어사 홍낙유(洪樂游), 이천(利川)·여주(驪州)·음죽(陰竹)의 어사 정내백(鄭來百), 적성(積城)·마전(麻田)·연천(漣川)·삭녕(朔寧)의 어사 정약용(丁若鏞), 양천(陽川)·김포(金浦)·부평(富平)·통진(通津)·교하(交河)의 어사 채홍원(蔡弘遠), 영평(永平)·포천(抱川)의 어사 정이수(鄭履綏), 금천(衿川)·안산(安山)·**남양(南陽)**·인천(仁川)의 어사 유사모(柳師模), 과천(果川)·용인(龍仁)·진위(振威)의 어사 이조원(李肇源), 양지(陽智)·안성(安城)의 어사 정동관(鄭東觀), 양근(楊根)·가평(加平)의 어사 정만석(鄭晩錫) 및 교동(喬桐)·강화(江華)를 적간한 사관 조석중(曺錫中), 양주(楊州)·광주(廣州)를 적간한 사관 서준보(徐俊輔)와 구득로(具得魯), 금천(衿川)·**수원(水原)**·광주(廣州)를 적간한 사관 정문시(鄭文始), 지평(砥平)을 적간한 사관 이면승(李勉昇)이다.

목 ○ 별유에, "수령의 잘잘못을 규찰하고 단속하며 민간의 고통을 살피는 것이 어사의 직임이다. 수놓은 옷을 입는 것은 그 은총을 드날리기 위함이요, 도끼를 지니는 것은 그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근래 혹 각 도(道)에 나간 사람들이 그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대놓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찌 전적으로 그 사람들만을 책할 일이겠는가. 사람을 제대로 뽑지 못한 조정에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파견하지 않는다면 내가 구중궁궐에서 어떻게 실정을 제대로 살필 수 있겠는가. 더구나 지금 천 리 되는 경기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혜택이 아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고 폐단이 위로 임금에게 보고되지 않아 마을 개가 꼬리 치지 않고 못에 기러기가 모여들 정도로 황폐해지고 있으니, 백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어사뿐이며 관리들이 흘끔거리며 두려워하는 것도 오직 어사뿐이다. 조정에서 상황을 물어보고서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어사의 말에 의해서이니, 그의 말을 믿고 그에 따라 증험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대들에게 나누어 명한 것이다. 보고 듣는 것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그 종적을 비밀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몇 고을을 넘지 않게 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 암행 대상 고을은 아래에 열거하였으니 스스로 살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대들은 맡은 직분을 삼가서 관부(官府)와 시장(市場), 촌락(村落)을 드나들면서 세세히 조사해서 조정에 돌아왔을 때에 일일이 조목별로 열거하여 아뢰도록 하라. 관인(官印)이 찍힌 문부(文簿)를 포착한 경우가 아니면 혹시라도 경솔하게 먼저 봉고(封庫)하지 말라. 무릇 황정(荒政)에 도움이 되는데도 아직 시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탐문하여 아뢰고, 특별히 선발한 뜻을 저버리지 말고 그 직분에 걸맞게 하라.

첫째, 흉년에 재결(災結)을 배분하는 일은 실로 수량대로 백성들에게 혜택이 미치기가 어렵다. 수령이 사사로이 쓰는 것과 이향(吏鄕)이 훔쳐 내는 것에 대해 특별히 살피도록 하라.

둘째, 산화전(山火田)에 대해 지나치게 조세를 거두는 폐단은 곳곳마다 다 그러하다. 지난번 전라 감사의 장계로 인하여 여러 도에 엄하게 신칙하였는데, 과연 실효가 있는지 각별히 염탐하고 법을 범한 자는 드러나는 대로 논계(論啓)하라.

셋째, 지난번 진휼청(賑恤廳)의 초기(草記)에 따라 버려진 아이를 거두어 기르는 일을 서울과 지방에 엄히 신칙하라고 명을 내렸다. 수령들이 과연 마음을 다해 왕명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가(公家)에서 먹이라고 보내 준 곡식이 또한 중간에서 새 나가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각별히 염문(廉問)하도록 하라.

넷째, 이번에 정퇴(停退)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 납부하게 한 것은 한결같이 민호(民戶)를

뽑은 것에 따라 하도록 하였다. 만약 그 대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했거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들어가서 빈부가 서로 뒤섞이고 허실이 서로 뒤바뀐다면, 이것이 어찌 민호를 뽑아 정퇴하거나 대신 납부하게 한 본뜻이겠는가. 방방곡곡을 몰래 다니면서 먼저 모호(某戶)가 우심(尤甚)과 지차(之次) 중 어느 등급에 들어갔는지를 물어보고 그 정퇴하거나 대신 납부하는 것을 어떻게 해 주었는지를 견감하여 구휼해 주는 조건과 비교해 보고서 고찰하여 논계하도록 하라." 하였다.

강 別諭京畿各邑暗行御史摘奸史官 廣州 竹山 陽城 御史 朴崙壽 高陽 坡州 長湍 豐德 御史 洪樂游 利川 驪州 陰竹 御史 鄭來百 積城 麻田 漣川 朔寧 御史 丁若鏞 陽川 金浦 富平 通津 交河 御史 蔡弘遠 永平 抱川 御史 鄭履綏 衿川 安山 **南陽** 仁川御史 柳師模 果川 龍仁 振威 御史 李肇源 陽智 安城 御史 鄭東觀 楊根 加平 御史 鄭晩錫 喬桐 江華摘奸史官 曺錫中 楊州 廣州摘奸史官 徐埈輔 具得魯 衿川 **水原** 廣州摘奸史官 鄭文始 砥平摘奸史官 李勉昇

목 別諭曰糾檢守宰之滅否廉訪閭里之疾苦御史職耳衣繡章其寵也持斧尙其威也近或直指諸路人多不稱其職夫豈專責於人者責在朝廷之未能擇人若因其職之不稱而不之汎遣則予在九重何以察眉況今邦畿千里歲云荒矣惠不得下究弊不得上聞村抱不氓澤鴻將集則民之懸懸以望者惟御史官之覘二以瞿者惟御史朝廷之憑問而勸懲之者亦惟御史之言是信是驗於是乎有分命爾等之擧而聞見之專也蹤跡之秘也莫如一人無過數郡柱列下方自可按知爾等愼乃所職出沒於官府場市村落之間細加採摭還朝時一一條列以啓除非印簿之見執無或輕先封庫凡有裨於荒政而未及施者亦爲探聞無負特簡之意俾稱厥職一荒歲俵災實難如數及民守令之私用吏鄕之偸竊另加採察一山火田濫稅之弊無處不然向因完伯狀本嚴飭諸道果有實效與否各別廉探犯者隨現論啓一向於賑恤廳草記以遺棄收養事有嚴飭京外之命矣爲守令者果然盡心對揚而公家飼饋之穀亦不至於中間消融乎此亦各別廉問一今番停代一從抄戶而爲之若或當入而不入不當入而入貧富相混虛實相蒙則是豈抄戶停代之本意哉潛行坊曲先問某戶之入於尤甚之次間何等而其停其代之爲如何較看於鐲恤條件以爲考察論啓之地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16일(경자)>

정치/행정

암행어사가 남양부사를 치하하다

강 경기 일대 암행 어사와 적간한 사관이 서계와 별단을 올렸다.

목 (…) ○ 금천, 인천, 안산, **남양** 등 4개 읍의 어사 유사모(柳師模)의 서계에, (…)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익진(李翼晉)**은, 자질이 치밀하고도 명철하여 근면하고 성실하게 다스렸습니다. 몸소 전지(田地)를 다니면서 재결의 배분을 균등하게 하였고 민호를 뽑은 장부를 직접 들고서 민호마다 공평하게 배분하였습니다. 곡물을 낭비하는 것이 염려되면 시장에서 술 빚어 파는 것을 금지시켰고 비용을 줄이는 문제로 고심이 되면 군사를 점고할 때 말〔馬〕에 대한 것은 제외시켰으므로 칭찬하는 말이 자자하고 이웃 고을에서도 부러워하며 경탄합니다. (…)

강 畿路暗行御史摘奸史官進書啓別單

목 (…) 衿川 仁川 安山 **南陽**等四邑御史 柳師模書啓曰 (…) **南陽府使** 李翼晉本之綜明濟以勤孜躬履田陞而災俵得均手執抄簿而戶排稱平慮糜穀則場市禁釀軫省費則戎點除馬譽聲藹蔚隣郡艷歎 (…)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16일(경자)>

정치/행정

남양부사의 치적을 논의하다

강 광주 부윤(廣州府尹) 서미수(徐美修)는 엄하게 추고하고, 인천 등 여러 고을의 수령은 모두 그대로 두었다.

목 ○ 이조 판서 이치중이 아뢰기를, "인천 부사(仁川府使) 이형필(李衡弼),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익진(李翼晉)**, 양천 현감(陽川縣監) 심공엽(沈公燁), 교하 군수(交河郡守) 정재운(丁載運), 풍덕 부사(豐德府使) 이문혁(李文爀), 양주 목사(楊州牧使) 한광근(韓光近), 죽산 부사(竹山府使) 유인철(柳仁喆), 광주 부윤 서미수, 수원 판관(**水原判官**) 정동협(鄭東協), 진위 현감(振威縣監) 오재두(吳在斗), 용인 현감(龍仁縣監) 서이수(徐理修), 가평 군수(加平郡守) 유득공(柳得恭), 영평 현령(永平縣令) 박규순(朴奎淳), 포천 현감(抱川縣監) 조중진(趙重鎭), 여주 목사(驪州牧使) 유강(柳炕), 이천 부사(利川府使) 남인로(南寅老), 음죽 현감(陰竹縣監) 윤명기(尹命基), 양지 현감(陽智縣監) 홍욱호(洪旭浩) 등은 간혹 잘 다스린다는 명성은 있으나 특출난 치적은 별로 없고, 혹 잘못된 정사는 있었으나 또한 드러난 죄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김포 군수(金浦郡守) 유한준(兪漢雋)은 전에 이미 감처 받았으니, 모두 그만두소서."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서미수가 집을 관아로 삼고서는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해 염두에 두지 않았다. 만일 조심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혹시라도 이렇게 행동하겠는가. 우선 엄하게 추고하라." 하였다.

강 重推廣州府尹 徐美修 仁川等諸邑倅幷置之

목 吏曹判書 李致中啓言仁川府使 李衡弼 **南陽府** 使李翼晉 陽川縣監 沈公燁 交河郡守 丁載運 豐德府使 李文爀 楊州牧使 韓光近 竹山府使 柳仁喆 廣州府尹 徐美修 **水原判官** 鄭東協 振威縣監 吳在斗 龍仁縣監 徐理修 加平郡守 柳得恭 永平縣令 朴奎淳 抱川縣監 趙重鎭 驪州牧使 柳炕 利川府使 南寅老 陰竹縣監 尹命基 陽智縣監 洪旭浩等或有治聲而別無優異之績或有庇政而亦無顯著之罪金浦前郡守 兪漢雋則前已被勘請竝置之從之敎以徐美修之以家爲官不念癘曠苟能小心寧或若是爲先從重推考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16일(경자)>

⑶ 사법

정치/사법

의금부가 김상익(金相翊)을 남양부에 정배하겠다고 아뢰다

강 의금부가 시수(時囚) 김상익(金相翊)을 **남양부(南陽府)**에 정배하겠다고 아뢰었다.

목 없음

강 金吾以時囚金相翊 **南陽府**定配達

목 없음

<일성록, 영조52년(1776) 2월 29일(신미)>

정치/사법

남양부 정배 죄인 김상익(金相翊)을 석방하다

강 **남양부(南陽府)**에 정배한 죄인 김상익(金相翊)을 석방하였다.

목 없음

강 放**南陽府**定配罪人金相翊

목 없음

<일성록, 영조52년(1776) 4월 9일(경술)>

정치/사법

신대현(申大顯)을 남양부에 정배하다

강 신대현을 **남양부(南陽府)**에 정배하였다.

목 ○ 의금부가 아뢰기를, "현재 갇혀 있는 죄인 신대현을 경기 연안 지역으로 정배할 일로 계하하셨습니다. 장구십(杖九十)은 수속하고 **남양부**로 배소를 정하였으니, 압송하도록 하소서." 하여, 윤허하였다.

강 配申大顯于**南陽府**

목 義禁府啓言時囚申大顯畿沿定配事啓下矣杖九十收贖**南陽府**定配請押送允之

<일성록, 영조52년(1776) 10월 13일(신해)>

정치/사법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친국하다

강 금상문(金商門)에 나아가 친국을 행하였다.

목 ○ 베로 싼 익선관에 베로 만든 단령을 갖추고 여를 타고 금상문에 나아가 전좌에 올랐다.

○ 내가 이르기를, "죄인 권갑(權鉀)을 국문장에 올리라." 하였다. 문목을 낸 뒤에 내가 이르기를, "네가 공초한 것이 원익손(元翼孫)과 서로 차이가 나니 대질시키겠다. 네가 만약 사실대로 공초한다면 풀어 줄 것이다." 하였다. 권갑이 원익손과 대질한 뒤에 내가 이르기를, "권갑은 말이 궁한 것 같다." 하였다. 원익손이 다시 공초한 뒤에 내가 이르기를, "권갑의 공초가 끝내 속인 결과가 되었으니, 형장을 더 가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좌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권갑과 원익손은 이제 다시 물을 일이 없으니, 우선 **남양(南陽)**의 죄인이 들어오기를 기다려 합당하게 다시 묻도록 하고, 다른 죄인에게 차례로 따져 묻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렇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남양**의 죄인 윤제운(尹濟運)을 국문장에 올리고 문목을 낸 뒤에 각별히 엄하게 신문하도록 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계속해서 형장을 치도록 하라." 하였다. 내가 또 이르기를, "이목(李穆)의 무리가 서울 안에서 왕래한 곳과 남대문에 글을 걸어 놓았다는 말에 대해 하나하나 사실대로 고하라." 하니, 윤제운이 다시 공초하기를, "이시무(李時懋)는 이은춘(李殷春)의 집에 왕래하였으나 이목은 누구의 집에 왕래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시무와 이목두 사람을 모두 잡아왔는가?" 하니, 포도대장 장지항(張志恒)이 아뢰기를, "지금 막 잡아왔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죄인 윤흥손(尹興孫)을 국문장에 올리라." 하였다. 남대문에 글을 걸어 놓았다는 말과 사방에 전한 말을 윤흥손에게 물은 뒤에 윤제운과 대질시켰다. 윤제운이 다시 공초하기를, "남대문에 관한 말은 저는 모릅니다. 이는 윤흥손이 속여 공초한 것입니다." 하니, 윤흥손이 다시 공초하기를, "어제 정신이 없는 중에 남대문에 관한 말을 잘못 공초하였습니다." 하였다. 죄인 이시무를 재촉하여 국문장에 올렸다. 이시무에게 원정(原情)을 받은 뒤에 내가 이르기를, "공초한 것이 이랬다저랬다 하니 거짓 윤음이 나온 곳과 서울 안에 왕래한 곳을 다시 신문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시무가 이미 서울에서 베껴 왔다는 말을 공초하였는데, 여기에 의심스런 단서가 있으니 더욱 상세히 염탐해 보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죄인에게 친 신장(訊杖)이 몇 대인가? 계속해서 곤장을 치도록 하라." 하였다. 15대까지 친 뒤에 형신을 정지하고 의금부에 내렸다. 죄인 유학균(柳學均)을 국문장에 올렸다.

내가 이르기를, "유학균에게는 물을 것이 없으니 의금부에 내리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권철(權喆)과 원백손(元百孫) 등을 아울러 용서하여 풀어 주고자 한다." 하고, 내가 대신에게 물으니, 김상철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였다.

○ 하교하기를, "죄인 원백손, 권철, 조태완(趙台完), 원익손(元翼孫), 김시중(金始重), 이성운(李成運), 이규운(李奎運), 윤국진(尹國鎭), 윤범진(尹範鎭), 유학균, 양육(梁堉)은 일의 맥락상 관련된 사람으로 비록 잡혀 왔지만, 베껴 전하거나 베껴 둔 데 불과하니 별로 다시 물을 일이 없다. 또 연말을 맞았으니 의당 널리 사면하는 은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특별히 풀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드디어 여를 타고 대내로 돌아왔다.

강 御金商門行親鞫

목 具布裹翼善冠布團領乘輿詣金商門陞座○予曰罪人權鉀上之問目後予曰汝之所供與元翼孫相左面質可也汝若直招則當放送矣鉀與翼孫面質後予曰權鉀似語窮矣元翼孫更招後予曰權鉀之招終歸誣罔當加刑矣左議政 金尙喆曰鉀與翼孫今無更問之端姑待**南陽**罪人入來從當更問佗罪人次次推問好矣予曰然矣予曰**南陽**罪人尹濟運上之問目後各別嚴問可也予曰連爲勸杖予又曰李穆輩京中往來之處及南門挂書之說一一直告濟運更招曰李時懋往來於李殷春家而李穆則不知往來於誰家矣予曰李時懋 李穆兩人皆已捉來耶捕將 張志恒曰今方拿來矣予曰罪人尹興孫上之以南門挂書之說四面所傳之言問于興孫後使與濟運面質濟運更招曰南門之說渠不知此是興孫之誣招矣興孫更招曰昨日悤忙中誤以南門之說納招矣罪人李時懋催促上之時懋原情後予曰所供荒亂假綸音所出之處及京中往來處更問之予曰時懋旣以自京謄來之說納招則此有疑端詳加廉探予曰罪人訊杖幾度乎連爲勸杖至十五度停刑下府罪人柳學均上之予曰柳學均無足問下府予曰權喆 元百孫等竝欲分揀放送予詢大臣尙喆曰聖敎至當矣○敎曰罪人元百孫 權喆 趙台完 元翼孫 金始重 李成運 李奎運 尹國鎭 尹範鎭 柳學均 梁堉俱以脈絡之干連雖已就拿不過謄傳而謄寘別無更問之端又當歲末互念曠蕩之典特爲放送遂乘輿還內

<일성록, 영조52년(1776) 12월 28일(을축)>

정치/사법

병조가 박승권을 배소인 남양부로 압송하다

강 병조가 과장(科場)의 충군(充軍)한 죄인을 압송하겠다고 아뢰었다.

목 ○ 해조가 아뢰기를, "박승권(朴昇權)을 **남양부(南陽府)**에, 심원태(沈元泰)를 교동부(喬桐府)에, 종 명세(命世)를 옹진부(甕津府)에, 준이(俊伊)를 보령현(保寧縣)에 충군하여 모두 배소(配所)로 압송하겠습니다." 하였다.

강 兵曹以科場充軍罪人押送啓

목 該曹啓言朴昇權 **南陽府** 沈元泰 喬桐府奴命世 甕津府 俊伊 保寧縣充軍幷押送配所

<일성록, 정조1년(1777) 2월 17일(계축)>

정치/사법

호조에 있는 남양부 첩정을 토대로 내수사에 수본(手本)한 궁임을 치죄하다

강 내수사에 수본(手本)한 궁임(宮任)을 조율하여 죄를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목 ○ 한성부가 아뢰기를, "내수사의 계본으로 인하여 하동부(河東府)의 패선인(敗船人) 장맹용(張孟用)을 경조(京兆)에 이송하여 조율하도록 명을 내리셨습니다. 올해 4월에 하동의 뱃사람 장맹용이 의열궁(義烈宮)과 여러 궁방에 납부할 세곡을 실은 배가 난파된 일로 해궁(該宮)이 사공과 곁군(格軍)에게 침징(侵徵)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침징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에 올라와 본부(本府)에 호소하므로, 호조에 있는 **남양부(南陽府)**의 첩정(牒呈)을 가져다 살펴보니, 하동부에서 각 궁방에 바칠 세미조(稅米租)를 실은 배 한 척이 4월 28일 석수(汐水) 때에 본부 영흥도(靈興島) 뒤쪽 바다에 이르러 갑자기 대풍(大風)을 만나 배가 파손되고 세곡도 모두 유실되었으며 사공과 곁군 15명과 배를 탄 14명은 때마침 영남 조운선(漕運船)의 사공 정운경(鄭云景)에게 구조되어 겨우 살아 나왔으나, 그 가운데 화정금(火丁金)과 만년금(萬年金)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날의 대풍은 근래에 없었던 것으로 배가 파손된 것은 형세상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비단 배와 곡식이 유실되었을 뿐 아니라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은 것은 더욱 참혹한 일입니다.

바다에서 배가 침몰하여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침징하지 말도록 법전에 소상히 실려 있는데, 해궁이 공문을 받지도 않고서 해읍(該邑)에 독촉하여 유실된 곡물을 거두어 받은 것도 이미 법에서 벗어난 일인데, 도리어 장맹용이 호소한 것에 대해 곧바로 조율할 것을 청하였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내수사가 단지 해궁의 수본만을 의지한 채 본부에서 조사하며 결정하기를 기다리지도 않고 지레 먼저 아뢴 것은 더욱 몽매한 일입니다. 이는 반드시 해궁의 궁임배들이 조종하여 만든 일일 것이니, 그 궁임 등을 본부에서 조율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하고, 선인(船人)을 조율하는 것은 본 사실이 이미 이러하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무릇 궁방(宮房)의 수본을 엄히 방지하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이 일에 있어서는 이미 첨가하여 실은 사목(事目)을 어기고 또 명목을 농간한 의심스런 단서가 있으므로, 규례에 따라 계하하였다. 경의 부서에서 이처럼 탈을 잡아 아뢴 것은 매우 가상하다. 청한 대로 시행하여 후일 다른 궁방을 징계하는 방도로 삼고, 위 항목의 두 건은 호조와 형조에 분부하여 공평하게 조사하여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手本內司之宮任照律科治

목 漢城府啓言因內需司啓本河東府敗般人張孟用移京兆照律事命下矣今四月河東船人張孟用以義烈宮與諸宮房所納稅穀敗船事該宮侵徵於沙格不堪其督徵上京呼訴於臣府故取考戶曹所在**南陽府**

牒呈則河東府各宮房所納稅米租所載船一隻四月二十八日夕水到于本府靈興島後洋猝遇大風致敗船隻與稅穀沒數漂失不知去處沙格十五名騎船內十四名適因嶺南漕船沙工鄭云景之所救極活堇得生出其中火丁金萬年金淹死洋中伊日大風亦是挽近之所無船隻之致敗勢所固然非但船穀之漂失人命淹死尤爲慘然凡大洋致敗人物淹死則勿爲侵徵昭載法典而該宮不有捧甘督令該邑徵捧漂失之穀物已是法外反以張孟用之呼訴直請照律殊極駭然內需司之只憑該宮之手本不待臣府之査決徑先啓聞尤涉矇然此必是該宮所任輩慫慂之致其所任等自臣府照律科治而船人照律一款本事旣如此何以爲之敎以大抵宮房手本非不言嚴防而至於玆事旣違添載之事目又有幻名之疑端故循例啓下矣卿府如是執奏殊可尙也所請依施以爲後日他宮房懲戢之道而上項兩件事分付戶刑曹使之公覈酌處
<일성록, 정조3년(1779) 12월 28일(무인)>

정치/사법

남양의 전례로 시행한 파주 별효사 전시의 상격 문제로 승지 심염조(沈念祖)를 추고하다

강 승지 심염조(沈念祖)를 엄하게 추고하였다.

목 ○ 하교하기를, "이번 파주(坡州) 별효사(別驍士) 전시(殿試) 때의 상격(賞格)을 한결같이 재작년 **남양(南陽)**과 **수원(水原)**에서 징발해 온 군교(軍校)를 시사(試射)할 때의 전례에 의거하여 반상(頒賞)하게 하였다. 그런데 요즘 해방(該房)이 하는 일은 직접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매번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마침 의심이 생겨 반상 별단(頒賞別單)을 가져다 조사해 보았는데, 과연 대단히 살피지 못한 것이었다. 이처럼 한다면 위무(慰撫)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별효사 중에서 거수(居首)한 사람의 성적이 3발을 맞혀 4분(分)을 얻은 것은 아니니 작년의 전례에 의거하여 가자(加資)하고, 변(邊)에 2발을 맞힌 사람과 1발을 맞힌 사람도 작년의 전례에 의거하여 반숙마첩(半熟馬帖), 또는 아마첩(兒馬帖)을 등급을 나누어 사급(賜給)하되 대목(代木)과 대포(代布)를 체하(帖下)하는 경우에도 즉시 분급(分給)하며, 초시(初試)에 입격(入格)한 사람들에게 각각 목(木) 1필(疋)을 해청(該廳)에서 시상(施賞)하라. 이어 총수(摠帥)로 하여금 이러한 뜻으로 관문(關文)을 베껴 해당 목사(牧使)에게 분부하게 하여 효유(曉諭)한 뒤에 분급하도록 하라. 그때의 해방 승지를 엄하게 추고하라." 하였다.

강 重推承旨 沈念祖

목 敎曰今番坡州別驍士殿試時賞格一依再昨年**南陽** **水原**徵來軍校試射時例使之頒賞而近來該房事躬不致察則每多誤錯之故今適起疑取考頒賞別單果然大段不審如此則慰悅之意安在哉別驍士居首人旣非三中四分依昨年例加資邊二中人一中人亦依昨年例半熟馬 兒馬帖等賜給帖下代木布亦卽分給初試入格人各木一疋自該廳施賞仍令總帥以此意謄關分付該牧使處曉諭後分給其時該房承旨重推
<일성록, 정조4년(1780) 9월 9일(갑신)>

정치/사법

암행어사의 복계로 남양부사를 파직하다

강 이조 판서 이연상이 홍충 어사 이정운의 서계에 대해 복계(覆啓)하였다.

목 ○ 이연상이 아뢰기를, "홍충 어사 이정운의 서계에, '청양 현감(靑陽縣監) 이명우(李命瑀)는 공문(公門)에서 아전을 욕하였으니 위엄을 손상시켰음을 알 만하고, 그가 아끼는 계집종의 해괴한 행동은 비방을 일게 한 것이 적지 않으며, 환곡을 거두지 못하고서 번질한 것, 진조(賑租)를 색리(色吏)가 훔쳐 먹은 것, 복사(覆沙)되었다가 환기(還起)한 전답을 아

전이 영탈(永頉)로 기록한 것을 멍청하게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괴산 군수(槐山郡守) 성광묵(成光默)은 늘 술에 취해 있으면서 술김에 과도하게 형장(刑杖)을 쓰다가 순영(巡營)에서 정배(定配)한 아전을 별도로 장을 쳐 혹형(酷刑)을 가해 끝내 죽게 하였습니다.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의로(李宜老)는 애첩이 권세를 부리고 아객(衙客)이 정사에 관여하였으며, 널리 우속(牛贖)을 거둔 것, 강제로 군전(君錢)을 거둔 것, 백성의 돈을 강제로 빌린 것, 세미(稅米)를 지나치게 거둔 것, 환자(還上)를 가분(加分)한 것, 형구(形具)가 격식에 어긋난 것 모두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죄상(罪狀)을 모두 파직한 뒤에 나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하교하기를, "청양 현감 이명우, 괴산 군수 성광묵, **남양부사** 이의로는 파직한 뒤에 나문하고, 전 황간 현감 이운영, 전 서천 군수 유지양, 전 영동 현감 윤창주, 청안 현감 이면기, 전 부여 현감 신대권, 보은 현감 권제응, 전 보은 현감 이천목, 태안 군수 박류, 전의 현감 이득원, 인천 부사 윤심위, 전 인천 부사 김근행, 전 파주 목사 이장한은 나처하고, 홍주 목사 민태혁, 대흥 군수 박화원, 율봉 찰방 백사근은 파직하라." 하였다.

강 吏曹判書 李▣祥以洪忠御史 李鼎運書啓覆啓

목 ▣祥啓言洪忠御史 李鼎運書啓以爲靑陽縣監 李命瑀公門詬吏損威可知嬖婢駭擧貽譏不少還穀未捧反作賑租之色吏偸食田畓覆沙之還起吏錄永頉矇不覺察槐山郡守 成光默醉多醒少酗杖過度巡營定配之吏別杖酷刑終至致命**南陽府使** 李宜老房嬖用事衙客干政廣徵牛贖勤收軍錢民錢之强貸稅米之濫捧還上加分刑具之違則俱係難恕云其罪狀請竝令先罷後拿從之 (…) 敎曰靑陽縣監 李命瑀槐山郡守 成光默 **南陽府使** 李宜老先罷後拿黃澗前縣監 李運永 舒川前郡守 柳知養 永同前縣監 尹昌柱 淸安縣監 李勉基 扶餘前縣監 申大權 報恩縣監 權濟應前縣監 李天穆 泰安郡守 朴壎全義縣監 李得源 仁川府使 尹心緯前府使 金謹行 坡州前牧使 李章漢拿處洪州牧使 閔台嬅 大興郡守 朴華源 栗峰察訪 白師謹罷職

<일성록, 정조5년(1781) 2월 29일(임신)>

정치/사법

전 남양부사 이의로(李宜老)를 조율토록 명하다.

강 이의로(李宜老)를 조율(照律)하라고 명하였다.

목 ○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의로는 첩실(妾室)이 제멋대로 굴어 뇌물을 받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고 아객(衙客)이 정사에 간여하여 뭇 백성의 원망이 벌 떼처럼 일어났으며, 여기저기서 우속(牛贖)을 징구(徵求)하고 강제로 군전(軍錢)을 징수하며 창고의 곡물을 가분(加分)하고 형구(刑具)를 법식에 어긋나게 한 죄가 있으니, 의처(議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공술한 바가 비록 매우 모호하지만 허다한 불법 행위에 대해 모두 발명한 것이 없으니, 초기(草記)로 조율하라." 하였다.

강 命李宜老照律

목 義禁府啓言**南陽前府使** 李宜老房嬖用事賂聲頗多衙客干政衆怨明興廣徵牛贖勒收軍錢倉穀加分刑具違式之罪請議處敎以所供雖甚糢糊許多不法皆無發明以草記照律

<일성록, 정조5년(1781) 3월 6일(기묘)>

정치/사법

남양부사 강유(姜游)를 방면하다

강 시수(時囚) 신광요(申匡堯)는 공초를 받고, 임최원(林最遠)은 의처(議處)하며, 강유(姜游)는 풀어 주라고 명하였다.

목 (…) ○ 또 아뢰기를, "**남양부사(南陽府使) 강유**가 원정에 운운하였는데, 문목 안의 내용에 대해 범범하게 지만이라고 하였으니 형추하기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만,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냈으니 형추하지 말고 의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부과(付過)하고 풀어 주라." 하였다.

강 命時囚申匡堯捧供林最遠議處姜游放送

목 (…) ○又啓言**南陽府使** 姜游原情內泛稱遲晩所當請刑而曾經侍從請除刑推議處敎以付過放送
<일성록, 정조5년(1781) 5월 25일(정유)>

정치/사법

기해년 남양 앞바다에서 좌초된 궁방세 미곡에 대한 원정을 판하하다

강 형조가, 상주(尙州)에 사는 동몽(童蒙) 김고굉(金古宏)의 원정(原情)을 시행하지 말 것에 대해 아뢰었다.

목 (…) ○ 또 아뢰기를, "경상도 하동(河東)에 사는 강만재(姜萬載)가 격쟁하였는데, 그 원정에, '기해년(1779, 정조3) 분의 궁방세(宮房稅) 미(米)와 조(租) 800여 석(石)이 **남양(南陽)** 땅 큰 바다에서 취재(臭載)되는 바람에 치패(致敗)되었고 사람들도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재(船材)에 대해서는 감목관(監牧官)이 공적인 물건에 속한다고 하면서 죄다 빼앗았으며, 치패된 세곡(稅穀)에 대해서는 궁방이 지금까지도 침징(侵徵)하여 갖추 바치게 하였습니다. 배의 재목에 대해서는 환급(還給)해 주고, 치패된 세곡은 탕감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잘한 일을 전하에게 올리기까지 하였으니, 먼 고장 백성들의 버릇이 참으로 지극히 놀랍습니다. 시행하지 말고, 번독스럽게 한 죄를 감처(勘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그 당시 문안을 가져다가 살펴보면 그 일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또한 백성들의 풍습에 관계되어 있으니 다시 상세히 살펴서 품처(稟處)하라." 하였다. (…)

강 刑曹以尙州居童蒙 金古宏原情勿施啓

목 (…) ○又啓言慶尙道河東居姜萬載擊錚原情以爲己亥年分以宮房稅米租八百餘石臭載於**南陽**地大洋致敗人物淹沒而船材則監牧官稱以屬公盡數奪取致敗稅穀則宮房尙今侵徵使之備納船材木則願得還給致敗穀則請得蕩減云而如此瑣屑之事至登天聽遐荒民習誠極痛駭勿施瀆擾之罪請勘處敎以取考其時文案則可知其事狀此亦關係民習更爲詳考稟處 (…)
<일성록, 정조5년(1781) 8월 16일(병술)>

정치/사법

전 남양부사 이방일(李邦一)에게 공초를 받으라 명하다

강 이방일(李邦一) 등에게 공초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목 ○ 의금부가 아뢰기를, "균역청 당상 정민시(鄭民始)가 아뢴 것으로 인하여 경기(京畿)의 **수원(水原)** 등 10개 읍의 군작미(軍作米)가 착복에 의해 줄어들었을 때 회안(會案)을 마감(磨勘)한 수령을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라고 계하하였습니다. 방금 경기 감사 이형규(李亨逵)의 계본(啓本)을 보니, **전 남양부사(南陽府使) 이방일**, 전 죽산 부사(竹山府使) 이은복(李殷福)·권급(權伋), 전 풍덕 부사(豐德府使) 이언희(李彦熙), 전 고양 군수(高陽

郡守) 홍응진(洪應辰), 전 안성 군수(安城郡守) 한후유(韓後裕), 전 양성 현감(陽城縣監) 이우규(李禹圭) 등으로 이름을 지적하여 현고(現告)하였습니다. 모두 나수(拿囚)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공초를 받아서 아뢰어라." 하였다.

강 命李邦一等捧供

목 義禁府啓言因均役廳堂上鄭民始所啓京畿 **水原**等十邑軍作米盜減時會案磨勘守令拿問定罪啓下而卽接京畿監司 李亨達啓本則**南陽前府使** 李邦一 竹山前府使 李殷福 權伋 豊德前府使 李彦熙 高陽前郡守 洪應辰 安城前郡守 韓後裕 陽城前縣監 李禹圭等竝拿囚敎以捧供以聞

<일성록, 정조5년(1781) 9월 14일(계축)>

정치/사법

전 남양부사 이방일(李邦一)의 의처를 명하다

강 시수(時囚) 이방일(李邦一) 등을 의처(議處)하라고 명하였다.

목 ○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남양부사(南陽府使) 이방일** 등은 의처하고, 한후유(韓後裕) 등은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캐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하교하기를, "두 시수는 형추하지 말고 의처하라. 그중에 연로한 사람이 많으니 미결로 오래 갇혀 있는 것이 염려스럽다. 모두 오늘 의처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時囚李邦一等議處

목 義禁府啓言**南陽前府使** 李邦一等議處韓後裕等請刑推得情允之敎以兩囚除刑推議處而其中多有年老人滯囚可悶皆令今日議處

<일성록, 정조5년(1781) 9월 17일(병진)>

정치/사법

전 남양부사 이방일(李邦一)을 감방하다

강 시수(時囚) 이방일(李邦一) 등을 감방(勘放)하였다.

목 ○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남양부사(南陽府使) 이방일**, 전 죽산 부사(竹山府使) 이은복(李殷福)·권급(權伋), 전 풍덕 부사(豐德府使) 이언희(李彦熙), 전 고양 군수(高陽郡守) 홍응신(洪應辰), 전 안성 군수(安城郡守) 한후유(韓後裕), 전 양성 현감(陽城縣監) 이우규(李禹圭) 등은, 국곡(國穀)의 사체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모두 마감(磨勘)한 수령으로서 이렇게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이로써 조율(照律)하니, 각각 장(杖) 80은 수속(收贖)하고 고신(告身) 3등을 추탈(追奪)하는 데에 해당합니다. 사죄(私罪)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하교하기를, "이방일, 이은복, 권급, 홍응신, 한후유는 공(功)으로 1등을 감하고, 이언희, 이우규는 의(議)로 1등을 감하라." 하였다.

강 勘放時囚李邦一等

목 義禁府啓言**南陽前府使** 李邦一 竹山前府使 李殷福 權伋 豊德前府使 李彦熙 高陽前郡守 洪應辰 安城前郡守 韓後裕 陽城前縣監 李禹圭等國穀事體何等嚴重則俱以磨勘守令有此吏輩之作奸竝以此照律各杖八十收贖奪告身三等私罪施行允之敎以李邦一 李殷福 權伋 洪應辰韓 後裕功減一等李彦熙 李禹圭議減一等

<일성록, 정조5년(1781) 9월 19일(무오)>

정치/사법

남양인 박필삼(朴必三)의 격쟁 문제를 논의하다

강 형조가 위외(衛外)에서 격쟁한 사람들의 원정에 대해 복계(覆啓)하였다.

목 ○ 해조(該曹)가 아뢰기를, "격쟁한 죄인의 원정을 가져다 살펴보니, 밀양(密陽)에 사는 유학(幼學) 박명오(朴明五), 수원(水源)에 사는 김일상(金逸尙), 공산(公山)에 사는 전경운(田耕雲), 남양(南陽)에 사는 박필삼(朴必三)은 모두 산송(山訟)으로 원통함을 호소한 일입니다. 산송 문제이니 한성부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강 秋曹以衛外擊錚人原情履啓

목 該曹啓言取考擊錚罪人原情則密陽居幼學朴 明五 水原居金逸尙 公山居田耕雲 南陽居朴必三 竝山訟稱冤事也係是山訟請令漢城府稟處允之 (…)

<일성록, 정조6년(1782) 5월 23일(기미)>

정치/사법

남양의 죄인 김귀재(金貴才)에 대해 처결하다

강 형조의 살옥안(殺獄案)에 대한 회계(回啓)를 판하(判下)하였다.

목 ○ 형조가 아뢰기를, "남양부(南陽府)의 살옥 죄인(殺獄罪人) 김귀재(金貴才) 등은 용형(用刑)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려 엄히 형신(刑訊)하여 기필코 실정을 캐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대명률(大明律)》 희살오살과실살상인조(戱殺誤殺過失殺傷人條)에, '싸우다가 살상(殺傷)한 죄에 준하여 수속(收贖)하여 피살자의 집에 급부(給付)한다.' 라고 하였는데, 주(註)에 또 '과실이란 미리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하였다. 대저 김덕남(金德男)이 죽게 된 것은 실로 김귀재의 과실이니, 만일 김귀재가 반드시 김덕남을 살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몽둥이나 칼을 놔두고 잠깐 결박했다가 곧바로 풀어 주어 심상하게 장난치듯이 했겠는가. 시체의 명치 위쪽 살갗 한 부위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응혈(凝血)이 반드시 실인(實因)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개 사람을 결박하는 방법은 무릎과 발을 가슴과 등에 당겨 묶는다고 하는데, 이는 결박하는 것이 단단하지 못할까 염려해서이다. 비록 나와 원수진 일도 없이 남의 지휘를 받아 결박하더라도 이와 같이 힘을 주어 묶을 텐데 하물며 김귀재는 김덕남이 그의 처를 데려다 놓는 것을 목격하고 분이 나서 곧바로 달려들어 그 놈을 잡아 결박했으니, 이때의 생각은 바로 단단히 묶겠다는 것에만 있었지 반드시 죽여야겠다는 데에는 미칠 겨를이 없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때리려던 참에 또 김덕금의 만류 때문에 곧바로 풀어 주었다고 하니, 김귀재가 한 행동은 차분하고 여유 있었다고 해도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결박할 때 두 차례 가슴을 당긴 것을 가지고 고의로 살해한 단안(斷案)으로 확정한다면 아마도 법을 적용하면서 실정을 감안하는 뜻이 아닐 것이다. 가령 김귀재가 계집이 스스로 음란한 짓을 한 것을 모르고 김덕남이 강간한 것으로 오인하여 함부로 김덕남을 살해했다 하더라도 무단히 사람을 죽인 변고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의당 가벼운 쪽으로 처벌해야 하니, 남양부의 수추 죄인(囚推罪人) 김귀재를 희살오살과실살상률로 조감(照勘)하라고 도백에게 분부하라.

분례(分禮)는 후부(後夫)가 죽게 된 것이 그녀의 음란함 때문이었고 전부(前夫)의 옥사가 이루어진 것은 그녀가 입증했기 때문이니, 자취로 보나 실정으로 보나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 우선 절도(絶島)에 보내 죽을 때까지 계집종으로 삼고, 용형할 수 있는 때를 기다려

해도의 감사로 하여금 각별히 세 차례에 준하여 엄히 형신을 가하고 다시 배소(配所)로 돌려보내라는 뜻으로 일체 행회(行會)하라. (…)

강 判下秋曹殺獄案回啓

목 刑曹啓言南陽府殺獄罪人金貴才等待用刑嚴訊請期於得情敎以按大明律過失殺傷條曰準鬪殺傷罪收贖給其家註又曰過失謂思慮所不到大抵德男之致斃實貴才之過失如使貴才有必殺德男之心則奈之何捨梃捨刃乍縛旋解殆若尋常戲劇之擧然哉至於屍體心坎上一片皮肉之尙留血癒未必不爲實因而蓋聞縛人之法輒將膝若足膛其腦與脊慮或束之不緊也雖無讎怨於我而被人之指揮尙試似此手勢況貴才目擊德男之率畜其妻乘憤直前執縛厥漢此時思慮政在緊束一款而未暇及於必死迨其將打之際又因德金之挽留旋卽解給則貴才所爲雖謂之雍容暇豫可也今以結縛時兩次膛腦牢定故殺之斷案恐非因法參情之意藉令貴才不識淫女之自奔誤認以行奸擅殺德男亦與無端殺死之變差有間焉以此以彼合置惟輕南陽府囚推罪人金貴才以過失殺傷律照勘事分付道伯分禮段後夫之致命由渠淫奔前夫之成獄因渠立證惟跡惟情殺之無惜爲先絕島限己身爲婢待用刑令該道監司各別嚴刑準三次還發配所之意一體行會 (…)

<일성록, 정조6년(1782) 6월 8일(계유)>

정치/사법

남양부사 강유(姜游)에 대해 공초(供招)를 받아 아뢰라고 명하다

강 남양부사(南陽府使) 강유(姜游)에 대해 공초(供招)를 받아 아뢰라고 명하였다.

목 ○ 금부의 나수 초기(拿囚草記)로 인하여 이렇게 명한 것이다.

강 命南陽府使 姜游捧供以聞

목 因禁府拿囚草記有是命

<일성록, 정조6년(1782) 11월 9일(임인)>

정치/사법

정원이 사령 안삼복(安三福)을 남양부에 충군하려는 것에 하교하다

강 정원의 하리(下吏)는 곤을 치고 병조의 하례(下隷)는 충군(充軍)하라고 명하였다.

목 (…) 병조가 또 사령(使令) 김태득(金太得)·안삼복(安三福)에게 곤 3도를 치고, 김태득은 수원부(水原府)에, 안삼복은 남양부(南陽府)에 충군하겠다고 아뢴 데 대해, 하교하기를, "병조의 하례에 대해 곤 5도를 치게 하였는데 승선이 3도로 잘못 써서 반포하였으니 해당 승지는 추고하고, 다시 잡아 와서 숫자대로 곤을 친 뒤에 배소(配所)로 보내라." 하였다.

강 命院吏決棍曹隷充軍

목 (…) 兵曹又以使令金太得 安三福決棍三度太得 水原府 三福 南陽府充軍啓敎以曹隷旣令決棍五度而承宣以三度誤書頒布當該承者推考更爲捉來準數加棍後發配

<일성록, 정조8년(1784) 10월 15일(정유)>

정치/사법

제향에 오류를 범한 남양부사 이익순의 처벌을 논의하다

강 시수(時囚) 김덕로(金德老) 등을 조율(照律)하라고 명하였다.

목 (…) 또 아뢰기를,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익순(李翼純)과 여주 목사(驪州牧使) 이중복(李重馥) 등은 헌관(獻官)으로서 전사관이 서로 바꾸어 배진한 것을 깨닫지 못하여 막중한 제향(祭享)에 이렇게 착오를 저지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율하니 각각 태(笞) 50

은 수속하고 현임(見任)을 해직(解職)하는 데 해당합니다. 사죄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모두 부과(付過)하고 풀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

강 命時囚金德老等照律

목 (…) 又啓言南陽府使 李翼純 驪州牧使 李重馥等身爲獻官 典祀官之互換陪進旣不能覺得莫重祭享有此做錯之擧請以此照律各笞五十收贖解見任私罪施行敎以竝付過放送 (…)

<일성록, 정조9년(1785) 1월 13일(계해)>

정치/사법

남양 등에서 혼례나 장사 치룰 시기를 놓친 사람들의 문제로 경기 감사를 추고하다

강 경기 감사 김사목(金思穆)을 엄하게 추고(推考)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교(傳敎)로 인하여, 혼례나 장사를 치를 때를 넘긴 사람들에 대하여 30개 읍(邑)은 모두 없다고 보고해 왔고, 겨우 한두 사람이 있다고 보고하여 책임만 때운 곳은 단지 6개 읍이므로, 전혀 돌보지 않았거나 영에 보고하지도 않은 곡절에 대해 경기 감사 김사목에게 관문(關文)을 보내 조사하게 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바를 보니, '광주(廣州)·여주(驪州)·지평(砥平)·양근(楊根)·영평(永平)·가평(加平)·장단(長湍)·적성(積城)·연천(漣川)·삭녕(朔寧)·양천(陽川)·김포(金浦)·통진(通津)·금천(衿川)·안산(安山)·인천(仁川)·과천(果川)·양지(陽智)·수원(水原)·양성(陽城)·죽산(竹山)·안성(安城)·영종(永宗) 등의 읍진(邑鎭)은 아직 혼례나 장사를 치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 새로 반포한 정식에 따라 때때로 더 물어서 찾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어 친척과 이웃 간에 서로 도와주어 혼인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고, 장사를 치르는 것도 제때에 하여 특별히 고을에서 돌보아 도와줄 것이 없었으므로 애당초 보고할 것이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양주(楊州)·고양(高陽)·성주(城州)·교동(喬桐)·부평(富平)·용인(龍仁)·남양(南陽)·진위(振威) 등의 읍은 비록 곡식 몇 되와 돈 몇 냥으로 도와준 일이 있으나 이는 소소하게 도와준 물건이라 전달(轉達)하는 것은 번잡한 듯하였으므로 과연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광주(廣州) 등 23개 읍진은 조령(朝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농사가 조금 풍년이 들어 한 사람도 돌보아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말로 핑계를 대었으니 수재(守宰)로서 국법을 받들어 행해야 하는 도리를 어긴 점이 있습니다. 양주 등의 8개 읍의 경우는 많고 적음을 논할 것 없이 이미 돌보아 도와준 물건이 있었는데도, 애당초 실제에 근거하여 낱낱이 보고하지 않고 이제 와서는 번잡하게 될까 염려되었다는 말을 하였으니 자못 성실함이 부족합니다. 각 해당 수령은 죄가 없을 수 없으나 많은 사람들을 일시에 논감하는 것은 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듯합니다. 신칙하지 않은 도신을 먼저 엄하게 추고하고, 도와주었으면서도 보고하지 않은 읍에 대해서는 다시 계본을 수정하여 올려 보내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重推京畿監司 金思穆

목 備邊司啓言因傳敎婚葬過時之類三十邑皆以無乎報來辜以一二人塞責者只是六邑其全不顧助而不報營委折京畿監司 金思穆處發關查問矣卽見所報則以爲廣州 驪州 砥平 楊根 永平 加平 長湍 積城 漣川 朔寧 陽川 金浦 通津 衿川 安山 仁川 果川 陽智 水原 陽城 竹山 永宗等邑鎭則未婚葬之類依新頒定式時加採訪而昨年穡事少稔親戚隣里互相顧助婚娶無愆葬埋以時別無自官顧助者故初無修報云楊州 高陽 喬桐 富平 龍仁 南陽 振威等邑則雖有斗粟兩錢助給以此小小助給之

物至於轉達恐涉煩屑果未修報云矣廣州等二十三邑鎭之不體朝令諉以年事之稍登無一人顧助有違奉行之道至若楊州等八邑勿論多寡旣有顧助之物而初不據實枚報今乃以煩屑爲辭者殊欠試實各該守令不可無罪而許多人之一時論勘恐有貽弊之慮不餘之道臣爲先從重推考有助無報之邑更爲修整啓本上送之意請分付允之
<일성록, 정조9년(1785) 1월 17일(정묘)>

정치/사법

남양에 충군(充軍)한 죄인 안삼복(安三福) 등을 풀어 주다

강 충군(充軍)한 죄인 안삼복(安三福) 등을 풀어 주었다.

목 ○ 하교하기를, "남양부(南陽府)에 충군한 죄인 안삼복, 수원부(水原府)에 충군한 죄인 김태득(金太得)을 모두 풀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강 放充軍罪人安三福等

목 敎曰南陽府充軍罪人安三福 水原府充軍罪人 金太得竝放送
<일성록, 정조9년(1785) 1월 24일(갑술)>

정치/사법

남양 등에서 문제를 일으킨 죄인 안수림(安守林) 등을 처벌하다

강 죄인 안수림(安守林) 등은 속히 판결하여 처분하고, 정반봉(鄭盤奉)은 회좌(會坐)하여 신문해서 범죄 사실을 캐내라고 명하였다.

목 ○ 형조가 아뢰기를, "죄인 안수림에게 남양(南陽)과 안성(安城) 두 곳에서 문제를 일으킨 일을 문목(問目)을 내어서 하나하나 엄히 신문하고 반복해서 따져 물었더니, 남양에서의 도서(圖署) 한 가지 일로만 이전처럼 자복하였고, 안성의 언답(堰畓)에 대한 일에 이르러서는 궁임(宮任) 차춘대(車春大)가 도서 전령(圖署傳令)을 만들어 내어 서종욱(徐宗郁)으로 하여금 안성으로 내려가게 한 것이었고 그는 실상 간여한 일이 없었다면서 한결같은 말로 변명하고 끝내 자복하지 않았습니다. 차춘대 및 서종욱과 한번 대면하여 신문한 뒤에야 사실을 알아낼 수 있겠으니, 모두 잡아와 대질하여 구핵(究覈)하게 하소서." 하여, 하교하기를, "이처럼 오래 끌 것 없으니, 꼭 신문해야 할 사람만 한번 대면하여 신문한 뒤 속히 판결하여 처분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궁임 차춘대와 도장(導掌) 서종욱이 과연 안성의 언답의 일로써 자복하고 공초를 바쳤는데, 차춘대는 전령(傳令)을 만들어 주고 서종욱은 가지고 갔다가 쫓겨나는 등 궁속(宮屬)들이 외읍(外邑)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도신(道臣)의 장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으니, 법률에 따라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도서 한 가지에 대해서는 방위 전령(防僞傳令)이라 하면서 끝내 사실대로 공초하지 않으니, 차춘대와 서종욱은 우선 엄히 가두고 도신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게 하여 보고가 올라온 뒤에 감처(勘處)하게 하소서. 안수림은, 안성에서의 일은 비록 간여하여 범하지 않았더라도 남양에서 폐단의 선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지만(遲晩)하였으니, 엄형을 가하여 정배하게 하소서."

하여,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죄인 정반봉이 황흥곤(黃興坤)을 타살한 절차(節次)는 이미 자백하였으니 전례에 따라 결안(結案)하여 공초를 받고, 간련(干連)된 김광득(金光得) 등은 좌우 포도청에 엄히 신칙하여 기한 내에 빨리 체포하게 하소서." 하여, 하교하기를, "재일(齋日)이 지난 뒤 경 등이 회좌하여 신문해서 범죄 사실을 캐내고, 각자 의견을 갖추어 품처하라." 하였다.

강 命罪人安守林等斯速決處鄭盤奉會坐訊推

목 刑曹啓言罪人安守林處以**南陽** 安城兩處作弊事發問目箇箇嚴訊反覆究問則只以**南陽**圖署一事如前自服至於安城堰畓事宮任車春大成出圖署傳令使徐宗郁下往安城而渠則實無參涉之事一辭發明終不就服不可不與春大宗郁一番頭面而後可以得情請幷捉來對質究覆敎以不必如是持久應問人處一番頭面後斯速決處又啓言宮任車春大導掌徐宗郁果以安城堰畓事自服納招而春大成給傳令宗郁持往見遂宮屬之作弊外邑至登道啓所當依律嚴勘而圖署一節謂以防僞傳令終不直招春大宗郁姑爲嚴囚令道臣査實報來後勘處安守林安城一事雖不干犯**南陽**作俑旣已遲晩請嚴刑定配允之又啓言罪人鄭盤奉打殺黃興坤節次旣已承款依例結案取招干連金光得等嚴飭左右捕廳刻期跟捕敎以過齋後卿等會坐訊推各具意見稟處

<일성록, 정조10년(1786) 4월 2일(을해)>

정치/사법

남양 출신 왕수(王脩)의 상언에 대해 판하하다

강 각 해사(該司)에 상언 53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목 (…) **남양(南陽)**의 출신(出身) 왕수(王脩)가 그의 선조를 위하여 무고(誣告)를 신원(伸寃)해 달라고 한 일에 대해, 하교하기를, "한 달쯤 전 차대에서 왕가(王哥)가 천거에서 누락된 일에 대해 연신(筵臣)이 말을 꺼낸 적이 있었는데, 이가 과연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참으로 그가 호소한 것과 같다면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은 진실로 당연하다. 그러나 그가 천거에서 누락된 원통함은 우선 그만두고라도, 그의 선조가 무고를 당한 것은 인정으로 헤아려 보면 변별하여 설욕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상언을 병조 판서가 상세히 열람한 뒤에 관안(官案)을 가져다 조사하고, 이어서 해청(該廳)에 물어서 내일 초기로 이치를 따져 회계(回啓)하여 억울함을 안고 적체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

○ 병조가 아뢰기를, "**남양**의 출신 왕수(王脩)가 상언에서, '저의 7대조 왕희걸(王希傑)은 중묘조(中廟朝)의 문과에 올라 홍문관 정자로서 사인(舍人)·검상(檢詳)·직제학(直提學)을 역임하였고, 6대조 왕빈(王儐)은 음관(蔭官)으로 문화 현령(文化縣令)을 제수받았으며, 5대조 왕경조(王景祚)는 무과에 올라 영광 군수(靈光郡守)를 제수받았습니다. 저는 신묘년(1771, 영조47) 무과에 합격하였으나 선전관 추천에서 저지당하였는데, 그 당시의 선전관 이인묵(李仁默)이, 저의 선조 왕희걸이 홍문관 정자로서 사인과 검상을 지낸 것에 대해 위작(僞爵)으로 몰아붙여 조정에 전파하고 인하여 신의 앞길을 폐기하였습니다. 일이 조상을 위해 변무(辨誣)하는 데 관계되므로, 여러 차례 상언하였으나 번번이 모두 저지당하였습니다. 국조(國朝)의 과방(科榜)과 관안(官案)에 마땅히 참고할 곳이 있을 것이니, 삼가 바라건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조사해서 바로잡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왕희걸은 가정(嘉靖) 계묘년(1543, 중종38)의 문과로 한림(翰林)과 사인을 거쳤음이 옥당에 있는 《국조방목(國朝榜目)》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남상(南床 홍문관 정자)과 직제학을 역임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등영록(登瀛錄)》이 중간에 산실(散失)되었으므로 조사할 수가 없었고, 한림에 추천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원제명록(翰苑題名錄)》을 조사해 보니, 을사년(1545, 인종1)에 제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한림과 사인을 거쳤다면 남상과 직제학은 원래 차례로 거치는 직임인데, 이인묵이 모두 위작으로 몰아붙인 것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를 모르겠으나 일이 놀랍고 망녕된 면이 있습니다. 또 선전관청(宣傳官廳)에 물어보니, 16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서 모두 그 사유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왕수는 왕희걸의 7세손이니, 그동안에 양반의 이름을 잃지 않고 집안의 명성을 보존하고 있

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고 사람 됨됨이가 선전관의 추천에 적합한지도 알 수가 없으나, 조상이 이인묵에게 욕을 당한 것은 참으로 호소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번에 문적(文蹟)에 근거하여 흔쾌히 무고를 설욕해 준다면, 또한 그의 원통하고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한림과 사인은 얼마나 청환(淸宦)이며, 남상과 직제학은 또 얼마나 정밀히 선발하였던가. 그런데 이인묵이 전말(顚末)을 알지 못한 채 곧바로 위작 등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억지로 그에게 더했으니, 그가 조상을 위하는 마음으로써는 이처럼 호소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제 이미 변별하고 조사하여 흔쾌히 원통하고 억울함을 설욕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인묵의 거조는 해괴하고 망녕되다고 말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곳에서 만약 엄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나이 젊은 선전관들이 경솔하게 입씨름하는 것을 금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인묵을 해부로 하여금 나문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가 과연 자복(自服)하면 각별히 엄하게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

강 判下上言五十三度于各該司

목 (…) 南陽出身王修爲其先祖伸誣事敎以月前次對以王哥漏薦事筵臣有言端雖未知此果是其人而誠如其所訴呼冤固當然渠之漏薦之冤枉姑捨是其先祖之被誣揆以人情宜欲卞雪此上言兵判詳閱後取考官案仍問該廳明日以草記論理回啓俾無抱鬱積薪之弊 (…) ○兵曹啓言南陽出身王脩上言以爲渠之七代祖希傑登中廟朝文科以弘文正字歷職舍檢直學六代祖儐蔭除文化縣令五代祖景祚登武科除靈光郡守而渠占辛卯武科而見枳宣薦其時宣傳官 李仁默以其先祖希傑之弘正舍檢歸之僞爵傳播朝堂因廢前程事關爲光卞誣屢呈上言而輒皆見拔國朝科榜官案宜有考準之地伏乞令攸司考出卞正云矣王希傑以嘉靖癸卯文科經翰林 舍人載於玉堂所在 國朝榜目至於南床直提學踐歷與否以登瀛錄之中間散佚不得考出欲知翰林被薦考諸翰苑題名錄則以乙巳拜見錄矣旣經翰林 舍人則南床直學自是次第之職李仁默之一竝歸之於僞爵未知何所據而事涉駭妄又問於宣傳官廳則事在十六年前俱不知其由大抵王脩是希傑七世孫其間不失班名保有家聲旣未可知爲人之可合宣薦亦未可知而祖先之被辱於李仁默則誠如呼籲之辭今此考據文蹟快雪誣枉亦可解其冤鬱矣敎以翰林 舍人何等淸宦南床直學又何等極選則李仁默不識顚末直以僞爵等說無難勒加於渠渠以爲祖先之心有此呼籲不是異事今旣卞覈可以快雪冤鬱而仁默之擧措不可但以駭妄言此等處若不嚴處年少宣傳官輩率易口角無以禁止仁默令該府拿問處之渠果自服各別嚴處 (…)

<일성록, 정조10년(1786) 9월 27일(정유)>

정치/사법

형조가 김도흥(金道興)을 남양부에 충군 정배하겠다고 아뢰다

강 의금부와 형조의 시수(時囚)를 참작하여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목 ○ 의금부의 사단자(赦單子)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유광벽(柳光璧)은 그 지역에 정배(定配)하고, 박광원(朴廣源), 정만시(鄭萬始), 이백형(李百亨), 조홍진(趙弘鎭), 이은모(李殷模), 신복(申馥), 송익효(宋翼孝)는 풀어 주고, 민백항(閔百恒)은 삭직하고서 풀어 주라." 하였다.

○ 해부(該府)가 유광벽을 부산진(釜山鎭)으로 정배하겠다고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평안도의 방미방(放未放)은 회계(回啓)한 대로 시행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안북현(安北縣)에 정배한 죄인 신사운(申思運)을 즉시 풀어 주라고 해도(該道)의 도신에게 분부하겠습니다." 하여, 윤허하였다.

○ 형조의 사단자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모두 그대로 하라. 그 가운데 살옥 죄인(殺獄罪

人) 이상준(李常俊)의 완결(完決)한 판부(判付)에 이미 뜻을 보인 적이 있는데, 지난번 거둥길에서 그의 아들이 격쟁(擊錚)한 일을 보고 또한 가슴아픈 점이 있으니, 지금 비록 살려 주는 쪽으로 처리하더라도 실형(失刑)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크게 사면하는 때를 만났으니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상준을 원지(遠地)에 결배(決配)하라." 하였다.
○ 해조가 이상준을 길주목(吉州牧)에 정배하겠다고 아뢰었다. 또 원리(院吏) 김도흥(金道興)을 형률을 상고하여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아뢴 데 대해, 하교하기를, "마침 사면령을 만난 만큼 의당 참작하는 도리가 있어야 할 것이니 엄히 다스리는 것은 용서하고, 다만 경기(京畿)의 읍(邑)에 충군(充軍)하게 하여 이 무리들이 끝까지 패악을 부리면서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를 징계하라. 이 계목(啓目)은 시행하지 말라." 하였다.
○ 해조가 김도흥을 **남양부(南陽府)**에 충군하여 정배하겠다고 아뢰었다.
○ 이조가 올린 전 집의 이복휘(李福徽)의 세초 단자(歲抄單子)로 인하여 하교하기를, "듣건대 이미 죽었다고 하니, 죄명을 특별히 탕척(蕩滌)하라." 하였다.
강 酌處金吾 秋曹時囚
목 因義禁府赦單子敎曰柳光璧卽其地定配朴廣源 鄭萬始 李百亨 趙弘鎭 李殷模 申馥 宋翼孝放閔百恒削職放送○該府以柳光璧 釜山鎭定配啓又啓言平安道放未放依回啓施行事命下矣安北縣定配罪人申思運卽爲放送事分付該道道臣允之○因刑曹赦軍子敎曰併仍其中殺獄罪人李常俊完決判付已有示意者日前輦路見渠子鳴錚之事亦有傷念者今雖傳生不至失刑且當霈澤不可仍置常俊遠地決配○該曹以李常俊 吉州牧定配啓又以院吏金道興考律嚴勘啓敎曰適當赦令宜有參酌之道嚴治分揀只令畿邑充軍以懲此輩到底肆惡不畏治之罪此啓目勿施○該曹以金道興 **南陽府**充軍定配啓○因吏曹前執義 李福徽歲抄單子敎曰聞己身故罪名特爲蕩滌
<일성록, 정조11년(1787) 1월 8일(정축)>

정치/사법

선인문에 난입한 남양인 박조헌(朴祖憲)의 처분을 논의하다.

강 도총부 경력 이여절(李汝節)을 승서(陞敍)하라고 명하였다.
목 ○ 도총부가 아뢰기를, "본부의 낭청 이여절이 주간에 순찰하며 검문하다가 선인문(宣仁門)에 이르렀을 때, 난입한 한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남양(南陽)**에 사는 이름이 박조헌(朴祖憲)이라는 사람으로, 중학(中學)에서 상소를 진달할 일이 있어 반촌(泮村)을 찾아가다가 잘못 궐문으로 들어왔다고 하였습니다. 일이 매우 놀라우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조사하여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이 낭관은 일찍이 사헌부 감찰로서 법에 의거하여 정과(呈課)함으로써 승서의 은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야간 검문 외에 또 주간 검문을 행하여 이렇게 적발하였으니 매우 가상하다. 승서하여 조용(調用)해서 권장하는 뜻을 보이라." 하였다.
○ 병조가 아뢰기를, "장교(將校)를 보내어 문금(門禁)에 대해 신칙하였습니다. 이에 회답하는 보고에, '선인문에 유생(儒生) 복장을 하고 난입한 한 사람이 있기에 붙잡아 그 곡절을 물으니, 그는 **남양** 사람으로서 반촌으로 가는 길을 잘못 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제멋대로 함부로 들어온 것이 너무도 놀라우니,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히 처벌하게 하소서. 평상시에 검칙(檢飭)하지 못해서 이렇게 난입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해당 수문장(守門將)을 경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拿問)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궐문에는 이를 지키는 장교와 병졸이 있는 법인데, 어찌 이와 같은 일

이 일어났단 말인가. 해당 수문장은 나처(拿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니, 태거(汰去)하라. 붙잡아 들인 장교는 본영(本營)에서 시상(施賞)하라." 하였다. (…)

강 命都總經歷 李汝節陞敍

목 總府啓言本部郎廳李汝節晝巡檢到宣仁門捉一攔入之人謂以南陽居朴祖憲爲名人自中學有陳疏事尋往泮村誤入關門云事甚驚駭請令該曹查治敎以此卽官曾以臺監據法呈課有陞敍之典而夜檢之外又行晝檢有此摘發之擧極爲嘉尙陞敍調用以示勸奬之意○兵曹啓言發遣將校申飭門禁矣回告內宣仁門有一着儒服攔入故捉問其委折則渠以南陽人誤尋泮路云而肆然冒入萬萬驚駭令攸司嚴勘常時不能檢飭有此攔入當該守門將不可無警請令該府拿問處之敎以門有守門將卒焉有此事該守門將不可拿處而止汰去捉納將校自本營施賞 (…)

<일성록, 정조11년(1787) 2월 1일(기해)>

정치/사법

남양부의 땅을 사급 받은 아비의 일로 상언한 최규(崔珪)의 문제를 논의하다

강 상언(上言) 86건을 각 해사(該司)에 판하하였다.

목 (…) 또 아뢰기를, "전 계사(計士) 최규(崔珪)의 상언에, '아비 최시륜(崔始崙)이 병자년(1756, 영조32)에 차비(差備)로 대령(待令)하였다 하여 밭 4결을 사급(賜給)하는 은전을 받았습니다. 갑진년(1784, 정조8)에 **남양부(南陽府)**의 놀고 있는 땅을 희망하여 상언해서 특별히 그대로 시행하라는 허락을 받았는데, 성책(成冊)하여 올려온 것은 80부(負)에 불과하였습니다. 결수(結數)대로 획급(劃給)해 주는 일에 있어 부디 성상의 은혜를 입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갑진년에 특별히 명하여 절급(折給)하게 한 것이 이미 보기 드문 은전이었는데 또다시 번거롭게 호소하였으니, 너무도 외람됩니다.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강 判下上言八十六度于各該司

목 (…) 又啓言前計士 崔珪上言以爲其父始崙以丙子年差備待令獲蒙田四結賜給之典甲辰年以南陽府閑曠之地望上言特蒙許施而成冊上來不過爲八十負準結劃給事乞蒙天恩云申辰特命折給旣出曠恩則又復煩籲極涉猥濫請置之從之 (…)

<일성록, 정조11년(1787) 2월 6일(갑진)>

정치/사법

남양의 문제를 상소한 사직 강유(姜游)에게 비답을 내리다

강 사직 강유(姜游)가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목 ○ 상소의 대략에, "일전의 허황된 말은 진실로 하나의 변괴였습니다. 필시 고의로 선창(先唱)한 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서로 선동하기를 좋아하니, 비록 이번 일로 말하더라도 하루 내에 **남양(南陽)**, **수원(水原)**, 금천(衿川), 과천(果川), 인천(仁川), 부평(富平)이 대부분 소요(騷擾)하여, 심지어 신주(神主)를 묻고 닭과 개를 잡아서 피난 가는 사람들이 산야에 가득해서 경계를 넘어 깊은 산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도(道)를 넘어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기도 하여, 연해(沿海)의 각읍들이 거의 텅 비어 사람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깊은 골짜기로 향한 자들은 필시 허황된 말이었음을 미처 알지 못하고 서로 와전하여 간곡히 말하였을 것이고, 다른 도의 사람도 필시 소요하여 무턱대고 남을 따라 움직일 염려가 없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잘 타일러 일깨워 주어야만 인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매우 근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비록 수원 한 고을로 말하더라도, 본주(本州)는 병마(兵馬)가 5000인데 평민들이 피하여 갈 때에 군병도 필시 그 가운데 들어갔을 것이니, 가령 뒷날 강토에 근심되는 일이 있기라도 한다면 어디에서 징발하겠습니까. 이 문제 또한 지금 의당 정식을 두어야 합니다. 신이 듣건대 연해의 사람들은 대부분 깊은 골짜기를 귀의처로 삼았다고 하니, 이들은 필시 충청도의 4개 군(郡)과 강원도의 9개 읍(邑)으로 향하였을 것입니다. 이 두 도는 영남(嶺南)과 가까우니, 3도(道)에서 필시 소란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3도에 행회(行會)해서 허황한 말이었음을 밝히고, 만일 유입된 경기 백성이 있다면 일일이 돌려보내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군병 가운데 피하여 달아난 자의 경우는 군율로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일체 엄히 신칙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굳게 마음을 먹어 소요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허황된 말을 선창한 것은 반드시 당사자가 있을 것이니, 이는 비록 갑작스럽게 조사해 내기는 어렵겠지만, 천천히 염탐(廉探)해서 극률(極律)로 처단한다면 이후에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경기 서남(西南)에 있는 연해의 읍들은 만일 불행한 때를 당한다면 가장 먼저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신이 **남양**을 맡고 있을 때에 망녕되이 한 번 상소하였습니다. 지금도 분수에 넘치는 근심을 금할 길 없어 감히 이렇게 논열(論列)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어리석음을 살펴 처분해 주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일전의 일은 이렇게 될 줄 생각지도 못했는데, 듣고 보니 매우 놀랍고 한탄스럽다. 3도에 효유하는 일은 도리어 더 소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니, 소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선창한 자에 대한 일은 잘못 전해진 것이 다시 잘못 전해져서 선후를 분간하기 어려우니, 비록 샅샅이 조사해 내려 해도 한갓 사람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두렵게 하여 죄 없는 사람이 잘못 걸려들게 할 뿐이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하다. 그대가 나랏일을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뜻으로 이렇게 본분을 뛰어넘는 말을 아뢰니, 매우 가상하다." 하였다.

강 司直 姜游上疏賜批

목 疏略曰日前虛謊之說誠一變怪也是必有故爲先倡者矣我國之人好相煽動雖以今番事言之一日之內南水衿果仁富擧皆騷動至於埋其水主殺其鷄犬男負女戴漫山蔽野越境而入深山越道而向深峽沿海各邑幾乎虛無人矣若其向深峽者計必未及聞知爲虛謊丁寧爲說他道之人亦必騷擾不無風吹草動之慮及今有曉諭之擧然後可以鎭安人心矣又有大可憂者雖以**水原**一州言之本州爲五千兵馬而當其平民避去之時軍兵亦必入於其中設令後有疆域之虞從何調發乎此亦及今宜有定式矣臣聞沿海之人多以深峽爲歸云是必向忠淸道四郡江原道九邑此兩道與嶺南相近則三道必有騷屑行會二道明其爲虛謊之說如有人民流入者一一還送至於軍兵避去者從以軍律之意一體嚴飭使民人預有定志宜矣至於先倡虛謊之說者必有其人此雖猝難覈出而徐徐廉探勘以極律則此後可無如今之患矣大抵京畿西南沿海之邑如當不幸之時則最先可憂之地故臣之待罪**南陽**也妄陳一疏今不勝漆室之憂敢此論列伏乞察其愚而進退焉批以日前事猶不料至此聞極駭歎三道曉諭事反有繹騷之慮勿擾爲上策先倡者事以訛傳訛先後難分雖欲查探徒令人人疑畏無辜誤罹此則甚不可矣爾以憂愛之意陳此出位之言殊可尙也

<일성록, 정조11년(1787) 4월 25일(임술)>

정치/사법

병조가 서일성(徐日成)과 임백춘(林百春)을 남양부에 충군하다

강 병조가 서일성(徐日成)과 임백춘(林百春)을 **남양부(南陽府)**에 충군(充軍)하여 도신으로

하여금 배소(配所)로 압송(押送)해서 넘겨주게 하겠다고 아뢰었다.

목 없음

강 兵曹以徐日成 林百春 南陽府充軍押付配所啓

목 없음

<일성록, 정조11년(1787) 7월 12일(정축)>

정치/사법

양천을 변별해달라는 남양인의 상언을 판하하다

강 각 해사(該司)에 상언(上言) 166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목 "지금 내린 상언을 모두 기한 안에 회계(回啓)하게 하라."

하였다. (…) 남양(南陽)의 양인(良人) 서대놈(徐大老味)은 양천(良賤)을 변별해 달라는 일이다. (…) 또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양인(良人) 서대놈(徐大老味)은 와서 현신(現身)하지 않았으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강 判下上言一百六十六度于各該司

목 敎曰今下上言皆令限內回啓 (…) 南部 朴聖潤等逋欠稱冤事濬川司 靈巖幼學金興奎爲其父蒙放事義禁府 安東幼學李儒默 西部盧召史靑陽砲保曺世得 高陽前守門將金鼎燁 西部幼學安錫良 坡州出身姜德咸 北部前參奉 具彝錫等山訟事南陽良人徐大老味良賤卞別事內氷庫契人張聖民等氷契復設事中部 金龍壽 忠州故學生金漢默妻金召史等田畓推尋事以上漢城府 (…) 又啓言南陽良人徐大老味不爲來現請置之允之 (…)

<일성록, 정조12년(1788) 4월 4일(병신)>

정치/사법

남양부사를 나문하라 명하다

강 남양부사(南陽府使) 왕한정(王漢禎)을 나문(拿問)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이 조사하여 계문(啓聞)하기를, "방금 남양부사 왕한정이 보고한 것을 보니, 무신년(1728, 영조4)에 출정(出征)하여 종군(從軍)한 장사(將士)들에게 풍악을 베풀고 술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중군(中軍)으로 하여금 대신 행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죄상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을 면하기 어려우니, 경은 추고하겠다. 해당 부사(府使)는 한 가지 일에 대해 재차 보고하여 사실을 어지럽혔으니 너무도 어리석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하여 처리하게 하라. 이와 같다면 본도의 여러 고을이나 다른 도의 여러 고을 수령들도 꼭 직접 거행하였으리라 보장하기 어렵다. 조정의 명령이 내렸는데도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한단 말인가. 묘당으로 하여금 도백(道伯)을 신칙하여 공적인 사유가 아닌데 무단히 대신 행하게 한 수령에 대해 잘못을 자백받아 장문(狀聞)해서 논죄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南陽府使 王漢禎拿問

목 京畿監司 徐有防查啓卽見南陽府使 王漢禎所報則以爲戊申從征將士設樂饋酒使中軍替行云其罪狀請令攸司御處敎曰以此以彼難免不審卿則推考該府使一事再報眩幻事實極爲儱侗令該府拿問處之若此則本道諸邑他道諸邑守令之親執擧行未可必朝令之下焉敢若是令廟堂申飭道伯非公故無端替行守令使之首實狀聞論罪

<일성록, 정조12년(1788) 4월 10일(임인)>

정치/사법

이한겸(李漢謙)을 남양에 정배하다

강 좌포장(左捕將)과 우포장(右捕將)을 추고하고 이어 추조(秋曹)는 안경택(安景宅)을 엄하게 조사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목 ○ 좌포청과 우포청이 아뢰기를, "의열궁(義烈宮)의 노자(奴子) 양세흥(梁世興)의 정장(呈狀)에, '본궁(本宮)의 뒤편 바깥 북쪽 담장 2칸 가량을 덮은 기와가 도적에게 철거되었다.' 라고 하여, 즉시 교졸(校卒)을 보내 탐문하라고 엄히 신칙하였습니다. 이달 15일에 좌포청 군관 이종원(李宗遠)과 우포청 군관 육중창(陸重昌) 등이 장동(壯洞)에 사는 이오장(李五壯)과 조지서(造紙署)에 사는 이인득(李仁得) 등 두 놈을 잡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기와를 훔친 사정을 반복하여 엄히 심문하니, 이오장 등의 공초(供招)에, 이달 10일 저물녘에 장동에 사는 의열궁 차지 내관(次知內官)의 노자 업이(業伊)와 함께 본궁(本宮)의 북쪽 담장 바깥에 가서 이른 새벽이 된 뒤에 바깥 담장을 덮은 기와 60장(張)을 과연 몰래 걷은 다음 대동(帶洞)에 사는 김금금(金今金)의 집으로 가서 그로 하여금 같은 동에 사는 내관 안경택과 장동에 사는 양인(良人) 신금(申金)에게 흥정을 하여 헐값에 팔게 해서 나누어 가졌다는 뜻으로 똑같이 공초하였습니다.

궁장(宮墻)의 사체가 얼마나 중요한데, 밤을 틈타서 기와를 훔친 것이 이처럼 낭자하단 말입니까. 그 소행을 따져 보니 매우 흉악합니다. 도적 이오장과 이인득 등은 용형일(用刑日)을 기다려 형구(形具)를 채워 중률(重律)로 다스리기 위하여, 흥정을 붙여 헐값에 판 김금금까지 아울러 본청(本廳)에 엄히 가두었습니다. 사노(私奴) 업이의 경우는 이미 본궁의 차지 내관 이한겸(李漢謙)의 노자이니, 막중한 궁의 기와에 손을 댈 마음을 먹은 것은 분명 이놈이 종용한 것이고 또 낌새를 알아차리고 달아나 숨었으니 매우 악독합니다. 그러므로 이한겸을 잡아 가두어 한편으로는 차지의 노자를 현신(現身)하도록 독촉하고 교졸들을 많이 배치하여 기한을 정해 두고 기필코 탐문하게 하였습니다.

훔친 기와를 산 자는 하나는 내관 안경택이고 하나는 양인 신금인데, 신금은 평민에 불과하니 깊이 책망할 것도 못되지만 안경택의 경우에는 자신이 내관이고 게다가 본궁과 같은 동에 사는데 기와의 출처를 애당초 의심하지 않고서 사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았으니 이것이 진실로 놀랍습니다. 한 차례 조사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으나 안경택은 이미 관작이 내관이니, 본청에서 규례에 따라 체포하여 자세히 조사할 수 없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본궁의 사체가 얼마나 높고 중한가. 비록 바깥 담장이라고는 하지만 곧 이 또한 묘당의 담장인데 11일에 잃어버리고 아직 체포하지 못하였으니, 이러한 포청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본청(本廳)의 도리로 헤아려 보건대 즉시 초기해야 하는데 도적을 잡은 뒤에 비로소 등문(登聞)하였으니, 어느 모로 보나 살피지 못했음을 면하기 어려우니, 경들은 추고하겠다. 달아난 원범(元犯)이 바로 차지 중관의 노속(奴屬)이라고 하니, 더욱 매우 놀랍다. 기한을 정해 두고 뒤쫓아 잡으러 가서 잡히기를 기다려 엄히 캐물어서 지만(遲晩)을 받아서 아뢰라. 차지 중사(次知中使)가 된 몸으로 종이 몰래 도망하도록 내버려 두고 또 즉시 와서 아뢰지 않았으니, 이러한데도 죄를 가볍게 다스린다면 중요한 것을 중히 여기고 후일의 폐단을 막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해당 차지 중관은 경기 연해(沿海)에 정배(定配)하라. 중관이 비록 숨겼더라도 궁임(宮任)이 즉시 해당 관아에 고발하지 않은 것도 또한 매우 놀라우니, 수궁임(首宮任)을 태거(汰去)하고 해조로 하여금 조율(照律)하여 엄히 처리하게 하라.

장물(贓物)을 산 자 가운데 안경택은 바로 역적 환관 안경담(安景聃)의 양사촌(養四寸)이고 역적 환관 안경훈(安景勳)의 양동생(養同生)이다. 그때 두 환관이 혹 죽고 혹 유배된 것으로 인하여 안경택은 응좌(應坐)의 형률을 시행하지 않고 특별히 삭적(削籍)하여 방축향리(放逐鄕里)하였으니, 저 흉악한 환관의 지친(至親)으로 서울에 출몰하는 것이 이미 매우 놀라운데, 이어 도리어 막중한 물건을 사서 도적의 무리와 이익을 나눌 계획을 하였으니, 장물이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그 정상(情狀)을 따져 보니 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고 할 만하다. 본청이 이미 규찰하는 권한을 맡고 있으니, 안경택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찌 모르겠는가. 또 하물며 관직이 아장(亞將)에까지 이르렀는데 조지(朝紙)에 나왔던, 국옥(鞫獄)에 관련된 자의 성명을 몰라서 마침내 관작(官爵)이 있다는 등의 말을 어려움 없이 써서 특별히 깊이 책망하지 않으려는 죄과에 붙였으니, 비록 별달리 처분하지 않더라도 이후로 모든 일에 있어서 분명히 보아 혹 이전처럼 몽매함이 없게 하라. 안경택을 안문(按問)하는 한 가지 일은 경들이 잡아 와서 거행해야 하지만 경들에게 맡기면 그 실정을 캐내리라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우선 형판으로 하여금 재계(齋戒)를 파하기를 기다린 뒤에 개좌(開坐)하여 잡아 와 위협을 가하되, 장물을 산 곡절은 우선 그만두고 서울에 출몰한 정상을 엄히 조사하여 자복(自服)을 받아서 아뢰게 하라고 형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금부가 중관 이한겸을 **남양부(南陽府)**에 정배하겠다고 아뢰었다.

강 推左右捕將仍命秋曹嚴覈安景宅以聞

복 左右捕廳啓言義烈宮奴子梁世興呈狀內本宮後外北墻二間許所蓋之瓦爲賊漢所撤去云卽發校卒嚴飭譏詗矣今月十五日左廳軍官 李宗遠 右廳軍官 陸重昌等捉來壯洞居李五壯 造紙署居李仁得等兩漢故偸瓦情節反覆嚴問則五壯等招內今月初十日黃昏時與壯洞居義烈 宮次知內官奴子業伊偕往本宮北墻外罷漏後外墻所蓋瓦子六十張果爲偸撤仍爲轉往帶洞居金今金家使居間斥賣於洞居內官 安景宅 壯洞居良人申金處而分食之意一辭納招宮墻事體所重何如而乘夜偸瓦若是其狼籍究厥所爲萬萬兇獰賊人李五壯 李仁得等待用刑具格重纔次竝居間斥賣人金今金嚴囚本廳而至於私奴業伊旣爲本宮次知內官 李漢謙奴子則莫重宮瓦生心犯手的是此漢慫惠而又復知機逃躲極爲痛惡故捉囚漢謙次知奴子一邊督現多定校卒刻期譏詗而其所買得者一則內官 安景宅一則良人申金爲名人申金則不過平民不足深責而至於安景宅身爲內官且居本宮洞內而瓦子出處永不持疑無難買取此固可駭一次覈問在所不已而景宅旣是有官爵內官則自臣廳不得循例推捉盤覈敎曰本宮事體何等尊重雖曰外墻卽亦廟垣則十一日見失尙未捕捉此等捕廳將焉用哉揆以本廳道理宜卽草記而始於捉賊之後登聞由前由後難免不審卿等推考元犯逃躲者卽次知中官奴屬云尤極痛駭刻期跟捕待就捕嚴覈捧遲晩以啓身爲次知中使縱奴竊發亦不登時來奏此而歇治烏在其重所重杜後弊之意乎當該次知中官畿沿定配中官雖掩諱宮任之不卽發告亦極痛駭首宮任汰去令該曹照律嚴處買贓人中安景宅稱名人卽逆宦景珊之養四寸賊宦景勳之養同生者也伊時因兩宦之或斃或竄景宅未施應坐之律特命削籍逐鄕則以渠兇宦至親出沒京輦已萬萬駭痛乃反買取莫重之物與賊漢輩爲分利之計贓物多寡固無論究其情狀可謂無所不爲本廳旣掌廉伺之權則景宅之有罪無罪豈不知之且況官至亞將昧然於朝紙所出鞫獄干連人姓名而乃以有官爵等說無難書之特付不欲深責之科雖不別般處分此後凡事明著眼目無或如前曚昧景宅則按問一款卿等當捉來擧行而付之卿等難保其得情先令刑判待罷齋後開坐捉來施威買贓委折姑舍是出沒情節嚴覈取服以間事分付刑曹○禁府以中官 李漢謙 **南陽府**定配啓

<일성록, 정조12년(1788) 6월 29일(경신)>

정치/사법

남양부사를 파직시키다

강 훈련대장 서유대(徐有大)를 나문(拿問)하여 정죄(定罪)하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어제 환궁할 때에 훈국의 별대 마병(別隊馬兵)이 탄 배가 기울어져 마병 1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필시 배는 작고 사람은 많은데 위험을 무릅쓰고 앞을 다툰 탓일 터이니, 대장이 미리 금하였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해당 대장 서유대를 나문하여 정죄하고, 해당 차지(次知)인 여러 장관(將官)을 모두 태거(汰去)한 뒤에 나감(拿勘)하여 엄하게 감처(勘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하교하기를, “특교(特敎)로 신칙하고 또 차원(差員)을 따로 정하라고 명하였는데, 힘이 미치는지 미치지 못하는지는 막론하고 배를 제대로 고르지도 않았고 앞 다투어 건너는 것도 금하지 않았다. 해당 차사원은 이름을 물어서 나문하여 처리하고, 별정 차사원(別定差使員)인 **남양부사(南陽府使) 왕한정(王漢禎)**은 파직하라. 가전 별초(駕前別抄)와 가후 금군(駕後禁軍)은 모두 뒤떨어져 있다가 날이 저물 때까지 편의대로 건너게 하였고, 별대 마병은 별장(別將)에게 그때 따로 영기(令旗)를 보내 뒤떨어져 있다가 형편을 보아 건너게 하였는데, 해대(該隊)가 유독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위험을 무릅쓰다가 이렇게 대하군(隊下軍) 1명이 죽었으니 더욱 너무나 놀랍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본영(本營)으로 하여금 따로 휼전(恤典)을 시행하게 하고, 해당 별장은 나문만 하고 말아서는 안 되니 우선 정배(定配)하라.”

하였다. (…)

강 命訓鍊大將 徐有大拿問定罪

목 備邊司啓言昨日回鑾時訓局別隊馬兵所騎舡隻傾圮馬兵一名致傷云此必是舡小人多冒危爭先之致大將預爲禁戢則寧有是哉請該大將徐有大拿問定罪該次知諸將官一竝先汰後拿從重勘處允之敎曰特敎申飭又命別定差員則無論力之及與不及不善擇舡不禁爭渡當該差使員問名拿問處之別定差使員 **南陽府使** 王漢禎罷職駕前別抄駕後禁軍皆令落後限日暮從便渡涉至於別隊馬兵則別將處伊時別送令旗使之落後觀勢渡涉該隊之乃獨違令涉險有此隊下軍一名之致傷尤極駭然淹死人令本營另施恤典該別將不可拿問而止爲先定配 (…)

<일성록, 정조12년(1788) 9월 8일(병인)>

정치/사법

남양인 김조이(金召史)의 원정을 판하하다

강 형조가 격쟁인(擊錚人)들의 원정(原情)에 대해 아뢰었다.

목 ○ 해조가 아뢰기를, “이번 2일 동가했을 때에 격쟁인 (…) 또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양녀 김 조이(金召史)의 원정에, ‘남편 안필수(安弼壽)가 아비의 무덤을 이장(移葬)할 계획을 세웠는데, 한동네에 사는 최일학(崔日學)이 집터를 싸게 팔기에 샀습니다. 지난해 6월에 병에 걸려 임종할 때에, 「내가 이제 죽을 터인데 장차 새로 점지해 둔 곳에 먼저 장사 지내야 될 형편이니, 아비의 무덤을 즉시 내 무덤 위에 이장하라.」라고 하였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려고 하자 산 아래에 사는 최명익(崔命益)이 인가(人家) 뒤쪽이라고 하면서 송사를 일으켜 금단하였기 때문에 간절하게 사정해서 터를 닦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산면(水山面)의 이성(李姓) 양반이 그 처를 면례(緬禮)하고자 하여 인가에서 10여 보 되는 곳에 투장(偸葬)하면서 제 남편이 장지(葬地)로 계획해 둔 곳에 대해 수직(守直)이, 「이곳은 안가의 땅이지만 내가 빼앗아 장사 지낼 수 있다.」라고 하자, 촌백성들이 저의 집에 세력이 없어서 빼앗기게 된 것을 불쌍하게 여겨 특별히 장사 지낼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때문에 이번 3월에 과연 제 남편을 점지해 둔 곳에 장사 지냈는데, 이가의 집에서 먼저 장사 지냈다고 핑

계 대면서 이치에 어긋나게 송사를 일으켜 시숙 안필흥(安弼興)을 형구를 채워 가두고서 파내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부디 굽어살펴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처분을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이 공사(供辭)를 보건대 강약(强弱)을 알겠다. 지방관이 되어 어찌 명확하게 조사해서 공정하게 판결하지 못하여 이런 호소가 있게 하였는가. 도백에게 엄히 신칙하여 상세히 조사하여 결처한 뒤에 장문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강 刑曹以擊錚人等原情啓

목 該曹啓言今初二日動駕時擊錚人 (…) 又啓言南陽良女金召史原情以爲其夫安弼壽爲父墳移葬之計同里居崔日學斥賣家垈故買得矣去上年六月得病臨終曰吾今死矣勢將先葬於新占處父墳卽爲移葬於吾墳上云故欲爲入葬則山下居崔命益稱以人家之後起訟禁斷故懇乞開基矣水山面李姓兩班欲爲其妻緬禮偸葬於人家十餘步之間而渠夫營葬處則守直曰是雖安哥之地吾能奪葬云村民等憐渠家無勢見奪特許入葬故今三月果葬渠夫於所占處李家稱以先葬非理起訟嫂叔弼興枷囚督掘伏乞俯察哀矜亟賜處分云矣請上裁敎以觀於此供强弱可知身爲守土之官何不明査公決有此呼籲乎嚴飭道伯詳査決處後狀聞事分付 (…)
<일성록, 정조12년(1788) 9월 8일(병인)>

정치/사법

장문엽(張文燁)을 남양부에 정배하다

강 창준(唱準) 장문욱(張文郁) 등을 산배(散配)하였다.

목 ○ 형조가 아뢰기를, "창준을 모두 경기의 연읍(沿邑)에 산배하되 연읍이 부족하면 연읍에 가까운 육읍(陸邑)에 충배(充配)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창준 장문욱은 부평부(富平府)에, 신대중(申大中)은 고양군(高陽郡)에, 조영(趙穎)은 인천부(仁川府)에, 김시윤(金時潤)은 안산군(安山郡)에, 김진한(金鎭漢)은 양천현(陽川縣)에, 장문엽(張文燁)은 남양부(南陽府)에, 정익번(鄭益蕃)은 교하군(交河郡)에, 유상택(劉象澤)은 김포군(金浦郡)에, 이문부(李文敷)는 과천현(果川縣)에, 정춘부(鄭春敷)는 금천현(衿川縣)에 정배하겠습니다." 하였다.

강 散配唱準 張文郁等

목 刑曹啓言唱準一幷畿沿散配而沿邑不足則近沿陸邑充配事命下矣唱準 張文郁 富平府 申大中 高陽郡 趙穎 仁川府 金時潤 安山郡 金鎭漢陽川縣張文燁 南陽府 鄭益蕃 交河郡 劉象澤 金浦郡 李文敷 果川縣 鄭春敷 衿川縣定配
<일성록, 정조12년(1788) 10월 13일(신축)>

정치/사법

남양인의 격쟁 원정을 회계하다

강 형조가 격쟁(擊錚)한 사람들의 원정(原情)에 대해 회계하였다.

목 ○ 해조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유학(幼學) 이사백(李思白)의 원정에, '본부(本府)의 관리(官吏)인 안필성(安弼成)의 제수(弟嫂) 김 조이(金召史)가 사실을 마구 뒤바꾸어 격쟁하였는데, 본관(本官)이 조사하여 보고할 때 제 어미의 분묘를 파내어 옮겨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 가형(家兄)이 찬배(竄配)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저의 형 이사현(李思玄)이 저희 어미의 면례(緬禮)를 하려고 본부의 쌍수리(雙樹里)에 묏자리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곳은 남의 전고(田庫)였는데도 집이 가난한 탓에 바로 사

들일 수가 없었고 촌가(村家)의 근처였는데도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살 마음을 먹지 못했습니다. 안필성이 저희가 묘를 쓴 것을 몰래 알아내고는 즉시 전고를 사들여 곧장 장지(葬地)를 빼앗으려 하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저지당했습니다. 저희는 여러 해 동안 쓰려 해 왔던 묏자리를 공공연히 빼앗겼으나 형세상 어쩔 수가 없어서 다시 그 근처에 묏자리를 잡아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 그 전말을 따지자면, 안필성이 저희가 잡아놓은 묏자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리어 저희가 빼앗을 계책을 도모했다고 말하고 있으니, 이미 지극히 원통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의 장지를 당초에 허락한 것도 마을 사람이고, 일을 도와준 것도 마을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대낮에 장례를 행하고 이미 해가 지난 반면에 안필성은 캄캄한 밤에 투장(偸葬)하고 세 번이나 다짐(侈音)을 바쳤는데, 지금 죄가 똑같고 벌도 균등하여 양쪽 다 파내고 양쪽 다 유배하게 하였으니, 어찌 지극히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처분을 내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상께서 재결(裁決)하소서."하여, 하교하기를, "경조로 하여금 의처(議處)하게 하라."하였다. (…)

또 아뢰기를, "**수원(水原)**의 양인(良人) 서복명(徐福明)의 원정에, '부모 형제가 모두 양족(良族)으로서 대대로 본부(本府)에서 살아왔는데, 저의 아비 서세위(徐世韋)는 구임실(具任實) 집안의 마름으로 일해 왔습니다. 작년에 구임실의 아들 구석겸(具錫謙)과 그의 족친 구만겸(具萬謙)이 갑자기 옳지 않은 마음을 먹고 구석겸 집안의 수답(水畓) 1고(庫)에 대해 가짜로 패자(牌子)를 만들어 구만겸으로 하여금 저희 아비에게 전해 주게 하고는 척매(斥賣)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척매한 뒤에 값을 받아 전해 주었는데, 그 후에 구석겸이 느닷없이 이전에 한 말을 바꾸어 「나는 수답을 판 일이 없다. 구만겸이 문권(文券)을 위조하여 방매(放賣)한 것이다.」 하면서 그 수답을 도로 찾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비가 구만겸에게 값을 물러 달라고 하자 구만겸이 구석겸에게 미루는 바람에 터무니없이 대신 물어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구만겸과 조금 언쟁하면서 따지는 일이 있었는데, 구만겸이 말하기를, 「너희 여섯 부자(父子)를 내가 구임실 집안에서 값을 주고 사들였다.」 하고는 문권을 위조하여 온갖 방법으로 침탈하였습니다. 구석겸은 이전부터 답주(畓主)라는 것을 믿고서 종종 저희 아비에게 돈을 꾸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름이라는 이유로 여기저기서 꾸어다가 준 것이 도합 100여 냥이나 되는데, 한 푼도 도로 갚지 않아 저희 아비가 누차 돌려줄 것을 독책하였더니 도리어 「너희들의 공전(貢錢)으로 제감(除減)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공전이란 말에 대해 묻자, 「너를 우리 집의 마름으로 삼았을 때 너와 너의 처가 모두 우리 집에 팔린 것이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권을 보여 주기를 청하였더니 또 「이씨(李氏) 성(姓)의 양반에게 산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에 **남양(南陽)** 관소에 월소(越訴)하였는데, 애당초 이 일의 곡절은 묻지도 않고서 부모와 동생을 모두 엄하게 가두었으며, 집에 있는 기명(器皿), 의복, 곡물도 죄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로부터 압량(壓良)하는 부류가 한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어찌 오늘날과 같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구석겸과 구만겸이 압량한 죄를 엄격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상께서 재결하소서."하여, 하교하기를, "도신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여 장문하게 한 뒤에 품처하라."하였다. (…)

○ 한성부가 아뢰기를, "**남양** 유학 이사백의 원정으로 인하여 '경조로 하여금 의처하게 하라.'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산송(山訟)은 이쪽을 파내면 저쪽이 보존되고 이쪽이 승소하면 저쪽이 패소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사현과 안필성에 대해서는 피차(彼此)의 입락(立落)을 구분하지 않은 채 똑같이 파내게 하고 똑같이 정배하였으니, 도신

의 처결은 필시 근거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묘지를 이미 파내어 옮겼으므로 다시 조사하는 한 가지 일은 지금 논할 것이 없습니다. 소장(訴狀) 내의 말뜻으로 보건대, 생각이 오로지 그 형이 특별히 용서받는 데 있어서 유배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호소한 것이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강 刑曹以擊錚人等原情回啓

목 該曹啓言 (…) 又啓言南陽幼學李思白原情以爲本府官吏安弼成之弟嫂金召史變幻事實誣罔天聽而本官査報以渠毋境置於掘移之地以渠家兄至於竄配之境大抵渠兄思玄爲渠毋緬禮占得一穴於本府雙樹里以其他人田庫而家貧不能卽買以其村家近處而力疲不得生意安弼成潛知渠之所占卽買田庫直欲奪葬爲村人所禁渠之積年求占公然見失勢無奈何更占其近處入葬論其顚末則弼成攘奪渠之所占而今反以渠謂之圖奪之計者已極至冤渠之葬處當初許諾者村民也助役者村民也渠則白晝行禮已經年歲安弼成則黑夜偸葬三納侇音而今乃罪同罰均兩掘兩配豈非極痛乎乞賜處分云矣請上裁敎以令京兆議處 (…) 又啓言水原良人徐福明原情以爲父母兄弟皆以良族世居本府而其父世韋具任實家舍音隨行矣昨年任實子錫謙與其族萬謙忽生非理之心錫謙家水畓一庫假成牌子使萬謙傳給渠父使之斥賣故果爲斥賣捧價傳給矣其後錫謙忽變前言曰吾無賣畓之事萬謙僞券放賣云而還推其畓故推價於萬謙則萬謙推諉於錫謙至使白地替徵故與萬謙略有言詰之事矣萬謙曰汝等六父子吾於任實家給價買得云而僞成文券百計侵徵錫謙自前依恃畓主種種稱貸於渠父故以其舍音東西貸取得納者合爲百餘兩而一不還報渠父數次督還則乃曰以汝等貢錢除減云云故驚問貢錢之說則答以汝爲吾家舍音時汝與汝妻幷爲自賣於吾家云云請見其文券則又曰買得於李姓兩班云而越呈南陽官初不問本事委折父母同生一併嚴囚家藏器皿衣服穀物沒數奪去自古壓良之類何限而豈有若今日之擧乎伏乞嚴査 錫謙 萬謙壓良之罪依律嚴勘云矣請上裁敎以令道臣詳査狀聞後稟處 (…) ○漢城府啓言因南陽幼學李思白原情令京兆議處事有命矣大體山訟此掘則彼存此立則彼落而今此李思玄 安弼成之不分彼此立落同掘同配道臣處決必有所據而山地旣已掘移更査一款今無可論以狀內辭意觀之精神全在於其兄之特蒙恩宥赴配屬耳有此呼籲請置之允之又啓言西部幼學朴理源原情令京兆議處事有命矣此訟曾因李光德上言臣府以令道臣摘奸公決之意覆啓蒙允矣該道置理源於落科矣又此號籲未知有何別般稱冤之端而別定他査官指一決給事行會該道而今此狀辭侵斥訟官揆以城化分義終涉可駭待本訟出場照勘之意請分付允之 (…)

<일성록, 정조12년(1788) 11월 6일(갑자)>

정치/사법

남양의 격쟁인 이사백(李思白)의 산송(山訟)을 다시 복계토록 하다

강 격쟁인 이사백(李思白)의 산송(山訟)을 다시 조사하여 복계(覆啓)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조(京兆)가 아뢰기를, "격쟁인 남양(南陽) 유학(幼學) 이사백의 원정(原情)을 보니, '어미의 분묘(墳墓)를 파서 옮기게 되고 가형(家兄)이 귀양 간 것은 아전 안가(安哥)가 사실을 변환(變幻)하고 지주(地主)가 문안(文案)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어미의 장례를 지낸 것은 작년 10월이고 아전 안가가 투장(偸葬)한 것은 금년 3월이어서, 안가가 열 차례나 패소(敗訴)하고 세 차례나 파서 옮기겠다고 다짐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에서 조사하여 보고한 것은 송리(訟理)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양쪽 다 파내게 하고 양쪽 다 정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초 양쪽이 대질하였을 적에 보고할 초기를 내어 보여 주었는데, 거기에는 신의 논리가 바르고 아전 안가가 속였다는 것이 다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고쳐 내놓은 것을 보니 아전 안가 쪽에 불리하던 내용이 신 쪽까지 모두 파 가라는 문안(文案)으로 엮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장(呈狀)하여 호소하

였는데, 제사(題辭)에는 아전 안가에 대해 「관장을 모함하고 성상을 속였다.〔謀陷官長 誣罔天聽〕」라고 했던 8자(字)가 「마음대로 징을 쳐서 성상을 놀라게 하였다.〔恣意鳴金 驚動天聽〕」로 고쳐졌으니, 「자의(恣意)」라는 두 글자에서 모함(謀陷)하고 무망(誣罔)하는 뜻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문안(文案)이 암암리에 고쳐졌으니 이미 송사의 사체가 아닌 것이고, 제김(題音)이 회피하는 말로 꾸며졌으니 더욱 상식적인 이치를 저버린 것입니다. 또한 전토는 전토대로 산(山)은 산대로 법전(法典)에 기재되어 있는데, 전고(田庫)의 매매를 삽입하여 산송의 핵심으로 간주한 것은 무슨 곡절에서 연유한 것입니까. 신의 어미의 장지(葬地)는 촌가와 가까이 있는 개간되지 않은 곳이었기에 처음에 허락한 것도 촌민(村民)이고 전토를 판 것도 촌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 년이 되도록 한마디도 금단(禁斷)한 적이 없다가, 이제 와서 촌락의 옆이라고 핑계 대며 다짜고짜 촌가를 바로 뒤에서 누르고 남의 분묘에 바짝 붙여서 투장한 안가의 무덤과 한꺼번에 모두 파내라고 하니, 이것이 무슨 송리입니까. 바라건대 굽어 통촉하여 주소서.' 하였습니다. 영읍(營邑)에서 그렇게 처결한 데는 필시 곡절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처음 하소연한 것이 매우 외람된 면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두 번째로 하소연하니 더욱 방자합니다.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피차간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논하지도 않고 양쪽 다 파내게 하고 양쪽 다 정배한 것은, 외면에서 얼핏 보기에도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촌가의 바로 뒤에 마음대로 묘를 쓴 것이 이미 법전을 어긴 것인데 작년의 일을 금년에 와서 파내도록 다그친 것은 어째서이며, 독단적으로 쓸 때는 금하지 않다가 양쪽 다 장례를 한 뒤에 모두 파게 한 것은 또 무슨 까닭인가? 촌민이 저 이사백에게 터를 허락해 주고 안가 놈에게 전답을 팔면서 입 다물고 수수방관하여 가까운 근처인데도 금하지 않은 것은 혹 굳이 금할 정도가 아니어서 그런 것인가? 이상의 곡절을 본부에서 해도(該道)에 사문(査問)하여 다시 복계하여 품처하라. 이사백은 사정이 아무리 절박하다 해도 수령과 백성의 분의(分義)를 염두에 두지 않았으며 말을 대부분 가리지 않고 하여 자신의 뜻대로 한껏 침범하고 욕보였다. 송리는 송리이고 민속(民俗)은 민속이니 사건사(四件事)에 속하는 일이라 하여 너그럽게 용서하는 죄과에 부칠 수 없다. 해도로 하여금 단죄(斷罪)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擊錚人李思白山訟更查覆啓

목 京兆啓言觀此擊錚人南陽幼學李思白原情則以爲毋墳之移掘家兄之赴謫蓋綠安吏之變幻事實地主之反改文案也毋葬過於昨年十月安哥吏偸葬在於今年三月安吏十次落訟三度納侈而今者本府查報不計訟理之曲直以致兩掘兩配之境當初兩造對卞出示報草也備言臣之理直安吏之欺罔矣一夜之間忽地改出則安吏邊不利之說構成臣邊幷掘之案故呈狀呼訴則題辭內安吏之謀陷官長誣罔天聽八字改以恣意鳴金驚動天聽恣意二字中謀陷誣罔之意昭然可見云云噫文報之暗地刪改已非訟體題音之遁辭粧撰尤背常理且田自田山自山載在法典而插入田庫之買賣把作山訟之肯綮緣何曲折大抵臣毋葬地拒村家爲閒曠之處故初頭許諾者村民也賣田者村民也到今周年無一言禁斷者而今乃諉以村傍直與彼壓村家逼人墓之偸葬安塚一時幷掘者此何訟理乎乞賜照燭云矣營邑處決必有委折向來初籲已涉猥屑到今再訴尤係放肆請置之敎以曲直之無論在此在彼兩隻則混施兩掘兩配外面驟看莫曉其故且其壓村犯用旣違法典則昨年之事督掘於今年何也不禁於獨用之時幷掘於兩葬之後又何故村民之許垈於其矣身賣田於安哥漢銜枚袖手不禁其逼側抑或不至於必可禁而然右項委折自本府查問該道更爲覆啓稟處李思白則情理雖曰切迫不有城化之分語多不擇極意侵辱訟理自訟理民習自民習不可以四件內事付之寬恕之科令該道科罪

<일성록, 정조12년(1788) 12월 14일(신축)>

정치/사법

남양인 이사백(李思白)의 격쟁 문제를 논의하다

강 시수(時囚)를 차당(次堂)으로 하여금 의처(議處)하여 조율(照律)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 형조가 아뢰기를, "어제 동가(動駕)할 때 **남양(南陽)**의 유학(幼學) 이사백(李思白)이 격쟁(擊錚)하였으므로 공초를 봉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사백이 이 일로 격쟁한 것이 전후로 세 차례였고, 이미 본도의 사계(査啓)로 인하여 또 경조(京兆)에서 품처하였는데 감히 요행을 바랐으니, 지극히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원정을 시행하지 말고, 본조(本曹)에서 율문(律文)을 상고하여 감처(勘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강 命時囚令次堂議處照律

목 (…) ○刑曹啓言昨日動駕時南陽幼學李思白擊錚所當捧供而思白之以此事鳴錚前後三次已因本道査啓且經京兆稟處而敢生僥倖之望極爲痛駭原情勿施自臣曹請考律勘處允之 (…)

<일성록, 정조13년(1789) 1월 14일(신미)>

정치/사법

남양인 이사백(李思白)의 격쟁 문제를 다시 논의토록 하다

강 형조가 격쟁인(擊錚人)들의 원정(原情)에 대해 아뢰었다.

목 (…) 또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유학(幼學) 이사백(李思白)이 격쟁하였으니 공초를 받아야 합니다만, 이사백이 이로써 참람되게 격쟁한 것이 이번으로 네 차례입니다. 복계(覆啓)한 것을 판하(判下)하신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번독스럽게 하였으니, 매우 무엄합니다. 본조에서 각별히 엄히 감처하게 하되, 본 송사(訟事)는 다시 본도(本道)로 하여금 명확하게 조사하여 공정히 처결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강 刑曹以擊錚人等原情啓

목 (…) 又啓言南陽幼學李 思白擊錚所當捧供而思白之以此冒濫今爲四次覆啓判下纔數日又復瀆擾萬萬無嚴請自臣曹各別嚴勘而本訟更令本道明査公決允之 (…)

<일성록, 정조13년(1789) 1월 22일(기묘)>

정치/사법

해당 부서에 상언을 판결하여 내려주다

강 각 해사(該司)에 상언(上言) 147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목 (…) 진위(振威)의 유학 원복상(元復常), 서부의 유학 신재한(申在漢), 남원(南原)의 유학 김낙규(金樂珪), 장단(長湍)의 유학 우세준(禹世準), 용인(龍仁)의 유학 정혁제(鄭奕濟), 양근(楊根)의 유학 이의손(李宜孫), 양근의 유학 조동혁(趙東爀), 광주(廣州)의 유학 윤현상(尹顯相), 대흥(大興)의 유학 박양환(朴亮煥), 양성(陽城)의 유학 최병옥(崔秉玉), 춘천(春川)의 유학 이협(李鋏), 예천(醴泉)의 유학 엄상효(嚴尙孝), 장단의 유학 조세규(趙世珪), 직산(稷山)의 유학 김재휘(金載徽), 광주의 유학 이덕인(李德仁), 원주(原州)의 유학 신상(申晌), 개성부(開城府)의 유학 이명대(李命大), 광주의 유학 김시섬(金時暹), 파주(坡州)의 유학 백사중(白師中), 남원의 유학 신의택(申義宅), 동부(東部)의 양인(良人) 이광제(李光濟), 양주(楊州)의 유학 한종엽(韓宗燁), 직산의 유학 심명직(沈命稷), 낭천(狼

川)의 유학 김계철(金繼喆), 음죽(陰竹)의 유학 김정구(金廷耉), 남부의 유학 이헌길(李憲吉), **남양(南陽)**의 유학 서유근(徐有謹), 죽산(竹山)의 유학 박서풍(朴瑞豐), 죽산의 유학 권용(權瑢), 용인의 유학 이의춘(李宜春), 곡산(谷山)의 유학 이사묵(李師默), 평산(平山)의 유학 이정필(李貞弼), 광주의 유학 이성헌(李成憲), **남양**의 유학 한명소(韓命紹), 광주의 유학 이덕흥(李德興), 장단의 유학 윤동익(尹東翼), 춘천의 유학 이법만(李法萬), 개성부의 유학 이양욱(李陽郁), 풍덕(豐德)의 한량 유태창(劉泰昌), 서산(瑞山)의 유학 이성원(李晟源), 광주의 유학 이중광(李重光), 서부의 유학 윤지오(尹之五), 장단의 유학 김홍벽(金弘璧), 금천(衿川)의 유학 이춘재(李春載), 광주의 유학 한택유(韓宅維), 금천(金川)의 군관(軍官) 김덕실(金德實), 양주의 유학 오위(吳偉), 광주의 충의위(忠義衛) 김덕수(金德守), 안협(安峽)의 유학 김성제(金聖濟), 홍천(洪川)의 유학 용유서(龍有瑞) 등은 그 아비에게 가자해 달라는 일이다. (…) ○ 이조가 아뢰기를, (…) **남양**의 유학 서유근(徐有謹)의 아비 서동수(徐東修)는 88세, 죽산의 유학 박서풍(朴瑞豐)의 아비 박응도(朴凝道)는 89세, 죽산의 유학 권용(權瑢)의 아비 권이(權怡)는 85세, 용인의 유학 이의춘(李宜春)의 아비 이세주(李世柱)는 81세, 곡산의 유학 이사묵(李師默)의 아비 이원식(李元植)은 86세, 평산의 유학 이정필(李貞弼)의 아비 이수인(李壽仁)은 81세, 광주의 유학 이성헌(李成憲)의 아비 이집(李)은 82세, **남양**의 유학 한명소(韓命紹)의 아비 한도문(韓道文)은 85세, 광주의 유학 이덕흥(李德興)의 아비 이정운(李廷雲)은 85세, 장단의 유학 윤동익(尹東翼)의 아비 윤취관(尹就觀)은 84세, 춘천의 유학 이법만(李法萬)의 아비 이일(李鎰)은 85세인데, 모두 가자해 주는 은전을 입기를 원하였습니다. 사서(士庶)로서 나이 80이 된 자는 한 자급을 제수하고, 원래 자급이 있는 자에게는 한 자급씩 더해 주는 것이 법전에 실려 있습니다.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강 判下上言一百四十七度于各該司

목 (…) 振威幼學元復常 西部幼學申在漢 南原幼學金樂珪 長湍幼學禹世準 龍仁幼學鄭奕濟 楊根幼學李宜孫 楊根幼學趙東嫌 廣州幼學尹 顯相 大興幼學朴亮煥 陽城幼學崔秉玉 春川幼學李鋏 醴泉幼學嚴尙孝 長湍幼學趙世珪 稷山幼學金載徽 廣州幼學李德仁 原州幼學申晌 開城府幼學李命大 廣州幼學金時暹 坡州幼學白師中 南原幼學申義宅 東部良人李光濟 楊州幼學韓宗燁 稷山幼學沈命稷 狼川幼學金繼喆 陰竹幼學金廷耉 南部幼學李憲吉 **南陽**幼學徐有謹 竹山幼學朴瑞豊 竹山幼學權瑢 龍仁幼學李宜春 谷山幼學李師默 平山幼學李貞弼 廣州幼學李成憲 **南陽**幼學韓命紹 廣州幼學李德興 長湍幼學尹東翼 春川幼學李法萬 開城府幼學李陽郁 豊德閑良劉泰昌 瑞山幼學李晟源 廣州幼學李重光 西部幼學尹之五 長湍幼學金弘璧 衿川幼學李春載 廣州幼學韓宅維 金川軍官金德實 楊州幼學吳偉 廣州 忠義衛 金德守 安峽幼學金聖濟 洪川幼學龍有瑞爲其父加資事 (…)○吏曹啓言 (…) **南陽**幼學徐有謹父東修年八十八竹山幼學朴瑞豊父凝道年八十九竹山幼學權瑢父怡年八十五龍仁幼學李宜春父世柱年八十一谷山幼學李師默父元植年八十六平山幼學李貞弼父壽仁年八十一廣州幼學李成憲父▣年八十二**南陽**幼學韓命紹父道文年八十五 廣州幼學李德興父廷雲年八十五長湍幼學尹東翼父就觀年八十四春川幼學李法萬父鎰年八十五竝願被加資之典矣士庶年八十除一階元有階者加一階載在法典請依此施行允之(…)

<일성록, 정조13년(1789) 2월 16일(계묘)>

정치/사법

남양에 있는 노비 문제를 격쟁한 과천 동몽 한정욱(韓廷煜)의 원정을 회계하다

강 형조가 격쟁인(擊錚人)들의 원정(原情)에 대해 회계하였다.

목 ○ 해조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과천의 동몽 한정욱(韓廷煜)의 원정에, ‘저의 아비 한관(韓灌)은 곧 정사공신(靖社功臣) 서원군(西原君) 한교(韓嶠)의 6세손으로, 음사(蔭仕)하여 동부 도사(東部都事)에 이르렀는데 뜻하지 않게 파산(罷散)이 되었고 집안이 매우 빈궁하여 사우(祠宇)가 무너져도 어떻게 수선한 방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7촌 조카 한경주(韓景周)가 「대대로 전해 온 노비가 **남양(南陽)** 서면(西面)에 있으니, 공선(貢膳)을 거두어서 사우를 고쳐 건립하는 데에 보태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저의 아비가 직접 **남양**으로 가서 종들에게 공선을 거두어 돌아오려던 즈음에, 종 율동(栗同)이 「저의 5촌 조카 예분(禮分)에게 숨겨 놓은 두 딸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예분을 불러다 물어보니, 노비 문적(奴婢文籍)에 숨겨 놓은 두 딸의 이름을 등재하여 바치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 숙부가 사실대로 고한 데에 대해 분을 품고 숙부와 대판 싸우고는 염수(鹽水)를 들이마시고 마을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같은 동리에 사는 임복기(林卜起)와 예분의 동생 노랑(老郎)이 율동에게 달려와 알리자, 율동 부자가 급히 나와서 업어 왔는데,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절로 겁을 먹고 가산을 챙겨 달아나 버렸습니다. 때문에 시친(屍親)이 분함을 풀 곳이 없어 거꾸로 저의 아비에게 원한을 품고 사사로이 결박하여 본부에 급히 정소하니, **남양**의 전관(前官)이 원고의 무고만을 듣고서 억지로 옥안(獄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금천(衿川)의 수령이 복검(覆檢)할 때에 독약을 마시고 스스로 죽게 된 사유에 대해 논보(論報)하자, 상사(上司)에서 삼검(三檢)을 안산(安山)의 수령으로 정하였는데, 안산의 수령이 문제거리가 생길까 염려하여 초검(初檢)의 문서장(文書狀)만을 따라서 저의 아비를 원범으로 삼아 다시 옥안을 이루었습니다. 3년 동안 수금(囚禁)되어 한 가닥 숨만이 남아 있으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곡절을 사실대로 조사하게 하여 수척해 죽게 되는 것을 면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한정욱은 풀어 주고, 공초한 것에 대해서는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도백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해서 공정하게 판결하여 다시 정소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

강 刑曹以擊錚人原情回啓

목 該曹啓言 (…) 又啓言果川 童蒙 韓廷煜原情以爲渠父灌卽靖社功臣西原君嶠六世孫蔭仕至東部都事 矣意外罷散家甚貧窮祠宇頹圮萬無修葺之道渠之七寸侄景周言世傳奴婢在於**南陽**西面可以收貢補用於改建云故渠父躬往**南陽**收奴輩貢膳將還之際奴栗同言渠五寸侄禮分有二女隱匿云故招問禮分則無一辭花名以納而含憤於其叔之直告相與大鬨因飮鹽水昏倒於村前其同里林卜起及禮分之同生老郎奔告栗同則栗同父子急出負來見其致斃自生畏惴撤家逃走屍親肆毒無地反構怨於渠父私自結縛奔訴本府**南陽**前官偏聽彼隻之誣告勒成獄案衿川 官覆檢時以飮藥自斃之由論報則上司定三檢於安山官安山官爲慮生梗只循初檢之文狀以渠父爲元犯更成獄案三載囚禁奄奄一縷朝夕難保伏乞特令查實委折得免瘦死云矣廷煜放送所供請上裁敎以令道伯詳查公決俾無更訴之弊 (…)

<일성록, 정조13년(1789) 2월 16일(계묘)>

정치/사법

강화부 한삼창(韓三昌)의 살옥에 관하여 남양부사의 초검 내용을 토대로 논의하다

강 강화 유수 윤승렬(尹承烈)을 파직하고, 이어서 해부(該府)는 나문(拿問)하여 아뢰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조정진(趙鼎鎭)의 장계에, “강화부의 한삼창(韓三昌)이 이동기(李東機)를

살해한 옥사와 관련하여 형리(刑吏) 김계운(金繼運) 등의 초사(招辭)에, '이동기가 다툰 밭은 세 냥(兩)의 값어치에 불과하니, 혹여 뇌물을 받았더라도 어찌 많이 요구할 리가 있겠으며, 한삼창이 매우 빈천한 만큼 또한 어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여러 곳의 상흔이 또한 매우 맹랑한데도 검험(檢驗)하지 않은 일은, 경력(經歷)이 과연 검험하고자 하였으나 시친인 이동상(李東相)이 갑자기 또 발악을 하여 관장(官長)을 능욕하므로 이것을 유수에게 품목(稟目)하니, 유수가 「이것은 강상(綱常)의 큰 변괴이니 본영(本營)으로 돌아간 뒤에 엄하게 감처할 것이다. 형구를 채워 가두고 기다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동상 형제를 제사(題辭)대로 가두었습니다. 유수가 본영으로 돌아온 뒤에 경력이 검험할 것을 면전에서 청하니, 유수가 「이처럼 나약함을 보이므로 이런 변괴가 생겼다. 스스로 목을 맨 시체는 검험할 필요가 없다.」 하였고, 검률(檢律) 변세옥(卞世鈺)도, 「스스로 목을 맨 자는 법에 검험하는 것이 부당하니, 시체를 내주라.」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 수직한 이성록(李成祿)이 목을 매는 것을 직접 보고 손수 그 줄을 풀어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사증(詞證)이 의심스러운 점은 없으나 왼쪽 아래턱 피부에 가늘고 긴 상처가 있는데 끝내 단정 짓기 어렵습니다. 혹시나 목을 맬 때 줄의 조임이 좌우로 차이가 있었던 것인가 합니다. 한삼창이 문구멍으로 주먹을 넣어 가슴을 맹렬히 때렸다는 것은 매우 가소롭습니다. 주먹이 문구멍에 부딪치는데 어떻게 맹렬히 치겠습니까. 오른쪽 다리의 상처는 분명히 차꼬를 찼던 흔적입니다. 새로운 죄인이 옥에 들어와 오래도록 갇혀 있으면 쇄장배(鎖匠輩)가 돈을 요구하는 것은 또한 고질적인 병폐인데 정강이뼈를 한 번 찼다는 설은 바로 쇄장이 차꼬를 채운 상처를 숨기려는 까닭입니다. 다만 가슴에 검푸르고 딱딱한 상처가 또한 매우 의심스럽지만 이미 정확한 간증(看證)이 없으니 원범(元犯)을 정확하게 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동기가 한때 수금(囚禁)되어 노부모를 버리고 갑자기 죽음을 결행한 것이 또한 매우 괴이하지만, 본래 표독스러운 성격으로 격분을 참지 못해서 스스로 목을 매게 된 것은 있을 만한 일입니다. 한삼창은 사단(事端)이 그에게서 연유하여 문구멍으로 한 번 친 것은 모두 보았고 이동기의 죽음이 스스로 목을 맨 데서 연유하였으니, 비록 위협하여 죽게 한 죄로는 논할 수 없지만 의당 별도로 감단(勘斷)하여야 합니다. 김취정(金就廷)과 이기을방(李其乙方)이 차꼬를 채우고 뇌물을 요구한 일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서로 함께 악행을 저지른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기을방은 엄히 형추한 뒤 정배하고, 김취정은 본래 살옥 죄인(殺獄罪人)으로 매월 세 차례 동추(同推)를 행하는 것 외에 별도로 엄히 형추하기를 결단코 그만둘 수 없으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초검관(初檢官)인 **남양부사(南陽府使)** 신상권(申尙權)은, 검장(檢狀)에서 원범과 피고(被告)를 나누어 두 사람으로 본 것은 격례를 어긴 점이 있으니 해부의 형리를 본영에서 추치(推治)하고, 본부(本府)의 검률 변세옥은 스스로 죽은 옥수를 검험하지 않은 잘못도 죄를 주지 않아서는 안 되며, 본부의 형리 김계운·유흥신(劉興信)은 관문(官門)을 막고서 문권을 빼앗고 뇌물을 요구하였다는 말은 저들이 비록 변명하지만 믿기에는 부족하니, 모두 본영에서 경중에 따라 징치(懲治)할 계획입니다. 해당 경력 박일원(朴一源)은 이미 이동기가 스스로 목을 맸다는 보고를 받고 이어서 이동상이 소란을 피우는 일이 있었으면 한편으로는 검험을 행하여 그 죽게 된 이유를 조사하고, 한편으로는 본영에 보고하여 소란을 피운 이동상의 죄를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데 먼저 해영(該營)에 보고하여 끝내 검험을 할 수 없게 된 것은 일이 매우 놀랍습니다. 그 죄상을 해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차고 때렸든 스스로 목을 맸든 간에 상처가 의심스럽고 정범(正犯)과 간범(干犯)이 그런 듯하기도 하고 아닌 듯하기도 한데, 세 차례의 검장과 도백이 직접 신문하여 받은 공초(供招)가 모두 진실을 보여 주었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이처럼 의심스러운 문안은 자세히 파악하여 기필코 의심이 없게 한 뒤에야 그만두어야 한다. 회계(回啓)는 예사롭게 하지 말고 세 당상이 각각 의견을 진술하라. 이동상 형제가 양반의 이름을 그럭저럭 유지하며 본래 노여움을 쌓아 온 것은 우선 제쳐 두고, 옥수(獄囚)가 옥중에서 죽었으니 수신(守臣)이라는 자가 전례대로 검험을 해야 하는데 윽박질러서 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나약함을 보였다’는 등의 말로 경력을 힐책하였으니, 옥사의 체통에 크게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한다면 지엄한 법이 한 명의 수신에게 조롱당하는 것이 아닌가. 나라의 기강이 해이해진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데도 예사롭게 처리한다면 법을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해당 유수 윤승렬을 우선 파직하고 그 죄상을 의금부에 내려 나문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강 罷江華留守 尹承烈職仍命該府拿問以聞

목 京畿監司 趙鼎鎭狀啓以爲江華府 韓三昌殺李東機事刑吏金繼運等招辭以爲東機所爭之田不過三兩之直雖或捧賂豈有多索之理而三昌旣甚貧殘則亦安有是事乎諸處傷痕亦極孟浪不爲檢驗事則經歷果欲檢驗而屍親東相忽又發惡凌辱官長故以此稟目於留守則而爲此係綱常之大變怪還營後嚴處枷囚以待云故東相兄弟依題囚禁矣留守還營後經歷面請檢驗則留守以爲如是示弱故有此變怪自縊之屍體不足檢驗而檢律卞世鈺亦以爲自縊者法不當檢驗屍體則出給云且當夜守直之李成祿目覩自縊手解其索云詞證無疑而左邊頷頰下皮貼細長之痕終難斷定或是弔掛之除索力之緊歇左右差間三昌之納拳門竇猛撞胷脅者極爲可笑拳衝門竇何以猛着右脚痕損明是着梏之痕新罪人之八獄久囚銷匠輩索錢亦是痼弊而一踢脛骨之說乃是銷匠欲掩着梏之痕故也第其胷脅靑黑而堅硬者亦甚疑晦而旣無看證之明的則有難元犯之的定東機之一時囚禁捨其老父母而遽辦一死亦甚可怪而本以狠毒之性不忍激憤至於自縊或不無是理三昌則事端由渠門竇一撞俱有目覩而東機之死出於自縊則雖不可以威逼論宜有別般勘斷金就廷李其乙方則着梏索賂之事互相推諉同惡相濟明若觀火其乙方嚴刑定配就廷自是殺獄罪人月三同推之外別加嚴刑斷不可已請令該曹稟處初檢官 南陽府使 申尙權檢狀內元犯被告分爲二人者有違格例該府刑吏自臣營推治本府檢律卞世鈺自斃之獄囚不爲行檢者亦不可無罪本府刑吏金繼運 劉興信阻搪官門奪券索賂之說渠雖發明不足取信竝自臣營從輕重懲治計料該經歷 朴一源旣聞東機自縊之報繼有東相作孽之擧則事當一邊行檢以覈其致死之由一邊報營以治其作孽之罪而先報該營終至於不得檢驗者事極駭然其罪狀請令該府處之敎曰踢打與自縊痕損疑亂正犯干犯似然不然三次檢狀及道伯親問招供俱未知覷到眞境似此疑案不可不仔細理會期於無疑而後已回啓則除常格三堂家陳意見李東相兄弟之粗保班各回來積忤姑舍是獄囚之死於獄中而爲守臣者竝與前例檢驗而喝令勿爲反以示弱等說詰責經歷不但大乖獄體若此不已三尺之王章爲一守臣所沮弄乎足觀國綱解弛之一端此而尋常處之法將安用當該留守 尹承烈爲先罷職其罪狀下義禁府拿問以聞

<일성록, 정조13년(1789) 윤5월 12일(정유)>

정치/사법

남양에 정배된 죄인들을 방면시키다

강 각 도(道)의 편배(編配)에 대해 관대하게 처결하였다.

목 ○ 하교하기를, “편배가 적체되었으니 이 또한 백성에게 폐해를 끼치는 한 가지 단서이다. 서울의 죄수는 심리하였는데 지방의 죄수가 있는 감옥까지도 아울러 세척하게 하면, 한 읍에 십수 명의 죄수로 쇠잔한 읍에 죄인이 많아져서 주객(主客)이 모두 곤욕스럽게 될 폐

단을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어제 말을 만들어서 하교하였고, 오늘 또 해방(該房)으로 하여금 가지고 들어오게 하여 써서 내렸으니, 의도가 있는 것이다. 써서 내린 부류를 해조(該曹)로 하여금 탑교(榻敎)의 후록(後錄)에 부류를 나누고 이름을 나열하여 제도(諸道)에 행회(行會)하게 하고, 만일 지은 죄가 같은데 아직 풀려나지 못한 자가 있거든 또한 자세히 살펴보며 홀로 빠진 자가 있거든 일체 초기하여 비답이 내려지기를 기다려서 추후에 행회하게 하라."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지금 제도의 도류안(徒流案)을 살펴보니, 처(妻)의 상전(上典)을 능욕한 죄로 배소에 보내진 자가 거의 없는 도가 없다. 우선 원춘도(原春道)의 한 읍을 보니 진실로 본범(本犯)이 있다고 여겼다. 대체로 여종의 남편이 처의 상전에게 공손하지 않은 것은 정상이 매우 악독하여 비록 도년(徒年)이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가벼이 풀어 주어서는 안 되니, 특별히 형추(刑推)한 뒤에 풀어 주도록 명하였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 이는 필시 사람을 속여 물건을 취하는 등의 죄처럼 분명하지 않다 보니 모색할 수 있는 율명(律名)이 없어서 다른 죄를 이 율명으로 바꿔 적용함으로 인하여 그런 것이었다. 제도의 도류안 가운데 처의 상전을 능욕한 죄로 배소에 보내진 부류에 대해 판당(判堂)으로 하여금 그 당시의 율관(律官)에게 조사하여 각각 그 이름 아래에 믿을 만한지의 여부를 열록(列錄)한 다음 별단을 갖추어 초기하게 하라. 상리(常理)로 미루어 보건대, 지방은 이러한 일이 없는데 서울만 유독 이처럼 많으니, 율관의 간악한 정상과 해조(該曹)의 행위를 알기 어렵지 않다. 사사로운 친분에 구애받지 말고 사실대로 초기하도록 해조에 거듭 신칙하라." 하였다. (…)

○ 형조가 아뢰기를, "경기에 정배한 죄인의 도류안 가운데 죽산(竹山)의 이인철(李仁喆), 음죽(陰竹)의 강명담(康命聃), **남양(南陽)**의 종 사징(士徵)·서일성(徐日成)·임백춘(林百春), 인천(仁川)의 종 지팽방(持彭放), 삭녕(朔寧)의 박순광(朴順光)은 도백(道伯)으로 하여금 세 차례 엄히 형추하고 풀어 주며, 도원역(桃源驛)의 시경춘(柴敬春)은 도백으로 하여금 한 차례 엄히 형추하고 풀어 주게 하며, 양성(陽城)의 종 개발(介發)은 본관(本官)으로 하여금 한 차례 엄히 형추하고 풀어 주게 하며, **남양**의 양계원(梁繼元)은 도백으로 하여금 엄하게 곤(棍) 20도(度)를 치고 풀어 주게 하며, 삭녕의 박귀태(朴貴太)는 원백(原伯)에게 이송(移送)하여 세 차례 엄히 형추한 다음 잔역(殘驛)의 종으로 충원하게 하되 사면령이 있으면 용서하라고 써서 내리셨습니다.

전교대로 이인철 등 6명은 풀어 주며, 박순광은 세 차례 엄히 형추하고 풀어 주며, 시경춘 등 2명은 한 차례 엄히 형추하고 풀어 주며, 양계원은 엄하게 곤 20도를 치고 풀어 주며, 박귀태는 원백에게 이송하도록 해도(該道)의 도신에게 분부하였습니다." 하였다. (…)

강 疏決各道編配

목 敎曰編配之積滯此亦貽弊小民之一端京囚猶審理外囚所在犴陛竝令洗滌則一邑十數殘邑多人主客俱困之弊不可不念昨有措辭下敎今又令該房持入書下意蓋在也書下之類令該曹以榻敎後錄分秩列名行會諸道如有罪同而未蒙放者亦爲詳閱如有獨漏者一體草記待批下追後行會又敎曰今閱諸道徒流案以凌辱妻上典罪發配者殆乎無道無之先見原春一邑意謂眞有本犯大抵婢夫之不恭於妻上典情狀痛惡雖曰徒年限近不可輕放特命刑推後放送矣更思此必如欺人取物等依倂沒模捉律名因他罪換用此律而然諸道徒流案中以凌辱妻上典罪發配之類令判堂查問於其時律官各其名下列錄信然與否具別單草記以常理推之外方則無是京中獨如是夥然者律官奸狀該曹所爲不難知也無拘顔私從實草記事申飭該曹 (…) ○刑曹啓言京畿定配罪人徒流案中竹山 李仁喆 陰竹 康命聃 **南陽**奴士徵 徐日成 林百春 仁川奴持彭放朔寧 朴順光令道伯嚴刑三次放送桃源驛 柴敬春令道伯嚴刑一次放

送陽城奴介發令本官嚴刑一次放送**南陽** 梁繼元令道伯嚴棍二十度放送朔寧 朴貴太移送原伯處嚴刑三次仍充殘驛奴遇赦分揀事書下矣依傳敎李仁喆等六名放朴順光嚴刑準三次放送柴敬春等二名嚴刑一次放送梁繼元嚴棍二十度放送朴貴太移送原伯事分付于該道道臣 (…)
<일성록, 정조13년(1789) 윤5월 13일(무술)>

정치/사법

지평 박서원(朴瑞源)을 남양부에 정배하다

강 장령 안정대(安鼎大), 지평 권중헌(權中憲)·박서원(朴瑞源), 정언 유현장(兪鉉章) 등이 연명으로 차자를 올린 데 대해, 유현장은 절도(絶島)에 정배(定配)하고 안정대 등은 경기 연읍(沿邑)에 산배(散配)하라고 명하였다.

목 (…) ○ 의금부가 유현장을 강진현(康津縣) 신지도(薪智島)에 종신토록 정배하고, 안정대를 인천부(仁川府)에, 권중헌을 통진부(通津府)에, 박서원을 **남양부(南陽府)**에 모두 산배하였다고 아뢰었다.

강 掌令 安鼎大 持平 權中憲 朴瑞源 正言 兪鉉章等聯箚命鉉章絕島定配鼎大等畿沿散配

목 (…) ○禁府以兪鉉章 康津縣薪智島限己身定配安鼎大 仁川府 權中憲 通津府 朴瑞源 **南陽府**竝散配啓
<일성록, 정조13년(1789) 5월 22일(무인)>

정치/사법

남양인 한관(韓灌)의 살옥을 심리하다

강 서울과 지방의 살옥(殺獄)을 심리(審理)하였다.

목 ○형조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남양부(南陽府)**의 한관(韓灌)이 여종 예분(禮分)에게 몽둥이질을 하여 죽게 한 옥사입니다. 환시(宦侍)와 교통하는 것을 나라에서 엄히 금하고 있음에도 추노(推奴)를 대신해 주었으며, 더구나 명색이 조관(朝官)이면서 거리낌 없이 이를 범했으니, 사람을 죽인 것 외에도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흉악한 짓을 한 정절(情節)은 잔학하고 참혹하니, 한 차례 회초리로 때리고 두 차례 몸을 묶어 놓고 때렸다는 사실에 대해서 한관도 이미 자복하였는데, 복검관(覆檢官)이 몽둥이로 친 흔적이 많은 사실은 돌아보지 않고 손톱과 발톱의 색이 푸르고 항문에 넣은 비녀가 변색한 것을 이유로, 독약 마신 것을 실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면 온몸에 푸른빛이 많고 손톱 발톱도 조금 푸른색을 띠는 것은 본래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항문에 비녀를 넣어 검험할 때에는 잠시 동안만 검시(檢屍)하는 것인데, 당일 꽂아서 그 다음날 빼냈으니 일찍이 들어 보지 못한 일입니다. 독물의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는데 그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서둘러 단정하는 것은 검시의 체통에 크게 어긋납니다. 복검관을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옥사는 한관의 아들 한정욱(韓廷煜)의 격쟁(擊錚)으로 인하여 시작되어 도백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하게 해서 공정하게 처결하라고 판하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원정(原情) 중에 이른 바 예분이 율동(栗同)과 크게 싸워서 간수를 마시고 죽었다는 말과 임복기(林福己)와 노랑분(老郎分)도 율동과 서로 싸워서 예분이 약을 마시고 죽은 연유를 바른대로 고했다는 등의 말에 대하여 한 차례 물어서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동과 오동(吳同) 등은 모두가 당초 진고(陳告)한 사람이고 아울러 한관을 끌어댄 말이 있는데 아직도 잡지 못하고 있으니 기강으로 보아 지극히 놀랍습니다. 다시 도신으로 하여금 도망 중에 있는 두 놈을 즉시 기

포(譏捕)한 뒤에 신문해야 할 각 사람들을 반복해서 엄히 조사하여 이치를 따져 계문하게 하고, 계문이 올라온 뒤에 품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한경주(韓景周)는 임금을 가까이 모시는 내수(內豎)로서 외조(外朝)와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줄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관을 종용하여 추노를 대행하게 하여 이와 같이 사람을 죽이는 변고를 일으켰으니 너무나 통탄스럽고 놀랍습니다. 해부(該府)로 하여금 나문하게 하여 엄하게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르고 하교하기를, "여러 검관(檢官)의 결사(結辭)가 모두 실인이 같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말을 하나, 행동거지가 망측하고 정절이 완악한 것은 실인과는 관계없다. 이른바 한관이란 자는 비록 한미하기는 하나 역시 음관(蔭官)이니 나라의 금법이 지극히 엄중하다는 것을 잘 알 것인데 친속이라 가탁하고 환시의 집을 왕래하면서 잔약한 백성을 괴롭히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변고까지 저질렀으니 진실로 말할 수 없이 악독하다. 더구나 예분은 한경주 양부(養父)의 여종이니 한관과는 더욱 관계가 없는데 환시의 친속이라는 것에 빙자하여 학대하면서 갖은 혹독한 형벌을 가했으니,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한관의 죄는 죽여도 아까울 것이 없다. 가령 예분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간수를 마시고 자결했다 하더라도 핍박하여 죽인 죄를 어떻게 면하겠는가. 구타를 당해 죽었는지 독물을 마시고 죽었는지는 애당초 물어볼 것도 없으니, 법대로 사형시키는 것을 단연코 그만둘 수 없다. 한관을 각별히 엄하게 신문하여 자백을 받도록 하라. 만약 계속 형식적으로 추문(推問)하다가 의심스러운 단서를 밝히지 못할 경우에는 주추관(主推官)과 동추관(同推官)은 그 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으로 엄하게 신칙하라.
복검할 때 몽둥이를 맞은 상처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밤새도록 비녀를 꽂아 두었다가 가까스로 음독이라는 옥안을 만들었으니, 자연 검시를 잘못한 죄가 있다. 해당 검관에게 우선 함사(緘辭)를 보내 공초를 받으라. 한경주는 내시의 신분으로서 외인(外人)과 교통하고 문권(文券)을 발급하여 시골구석에 사는 사람들을 침탈하여 어지럽힌 정상이 이제 드러났으니 형벌을 가중하는 법을 시행함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을 따져 보면 계획을 꾸민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구나 그의 이름이 내시부의 원장부에 실려 있지 않으니 굳이 해부(該府)로 하여금 엄하게 감처하도록 청할 것이 있겠는가. 도백으로 하여금 잡아다 각별히 엄하게 형신하여 공초를 받게 하고, 그가 악행을 저지른 절차와 이름을 바꾼 곡절도 하나하나 끝까지 조사하여 사실을 캐내서 장문하라고 분부하라.
그리고 검관으로 말하더라도 복검관은 검장 내용에서 '본 옥사 외에도 환시와 교통하여 대신해서 살인죄를 범했다.' 라고 하여 다소나마 죄를 성토하는 말을 하였으니 내조(內朝)와 외조(外朝)의 구분을 엄격히 하는 뜻에서 본래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런데 초검관은 그의 처지가 등한한 무변(武弁)과는 더욱 다르면서도 이른바 검장에 내조와 외조라는 말을 애당초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예사롭게 간과해서는 안 되니, 해당 검관 왕한정(王漢禎)을 해부로 하여금 나문하여 엄히 감처하게 하여 다른 수령들을 징계하도록 하라. 법전(法典)에 '조관(朝官) 중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가 살인에 관련되었을 경우에는 옥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문한다.' 라고 했다. 내시도 다름이 없으니, 이후로는 조관의 예에 따라 서울과 지방의 옥관이 스스로 판단하여 거행하도록 분부하고, 이어 제도(諸道)에 통지하라." 하였다. (…)

강 審理京外穀獄

목 刑曹啓言 (…) 又啓言**南陽府** 韓灌杖打婢禮分致死事宦侍交通國禁截嚴替行推奴且關身名忝在朝官無難犯此殺人之外罪係罔赦而若其行兇情節殘虐慘毒一次撻楚兩次縛打韓灌亦已自服而 覆

檢官捨爛熳杖打之痕以其指甲之色靑穀道之釵變實因懸以服毒蓋人死日久渾體多靑瓜甲微靑固非異事而穀道驗釵不過一時探試者則今日插之明日拔出曾所未聞之事旣不得毒物眞贓遽斷以由此致死大違檢體覆檢官推考蓋此獄始因韓灌子廷煜之擊錚有令道伯詳査公決事判下則其子原情中所謂禮分與栗同大閧飮鹽水致斃之語及林福已老卽分亦以與栗同相閧飮藥自斃之由直告等說不可不一次質覈栗同 吳同等一是當初陳告之人兼有韓灌援引之語而尙不捕捉紀綱所在極爲駭然更令道臣在逃兩漢卽速譏捕後應問各人處反覆嚴査論理啓聞後稟處韓景周則以近侍內竪外朝之無得相接豈或不知而慫慂韓灌替行推奴致此殺變者萬萬痛駭請令該府拿問重勘從之敎以諸檢官結辭皆以實因之同異爲說而行止之叵測情節之獰頑在於實因之外所謂韓灌雖微亦蔭官耳當知邦禁之至嚴而托以親屬往來宦侍之家欺逼殘氓至成殺越之變固已萬萬痛惡況禮分卽景周養父之婢則在灌尤無所係而憑藉賊虐酷刑備至卽此一款灌之罪殺無惜藉令禮分不堪冤苦飮滷自盡逼殺之律烏得免乎被打被毒元無足問如法償命斷不容已韓灌各別嚴訊期於取服如或一味例推不覈疑端主推同推官難免其罪以此嚴飭覆檢時不問杖痕經宵插釵艱成飮毒之案自有誤檢之罪當該檢官爲先發緘取招韓景周則身爲內侍交通外人給付文券侵擾鄕曲之狀今旣現發宜施加倍之律原其作俑無異造謀況渠名不載內侍原籍何必請令該府嚴勘付之道伯捉來各別嚴刑取招其行惡節次變名委折一一究覈得情狀聞事分付雖以檢官言之覆檢官狀辭本獄之外以交通宦侍替犯殺越有多少聲罪之語嚴內外之分固如此而初檢官則其地處尤異於等閑武弁則所謂檢狀內外二字初不概及此等處不可尋常看過該檢官 王漢禎令該府拿問嚴勘以懲他守令法典內朝官通訓以下係干殺越自斷訊推內侍亦無異同此後則依朝官例京外獄官自斷擧行事分付仍爲知委諸道 (…)

<일성록, 정조13년(1789) 5월 22일(무인)>

정치/사법

전 남양부사 왕한정(王漢禎)의 원정을 논의하다

강 의금부의 시수(時囚)를 풀어 주었다.

목 ○ 해부(該府)가 선전관 윤형동(尹衡東)의 원정(原情)으로 의처(議處)하기를 계청(啓請)한 데 대해, 하교하기를, "부과(付過)하고 풀어 주라." 하였다. 또 전 진위 현령(振威縣令) 이항연(李恒演), 전 양성 현감(陽城縣監) 이두원(李斗源), 전 태안 현감(泰安縣監) 박형원(朴泂原)의 원정으로 형추(刑推)하기를 계청한 데 대해, 하교하기를, "부과하고 풀어 주라." 하였다.

또 전 **남양부사(南陽府使)** 왕한정(王漢禎)의 원정으로 의처하기를 계청한 데 대해, 윤허하였 다. 또 아뢰기를, "왕한정은 처지가 다른 사람과 자별하면서 한관(韓灌)이 친족인 환관(宦官)과 부동하여 인명을 살해한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인데도 검장(檢狀) 중에 옥사의 내용만 논하고 그가 환관과 교통한 죄는 애당초 성토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놀랍습니다. 이것으로 조율하여 장 80은 수속하고 고신 3등을 추탈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형조가 아뢰기를, "죄인 박우(朴瑀)를 참작하여 정배하라고 명하셨으나 신들이 감히 명을 받들 수 없는 것은 전후로 다름이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엄하게 형신을 가하여 기어코 자백을 받아 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판하(判下)한 대로 거행하라." 하였다.

또 아뢰기를, "유광철(劉廣鐵)은 훈국에 이송하여 곤장(棍杖)을 치게 하고, 유한수(劉漢秀)는 풀어 주고, 유놈(劉老味)은 한 차례 엄히 형추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묘관(墓官)이 올린 통첩에, 구타당한 산지기 최대흥(崔大興)의 상처가 아물어 가며 통증도 점차 적어져

간다고 하니, 유놈은 우선 그대로 가두어 두었다가 보고 기한(保辜期限)까지 기다려 보고 엄중하게 감처(勘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放禁府時囚

목 該府以宣傳官 尹衡東原情啓請議處敎以付過放送又以振威前縣令 李恒演 陽城前縣監 李斗源 泰安前縣監 朴洞原情啓請刑推敎以付過放送又以**南陽前府使** 王漢禎原情啓請議處允之又啓言漢禎地處與他自別則韓灌之符同族宦殺越人命何等驚駭而檢狀中只論獄理宦竪交通初不聲罪者極爲駭然請以此照律杖八十收贖奪告身三等允之○刑曹啓言罪人朴瑀酌配有命而臣等之不敢奉承前後無異請仍加嚴訊期於輸情敎以依判下擧行又啓言劉廣鐵移送訓局使之棍治劉漢秀放送劉老味嚴刑一次而墓官移牒內被打山直崔大興傷處向完痛症漸差云劉老味姑爲仍囚請待辜限重勘允之

<일성록, 정조13년(1789) 5월 25일(신사)>

정치/사법

이미 방송된 남양의 정배 죄인과 같이 여타 죄인도 방송하라고 하교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형조 판서 심이지(沈頤之)를 소견하였다.

목 ○ 심이지가 서울과 지방의 살옥(殺獄)에 대한 사안(査案)을 가지고 와서 대령하였기 때문이다.

○ 심이지가 아뢰기를, "지난번 각 도에 편배(編配)한 죄인을 처분할 때에 같은 죄를 지었는데 풀려나지 못한 부류가 있거든 뽑아서 아뢰도록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도류안(徒流案)을 가져다 상고해 보니, **남양(南陽)**에 충군(充軍)한 죄인 양계원(梁繼元)은 내시사(內試射)에 농간을 부린 죄로 이번에 엄하게 곤(棍) 20도를 친 뒤에 풀어 주었는데 흥양(興陽)의 강윤정(姜潤正)은 같은 죄인데 풀려나지 못하였습니다. (…) 하교하기를, "일체 풀어 주라." 하였다. (…)

강 召見刑曹判書 沈頤之于重熙堂

목 頤之以京外殺獄査案來待故也○頤之啓言向來各道編配罪人處分時有同罪未蒙放之類抄出以聞之命矣取考徒流案則**南陽**充軍罪人梁繼元以內試射用奸罪嚴棍二十度放送而興陽姜潤正同罪未蒙放 (…) 敎以一體放送 (…)

<일성록, 정조13년(1789) 6월 12일(병인)>

정치/사법

사알 조정순(趙廷舜)을 남양부에 정배하다

강 사알 조정순(趙廷舜)을 조율(照律)하고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목 ○ 승지 이서구(李書九)가 아뢰기를, "어제 '유사 당상(有司堂上) 심이지(沈頤之)는 와서 대령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사알이 '서유린(徐有隣)은 와서 대령하라.'는 뜻으로 본원에 전하였다가, 오늘 입시하여 입품(入稟)한 뒤에야 비로소 잘못 전하였다는 뜻으로 와서 고하였습니다. 막중한 전명(傳命)을 이렇게 잘못하였으니, 해당 사알을 유사(攸司)로 하여금 엄하게 과치(科治)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과치하는 것은 가볍다. 이미 잘못 전한 뒤에 또 미봉하려고 하였으니, 이러한 길을 한 번 열어 두면 후일의 폐단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해당 사알 조정순은 병조로 하여금 엄히 곤(棍)을 치고 공초(供招)를 받은 다음 초기(草記)하게 하고, 이덕봉(李德鳳)은 유사로 하여금 우선 엄하게 다스리게 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사알 조정순은 조율하여 정배하고, 이덕봉은 정배에 대해 공죄

(公罪)로 조율하여 수속(收贖)하고 풀어 주라. 그대로 차당(次堂)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 금부가, 조정순은 장(杖) 100은 수속하고 고신(告身)은 모두 추탈(追奪)하며 웅천현(熊川縣)에 유(流) 3000리(里)로 정배하고, 이덕봉은 장 100에 처하고 도(徒) 3년으로 정배하는 데 해당하며 공죄로 시행하여 수속하고 풀어 주기를 계청(啓請)한 데 대해,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정순을 기연(畿沿)에 다시 배소(配所)를 정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조정순을 **남양부(南陽府)**에 유 3000리로 정배하겠습니다." 하였다.
강 命司謁 趙廷舜照律定配
목 承旨 李書九啓言昨有有司堂上沈頤之來待之命而司謁以徐有隣來待傳于本院今日入侍入稟之後始以誤傳之意來告莫重傳命有此錯誤當該司謁請令攸司從重科治敎曰科治輕矣旣誤傳之後又欲彌縫此路一開後弊難防當該司謁 趙廷舜令兵曹嚴棍取招草記李德鳳令攸司爲先重治又敎以司謁趙廷舜照律定配李德鳳定配照律公罪收贖放送仍令次堂擧行○禁府啓請趙廷舜杖一百收贖告身盡行追奪熊川縣 流三千里定配李德鳳杖一百徒三年定配公罪收贖放送允之又啓言趙廷舜畿沿更定配所事命下矣廷舜南陽府流三千里定配
<일성록, 정조13년(1789) 12월 1일(임자)>

정치/사법
남양부 배소에 도착한 조정순(趙廷舜)을 방면하라고 명하다
강 금부와 형조에 승지를 보내어 경죄수(輕罪囚)를 풀어 주게 하였다.
목 (…) ○ 경기 감사 서유방이 죄인 조정순(趙廷舜)이 **남양부**의 배소에 도착하였다고 아뢴 데 대해, 전교하기를, "정상이 용서할 만한 점이 있으니 용서하고 풀어 주라고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강 遣承旨于禁府 刑曹放釋輕囚
목 (…) ○京畿監司 徐有防以罪人趙廷舜 南陽府到配啓敎曰情有可恕分揀放送事回諭
<일성록, 정조13년(1789) 12월 10일(신유)>

정치/사법
수공(水工) 이복이(李福伊)를 남양부에 정배하다
강 상언(上言)을 바친 사람인 함위득(咸渭得) 등을 정배하였다.
목 ○ 정원이 아뢰기를, "얼마 전 충찬위(忠贊衛) 함위득이 상언 한 장(張)을 본원 군사에게 전해 주어 정원에 바치게 하였는데, 조사(措辭)가 매우 외람된 데다가 하는 짓이 또한 지극히 놀랍고 통탄스럽습니다. 모두 유사에게 넘겨서 법에 따라 엄히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막중한 궁중에서 이러한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하였으니 평소에 제대로 검칙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입직한 해당 병조 당상과 낭청은 엄히 감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죄는 본원에 있는데 어찌 병조에 죄를 돌리는가. 이 계사(啓辭)는 시행하지 말고, 해당 승지는 엄하게 추고하라. 그리고 정원에 있었던 승지들도 모두 추고하라." 하였다.
○ 병조가 아뢰기를, "얼마 전 충찬위 함위득이라는 놈이 정원에 상언 한 장을 바쳤다고 하기에 듣기에 매우 놀라운 일이라 잡아 와서 조사하였더니, '상언 한 장을 어제 저녁 금호문(金虎門) 밖에서 정원의 수공(水工) 이봉재(李奉才)에게 전해 주어 정원에 바치게 하였

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봉재에게도 추문(推問)하였더니, ‘함위득과는 아이 때부터 서로 친했는데, 어제 함위득을 만났더니 종이 한 장을 전해 주면서, 「정원에 바쳐 주면 내가 후한 값으로 보답하겠다.」 하기에 그 말에 솔깃하여 과연 정원에 바쳤습니다.’ 하였습니다. 그 범죄의 실상을 따져 보면 너무나 통탄스럽고 놀라운 일이니, 본조에서 우선 엄히 곤(棍)을 치고 모두 유사에게 넘겨서 법에 따라 엄히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형조가 아뢰기를, “죄인 함위득은 하교하신 대로 병조에 이송하고, 이봉재는 한 차례 엄히 형추한 뒤에 신지도(薪智島)에 충군(充軍)하고, 이봉재 대신 실제로 입역(立役)한 수공 이복이(李福伊)는 **남양부(南陽府)**에 도(徒) 3년으로 정배하여 모두 즉시 압송하겠습니다.” 하였다.

○ 병조가 함위득에게 곤 15도를 쳐서 도성 밖으로 쫓아 보냈다고 아뢰었다.

강 配投呈上言人咸渭得等

목 政院啓言卽者忠贊衛咸渭得以上言一張傳給本院軍士投呈院中措辭旣甚猥屑所爲亦極駭痛幷出付攸司照法嚴勘莫重淸禁有此無前之事常時不能檢飭之失在所難免當該入直兵曹堂郞所當重勘何以爲之敎以罪在本院何可歸罪兵曹乎此啓辭勿施當該承旨從重推考在院承旨一竝推考○兵曹啓言卽者忠贊衛咸渭得爲名漢投呈上言一張於政院云聞極驚駭捉來査問則以爲上言一張昨夕金虎門外傳給政院水工李奉才使之轉投政院云故李奉才處亦爲推問則以爲自兒時與渭得相親矣昨逢渭得則傳給一張紙投諸院中則吾當厚直相報云故甘聽其言果爲投諸院中云矣究厥情犯萬萬痛駭請自臣曹爲先嚴棍幷出付攸司照法嚴繩允之○刑曹啓言罪人咸渭得依下敎移送兵曹 李奉才嚴刑一次後薪智島充軍奉才立役之實水工李福伊 **南陽府**徒三年定配幷卽押送○兵曹以咸渭得決棍十五度城外逐送啓

<일성록, 정조14년(1790) 1월 25일(병오)>

정치/사법

김원재(金元才)를 남양부로 이배하다

강 형조(刑曹)가 자산부(慈山府)에 정배된 죄인들을 이배(移配)하는 것으로 아뢰었다.

목 ○ 해조(該曹)가 아뢰기를, “평안 감사 정창성(鄭昌聖)의 장본(狀本)으로 인하여 자산부에 정배된 죄인들을 이배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김종해(金宗海)는 문의현(文義縣)으로, 김원재(金元才)는 **남양부(南陽府)**로, 김언덕(金彦德)은 마전군(麻田郡)으로, 김광옥(金光玉)은 진보현(眞寶縣)으로, 승(僧) 회영(會英)은 음죽현(陰竹縣)으로 아울러 이배해야겠습니다. 즉시 각각의 해당 배소(配所)로 압송하라고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刑曹以慈山府定配罪人等移配啓

목 該曹啓言因平安監司 鄭昌聖狀本慈山府定配罪人等移配事命下矣金宗海 文義縣 金元才 **南陽府** 全彦德 麻田郡 金光玉 眞寶縣僧會英 陰竹縣竝移配卽爲押送于各路配所事請分付道臣允之

<일성록, 정조14년(1790) 2월 2일(계축)>

정치/사법

남양인의 상언을 판하하다.

강 각 해사(該司)에 상언(上言) 270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목 (…) 여주(驪州)의 유학 민우인(閔友仁)·유장운(柳章運)·박선호(朴善浩)·유경운(柳慶

運), 순천(順天)의 유학 윤심규(尹心圭), 안산(安山)의 유학 이시심(李是鈊), 원주(原州)의 유학 이서장(李漵章), 양근(楊根)의 유학 유택중(柳宅中)·강세원(姜世元), **남양(南陽)**의 유학 홍정조(洪靖祚), 포천(抱川)의 유학 홍성문(洪聖文)·강수귀(姜壽龜), 용인(龍仁)의 유학 이의춘(李宜春)·정이규(鄭履規)·안종옥(安宗玉)·오명철(吳命喆), 직산(稷山)의 유학 심명직(沈命稷), 정평(定平)의 유학 정지춘(鄭芝春), 양주의 유학 이현동(李顯東), 광주(廣州)의 유학 윤정구(尹鼎九)·남정우(南正羽)·박도악(朴道岳)·이상경(李商慶)·박광천(朴光天)·이응해(李應海), 부안(扶安)의 유학 최진하(崔鎭夏), 청주(淸州)의 유학 오성걸(吳聖杰), 서부(西部)의 유학 이도원(李道源), 장단(長湍)의 유학 이현유(李鉉裕), 익산(益山)의 유학 권술동(權述東), 과천(果川)의 유학 이중현(李重鉉), 파주(坡州)의 유학 백사중(白師中), 괴산(槐山)의 유학 이득화(李得和), 이천(利川)의 유학 김성집(金聲集)·이영철(李永喆), 양성(陽城)의 유학 이광언(李光彦)·김득구(金得九)·오재악(吳載岳)·최병옥(崔秉玉), 평산(平山)의 유학 최응창(崔應昌), 남원(南原)의 유학 박진광(朴震光)·신희택(申羲宅)·최광필(崔光弼), 대흥(大興)의 유학 박양환(朴亮煥), 순흥(順興)의 유학 최홍식(崔弘植), 춘천(春川)의 유학 김창눌(金昌訥)·김안눌(金安訥)·이현정(李鉉鼎)·이법만(李法萬), 죽산(竹山)의 유학 강의형(姜宜炯)·윤재오(尹載五), 면천(沔川)의 유학 이영길(李泳吉), 충주(忠州)의 유학 김수구(金壽耉), 남부(南部)의 양인(良人) 지태창(池泰昌), 진위(振威)의 유학 안태휴(安泰休)·윤복상(元復常), 가평(加平)의 유학 신질(申晊), 금천(衿川)의 유학 이춘재(李春載), 강진(康津)의 유학 윤사광(尹思匡), 홍주(洪州)의 어영군(御營軍) 정사득(鄭四得), 사역원 생도(生徒) 현익(玄熼), 동부(東部)의 양인 강도욱(姜道郁), 서부의 양인 이용득(李龍得), 남부의 양인 김수헌(金修憲), 동부의 출신(出身) 박복만(朴福萬), 한량(閑良) 안정삼(安鼎三)은 그 아비에게 가자(加資)해 달라는 일이다. (…) 송도(松都)의 동몽 박경복(朴庚福), 양주의 내농포(內農圃) 백성 채광국(蔡光國), 안악의 한량 최치형(崔致亨)과 동몽 이성춘(李成春), 흥양(興陽)의 동몽 김차갑(金次甲), **남양**의 유학 오성우(吳成羽), 대구의 동몽 박귀동(朴貴同), 공주의 유학 진태서(陳泰黍), 북부의 동몽 전효득(田孝得)은 그 아비를 정배에서 풀려나게 해 달라는 일이다. (…) 훈련도감의 승호군(陞戶軍) 장한규(張漢奎), 순천의 유학 방건중(方建中), 서부의 유학 오태성(吳泰成), 서부의 진사 한공필(韓公弼), 전 만호 지태현(池泰玄), 남부의 한량 박후혁(朴後赫), 서부의 독녀(獨女) 김 조이, 임실(任實)의 유학 이달효(李達孝), 마전(麻田)의 유학 최덕량(崔德亮), 북부의 유학 황기(黃杞), 고양의 전 수문장(守門將) 김정엽(金鼎燁), 양성의 유학 백동욱(白東旭), 용인의 유학 공내주(孔來周), **남양**의 유학 이사백(李思白), 수원의 양인 황복천(黃福天), 여주(呂州)의 유학 정순(鄭珣), 중화의 유학 이명관(李命寬), 북부의 전 참봉 구제흠(具緹欽), 남부의 유학 안석량(安錫良), 북부의 유학 이승운(李承運), 해미의 유학 홍약복(洪若復)·김순건(金舜健), 충주의 박후재(朴厚才), 경주(慶州)의 유학 원서상(元瑞常), 용인의 유학 남응관(南應寬), 옥천(沃川)의 유학 이겸중(李謙中), 청주의 유학 민인(閔訒), 정산의 한량 김양려(金陽麗), 지평(砥平)의 유학 김재만(金載萬), 남포(藍浦)의 유학 김규환(金奎煥), **남양**의 유학 송복규(宋復圭)는 산송(山訟)에 관한 일이다.

도자전(刀子廛)의 시민(市民) 이윤영(李潤英) 등은 상의원(尙衣院) 장수(匠手)와 소송을 건 일이다. (…) 아울러 전교하기를, "이치를 따져 품처하라." 하였다. (…)

○ 이조가 아뢰기를, "여주(驪州)의 유학 민우인(閔友仁)의 아비인 유학 민학공(閔學貢)은 80세, 양근(楊根)의 유학 정성래(鄭星來)의 할아비인 유학 정성유(鄭聖柔)는 86세, 순천(順天)의 유학 윤심규(尹心圭)의 아비 윤사필(尹思弼)은 87세, 안산(安山)의 유학 이시심(李是

鈦)의 아비인 유학 이재양(李載陽)은 81세, 북부의 유학 김구(金球)의 할아비인 통덕랑(通德郞) 김행(金炕)은 86세, 원주(原州)의 유학 이숙장(李淑章)의 아비인 통덕랑 이진담(李震聃)은 84세, 양근의 유학 유택중(柳宅中)의 아비인 유학 유필(柳泌)은 81세, **남양(南陽)**의 유학 홍정조(洪靖祚)의 아비인 통덕랑 홍경(洪璥)은 80세 (…) 모두 가자(加資)의 은전을 입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사서인(士庶人)으로서 80세인 자에게 한 자급(資級)을 제수하되 원래 자급이 있는 자에게는 한 자급을 더한다고 법전에 실려 있으니, 모두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 한성부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유학 이사백(李思白)의 상언에, '제가 죽은 어미를 길옆에 대충 장사 지낸 지가 이미 1년이 지났고 가형(家兄)이 바닷가에 정배된 것도 도년(徒年)의 기한이 지났으므로 통분이 골수에 서려 작년에 4번이나 원통함을 호소하였는데 다행히 다시 조사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전 도신 조정진(趙鼎鎭)이 사관을 차정(差定)하여 저쪽 집이 송사에서 패소하였고 또 안가(安哥)네 무덤을 파 가도록 독촉하였는데 안가가 기한을 물려 파 가지 않고서 또 성상께 상언을 한 결과 안가와 저희 집의 두 무덤을 모두 파서 옮기게 하고 모두 감배(勘配)하였습니다. 그런데 안가는 이미 풀려났고 제 형은 아직 정배된 상태에 있으니 가엾게 여기시어 제 어미 무덤의 구광(舊壙)을 보존할 수 있게 하고 제 형이 은혜를 입고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안가와 이가네 두 무덤을 함께 파게 한 것은 이미 영읍(營邑)에서 판결한 것이니 이 송사는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호소하니 아마도 원통하고 억울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도신으로 하여금 별도로 사관을 정해 다시 처결하게 하고, 그 형의 편배(編配)에 대해 원통함을 호소한 것은 매우 무엄하니 본부에서 과치(科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남양**의 유학 오성우(吳成羽)의 상언에, '제 6대조 남행(南行) 좌부장(左部將) 오국량(吳國良)이 임진왜란 때 창의(倡義)하여 싸우다 죽어서 시체를 싸가지고 돌아와 본부에서 장사 지냈고, 자손이 계장한 것이 지금까지 몇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진년(1784, 정조8)에 동향(同鄕)의 홍희계(洪熙啓)가 자기 처를 선산 가장자리 앞에 투장하여 고조의 분묘와 거리가 10보도 못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족친들이 차마 그대로 선영을 잃을 수 없어 힘을 합쳐 파버렸는데 그 당시 본관이 제 아비 오석리(吳錫履)가 문장(門長)이라고 해서 법대로 보성군(寶城郡)에 정배하여 7년이 되었습니다. 삼가 들으니, 무덤을 판 죄는 도(徒) 3년이었는데 을사년(1785, 정조9)에 10년으로 한정하였다고 합니다. 제 아비는 죄를 지은 것이 갑진년(1784)인데 을사년의 정식을 뒤미쳐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홍희계는 투장한 데 대한 형률로 형추하고 정배하시고 제 아비 오석리는 특별히 풀려나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이미 산송으로 사사로이 무덤을 판 죄가 있는데 방자하게 호소하니 매우 무엄합니다.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해방(該房)이 형조에 내리지 않고 본부에 잘못 내린 것은 불찰을 면키 어려우니 해방 승지를 엄하게 추고하고 다시 해조로 하여금 회계하게 하라.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판 데 대한 형률을 도년(徒年)이라 한 것은 시골 사람이 잘 모른 데서 나온 것이지만 무식함이 이와 같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함부로 범하는 것이다. 형관(刑官)으로 하여금 선조(先朝)의 수교(受敎) 중의 내용을 거듭 분명히 효유하게 하여 어리석은 사람을 깨우쳐 주는 효과가 있게 하라." 하였다.

형조가 아뢰기를, "오성우의 아비 오석리가 사사로이 남의 무덤을 판 죄는 유(流) 3000리로 감배(勘配)하였습니다.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판 죄인은 10년까지 풀어 주지 말도록 이

미 선조의 수교가 있는데 이번에 오성우가 도년이라고 하면서 감히 풀어 줄 것을 청한 것은 매우 무엄합니다. 상언은 시행하지 말고, 삼가 수교의 내용으로 상세히 효유한 뒤에 그의 외람된 죄는 본조에서 율문을 상고하여 엄히 감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한성부가 또 아뢰기를, "남양의 유학 송복규(宋復奎)의 상언에, '제 선조의 분산이 남양에 있는데 제 노비의 족속인 조상주(趙尙柱)가 신미년(1751, 영조27)에 분산에서 지척인 지점에 투장하여 제 아비가 관에 정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미처 파내기 전에 제 아비가 죽었고 저는 강보에 싸인 아이여서 집에 오랫동안 주인이 없었습니다. 재작년 9월에 이 자가 또 자기 아들의 장사를 치르려고 제 증조 분묘의 30보 지점에 광중(壙中)을 팠으므로 본관에 정소하니, 본관이 전에 투장하고 파내지 않은 것을 단서로 저를 패소시켜 강제로 가두고는 조가 놈이 입장(入葬)한 뒤에 풀어 주었는데, 조가 놈에게 다짐을 바치고 다시는 남의 무덤을 범하지 말게 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본관에게 누명을 쓰고 또 영문에게 배척을 당하였으니, 삼가 바라건대 조가 놈이 범장(犯葬)한 것을 모두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과연 상언한 내용과 같다면 노속(奴屬)이 상전을 능멸하고 제멋대로 입장한 것이니 풍화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법에 따라 엄하게 감처하고 범장한 무덤은 즉시 파서 옮기게 하도록 해당 도신에게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옛날의 대신(大臣)이 먼저 소가 헐떡이는 이유를 물은 것은 대신으로서 직분을 다한 것이다. 오늘날의 감사는 풍화가 관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니 어제 개천(价川)의 일에서 보더라도 한심하다고 하겠다. 이 송사 또한 윤리와 기강에 관계되는 것인데 만일 도신이 제대로 자기의 직분을 다했다면 이와 같이 난민(亂民)이 주인을 능멸했다는 말이 어찌 구중궁궐에 있는 나에게까지 들릴 수 있겠는가. 도백으로 하여금 직접 주관하여 엄히 조사하게 해서 만일 조금이라도 근사한 일이 있으면 범분(犯分)한 형률로 시원스레 바로잡고 그자를 제도(諸道)에 돌려 보여 준 다음 배소에 압송하되 유 3000리를 새 법식을 정하기 전의 주류(周流)하던 예대로 하도록 하라. 앞으로 종이 주인의 선산을 범하여 보수(步數)가 금지해야 할 송사이면 선후와 곡직을 막론하고 절대 송사를 심리하지 말고, 범분한 노속은 세 차례 엄히 형추하여 멀리 떨어진 험악한 절도(絶島)에 그대로 본역(本役)에 충정(充定)해서 물간사전(勿揀赦典)하도록 하라. 이것을 형조에 분부하고 수교에 싣고 인하여 또 제도에 행회하여 각각 열읍(列邑)에 알려서 기필코 범분하는 자가 없게 하라." 하였다.

강 判下上言二百七十度于各該司

목 (…) 驪州幼學閔友仁 柳章運 朴善浩 柳慶運 順天幼學尹心圭 安山幼學李是鈥 原州幼學李澈章 楊根幼學柳宅中 姜世元 南陽幼學洪靖祚 抱川幼學洪聖文 姜壽龜 龍仁幼學李宜春 鄭履規 安宗玉 吳命喆 稷山幼學沈命稷 定平幼學鄭芝春 楊州幼學李顯東 廣州幼學尹鼎九 南正羽 朴道岳 李商慶 朴光天 李應海 扶安幼學崔鎭夏 淸州幼學吳聖杰 西部幼學李道源 長湍幼學李鉉裕 益山幼學權述東 果川幼學李重鉉 唆州幼學白師中 槐山幼學李得和 利川幼學金聲集 李永喆 陽城幼學李光彦 金得九 吳載岳 崔秉玉 平山幼學崔應昌 南原幼學朴震光 申羲宅 崔光弼 大興幼學朴亮煥 順興幼學崔弘植 春川幼學金昌訥 金安訥 李鉉鼎 李法萬 竹山幼學姜宜炯 尹載五 沔川幼學李泳吉 忠州幼學金壽耇 南部良人池泰弼 振成幼學安泰休 元復常 加平幼學申晸 衿川幼學李春載 康津幼學尹思匡 洪州 御營軍鄭四得 司譯院生徒玄燦 東部良人姜道郁 西部良入李龍得 南部良人金修憲東部出身朴福萬閑良安鼎三爲其父加資事 (…) 松都童蒙 朴庚福 楊州 內農圃民蔡光國 安岳閑良崔致亨 童蒙 李成春 興陽童蒙 金次甲 南陽幼學吳成羽 大丘童蒙 朴貴同

公州幼學陳泰黍 北部童蒙田孝得爲其父定配蒙放事 (…) 訓鍊都監陞戶軍張漢奎 順川幼學方建中 西部幼學吳泰成 西部進士韓公弼前萬戶 池泰玄 南部閑良朴後赫 西部獨女金召史仕實幼學李達孝 麻田幼學崔德亮 北部幼學黃杞 高陽前守門將金鼎燁 陽城幼學白東旭 龍仁幼學孔來周 南陽幼學李思白 水原良人黃福天 呂州幼學鄭珣 中和幼學李命寬 北部前參奉 具緹欽 南部幼學安錫良 北部幼學李承運 海美幼學洪若復 金舜健 忠州 朴厚才 慶州幼學元瑞常 龍仁幼學南應寬 沃川幼學李謙中 淸州幼學閔訒 定山閑良金陽麗 砥平幼學金載萬 藍浦幼學金奎煥 南陽幼學宋復圭山訟事 (…) 竝敎以論理稟處 (…) 吏曹啓言驪州幼學閔友仁父幼學學貢年八十楊根幼學鄭星來祖幼學聖柔年八十六順天幼學尹心圭父思弼年八十七安山幼學李是鈥父幼學載陽年八十一北部幼學金球祖通德郎炘年八十六原州幼學李淑章父通德郎震珊年八十四楊根幼學柳宅中父幼學泌年八十一南陽幼學洪靖祚父通德郎璡年八十 (…) 幷願蒙加資之典士庶年八十者除一階元有階者加一階載在法典請依此施行從之 (…) 漢城府啓言 (…) 又啓言南陽幼學李思白上言以爲渠草葬亡母於路傍已閱周年編謫家兄於海隅亦過徒限痛纏骨髓昨年四度鳴冤幸蒙更查之命前道臣 趙鼎鎭差定查官旣落渠家訟又督掘安漢塚而安哥則退期不掘仍又徹聽安李兩塚一倂掘移一竝勘配安哥則已蒙放渠兄則尙在謫乞垂矜憐使渠母墳得保舊壙渠兄獲蒙恩宥云安李兩塚之俱掘旣出營邑決折則此訟便是已決而若是號籲未知其或有冤枉而然令道臣 別定查官更爲決處渠兄編配之稱冤極涉無嚴請自臣府科治從之 (…) 又啓言南陽幼學吳成羽上言以爲其六代祖南行左部將國良當壬辰之亂倡義戰亡裹革歸葬於本府子孫之繼葬者于今累百年之久矣甲辰年同鄕洪熙啓偸葬其妻於先山唇前距高祖墳不滿十步故諸族不忍其坐失先塋幷力掘去其時本官以其父錫履謂以門長依律定配於寶城郡者于今七年矣伏聞掘塚之罪三年徒配而乙巳年以十年爲限其父所犯出於甲辰而追用乙巳定式極爲冤枉洪熙啓偸葬之律刑推定配其父錫履特令放釋云矣旣是山訟私掘之罪則肆然號籲萬萬無嚴請勿施敎以該房之不下刑曹誤下本府難免不察當該承旨從重推考更令該曹回啓私掘之律曰以徒年者雖出於鄕曲無識如是也故無難輕犯仍令刑官以先朝受敎內辭意申明曉諭俾有牖迷之效刑曹啓言吳成羽之父 錫履以私掘人塚罪流三千里勘配矣私掘罪人之限十年勿放旣有先朝受敎今此成羽之稱以徒年敢請放送者極爲無嚴上言勿施謹以受敎內辭意詳細曉諭後其猥越之罪請自臣曹考律嚴勘允之漢城府又啓言南陽幼學宋復奎上言以爲渠之祖先墳山在於南陽渠奴族屬趙尙柱辛未年間偸葬於咫尺之地渠父呈官未反掘而歿渠在襁褓家無主者久矣再昨年九月厥漢又欲葬其子穿壙於渠曾祖墳三十步之地呈本官則本官以前偸葬未掘之端置渠落科因爲勒囚趙漢 入葬後見放而捧侇音於趙漢俾勿更爲犯葬渠旣冤屈於本官又見排於營門伏乞趙漢犯葬一倂掘移云矣果如上言則奴屬之凌蔑上典肆然入葬事關風化照法重勘所犯之塚卽令掘移之意請分付該道臣敎曰古之大臣先問牛喘所以盡其職也今之監司不識風化之關係至重觀於昨日价川事可謂寒心此訟亦關倫綱若使道臣能盡其職似此亂民凌主之說何徹於九重乎令道伯親執嚴査若有一毫近似之事則抉正犯分之律仍以厥漢輪示諸道後押付配所依流三千里新定式前周流之例此後奴犯主山而步數當禁之訟無論先後曲直絕勿聽理所犯奴屬嚴刑三次遠惡絕島仍本役充定勿揀赦典仍以此分付刑曹載之受敎仍又行會諸道俾各知委列邑期於無犯

<일성록, 정조14년(1790) 2월 14일(을축)>

정치/사법

남양인의 격쟁을 논의하다

강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과 수원 부사 조심태(趙心泰)가 격쟁인에게 공초를 받은 것으로 치계(馳啓)하였다.

목 (…) ○ 수원 부사 조심태가 본부 경내의 격쟁인들의 공초로 올린 치계에, (…) 다음으

로, “과천 한정욱(韓廷郁)의 공초에, ‘세전(世傳)하는 노비(奴婢) 예분(禮分) 등이 **남양(南陽)** 전율동(全栗同)의 집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정미년(1787, 정조11)에 전율동의 집에 가서 그 자녀를 일일이 화명(花名)하도록 하였더니, 예분이 갖은 발악을 다하였으므로 제 아비가 분을 이기지 못하여 종으로 하여금 매질하여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에 예분이 곧바로 전율동의 집으로 달려가서 전율동이 몰래 내통했다고 하면서 그와 다투었고 분한 김에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초검관(初檢官)은 구타를 당한 것으로 감영에 보고하였고, 복검관(覆檢官)인 금천 현감(衿川縣監)은 독약을 마신 것으로 감영에 보고하였고, 삼검관(三檢官)인 안산 군수(安山郡守)는 구타를 당한 것으로 감영에 보고하여 옥사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아비와 종이 함께 신추(訊推)를 받은 지가 지금 4년이 되었는데, 매질한 종은 옥중에서 죽었고, 제 아비의 목숨은 시일을 보존하기 어려운 지경이니, 바라건대 관대하게 용서하여 풀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인명은 지중하고 국법은 지엄하니 살인자가 어찌 요행히 피할 수 있겠는가. 다만 그의 종이 옥중에서 죽은 것이 참으로 그의 공초와 같다면 한 옥사에 범인이 둘이 되는 혐의가 없을 수 있겠는가. 본도의 도백으로 하여금 사안(査案)을 자세히 상고하여 이치를 따져서 장문하게 하라.” 하였다. (…)
다음으로, “**남양(南陽)** 정성로(丁星老)의 공초에, ‘본부의 향족(鄕族) 오성록(吳聖祿)이 그의 조카를 제 증조부모의 분산과 15보, 집 뒤로 15보 안쪽에 억지로 장사 지냈기 때문에 영읍에 정소하여 7차례 승소를 하고 다짐을 받아 독촉하여 파내도록 한 것이 분명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 부사 신의권(申義權)은 도리어 패소 판정을 하고서 면임(面任)에게 분부하여 계장한 제 아비의 무덤을 파내도록 하였습니다. 너무도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산소가 있는 곳의 수령으로 하여금 속히 공정하게 판결하여 번거롭게 호소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하였다. (…)

강 京畿監司 徐有防 **水原府使** **趙心泰**以擊錚人捧供馳啓

목 (…) **水原府使** **趙心泰**以本府境擊錚人等供招馳啓 (…) 果川 韓廷郁供招以爲世傳奴婢禮分等隱匿於**南陽** 全票同家故丁未年往票同家其子女使之一一花名則禮分多般發惡其父不勝其憤使奴撻治矣禮分直走票同家謂以票同之潛通與之相詰乘憤飮藥而死初檢以被打報營覆檢衿川以飮藥報營三檢安山以被打報營成獄其父與奴同被訊推今爲四年其奴死於獄中其父時日難保乞蒙疏釋云矣敎以人命至重三尺至嚴殺人者豈可倖逭而渠奴死於獄中誠如渠供能無一獄兩犯之嫌令本道伯詳考查案論理狀聞 (…) **南陽** 丁星老供招以爲本府鄕族吳聖祿勒葬其姪於渠之曾祖父母墳十五步家後十五步內故呈訴營邑七次得捷捧侅音督掘不啻丁寧而前府使 申義權反置落科分付面任掘出繼葬之其父冢極爲冤枉云矣敎以令山在官斯速公決俾無煩訴之弊 (…)
<일성록, 정조14년(1790) 2월 14일(을축)>

정치/사법

풍천의 오례(五禮)를 남양부로 이배하다.

강 각 도(道)의 도류안(徒流案)을 판하(判下)하였다.

목 ○ 형조가 아뢰기를, (…) 풍천(豐川)의 오례(五禮)는 한 차례 엄히 형추한 뒤에 기연(畿沿)의 **남양부(南陽府)**로 이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에 대해 모두 관문을 보내어 황해도 도신에게 분부하여 각각에게 엄히 형추한 뒤에 즉시 각 해당 배소 및 원적 고을로 압송하게 하겠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최명태는 이미 풀어 주도록 하였으니 형추는 논할 것이 없다. 이배하는 부류 가운데 해서(海西)에서 영호(嶺湖)의 먼 도로 이배하면서 또 형신(刑訊)을 가하는 것은 먼 곳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가벼운 쪽을 취하려는 취지에 매우 어긋난 것이다. 다시 배소를 정하여 초기하되, 중도에 만일 초실읍이 없으면 또한 사유를 갖추어 이치를 따져서 초기하라.” 하였다. (…)

강 判下各道徒流案

목 刑曹啓言 (…) 豐川 五禮嚴刑一次移配畿沿南陽府 (…) 竝發關分付于黃海道臣使名嚴刑後卽爲押送于各該配所及原籍官敎曰崔命泰已蒙放刑推勿論移配秩中自海西移配嶺湖遠道又加刑訊殊非遠而近重就輕之意更定配所草記中道如無稍實邑亦爲具由論理草記 (…)

<일성록, 정조14년(1790) 2월 15일(병인)>

정치/사법

남양의 살옥 죄인 한관(韓灌)의 아들이 격쟁한 문제를 논의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을 소견하였다.

목 ○ 서유방이 아뢰기를, “남양(南陽)의 살옥 죄인 한관(韓灌)의 아들 한정욱(韓廷郁)이 그의 아비가 살옥에 잘못 걸려든 일로 격쟁하여 수원부(水原府)에서 공초를 받아 치계하였는데, 본도로 하여금 사안(査案)을 상세히 조사하여 이치를 따져 장문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의 원정을 살펴보니, 한정욱이 원통하다는 것은 당초 예분(禮分)을 타살할 때 따라가 몽둥이를 잡았던 임치위(林致位)는 곧 그의 종인데 그의 아비와 함께 같은 옥에 갇혔다가 항쇄(項鎖)와 족쇄(足鎖)를 이기지 못하고 옥중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임치위는 본시 그의 종이 아니라 간련인(干連人)이었고, 같이 수금되었다가 마침 용형(用刑)하지 않는 때를 만나 매 한 대도 맞지 않고 병으로 죽었으니, 지금 이렇게 호소한 것은 전적으로 거짓입니다. 본 옥사는 움직일 수 없는 단안(斷案)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 지금에 와서 별반 다시 조사할 단서가 없으니, 원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강 召見京畿監司 徐有防于重熙堂

목 有防啓言南陽殺獄罪人韓灌子廷郁以其父枉罹殺獄事有所擊錚自水原府捧供馳啓而令本道詳考査案論理狀聞事命下矣取考其原情則廷郁之稱冤者當初打殺禮分時隨往執杖之林致位卽渠奴子而同囚一獄不勝桁楊死於獄中云云而所謂林致位本非渠奴旣係干連同爲囚禁而時値藏刑不加一楚因病致斃則今此呼籲專是誣罔蓋其本獄鐵案已成到今別無更査之端請原情勿施從之 (…)

<일성록, 정조14년(1790) 3월 2일(임오)>

정치/사법

남양의 이배 죄인 문제를 논의하다

강 기내(畿內)의 이배 죄인(移配罪人)을 참작하여 처결하고, 경기도 관찰사 김사목(金思穆)을 추고(推考)하였다.

목 ○ 경기 감사 김사목의 장계에, “교서(敎書)를 받들어 열읍(列邑)에 반포하고 잡범(雜犯)과 경죄수(輕罪囚)를 방금 풀어 주었습니다. 파주목(坡州牧)의 사형을 감하여 출치(黜置)한 죄인인 정치달(鄭致達)의 처(妻) 화완옹주(和緩翁主))와 기타 역적에 연좌되어 노비가 된 자는 감히 거론할 수 없고, 파주목에 이배한 죄인 장호진(張好辰)은 사면령이 있으면 다시 여쭈라는 명이 있었으나 죄명이 가볍지 않아 그대로 정배해 둘 부류에 두었습니다.

그대로 둘 부류 - 부평(富平) 오극형(吳克亨), 양근(楊根) 권인득(權仁得), 적성(積城) 이이량(李以良), 여주(驪州) 유한일(劉漢日), 죽산(竹山) 박서원(朴瑞源), 이천(利川) 이언놈(李於仁老味), 삭녕(朔寧) 이엇복(李嵓福)·김태광(金太廣), 안성(安城) 김용철(金龍喆), 풍덕(豐德) 전명원(全明元), 김포(金浦) 조상린(曹祥麟), **남양(南陽)** 오례(五禮), 포천(抱川) 이장영(李長榮), 가평(加平) 홍의국(洪義國), **남양** 김원재(金元才), 음죽(陰竹) 안정기(安正基), 영평(永平) 허련(許璉), 마전(麻田) 정인세(鄭仁世), 진위(振威) 김호석(金虎錫), 삭녕 강도진(姜道辰), 포천 한홍옥(韓弘沃), 안성(安城) 이세휘(李世輝), 용인(龍仁) 이대식(李大植), 안산(安山) 유건(柳鍵), 파주(坡州) 장호진입니다. -

여쭈어 결정할 부류 - 양주(楊州) 김득구(金得九), 평구역(平丘驛) 정성갑(鄭聖甲), 통진(通津) 민도혁(閔道爀), 인천(仁川) 박정효(朴廷孝), **수원(水原)** 이기종(李起宗), 여주 최수진(崔守珍), 부평 문성표(文成豹), **남양** 이복이(李福伊)입니다. -" 하였다.

○ 형조가 아뢰기를, "본조 소관의 정배 죄인에 대해 풀어 줄지 풀어 주지 않을지는 모두 아뢴 대로 시행하고, 여쭈어 결정할 부류 중에 양주의 충군 죄인(充軍罪人) 김득구와 평구역의 종으로 삼은 죄인 정성갑은 사면령이 있으면 다시 품주하라는 전교가 전에 있었으니 상께서 재결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양주의 김득구와 평구의 정성갑은 다 풀어 주고, 이천의 이언놈, 풍덕의 전명원, **남양**의 오례, 안성의 이세휘, 파주의 장호진도 풀어 주라. 삭녕의 김태광, 포천의 이장영, 가평의 홍의국, **남양**의 김원재, 음죽의 안정기, 영평의 허련, 마전의 정인세, 진위의 김호석, 포천의 한홍옥, 용인의 이대식, 안산의 유건 등은 모두 남의 무덤을 사사로이 파낸 자로 가벼이 풀어 주지 말라는 선조(先朝)의 수교(受敎)가 매우 엄중한데, 10년이 지난 경우는 용서하라는 명이 있었던 것 같으니 형조의 등록을 다시 상고하여 초기하라. 그리고 해도(該道)의 계본(啓本)에 단지 이배한 일자만 쓰고 원래 정배한 연월을 쓰지 않은 것은 소루함이 심하다. 도백을 추고하라. 각 죄인들의 원래 정배한 연월일을 본조가 별단에 주(註)를 달아 써서 들이고 이어서 이러한 뜻을 제도(諸道)에 행회(行會)하여 이후 풀어 줄 부류와 풀어 주지 않을 부류를 보고하는 계본 중에 이배한 부류는 원래 정배한 연월도 현록(懸錄)하게 하라." 하였다.

강 酌決畿內移配罪人推畿伯 金思穆

목 京畿監司 金思穆狀啓敬奉敎書頒布列邑雜犯輕囚今方決放坡州牧減死黜置罪人鄭致達妻及他餘逆賊緣坐爲奴婢者不敢擧論坡州牧移配罪人張好辰有遇赦更稟之命而罪名不輕置之仍秩仍秩富平 吳克亨 楊根 權仁得 積城 李以良 驪州 劉漢日 竹山 朴瑞源 利川 李於仁老味 朔寧 李嵓福 金太廣 安城 金龍喆 豊德 全明元 金浦 曺祥麟 **南陽** 五禮 抱川 李長榮 加平 洪義國 **南陽** 金元才 陰竹 安正基 永平 許璉 麻田 鄭仁世 振威 金虎錫 朔寧 姜道辰 抱川 韓弘沃 安城李 世輝 龍仁 李大植 安山 柳鍵 坡州 張好辰○稟秩楊州 金得九 平兵驛 鄭聖甲 通津 閔道爀 仁川 朴廷孝 **水原** 李起宗 驪州 崔守珍 富平 文成豹 **南陽** 李福伊 ○刑曹啓言本曹所管定配罪人放未放秩竝依啓施行稟秩中楊州充軍罪人金得九 平丘驛爲奴罪人鄭聖甲遇赦更稟事曾有傳敎矣請上裁敎以楊州 金得九 平丘 鄭聖甲竝放利川 李於仁老味 豊德 金明元 **南陽** 五禮 安城 李世輝 坡州 張好辰亦爲放送朔寧 金太廣 抱川 李長榮 加平 洪義國 **南陽** 金元才 陰竹 安正基 永平 許璉 麻田 鄭仁世 振威 金虎錫 抱川 韓弘沃 龍仁 李大植 安山 柳鍵等皆是私掘毋得輕放先朝受敎至嚴若過十年者似有分揀之命更考卿曹謄錄草記而該道啓本之只書移配日子不書原配年月疏漏甚矣道伯推考各人等原配年月日本曹別單懸註書入仍以此意行會諸道此後放未放啓本中移配之類原配年月亦令懸錄

<일성록, 정조14년(1790) 4월 1일(신해)>

정치/사법

남양인 등에 대한 대사면을 행하다

강 대사면(大赦免)을 행하였다.

목 ○ 모두 1154인이다. ○ 전교하기를, (…) 경기에 찬배(竄配)한 부류인 삭녕(朔寧)의 이엇복(李荄福), 안성(安城)의 김용철(金龍喆), 김포(金浦)의 조상린(曺祥麟), 남양(南陽)의 윤덕성(尹德成), 부평(富平)의 오극형(吳克亨), 죽산(竹山)의 박서원(朴瑞源), 삭녕의 김태광(金太廣), 가평(加平)의 홍의국(洪義國), 포천(抱川)의 이장영(李長榮)·한홍옥(韓弘沃), 남양의 김원재(金元才), 영평(永平)의 허련(許璉), 음죽(陰竹)의 안정기(安正基), 마전(麻田)의 정인세(鄭仁世)·김언덕(金彦德), 용인(龍仁)의 이대식(李大植), 안산(安山)의 유건(柳鍵), 진위(振威)의 김호석(金虎錫), 음죽의 승려 영회(英會), 양성(陽城)의 김복철(金福喆), 양근(楊根)의 권인득(權仁得), 적성(積城)의 이이량(李以良), 여주(驪州)의 유한일(劉漢日), 삭녕의 강도진(姜道辰) 등 24인은 모두 풀어 주라. (…)

강 大赦

목 凡一千一百五十四人○敎曰 (…) 京畿竄配秩朔寧 李荄福 安城 金龍喆 金浦 曺祥麟 南陽 尹德成 富平 吳克亨 竹山 朴瑞源 朔寧 金太廣 加平 洪義國 抱川 李長榮 韓弘沃 南陽 金元才 永平 許璉 陰竹 安正基 麻田 鄭仁世 金彦德 龍仁 李大植 安山 柳鍵 振威 金虎錫 陰竹僧英會 陽城 金福喆 楊根 權仁得 積城 李以良 驪州 劉漢日 朔寧 姜道辰 等二十四人竝放 (…)

<일성록, 정조14년(1790) 6월 24일(계유)>

정치/사법

남양인의 옥사에 대해 심리하다

강 서울과 지방의 중죄수 202명을 심리하였다.

목 (…) ○ 경기 감사 김사목(金思穆)의 장계에, "유지(有旨)를 수령한 후 신이 참핵관(參覈官)과 함께 옥정(獄情)을 살펴보니, 이미 녹계(錄啓)한 옥안이 모두 14도(度)입니다. 광주(廣州)의 구인원(具仁遠)은 대궐 밖에서 백성들을 선동하여 이끌고 돌을 던지며 소란을 피운 죄로 이미 결안에 대한 다짐을 받아 냈으니 지금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살옥 죄인인 인천(仁川)의 성삼특(成三特), 김포(金浦)의 이동이(李同伊), 용인(龍仁)의 김원철(金元喆), 광주의 호성룡(扈聖龍), 통진(通津)의 박순좌(朴舜佐), 장단(長湍)의 박근성(朴根成), 양근(楊根)의 정천기(鄭千己)와 한 조이(韓召史), 여주(驪州)의 강취문(姜就文), 남양(南陽)의 한관(韓灌) 등 10명은 범죄를 저지른 정절에 모두 의심할 만한 것이 없으니, 자복을 받아 내어 목숨으로 갚는 형벌을 시행하는 데 대해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 전교하기를 (…) 남양의 죄수 한관(韓灌)의 옥사이다. 조관(朝官)이 환시(宦寺)와 통교하는 일은 국법으로 금지함이 지엄한데, 7촌 겨레붙이는 이미 친숙질(親叔姪) 간과는 다르고 다른 집안의 노비는 그 조상의 소유물이 더욱 아니니, 평상시 왕래하면서 대신 추쇄(推刷)하고 악독하게 핍박하다가 이내 살인하는 변고를 저지른 것은 두 가지 죄가 모두 드러났다고 하겠다.

예분(禮分)의 죽음이 오로지 간수를 마신 때문이라는 것은 설사 그가 공초에서 말한 것과 같다고 하더라도 위협하고 핍박한 자는 누구였던가. 하물며 이른바 간수를 마셨다는 사실은 끝내 없었던 일로 귀결되는 것인가. 그러나 그의 이른바 7촌 숙부 한경주(韓景周)라는 자를

환시들 중에서 찾았으나 비슷한 이름이 없고, 경조(京兆)에 물어보았으나 역시 그러한 사람이 없었다. 이미 한경주가 없으니 환시 운운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해도로 하여금 여러 차례 조사하여 찾게 하였으나 아직도 비슷한 자를 찾지 못하였으니 환시와 통교했다는 한 조항은 애당초 없던 일이다.
또 생각해 보니, 비록 말할 거리도 못 되지만 그의 6대조는 곧 정사 공신(靖社功臣)인 서원군(西原君) 한교(韓嶠)이다. 서원군은 상당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의 후예로서 뛰어난 업적이 매우 많았다. 일찍이 선묘(宣廟) 계사년(1593, 선조26)에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조정에서 척계광(戚繼光)의 병법(兵法)인 《기효신서(紀效新書)》를 보여 달라고 청했으나 제독은 감추고 내놓지 않았다. 서원군이 포의(布衣)로서 응대하는 일을 전담하게 되었는데 그 기회를 통하여 그 책을 얻어 비로소 우리나라의 군병들을 교련시킬 수가 있었고, 훈국의 설치도 실로 서원군의 힘에 의뢰한 바가 크다는 사실이 《연기신편(演機新編)》과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 자세히 실려 있으니, 서원군의 공로가 어찌 작다고 하겠는가. 선대의 공신을 생각하여 용서해 주는 의리를 상당군과 서원군의 후손에 대해 의논하지 않고 누구에게 할 것인가. 한관을 살려 준다고 해서 형벌의 공정함을 상실했다고는 할 수 없으니, 경은 그를 감영 뜰에 데려다 놓고 판부를 선유(宣諭)한 후 특별히 풀어 주라. (…)

강 審理京外重囚二百二名

목 (…) 京畿監司 金思穆狀啓以爲祇受有旨後臣與參覈官參互獄情則已錄啓獄案合爲十四度而廣州 具仁遠以闕外首倡率民投石作拏罪已捧結案今不可擧論殺獄罪人仁川 成三特 金浦 李同伊 龍仁 金元喆 廣州 扈聖龍 通津 朴舜佐 長湍 朴根成 楊根 鄭千巳及韓召史驪州 姜就文 **南陽** 韓灌等十名手犯情節俱無可疑取服償命無容更議 (…) 敎曰 (…) **南陽**囚韓灌之獄朝官之交通宦寺邦禁至嚴則七寸族黨旣異親叔侄之間他家奴婢尤非渠祖上之物則常時往來替當推刷毒施殘逼之政直犯殺越之變者可謂二罪俱發禮分之致死專由於飮滷設如渠供云云其所以威之逼之者誰歟況所謂飮滷竟屬烏有者乎然渠所謂七寸叔景周者索於宦寺無相似之名問于京兆亦無如許之人旣無景周則宦寺云云可謂烏有仍令該道屢加查探尙不得依倂之漢則交通一款皮之不存且思之渠雖不足言渠之六代祖卽靖社功臣西原君嶠也西原以上黨之後偉績甚多嘗於宣廟癸巳李提督之東來也朝家請見戚氏兵法提督秘不出及西原以布衣專掌質問之事因此得其書始敎鍊我國軍兵訓局之設實賴西原之力其詳在新編通志 西原之功豈尠少乎哉世宥之義不議於上黨西原之後而何爲灌之傅生未可謂失刑卿其招致營庭宣諭判付後特爲放送 (…)

<일성록, 정조14년(1790) 8월 16일(갑자)>

정치/사법

남양부사를 나문하라 명하다

강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언신(李彦藎)을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고 파직으로 전지(傳旨)를 봉입하라고 명하였다.

목 ○ 의금부로 잡아다 처리하라는 전지로 인하여 이렇게 명한 것이다.

강 命**南陽府使** 李彦藎拿處以罷職捧傳旨

목 因拿處傳旨有是命

<일성록, 정조15년(1791) 7월 19일(임진)>

정치/사법

남양부 현중조(玄重祚)를 투찬(投竄)하다

강 **남양부(南陽府)**에 현중조(玄重祚)를 투찬(投竄)하였다.

목 ○ 의금부가 아뢰기를, "전 지평 현중조를 **남양부**에 투찬하되 판부 안의 내용으로 죄목(罪目)을 갖추어 규례대로 압송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竄玄重祚于南陽府

목 義禁府啓言前持平 玄重祚 南陽府投竄而請依例押送允之

<일성록, 정조15년(1791) 7월 22일(을미)>

정치/사법

신광악(申光岳)을 남양부에 정배하다

강 신광악(申光岳)을 **남양부(南陽府)**에, 이상준(李尙寯)을 통진부(通津府)에, 김재일(金載一)을 인천부(仁川府)에 정배하였다.

목 ○ 의금부가 학례강(學禮講)의 대감(臺監)인 감찰 신광악 등을 정배하는 일에 대해 아뢰기를, "전례대로 나장(羅將)을 보내 각각 배소(配所)로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정원이 아뢰기를, "신광악 등을 정배하라는 전지(傳旨)를 이달 18일에 의금부에 계하(啓下)하였는데 배소로 보낸다는 초기를 지금에서야 바쳤습니다. 의금부가 거행을 지체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니 해당 당상을 엄히 추고하고 낭청은 엄히 감처(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우선 그 곡절을 조사하여 아뢰라." 하였다.

강 配申光岳于南陽府 李尙寯于通津府 金載一于仁川府

목 禁府以學禮講臺監 監察 申光岳等定配啓請依例發遣羅將押送于各其配所允之○政院啓言申光岳等定配傳旨今十八日啓下禁府而發配草記今始來呈該府擧行之遲滯極爲駭然請當該堂上從重推考郎廳重勘敎以其委折爲先査問以啓

<일성록, 정조16년(1792) 2월 22일(신유)>

정치/사법

남양인의 상언을 판하하다

강 각 해당 관사와 해당 도에 상언 71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목 (…) **남양(南陽)**의 유학(幼學) 황문청(黃文淸)은 그 조부에게 가자해 달라는 일이다. (…) **남양**의 유학 이일성(李日成)은 그 조부에게 가자해 달라는 일이다. (…) 전교하기를, "좌상이 이 일을 잘 알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

○ 이조가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철원의 유학 이중위, 정주에 사는 정랑 승응조, 북부의 유학 나응한, 여주의 유학 한효만, 동부의 유학 김득황, **남양**의 유학 이일성 등의 상언에, 이중위의 아비인 유학 이집(李緝), 승응조의 아비인 유학 승경술(承景述), 나응한의 아비인 유학 나필겸(羅必謙), 한효만의 아비인 통덕랑 한형좌(韓衡佐)는 모두 금년에 80세이고, 김득황의 아비인 통덕랑 김래(金秣), 이일성의 조부인 유학 이명직(李命稷)은 모두 금년에 81세이니, 모두 가자하는 은전을 입게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80세가 된 사서인에게는 한 품계(品階)를 제수하고, 원래 품계가 있었던 자는 한 품계를 더 올려 주도록 법전에 실려 있으니 모두 이 규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고 전교하기를, "승응조가 밤낮으로 수고한 공은 시종신보다 갑절이나 컸다. 승응조의 아비 승경술은 특별히 가자하라." 하였다. (…)

강 判下上言七十一度于各該司該道

목 (…) 南陽幼學黃文淸爲其祖加資事 (…) 南陽幼學李日成爲其祖加資事 (…) 敎以左相稔知此事令廟堂稟處 (…) 吏曹啓言 (…) 又啓言鐵原幼學李重煒 定州居正郎 承膺祚 北部幼學羅應漢 驪州幼學韓孝晩 東部幼學金得晃 南陽幼學李日成等上言以爲李重煒父幼學緝 承膺祚父幼學景述 羅應漢父幼學必謙 鄭孝晩父通德郎衡佐皆今年八十金得晃父通德郎秩 李日成祖幼學命稷皆今年八十一竝願蒙加資之典云矣士庶年八十除一階元有階者加一階事載在法典請幷依此施行允之敎以承膺祚之效勞於夙夜倍於侍從膺祚父景述特爲加資 (…)

<일성록, 정조16년(1792) 2월 26일(을축)>

정치/사법

이태원(李台遠)을 남양부에 충군시키다

강 내금위(內禁衛) 김수연(金守淵) 등을 교동부(喬桐府)에 충군하라고 명하였다.

목 ○ 병조가 아뢰기를, "하교하신 대로 일내 금군(一內禁軍)의 정(正) 김수연은 양성현(陽城縣)에, 윤범철(尹範喆)은 인천부(仁川府)에, 허재(許梓)는 통진부(通津府)에, 영(令) 권익(權翊)은 김포군(金浦郡)에, 원영후(元永厚)는 안산군(安山郡)에, 윤효달(尹孝達)은 교하군(交河郡)에, 이태원(李台遠)은 **남양부(南陽府)**에, 이후중(李厚重)은 부평부(富平府)에, 안경국(安敬國)은 풍덕부(豐德府)에, 신호문(申虎文)은 양천현(陽川縣)에 모두 충군하였습니다. 경기 감영으로 하여금 역자(驛子)를 정하여 압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모두 교동부에 충군하라." 하였다.

강 命內禁衛 金守淵等喬桐府充軍

목 兵曹啓言依下敎一內禁軍正金守淵 陽城縣尹 範喆 仁川府 許梓 通津府領權翊 金浦郡 元永厚 安山郡 尹孝達 交河郡 李台遠 南陽府 李厚重 富平府 安敬國 豐德府 申虎文 陽川縣竝充軍令畿營定驛子押送敎以喬桐府一竝充軍

<일성록, 정조16년(1792) 3월 9일(무인)>

정치/사법

남양인의 상언을 판하하다

강 각 해당 관사와 해당 도에 상언(上言) 39도(度)를 판하(判下)하였다.

목(…) **남양(南陽)**의 유학 안유손(安有孫)의 상언에, "제가 어미의 상을 당하여 집 뒤의 동산 1000여 보 되는 지점에 장사를 지냈는데, 죽산(竹山)에 사는 홍대진(洪大晉)이 **남양** 홍가(**南陽**洪哥)의 종손(宗孫)으로서 입안(立案)으로 인정받은 지역이라고 하면서 홍가들을 거느리고 본부에 송사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본부에서 저를 패소(敗訴)하는 쪽에 두고 속히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였습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어 안장할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여, 아울러 전교하기를, "지방관에게 분부하여 공정히 판결해 주게 하라." 하였다. (…)
또 아뢰기를, "**남양**의 유학 안종천(安宗千)의 상언에, '저희가 여러 대에 걸쳐 본부의 음덕리(陰德里)에 잇대어 매장하였는데, 정신옥(鄭信玉)이 같은 마을에 사는 상놈으로서 앉으나 서나 모두 보이는 곳에 그의 어미를 밤을 틈타 몰래 매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령이 적간하여 그림으로 그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영문이 엄히 신칙하여 무덤을 파서 옮기라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무덤을 파서 옮기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어 즉시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한쪽의 말만 듣고서는 그대로 믿기가 어려우니, 다시 상세히 조사한 뒤에 무덤을 파서 옮기게 하라고 도신에게 분부하

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강 判下上言三十九度于各該司該道
목 (…) 南陽幼學安有孫上言以爲渠遭母喪營葬于家後園林千餘步之地矣竹山居洪大晉以 南陽洪哥宗孫稱以立案內率諸洪哥起訟于本府置渠落科速令掘移乞蒙天恩俾得安厝竝敎以分付地方官從公決給 (…) 又啓言南陽幼學安宗千上言以爲其累代繼葬於本府陰德里 鄭信玉以同里常漢乘夜偸葬其母於坐立俱見之地本官之摘奸圖形營門之嚴飭掘移非止一再而無意掘移乞蒙天恩卽令掘移云矣一邊之說有難準信更爲詳查後掘移之意請分付道臣從之 (…)
<일성록, 정조17년(1793) 1월 14일(무신)>

정치/사법

남양인의 격쟁한 원정을 판하하다

강 수원부의 공초를 받은 격쟁인(擊錚人) 등을 분산(墳山)이 소재한 고을의 수령과 본적지(本籍地)의 수령으로 하여금 공정하게 판결해 주거나 엄히 다스리게 하고 외람되게 격쟁한 사람 등은 모두 쫓아 보내라고 명하였다.
목 수원 유수 채제공이 아뢰기를, "격쟁한 죄인인 남양(南陽)의 양인 최완철(崔烷哲)의 원정에, '제 할아비와 어미의 무덤이 집 뒤쪽의 한 산기슭에 있습니다. 작년 봄에 부친상과 조모상을 당하여 선영의 아래에 매장하였는데, 경강(京江) 용산(龍山)에 사는 이영위(李榮衛)가 자기 친산(親山)의 백호(白虎)라고 하면서 고을에 정소하였으므로 앞으로 무덤을 파서 옮겨야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성상의 은덕을 입어 선영을 보존하여 잇대어 장사 지낼 수 있게 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형조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형조가 아뢰기를, "이는 산송이므로 한성부로 하여금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아울러 전교하기를, "도백으로 하여금 분산이 소재한 고을의 수령을 엄히 신칙하여 공정하게 판결해 주게 하라." 하였다. (…)
강 命水原府捧供擊錚人等令山在官及原籍官公決或嚴治猥濫擊錚人等一竝逐送
목 (…) 該留守 蔡濟恭啓言擊錚罪人南陽良人崔烷哲原情以爲渠之祖墳及母墳在於家後一麓昨年春遭父喪與祖母喪掩土於先塋之下矣京江 龍山居李榮衙稱其親山白虎構訴官庭將至掘移之境乞蒙天恩俾保先壟以爲繼葬云矣請令該曹稟處刑曹啓言係是山訟請令漢城府稟處竝敎以今道伯嚴飭山在官從公決給 (…)
<일성록, 정조17년(1793) 1월 18일(임자)>

정치/사법

홍근갑(洪銀甲)이 공초에서 남양을 언급하다

강 충청도의 안핵 어사(按覈御史) 홍대협(洪大協)이 복명하였다.
목 (…) 홍은갑의 공초에, '구가(具家)의 청지기로서 그 당시 출타하여 도둑맞은 광경을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구가에 있던 전화(錢貨) 800냥은 서울에서 내려왔고, 200냥은 남양(南陽)에서 가져왔으며, 또 조(租)를 작전(作錢)한 것이 있었으나, 원래 전답을 헐값으로 판 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
강 忠淸道按覈御史 洪大協復命
목 (…) 洪銀甲招內以具家傔從其時出他逢賊光景果不目見而具家所在錢貨八百兩則自京下來二

百兩則自南陽持來又有租作錢者而元無田畓斤賣之事云（…）
<일성록, 정조17년(1793) 6월 13일(갑술)>

정치/사법

남양부사(南陽府使) 구담(具紞)을 나문하여 조사하다

강 **남양부사(南陽府使) 구담(具紞)**을 잡아와서 엄하게 가두고 감사가 보고한 조항들을 각별히 상세하게 조사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용보(徐龍輔)의 장계에,

"신이 부임한 뒤에 도내의 사정을 대략 채탐하니, **남양부사** 구담이 불법을 자행한다는 추악한 소문이 극히 파다하기에 꼭 물어보아야 할 각 사람들을 본영에 잡아다가 철저히 조사하여 공초를 받았습니다.

좌수 홍윤덕(洪潤德)과 이방 홍희대(洪禧大) 등에게 묻기를, '너희들은 수향(首鄕)과 수리(首吏)로서 한 고을의 잘잘못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갖가지 법을 벗어난 일을 바로잡아 고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제멋대로 도와주어 공금을 몰래 농간질해도 예삿일처럼 보았고 백성들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는 것을 묘책으로 삼았다. 염탐해서 드러난 것으로 말하더라도 재결(災結)을 배분하는 정사는 관계되는 바가 어떠한가. 그런데 작년에 영문(營門)에서 배분하여 내려 준 250결의 재결을 재해를 당한 백성들에게 고르게 배분하지 않고 태반을 중간에서 써서 없애고, 봄철에 세금을 거둘 때가 되자 백성들에게 백징(白徵)한 것이 극히 많아 원망하는 소리가 길에 가득하다. 그리고 환곡은 법의 취지가 얼마나 엄중한가. 그런데 작년 농사가 흉년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환곡을 상환받을 때 돈으로 대신 받은 것은 이미 법을 벗어난 일이며 받은 돈도 공고(公庫)에 돌리지 않고 전부 횡령하였고, 올가을에 와서 수효를 채울 수 없게 되자 또 무고한 교졸(校卒)과 향임(鄕任), 이례(吏隷)들에게 백징하고 면임(面任)과 면주인(面主人)의 무리까지 분징(分徵)하는 속에 포함시켰다. 관청의 배삭미(排朔米)나 민고(民庫) 잡역들의 상정미(詳定米)와 저치미(儲置米) 등은 명색이 각각 다른데도 모두 대동(大同)으로 부류를 정하여 비싼 가격으로 돈을 받았으며 외창(外倉)의 환곡을 전용하여 대동저치(大同儲置)의 부족한 수량을 모두 채웠다. 그리고 본부의 경내에 있는 사대부나 상놈의 무덤에 사사로이 기르는 소나무를 무수히 베어 내서 읍내 여염집에 옮겨다 두었다. 그리고 경내의 부유한 백성들에게 사사로이 연락해 오게 해서 돈을 꾸어 달라고 하며 강제로 돈을 거두었고, 각 관청의 관속들에게 엽지(葉紙)를 써서 내려 토색질이 끝이 없었다. 심지어 깊은 밤에 갑자기 교졸과 향임, 이례들을 객사(客舍)의 청사에 모아 놓고 성명을 열록(列錄)하여 각각 추렴하게 해서 그것으로 경채(京債)를 갚았다. 놀랍고 가증스런 일을 들자면 손꼽아 다 셀 수 없이 많지만 우선 그중에 큰 것만 취하여 묻는 것이니, 감히 숨기지 말고 사실 그대로 고하라.' 하였습니다.

홍윤덕 등이 공초하기를, '재결에 대한 일은 거짓 이름으로 재결을 배분한 것과 사실대로 세금을 낸 것에 대한 두 건의 책자가 지금 이미 적발되었는데 어찌 감히 다시 버티겠습니까. 민간에 주지 않고 중간에서 써서 없앤 것이 과연 85결 남짓인데, 18결은 관에서 향소(鄕所)의 작청(作廳)에 체급(帖給)하고 67결 남짓은 관가(官家)에서 사사로이 썼습니다. 전세(田稅)와 대동세(大同稅), 잡역의 결전 등을 같은 규례로 출질(出秩)한 것이 도합 108섬 남짓인데, 1섬당 9냥 5전을 받기도 하고 10냥 5전을 받기도 했으니, 결전을 조(租 벼)로 받아들인 것과 아울러 계산하면 관용(官用)으로 쓴 액수가 도합 1150냥입니다. 환곡을 대전(代錢)으로 받은 일은 작년에 환곡을 받아들일 때 조는 1섬당 1냥 9전 5푼, 미(米)는 1섬당

5냥 2전, 태(太)는 1섬당 2냥 5전씩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여 관가에서 받는 대로 곧 써 버린 액수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연말에 마감할 때 각종 모조(耗條)의 상납조(上納條)와 본관(本官)이 쓰는 관모조(官耗條) 및 갖가지 응하조(應下條)를 계산하여 제하더라도 허류(虛留)된 수효가 조로 쳐서 계산하니 아직도 400여 섬이었으며, 올여름 모환(牟還)을 받아들일 때 1섬당 1냥 9전 5푼씩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여 관에서 쓴 것이 또한 70섬이었습니다. 두 항목의 허류를 채워 올리기 어려워 처음에는 결전을 변통하여 작조(作租)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결전으로 조를 사라는 관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결전은 도로 면임에게 내주어 민간에 나누어 주게 하고 다시 입본(立本)하는 것처럼 조 1섬당 7전씩으로 관인을 찍은 건기(件記)를 작성하여 여러 몫으로 나누어 분배한 것이 300섬인데, 향청(鄕廳)·장교청(將校廳)·관청(官廳) 등 각 청에 각각 15섬씩, 작청(作廳)에 30섬, 사령청(使令廳)의 청색(廳色)과 창색(倉色)에게 각각 20섬씩, 관노청(官奴廳)에 16섬, 각 면(面)에 26섬, 각 면주인(面主人)에게 14섬, 군기색(軍器色)의 색리(色吏)에게 4섬, 신창(新倉)의 색락조(色落條)로 60섬을 분배하여 각각 갖추어 바치게 하고, 풍약(風約)과 면주인에게는 7전씩 내주었으나 그 나머지는 모두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27섬은 홍희대에게 내주어 1섬당 8전을 친한 관속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여 이미 갖추어 바쳤습니다. 또 조 72섬, 미 4섬, 모(牟 보리) 70섬은 끝내 수효를 채우지 못하여 끝에 가서는 관청 색리의 무면(無面 포흠)으로 현록(懸錄)했습니다. 방영(防營) 교졸(校卒)들의 요조(料條)는 20섬 남짓인데, 실제로 환미(還米)를 변통하여 지급하였다가 다시 출질하여 당초에 받아먹은 교졸들에게 도로 바치게 하고, 대동을 출질할 때 저치미 20섬을 동일한 방식으로 마련하여 함께 뒤섞어 집전(執錢)한 것이 어떤 때는 9냥 5전이고 어떤 때는 10냥 5전이었습니다. 반납한 환곡을 전용한 일은, 대동미 1섬은 10냥 남짓이고 환미 1섬은 5냥 남짓이므로 대동미 30섬을 관가에서 집전하여 쓰고 해창(海倉)에서 옮겨 온 신창의 환미로 보충하여 상납한 것입니다. 부유한 백성의 돈을 꾸어 쓴 일은 대부도(大阜島)와 영흥도(靈興島)의 백성 3인에게 각각 50냥씩 바치게 한 것입니다. 객사에 밤에 모인 일은 올해 8월 보름께 객사를 개수할 일이 있어서 간역(看役)할 장교들이 대부분 객사에 모였는데, 한밤중에 관가에서 통인(通引)을 내보내 향소 등과 장교, 수리를 불러다가 분부하기를, 「관에 시급히 쓸 데가 있으니 향소와 장교, 아전들이 힘닿는 대로 도와주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좌수와 향소가 45냥을 바치고 이방 홍희대가 30냥을 바쳤으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바친 것은 모두 다 기억할 수 없으나 써서 관가에 들일 때 보니 모두 합친 액수가 430냥이었습니다. 개인 소유의 산에서 기르는 소나무를 벤 일은 방영을 만들 계획으로 일을 처리할 때 관에서 별도로 장교를 정하여 모두 합쳐 대소 400그루를 베었는데, 몇 그루는 객사를 개수하는 데 들어갔고 그 나머지는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였습니다.

도서원(都書員) 박영환(朴永煥) 등은 공초하기를, '작년에 영문에서 배분하여 내려 준 재결 67결 남짓을 관가에서 처리하면서 한결같이 실결(實結)의 예에 따라 출질하여 받아들인 세미(稅米)는 1결당 잡비 5말 8홉씩과 아울러 미(米)로 22섬 10말 남짓이며 1섬당 10냥 5전이니 도합 238냥 남짓입니다. 대동은 1결당 잡비 13말 남짓씩과 아울러 미로 59섬 6말 남짓이며 1섬당 10냥 5전이거나 9냥 5전이니 도합 311냥 남짓입니다. 잡역은 1결당 6말씩이니 미로 26섬 12말이며 1섬당 10냥 5전씩이니 도합 돈으로 281냥입니다. 이상을 모두 합하면 1150냥입니다.' 하였습니다.

남양부사 구담이 재결을 농간질해서 집전하여 손댄 액수가 1150냥이고, 환곡을 작전하여 착복한 것이 470여 섬입니다. 그 밖에 대동저치를 다른 것으로 대신 바치게 하여 이익을 취한

것, 회부(會付)된 원래의 환곡을 제멋대로 전용한 것, 개인 소유의 산에서 기르는 소나무를 베어 온 것, 경내의 부유한 백성들에게 강제로 돈을 징수한 것, 그리고 각 청의 관속들을 밤에 모아 놓고 억지로 추렴하게 한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불법으로, 너무나 놀랍고 도리에 어긋납니다. 각 사람들이 공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관인이 찍힌 문서가 또한 이미 적발되었으므로 위의 항목 중에서 재결을 농간질한 돈 1150냥은 지금 당장 엄히 신칙하여 물어내게 해서 공고(公庫)에 귀속시켜 민역(民役)을 방급(防給)하게 하고, 작전한 환곡 470섬도 일체로 징수하여 회안(會案)에 도로 기록하고, 경내의 부유한 백성이나 각 청의 관속들에게 거두어들인 돈과 개인 소유 산에서 베어 온 재목은 일일이 도로 징수하여 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사 구담은 우선 파출(罷黜)하였으니 갖가지 불법한 죄상을 담당 관사로 하여금 상께 여쭈어 처리하게 하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이번 장계로 보고한 것 중에 나열된 것을 보니 탐욕을 부려 저지른 불법이 온갖 죄악을 빠짐없이 갖추었다. 조그마한 **남양** 고을에서 이러한 범행을 한 것은 참으로 상정(常情)을 벗어난 일이다. 그런 일이 아니라도 백성에게 가혹한 정사를 하면 어느 것이나 용서할 수 없지만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점은 작년 같은 흉년에 그가 행한 나쁜 짓으로, 너무나 어이없는 일이다. 의금부로 하여금 즉시 잡아와서 엄히 가두고 나에게 보고한 조항으로 의견을 내어 각별히 상세하게 조사하여 공사(公私)를 구별해서 장물(贓物)을 계산하여 조율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하나하나 바른대로 공초하지 않으면 형추(刑推)하여 실정을 캐내서 기필코 자복을 받은 뒤에 그만두라고 의금부에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강 命**南陽府使** 具紈拿來嚴囚以道伯登聞條件各別詳覈

목 京畿監司 徐龍輔狀啓以爲臣到任之後道內事情略有採探則**南陽府使** 具紈恣行不法醜聲極其狼籍故應問各人等捉致臣營究覈取招問座首洪潤德吏房洪禧大等汝等身爲首鄕首吏一邑贓否宜無不知而諸般法外之事非徒不能規正乃反恣意助成竊弄公貨視若常事剝割生民作爲妙計雖以廉探現發者言之俵災之政所係何如而昨年營門俵下二百五十結之災不爲均俵於災民太半消融於中間而及至春間捧稅之時民間白徵極其夥然怨聲載路還穀法意何等至重則昨年年事雖値失稔捧糴之時以錢代捧已是法外而所捧之錢亦不歸於公庫盡數乾沒及到今秋無以充數又爲白徵於無辜之校鄕吏隸以至面任主人輩亦入於分徵之中官廳排朔米民庫雜役詳定米及儲置米等名色各異則幷以大同出秋高價捧錢而大同儲置不足之數皆以外倉還穀那移充數本府境內毋論士夫與常漢丘墓私養之松無數斫伐運置於邑底閭舍境內富民私通招來謂以稱貸勒捧錢貨各廳官屬葉紙書下求索無厭甚至於深夜倉卒之際聚會校鄕吏隸于客舍廳中列錄姓名使之各各出斂以報京債駭惡之擧指不勝摟而姑撮其大者爲先發問毋敢隱諱從實直告云則潤德等供以爲災結事則虛名俵災從實出稅之兩件册子今旣現捉何敢更爲抵賴乎不給民間中間消融者果爲八十五結零十八結自官帖給於鄕作廳六十七結零官家私用稅大同雜役結錢等依例出秩合爲一百八石零或捧九兩五錢或捧十兩五錢幷計結錢之以租捧上者則官用之數合爲一千一百五十兩還穀代錢事則昨年捧還時租每石代捧一兩九錢五分米每石代捧五兩二錢太每石代捧二兩五錢式官家隨捧隨用數果夥然而歲末磨勘時各捧耗條上納條本官所用官耗條及諸般應下條雖爲計除而虛留之數折租計之尙爲四百餘石今夏年還捧上時每石一兩九錢五分式以錢代捧自官用之者亦爲七十石兩項虛留難於充上初欲以結錢推移作租矣因結貿租關文下來已捧結錢則還爲出付面任使之分給民間更以立本樣租每石七錢式成出踏印件記別音分排者爲三百石鄕廳將校廳官廳等各廳各十五石作廳三十石使令廳倉兩色處各二十石官奴廳十六石各面二十六石各面主人十四石軍器色吏四石新倉色落條六十石使之各各備納矣風約及面主人則七錢式出給其餘幷不給價又二十七石則出給於洪禧大每石價八錢分授於所親官屬已爲備納又租七十二石米四石年七十石終未充數畢意以官廳色吏無面懸錄防營校卒料條則二十石零果以還米推移上下矣仍復出秩還捧於

當初受食之校卒大同出秩時儲置米二十石一例磨鍊混同執錢或九兩五錢或十兩五錢還納那移事則大同米一石價爲十兩零還米一石價爲五兩零大同三十石自官家執錢以用運來新倉還米於海倉以爲充報上納富民錢貸用事則大阜 靈興兩島民三人處各捧五十兩客舍夜會事則今八月望間有客舍修改之事看役諸校多會於客舍矣中夜自官家出送通引招致鄕所等及將校首吏分付以爲官有時急用處鄕所校吏各各隨力助納然後可免生事云故座首鄕所納四十五兩吏房洪禧大納三十兩其餘各人所納不能盡記而書納官家之時見其都數爲四百三十兩私養松斫伐事則防營經紀之際自官別定將校幷計大小四百株若千株則入於客舍修改其餘則不爲還給云都書員朴永煥等供以爲昨年營門俵下災六十七結零自官家區處一依實結例出秩捧上稅米每結幷雜費五斗八合式米二十二石十斗零每石價十兩五錢合二百三十八兩零大同每結幷雜費十三斗零式米五十九石六斗零每石十兩五錢或九兩五錢合三百十一兩零雜役每結六斗式米二十六石十二斗每石十兩五錢式合錢二百八十一兩合爲一千一百五十兩云該府使 具紈幻弄災結執錢梁指之數爲一千一百五十兩還穀作錢入已爲四百七十餘石其外大同儲置之代捧取剩會付元還之擅自那移私山松木之斫取境內富民之勒徵以至各廳官屬之夜會白斂俱係不法萬萬駭悖各人供招旣皆吐實踏印文書又已現發故上項災結幻弄錢一千一百五十兩則今方嚴飭徵出屬之公庫使之防給民役作錢還穀四百七十石則一體徵捧還錄會案境內富民各廳官屬等處徵斂錢貨及私山斫取材木則一一還徵出給計料府使 具紈爲先罷黜諸般不法罪狀請令攸司御處敎曰觀此狀聞中臚列者貪饕不法萬惡具備蕞爾南陽之邑有此所犯可謂常情之外外此虐民之政無非罔赦最是昨年歉荒其所行惡尤爲叵測令該府卽爲拿來嚴囚以其登聞條件出意見各別詳覈以爲區別公私計贓照律之地若不一一直招刑推得情期於取服而後已以此嚴飭該府

<일성록, 정조17년(1793) 11월 24일(계축)>

정치/사법

전 남양부사 구담을 형추하여 공초를 받게 하다

강 죄인 구담(具紈)을 엄하게 형추하여 공초를 받으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죄인 구담이 이미 옥에 갇혔다고 하니 의금부로 하여금 밤이 깊더라도 상관 말고 즉시 개좌(開坐)하여 엄하게 신문하여 공초를 받게 하라. 만약 조금이라도 나라의 기강이 있다면 지극히 잔폐한 지역에서 그와 같은 무리가 어찌 감히 방자하게 못된 심보를 부려, 재결(災結)을 배분하는 정사가 소민에게 미치지 않고 탐욕스런 버릇이 온 고을에 해독을 끼치게 한단 말인가. 참으로 용서할 수 없다 하겠다. 듣고 난 뒤에도 일벌백계의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이른바 탐오를 징벌하는 법을 장차 어디에 시행하겠는가. 어찌 위협만 하면서 신문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단계를 밟아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 사관이 전하는 말과 연석에서 하교한 대로 낱낱이 각별히 엄하게 형추하여 기필코 법대로 처단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의금부에 분부하라. 옛날 선조(先朝) 때에 **남양(南陽)** 수령의 일로 거리에 임하여 엄히 처분하기도 하시고 문에 임하여 형신(刑訊)하고 형추하기도 하셨는데, 그때 두 수령이 범한 것이 구담과 비교하여 그 정도가 과연 어떠한가. 그러니 그가 여기에서 비록 요행히 피하려 하더라도 가능한 일이겠는가. 이것으로 문목(問目)에 첨가하여 엄히 물으라고 또한 분부하라." 하였다.

강 命罪人具紈嚴刑捧供

목 敎曰罪人具紈聞已就囚令該府不拘夜深卽爲開坐嚴問捧供若有一分國綱至殘之地如渠之輩乃敢肆行胸臆使俵災之政不及於小民貪饕之習流毒於一邑者可謂罔赦旣聞之後若無懲一之擧所謂懲貪之典將何所施何必先爲施威作爲層節依史官所傳筵敎箇箇各別嚴刑期於如法處斷之地事分付禁府昔在先朝因南陽倅事或臨街嚴處或臨門訊推以其時兩倅所犯方於具紈輕重深淺果何如渠於此雖欲

倖逭得乎以此添問目嚴問事亦爲分付
<일성록, 정조17년(1793) 11월 25일(갑인)>

정치/사법

전 남양부사 구담의 원정을 살피다

강 시수 구담을 참작하여 처리하고 전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를 파직하였다.

목 ○ 의금부가 아뢰기를, "**남양부사** 구담의 원정에, '특교로 엄하게 신문하시는데 어찌 감히 조금이라도 숨기고 꾸며서 거듭 사죄(死罪)를 범하겠습니까. 작년 재결(災結)에 대한 일은 영문에서 배분하여 내려 준 재결 250결 중에서 민간에 분배하고 남은 것이 67결이며 결전(結錢)을 조(租)로 대신 거둔 것까지 치면 모두 1150냥인데 과연 사사로이 썼습니다. 환곡을 집전(執錢)한 일은 이렇습니다. 각종 모조(耗條)로 받은 조와 결세(結稅)로 받은 조가 1220섬이고 태(太)가 270섬이었는데, 영문에서 작전(作錢)하라는 관문으로 인하여 이것으로 집전하는 단서를 삼았으며 본부에서 모곡으로 받은 조 38섬도 돈으로 대신 거두었기 때문에 만약 긴급하게 쓸 데가 있으면 간간이 빌려 썼습니다마는 그때마다 즉시 갚았습니다. 허류(虛留)가 400섬인 것은 이렇습니다. **남양**에 경기의 방영(防營)을 설립하는 것으로 논의된 토포영(討捕營)과 방영의 교졸들에게 4개월 동안 나누어 준 요미(料米)가 96섬이었는데, 방영을 설립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 되면서 스스로 마련하여 채워 갚아야 할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색으로 미봉할 길이 없어 대신 작조(作租)한 것이 231섬이고 제가 사사로이 쓴 것이 69섬이었습니다. 요미를 받을 각 청(廳) 및 풍헌(風憲)과 약정(約正)들에게 7전씩 주기도 하고 8전씩 주기도 하였다가 이미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류된 것은 조 78섬, 모(麰) 70섬, 미 1섬, 태 4섬이며 애당초 관청색의 포흠인 것처럼 기록한 일은 없습니다. 대동(大同)으로 부류를 정리한 일은 잘못된 전례를 그대로 답습하여 종전대로 행한 것이고 제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실로 법을 벗어난 일입니다. 환곡을 전용(轉用)한 일은 이렇습니다. 저치미(儲置米)가 많이 부족하다고 감영에 보고하였으나 허락하는 제사(題辭)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창곡(倉穀) 20섬을 전용하여 수량을 채운 것입니다. 부유한 백성들과 각 청에서 강제로 거두어들인 일은 부유한 백성들에게는 전(錢) 150냥을 실제로 변통하였으나, 각 청의 사람들에게 거둔 270냥의 돈은 실제로 가을 염세전(鹽稅錢)을 빌려 쓴 것이고 사실은 불법으로 거두어들인 것이 아닙니다. 개인 소유의 산에서 기르는 소나무를 베어 낸 일은 방영을 설립한 뒤에 각 청을 보수하기 위하여 과연 172그루를 베어다가 24그루는 객사(客舍)를 중수(重修)할 때에 쓰고 나머지는 아직도 읍내에 쌓아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다시 진달할 만한 일이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지(傳旨)와 도신(道臣)의 계사(啓辭) 내용으로 문목(問目)을 내어 위협을 가하여 엄하게 신문하니, 재결에 농간을 부려 집전하여 착복하고 환곡을 작전하여 사사로이 처리하고 부유한 백성들에게 강제로 돈을 빌리고 개인이 기르는 소나무를 베어 낸 것은 이미 지만(遲晩)하였지만 대동저치를 다른 것으로 대신 바치게 하여 이득을 취한 것은 잘못된 전례를 답습한 것이라고 칭하고 각 청의 관속들을 밤에 모아 놓고 근거 없이 거두어들인 것은 각 사람들이 염세를 대납(貸納)한 것으로 핑계하며 모호하게 공초를 바치고 끝내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형추하여 실정을 캐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그도 사람이니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해관계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100리를 가는 데 90리가 반이라는 교훈을 생각하지 않고 겨우 지방관으로 나가자마자 마음껏 크고 작은 탐욕을 부려 못하는 짓이

없었고, 무릇 백성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정사라면 한 가지라도 빠질세라 살을 발라내고 골수를 쪼개듯이 세금을 가혹하게 매겼단 말인가. 양자(揚子)가 이른 바 호랑이가 뿔이 나고 날개까지 달렸다고 한 것은 그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이러한 탐관오리를 서울 가까운 곳에 두고도 아직 국법을 가하지 않았으니 어찌 탐관오리를 징계하는 법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재결을 훔치고 농간질하여 거리낌 없이 모두 삼키고, 극도로 굶주려 부황이 난 백성들로 하여금 대신 백징(白徵)의 고통을 받게 하고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늘에 호소한들 하늘을 속일 수 있겠는가. 오늘 잡혀 와서 신문을 받고 있으니 속이기 어려운 것은 하늘의 이치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그러나 갖가지 범한 것이 모두 이쪽에서 옮겨 저쪽을 채우거나 서쪽을 부수어 동쪽을 보충한 것으로 그 계책이 지극히 간교하고 그 방법이 한결같지 않아 만약 율문을 상고하여 죄목을 정하게 한다면 반드시 '법을 어기고 지은 장죄(贓罪)'가 성립되어 '감수(監守)를 맡은 자가 스스로 도적질한 죄'를 준용하게 될 것이다. 준용한다고 했으면 으레 장(杖)을 쳐서 유배를 보내니 어찌 너무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지금 탐오의 풍속이 날로 성해지는 때이니 만약 엄한 법으로 무겁게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뒷날을 징계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짓을 못 하게 할 수 있겠는가. 고신(拷訊)의 기한이 차기를 기다려 다시 한 차례 엄히 형추하고 사형을 감하여 원악도(遠惡島)나 절도(絶島)에 종신토록 정배(定配)하라. 그리고 유용하거나 빌린 물건은 도백으로 하여금 일일이 그에게 물어내게 하고, 훔쳐 쓴 재결도 즉시 민간에 돌려주되 만약 당연히 바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계산하여 제하라. 이 모든 일을 죄인을 배소(配所)로 보내기 전에 마무리 짓고 장계로 보고하라고 경기에 엄히 신칙하라. 탐관오리를 살피지 못하여 백성들이 그처럼 곤란을 받았는데 누가 그 책임을 질 것인가? 도를 안찰한 지 오래되지 않은 전임 도백과 시임 도백은 오히려 제대로 적발했는데 오랫동안 재임하면서 바로 논주(論奏)하지 못한 전전(前前) 도신 서정수에게 파직하는 법을 시행하라." 하였다.

강 酌處時囚具紱罷京畿前監司 徐鼎修職

목 義禁府啓言**南陽府使** 具紱原情以爲特敎嚴問之下豈敢一毫粧撰重犯死罪乎昨年災結事則營門俵下二百五十結內民間分俵所餘爲六十七結而竝與結錢之以租代捧者一千一百五十兩果爲私用還穀執錢事則各樣耗租及結租一千二百二十石太二百七十石因營門作錢之關以此爲執錢之端本府耗租三十八石亦爲以錢代捧故若或有緊急需用則間間貸取而卽輒報償虛留四百石則防營設始之時討捕防營校卒處四朔放料米爲九十六石矣及其防營之不設也勢將自備充報而無以本色彌縫代以作租爲二百三十一石及渠私用六十九石或給七錢或給八錢於受料各廳及風約諸人處已爲收捧實虛留租七十八石麰七十石米一石太四石初無官廳色逋欠樣載錄之事大同出秩事則仍訛襲謬依前出秩雖非渠之創開而實爲法外所犯還穀那移事則儲置多有不足報使而不得許題故果以倉穀二十石那移充數富民及各廳勒徵事則富民錢一百五十兩果爲推移而各廳人等處二百七十兩錢果以秋鹽稅錢貸用而實非橫斂之事矣私養松斫伐事則防營設施後爲修補各廳果爲斫取一百七十二株矣二十四株用於客舍重修時其餘則尙置於邑中此外更無可達之事云故以傳旨及道啓辭意發問目施威嚴問則幻弄災結執錢梁指作錢還穀私自區處富民錢之勒貸私養松之斫伐雖已遲晩至於大同儲置之代捧取剩稱以承訛襲謬各廳官屬之夜會白斂諉諸各人等貸納鹽稅糢糊納供終不輸款請刑推得情敎曰渠亦人耳亦知如此則生不如此則死之利害關頭抑何心術罔念行百里半九十里之戒纔得一氅意慾滿足大貪小饕無所不犯凡所以厲民虐民之政如恐一事之或漏剝膚椎髓頭會箕斂楊子所謂狼獸之角而翼者渠之謂也如許貪吏置之近畿尙道王章者豈可曰有懲貪之典乎況偸弄災結無難都吞忍使頷頤饑民替受白徵之苦無辜籲天天可欺乎今日之就拿被訊難誣者理也一言而蔽之日渠之罪罔赦然各項所犯無非移此而充彼破西而補東其計至黠其竇不一若令考律定罪則當爲枉法贓而准監守自盜矣旣下準字則例爲杖

流豈非失之太輕乎以今貪風日熾之時若不嚴法重繩何以懲後而戢他乎待栲訊限滿更加嚴刑一次遠惡絕島限己身滅死定配那移假貸之物令道伯一一懲出偸用災結亦卽還給於民間或以當納者計給竝於發配前收殺狀聞事嚴飭該道貪吏莫察民之受困若此誰當執其咎乎按道未久之前伯時伯猶能摘發許久在任不卽論奏前前道臣 徐鼎修施以罷職之典
<일성록, 정조17년(1793) 11월 25일(갑인)>

정치/사법

남양부사 이익진(李翼晉)을 추고하고 면세전을 즉시 거두게 하다

강 경기 감사 서용보(徐龍輔)와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익진(李翼晉)**을 엄하게 추고하고 이어서 **남양부**의 면세전(免稅錢)은 즉시 거두어들여 상납하라고 신칙하였다.

목 ○ 호조 판서 심이지가 아뢰기를, "상납할 기간을 어기는 것이 참으로 하나의 고질적인 폐단인데, 그 가운데 면세(免稅) 또한 정공(正供) 가운데에서 덜어낸 것이니만큼 사체가 자별합니다. 방금 경기 감사가 **남양부사**의 첩정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첨부하여 보내온 공문을 보니, '본읍(本邑)에서 바칠 각 궁방(宮房)의 면세전이 1690냥 남짓이 되는데 1270냥 남짓은 전관(前官) 구담(具紞)이 빌려 써서 상납할 수 없고 단지 남은 돈 417냥 남짓만 올려보내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전에 정해진 대로 바칠 수 없으면 해당 수령을 초기하여 엄히 처벌하게 하는 정식이 이미 있는데 전관이 빌려 썼다고 핑계 대고는 400냥의 돈만 책임을 때우려고 올려보낸 것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남양부사 이익진**은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여 엄히 처리하고, 신칙하지 않은 도신은 엄하게 추고하며, 거두지 않은 세전(稅錢)은 즉시 거두어들여 상납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르고 전교하기를, "시임 부사의 죄가 아니니 우선 엄하게 추고하라." 하였다.

강 重推京畿監司 徐龍輔 **南陽府使** 李翼晉仍飭該府免稅錢卽爲收捧上納

목 戶曹判書 沈頤之啓言上納愆期誠一痼弊而其中免稅亦是正供中除出者則事體自別而卽接京畿監司枚擧**南陽府使**牒呈粘移則本邑所納各宮房免稅錢爲一千六百九十兩零而一千二百七十兩零前官具紞貸用不得上納只以餘錢四百十七兩零上送云歲前如未準納則該守令草記嚴勘已有定式則諉以前官之貸用以四百兩錢塞責上送者萬萬駭然該府使 李翼晉拿問嚴處不飭之道臣從重推考未收稅錢卽爲收捧上納之意請分付從之敎以非時府使之罪爲先從重推考
<일성록, 정조17년(1793) 12월 28일(정해)>

정치/사법

현륭원 제향에 남양부사 차임문제로 경기감사를 추고하다

강 경기 감사 서용보(徐龍輔)를 추고하였다.

목 ○ 현륭원의 한식 제향에 당상관인 **남양부사(南陽府使)**를 알자(謁者)에 채워 차임하였기 때문이다.

강 推京畿監司 徐龍輔

목 **顯隆園**寒食祭享以堂上官**南陽府使**塡差謁者也
<일성록, 정조18년(1794) 3월 3일(경인)>

정치/사법

남양에 배소가 정해진 정문시(鄭文始)의 문제를 논의하다

강 정배(定配)한 죄인 정문시(鄭文始)를 용서하고, 정원의 하례(下隷)도 용서하였다.

목 ○ 의금부가 정문시는 **남양부(南陽府)**에 배소(配所)를 정하였으니 규례대로 배소로 압송(押送)할 것을 청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근래에는 망녕되이 넘보는 것이 버릇이 되었지만, 명색이 실관(實官)이 점검하여 신칙했다면, 어찌 입시한 주서가 벼루에 먹물이 없어 전교를 볼품없이 옮겨 쓰는 일이 있었겠는가. 재계하는 날은 재계하는 날이고 거행하는 것은 거행하는 것이니, 사관의 일은 어찌 해괴하지 않겠는가. 그는 벼루를 가지고 입시한 자와는 다소 다르니, 정배하도록 한 것을 우선 용서한 뒤에 나중에는 이처럼 하지 말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 형조가 주서의 배사령(陪使令)은 엄히 장(杖) 100을 치고 진주목(晉州牧)에 배소를 정하였으므로 즉시 압송할 것을 계청(啓請)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관원을 용서하였으니, 정원의 하례를 정배하도록 한 것도 용서하라." 하였다.

강 分揀定配罪人鄭文始院隷亦爲分揀

목 義禁府以文始南陽府定配請依例押送配所敎以近來妄度雖成習身爲實官若能檢飭豈有入侍注書之鍊硯無墨以致傳敎傳書之不能成樣乎齋日自齋日擧行自擧行史官事豈不馳然乎渠則稍異於持硯入侍者定配姑爲分揀後勿如是之意分付○刑曹啓請注書陪使令嚴杖一百晉州牧定配卽爲押送敎以官員旣分揀院隷定配則分揀

<일성록, 정조18년(1794) 5월 22일(무신)>

정치/사법

김흥대(金興大)를 남양부에 정배하다

강 해당 사알(司謁)을 태거(汰去)하고 경기의 연읍(沿邑)에 정배하라고 명하였다.

목 ○ 형조가, 사알 김흥대(金興大)는 **남양부(南陽府)**로 배소를 정하여 압송하겠다고 아뢰었다.

강 命汰當該司謁畿沿定配

목 刑曹以司謁 金興大 南陽府定配押送啓

<일성록, 정조18년(1794) 7월 23일(무신)>

정치/사법

남양부에 정배한 김흥대(金興大)를 방면하다

강 **남양부(南陽府)**에 정배한 죄인 김흥대(金興大)를 풀어 주었다.

목 없음

강 放南陽府定配罪人金興大

목 없음

<일성록, 정조18년(1794) 8월 3일(정사)>

⑷ 군사

정치/군사

남양의 군제와 군액 문제를 논의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차대(次對)를 행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총융청의 환곡(還穀)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300석의 급대(給代)는 어디에서 마련해 낼 것인지 충융사가 진달하라.” 하니, 서명선이 아뢰기를, “이것은 영문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하고, 부사직 이주국(李柱國)이 아뢰기를, “북한산성이 중영(中營)이 되는데, 지방(支放)을 잇기 어렵다는 이유로 군액(軍額)을 삭감한다면 융정(戎政)에 관계되는 일이어서 허술하다는 탄식이 있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어떻게 중영이 되는가?” 하니, 이주국이 아뢰기를,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은 전좌영(前左營)과 전우영(前右營)이 되고 파주(坡州)와 장단(長湍)은 후좌영(後左營)과 후우영(後右營)이 되기 때문에 북한산성이 중영이 되는데, 아병(牙兵) 5초(哨), 별파군(別把軍) 200명, 수첩군관(守堞軍官) 200명, 교련관(敎鍊官) 9인을 둡니다. 돌아보건대 이것은 오래된 군액(軍額)이므로 지금 갑자기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평창의 환곡은 수량이 많지 않아 도합 1만 2000여 석인데, 부족한 모조(耗條)가 200여 석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유고(留庫)가 이 수량인가, 원총(原摠)이 이 수량인가?” 하니, 이주국이 아뢰기를, “원총이 1만 2000석 남짓인데 분급(分給)한 것이 6000석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600석의 모조를 제하고 또 대하조(貸下條)와 잡탈조(雜頉條)를 제하면 실제 유고가 8000석 남짓이 될 것이다.” 하니, 이주국이 아뢰기를, “원총은 1만 2000석이지만 잡탈을 제하면 과연 8000석이 됩니다. 8000석 중에서 분급해야 할 것이 4000석이나, 1700석은 이전(移轉)하고 300석은 원역(員役)에게 지급했기 때문에 민호(民戶)에 분급한 환곡은 2000석에 불과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본영은 조금 부유했는데 요즘에는 몹시 피폐해졌다.” 하니, 구선복이 아뢰기를, “환곡뿐만 아니라 옛날에는 또 수원의 모미(耗米)가 있었기 때문에 부유하다고 일컬어졌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것은 복구하기 어렵다.” 하니, 이주국이 아뢰기를, “북한산성의 군제(軍制)를 변통한 뒤에야 이 폐단을 고칠 수 있는데, 이것은 함부로 의논하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모조 200여 석은 신이 삼가 중간에서 절약하여 편의(便宜)한 쪽으로 조처하겠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거조(擧條)를 내거든 거행하라.” 하고, 내가 이르기를,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되며, 북한산성과 평창에 모두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하니, 이주국이 아뢰기를, “평창이 오히려 북한산성보다 낫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관성장(管城將)이 적임자가 아니어서 그런가? 한번 번고(反庫)하여 조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번에 다 받아들였다고 장계한 뒤에는 번고해야 하겠다. 번질(反作)도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조정에서 굳이 물을 것이 없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얼마나 되며,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서명선이 아뢰기를, “모두 보인(保人)을 기록하고 과다하게 받아간 무뢰배(無賴輩)입니다.” 하고, 이주국이 아뢰기를, “양반호(兩班戶)로 기록한 자들이 가장 받기 어렵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가난하고 미천하여 의지할 데가 없는 자들은 진실로 불쌍하게 여길 만하지만, 어찌 양반이라고 칭하면서 국곡(國穀)을 바치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한번 조사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문서(文書)를 조사해 낼 때에 양반의 종 이름으로 기록한 자 중에 받아 내지 못한 자가 있으면 납부를 거부한 자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니, 각별히 신칙하여 독촉해서 받아들이라." 하였다. (…)

강 行次對于誠正閣

목 (…) 予曰總戎廳還穀其可畢捧乎三百石給代出處何以爲之總戎使陳達也命善曰此則當自營門區處矣副司直 李柱國曰北漢爲中營若以支放之難繼減削軍額則事係戎政恐有疏虞之歎矣予曰何以爲中營柱國曰水原 南陽爲前左右營 坡州 長湍爲後左右營故北漢爲中營而置牙兵五哨別把軍二百名守堞軍官二百名敎鍊官九人顧此年久軍額今難猝革矣平倉還穀其數不多合爲一萬二千餘石而不足耗條爲二百餘石矣予曰何謂也留庫爲此數乎原總爲此數乎柱國曰原總爲一萬二千石零而分給爲六千石矣予曰除六百石耗又除貸下條雜頉條則實留庫當爲八千石零矣柱國曰原總則爲一萬二千石而除雜頉則果爲八千石矣八千石內分給爲四千石而一千七百石爲移轉三百石給員役故戶還則不過爲二千石矣予曰本營稍富饒而近甚凋殘矣善復曰不但還穀古則又有水原耗米故稱爲富饒矣予曰此則有難復舊也柱國曰北漢軍制變通然後可革此弊而此則有難輕議至於耗條二百餘石不足之數則臣謹當從中節省從便區處矣予曰待出擧條擧行予曰未捧爲幾何而北漢 平倉俱有未捧乎柱國曰平倉猶勝於北漢矣予曰管城將不得其人而然耶不可不一番反庫而査出矣今番畢捧狀啓後當反庫矣反作亦必有之而此則自朝家不須問也難捧者爲幾何而是何如人也命善曰皆懸保濫受之無賴輩也柱國曰最是兩班戶名爲難矣予曰貧殘無依者誠可哀也豈可稱以兩班而不納國穀乎此不可無一番査整之道若於考出文書時兩班奴名有未捧者則不但拒納者有罪卿亦難免其責各別申飭督捧 (…)

<일성록, 정조5년(1781) 11월 20일(무오)>

정치/군사

무신들의 승진 적체 문제를 남양의 사례를 언급하여 논의하다

강 당하(堂下) 무신(武臣)들을 좋은 지역의 자리에 수용(收用)하라고 명하였다.

목 ○ 하교하기를, "당하 무신으로서 승진하지 못하고 적체되어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를 정도이니, 이것만도 화기(和氣)를 범하기에 충분하다. 근래의 여름과 겨울 대정(大政) 때는 번번이 경력(經歷)과 첨사(僉使) 이하 자리에 차례로 천전(遷轉)시켜 서용(敍用)하라고 거듭 신칙하여 유시하였다. 그런데도 전조(銓曹)에서는 일찍이 유의하여 적체를 해소한 적이 없었으니, 전조의 일이 실로 개탄스럽다. 그렇다고 또한 하나의 잣대로 논해서는 안 될 것이니, 수령은 변장(邊將)과는 달라 먼저 그 사람이 유능한지를 보아야 하므로 반드시 품계가 오르지 않은 차서(次序)만을 따르지는 않는다. 그래서 전조가 이로써 변명거리를 삼는데, 저들은 이 때문에 초췌하게 늙어 가서 조정의 본뜻이 막힌 채 베풀어지지 못하게 되니, 한탄스러움을 견딜 수 없다.

그런데 동전(東銓)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서전(西銓)으로 말하더라도, 구근(久勤)의 사례(事例)에는 판관(判官), 주부(主簿), 수문장(守門將), 부장(部將)은 도목(都目) 때마다 넷을 통틀어 각 1인을 천전시키고 무겸(武兼)은 2인을 천전시킨다는 것이 있는데, 이는 변장에 조용(調用)하는 것을 가리킨다. 근래에는 변장까지 아울러 애당초 정해진 숫자대로 규례에 맞추어 천전시키지 않아 저들의 침체가 도리어 양주(楊州)의 파총(把摠)이나 남양(南陽)의 초관(哨官)보다도 더하니, 될 일인가. 게다가 저들은 모두가 외방의 빈천하여 스스로 발신하지 못하는 부류이다. 하찮은 녹봉이라도 받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고생고생하며 벼슬을 구하는데, 벼슬을 하게 된 뒤에는 그 장복(章服)을 마련하고 면신(免新)을 하느라고 또한 가산을 다 기울여 파산하게 되고, 마침내 얻는 외임(外任) 자리는 바라던 바가 아니다. 그런데 이런 변장 자리마저도 누차의 정사에서 누차 누락되다가 얻게 되니, 이와 같은데도 누

가 무예를 익혀 업으로 삼으려 하겠는가. 이번 여름 도목 정사 때를 기다려 거듭 선부(選部)에 유시하여 꼭 수용하게 하려고 생각 중이었는데, 지금 변장에 빈자리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 생각하니 지금 유시하지 않으면 뒤늦었다는 탄식을 초래할 듯하다.
이번 변장의 빈자리에 훈련원 판관과 주부, 무겸선전관, 부장, 수문장 중에서 가장 구근인 자를 자원에 따라 의망해 들이며, 오는 도목 정사 때는 좋은 지역의 자리에 내삼청(內三廳) 및 각영(各營)의 장교(將校) 등까지 아울러 섞어서 수용하여 전처럼 침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전조에 엄히 신칙하라." 하였다.

강 命堂下武臣善地收用

목 敎曰堂下武臣積薪不知爲幾許此足以干和近年夏冬大政輒以經僉以下次次遷敍事飭諭申複而銓曹未嘗着意疏滯銓曹事誠慨然然亦不可以一概論大抵守令異於邊將先觀其人能否未必徒循久次銓曹以此藉口渠輩坐此槁項致使朝家本意閟而不見施可勝歎哉東銓不但爲然雖以西銓言之久勤事例有曰判主守部每都目通融各一人遷轉武兼二人遷轉云云此指邊將調用也近來幷與邊將而初不準數如式遷轉渠輩之沈屈反不如楊州把總 **南陽**哨官可乎且況渠輩俱是遐外貧不自振之類也要沾斗祿積苦求仕及其入仕之後備厥章服圖得免新業亦傾貲破產而畢竟所得一麾非所望幷與乘障而累政累陳若此而孰肯操弓業武也哉擬待今夏都政申諭選部期於收用今因邊將多窠思之及今不諭恐致後時今番邊將見窠以訓鍊判官主簿武兼宣傳官 部將守門將最久勤人從自願擬入來頭都政善地窠與內三廳及各營將校等參錯收用無或如前沈屈事嚴飭銓曹

<일성록, 정조8년(1784) 4월 21일(을사)>

정치/군사

부사직 강유(姜游)가 남양 등의 관방 문제를 상소한 것에 비답을 내리다

강 부사직 강유(姜游)가 상소하여 **남양(南陽)** 등의 고을에 성(城)을 쌓고 보루를 구축할 것을 청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목 ○ 상소의 대략에, "조정에서 연해(沿海)에 후망군(候望軍)을 설치한 것은 혹시라도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 시급히 보고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실없는 경보(警報)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을 때 만약 후망군이 각자의 고을에 급히 알려 놀랄 일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더라면 인심을 진정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구법(舊法)으로써 신칙할 일입니다. 경기(京畿)의 연해 지역에는 특별히 더 설치하고 해변 사람을 차출하여 후망(候望)의 책임을 지울 것이며, 또 의병(疑兵)의 술책을 써서 뜻밖의 변고를 당하게 되면 즉각 비보(飛報)하게 함으로써, 위로 조정으로부터 아래로 주현(州縣)에 이르기까지도 반드시 미리 알고 일찍이 계획을 세우게 해야 합니다. 이리하면 혹 변란을 꾀하는 무리들이 있더라도 틀림없이 스스로 움츠러들어 잠잠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경기의 서남쪽 연해 지역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곳이 **남양**이고 그 다음이 인천(仁川)과 부평(富平)입니다. 이들은 서남쪽의 인후부(咽喉部)에 해당하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또 도성에서 지척의 거리에 있으면서 그 사이에 아무런 장애물도 없으니, 이런 곳에 성을 쌓아 수성(守城)하는 곳으로 삼는다면 비록 흉포하고 교활한 적도(賊徒)라 하더라도 틀림없이 감히 침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리 환란에 대비하는 일 중의 급선무가 아니겠습니까. **남양**의 경우 읍 터의 남쪽 해안은 산세가 가파른 절벽이므로 이곳에 성을 쌓아 읍 터를 내려다보게 한다면 비록 지나가는 적도가 있더라도 역시 맞서 싸워 막아낼 도리가 있을 터이니, 남쪽 해안에 성을 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인천과 부평의 경우, 요충지가 되는 면에서는 가장 긴요한 **남양**보다는 못하지만 서

울과의 거리는 **남양**보다 더 가까우니, 역시 잊어버리는 지역으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의 요해처를 골라 각각 작은 성을 하나씩 만듦으로써 위급할 때 수비할 지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도성 삼면의 육지와 이어지는 지역과 다른 도 각처의 연해 지역에도 어찌 뜻밖의 사태에 대한 우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들 지역은 노정(路程)이 멀어 미리 알 수가 있으므로 오히려 변란에 응할 방도가 있는데, 경기의 연해는 도성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인 데다 해적들이 매번 뜻밖에 번개처럼 출몰하니, 손을 쓸 겨를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신이 굳이 경기의 해안수비에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는 까닭입니다.
또 생각건대, 강가의 창곡(倉穀)을 지킬 아무런 방도도 없이 있다가 위급한 변고를 당하게 된다면 이른바 도적에게 양식을 대어준다는 경우와 불행하게도 근사하게 될 것입니다. 신은 굳이 각창(各倉)과 각색(各色)을 구분할 필요 없이 반록(頒祿) 외의 일반적인 수용(需用)에 관계된 것은 우선 강상의 창고에서 내어 씀으로써 성내(城內)의 창고에다 많이 비축하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평창(平倉)은 당초 설치한 뜻이 북한산성(北漢山城)의 군량을 비축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외창(外倉)이 되었습니다. 신은 비록 경장(更張)에 따른 폐단이 있더라도 평창의 곡식을 모두 성내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읍의 창곡은 더욱 허술하니, 남쪽의 과천(果川)·**수원(水原)**·용인(龍仁)의 읍창(邑倉)과, 서쪽의 고양(高陽)·파주(坡州), 북쪽의 양주(楊州)가 그러합니다. 만약 몇 리의 땅을 구획하고 모두 작은 보루를 설치함으로써 난리를 당할 경우 군대를 나누어 굳게 지킨다면 적도들을 제압하는 계책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원의 경우 이미 독산산성(**禿山山城**)이 있으므로 꼭 보루를 설치하여 창곡을 산성으로 옮겨 놓을 필요는 없으니, 열읍에 보루를 설치할 곳은 5군데 뿐입니다.
지금 신이 쌓기를 청하는 것은 성(城)이 3곳이고 보루가 5곳인데, 이 또한 일시에 모두 쌓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세에 따르고 힘을 헤아려서 몇 년 동안에 걸쳐 완성하자는 계획입니다. 어찌 한때의 근심에 구애되어 만세를 보전할 계책을 세우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재량(裁量)하시어 조처하소서."
하였는데, 비답하기를, "소회(所懷)가 있을 때 반드시 다 진술하는 것을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상소의 내용 중에 또한 어찌 채택하여 시행할 만할 말이 없겠는가.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강 副司直 姜游上疏請**南陽**等邑等城築塢賜批

목 疏略曰朝家設置治海侯望軍蓋所以或當不虞之時以爲急報之計也向日虛驚時如使侯望軍急報於各其邑明其不然則可以鎭安人心仍以舊法申飭而京畿治海則特爲加設差以海邊之人責以侯望之任又用疑兵之術若當意外之變卽爲飛報上自朝廷下至州縣亦必預聞而早爲之計也雖或有不逞之輩必有自戢之效矣京畿　兩南治海之地最可憂者**南陽**是已其次仁川　富平也當西南之咽喉處都城之咫尺而無所障礙若築城於此以爲守城則雖桀黠之賊必不敢掠過此豈非桑土之急務乎**南陽**邑基之南岸山勢斗絕設城於此俯臨邑基則雖有過去之賊亦有交鋒遏勢之道營築於南岸宜矣至於仁川假平其爲要衝則不若**南陽**之最緊而與京城相距則比**南陽**尤近亦不可置之於相忘之域擇其要害處各設一小城以爲緩急防守之地宜矣都城三面連陸之地各處治海之所亦豈無不虞之慮此臣所以必欲致意於京畿海防也又以爲江上倉穀苟無防守之道而如當緩急之時則所謂齎盜糧者不幸近之矣臣意則不必區別各倉各邑頒祿外凡干需用先就江倉以多積內倉爲主至於平倉當初設置以備北漠軍餉而今爲外倉臣意則雖有更張之弊盡移城內至於各邑倉穀尤爲虛疏南之果川 **水原** 龍仁邑倉及西之高陽 坡州北之楊州是也若盡數里皆設小塢當亂而分兵固守足爲制賊之術而**水原**則旣有**禿山山城**不必築塢而移置倉

穀於山城則列邑之築堡者只爲五處矣今臣請築者城爲三堡爲五而亦非欲一時竝築也但當隨時量力計以幾許年完築不爲萬世之計乎伏乞栽處焉批以有懷必陳予甚嘉之其中亦豈無採施之誤許令廟堂稟處

<일성록, 정조11년(1787) 8월 28일(계해)>

정치/군사

남양 병영의 구근 문제를 논의하다

강 영의정 김치인이 수어사(守禦使)의 장계(狀啓)에 대해 복계(覆啓)하였다.

목 (…) 또 아뢰기를, "그 하나는 '수어청과 총융청 소속의 6영(營) 가운데 광주(廣州) 등 5영의 군교(軍校)에게는 구근(久勤)이 되면 천전(遷轉)시켜 주는 법이 있으나 오직 후영(後營)인 죽산(竹山)에만 천전시키는 법이 없어 군교의 무리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호소한 지 이미 수십 년이나 되었습니다. 향장교(鄕將校)가 천전되는 변장(邊將)의 자리는 등한히 하여 버려두다시피하는 자리에 불과한데다, 또 그 연한을 넉넉하게 늘이면 경교(京校)의 천전되는 길에 그리 크게 방해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천전시키는 법을 추후에 설치한 **남양(南陽)**에 대해 구근의 삭수(朔數) 내에서 절반을 균등하게 나누어 **남양**과 죽산 두 고을로 하여금 한 자리를 가지고 돌아가면서 차지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한 일입니다. 수어청과 총융청 소속의 6영 가운데 죽산만 똑같은 혜택을 입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은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구근의 갈래가 많고 변장의 자리가 좁은 때에 한 자리를 더 내는 것은 실로 논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남양**과 함께 돌아가면서 구근을 보고하게 한다면 다시는 소외되었다는 탄식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조(該曹)에 일체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領議政 金致仁以守禦使狀啓覆啓

목 (…) 又啓言其一守禦 總戎屬六營內廣州等五營軍校有久勤遷轉之法惟後營竹山無遷轉之法軍校輩奔走呼訴已至數十年之久鄕將校邊將遷轉不過等棄之窠且又寬展其年限則似不甚妨於京校遷轉之路此猶爲難則但就追設之**南陽**久勤朔數內折半均分使南竹兩邑共一窠而輪回事也守禦 總戎屬六營之中獨竹山未蒙一視之澤則渠輩呼冤雖無足怪然當此久勤邊將窄窠之時加出一窠固非可論而若與**南陽**輪報則更無向隅之歎以此該曹請一體分付從之

<일성록, 정조11년(1787) 12월 16일(기유)>

정치/군사

남양 등의 마병도시에 입격한 자를 품처토록 하다

강 수어청(守禦廳)과 총융청(摠戎廳) 두 영의 도시(都試)에서 일년조(一年條)가 완전히 빠진 곳은 시수(矢數)와 직역(職役) 및 성명을 사유를 갖추어 초기하라고 명하였다.

목 ○ 총융사 조심태(**趙心泰**)가 장계하기를, "**남양(南陽)** 등 읍의 마병도시(馬兵都試)에 입격한 사람을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하교하기를, "작년의 도시를 금년으로 물려 거행한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었다. 수어청의 도시 및 총융청의 도시에서 양년조(兩年條)에 각각 사제(賜第) 1인씩 있는 것은 바로 법전인 것이다. 만약 법식에 맞지 않아 혹 일년조가 완전히 빠진 곳이 있으면 시수와 직역 및 성명을 사유를 갖추어 초기하라고 수어청과 총융청 양영에 분부하라." 하였다. (…)

강 命守總兩營都試一年條全闕處矢數役姓名具由草記

목 總戎使 趙心泰狀啓南陽等邑馬兵都試入格人請令該曹稟處敎曰昨年都試之退行於今年非渠輩故守廳都試及總廳都試兩年條各有賜第一人卽是法典如以未準式一年條或有全闕處矢數及役姓名具由草記事分付守總兩營 (…)
<일성록, 정조12년(1788) 10월 28일(병진)>

정치/군사

남양의 시사(試射)와 관련하여 남양부사의 처벌을 논의하다

강 경기 감사 서유방을 엄하게 추고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유방의 장계에, "도내(道內) 각 읍(邑)의 시사(試射)와 시방(試放)에서 입격(入格)한 사람과 1발 이상을 맞힌 사람에 대해서는 읍의 이름과 맞힌 수효를 구별하여 지금 막 치계(馳啓)하였습니다. 다만 남양(南陽)의 경우에는 응시(應試)한 감색 5인 중, 시사에서 4발을 맞힌 사람이 1인, 3발을 맞혀 4분(分)을 얻은 사람이 2인, 변(邊)에 3발을 맞힌 사람이 1인이며, 시포(試砲)에 응시한 1명도 관(貫)과 변에서 점수를 얻었습니다. 진위(振威)의 경우에는 응시한 감색 4인 중, 시사에서 4발을 맞힌 사람이 1인이며, 시포에서 세 차례 발사하여 6발을 맞힌 사람이 2인이고 세 차례 발사하여 4발을 맞힌 사람이 1인이었습니다. 막중한 국시(國試)를 이와 같이 난잡(亂雜)하게 설행하였기 때문에 본영에서 시사와 시방에 응시한 감색을 엄하게 과죄(科罪)하고, 원래의 시기(試記)는 도로 내려보내어 다시 시취(試取)하여 올려보내게 하라는 뜻으로 엄히 신칙하여 제사(題辭)를 써서 보냈습니다. 명색이 수령이 되어 가지고 잘 검속(檢束)하지 못하여 이처럼 얼마 안 되는 숫자 안에서 전원을 입격시킨 일이 있게 한 것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리하여 시사와 시방을 마치고 장계를 작성하여 올리는 일이 이 때문에 지체되었으니, 사체로 헤아려 볼 때 모두 그대로 두고 논죄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남양부사(南陽府使) 신상권(申尙權)과 진위 현령(振威縣令) 이협성(李協聖)은 죄상을 유사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어찌 조율(照律)할 필요가 있겠는가. 해당 부사는 파출(罷黜)하고 해당 현령은 성적을 고과(考課)할 때 한 등급 아래에 두라고 회유(回諭)하라." 하였다.
○ 정원이 아뢰기를, "이번에 경기 각 읍이 시사와 시방을 설행할 때 남양과 진위는 응시한 숫자가 각각 4, 5인에 불과하였는데, 시사에서는 맞힌 시수(矢數)가 많았고 시포에서는 모두 몰기(沒技)하여 본영에서 시기를 도로 보내는 일이 있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두 읍의 거행이 이와 같이 놀라울 정도이고 보면, 도신(道臣)으로서는 사유를 갖추어 계문(啓聞)하여 해읍(該邑)의 수령에 대해 모두 즉시 치죄(治罪)하기를 청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직접 다시 시취하게 함으로써 시취를 마친 뒤에 장계하는 일을 지체시켰으니, 해당 도신을 엄하게 추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重推京畿監司 徐有防

목 京畿監司 徐有防狀啓以爲道內各邑試射放入格與一中以上區別邑名及中數今方馳啓而南陽則赴試監色五人內射四中一人三中四分二人邊三中一人砲一名亦得貫邊振威則赴試監色四人內射四中一人砲三發六中二人三發四中一人莫重國試如是亂雜故自臣營射放監色從重科罪原試記還下送使之改試上送之意嚴飭題送身爲守令不善檢束致此些少額內全數入格之擧已極駭然而畢射放修啓之因此遲滯揆以事體俱不可置而不論南陽府使 申尙權 振威縣令 李協聖罪狀令攸司稟處敎曰何必照律該府使罷黜該縣令考績時置之次考事回諭○政院啓言今番京畿各邑試射放時南陽 振威應試之類各不過四五人而射多矢數砲皆沒技至有自本營還送試記之擧云兩邑擧行若是駭然則道臣事當具由啓聞該邑守令幷卽請罪而不此之爲直令改試以致畢試狀啓之稽滯請當該道臣從重推考允之

<일성록, 정조13년(1789) 10월 27일(기묘)>

정치/군사

남양의 전영(前營) 제도를 논의하다

강 총융청의 오영(五營) 제도를 개정(改定)하고, 관성장(管城將)의 호칭을 별아병 천총(別牙兵千摠)이라고 부르게 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수원 부사(**水原府使**)의 관제를 바로잡는 것은 그 일의 중대성으로 보거나 보장(保障)인 점으로 보거나 그만둘 수 없는 일이다. 일전에 우선 당분간 별중영(別中營)과 같이 하여 임시로 부르도록 하교했었으나 총융청의 영제(營制)에 대해서는 일정한 호칭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어청의 예에 따라 삼영(三營)의 제도를 두어야 할지, 관성소(管城所) 또한 별도의 1개 영(營)으로 만들어야 할지, 묘당에서 병조 판서 및 총융사를 지낸 장신들과 상의하여 의견을 모아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이 병조 판서 및 총융사를 지낸 장신들과 상의하였더니 모두들, '수원은 지금 총융사의 통솔을 받지 않으니 총융청의 영은 의당 수어청의 전영(前營)·중영(中營)·후영(後營) 제도를 본떠서 **남양(南陽)**의 전영과 장단(長湍)의 후영은 예전대로 호칭하고, 파주(坡州)의 우영(右營)은 중영으로 호칭을 바꾸어 삼영의 제도를 갖추게 해야 합니다. 또 수어청의 군제(軍制)를 보면 좌별장(左別將)과 우별장(右別將)이 각기 아병(牙兵)을 거느리면서 임시로 오영의 군제라 일컫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융청에는 이미 좌아병 천총과 우아병 천총이 있으니 이 또한 수어청의 좌별장·우별장의 예에 따라 임시로 오영으로 일컬어야 할 것입니다. 관성장을 중부 천총(中部千摠)으로 호칭한 것은 단지 오영의 호칭을 갖추자는 뜻에서 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좌아병 천총과 우아병 천총을 수어청의 예에 따라 오영으로 부른다면, 관성소를 별도의 1개 영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 거기 딸린 군대라야 아병 5개 초(哨)와 승군(僧軍) 300여 명에 불과하여 군사의 총 숫자가 1000명에도 차지 못하므로 1개 영의 제도를 이룰 수도 없으니 중부 천총이라는 전의 호칭을 별아병 천총으로 고치고 옛날대로 관성소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체로 이렇게 변통하는 것은 군사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호칭을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수어청의 제도가 이미 근거가 되고 있고 장신들의 의견도 서로 다르지 않으니 이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改定總戎廳 五營之制號管城將爲別牙兵千總

목 敎曰**水原府使**官制釐正一款爲所重爲保障在所不已而日前先以別中營樣姑爲權稱事不敎矣至於總廳營制不可無一定之稱號依守禦廳例當爲三營之制而管城所亦當別作一營乎令廟堂與兵判及總帥曹經人相議指一草記備局啓言臣與兵判及曹經總使諸將臣商議則皆以爲**水原**今不統屬於總帥則總營宜倣守廳前中後之制**南陽**之前營長湍之後營仍前稱號坡州之右營改稱中營以備三營之制且考守廳軍制則左右別將各率牙兵權稱五營之制而總廳旣有左右牙兵千總此亦依守廳左右別將例權稱五營至於管城將之以中部千總稱號者槪由於只備五營之稱矣今以左右牙兵千總依守廳例稱以五營則管城所不必別設一營且其所領不過牙兵五哨僧軍三百餘名軍總不滿千數則無以成一營之制前所稱中部千總改以別牙兵千總依前管城似好云蓋此變通旣非軍制沿革不過營號改稱守廳之制旣有可據將臣之議亦無參差請依此施行允之

<일성록, 정조16년(1792) 12월 15일(기묘)>

정치/군사

경기 좌방어영의 남양 이설 문제를 논의하다

강 경기 좌방어영(京畿左防禦營)은 **남양(南陽)**에 이설(移設)하고, 독성산성(禿城山城) 중군(中軍)의 이력(履歷)은 대흥산성(大興山城)의 예를 적용하되 품계는 변지(邊地)를 역임했던 사람을 차출하여 보내며, 토포사(討捕使)도 일체 새로 설치한 방어영에 이설하고, **수원(水原)**의 부내(府內)를 단속하는 정사는 개성(開城)과 강화(江華)의 예에 따라 본부(本府)에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기 좌방어영은 죽산(竹山), 장단(長湍), 부평(富平), 인천(仁川), **남양** 중 한 곳에 이설해야겠으나, 죽산은 지세(地勢)가 다소 다르고, 장단은 파주(坡州)에 옮겨 소속시킨 지가 오래되었으므로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으며, 부평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인천은 형세가 좋다고는 하지만 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데 비용이 들 것 같으니, **남양**으로 결정해야겠습니다. **남양**은 관방(關防)이나 군교(軍校)를 그다지 대대적으로 개혁하지 않더라도 본래 방어영을 설치할 수가 있으므로, 좌방어사를 **남양**에 이설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병조 판서 이문원(李文源)에게 물으니, 그의 견해도 신의 견해와 같았습니다.

독성산성 중군의 이력은 대흥산성의 예를 적용해야겠으나, 본부의 유수를 뽑아 의망(擬望)할 때에는 개성 유수(開城留守)에 비해 1품계를 높여서 정2품으로 의망하니, 중군도 품계를 다소 높여서 변지 이상을 차출하여 보내는 것으로 정식을 삼되 군병을 다스리는 정사만 관장하게 해야겠습니다. 토포사는 경기 전체의 토포사이므로 수원의 중군에게 맡겨 두어서는 안 될 듯하니, 이는 새로 설치하는 방어영에 일체 이설해야겠습니다. 수원의 부내를 단속하는 정사도 개성과 강화 두 유수영(留守營)의 예에 따라 본부에서 거행해야겠습니다. 모두 이로써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命畿輔左防營移設於**南陽** **禿城中軍**履歷用大興之例階級則以曾經邊地人差遣討捕使一體移設於新設防營**水原府**內禁緝之政依松沁例自本府擧行

목 備邊司啓言畿輔左防營當於竹山 長湍 富平 仁川 **南陽**中移設而竹山地勢稍異長湍移屬於坡州已久不必更議富平別無意義仁川雖稱形便而設施似費事力則當以**南陽**爲歸蓋其關防也軍校也不至於大更張而自可置防禦營左防禦使移設於**南陽**爲宜問于兵曹判書臣李文源則其議與淺見一般**禿城中軍**履歷當用大興之例而本府留守差擬視松留加一等爲正二品則中軍亦當稍尊階級以邊地以上差遣定式而只管緝詰之政至於討捕使則係是京畿討捕使恐不可付之**水原中軍**而已此則一體移設於新設防營**水原**一府內禁戢之政亦當依松沁兩營例當自本府擧行請幷以此分付允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1월 16일(경술)>

정치/군사

남양에 방어영 이설 문제를 논의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수원 유수(**水原留守**) 채제공(**蔡濟恭**)과 와서 대령한 신하들을 소견하였다. 장용영 제조 정민시(鄭民始), 호조 판서 심이지(沈頤之), 유사 당상(有司堂上) 김문순(金文淳), 어영대장 조심태(**趙心泰**), 수원 판관(**水原判官**) 김노성(金魯成)이 나왔다.

목 (…) 내가 이르기를, "**남양(南陽)**에 방어영(防禦營)을 이설(移設)하는 문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는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남양**은 본부와 경계를 접하고 있으며 해안 방어의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므로, 방어영을 설치하는 것이 참으로 적합합니다." 하여 (…)

강 召見**水原留守** **蔡濟恭**及來待諸臣于誠正閣 **壯勇營提調** 鄭民始 戶曹判書 沈頤之有司堂上金

文淳 御營大將 **趙心泰** **水原判官** 金魯成

목 (…) 予曰**南陽**之移設防營便否何如**濟恭**曰**南陽**境接本府亦是海防重地設置防營果爲得宜 (…)
<일성록, 정조17년(1793) 1월 24일(무오)>

정치/군사

남양의 방어영의 습조 문제를 논의하다

강 양성(陽城) 등 고을의 총융청 둔아병(屯牙兵)을 **남양(南陽)**의 방어영(防禦營)에 나아가 습조(習操)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는 묘당으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총융사 이방일(李邦一)이 아뢰기를, "수원에 있는 총융청의 장초병(壯抄兵) 3개 초(哨)와 아병(牙兵) 1개 초를 본부에 옮겨 소속시켰으니, 대신할 군병을 채워 주어야 할 형세입니다. 인천(仁川)과 적성(積城) 등 고을에 있는 군수보(軍需保)로 명목을 바꾸어 초를 만들고, 파총(把摠)과 초관(哨官)도 군정(軍丁)이 있는 고을의 사람으로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수원의 군병이 습조할 때 동참하는 양성과 인천 등의 둔아병 2개 초를 **남양**에 옮겨 주어 습조하게 하는 것으로 정식을 삼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예전에 총융사를 지낸 사람도 소견을 진달하라."
하니, 행 부사직(行副司直) 조심태(**趙心泰**)는 아뢰기를, "양성 등 고을의 둔아병은 습조에 동참하는 정군(正軍)과는 다르지만, **남양**의 방어영에 나아가 습조해야 할 형세입니다. 그런데 이를 수원에 나아가 습조할 때와 비교해 보면 거리가 다소 머니, 이는 매우 불편합니다." 하고, 행 부사직 이한풍(李漢豐)은 아뢰기를, "방어영을 이미 **남양**으로 옮겨 설치하였으니 이번에 둔아병도 **남양**에 옮겨 주어 습조하게 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할 듯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묘당으로 하여금 내게 물어 처리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陽城等邑總廳屯牙兵赴操於**南陽防營**事令廟堂稟處

목 總戎使 李邦一啓言**水原**所在壯抄三哨牙兵一哨移屬本府則其代勢將塡充以仁川 積城等邑所在軍需保換名作哨把總 哨官亦以軍丁所在邑差出**水原**習操時參操陽城 仁川等屯牙兵二哨移付於**南陽**習操事請定式施行敎以曾經總戎使亦陳所見行副司直 **趙心泰**曰陽城等邑屯牙兵雖與參操正軍有異勢將赴操於**南陽防營**而比之於**水原**赴操時程道稍遠此恭難便矣行副司直 李漢豐曰防營旣已移設於**南陽**則今此屯牙兵亦爲移付於**南陽**習操恐合事宜矣敎以令廟堂稟處
<일성록, 정조17년(1793) 2월 5일(무진)>

정치/군사

남양 방어영 이설과 관련한 절목을 올리다

강 비변사가 수원부의 상아(上衙)와 이아(**貳衙**)에 대한 절목(節目)을 올렸다.

목 ○ 절목은 다음과 같다.
1. 유수는 양도(兩都)의 예에 따라 비변사 당상을 예겸(例兼)한다.
1. 유수의 임기는 양도의 예에 따라 2년으로 정식을 삼고, 판관(判官)의 임기는 경력(經歷)의 예에 따라 30개월로 정식을 삼는다.
1. 본부를 부사가 다스릴 때 본부에 소속된 읍진(邑鎭)의 관할은 **남양** 방어영(**南陽**防禦營)에 옮겨 소속시킨다.
1. 승보시(陞補試)는 송도(松都)의 예에 따라 유수가 시취(試取)를 주관하여 설행하되, 제술(製述)과 고강(考講)에서 각각 2인씩 뽑고, 교수(敎授)는 판관이 예겸한다.

1. 봄, 가을, 겨울 세 계절의 첫 달 초하루에 거행하는 군병(軍兵)의 습조(習操)는 내영(內營)의 통지를 기다려 거행하되, 거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상황만 비변사에 보고한다.
1. 경내(境內)의 백성 중 다른 고을에서 부담하던 부역의 명목을 가지고서 본부로 옮겨 와 사는 자에 대해서는 본래의 부역을 면제하고 본부에 소속시킨다.
1. 본부에 있는 경사(京司)와 순영(巡營)의 각종 곡물은 향곡(餉穀)으로 전환하였으므로 분류(分留)할 실제 수량과 회계(會計)의 마감은 비변사에서 맡아 관리하되, 모조(耗條)는 각각 필수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으므로 전량을 분급하여 모조를 받지 않을 수 없다.
1. 중군(中軍)의 인신(印信)은 변통하지 않았으므로 전처럼 그대로 사용한다.
1. 유죄(流罪) 이하에 대해서는 유수가 독자적으로 판결한다.
1. 본부의 아문은 존중되어야 하므로, 공무(公務)와 관련된 일일 경우에는 다른 도의 수령이라 할지라도 계본(啓本)으로 보고하여 논감(論勘)하고, 하속(下屬)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 추문하여 죄를 다스리도록 한다.
1. 유수가 왕래할 때 이용할 말은 전처럼 역마(驛馬)를 입파(入把)한다.
1. 유영(留營)은 일의 체모가 다른 곳과 다르므로, 종전에 경기의 고을로서 책임지고 부담하던 칙사(勅使)의 접대를 위한 출참(出站), 순영의 지정(卜定) 등과 같은 고을의 부역을 모두 면제하되, 통신사(通信使)를 접대하기 위한 출참만 전처럼 거행한다.
1. 본부는 관찰사가 겸해서 관할하므로, 공무와 관련하여 순영에 보고해서 순영이 계본으로 보고해야 할 모든 일은 유수가 직접 장계로 보고하고, 초하루와 월말 등에 으레 순영에 보고하는 것과 같은 각종 문서 보고는 모두 거론하지 말되, 경사와 관계된 일은 유영에서 직접 공문을 보낸다.
1. 비장(裨將) 5원과 검률(檢律) 1원에게는 매달 요미(料米) 1섬씩을 영수미(營需米)로 지불하고, 추가로 지불하는 급료, 찬가(饌價)와 시유(柴油)도 부사가 다스릴 때의 전례를 참고하여 본부에서 알맞게 헤아려 지불한다.
1. 관찰사가 실제로 본부를 관할하는 일은 없으나 그래도 겸유수(兼留守)이므로 접대하는 절차에 있어서 남달라야 한다. 따라서 관찰사가 경내에 도착하였을 때 전배(前陪), 육각(六角), 탐후(探候) 등의 절차를 규례대로 거행한다. 기타 왕명을 봉행하는 사신의 경우에는 1품으로서 왕명을 봉행하는 사람, 각신으로서 왕명을 봉행하는 사람, 어사(御史) 외에는 모두 지로나장(指路羅將) 1쌍으로 거행한다.
1. 판관은 유영의 종사관(從事官)이고 보면, 체모가 수령과는 다르므로 목사와 부사라 하더라도 첩정(牒呈)을 바쳐서는 안 되고 모두 통관(通關)을 사용하며, 경사에 대해서는 2품 이상의 아문에만 첩정을 보낸다.
1. 반사문(頒赦文)을 수령할 때 유수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판관이 대신 행하되, 전문(箋文)을 배진(陪進)할 때에는 연석의 하교를 받아 정식을 삼은 대로 겸유수에게 보내 같이 봉진(封進)하게 한다.
1. 관찰사의 봄과 가을 수미(需米)는 전결(田結)을 단위로 징수하는 것이니, 다른 고을에 옮겨 정할 필요 없이 본부에서 전처럼 거두어 보내 준다.
1. 본부의 하리(下吏)는 양도의 예에 따라 서리(書吏)로 부른다.
1. 푸줏간을 설치하는 일은 양도의 예에 따라 상아와 이아에 각각 설치한다.
1. 본부의 노비는 원래 숫자가 적어 이아에 정해서 보내 준 남종이 7명이고 여종이 4명인데, 이 숫자로 사역하기에는 부족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남종 9구와 여종 6구를 이아에서 모집하여 사역하되, 요미는 부근 고을의 상진곡(常賑穀) 중에서 1000섬으로 한정하여 유영

에 떼어 주어 모조를 받아 요미를 지불하도록 한다. 왕명을 봉행하는 사신을 접대하는 일은 이아에 맡겼는데 소수의 아전과 종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므로, 왕명을 봉행하는 사신이 빈번하게 내려올 때에는 상영(上營)의 하속도 일체 통틀어 사용한다.
1. 군정(軍丁)이 탈이 났을 때 대신 충원하는 일과 군기가 훼손될 때마다 수리하는 일은 영문에서 담당하고, 기타 환곡의 상환, 환곡의 분급, 세금의 징수, 포(布)의 징수, 전답의 현지 답사 등은 모두 판관이 담당한다. 송옥(訟獄)의 경우에는 큰 사안은 판관이 유수에게 여쭈어 재결(裁決)하고 작은 사안은 모두 독자적으로 판결한다.
1. 왕명을 봉행하는 사신에 대한 접대는 이아에서 거행하도록 하였으니, 영문에 있는 지공미(支供米) 150섬은 당연히 이아로 옮겨 소속시켜야겠으나, 판관의 적은 늠료(廩料)로는 한 달의 비용도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전 50냥도 유수의 월봉(月俸) 중에서 다달이 떼어서 이아에 귀속시킨다. 기타 유청(油淸), 시초(柴草), 치계(雉鷄), 어과(魚果) 등과 같은 관청의 잡물 따위도 모두 영문에서 반절을 나누어 떼어 주어 왕명을 봉행하는 사신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한다.

강 備邊司進**水原府**上**貳衙**節目

목 節目一留守依兩都例備局堂上例兼一留守瓜限依兩都例二周年判官依經歷例以三十朔定式一本府府使時屬邑鎭營移送於**南陽防營**一陞補依松都例留守主試設行而製述考講各取二人敎授則判官例兼一軍兵春秋冬三孟朔朔操當俟內營知委而只行不行形止報備局一境內民人或以他邑役名移居於本府者除本役屬之本府一本府所在京司及巡營各穀旣作餉穀分留實數會計磨勘句管於備局而耗條各有需用不可不盡分取耗一中軍印信旣不變通依前仍用一流罪以下留守自斷一本府衙門尊重事係公幹則雖他道守令啓聞論勘下屬移文推治一留守往來時品馬依前以驛馬入把一留營事體與他自別從前邑役之如支勅出站巡營卜定等以畿邑責應者一竝除減而只信使出站依前擧行一本府旣兼營轄於觀察使凡干公務之報巡營啓聞者留守直爲狀聞各樣文報之如朔末等例報巡營者竝勿擧論而事關京司者自留營直爲文移一裨將五員檢律一員每朔料米一石式以營需上下加料及饌價柴油參考府使時前例亦自本府量宜上下一觀察使雖無營轄於本府乃是兼留守接待之節當自別到境時前陪六角探候等節依例擧行其他別星則一品奉命閣臣奉命及御史外皆以指路羅將一雙擧行一判官旣是留營從事官則體貌與守令有異雖牧府使不可呈牒竝爲通關京司則只二品以上衙門移牒一赦文祗受時留守有故則判官替行而箋文陪進則依筵敎定式齎送于兼留守處同爲封進一觀察使春秋需米旣是結後所出則不必移定他邑自本府依前收送一本府下吏依兩都例書吏稱號一設庖依兩都例上**貳衙**各設一本府奴婢元來數少**貳衙**定送奴爲七名婢爲四名以此使後不無不足之慮奴九口婢六口自**貳衙**募得使後料米則以附近邑常賑穀中限一千石劃付留營以爲取耗支放之地而使客支供旣付**貳衙**則以如干吏奴無以使用若値使客稠煩之時上營下屬一體通用一軍丁之代頃簽伍軍器之隨毁繕修自營門當之其他捧糶分糶徵稅徵布檢田等事竝自判官當之而至於訟獄大者判官 稟裁留守小者竝爲自斷一使客支供旣者**貳衙**擧行則營門所在支供米一百五十石自當移屬於**貳衙**而判官之如干廩料不能支一月之用錢五十兩亦於留守月俸中逐朔割屬於**貳衙**其他官廳雜物之如油淸柴草雉鷄魚果等屬竝自營門分半劃下以爲接濟使客之地

<일성록, 정조17년(1793) 2월 13일(병자)>

정치/군사

남양에 방어영 이설 문제를 논의하다

강 장신(將臣) 중에서 한강(漢江) 이남의 사정을 익숙히 알고 있는 사람을 별도로 파견하여 **남양(南陽)**에 방어영(防禦營)을 이설(移設)하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를 살펴보게 하라고 명

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의 방어영을 **남양**에 이설하는 문제에 대해 지난번에 초기하여 윤허를 받았으나, 형편을 멀리서 헤아리기가 어려운 데다가 여러 의견도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전에 관방(關防)을 설치할 때에는 장신을 별도로 파견하여 살펴보게 한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장신 중에서 한강 이남의 사정을 익숙히 아는 사람을 **남양**에 보내 이설하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를 상세히 살펴보고 오게 한 뒤에 하나로 결론을 내어 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命別遣將臣中熟諳漢南事情之人看審**南陽防營**移設便否

목 備邊司啓言**水原**防營移設於**南陽**事頃已草記蒙允而形便旣難遙度諸議亦未歸一在前關防設施之時有別遣將臣看審之例矣今番亦以將臣中熟諳漢南事情之人委送該邑使之詳察便否以來後指一決處允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2월 30일(계사)>

정치/군사

어영대장으로 하여금 남양 방어영 이설 문제를 살피도록 하다

강 어영대장 조심태(**趙心泰**)를 보내 **남양(南陽)**에 방영(防營)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한지 형편을 살펴보게 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장신(將臣) 중에서 내려보내 **남양**에 방영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한지 형편을 살펴보게 하고 장신이 올라온 뒤에 내게 물어 처리하라고 묘당의 초기(草記)에 대해 윤허하였으니, 장신으로는 어영대장이 내려가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 遣御將 **趙心泰**看審**南陽防營**形便

목 敎曰**南陽防營**形便將臣中下送看審以來後稟處事廟堂草記旣允下將臣則御將下去事分付

<일성록, 정조17년(1793) 3월 1일(갑오)>

정치/군사

어영대장으로 하여금 남양 방어영 이설 문제를 살펴 보고하도록 하다

강 유사 당상과 어영대장은 내일 와서 대령하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남양(南陽)**에 방영(防營)을 설치하는 것이 합당한지 형편을 살피는 문제에 관한 묘당의 초기(草記)에 대해 시행하도록 허락하고 어영대장을 내려가게 하였으니, 내일 유사 당상과 어영대장은 와서 대령하라.” 하였다.

강 命有司堂上與御將明日來待

목 敎曰**南陽防營**設施當否看審形便事廟堂草記才有許施令御將下往明日有司堂上與御將來待

<일성록, 정조17년(1793) 3월 9일(임인)>

정치/군사

어영대장으로 하여금 남양 방어영 이설 문제를 살피도록 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 청양 현감(靑陽縣監) 박영수(朴英秀)를 소견하였다.

목 (…) 또 어영대장 조심태(**趙心泰**)에게 이르기를, “**남양(南陽)**에 방영(防營)을 설치하는 것이 편리한지 여부에 대한 상황을 경이 살펴보고 오라.” 하였다.

강 召見大臣備堂及靑陽縣監 朴英秀于誠正閣

목 (…) 又謂御將 趙心泰曰南陽防營形止卿其看審以來也又謂靑陽縣監 朴英秀曰本邑雖云稍實春耕方殷爾其惕念撫恤俾有治聲可也
<일성록, 정조17년(1793) 3월 10일(계묘)>

정치/군사

남양 방어영 설치를 취소하다

강 승지 이익운(李益運)을 파직하고, 이어 남양 방영(南陽防營)의 해당 부사에게 주었던 유서(諭書)와 밀부(密符)를 도로 거두어들이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양에 방영을 설치하는 일을 취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사에게 주었던 유서와 밀부를 정원에서 상의 뜻을 여쭈어 도로 거두어들여야 하는데도 이제 한 달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덮어 두었다고 합니다. 정원이 거행을 소홀히 하였으니 해당 승지에게 파직하는 벌을 시행하고, 유서와 밀부는 정원에서 즉시 도로 거두어들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 정원이 아뢰기를, "비변사의 초기로 인하여 남양에 방영을 설치하는 일을 취소하였으므로 해당 부사 구담(具紞)에게 주었던 유서와 밀부를 즉시 도로 거두어들이라고 윤허하셨습니다. 경기 감영에 분부하여 해당 부사가 직접 나아와서 도로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罷承旨 李益運職仍命還收南陽防營諭書密符該府使所授者

목 備邊司啓言南陽防營置之事有命矣該府使所授諭書密符當自政院稟旨還收而今已過朔尙今掩置云政院擧行未免疏忽請當該承旨施以罷職之典諭書密符令政院卽爲還收允之○政院啓言因備邊司草記南陽防營置之該府使具 紞所授諭書密符卽爲還收事允下矣請分付畿營使該府使親進還納允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4월 15일(정축)>

정치/군사

남양의 방어영 설치 취소 문제를 논의하다

강 승지 이익운(李益運)과 이서구(李書九)가 상소한 데 대해 모두 돌려주고, 이어 이서구를 체차하라고 명하였다.

목 ○ 이익운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신이 방금 비변사의 초기를 보니, 남양 방어사(南陽防禦使)가 받은 밀부와 유서를 즉시 도로 거두어들이지 않은 일로 해당 승지를 책임을 물어 파직하기를 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신이 바로 그 당시 해당 방(房)의 승지이므로, 짧은 소장에 바삐 진달하고 궐문을 달려 나가 감처해 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다만 생각건대 밀부의 출납은 정원의 직무이기는 하나, 파직한 뒤에 의금부로 잡아다 신문하게 되어 빼앗아 오는 경우가 아니면 밀부를 받은 당사자가 당연히 전례에 따라 도로 바쳐야 하는 것이지, 본원에서 해당 영(營)에 통지하여 와서 바치게 한 전례가 원래 없습니다. 더구나 관방(關防)의 존폐는 비변사가 관장하는 일이니, 거조(擧條)를 계하받은 뒤에 비변사에서 철파한 사유에 대해 공문을 보내 알렸다면, 해당 부사가 어찌 밀부를 그대로 차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조치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유서의 경우에는 파직되거나 혁파(革罷)되거나 간에 도로 거두어들인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의 얕은 생각으로는 애당초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밀부의 체모는 매우 엄중한데도 당연히 바쳐야 할 밀부를 오래도록 지체하며 머물러 두었으나 전혀 살펴 신칙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덮어 둔 죄가 끝내 신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였으니, 정신이 흐릿하여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신의 죄를 더욱 피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신을 삭직해 주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상소의 내용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데 가까우니, 책임을 물어 파직하는 것을 어찌 감히 피할 것인가. 이 상소는 돌려주라." 하였다.
○ 이서구가 올린 상소의 대략에, "관방의 존폐는 나라의 큰 정사인데다 **남양**의 방영을 철파하라고 명이 이미 내렸는데도 신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밀부의 출납은 지극히 중대한 일인데다 하읍(下邑)이 거의 한 달 가까이 지체하며 머물러 두었는데도 신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자를 오히려 승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신은 해당 방을 맡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묘당에서 감처할 것을 청하여 동료가 죄를 스스로 인책하였는데, 만약 덮어 둔 실수를 논한다면 신이 또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감히 소장에 진달하여 사실대로 자수하고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지레 궐문을 나갑니다. 삼가 바라건대 엄한 벌을 속히 내려 주소서."
하여, 전교하기를, "인의(引義)할 만한 일인 것 같기는 하지만, 당시에 있었던 승지도 알아채지 못하였으니 뒤에 들어온 승지가 어떻게 적발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일반적인 전례만을 따라 비답을 내릴 수 없으니 체차하고 원래의 상소는 돌려 주라." 하였다.

강 承旨 李益運 李書九上疏竝還給仍命遞差書九

목 益運疏略曰臣卽伏見備局草記以**南陽防禦使**所受密符諭書之不卽還收至有當該承旨譴罷之請臣卽伊時該房也忙陳短章迸出俟勘而第念密符出納雖是喉院之職除非罷拿奪來則受符者自當循例還納元無自本院知委該營使之來納之例況且關防因革係是籌司所管擧條啓下之後若自籌司行會其撤罷之由則該府使豈可仍佩尙無動靜乎至於諭書無論遞罷革罷旣無還收之例故以臣淺見初未想到而密符事體何等嚴重則當納之符許久淹留一未察飭掩置之罪終歸於臣身臣之昏憒不職尤無所逃伏乞亟削臣職敎曰疏辭近於遂非譴罷何敢辭乎此疏還給○書九疏略曰關防因革國之大政也**南陽**撤營成命已下而臣未之聞密符出納其事至重也下邑淹留殆近一月而臣未之知若此者尙可曰承宣乎哉且臣爲該房點已久矣今者廟堂請勘俺員引罪苟論掩置之失臣又烏得以辭也玆敢陳章首實徑出禁門伏願亟降威罰敎曰引義雖似然矣時在者旣不覺察則後入者何能摘發然不可循例賜批遞差原疏還給
<일성록, 정조17년(1793) 4월 15일(정축)>

정치/군사

남양의 방어영 설치 취소 문제를 논의하다

강 승지 심환지(沈煥之)가 상소한 데 대해, 의례적인 비답을 내렸다.

목 ○ 상소의 대략에, "**남양부사(南陽府使)**에게 주었던 유서(諭書)와 밀부(密符)를 즉시 도로 거두어들이지 않은 일 때문에 해당 방(房)의 승지가 책임을 물어 파직하는 벌을 당하였습니다. 신은 그 당시 도승지로서 정원의 일을 모두 관장하고 있었는데도 결국 하위 승지만 파직을 당하였으니, 염치로 볼 때 이대로 있기가 어렵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속히 처분을 내려 주소서."
하였다.

강 承旨 沈煥之上疏賜例批

목 疏略曰以**南陽府使**諭書密符之未卽收還事該房承旨被譴罷之典臣則其時長僚一院之事無不管攝而畢竟勘罷只及下僚揆以廉防有難蹲冒伏乞亟賜處分
<일성록, 정조17년(1793) 4월 16일(무인)>

정치/군사

남양의 방어영 설치 취소 문제를 논의하다

강 총융청의 수원에 있는 아병(牙兵)을 **남양(南陽)**으로 옮겨 소속시키는 것을 전 총융사(摠戎使)가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난번에 전 총융사 이방일(李邦一)이 아뢴 것으로 인하여, 묘당에서 상에게 여쭈어 처리하게 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총융청의 장초(壯抄) 3개 초(哨)와 아병 1개 초를 **남양**으로 옮겨 소속시키고 그 대신 인천(仁川)·적성(積城) 등 고을의 군수보(軍需保)를 이름을 바꾸어 초(哨)를 만드는 일은, 고양(高陽)의 아병을 감액하고 그 대신 장단(長湍)의 군수보로 초를 만든 전례가 있으니 전 총융사가 청한 대로 시행하고, 파총과 초관도 군정(軍丁)이 있는 고을에서 차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수원에서 습조(習操)할 때 습조에 참여하는 양성(陽城)·인천 등의 아병 2개 초를 **남양** 습조에 이부(移付)하는 일을 여러 장군에게 문의하니, 모두 '아병은 바로 총융사의 친병으로 본래 방영(防營)에 관계되지 않으며 **남양**에 비록 방영을 설치하지는 않았지만 총융청의 전영(前營)이므로 수원의 아병 2개 초를 **남양** 전영에 이부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둔아병(屯牙兵)을 **남양**에 옮겨 소속시킨 것은 **남양**이 총융청의 전영이기 때문이지 방영의 신설로 인한 것이 아니니, 옮겨 소속시키는 일은 '방영을 존속시키는 것이냐, 혁파하는 것이냐?' 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결같이 전 총융사가 아뢴 대로 시행하라고 분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命總戎廳 **水原**所在牙兵移屬**南陽**依前總帥所奏施行

목 備邊司啓言頃因前總戎使 李邦一所啓有令廟堂稟處之命矣**水原**所在總廳壯抄三哨牙兵一哨移屬之代以仁川 積城等邑軍需保換名作哨事旣有高陽牙兵減額代以長湍軍需保作哨之例此則依所請施行而把總 哨官亦以軍丁所在邑差出至於**水原**習操時參操陽城 仁川等牙兵二哨移付**南陽**習操事問議於諸將臣則皆以爲牙兵乃是總帥親兵本不關於防營**南陽**雖不設防係是總廳前營**水原**牙兵二哨移付於**南陽**前營爲宜云屯牙兵之移屬**南陽**蓋爲該廳之前營非因防營之新設則移屬一款不必以防營之存革有所持疑一依前總帥所奏施行之意請分付允之

<일성록, 정조17년(1793) 5월 27일(무오)>

정치/군사

남양의 관방을 언급한 이복휴(李福休)의 상소에 비답을 내리다

강 예조 좌랑 이복휴(李福休)가 상소한 데 대해, 비답을 내렸다.

목 (…) 진의 방어를 공고히 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국도(國都)는 서남쪽이 바다여서 고려 때 왜구가 해마다 서쪽 해변을 침략하였는데 바로 지금의 인천(仁川), 부평(富平), 수원, **남양(南陽)** 등 읍이 이러한 곳입니다. 고려 말에 양광도 안렴사(楊廣道按廉使) 정지(鄭地)가 언제나 인천과 **남양** 사이에서 왜구를 막았는데 **수원의 쌍부(雙阜)**는 바로 **남양**의 남쪽이고 서해에서 초입(初入)하는 길이며, **수원의 옹포(瓮浦)**는 **쌍부**의 바다에서 더 깊이 들어가서 수원부와는 40리 되는 곳으로 그 서쪽은 **화량(花梁)**이고 그 남쪽은 **대진(大津)**입니다. 화량과 대진은 수원부와 약간 멀지만 화량에는 첨사(僉使)를 두고 대진에는 목관(牧官)을 두면서 옹포에만 진관(鎭官)이 없으니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이 아닙니다. 옹포가 요해지가 됨은 화량과 대진에 비할 바는 못 되나 수로의 형세가 배를 대기 매우

쉬우므로 근년에 소동을 일으켰던 이야기도 옹포에서 시작되었으며, 한 척의 상선이 와서 정박하고 한 촌부가 소문을 퍼뜨리면 금방 4, 5개 읍이 떠들썩해져 위로 성상의 귀에까지 들어가니 그 형세가 매우 중요함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만약 옹포에 첨사를 두어 서쪽으로는 화량과 상응하고 남쪽으로는 대진과 연결한다면 수로의 방비가 굳건하고 두터워질 것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수백 년 이래 수로에 대한 근심이 별로 없으므로 나라에서 수로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소홀합니다. 그러나 먼 앞날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움에 있어 근심이 없다고 해서 어찌 태만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의 세 가지는 신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많은 사람들이 다같이 하는 말이며 전부터 시행하기를 바랐던 일들입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중론(衆論)을 널리 모아 특별히 처분을 내리시어 한편으로는 국방을 견고히 하는 방도로 삼고 한편으로는 민폐를 바로잡는 바탕으로 삼으소서. 그러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하여, 비답하기를, "그대는 **화성**(**華城**) 사람으로서 **화성**의 수비를 위해 취할 만한 의견을 자세히 진술하여 백관이 나랏일을 가지고 간언하는 의리를 잘 드러냈는데 말이 들을 만하고 성의도 가상하다. 새 고을의 치소(治所)가 서북쪽은 트여 있고 동남쪽은 지세가 낮으니 성을 쌓는 논의는 실로 방비를 두텁게 하는 큰 계책이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 먼저 공사를 감독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맡겨야 하는데 전 유수는 대신(大臣 채제공(**蔡濟恭**))이고 시임 유수는 기로소 당상(耆老所堂上 이명식(李命植))이니 다 근력으로 보아 책임 지우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채석을 하고 회(灰)를 굽는 일은 좀 기다리는 것이며 명년부터라도 일은 차차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말 중에 '공부(公賦)의 6분의 1을 떼어내어……' 한 것은 묘당에 맡겨 나에게 물어 처리하게 하겠다. 이 밖에 전결의 등급을 고치는 일, 군정을 정선하는 일과 옹포에 첨사를 두는 일 역시 묘당에 맡겨 옳은 계책인지 여부를 지적하여 아뢰게 하겠다." 하였다.

강 禮曹佐郎 李福休上疏賜批

목 (…) 何以謂鎭防之鞏固也惟我國都西南爲海在勝國時倭寇連年侵掠於西海之邊卽今仁富水南等邑是也麗末楊廣道按廉使鄭地每禦倭於仁南之間而**水原**之**雙阜**乃**南陽**之南而寔西海初入之路也**水原**之甕浦又是**雙阜**海之深入而距本府四十里之地也其西花梁其南大津也花梁大津距本府稍遠而花梁置僉使大津置牧官獨於甕浦而無鎭官非所以應緩急之道也夫甕浦之要害非比花梁大津而水路之形勢着船甚易故頃年騷說亦自甕浦始一商船來泊一野夫風傳遽至四五邑喧騰以至上入天聽則其緊切之勢推可知也今若置僉使於甕浦西應花梁南連大津則其爲水路之關防緊且重矣今幸數百年來別無水路之虞故國家之設施於水路者甚疏然其在經遠之慮豈可以無虞而慢之哉凡此三者非臣創爲之說也乃輿人之所共誦而自前之所願行者也伏願殿下博採衆議特賜處分一以爲壯關防之道一以爲救民弊之地千萬幸甚批以爾以**華城**之人爲**華城**關防備陳一得之見能效執藝之義言足聽也誠亦嘉乃新邑之爲治西北闊東南低築城之論實爲重關防之大計經始之初當先求可堪董工之人而任之前留相大官也時守臣耆堂也俱難以筋力責之此所以浮石煮灰而稍竢之者也雖自來年當次次成就爾言中公賦劃六之一云云付之廟堂稟處外此田結改量事軍丁精揀事甕浦置僉使事亦付之廟堂指陳當否之策矣

<일성록, 정조17년(1793) 10월 17일(정축)>

정치/군사

남양 마병에게 보이는 도시 문제를 논의하다

강 장단(長湍)의 별효사(別驍士)와 **남양(南陽)**의 마병(馬兵)에게 보이는 도시(都試)에 대한

규구(規矩)는 대신(大臣)과 장신(將臣)에게 문의(問議)하라고 명하였다.

목 ○ 총융사 심이지가 아뢰기를, "장단과 **남양** 두 읍의 마병은 매년 10월에 해당 읍에서 초초(初抄)를 시행하고 서울에 있는 군영에서 합시(合試)한 다음 수석을 차지한 자는 곧바로 전시(殿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습니다. 금년 봄에 장단 부사 서유화(徐有和)가 마병은 천역(賤役)이어서 사람들이 응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효사'라 고쳐 부르기를 청하였고, 전 총융사 정민시(鄭民始)는 호칭은 '별효사'로 고치고 도시(都試)는 예전처럼 거행하는 내용으로 연석(筵席)에서 아뢰어 윤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가을의 도시에서는 새로 모집된 자들이 마병의 규례로 응시한다는 말을 듣고 대부분 낙심하고 흩어지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일 파주(坡州)의 규례에 의거하여 별효사의 규구로 시취(試取)하면 연석에서 아뢰어 정한 제도를 어기는 일이 되고 도시를 합설하는 **남양**의 마병은 돌아갈 곳이 없게 되니, 군제(軍制)와 과제(科制)에 모두 어긋나는 것입니다. 도시의 설행은 으레 이달에 있으므로 지금 정식을 삼지 않을 수 없으니, 대신과 장신에게 문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長湍別驍士**南陽**馬兵都試規矩問議于大臣將臣

목 總戎使 沈頤之啓言長湍 **南陽**兩邑馬兵每於十月該邑初抄合試於京營直赴居首矣今春長湍府使徐有和以馬兵役賤人不應募請其改號別驍士前總戎使 鄭民始以別驍士都試依前擧行事筵稟蒙允矣及當今秋都試新募者聞以馬兵例應試擧有落莫散去之意若依坡州例以別驍士規矩試取則有違於筵稟定制而合設都試之**南陽**馬兵無歸處軍制科制俱爲相左都試設行例在此月不可不及今定式請問議于大臣將臣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10월 20일(갑술)>

정치/군사

남양 마병에게 보이는 도시 문제를 논의하다

강 **남양(南陽)**의 마병(馬兵)을 별효사(別驍士)로 명칭을 고치고, 장단(長湍)과 파주(坡州)의 별효사와 도시(都試)를 합동으로 설행하여 1인을 뽑으라고 명하였다.

목 ○ 총융청이 아뢰기를, "장단 별효사의 도시에 대해 상께 여쭈어 처리하라고 하신 일로 대신(大臣)과 장신(將臣)에게 물으니, 영의정 홍낙성은 '파주 별효사와 합동으로 설행하여 한꺼번에 도시를 보이고, **남양**의 마병은 전처럼 시취(試取)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였고, 좌의정 김이소는 '별효사나 마병이나 똑같이 기병(騎兵)인데 혹 싫어하여 회피한다고 해서 그 뜻을 따라 칭호를 고치는 등 수시로 바꾸는 것은 제도를 새로 제정한 본뜻에 크게 어긋납니다. 전례대로 마병 도시로 시행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였고, 우의정 이병모는 '별효사와 마병은 그 시규(試規)가 각각 다른데, 또한 뜻이 있어 그런 것이니 억지로 똑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남양**의 마병을 별도로 시취하면 전시(殿試)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받는 사람이 추가로 나오게 되니 또한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장단과 파주의 별효사는 합하여 설행하여 한꺼번에 도시를 보이고, **남양**의 마병은 전처럼 시취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어영대장 이경무(李敬懋), 훈련대장 서유대(徐有大), 금위대장 이한풍(李漢豐)은 '**남양** 마병의 칭호를 별효사로 바꾸고 도시도 별효사 규구로 시행하되 도시를 합하여 설행한 다음 통계를 내서 우등(優等)인 한 사람을 규례대로 전시에 곧바로 응시할 자격을 주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였습니다.

장단의 마병을 이미 별효사로 개칭하였으므로 도시의 규구도 별효사의 규구로 거행해야 합니다. **남양**의 마병도 일체 칭호를 고치고 도시를 합하여 설행하여 그중 우등인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군제(軍制)가 둘로 나뉘는 일도 없을 것이고 전시에 곧바로 응시하는 자격을 받는 사람도 추가로 더 나오는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좌의정의 의견이 떳떳한 법도에 맞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정(人情)은 자신이 발탁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군제는 우수한 자를 발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남한산성 성정군(城丁軍)을 수첩 군관(守堞軍官)으로 올리고 강화도의 보군(步軍)을 장려 군관(壯旅軍官)과 의려 군관(義旅軍官)으로 올리고 북도(北道)의 봉수군(烽燧軍)을 봉무사(烽武士)로 올린 것에서 보건대 이는 모두 그 풍속에 따라 알맞게 제정하여 용감한 자들을 이끌어 내려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 어찌 유독 장단 별효사에 대해서만 막 대청(大廳) 위로 올렸다가 다시 뜰아래로 끌어내린단 말인가. 여러 장신들의 의견이 과연 좋다. 세고을에 모두 별효사를 두고 도시는 합설하여 한 사람을 뽑도록 하라." 하였다.

강 命南陽馬兵改稱別驍士與長湍 坡州別驍士合設都試取一人

목 總戎廳啓言長湍別驍士都試稟處事問于大臣將臣則領議政 洪樂性以爲與坡州別驍士合設一都試南陽馬兵依前試取爲宜左議政 金履素以爲別驍馬兵均是騎兵或因其厭避而曲循改其稱號隨時變易甚非創制之本意依前例以馬兵都試施行爲宜右議政 李兼模以爲別驍馬兵試規各異意亦有在不可强而同之南陽馬兵別爲試取則直赴加出亦甚可悶湍坡別驍士合設一都試南陽馬兵依前試取爲宜御將 李敬懋 訓將 徐有大 禁將 李漢豊以爲南陽馬兵稱號以別驍士改之都試以別驍士規矩施行合設都試通計優等一人依例直赴爲宜云長湍馬兵旣爲別驍士則都試規矩當以別驍士擧行南陽馬兵一體改號合設都試取其優等一人則軍制無分二之事直赴無加出之弊敎以左相之議可謂大經大法而人情樂於拔身軍制貴在拔尤觀於南漢城丁軍之陞爲守堞軍官 沁都步軍之陞爲壯旅義旅軍官北道烽燧軍之陞爲烽武士皆出於因俗制宜以倡勇敢豈獨於長湍別驍士才陞廳上復降庭下乎諸將臣之議果好別驍士竝置三邑都試則合取一人可也

<일성록, 정조18년(1794) 11월 13일(정유)>

2. 경제(經濟)

⑴ 재정

경제/재정

남양의 증미(拯米) 문제를 논의하다

강 광주(廣州) 등의 고을에서 증미(拯米)를 정퇴(停退)할 것을 청한 데 대해, 시행하라고 하였다.

목 ○ 영의정 서명선이 아뢰기를, "방금 경기 감사 정호인(鄭好仁)의 등보(謄報)를 보니, '광주 등 여섯 고을에 있는 패선(敗船)의 증미가 합하여 951석인데 모두 햇수가 오래된 것이고, **남양(南陽)**에 있는 증미가 317석인데 무술년조(戊戌年條)입니다. 각 년(年)의 구환(舊還)에 대해 이미 정퇴하도록 한 이상 똑같이 묵은 포흠(逋欠)인데, 유독 증미만 독촉하여 받는 것은 동등하게 베풀어 주는 은혜에 흠이 될 듯합니다. 따라서 광주 등의 고을에 있는 햇수가 오래된 증미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퇴를 허락할 것과 **남양**에 있는 무술년조의 증미에 대해서는 3분의 2를 정퇴하게 해 줄 것을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소서.' 하였습니다. 장계에서 청한 그대로 시행할 것을 허락하소서."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許施廣州等邑拯米停退之請

목 領議政 徐命善啓言卽見京畿監司 鄭好仁謄報則以爲廣州等六邑所在敗船拯米合爲九百五十一石皆是年久條**南陽**所在拯米三百十七石卽戊戌條也各年舊還旣令停退則同是舊逋而獨爲責徵恐欠一視之澤廣州等邑年久條拯米特許停退**南陽**所在戊戌條拯米三分二停退事請令廟堂稟處矣請依狀請許施從之

<일성록, 정조3년(1779) 11월 10일(경인)>

경제/재정

남양의 환향(還餉) 문제를 논의하다

강 **남양(南陽)** 등 6개 고을은 강도(江都)의 향미(餉米)를 정봉(停捧)하고, 양주읍(楊州邑)은 총융청의 향미에 대한 모조(耗條)를 탕감(蕩減)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심이지가 아뢰기를, "도내의 환향(還餉)을 모두 한꺼번에 조령(朝令)을 받들어 정퇴(停退)하는데, 그 가운데 **남양**, **수원(水原)**, 김포(金浦), 통진(通津), 교하(交河), 양천(陽川) 등 6개 고을에 대해서는 올봄에 받은 강도의 향미를 원래의 환향과 아울러 논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도(沁都)에서 한창 독촉하여 거두고 있는 양주 고을에 대해서는 당년치 환향의 모조에 대해 올봄 특교(特敎)로 모곡을 덧붙이지 말고 받도록 하였는데, 북한산성(北漢山城) 향미의 모조는 혼동하여 제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례적인 일은 아니나 강도의 향미를 정퇴하는 것과 총융청의 향미에 대해 모곡을 제해 주는 것이 합당한지의 여부는 품청(稟請)하여 처분하지 않을 수 없으니, 묘당에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하문할 필요 없이 강도의 향미에 대해서는 일체 정봉하고, 총융청 향미의 모조에 대해서는 환향의 모조의 규례대로 일체 탕감하라." 하였다.

강 命**南陽**等六邑江都餉米停捧楊州邑 總廳餉耗蕩減

목 京畿監司 沈頤之啓言道內還餉一竝奉朝令停退而其中**南陽** **水原** 金浦 通津 交河 陽川等六邑今春所受江都餉米不可幷論於元還餉爲言而自沁都方督捧楊州一邑當年還耗今年特敎除耗而北漢

餉耗不可混同減除爲言雖非異事江都米之停退總廳米之減耗當否不可不稟請處分請下詢廟堂處之敎以不必詢問江都米事一體停捧總廳餉耗事依還耗例一體蕩減
<일성록, 정조7년(1783) 12월 2일(기미)>

경제/재정

남양의 향미 문제를 논의하다

강 강도의 향미를 옮겨 운송하는 데에 드는 잡비(雜費)는 묘당에 하문하여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심이지가 아뢰기를, "올봄 강도의 향미를 옮겨 운송할 때에 배와 말에 드는 잡비가 88석이었는데, 원곡(元穀)에서 가져다 쓰고는 아직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계미년(1763, 영조39)과 을유년(1765, 영조41) 두 해에도 강도에서 옮겨 운송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당년의 모조(耗條)에서 제급(除給)하여 보충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수원**, **남양** 두 고을에서 받은 1100석에서 그 정퇴하는 수를 제하면 모조가 겨우 78석인데, 비록 88석의 수에 맞출 수는 없지만 이미 계미년과 을유년의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모조를 가지고 제급하여 원곡에서 가져다 쓴 수량을 보충하는 것이 편의(便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묘당에 하문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江都米移運雜費詢廟堂處之

목 京畿監司 沈頤之啓言今春江都米移運時船馬雜費爲八十八石而取用於元穀中尙未區處矣癸未乙酉兩年亦有江都移運而其時以當年耗條除給充補云今此**水原** **南陽**兩邑所受一千一百石除其停退之數則耗條堇爲七十八石雖未能準八十八石之數旣有癸未乙酉已例今番亦以耗條除給以補元穀取用之數恐合便宜請下詢廟堂處之從之
<일성록, 정조7년(1783) 12월 2일(기미)>

경제/재정

남양으로 이송하는 미곡의 문제를 논의하다

강 강도(江都)의 미(米)를 이운(移運)할 때 **수원(水原)**과 **남양(南陽)**에 보내는 곡물에서 모조(耗條)를 제하고 주어서 원곡에서 가져다 쓰는 수량에 보태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좌의정 이복원이 아뢰기를, "경기 감사 심이지(沈頤之)의 장계에, '올봄 강도의 미를 이운할 때 수원에 700석을 보내고 **남양**에 400석을 보내는 데에 드는 선박과 말의 잡비가 88석인데 그것을 원곡에서 가져다 쓰는 문제를 아직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두 읍이 받는 1100석에서 정퇴조(停退條)를 제하면 모조는 겨우 78석이 됩니다. 이미 계미년(1763, 영조39)과 을유년(1765, 영조41)의 전례가 있으니 이번에도 모조를 제하고 주어서 원곡에서 가져다 쓰는 수량에 보태도록 묘당에 하문하여 처분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원곡을 예전대로 감(減)할 수 없고 또 근거할 만한 전례가 있으니 청한 대로 시행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江都米移運時**水原** **南陽**耗條除給以補元穀取用之數

목 左議政 李福源啓言京畿監司 沈頤之狀啓以爲今春江都米移運時**水原**七百石**南陽**四百石船馬雜費爲八十八石而取用於元穀中尙未區處矣今此兩邑所受一千一百石除其停退則耗條僅爲七十八石旣有癸未乙酉已例今番亦以耗條除給以補元穀取用之數事下詢廟堂處之爲辭矣元穀不可仍減前例亦有可據依所請施行之意請分付從之
<일성록, 정조8년(1784) 1월 13일(기해)>

경제/재정

남양 등의 이전조(移轉條)와 전퇴조(停退條) 문제를 논의하다

강 희정당(熙政堂)에서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하였다.

목 (…) 김치인이 아뢰기를 (…) 또 아뢰기를, "강화 유수 송재경(宋載經)의 장계입니다. 경기 각 읍(邑)의 계묘년(1783, 정조7)과 갑진년(1784)의 이전조(移轉條)와 병오년(1786, 정조10)의 정퇴조(停退條) 가운데 5분의 1을 봉상(捧上)하라는 명령을 계하(啓下)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통진(通津), 남양(南陽), 고양(高陽), 교하(交河) 등의 읍이 모두 아직 준봉(準捧)하지 않았습니다. 4개 읍 수령의 죄를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4개 읍 수령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경기 감사의 장문(狀聞)으로 인하여 이미 처분하였으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강 召見大臣備堂于熙政堂

목 (…) ○致仁啓言 (…) 又啓言此江華留守 宋載經狀啓而京畿各邑癸卯甲辰移轉條丙午停退條中五分一捧上之令是啓下行會而通律南陽 高陽 交河等邑俱未準捧四邑守令之罪請令廟堂稟處矣四邑守令頃因畿伯狀聞已有處分請置之從之 (…)

<일성록, 정조12년(1788) 2월 25일(무오)>

경제/재정

남양에서 전에 없던 염세를 창설한 일에 대해 논의하다

강 비국이 팔강(八江) 백성의 고충에 대해 회계(回啓)하였다.

목 ○ 비국이 아뢰기를, "신 김문순(金文淳)이 경조(京兆)의 당상을 맡고 있을 때 하교하신 대로 우윤 임시철(林蓍喆)과 강상(江上)으로 나뉘어 가서 무너져 내린 민호(民戶)를 수리하는 것을 일일이 자세히 살피고, 이어 팔강의 부로(父老)를 불러 모아서 제반의 질고를 물어보니, 무너져 내린 민호는 거의 모두 은혜를 입어 잘 정돈되었고, 제반의 질고는 그 고한 대로 조목조목 열거하여 아룁니다. (…) 열두째, 각 강의 염선(鹽船) 선인(船人) 김중철(金重哲) 등은 '소금을 생산하는 곳에는 관아에서 수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남양(南陽) 관아에서 세곡에 대한 선가라고 핑계 대면서 전에 없던 염세(鹽稅)를 창설하였는데, 1석당 1분(分)을 거두어들이니 1년을 통틀어 계산해 보면 장차 수천에 이를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세액(稅額)에 관계된 일이 있고, 쟁송(爭訟)에 관계된 일이 있으며, 창시(創始)에 관계된 일이 있고, 조사하여 결정한 일이 있는데, 내력과 전말을 상세히 상고한 뒤에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각 해당 아문 및 기영(畿營)으로 하여금 상세히 조사해 이치를 따져 보고하게 하고, 보고가 올라온 뒤에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장마철에 백성의 고충을 물어보라는 명이 있었는데 가을을 넘기고 겨울에 이르러 이제야 초기하였으니, 이는 백성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각사 및 해도에 상의하여 하루 이틀 내에 사안마다 구별하여 이치를 따진 다음 결론을 지어 품처하게 하라." 하였다.

강 備局以八江民瘼回啓

목 備局啓言臣文淳曾任京兆堂上時依下敎與右尹林蓍喆分往江上頹壓民戶之修葺者一一審察仍爲招集八江父老詢問諸般疾苦則頹壓民戶擧皆蒙恩安頓諸般疾苦則隨其所告條列以聞而其一西江民金在深等以爲均廳案付船隻或致敗則稅錢許頃自是事例而謂無加現終未頃給此後地方官立旨相考

致敗船隻勿爲徵稅云 (…) 其一各江鹽船船人金重哲等以爲產鹽之處官無收稅之事矣再昨年南陽官諉之稅穀船價創設無前之鹽稅每石收捧一分通計一年將至累千云矣其中有事關稅額者有事關爭訟者有事關創始者有事關查決者詳考來歷顚末然後可以決折請令各該衙門及畿營詳細查究論理報來後稟處敎以潦節詢瘼有命而過秋涉冬今始草記是無異於欺民往復各司及該道一兩日內秩秩區別論理指一稟處

<일성록, 정조13년(1789) 12월 14일(을축)>

경제/재정

남양부의 염선 수세 문제에 대해 회계하다

강 비국이 팔강(八江) 백성의 고충에 대해 회계하였다.

목 ○ 비국이 아뢰기를, "팔강 백성의 고충을 물은 일에 관한 초기에 대해 각사(各司) 및 해도(該道)에 상의하여 사항마다 구별하여 이치를 따져 품처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각사에 감결(甘結)을 보내고 해도에 관문을 보내어 상세히 조사해서 첩보(牒報)하게 하였는데, 각 처의 보고가 방금 일제히 도착하였습니다. (…) 열두째, 남양부(南陽府)에서 염선에 수세하는 데 관한 일입니다. 경기 감사의 보고에, '본부의 매년 줄어드는 결미(結米)와 역미(役米)가 100여 석(石)이 되고, 전세(田稅)와 대동세(大同稅)를 싣고 출발할 때에 선가가 매우 박해서 선인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염상(鹽商)이 사는 것은 매 1석당 1분(分)씩 수세하고, 시선(柴船)이 파는 것은 매 1량(兩)당 1분씩을 수세한다면 장차 5, 6백 금(金)이 됩니다. 이 돈으로 해마다 배를 빌리는 값을 지급하고 그 남는 돈으로 이곳의 민고(民庫)에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 대해, 작년에 해부 부사 왕한정(王漢禎)이 유생과 향임이 일제히 호소한 일로 인하여 논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읍에는 모두 물산에 대해 수세하는 규례가 있지만 유독 본부는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라 하여 일찍부터 이러한 규례가 없었으므로 다른 예에 따라 수세하여 민폐를 바로잡으라는 뜻으로 제사(題辭)를 써서 보냈습니다.' 하였습니다.

민고는 날로 더욱 줄어들고 세곡을 실어 나르는 배는 점점 빌리기 어려워서 민읍의 고충이 갈수록 지탱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영읍(營邑)이 이로써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로 삼은 것은 혹 괴이할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읍민에게는 폐단을 바로잡는 방도가 되겠지만 강민에게는 새로 만들어 시행하는 일이 되니, 지금 이렇게 강민의 고충을 물어서 돌봐 주려는 상황에서는 모두 혁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고을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고 한갓 민정만 따르는 것은 또한 두루 통하지 못하는 의논입니다. 이 사안은 해도 도신에게 분부하여, 본부의 줄어든 결미의 분량과 세곡 선가에 대한 폐단에 대해 영읍이 서로 상의하여 좋은 쪽으로 논열하여 본사(本司)에 낱낱이 보고하게 함으로써 시세(柴稅)와 염세를 보존할지 혁파할지 여부를 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이러한 뜻으로 각사 및 해도에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윤허하였다.

강 備局以八江民瘼回啓

목 備局啓言八江詢瘼事草記有往復各司及諸道秩秩區別論理稟處之命矣捧甘各司發關該道使之詳查牒報矣各處所報今方齊到 (…) 其一南陽府鹽船收稅事也京畿監司所報以爲本府每年結役米所縮爲百餘石稅大同裝發時船價至薄船人厭避鹽商所貿每石收稅一分柴船所賣每兩收稅一分則將爲五六百金歲給刷船之價以其所餘補此民庫事昨年該府使 王漢禎因儒鄕齊訴有所論報而沿邑皆有物產收稅之規獨本府以煮鹽之處曾無此規故依他例收稅以捄民弊之意題送云民庫之虧欠日增稅穀之賃船漸艱民邑之弊轉至難支之境營邑之以此爲矯捄之方者容或無怪而此事在邑民雖爲捄弊在江民

係是創行今此詢瘼恤隱之下事當一竝革罷而不揆邑勢徒循民情亦是不通之論此則分付該道道臣本府結米縮條稅穀船價之弊營邑往復從長論列枚報本司以爲柴鹽稅存罷間處決之地恐合事宜請以此意分付於各司及該道允之

<일성록, 정조13년(1789) 12월 21일(임신)>

경제/재정

남양부의 시선(柴船)과 염선(鹽船)에 대한 수세 문제를 논의하다

강 희정당(熙政堂)에서 대신(大臣)과 비변사 당상을 소견하고, 이어 초계 문신의 과강(課講)을 행하였다. 시관은 오재순(吳載純), 이병모(李秉模)이다.

목 (…) ○ 채제공이 아뢰기를, "지난번 강민(江民)의 폐단을 물으신 것으로 인한 초기(草記)에 **남양부(南陽府)** 시선(柴船)과 염선(鹽船)에서 세를 거두는 문제에 대해 감영과 해읍(該邑)이 충분히 상의하여 낱낱이 보고하게 하겠다고 복계(覆啓)하고 나서 도신(道臣)에게 행회하였습니다.

방금 전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의 보고를 보니, 해당 부사 이언신(李彦藎)의 첩보(牒報)를 낱낱이 거론하여 말하기를, '결미(結米)가 흠축된 일은 상정(詳定)을 시행한 뒤에 각궁(各宮)이 면세(免稅)받은 것을 상납하는 것이 200여 결이 되고, 민고(民庫)에서 거두는 것이 6두(斗)이고, 잡역(雜役)까지도 모두 면세받은 것을 상납하는 데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후 빚을 진 것이 1000여 금이 됩니다. 세곡선(稅穀船) 선가(船價)의 일은 본부의 대동(大同)을 꾸려 보낼 때에 100석마다 8석만 주기 때문에 뱃사람들이 죄를 무릅쓰고 회피하기를 꾀하여 상납하는 기일을 어기게 됩니다. 상선(商船)은 염(鹽) 1석에 세 1푼을, 시선은 전(錢) 1냥에 세 1푼을 걷어서 민고에 들여 대동을 싣는 배의 선가에 보태 주고 제반 공역(公役)에 보충해 쓰는데, 시행한 지 1, 2년 동안 주객이 모두 편리하였습니다. 강민들을 불러다가 상세히 물어보았더니, 강민들은 하속(下屬)들이 농간을 부린 소치라고 생각된다고 하였는데, 과연 폐막을 물으시던 날 삼가 대답했다고 하였습니다. 연읍(沿邑)의 물산이 생산되는 곳은 모두 세를 거두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처럼 자잘한 세를 거두어 지극히 고질적인 폐단을 구제하는 것은 편의를 고려하는 정사에 방해되지 않습니다.' 하였습니다.

균역 절목(均役節目)은 엄중하여 염분(鹽盆)과 상선에 대하여 1푼의 전이라도 균청(均廳)이 아니면 감히 이중으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일 거두는 것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법을 벗어나 징수하도록 허락한다면 균청 절목이 점차 훼손되지 않으리라고 어찌 보장하겠습니까. 도신은 엄하게 추고하고, 염선과 시선에 세를 징수하는 것은 속히 혁파하게 하라고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

강 召見大臣備堂于熙政堂仍行抄啓文臣課講 試官 吳載純 李秉模

목 (…) ○**蔡濟恭**啓言頃因江民詢瘼草記**南陽府**柴監船稅一款營邑爛商枚報之意覆啓行會矣卽見京畿前監司 徐有防所報則枚擧該府使 李彦藎牒報以爲結來縮條事詳定設施之後各宮免稅上納爲二百餘結民庫所捧六斗雜役併入於免稅上納條故後來負債爲千餘金稅穀船價事本府大同裝發時每百石只給八石故船漢抵罪謀避上納愆期商船鹽一石稅一分柴船錢一兩稅一分捧入民庫添給大同船價補用諸般公役行之一二年主客俱便招致江民詳細質問則江民等以爲意以下屬輩操縱之致果於詢瘼日有所仰對云而沿邑物產之處俱有收稅之規取此零瑣之稅以抹至痼之弊不害爲便宜之政爲辭矣均役節目嚴重凡於鹽盆及商船雖一分錢非均廳則莫敢疊懲今若以其所收之不多許其科外徵斂則均廳節目安知不慚次虧壞乎道臣役重推考鹽柴收稅亟令革罷之意請分付從之 (…)

<일성록, 정조14년(1790) 10월 20일(정묘)>

경제/재정

곡물을 남양으로 이획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강 강도(江都)의 이전미(移轉米) 모조(耗條)를 돈으로 대신하는 것, 총융청 향환(餉還)을 수송하는 것, 교동부(喬桐府)에 곡물을 이획(移劃)하는 것에 대해 도신(道臣)의 계사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또 장계에, "좌의정 채제공(**蔡濟恭**)이 아뢴 데 대한 거조 비지(擧條批旨)로 인하여, 교동부의 종자와 식량은 몇 석이 되어야 하며 구호는 몇 석이 되어야 하는지와 어떤 읍의 곡물을 이전해야 하는지를 지적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본부(本府)에 관문을 보냈습니다.

해당 부사 남헌철(南憲喆)의 첩정에, '초봄에 종자로 쓸 벼 2천 석, 종자로 쓸 콩 2백 석, 환미(還米) 1천 석을, 본도(本道)의 풍덕(豊德)·교하·통진(通津)·김포(金浦)·부평(富平) 및 해서의 연안(延安)·배천(白川) 등 인근 읍으로 하여금 헤아려 이획하도록 하면 거의 안배하여 구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풍덕 등 다섯 읍은 곡물 수가 적고 연안과 배천 등 제읍은 다른 도로 이전하는 데에 폐단이 있으니, 모두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부(該府) 부근의 읍인 **남양(南陽)**과 안산(安山) 두 읍은 곡물이 좀 넉넉하고 수로가 통하니 벼 2천 석과 콩 1천 석은 이곳에서 이획해야 할 형편입니다. 쌀 1천 석은 해부가 강도와 불과 나루 하나 넘는 곳이니 이에 준하여 이획하였다가 내년 가을이 되었을 때 환납하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듯합니다.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묘당으로 하여금 즉시 행회하게 하여 도민(島民)으로 하여금 식량 사정이 어려운 근심을 면할 수 있도록 하라." 하였다.

강 命江都移轉米耗條代錢總廳餉還輸送喬桐府移劃穀物依道啓施行

목 京畿監司 金憙狀啓以爲江都移轉米耗條以錢代送便成前例歉歲則每石五兩一錢常年則每石四兩一錢今年旣是常年用四兩一錢之例輸送恐合事宜總廳餉還所管諸邑當此常年捧留一款初非可論第其中交河一邑量田已始移轉石數又爲夥多特許捧留本邑未知何如竝令廟堂稟處敎以依狀請施行事回諭又狀啓以爲因左議政 **蔡濟恭**擧條批旨以喬桐府種糧當爲幾石接濟當爲幾石及當移某邑詣的報來之意行關于本府該府使 南憲喆牒呈以爲開春種租二千石種太二百石還米一千石以本道豐德交河 通津 金浦 富平及海西 延安 白川等隣近邑參量移劃庶可排比接濟云矣豐德等五邑穀物數少延白等諸邑他道移轉有弊竝勿擧論該府附近邑**南陽** 安山兩邑穀物稍裕又通水道租二千石太一千石勢將就此移劃米一千石則該府於江都不過越一津之地準此移劃待明秋還納恐合事宜請令廟堂稟處敎以依狀請施行事令廟堂卽爲行會俾島民得免艱食之患

<일성록, 정조14년(1790) 11월 10일(병술)>

경제/재정

사유환(蛇油丸)을 남양부에 이정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강 진상하는 사유환(蛇油丸)을 이정(移定)하고 우선 거행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가 진상하는 사유환을 **남양부(南陽府)**에 이정한 것으로 치계한 데 대해 전교하기를, "민읍(民邑)의 폐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약원(藥院)에서 사용하는 것도 상세히 물어서 처리해야 하니 약원은 우선 발송하지 말고 본도는 우선 거행하지 말아서 다시 처분하기를 기다리라고 회유하라." 하였다.

강 命進上蛇油丸移定姑勿擧行

목 京畿監司 徐鼎修以進上蛇油丸移定南陽府馳啓敎以民邑之弊不可不念藥院所用亦當詳問處之該院姑勿發送本道姑勿擧行更待處分事回諭

<일성록, 정조15년(1791) 7월 26일(기해)>

경제/재정

상공(上貢)에 소홀한 남양의 문제를 논의하다

강 선전관 이동선(李東善)이 안면도(安眠島)에서 나무를 벨 때와 선박으로 운반할 때의 간악한 폐단에 대해 급히 장계한 데 대해, 이 장계를 수원유수(**水原留守**)와 경기 감사에게 내려보내라고 명하고, 이어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익진(李翼晉)**이 소홀히 거행한 것에 대해 신칙하였다.

목 ○ 이동선의 장계에, "신이 안면도에서 나무를 벨 때와 선박으로 운반할 때 발생한 간악한 정상과 폐막(弊瘼)을 염탐하는 일로 이달 6일에 성상의 하교를 삼가 받들고서는 다음 날 출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2일에야 섬에 들어가서 두 차례 두루 돌아다니며 꼼꼼히 염탐한 뒤에 15일에 본도(本島)에 출도(出道)하여 섬 백성을 모아놓고 상세히 물어보니, 참으로 염탐할 때 들은 내용과 같았습니다. 감동 차원(監董差員) 김처한(金處漢)은 1월 11일에 수영(水營)에 도착하여 수사(水使) 이윤겸(李潤謙)과 함께 다음 날 배를 타고서 섬에 들어갔으며, 이어 수사와 함께 벌목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데리고 온 사람은 2명의 목수(木手)와 1명의 종에 불과하였고, 그들에 대한 음식 제공 등은 수사가 스스로 담당하였으며, 나무 베는 일을 모두 살펴본 뒤에 같은 달 27일에 나갔다고 운운(云云)하였으니, 섬 백성들에게 폐해를 끼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수사는 그가 데리고 온 관례(官隷)에게 스스로 마련하여 밥을 먹여 주어 백성에게 폐해를 주지 않도록 하였고, 섬에서 나올 때에는 아전과 장교(將校)들을 남겨 두고 삭료(朔料)를 미리 지급하여, 그 돈으로 밥을 사 먹도록 하고 섬 백성을 침탈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신칙하였습니다. 그 뒤에 아전과 장교들이 돈을 주고서 밥을 먹기도 하고 돈을 주지 않고서 밥을 먹기도 하였는데, 이달 5일에 갑자기 감영(監營)의 추궁을 당하자, 그들이 겁을 먹고서는 떠날 때에 그동안 빚을 졌던 밥값을 마련하여 갚았습니다. 이 외에 섬 안에 머무르던 아전과 장교가 징수해서 쓴 10속(束)의 백지(白紙)와 갚지 못한 밥값 6냥 9전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한 뒤에 각별히 엄하게 다스리고, 산지기(山直) 등에게 일일이 되돌려주었습니다. 수사의 친비(親裨)들은 별달리 범죄를 저지른 폐단이 없었습니다.

안흥 첨사(安興僉使) 왕한좌(王漢佐)는 차사원(差使員)의 직임을 맡고서는 1월 14일에 섬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가 데리고 온 사람은 애당초 5명이었으나 2명은 추후에 돌려보냈고 지금은 3명만 있습니다. 그에게 음식과 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태안(泰安)과 서산(瑞山) 두 읍에서 지방관(地方官)을 접대하는 규례에 따라 접대하였는데, 서산은 1섬 2말의 양식으로 사용할 쌀과 기타 반찬으로 사용할 물품을 계속 대주어 모자라지 않았으나, 태안은 2말의 쌀과 3근의 고기만 보내 주고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첨사가 마지못해 섬 백성에게 외상으로 밥을 먹고, 태안의 쌀과 반찬이 오기를 기다려 갚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진리(鎭吏)가 감영으로부터 추궁을 당한 뒤에는 그도 겁을 먹고서는 스스로 마련하여 갚았습니다. 만약 진리가 추궁을 당하기 전에 왕한좌가 자기가 먹은 밥값을 마련하여 갚았더라면 허물이 없었을 터인데, 적발되고 나서야 마련하여 갚은 것은 미봉책을 면치 못한 처사입니다. 태안 현감(泰安縣監) 한영규(韓永逵)가 보내 주어야

할 물품을 보내 주지 않아 첨사가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것도 소홀히 한 잘못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전의 간계(奸計)와 백성의 폐해에 대해서는 낱낱이 조사하였으나, 고가(雇價)를 고르게 나누어 준 것과 뇌물을 주고받지 않은 것은 염탐할 때 들었던 내용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재목을 선적(船積)한 것으로 말하면, 1000개의 원주(元株)와 407개의 말단(末端)은 거의 다 선적하여 운반하였고, 원주와 말단 중 남아 있는 것은 100여 개에 불과하였습니다. 원주를 끌어내리는 데 들어간 고가가 도합 600냥인데, 1그루당 6전씩 계산해서 절미(折米)하여 200섬으로 대신 지급하되, 1섬당 3냥의 상정가(詳定價)로 환산하였습니다. 나무를 벨 때 부군(斧軍)의 고가와 선적할 때 모군(募軍)의 고가가 1그루당 각각 1전씩 총 200냥인데, 이것도 절미하여 60섬 10말로 계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운운하였습니다. 그 나머지의 재목으로 합당하지 않은 가지와 굽은 나무를 화목(火木)으로 만든 것이 300여 파(把)인데, 비변사의 관문(關文)에 따라 탄(炭)을 사기 위해 팔았습니다. 이때 1파당 값을 2냥 5전씩으로 환산하되, 그중 1냥은 수송할 때의 고가 몫으로 덜어 놓았으므로 실제로 바치는 것은 1냥 5전입니다.
뱃사람들이 경유하는 각처에서 호송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도 탐문해 보니, 태안, 안흥, 소근(所斤), 평신(平薪), 당진(唐津) 5곳은 규례대로 수행하였으나, **남양**은 애당초 거행하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에게 폐해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탐문해 보니, 그들이 고하기를, '관선(官船)은 각각 해당 고을에서 양식과 반찬에 들어갈 비용을 계산해 주었는데, 하루 1명의 양식이 3되, 2되 7홉, 2되 1홉 등 양이 일정하지 않아 원통해할 단서가 없지 않습니다. 사선(私船)은 수영에서 매일 양식을 2되 7홉씩 20일 치를 계산해 주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이 장계를 수원유수와 경기 감사에게 내려보내 더욱더 각별히 유념하여 순조롭게 운항을 마칠 수 있도록 하라. **남양**이 이처럼 태만하고 소홀히 거행한 것은 대단히 놀랍다. 문루(門樓)에 사용할 재목의 운송에 대해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한결같이 마음을 쓰고 신칙하는 하교를 누차 내렸는데도 해당 수령이 이와 같이 수행하였으니, 기타 배로 실어 바다로 운송하는 곡물을 성실히 호송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나라에 법과 기강이 있다면, 측근에서 나간 자가 어찌 감히 이와 같이 하겠는가. 바람이 강해지기 전 곡식을 모두 수송하기 전까지, 그로서는 계속 감처(勘處)를 기다리는 날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나중에 끊임없이 고찰할 것이니, 조금이라도 적발이 된다면 그가 어찌 중죄를 피하겠는가. 해당 부사를 도신이 예사롭게 하지 말고 엄히 신칙하게 하라." 하였다.

강 宣傳官 李東善以安眠島斫木及船運時奸弊馳啓命此狀啓下送于**水原留守**及畿伯仍飭**南陽府使**李翼晉擧行之稽忽

목 東善狀啓以爲臣以安眠島斫木及船運時奸狀弊瘼廉探事今月初六日敬奉聖敎翌日離發十二日始入島再次周行密密廉探後十五日出道於本島召集島民詳細詰問則果如廉探所聞監董差員金處漢正月十一日來到水營與水使 李潤謙翌日同舟入島仍與水使同看伐材而其率下則不過二名木手與一名奴子其支供則水使自爲擔當畢看斫役後同月二十七日出去云云少無貽弊於島民輩而水使則所率官隷自備饋飯使不爲民弊而及其出島之時落留吏校輩先給朔料使之以錢買食勿侵島民之意申申戒飭其後吏校輩或給錢而食或未給錢而食今月初五日忽當監營之推論渠輩畏怯臨行備給所負之飯價而外此吏校之來留島中者十束白紙之徵用六兩九錢未償之飯價詳細査出後各別嚴治而一一推給於山直等處水使之親裨輩則別無犯科之弊安興僉使 王漢佐則以差員之任正月十四日入島至今留住其率下則初以五名而二名則追後還送今有三名而其所供饋則泰安 瑞山兩邑以地方官依例接待而瑞山則

一石二斗糧米其他饌物繼而不乏泰安則只送二斗米三斤肉而已故僉使不得已以外上得食於島民輩而待其泰安米饌之來以爲報償之計矣渠之鎭吏見推於監營後亦生畏怯之心自備報償而漢佐若前乎鎭吏之推論備償其所食則當歸於無過而現發後始乃備償未免彌縫之計泰安縣監 韓永逵不送當饋之物致有僉使犯科之擧者亦難免疏忽之過吏奸民隱這這査探而雇價之均分賂物之不行民言無間於廉探所聞而材木之裝載則一千元株四百七箇末端幾盡裝運而元末餘存不過百餘箇元株曳下雇價合爲六百兩而每株六錢折米二百石代給每石三兩詳定斫伐時斧軍雇價裝載時募軍雇價每株各一錢合二百兩而亦以折米六十石十斗計給云云其餘枝柯及屈曲不合材用者折作火木爲三百餘把依備局關以貿炭次發賣而每把價折爲二兩五錢而一兩則折作輸運雇價除實納爲一兩五錢船漢輩所經各處護送勤慢亦爲探問則泰安 安興所斤平薪 唐津五處則依例爲之南陽則初不擧行船漢輩有弊與否亦爲探察則渠輩所告內官船則各自該官計給糧饌之需一日一名之糧或爲三升或爲二升七合或爲二升一合而多寡不一或不無稱冤之端私船則自水營每日糧二升七合計給二十日云敎以此狀啓下送于留守及畿伯處更加各別着念俾得利泊穩旋而南陽擧行之若是怠忽萬萬駭然一念夙宵飭敎屢勤之樓材運輸該倅之所爲如許其他駕海之船粟不勤護送不問可知國有法綱則出自近密者乃敢乃爾乎風高畢輸粟前卽渠無非俟勘之日後當不住考察一有現發渠焉逭重律乎該府使處令道臣除尋常嚴飭

<일성록, 정조18년(1794) 4월 19일(을해)>

경제/재정

남양의 환모(還牟) 문제를 논의하다

강 경기 도내의 환자(還上)는 적절히 더 분급하고, **남양(南陽)** 등 읍의 환모(還牟)는 가을걷이 때에 그에 상당하면서 해당 고을의 토질에 적합한 곡식으로 편의에 따라 환작(換作)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용보(徐龍輔)가 아뢰기를, "도내의 원환(元還)은 본래 넉넉하지 못하여 매번 보릿고개를 맞을 때마다 장계를 올려 더 분급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하는 일이 매년 되풀이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김매는 시기를 맞아 각 읍에서 이것을 청하는 첩보(牒報)가 매일 속속 도착하고 있으니 근래의 예에 따라 유고곡(留庫穀) 중에서 적절히 더 분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도내의 환자 각 곡물 중에서 **남양(南陽)**, 풍덕(豐德), 삭녕(朔寧) 등 3개 읍은 모환(牟還)이 지나치게 많고, 금천(衿川) 1개 읍은 직환(稷還)이 지나치게 많아서 환곡을 나누어 줄 때마다 백성들이 받지 않으려 하고, 봉납(捧納)할 때가 되면 그 폐단이 더욱 많습니다. 그에 상당하면서 해당 고을의 토질에 적합한 곡식으로 편의에 따라 환작하게 하면 공적으로도 손실이 없고 백성들도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남양의 모(牟) 400섬, 풍덕의 모 700섬은 가을걷이 때에 조(租 벼)로 바꾸고, 삭녕의 모 130섬은 가을걷이 때에 속(粟 조)으로 바꾸며, 금천의 직(稷 피) 700섬 역시 가을걷이 때에 조로 바꾸면 실로 편리할 것입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畿內還上量宜加分南陽等邑還牟特秋以相當宜土之穀從便換作

목 京畿監司 徐龍輔啓言道內元還本來不敷每當麥嶺狀請加分無歲不然今當鋤役方張之時各邑請報日以沓至請依近例就留庫中量宜加分從之又啓言道內還上各穀中南陽 豐德 朔寧三邑年還過多衿川一邑稷還過多每當分糶之時民不願受及其捧納之際爲弊尤多若以相當宜土之穀從便換作則公無所損民受實惠南陽牟四百石豐德牟七百石待秋作租朔寧牟一百三十石待秋作粟衿川稷七百石亦爲待秋作租實合便宜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6월 23일(무인)>

⑵ 교통

경제/교통

남양의 마정에 대해 논의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사복시 제조 서유방(徐有防)과 수원 유수 조심태(**趙心泰**)를 소견하고, 평신진(平薪鎭)의 목장을 혁파한 다음 장용 외영(壯勇外營)의 둔전을 설치하고 마필(馬匹)은 여러 섬으로 이송하며 둔곡(屯穀)은 각 진(鎭)의 병선(兵船)과 방선(防船)이 돌아가며 실어 나르고 본진(本鎭)의 관청 건물을 고쳐 지을 때는 의송산(宜松山)의 바람에 쓰러진 나무를 가져다 쓰게 하였다.

목 (…) 또 아뢰기를, "지금 이미 목장을 혁파했으니 그 마필을 옮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세 목장에서 원래 기르던 말 550필 가운데 창택장에서 방목하는 100필을 제외한 나머지 450필은 지금 막 사복시 제조와 좋은 쪽으로 상의하여 수원장(**水原**場)·홍원장(洪原場)과 **남양(南陽)**·대부(**大阜**)·영흥(靈興)·이작(伊作)·선감(仙甘) 등 여러 섬 및 강화(江華)·초지(草芝) 등의 목장으로 분수(分數)를 정하여 이송하였습니다. 평신진의 목장을 완전히 외영에 소속시킨 뒤 창택장에서 그 가운데 약간의 마필을 방목하는 것은 사복시에서 전처럼 구관(句管)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역시 일체 외영에 부쳐서 기르는 대로 가져다 전마(戰馬)에 보충하는 것이 아마도 권도(權道)에 맞을 듯합니다. 시행하는 초기에 반드시 과조(科條)를 엄하게 세우고 절목을 의논하여 정한 다음 마적(馬籍)을 만들어 비치하고 영원히 준행해 나가면 실효가 있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

강 召見司僕提調 徐有防 **水原留守** **趙心泰**于重熙堂罷平薪鎭牧場設置壯勇外營屯田馬匹移送諸島屯穀以各鎭兵防船輪回載運本鎭公廨改建時取用宜松山 風落木

목 (…) 又啓言今旣罷牧則移其馬匹在所先務三場原牧馬五百五十匹內倉宅場所放一百匹除之餘馬四百五十匹今方與司僕提調後長相議分數移送於**水原** 拱原場 **南陽** **大阜** 靈興 伊作 仙甘諸島及江華 草芝等場而平薪一場曺屬外營之後倉宅場以其若干馬匹之放牧自司僕不可如前句管此亦一體付之外營隨其所養取補戰馬恐合權宜而設施之初必嚴立科條議定節目成置馬籍永久遵行則似有實效矣從之 (…)

<일성록, 정조18년(1794) 9월 29일(계축)>

경제/교통

남양의 마정에 대해 논의하다

강 나주목장(羅州牧場)에 관계되는 자은도(慈恩島), 장산도(長山島), 압해도(押海島)의 목민(牧民)은 울산(蔚山)의 가목자(假牧子)에 대한 규례대로 반 필(疋)로 신포(身布)를 정하고, 평신(平薪)의 목마(牧馬) 450필은 내년 봄을 기다려 **남양(南陽)**과 강화(江華)의 목장으로 이송하라고 명하였다.

목 (…) 또 아뢰기를, "평신진의 목장을 혁파한 뒤 목마 550필 중에서 100필은 본진에 남겨 두고 그 나머지 450필은 **남양**과 강화 두 곳으로 이송하되, 이송하는 등의 일은 세 목장에서 힘을 모아 거행하게 하소서. 다만 지금 벌써 10월이 다 되었으니 오가는 사이에 금방 혹한기가 될 것입니다. 내년 봄을 기다려 거행하라는 뜻으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강 命羅州牧場所關慈恩長山押海牧民依蔚山假牧子例以半疋定其身布平薪牧馬四百五十匹待明春移送**南陽** 江華兩牧場

목 (…) 又啓言平薪罷牧之後牧馬五百五十匹內一百匹留置本鎭其餘四百五十匹移送南陽 江華兩處而移送等節三牧場當竝力爲之矣第今十月已屆來往之際易致隆寒請以待明春擧行之意分付從之
<일성록, 정조18년(1794) 9월 29일(계축)>

경제/교통

남양부사에게 말을 시상하다

강 정언형(鄭彦衡) 등에게 시상하라고 명하였다.

목 (…) 또 하교하기를, "이천 숙소참(利川宿所站)의 지방관인 본 현감 이단회(李端會)는 반숙마 1필을 사급하고, 이번에 선창(船艙)에서 노고가 가장 두드러졌던 차사원인 장단 부사(長湍府使) 어석정(魚錫定)은 내하 중녹비(內下中鹿皮) 1령을 사급하며, 전 양주 목사(楊州牧使) 엄숙(嚴璹)은 반숙마 1필을 사급하고, 그 나머지 각종 임무를 맡았던 차사원 중에 일로 도차사원(一路都差使員) 인 수원 부사(水原府使) 김광묵(金光默), 교량 차사원(橋梁差使員)인 풍덕 부사(豐德府使) 윤수인(尹守仁)과 파주 목사(坡州牧使) 홍억(洪檍)은 각각 아마 1필을 사급하며, 차사원 인 경안 찰방(慶安察訪) 손석주(孫碩周), 전 양근 현감(楊根縣監) 김재화(金載華), 통진 부사(通津府使) 변지건(卞至健), 금천 현감(衿川縣監) 이창원(李昌遠), 남양부사(南陽府使) 강세황(姜世晃), 안성 군수(安城郡守) 이창중(李昌中)도 아마 1필을 사급하도록 하라." 하였다. (…)

강 命鄭彦衡等施賞

목 敎曰內乘 鄭彦衡 半熟馬一匹賜給趙獜達六品遷轉御乘馬牽馬輩理馬書吏等令本寺取考癸酉庚戌例施賞後草記又敎曰今番船所勞役比前倍蓰合有嘉賞之典工曹判書 鄭好仁 半熟馬一匹賜給郎廳曺翬振 洪秉德陞敍又敎曰利川宿所站地方官本縣監 李端會 半熟馬一匹賜給今番船艙勤勞最著差使員 長湍府使 魚錫定內下中鹿皮一令賜給楊州前牧使 嚴璹 半熟馬一匹賜給其餘各務差使員中一路都差使員 水原 府使 金光默橋梁差使員 豐德府使 尹守仁 坡州牧使 洪檍各兒馬一匹賜給差使員 慶安察訪 孫碩周 楊根前縣監 金載華 通津府使 卞至健 衿川縣監 李昌遠 南陽府使 姜世晃 安城郡守 李昌中亦爲兒馬一匹賜給又敎曰啓螺宣傳官 田翊顯 任屹各內下弓矢一部賜給內吹依例令該衙門營門施賞其中駕前後待令兼內吹旣命別單書啓依付標數爻亦爲施賞後草記又敎曰御前前排次知知殼官 呂從周旣已施賞勿論旗牌官 崔仁得弓矢一部賜給巡牢等依付標啓下自本營施賞後草記利川晝停站加把巡牢賞格付標數此則以內下者頒給事分付又敎曰宿衛所事知執事敎鍊官 張光郁 史廷煥 李廷復各內下弓子一張賜給隨駕敎鍊官 高時元 安尙恒 洪成龜 禹叙疇各內下箭竹五十箇賜給
<일성록, 정조3년(1779) 8월 11일(임술)>

경제/교통

남양에서 침몰된 대동선 문제를 논의하다

강 해남(海南)의 대동미(大同米)를 실은 선척의 취재(臭載)와 관련된 감색(監色), 사격(沙格), 곡물은 한결 같이 유지(宥旨)대로 거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정수가 아뢰기를, "해남의 대동미를 실은 선척이 본도(本道)의 남양부(南陽府) 지역에서 치패(致敗)되었는데, 작년 여름에 대사면령을 내리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 수령을 논죄(論罪)하는 일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여, 전교하기를, "이른바 새로 반포한 정식은 한 번 정한 법식과는 차이가 있으니, 그 일의 체모의 구차함이 이보다 심한 경우는 없다. 이미 조금이나마 민폐를 해소하는 데 도움

이 된다고 하므로 비록 우선 허락하여 일설(一說)을 갖추기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는 합당한지 모르겠다. 이 일의 경우에는 유지를 내리기 전에 범한 것이니, 호서(湖西)의 태안(泰安)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회계(回啓)하였을 때부터 호조가 거행한 것이 너무도 놀라웠는데, 지금 어찌 다시 호조의 잘못을 본받을 수 있단 말인가. 수령을 논죄하는 것은 우선 놔두더라도, 감색, 사격, 증렬미(拯劣米), 취재된 곡물은 또한 한결같이 유지대로 거행해야 하는데, 어찌 호조가 본 사안을 몰랐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공문을 보내 알리지 않는단 말인가. 갇혀 있는 감색과 사격은 오늘 안으로 신속히 통지하여 풀어 주고, 증렬미와 취재된 곡물을 처리하는 일은 유지대로 거행하며, 그 나머지는 상의하여 처결하도록 하라." 하였다.

강 命海南大同臭載監色沙格穀物一依宥旨擧行

목 京畿監司 徐鼎修啓言海南大同所載船隻致敗於本道南陽府地方而旣在於昨夏大赦之前守令論罪一款何以爲之乎敎以所謂新頒定式與一定之式有異其爲事面之苟且莫甚於此旣云有一分有益於民弊之故雖姑許之以備一說大體則未知恰當至於此事係是宥旨前所犯則自湖西泰安事之回啓該曹擧行萬萬駭然今豈可更效該曹之做錯乎守令論罪姑捨是監色沙格也拯劣谷物也亦當一依宥旨擧行豈其該曹未知本事之故至今無行會乎在囚監色沙格今日內星火知委放送拯劣米及臭載谷物區處事依宥旨爲之其餘往復決處也

<일성록, 정조15년(1791) 6월 12일(을묘)>

경제/교통

남양부에서 치패된 대동선의 문제를 논의하다

강 여산(礪山) 등 읍의 세선(稅船)을 치패(致敗)한 감색(監色)과 사격(沙格)을 해남현(海南縣)의 예(例)대로 논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목 ○ 호조 판서 조정진(趙鼎鎭)이 아뢰기를, "여산, 장흥(長興), 순천(順天) 세 읍의 세선이 작년 여름에 태안(泰安)에서 치패되었습니다. 남양부(南陽府) 경내에 치패된 해남현 대동선(大同船)의 감색과 사격은 유지(宥旨)를 내리기 전의 일이라 하여 이미 풀어 주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 읍의 세선이 치패된 경우도 다르게 해서는 안 되겠기에 우러러 아룁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당초 호조의 회계(回啓)는 제대로 살피지 못한 잘못을 면하기 어렵다. 어찌 유지를 내리기 전의 일을 뒤섞어 조사하기를 청한단 말인가. 경을 추고하겠다. 감색과 사격은 해남현의 예대로 논하지 말라." 하였다.

강 命礪山等邑稅船致敗監色沙格依海南例勿論

목 戶曹判書 趙鼎鎭啓言礪山長興順天三邑稅船昨年夏致敗於泰安地矣南陽境致敗海南縣大同船監色沙格以宥旨前旣有放送之命今此三邑稅船致敗恐不可異同故仰達矣敎以當初該曹回啓難免不審豈可以宥旨前事混請査覈乎卿則推考監色沙格依海南例勿論可也

<일성록, 정조15년(1791) 6월 20일(계해)>

경제/교통

태복시에서 남양 목장의 마필을 보고하다

강 태복시(太僕寺)가 금년 임자년(1792, 정조16)에 각 도의 목장(牧場)에서 놓아기르고 있는 말의 수효를 올렸다.

목 (…) 남양(南陽)의 감목관이 관할하는 다섯 군데 목장에는 암수 장마와 아마를 합쳐서 359필이 있다. (…) 이상 금년에 실제로 놓아기르고 있는 암수 장마와 아마는 모두 합쳐서

8618필이다.

강 太僕進各道牧場今壬子留放馬畜數爻

목 (…) **南陽監牧官**所管五牧場壯兒雌雄馬幷三百五十九匹 (…) 已上今年實留放壯兒雌雄馬竝八千六百十八匹

<일성록, 정조16년(1792) 12월 10일(갑술)>

⑶ 농수산업

경제/농수산업

유언호(兪彦鎬)를 소견하여 남양의 농사를 논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이제학(二提學) 유언호(兪彦鎬)를 소견(召見)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지금에서야 비로소 일제학(一提學)의 일이 끝이 났다. 본래 신조를 삼아서 임금을 섬기는 것이 징토(懲討)를 엄히 하는 한 가지 일인데, 지금 마침내 별 어려움 없이 그에게 와굴(窩窟)과 근저(根底)의 죄목(罪目)을 붙였다. 근래 조정의 모양새가 한 가지도 믿을 만한 점이 없으니 참으로 작은 걱정거리가 아니다." 하니, 유언호가 아뢰기를, "만약 성상께서 다시 살려 주신 은덕이 없었다면 일제학에게 어찌 오늘 같은 날이 있었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경이 살고 있는 곳은 농사가 어떠한가?" 하니, 유언호가 아뢰기를, "안성(安城)이 **남양(南陽)**보다 낫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믿는 것은 백성이다. 나라의 기전(畿甸) 천리(千里) 이내가 바로 경기(京畿) 한 도인데 농사가 흉년일 것으로 예상되니, 대궐의 근심이 또 어떠하겠는가. 대파(代播)하라는 하교를 이미 5월에 내렸는데 혜택이 백성에게까지 미쳤는가?" 하니, 유언호가 아뢰기를, "윤음(綸音)이 반포된 뒤에 민심이 조용하고 평안해졌습니다." 하였다.

유언호가 아뢰기를, "신이 규장각의 직함을 헛되이 맡고는 계속 고향 집에 있으니, 공사(公私)에 모두 방해가 되어 삼가 황송한 마음 간절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다시는 사직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강 召見二提學 兪彦鎬于誠正閣

목 予曰一提學事今始出場而本來藉手事君者是嚴徵寸言一事則今乃以窩窟根底無難加之近來朝像無一可恃誠非細慮矣彦鎬曰若非聖上再生之德一提學安得有今日也予曰卿之所住處年事何如彦鎬曰安城勝於**南陽**矣予曰所恃者民而邦畿千里之內卽京畿一道年事判歉九重之憂當復如何代播之敎旣在於五月則惠澤可以下究耶彦鎬曰綸音頒下後民情安謐矣彦鎬 曰臣虛帶閣銜連在鄕廬公私兩妨伏切惶悚矣予曰毋庸更辭也

<일성록, 정조6년(1782) 9월 10일(갑진)>

⑷ 건설

경제/건설

원소 조성에 필요한 석물과 석재를 남양에서 조달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묏자리를 살피고 온 대신 및 와서 대령하고 있던 대신과 각신(閣臣), 도감 당상, 이조·병조 판서, 판윤, 광주 부윤(廣州府尹)을 소견하였다. 판중추부사 서명선(徐命善)·이복원(李福源), 영돈녕부사 홍낙성(洪樂性), 영의정 김익(金熤), 판중추부사 이재협(李在協), 좌의정 이성원(李性源), 우의정 채제공(**蔡濟恭**), 원임 직제학 서유방(徐有防), 원임 직각 서정수(徐鼎修)·정동준(鄭東浚), 직각 이만수(李晩秀), 대교 김조순(金祖淳), 병조 판서 구윤옥(具允鈺), 이조 판서 김종수(金鍾秀), 도감 당상 이재간(李在簡)·정민시(鄭民始)·정창순(鄭昌順), 한성 판윤 김문순(金文淳), 광주 부윤 이향원(李享元)이 입시하였다.

목 ○ 판중추부사 서명선 등이 아뢰기를, "늦더위가 이와 같아 건강을 해치기 쉬운 데다가 신들이 뵙기에 용안이 수척하고 옥음이 메이셨으니 참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길지(吉地)가 정해져 성상의 효성을 이루게 되셨으니 이로써 조금이나마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길 삼가 바랍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지금 묏자리를 살피고 온 대신들의 장계를 보니 내 마음이 한편으로는 슬프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 이런 큰일을 당하여 어찌 슬픔을 누르고 마음을 편안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는가마는 전부터 가슴에 맺혀 있던 정회가 나도 모르게 아무 곳에서나 문득문득 드러나는구나." 하였다.

서명선이 아뢰기를, "봉심(奉審)하러 간 대신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으나 삼가 조금 전에 내리신 전교를 보고 또 먼저 도착한 지사의 말을 들어보니, 길조에 딱 맞고 여러 의견이 똑같아 신의 기쁘고 다행스러운 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영돈녕부사 홍낙성이 아뢰기를, "간심하러 가는 것은 사체를 중히 하기 위해서인데 여러 의견이 조금의 차이도 없으니 더욱 다행입니다." 하고, 판중추부사 이복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간심하러 가는 여러 신하의 뒤를 따르지 못해 마음이 서운하였는데 귀로 듣는 것이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고, 판중추부사 이재협이 아뢰기를, "세 지사의 논의가 마치 한 입에서 나온 듯 똑같으니 참으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부덕한 내가 무슨 성의를 보였다고 이런 길지를 얻었겠는가. 참으로 신명의 도우심을 받았다. 간심 장계(看審狀啓)는 오히려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못하니 여러 대신들이 들어오기만을 이렇게 나와 기다리고 있다." 하고, 이어 판윤 김문순은 앞으로 나아오라고 명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즉위한 후로 은택이 백성에게 미친 일이 한번도 없다. 더군다나 본원(本園)에 관계된 일로 백성을 수고롭게 하고 싶지 않으니 이러한 뜻을 경들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여사군(輿士軍)은 비록 방민(坊民)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번에는 군정(軍丁)을 고용하여 민역(民役)에 관계된 것을 모두 덜어 주고 싶다. 경은 돈체사(頓遞使)의 임무를 맡았으니 나의 뜻을 잘 헤아려 거행해야 할 것이다."

하니, 서명선이 아뢰기를, "천봉(遷奉)은 큰일이니 어느 겨를에 다른 것을 돌보겠습니까. 더구나 방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관계된 것이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복원이 아뢰기를, "성상께서는 백성을 긍휼하는 문제를 걱정하십니다만, 왕조(王朝)의 일은

구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이는 큰일인데 어찌 품삯을 지급하여 군정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서명선이 아뢰기를, "백성을 쓴 뒤에 따로 상격(賞格)이 있는 것은 괜찮지만 군정을 고용하라는 하교는 참으로 지나치십니다." 하였다.
이복원이 아뢰기를, "이번 여사군의 일은 상격이 없더라도 백성들이 틀림없이 즐거이 부역할 것입니다. 더구나 이런 막중한 일을 민폐를 걱정해서 군정을 고용하여 쓴다면 어찌 나라의 체모를 손상시키지 않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의 말이 참으로 대경대법(大經大法)임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는 것이 본래의 뜻인데다 또 이른바 방군(坊軍)이라는 것은 잡다해서 도리어 군정을 정실(精實)하게 고용하는 것만도 못하다. 이것은 병오년(1786, 정조10)에 이미 경험한 일이다. 지금 고용한 군정 중에서 신원이 확실하고 힘껏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면 어찌 방민을 죄다 조발(調發)하는 것만 못하겠는가. 다만 뽑는 법에는 모름지기 한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판윤이 어떻게 거행하느냐에 달려 있으니 경은 유념하라. 작년 등록(謄錄)에 '여사군(輿士軍)은 2운(運)을 쓴다.' 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거기까지 몇 리이고 몇 운인지를 먼저 정한 뒤에 몇 명의 군정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니 경은 나가서 근년의 전례를 자세히 기록하여 내일쯤에 등대(登對)하도록 하라." 하였다.
김문순이 아뢰기를, "1운에 들어가는 몇 명 외에도 잡색군(雜色軍), 사초군(莎草軍), 요채여군(腰彩輿軍)도 뽑는 인원 속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렇다." 하니, 김문순이 아뢰기를, "사초(莎草)는 마땅히 모화관(慕華館)의 사초를 써야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리하라." 하고, 이어 묏자리를 살피고 온 대신 이하는 입시하라고 명하였다. 영의정 김익, 좌의정 이성원, 우의정 채제공, 도감 당상 서유린·이재간·정민시가 나아와 엎드리고 지사 성몽룡과 이명구가 따라 들어왔다.
내가 이르기를, "경들의 장계를 이미 자세히 살펴보긴 하였지만 소견이 과연 어떠한가?" 하니, 김익은 아뢰기를, "신들이 본부(本府)에 도착하자마자 치표한 곳에 나아가 위로 주봉(主峰)에서부터 아래로 혈처(穴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상혈(上穴)의 조금 높은 곳에 앉아 국세(局勢)와 청룡백호를 둘러보니, 국세가 평평하고 반듯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청룡백호가 에워싸지 않은 것은 아닌데 평평하고 반듯한 가운데 휑하니 넓다는 느낌이 없지 않고 에워싼 가운데 단단히 결속된 형세가 약간 모자라며 안계(眼界)도 조밀하고 번잡한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이른바 평탄한 곳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 보니, 국세가 평온하고 청룡백호가 긴밀하며 또 혈 좌우로 매미가 날개를 나누어 펼친 듯한 형세가 있고 안계도 매우 조용했습니다. 시야 중에 작은 둔덕이 혈처와 직선으로 마주하고 있는데, 이곳은 본래 '서린 용의 형상' 이라고 일컬어지는 곳으로 이 둔덕이 '서린 용이 희롱하는 구슬' 이라는 것은 신의 평범한 눈으로도 정확한 논평인 듯했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산으로 말하면 두 개의 봉오리가 나란히 서 있는데 만약 봉오리를 정면으로 향하도록 혈의 방향을 잡으면 두 봉오리의 기세를 다 끌어들일 수 없을 듯하고, 두 봉오리 사이의 빈 곳이 정면이 되게 잡으면 두 봉오리의 기운이 합쳐져 하나의 안산(案山)이 되니, 예부터 이른바 구슬 같은 봉오리를 마주하고 두 산 사이를 정면으로 삼는다는 말이 이런 뜻 때문인 듯합니다. 계좌정향(癸坐丁向)은 세 지사의 말이 이미 모두 하나로 모아졌으니 바뀔 리는 없을 듯합니다. 이는 참으로 국가를 무궁하게 하는 대계인데 이런 더없는 길지를 구해 정했으니 경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고, 이성원은 아뢰기를, "신이 본디 풍수지리에 무지몽매하여 만분의 일도 형용할 길이

없습니다. 평범한 눈으로 논하자면, 국면(局面)이 크고 넓으며 혈처가 평평하고 반듯한데 청룡백호가 오붓하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혈처에서 주봉까지 거리는 수백 보가 될 듯한데 굽이가 완만하여 험준한지 모르다가 올라가 본 후에야 비로소 높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뒤로 넓은 들이 사면을 둘러싸고 있는데 광활하여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지사들의 말에, '용맥의 굽이가 모두 아홉 번 바뀌는데 건해방 아래에서 곧바로 계방, 축방, 간방으로 들어간다.' 라고 하기에 신이 지사에게 윤도(輪圖)를 띄워 방위를 가리켜 보이게 하니 방위가 모두 분명하였습니다. 대체(大體)가 높고 두터우며 위의(威儀)가 있어 본받을 만하니 그림으로 다 그려낼 수 없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이 높은 산을 만들어 오늘을 기다린 것이니 비록 술수(術數)에 능한 자라 할지라도 결코 한두 곳만을 감히 꼬집어 내어 찬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주하고 있는 구슬 같은 둔덕도 살펴보았는데 높지도 낮지도 않아 저절로 평야에 한 언덕이 되어 주봉과 안산 사이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대략이니 참으로 기쁘고 다행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고, 채제공은 아뢰기를, "신은 풍수지리에 대해 평소 무지하여 무슨 산이니 무슨 수(水)이니 무슨 격이니 무슨 법이니 하는 것은 감히 가리켜 논의할 수 없습니다만 두 대신의 뒤를 따라 주봉에서부터 형세를 두루 둘러보고 혈처로 내려올 쯤에는 기복을 이루며 굽이져 오는 동안 여러 번 박환하여 그 주맥(主脈)이 기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두(乳頭)가 끝나고 나서 평탄한 곳이 아래에 있기에 앉아서 자세히 살펴보니 청룡이 어깨를 붙인 듯 촘촘히 감싸고 있고 세 봉오리가 청룡의 오른쪽에 있는데 튀어나온 것이 상투와 같으며 백호가 굳세게 에워싸고 있는데 형세가 높지도 험하지도 않으며 그 밖의 여러 산이 완만하게 빈 곳을 메우고 있는데 백 떨기 어여쁜 연꽃 같았습니다. 이른바 둔덕이라는 것이 수백 보쯤 앞에 있는데 평탄한 곳에서 보면 완연히 품 안의 물건이어서 저도 모르게 기이하다고 탄성을 질렀습니다. 안산(案山)이 마치 병풍처럼 펼쳐 있는데 정면에 있는 두 봉오리가 가장 오묘하니 옛사람이 말한, '두 봉오리 사이가 정면이 되게 혈의 방향을 잡는다.' 는 것은 바로 양단을 잡아 중(中)을 쓰고 치우치지도 기울지도 않는 이치를 이르는 것입니다. '지극히 훌륭하고 지극히 아름답다.〔盡善盡美〕' 는 말은 고금 이래로 요순(堯舜)에게만 칭송된 것인데 앞사람이 이 산에 직접 이 네 글자를 써 평하였으니 그 지극히 감탄한 뜻을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다행스럽습니다."

하고, 관상감 제조 김종수는 아뢰기를, "대체와 형국이 평범한 눈으로 보기에도 유감이 없습니다. 이곳은 국(局)이 넓게 형성되었는데 주봉의 후뇌(後腦)부터 혈을 이룬 곳에 이르기까지 모두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청룡백호가 빙 둘러 에워싸고 있어 다정스러운 외부 지형은 단지 원근의 안산뿐만이 아닙니다. 주봉에서 보면 사방 봉오리의 수가 천여 개나 되지만 아름답고 깨끗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마치 이 대국을 위해 교묘하게 마련된 듯합니다. 이른바 800개의 나라가 주(周)나라에 조회하는 듯하다는 말은 참으로 잘 형용한 것입니다."

하고, 서유린은 아뢰기를, "지금 이 묏자리는 비단 여러 지사들이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비록 평범한 눈으로 봉심하더라도 매우 길한 대지(大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 참으로 천만다행입니다."

하고, 이재간은 아뢰기를, "지금 이 묏자리는 청룡의 형세는 구불구불 기복하는 것이 웅장하고 풍성하며 도국(圖局)은 사면이 조금의 틈도 없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구슬 같은 봉오리를 마주하고 두 산 사이를 정면으로 향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문서를 상고해 보면 부절을 맞춘 듯 딱 맞으니 참으로 우연이 아니어서 오늘을 기다린 듯합니다. 이는 실로 종묘사직의 무한한 다행입니다."

하고, 정민시는 아뢰기를, “성대한 산세가 굽이져 내려와 큰 들의 가운데에 서리어 특별히 형국을 이루었는데 뒷면은 웅장하고 앞면은 탁 트였습니다. 혈처는 분명하고 청룡백호는 중첩되어 있어 평범한 눈으로 보더라도 크게 길한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경사스럽고 기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지금 경들의 한결같은 말을 들으니 이제 내 마음에 거의 여한이 없다. 지금 완전히 정해졌으나 사체를 중시하는 방도로 볼 때 2, 3차 간심을 규례대로 해야 할 것이다. 길한 달이 다가와 공역(工役)이 한시가 급한 만큼 천원(遷園)하는 날짜의 택일을 16일에 하되 참여해야 할 여러 신하가 모여서 거행하라.”
하고, 이어 이르기를, “내가 수십 년 동안 정리(情理)를 지극히 하고 애써 왔던 것이 바로 이 일이다. 수원의 형국을 비록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밤낮으로 상상하면서 항상 마음속으로 헤아려 딴에는 완전하고도 완전한 곳이라 생각해 왔는데, 지금 경들의 말을 내가 생각했던 바와 비교해 보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이를 수 있다. 여러 경들이 어찌 혹 이 일에 조금이라도 과찬하려고 해서 그리 말한 것이겠는가.” 하니, 김익이 아뢰기를, “신들이 어눌하여 그곳의 크게 길하고 지극히 귀한 격을 상세히 아뢸 수 없는데 어찌 감히 과찬의 말을 했겠습니까.”
하고, 이성원이 아뢰기를, “묏자리를 살필 때에는 으레 형국을 그리기 때문에 신들이 떠나면서 화원(畵員)을 데리고 가서 형국을 그려내게 하였는데 묘사한 한 폭의 그림은 그저 겉모양만을 본뜬 것일 뿐이고 진짜 신령한 기운과 길한 격은 묘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형국을 그린 그림을 가져오긴 하였으나 상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하니, 이로 보아도 산지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채제공이 아뢰기를, “수원이 길지(吉地)라는 것은 이미 앞사람의 평이 있습니다.”
하고, 서유린과 이재간이 아뢰기를, “신들의 천견으로는 우리나라 안에서 이같이 길한 곳은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정민시가 아뢰기를, “신이 북백(北伯)의 소임을 맡았을 때에 정릉(定陵)과 화릉(和陵)을 봉심하고는 삼가 두 능침이 북도의 여덟 능 중에 최고라고 여겼었는데 이번 수원은 정릉, 화릉과 똑같으면서도 혹 더 나은 점이 있습니다.” 하고, 채제공이 아뢰기를, “중신의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신의 생각도 그러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지사 세 사람이 모두 와서 기다리는가?” 하니, 김익이 아뢰기를, “성몽룡과 이명구는 지금 이미 들어와 있고, 동부승지가 혈 자리로 잡을 곳을 다시 상량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늘 다시 살피고자 한다고 하기에 김양직은 우선 남겨 두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승지는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니, 서유린이 말하기를, “지금 수원에 남아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승지는 즉시 복명하고 김양직은 계속 남아 있다가 2차 간심과 3차 간심을 마치거든 올라오도록 하라고 기백(畿伯)은 나가서 역로(驛路)에 분부하라.”
하고, 영상에게 묻기를, “김양직의 의논은 어떠한가?” 하니, 김익이 아뢰기를,
“김양직이 말하기를, ‘우룡(右龍)이 동쪽으로 발을 뻗어 방향을 옮겨 수향(水鄕)으로 옮겨 들어갔다가 남쪽으로 수백 리를 치달았으니 이는 수기(水氣)가 왕성한 큰 줄기입니다. 치악산에 이르러 허물을 벗고 얼굴을 바꾸어 평지로 협곡을 건너 경태방(庚兌方)으로부터 빙빙 돌아 주봉이 돌출하였는데, 경태방에서 수룡(水龍)이 목욕한 것이니 주봉으로 돌출하기 전에 이미 생육의 뜻을 머금었습니다. 이 어찌 그저 상생(相生)의 아름다움뿐이겠습니까. 주봉에서 건방(乾方)으로 떨어져 나와 해방(亥方)으로 방향을 돌려 한 번 변해 계방(癸

方)이 되고 두 번 변해 축방(丑方)이 되고 세 번 변해 간방(艮方)이 되어 혈 뒤가 축간방(丑艮方)과 짝이 되었으니 단단하게 결속된 것이 이만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결(訣)에 이르기를, 「왕성한 수(水) 기운이 간방의 진토(眞土)를 만나 바야흐로 혈을 맺는다.」 하였으니, 이곳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간방 아래 정향(丁向)이 한편으로는 산과 못〔澤〕이 짝을 이룬 격이고 한편으로는 율려(律呂)가 생(生)하는 것이니 역시 이른바 제1격(第一格)이라 할 것입니다. 혈이 비록 와형(窩形)이나 오른쪽 혈훈(穴暈)은 기울고 쏠렸으며 왼쪽 혈훈은 반듯하고 두터우니, 구덩이의 중심을 왼쪽으로 옮기는 것이 곧 허실을 취사하는 묘술이자 혈 안의 수(水)를 없애는 규례입니다. 이미 앞사람의 정론이 있으니 구슬 같은 봉오리를 마주하고 두 산 사이가 정면이 되게 한다는 것을 증안(證案)으로 삼되 좌우의 방위를 잴 때 안산이 정면이 되지 않으면 왼쪽으로 옮긴 혈의 중심이 안과 밖에서 정면이 둘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금정(金井)을 놓을 때 혹 상하 좌우의 논의가 있더라도 다투는 바가 척촌(尺寸)에 불과할 것이니, 흙의 빛깔로 구별해야 할 듯합니다. 혈 가운데 앉아 뒤돌아보면 주성(主星)이 단정히 감방(坎方)에 서 있어 계방(癸方)의 녹존(祿存)이고 수(水)의 제왕(帝旺)이니 이 한 격(格)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만세의 무강한 아름다움을 점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주성이 금기(金氣)를 머금고 수맥을 뽑아내어 원만히 굽어 굽이쳐 아들과 어미가 상생하고 수백 리를 왼쪽으로 뻗어오다가 입수(入首)할 때에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좌선정국(左旋正局)을 이룬 것은 지극히 귀한 격이 아닌 것이 없으니, 만일 지리(地理)가 있다면 어찌 응험(應驗)이 없겠습니까. 청룡백호는 좌우의 음판(陰坂)이 균등하게 첩첩이 쌓여 서로 혈의 입구를 막아 유신(流神)이 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겠고, 사방의 산은 높지도 낮지도 않아 면면이 정이 있으며, 생방(生方)과 왕방(旺方)의 울창한 기운과 천을(天乙)과 태을(太乙)의 문명의 형상은 필설로 다 진술할 수 없습니다. 수세(水勢)는 이곳이 숨은 용의 형체이기 때문에 내명당(內明堂)의 득수(得水)는 작은 것을 꺼리지 않고, 크게 국세(局勢)를 형성하는 땅이기 때문에 외명당(外明堂)은 용을 따르는 대천(大川)이 모두 주봉의 뒤에 모입니다. 용이 물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물 자체가 용을 따르는 것이니 역량이 큼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저 국세는 매우 견고하고 긴밀하여 그것이 크다는 것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訣)에 이르기를, 「크게 국세를 형성하는 땅이 있으려면 먼저 그 밖으로 큰 평지를 연다.」고 하였는데, 지금 후평(後坪) 및 세람평(細藍坪)의 트인 들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동부승지가 혈 자리를 잡는 것을 다시 상량해야 한다고 논의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 김익이 아뢰기를, "방서(方書)에 '10년을 들여 혈 자리를 잡는다.〔十年裁穴〕' 고 하였으니 그 어려움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혈 자리를 잡는 논의는 이미 계좌(癸坐)로 정했으니 다시 논의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분금(分金)하는 법은 매우 미묘해서 술법(術法)이 얕은 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김양직이 이 법을 대략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동부승지가 다시 의논하고자 한 듯합니다."

하고, 정민시가 아뢰기를, "신이 쉽게 볼 수 있는 형국에 대해서도 무지몽매한데 더구나 막중한 곳의 혈을 정하는 일에 대해 어찌 함부로 망론을 펴겠습니까. 그러나 옛사람의 문헌을 찾아보고 여러 신하들이 눈으로 본 것을 참고해 보면 '서린 용이 구슬을 희롱한다.' 는 것은 체세(體勢)가 명확하고 앞에 있는 작은 언덕은 분명 구슬 모양이니 안목이 없는 자가 보더라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혈을 정하는 방법으로 말하면 오직 조금의 착오 없이 안산을 정면으로 향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혈을 정하는 어려움은 유혈(流穴) 등의 분명하지 않은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은 정혈(正穴)이니 다른 의견을 다시 용납하는 것

은 합당하지 않지만 승지의 말이 이와 같기에 신들이 지사를 불러 물으니, '이는 와혈(窩穴)입니다. 이미 구덩이의 형체라면 입을 오므린 구덩이는 선회하는 혈훈을 쓰고 입을 벌리는 구덩이는 혈훈이 지나간 땅을 써야 합니다. 예로부터 전해 오는 방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것에 불과하니 다시 상량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는데 김양직과 성몽룡도 모두 똑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천봉의 예는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리고 혈을 정하는 일은 더더욱 살피고 신중해야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한결같이 옛사람의 말을 따르고 술사의 재론(再論)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채제공이 아뢰기를, "묏자리를 지사의 말에 따라 결정하는 것은 의심스럽고 분명하지 않은 곳일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형국이 편안하게 맺어져서 그다지 웅장하지 않고 안산과 조산이 합당해서 지극히 명려하며 곁으로 뻗은 줄기가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흠 없이 득수(得水)하여 사랑스럽고 정이 넘칩니다. 이 모두 평범한 눈으로 본 것이니 굳이 풍수가에게 다시 물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옛사람도 800명의 제후가 주나라를 조회하는 형상이라고 말했다." 하니, 이성원이 아뢰기를, "우상의 동성(同姓)으로 진사인 자가 평소 지술(地術)을 공부했는데 그날 마침 와서 보았으니 분명 주고받은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여,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물었다. 채제공이 아뢰기를, "그가 어찌 다른 의견이 있겠습니까. 단지 극구 찬미했을 뿐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계좌를 써야 한다는 말은 기해년(1659, 현종 즉위년) 영릉(寧陵)의 대장(大葬)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는 윤선도(尹善道)의 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윤강(尹絳)과 유계(兪棨)도 모두 계좌로 정했었다. 이번에 혈을 정하는 것도 다들 일치하여 이견이 없었으니 이는 참으로 하늘의 도우심이고 하늘의 뜻이다. 어찌 나의 성의가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겠는가. 국릉(國陵)으로 봉표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닌데 광릉(光陵) 국내(局內)의 달마동(達摩洞), 용인읍(龍仁邑), 문의읍(文義邑), 장단(長湍)의 백학산(白鶴山) 아래, 강릉(康陵)과 태릉(泰陵)의 국내, 헌릉(獻陵) 국내의 이수동(梨樹洞) 등 여러 곳은 칭찬과 비난이 반반이다. 그런데 수원은 지금에 이르러 묏자리로 택하였으니 하늘이 기다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늘이 낸 것이라는 경들의 말이 옳다. 도감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한시가 급하고 택일 또한 길일을 써야 하니 택일관(擇日官)을 불러 물어보도록 하라." 하였다.
김종수 등이 일관(日官) 지경철(池敬喆) 등을 불러 물으니 대답하기를, "택일하는 회의는 16일이 길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내외 도감의 공역 중 시급히 품정(稟定)할 것은 당상들이 나와 아뢰라." 하니, 김익이 아뢰기를, "원소(園所)를 이제 수원으로 완전히 결정하였으니 읍치(邑治)를 옮기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 읍을 옮기고 백성을 옮기는 일을 매번 어렵게 여기고 신중히 생각하신다는 것을 신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나 신명이 묵묵히 돕고 풍수도 부합하니 이는 참으로 국가의 더없이 큰 다행입니다. 그러니 민읍을 철거하여 옮기는 일은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더구나 읍을 옮기는 일을 위해 재력을 획급(劃給)하였고 이주시킬 민호(民戶)는 가격을 높이 쳐주었으니 지금에 이르러 옮겨 설치함에 미루고 어렵게 여길 것이 더욱 없습니다. 본도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게 하고 본읍을 옮겨 설치한 후에는 향교도 일체 옮겨 세워야 합니다. 이러한 뜻을 아울러 즉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김익이 아뢰기를, "지금 본읍을 옮겨 설치하려는데 **후평교(後坪橋)** 앞길은 순심(巡審)하는

대로로서 후맥(後脉) 아래 가까운 곳에서 나왔고 읍치의 동관로(東官路)도 외백호(外白虎)가 지척에서 굽어보는 곳에 있으니 이 두 길은 즉시 가로막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지방관으로 하여금 백성이 원하는 대로 다른 곳으로 옮겨 내보내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정민시가 아뢰기를, "전 계사(計士) 최효민(崔孝閔)이 본 도감에 옮겨 차임되었는데 지금 실직(實職)을 맡고 있으니 본사(本司)에 사진(仕進)하는 것을 면제해 주어 도감의 일에 전념하게 하고, 맡고 있는 내섬시 주부(內贍寺主簿)는 바로 공상(供上)을 맡아보는 아문(衙門)으로 오래 비워 두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니 해조로 하여금 한가한 관사의 관원으로 서로 자리를 바꾸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그대로 따랐다.

내가 이르기를, "읍을 옮기고 백성을 옮기는 일은 참으로 하는 수 없이 하는 일이다. 수원이 비록 기내(畿內)의 초실읍(稍實邑)이라고는 하나 국역(國役)을 맡았는데 다시 무슨 힘이 있어 읍을 옮길 수 있겠는가. 옮겨야 할 민가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김익이 아뢰기를, "300여 호(戶)일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렇게 많은가. 내가 듣기로는 200여 호에 불과한 듯하였다."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지금 당장 옮겨야 할 것이 200여 호이고, 차차 옮겨야 할 것이 참으로 3, 4백 호가 될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읍을 옮기거나 백성을 옮기는 것을 막론하고 본래 나라에서 도와주려는 뜻이 있었으니 들어가는 물력(物力)을 빨리 구획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번 대사에 경상비용을 쓰지 않으려고 이미 평소에 마음을 먹고 있었다. 이 밖에 무슨 조처할 것이 있는가?"

하니, 김익이 아뢰기를, "신이 외람되이 이 직책을 새로 맡아 아직 요량이 없으니 감히 대번에 대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성원이 아뢰기를, "지금 당장 경아문(京衙門)에는 진실로 손댈 만한 곳이 없습니다. 관서 별향고(別餉庫)의 전재(錢財)를 잘 헤아려 가져다 써야 할 형편입니다." 하고, 채제공이 아뢰기를, "별향고의 유고(留庫)가 충실한지의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곳에 쓸 것인데 어찌 경외(京外)의 어떤 아문이냐에 구애되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나라에 재물을 쓸 곳이 있으면 매번 관서(關西)에 요구하니 이 역시 구차하지 않은가. 내 생각으로는 균역 사목(均役事目)은 본래 엄중한 것으로 선조(先朝)의 성덕(聖德)은 오로지 백성을 역(役)에 동원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경상비용을 쓰지 않으려고 마음을 정한 것 역시 백성을 위하는 뜻인 만큼 이번은 균역청의 돈 10만 냥을 수원에 획급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더구나 산릉(山陵)에 동원되는 역은 으레 백성에게서 거두었는데 지금 특별히 그것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니 균역청의 돈을 가져다 쓰는 것도 어찌 당연하지 않겠는가. 모든 민역의 급대(給代)를 모두 균역청에서 취하려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김익이 아뢰기를, "당초에 사목(事目)은 혹 명목 없이 사용하거나 절약하지 않고 낭비하는 것을 염려한 것인데 지금 쓸 곳은 막중하고 막대하니 이것을 그 비용에 충당하는 것이 어찌 불가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몇 만 냥을 주어야 하는가?" 하니, 서명선 등이 아뢰기를, "읍의 거주지를 옮겨 정하고 새로 공해(公廨)를 짓는 것이 사소한 일이 아닌 데다가 민호에 치를 값도 당연히 많이 들어갈 것이니 수만 냥이라고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10만 냥이면 부족할 염려가 없겠는가? 혹 남는다면 본읍의 환자(還子)와 군향(軍餉)에 보충하더라도 무슨 문제될 것이 있겠는가." 하니, 채제공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도 10만 냥에 가까울 것으로 요량하는데 필경 이보다는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수원은 우선 10만 냥을 획급하는 것이 좋겠다. 경도감(京都監)과 외도감(外都監)의 모든 일에 또 수만 냥이 들어갈 터인데 이것은 10만 냥을 금위영과 어영청 두 군영에서 가져다 쓰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하니, 김익이 아뢰기를, "부고(府庫)의 재물이 임금의 재물이 아닌 것이 없는데 이런 큰일을 당하여 어찌 영문(營門)의 유고(留庫)에 구애되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영문의 재물이 비록 군수(軍需)라고는 하나 어찌 한결같이 묶어 둘 수 있겠는가. 이는 재화는 물 흐르듯 유통되어야 한다는 뜻에 어긋난다. 일찍이 이를 안타깝게 여겼었는데 이번 사체(事體)는 더욱 각별하고 겸하여 이 일로 인해 혹 돌아가는 혜택이 많게 하고자 하니 진실로 무방하다. 출납할 때 축나는 전(錢)에 대해서는 규례 이상으로 특별히 더 줄여 주도록 하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본원에 관계된 일인데 무슨 일인들 아깝겠으며, 또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경외에 폐를 끼칠 수 있겠는가. 일전의 연석(筵席)에서 '천하를 위하여 자기 어버이에게 박하게 하지 않는다.' 는 말을 하였는데, 대개 정성을 다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으니, 백성을 수고로이 동원하거나 경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힘껏 그 아름다움을 지극히 하여 장례를 치르는 일에 조금이나마 정성을 펴고자 한다. 그러므로 사대석(莎臺石)과 병풍석(屛風石)을 모두 만들고자 한다. 병신년(1776, 정조 즉위년)에 원(園)으로 봉할 때는 영릉(永陵)도 옛것을 그대로 사용하여 선왕의 고사(故事)를 따랐을 뿐만이 아니어서 옛 능에 석물(石物)을 새로 세우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없었지만, 지금은 기왕 천봉하는 것이니 규례대로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 연석의 하교를 도감이 알게 하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께서 지극한 효성을 이런 부분에 펴고자 하시니 신들이 감히 만분의 일이라도 뜻을 받들어 행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서유린이 아뢰기를, "감조관(監造官)을 차출(差出)한 뒤라야 재목과 와석(瓦石)을 취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서(海西)의 박석(礴石)은 규례대로 배로 운반하고 관동의 재목도 강물에 띄워 보내도록 하고 기와를 굽는 것은 본주(本州)에서 경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돌을 운반하고 목재를 운반하는 것이 혹 민읍에 폐를 끼치지는 않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설령 사소한 폐단이 있더라도 참으로 돌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목재와 돌을 운반하는 이 일은 해도(該道)에서 당연히 행해야 할 규례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석물(石物)을 설치하는 일은 이미 정우태(丁遇泰)에게 분부하였는데, 듣자니 석재(石材)는 본주의 앵봉(鶯峯) 및 산성 밖에 떠내기에 적당한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석재의 품질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남양(南陽)**, 강화(江華) 등지의 석재라야 난간석(欄杆石)과 병풍석(屛風石)으로 쓰기에 합당하니 떠내어 운반해 오는 노력은 따질 겨를이 없다."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석재가 쓰이는 곳이 얼마나 중대한데 어찌 사소하게 폐를 끼치는 것을 돌아보겠습니까." 하여, 내가 이르기를, "석역(石役)의 별간역(別看役)은 정우태면 충분하다. 그러나 경도감에 별간역이 없어서는 안 되니 경들은 추천할 만한 자가 있는가?"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정도홍(鄭道弘)이라는 자가 별간역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정도홍은 단지 간역패장(看役牌將)에 합당하고 별간역의 임무는 최천약(崔天若)과 같이 손재주가 있는 사람 아니면 그중에 지처(地處)와 이력(履歷)이 있는 자를 취해야 할 것이니 경들은 모쪼록 널리 합당한 사람을 구하라. 그리고 외도감의 별간역은 본읍(本邑) 사람을 쓰고자 한다."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산역(山役)은 더욱 적임자에게 맡겨야 하는데 향군문(鄕軍門)의 장교 중에 마땅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지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도청(都廳) 심진현(沈晉賢)을 지방에 있다는 이유로 감하(減下)한 것은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시급하여 그가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후임을 차출하라. 원소의 감조관은 본주의 사인(士人)으로 부직(付職)하여 차하(差下)하고자 해서 본부에 탐문했었다. 지금 5인을 기록하여 왔으니 경들은 나가 상세히 따져 그중 3인을 취해 계하(啓下)하고, 감조관 1인은 경도감의 감조관과 서로 자리를 바꾸게 하라. 군교(軍校)를 별간역에 차하(差下)하고 사인을 초사(初仕)에 붙이는 것은 모두 그곳의 민정을 위무하고자 하는 뜻이다. 윤선도가 총호사(摠護使)에게 준 편지 중에 ‘지리의 길함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인심을 얻어야 한다.’ 고 한 말은 좋은 말이다. 정자각(丁字閣)를 세워야 할 곳과 원소를 모실 곳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아직 기초를 정하지 않았으나 정자각이 원소와 가까우면 구슬을 마주하는 듯한 내안산(內案山)의 진면목을 드러내지 못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조금 낮고 조금 먼 곳에 정자각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혈성이 낮고 평평한데 정자각이 가운데에 있으면 안산을 마주하는 시야가 비록 가로막히지 않더라도 명당의 기운이 통창함이 부족할 듯하니 형세상 좌우로 이동해야 한다. 오른편은 건천(乾泉)의 길수(吉水)와 신방(申方)의 생기가 발원하여 명당에 모이는 곳이니 넓게 트여야지 가로막혀서는 안 되고, 왼편은 지축방(地軸方)이 되니 지형을 인하여 건축하되 오방(午方)으로 파(破)하는 물길을 가로막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다. 재실은 어목헌(禦牧軒)을 써야 하는가? 정자각과의 거리가 얼마쯤 되는가?”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어목헌이 재실이 되는 것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더욱 기이합니다. 서로의 거리는 300보쯤 될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너무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니, 서유린이 아뢰기를, “정자각과 300보가 되고 원상(園上)과도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정방(丁方)의 안사(案砂)는 구슬로 격을 이루는데 구슬이라는 물건은 둥글고 깨끗하며 밝고 맑은 것을 귀하게 여긴다. 만약 나무를 심어 숲을 이루면 쉽게 음침하게 된다. 사초만 입혀 항상 밝게 드러나 쉽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경들은 미리 잘 알고 있다가 나중에 원관(園官)에게 분부하라.”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수원 관아의 내아(內衙)는 본래 정치(精緻)하지 않지만 그 밖의 공해는 향대청(香大廳)이나 전사청(典祀廳)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나의 정리(情理)는 오직 자주 전배(展拜)하여 정성을 펴는 데 있을 뿐이니, 여염집들을 다 옮긴 뒤에는 어가(御駕)를 수행하는 백관들이 한데서 거처하게 될 것을 염려해야 한다. 남겨 둘 만한 공해는 철거할 필요가 없으니 여러 신하들이 머물 곳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니, 정민시가 아뢰기를, “원소 봉안을 완료한 뒤에는 **독성산성(禿城山城)**을 그대로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여, 내가 묻기를, “대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김익은 아뢰기를, “신의 생각으로는 산성과 조금 머니 그럴 필요가 없을 듯합니다.” 하고, 정민시는 아뢰기를, “본산(本山)의 형국은 목국(木局)인데 산성에 군기(軍器)를 쌓아 두었고 게다가 읍을 산성 아래로 옮기게 될 것이니 따로 산성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 일은 한번 직접 살펴본 후에 결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산성의 꼭대기는 혈 위에서 바라보면 매우 가까운 것 같지만 서로의 거리가 10리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 밥 짓는 연기나

가축들의 소리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병기(兵器)가 보관되어 있는 것도 이해를 논할 것이 없을 것 같다. 묏자리를 잡는 방법은 그 형세를 그대로 따를 뿐이니, 보토(補土)를 반드시 높고 크게 쌓도록 힘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 산지(山地)의 혈체(穴體)가 유방 아래로 웅덩이가 파여 있는 꼴로 음양이 서로 통하는 데 그 신묘함이 있으니 흙을 파낼 때 유두를 뚫지 말라. 혈순(穴脣)의 여기(餘氣)가 생동해 흐르고 있는데 만약 지나치게 보토하면 천연적으로 이루어진 정교함을 잃기 쉬우니 원형 그대로 사초를 입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천봉할 때 경유할 길을 경들이 이미 요량하였을 텐데 나루를 건너는 것은 어느 곳이 나은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서빙고(西氷庫)에서 강을 건너 과천으로 길을 잡음이 편할 듯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이 의견이 참으로 좋으나 내가 할 말이 있다. 방금 실록을 조사해 보니 장릉(章陵)을 천봉할 때 잡은 경로는 그때 성내(城內)를 경유했었다. 이번에도 이 전례를 따르는 것이 마땅하겠으나 비단 영구(靈柩)가 조상들을 뵙는 절차가 중대할 뿐 아니라 더구나 천봉할 때 자궁(慈宮)의 망극하신 심정이 다시 어떠하겠는가. 천봉할 때에 몸소 가서 보시겠다고 매번 하교하시기에 내가 마음을 너그러이 먹고 슬픔을 억제하시도록 한창 청하고 있는 참인데 만약 상여(喪輿)의 행렬이 성내를 지나는 것을 보시게 된다면 장차 무슨 말로 마음을 위로해 드릴 수 있겠는가."
하니, 서명선 등이 내가 목이 메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아뢰기를, "그렇다면 성 밖으로 길을 잡는 것으로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성 밖으로 돌아서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내 생각으로는 광나루를 거쳐 가는 것이 편할 듯하다." 하니, 경기 감사 서유방이 아뢰기를, "원소에서 광나루까지가 1주정(晝停)입니다. 나루를 건넌 뒤 1참(站)을 지나면 과천읍에 도착하는데 그 사이 도로가 그리 험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성원이 아뢰기를,
"학여울은 천봉 행차에는 험한 곳인 듯합니다."
하고, 서유방이 아뢰기를, "깎아서 평평하게 하면 무난할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도감 당상은 이후로 왕래할 때에 한번 자세히 이 길을 살피고 돌아와 아뢰도록 하라." 하니, 서유방이 아뢰기를, "신이 감영에 비치되어 있는 읍지(邑誌)를 조사해 보니 여주(驪州)로 천봉한 후에 이천참(利川站)에 행궁을 설치하였습니다. 이번에 천봉하는 도로는 과천참(果川站)에서 수원에 이르기까지 두 참을 거치는데 그 사이에 **미륵당참(彌勒堂站)**이 있습니다. 천봉할 때와 차후 동가(動駕)할 때에 혹은 숙소가 되고 혹은 주정소(晝停所)가 되니 백관과 군병이 한데 머물러야 하는 문제는 잠시 제쳐 두더라도 사체를 헤아려 볼 때 이천(利川)에 행궁을 설치한 전례를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삼가 듣기로 이천 행궁은 숙묘조(肅廟朝)의 수교(受敎)로 인하여 크고 작은 사행이 들어와 머무는 것을 모두 허용하고 있으니 선왕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미륵당참에 원우(院宇) 하나를 설치하여 이번에 봉안하는 영악(靈幄)이 만일 주정하고 지나간다면 후일에 어가가 머물기에 편리할 것이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광주 부윤을 입시하게 하였으니 하문하게 될 것인데 대신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김익 등이 아뢰기를, "일거에 두 가지가 편리하니 그만둘 수 없는 일입니다. 지방관에게 분부하여 속히 거행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들의 말이 참으로 옳다. 그리고 들으니 광주에 사는 백성 중에 이 참(站) 근처에 살고 있는 자들은 산성과의 거리가 100여 리나 떨어져 있어 환곡 운영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니 원우를 설치한 뒤에 창고를 하나 별도로 세우고 창고 주변의 민호에게 연한을 정하거

나 아니면 영구히 역(役)을 면제해 준다면 수개월 안에 모집해 들어오는 자가 매우 많을 것이다. 더러 성의 군량을 성 밖의 창고로 옮기는 것을 곤란하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 성의 군량 외에 어찌 각 아문에 환곡으로 운용할 수 있는 곡물이 없겠는가."
하니, 김종수가 아뢰기를, "신이 바로 이 참 근처에 살고 있으므로 민정이 그와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성의 군량은 사체가 중하여 감히 갑자기 의논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소중한 바와 관계된 일인 만큼 어찌 망설이겠습니까."
하고, 서유방이 아뢰기를, "칙수곡(勅需穀)과 삼아문(三衙門)의 곡식은 본래 여유가 있으니 비록 성의 군량이 아니더라도 조치할 수 있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광주 부윤도 소견을 아뢰라." 하니, 이향원(李享元)이 아뢰기를, "신이 좀 전에 도백의 말을 들었는데 원우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편합니다. 사체가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본래부터 민정이 모두 창고를 설치하기를 원해 왔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기백은 다시 조처할 계책을 아뢰도록 하라." 하니, 서유방이 아뢰기를, "원우와 창고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목재와 기와는 광주 부윤이 담당하게 하고 재력은 연석에서 물러난 후에 상의하여 결정해서 품정(稟定)하겠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원우를 설치하는 일은 이천의 전례대로 하라고 분부하라." 하고, 이어 내일 2차 간심과 모레 3차 간심을 하러 나가는 대신과 예조 당상, 관상감 제조는 하직 인사를 하지 말고 나가라고 명하였다.
○ 원소도감(園所都監)이 원소경도감(園所京都監)을 이조에 배설(排設)하겠다고 아뢰었다.
○ 천원도감(遷園都監)이 본 도감을 형조, 공조, 사역원 세 곳에 배설하겠다고 아뢰었다.
강 召見看山大臣及來待大臣閣臣都監堂上吏兵判 判尹 廣尹于誠正閣 判府事 徐命善 李福源 領敦寧 洪樂性 領議政 金熤 判府事 李在協 左議政 李性源 右議政 **蔡濟恭** 原任直提學 徐有防 原任直閣 徐鼎修 鄭東浚 直閣 李晩秀 待敎金祖淳兵曹判書 具允鈺 吏曹判書 金鍾秀都監堂上 李在簡 鄭民始 鄭昌順 漢城判尹 金文淳 廣州府尹 李享元

목 判府事 徐命善等曰老炎如此易妨節宣且臣等仰覩天顔憂慊玉音哽咽誠不勝悶慮之至方今吉地已卜聖孝將伸伏望以此十分寬抑焉予曰才見看山大臣狀啓予心一愴一幸當此大事豈不欲務主寬抑而從前結轖之懷不覺隨處輒發矣命善曰奉審諸大臣姑未及入來而伏覩俄下傳敎且聞先到地師之言吉兆允叶輿議攸同下情欣幸何可勝達領敦寧 洪樂性曰看審之行蓋爲重事體之意而諸見無一參差尤可幸矣判府事 李福源曰臣等未隨看審諸臣之後下懷缺然而耳聞無異於目見矣判府事 李在協曰三地師所論如出一口實爲奇幸矣予曰以予否德有何誠意得此吉地實賴神佑看審狀啓猶不如面談諸大臣之入來方臨軒而企之矣仍命判尹 金文淳進前予曰臨御以後無一惠澤之及民況於關係本園事不欲勞民此意卿等亦必知之輿士軍雖係坊民應行之役而今番則欲爲雇用軍丁凡係民役一幷除減卿爲頓遞使之任當體予意擧行矣命善曰遷奉大事何暇顧他而況係坊民應行之役乎福源曰聖念雖軫於恤民而王朝事體不宜苟簡況此大事尤何可給雇價用軍乎命善曰用民之後若有別般賞格則可也而雇軍之敎誠過矣福源曰今番輿士之役雖無賞格民必樂赴況此莫重之事爲念民弊雇軍以用則豈不有損於國體乎予曰卿言儘是大經大法予非不知此而不欲勞民旣有本意且所謂坊軍冗榳反不如雇用之精實此卽丙午已驗之事也今若於雇軍中擇其有根着能力役之人則何遽不若坊民之盡調乎但於抄出之法須有界限此則在判尹擧行之善否卿其惕念也昔年謄錄輿士軍用二運云今則自此距彼先定幾里幾運然後軍丁之當入幾名可以知之卿須出去詳錄近年已例明間登對可也文淳曰一運所入幾名外雜色軍莎土軍腰彩輿軍亦當在抄出中矣予曰然矣文淳曰莎草則當用慕華館 莎草矣予曰唯仍命看山大臣以下入侍領議政 金熤 左議政 李性源 右議政 **蔡濟恭**都監堂上徐有隣 李在簡 鄭民始進伏地師 成夢龍 李命求隨入予曰卿等狀啓雖已詳覽所見果何如熤曰臣等到本府轉詣置標處上自主峯下審穴處而先坐上穴稍高處環覽局勢與龍虎則局勢非不平正龍虎非不拱抱而平正之中不無闊大之意拱抱之中

差欠緊束之勢眼界亦似稠鬧及其下坐於所謂坦處則局勢蘊藉龍虎緊密又有穴左右蟬翼分開之形眼界十分從容望中小墩與穴處直相對待此地素稱盤龍之形而此墩爲盤龍之弄珠以臣凡眼亦似的確之論至於對案則兩峯雙立若使向峯作案則似不得盡攬兩峯之勢就兩峯之間空處作向則兩峯之氣合作一案自古所謂對珠向空之說似以此意坐癸向丁三地師之言已皆歸一似無移易之道矣此誠宗國無疆之計而占得此無上吉地不勝慶幸性源曰臣本茫昧於堪輿末由形容其萬一而以凡眼論則局面宏闊穴處平正龍虎襯切拱抱自穴處距主峯似爲數百步逶迤屈曲不知其峻而躋攀之後始覺其高前後大坪四面拱帶皆豁然不見諸地師之言以爲龍節凡九轉乾亥之下卽入單癸單丑單艮云故臣令地師泛鐵指示則方位皆分明大體尊重隆厚有儀可象圖不能盡言不能宣一言以蔽之曰天作高山以待今日雖深於術數者決不敢指的點出讚歎其一二處矣對珠亦爲看審則不高不低自作一阜於平野正中於主峯對案之間此其大略而實不勝萬萬慶幸矣**濟恭**曰臣於堪輿素所昧昧某山某水某格某法臣不敢指議而隨兩大臣後自主峯周覽體勢下來穴處之際有起有伏移步屢換已覺其注脈之奇異而乳頭既盡坦處在下故坐而詳察則青龍如着肩胛緊緊襯抱而有三峯列在青龍之右其出如髻白虎行行拱抱而勢不高峻其外諸山宛宛補缺嫩若百朵芙蓉所稱堆顆前在數百步許而自坦處視之宛是懷中之物不覺叫奇案對鋪立如屏而當中兩峯最爲研妙古人所云向空正謂執端用中不偏不倚之理夫盡善盡美古今以來惟堯舜見稱而前人於此山直用此四字其極意欽歎概可想矣不勝忭幸觀象監提調 金鍾秀曰大體形局以凡眼見之亦無餘憾此是大局自主峯後腦至落穴處皆分明端的龍虎環拱有情之外不但遠近案對而已從主峯見之四面峯巒千百其數而無不明媚淨肅有若爲此局巧設所謂如八百國之朝周者眞善形容矣有隣曰今此山地非但諸地師之贊揚雖以凡眼奉審亦知其爲極吉大地不勝萬幸矣在簡曰今此山地龍勢則屈曲起伏雄偉豐厚圖局則四面回抱無一虧隙至於對珠向空考諸文書如合符節誠不偶然若有待於今日此實宗社無疆之幸也民始曰山勢磅礴蜿蜒而來盤紆大野之中特作形局後障雄偉前面開朗穴處分明龍虎重疊雖以凡眼見之可知其爲大吉之地不勝慶幸矣予曰今聞卿等之言一辭同然自此予心庶無憾恨今則已完定而以重事體之道再次三次看審當如例爲之吉朔在近工役一時爲急遷園日子擇吉以十六日爲之應參諸臣來會擧行仍曰予之數十年至情苦心惟此一事而**水原**形局雖未目覩夙宵想像常有心上商量自以爲十全百全萬全之地矣今以卿等之言北諸所料可謂有增無損諸卿豈或於此事容有一毫溢美而然乎熜曰臣等言辭拙訥未能詳陳其大吉極貴之格豈敢爲溢美之辭乎性源曰看山時例有圖形故臣等之行率去畵員使之圖出形局則一幅摸畵只是依樣眞箇靈淑之氣吉祥之格捽難摸出故圖形雖爲持來而不足仰塵睿覽此可見山地之萬萬純吉矣**濟恭**曰**水原**吉地已有前人之評矣有隣 在簡曰臣等淺見東國之內更未見如此吉地矣民始曰臣待罪北伯時奉審定和陵竊以爲兩陵寢爲北道八陵之最今審**水原**一如定和陵而或有較勝處矣**濟恭**曰重臣之言果是臣意亦然矣予曰地師三人皆來待乎熜曰成夢龍 李命求今已入來而同副承旨以爲裁穴處合有更商今日欲爲更審故金養直姑爲留置矣予曰承旨不爲入來耶有隣曰方留**水原**矣予曰承旨卽爲復命金養直仍留以待再看山三看山後上來事畿伯出去分付驛路問于領相曰金養直之論何如熜曰金養直以爲右龍發足于東轉入水鄉南馳數百里則此是旺水大幹也到峙嶽山脫殼幻面平地渡峽庚兌盤旋突起主峯庚兌旣是水龍沐浴則其在主峯之前已含孕育之意奚特相生之美哉自主峯乾落轉亥一變爲癸再變爲丑三變爲艮穴後丑艮之配緊速無比而且訣云旺水遇艮眞土方能結穴非此之謂歟艮下丁向一爲山澤之配一爲律呂之生亦所謂第一格也穴雖窩體而右暈傾瀉左暈端厚窩中挨左卽取捨虛實之妙穴中消水之例也卽有前人定論則當以對珠向空作爲證案而泛鐵左右案輒不正惟當中挨左處下失內外二向安金之際雖或有上下左右之論而所爭不過尺寸此則似當以土色辨之矣坐穴中回顧則門星端拱在坎卽癸之祿存水之帝旺只此一格已足以占萬世無疆之休況此主星含得金氣抽出水脈宛轉曲動子母相生累百里右旋翻身於入首之際以作左旋正局者無非極貴之格苟有地理豈無其應乎龍虎則左右陰坂均均疊疊交銷穴口不見流神之去四方之山不高不低面面有情至於生旺方蔥鬱之氣天太乙文明之象非筆舌所可盡述水勢則此是隱龍之體故內

堂得水不嫌其小而惟其大結之地故外堂則隨龍大川都會于主峯之後非龍隨水水自隨龍力量之大於此可見大抵局勢至固至密不見其爲大而訣云將有大結之地則先開大明堂於其外今此後坪及細藍坪之開野可謂證左矣予曰同副所論裁穴更商云者果何意耶熞曰方書云十年裁穴蓋言其難也今此裁穴之論已以癸坐爲定則無容更議而分金之法至徵至妙有非淺術之所可知金養直則似能粗鮮此法故同副似欲更議矣民始曰臣於易見之形局尙且茫昧況於莫重處裁穴何敢妄論而求之古人文跡參以諸臣目見則盤龍弄珠體勢明的當前小阜明是珠形雖使無眼者當之可以摸索若其裁穴之法惟當合是案對無一差錯而已且裁穴之難卽指流穴等未分明之地也今此正穴似不當更容別見而承旨之言如此故臣等招問地師曰此是窩穴云旣云窩體則合口之窩當用廻旋之暈開口之窩當取暈過之地古方之說不過如斯而已不必更有云云則金養直 成夢龍亦皆同然一辭矣遷奉之禮何莫非重大之事而至於裁穴尤宜審愼臣意則一從古人之著設無容術士之更談宜矣**濟恭**曰山地之取決於地士之說者卽指疑晦未的處而此則形局穩結而不甚雄特案朝停當而極爲明麗枝脚軟媚而無欠得水留戀而有情此皆凡眼所見何必更問堪輿之家乎予曰古人亦言八百諸侯朝周之形矣性源曰右相之同姓爲進士者素業地術而伊日適會來見必有酬酢矣予問其言何如**濟恭**曰渠豈有他見乎只是極口讚美而已予曰當用癸坐之說肇自己亥寧陵大葬時而此非但尹善道之言其時尹絳 兪棨亦皆以癸坐爲定今番裁穴亦皆沕然無異此實天佑也天意也豈由予誠意能有格感而然也國陵封標處非止一二光陵內達摩洞 龍仁邑 文義邑 長湍白鶴山下康泰陵內獻陵梨樹洞諸處毁譽相半而**水原**則到今卜吉豈非天心之有待乎卿等所言天作之說然矣都監始役一時爲急而擇日亦當用吉日擇日官招入問之鍾秀等招入日官 池敬喆等問之對曰擇日會議十六日爲吉矣予曰內外都監工役中時急稟定者諸堂進奏熞曰園所今已完定於**水原**則邑治移設不可少緩臣等非不知聖念以移邑移民每加難愼而神明默佑風水允叶此實國家莫大之幸至於民邑撤移之擧有不暇顧況今邑役則劃給財力民戶則優償其價則今移設尤無所留難者令本道劃卽擧行本邑旣爲移設則鄕校亦當一體移建請以此意幷卽分付從之熞曰本邑今將移設而後坪橋前路卽是巡審大路而旣出於後脈下至近之地邑治東官路又在於外靑龍咫尺俯瞰之處此二路不可不卽爲防塞使地方官從民願移出他處之意請分付從之民始曰前計士 崔孝閔移差本都監而方帶實職使之除本司專意都監之役所帶內贍主簿乃是供上衙門勢難久曠云請令該曹閑司相換從之予曰移邑遷民萬不獲已之事而**水原**雖曰畿內稍實之邑旣當國役更有何力可以遷邑乎民家之當遷當爲幾何熞曰似爲三百餘戶矣予曰若是其多乎以予所聞似不過二百餘戶矣民始曰卽今當移者爲二百餘戶而次次應移者果可爲三四百戶矣予曰無論移邑移民旣有自公家助給之意則所入物力不可不汲汲區劃而今番大事不煩經費已有素定外此有何措辦乎熞曰臣新叨是職未有料量不敢遽對矣性源曰目今京衙門實無着手處關西別餉庫錢財勢將量宜取用矣**濟恭**曰別餉庫留庫未知實否而所重處所用何拘於京外某衙門乎予曰朝家有用財處則每索關西亦豈非苟簡乎予意則均役事目本自嚴重先朝聖德專出防民役之意而今旣以不煩經費爲定則此亦爲民之意也今若以均廳錢十萬兩劃給**水原**使之經紀凡事則爲好況山陵之役例收於民今旣特令除之則均廳錢之取用亦豈不當然乎凡民役給代皆取於均廳卿等之意何如熞曰當初事目或慮用之無名費之不節而今此所用莫重莫大以此充彼何不可之有哉予曰然則當給幾萬兩乎命善等曰移定邑居新造公廨固已不些而民戶給價又當多入似當以累萬計矣予曰十萬兩無不足之患乎如或有裕則添補本邑還餉亦何妨也**濟恭**曰臣意亦以近十萬兩料量而畢竟似過此數矣予曰**水原**則先以十萬劃給爲好京外都監凡事又當以累萬兩此則以十萬假令取用於禁御兩營似好矣熞曰未有府庫財非其財則當此大事何拘於營門留庫乎予曰營貨雖曰軍需豈可一向藏銷此非泉貨流行之義當以爲悶而今番事體尤有自別兼欲因此而或多沾丐固自不妨出入時縮錢拔例特爲減給矣僉曰聖敎之下不勝感歎矣予曰事關本園何事可惜亦豈可一毫貽弊於京外乎日昨筵中已有不以天下儉其親之說蓋以固所自盡之心推以靡不用極之道苟非勞民力煩經費者外則務欲極盡其美少伸終事之誠故莎臺石及屛風石皆欲爲之矣丙申封園時不但永陵仍舊制卽仰遵故事大抵舊陵石物之新設雖不敢擬議今則卽

遷奉當盡誠如例爲之此筵敎使都監知之僉曰聖人達孝欲伸於此等處臣等敢不對揚萬一乎有隣曰監造官差出後可以鳩合材本瓦石而海西礪石則如例船運關東材木亦令流下磩瓦則自本州經紀似好矣予曰運石運木無或貽弊民邑否僉曰設有些少弊端固不可恤況此木石輸納之擧便是該道應行之例矣予曰象設之役已有分付於丁遇泰處石材則本州罵峯及山城外聞有可合浮出者云而石品若不合則南陽 江華等處石材方合於欄杆石屛風石之用至於浮出運來之勞有不暇計矣僉曰石材所用何等重大則些少貽弊何可顧乎予曰石役別看役則丁遇泰足矣而京都監不可無別看役卿等有可薦者乎民始曰似聞鄭道弘爲名人可合於別看役矣予曰鄭道弘只合於看役牌將而別看役之任若非有手才如崔天約之類則當取自中之地處履歷卿等須廣求可合之人而外都監別看役則欲用本邑人矣民始曰山役尤宜得人鄕軍門將校未必有可合者是可悶矣予曰都廳沈晉賢以在外減下蓋以始役時急有難等待其上來故也其代擇差可也園所監造官則欲以本州士人付職差下故有所探問於本府矣今以五人錄來卿等出去商確取其中三人啓下而監造官一人以京都監監造官相換可也軍校之別看役士人之初入仕皆欲慰副本土民情之意也尹善道與總護使書中欲得地理之吉則先得人心云者其言好矣丁字閣當建處距園所當奉處相去爲幾何民始曰姑未定基而丁閣若近於園所則內案對珠未得露其眞面臣意則稍低稍遠處建閣似好矣予曰穴星旣低平丁字閣若當中則案對雖不遮隔堂氣恐欠通暢勢將左右挨推移而右邊則乾泉吉水申方生氣發源湊堂之處宜寬暢而不宜障蔽左邊則爲地軸方因地形營建勿遮午破水路恐合事宜矣齋室則當用禦牧軒乎距丁閣當爲幾許民始曰禦牧軒之當爲齋室殆若有待尤爲奇矣相距似爲三百步許矣予曰無已太近乎有隣曰距丁閣爲三百步距園上已稍間矣予曰丁方案砂以珠成格而珠之爲物以圓潔明瑩爲貴若種木成林則易致隱晦但被莎草常使光顯易見似好卿等預先知悉追當分付於園官矣民始曰水原內衙本不精緻而其外公廨則或可爲香大廳或可爲典祀廳矣予曰予之情理只在頻頻展誠而閭閻旣移之後則隨駕百官之露處在所當念可存之公廨不必撤去以爲諸臣入接處好矣民始曰園所完奉之後則禿城山城不當仍置矣予問大臣之意何如煜曰臣意則山城相距稍遠恐不必然矣民始曰本山形局是木局而山城儲置軍器且移邑當在山城之下則不必別設山城矣予曰此則一番親審後欲決之而山城巒頭自穴上望見雖似至近而相距旣十里之遠烟火之氣鷄犬之聲元無關涉至如兵器藏置似無利害之可論矣治山之道順其勢而已補土之必務高大予以爲如何況此山地穴體乳下開窩妙在陰陽相傳開土之際乳頭勿爲穿鑿穴唇餘氣宛轉生動若過爲補土則易失天成之巧因本形被莎爲好矣遷奉時作路卿等已有料量而津渡則何處爲勝乎僉曰西氷庫渡涉以果川作路則似爲順便矣予曰此議固好而予有可言者矣俄者考出實錄則章陵遷奉時作路伊時由城內矣今亦依此例爲宜而非但朝祖節次之重大況於遷奉之時慈宮罔極之懷當復如何每以躬駕於遷奉之時爲敎而予方力請寬抑若値靭行之過城內則將以何辭仰慰慈心乎命善等見予哽咽之狀僉曰然則以城外作路磨鍊爲宜矣予曰繞過城外事涉如何予意則由廣津渡涉似便好矣京畿監司 徐有防曰自園所距廣津爲一晝停涉津後一站可抵果川邑而其間道路不至甚難矣性源曰鶴灘遷似是險處矣有防曰斲平則可以無礙矣予曰都監堂上此後往來時一番看審此路而還奏可也有防曰臣取考營上邑誌驪州遷奉後利川站設行宮今番遷奉道路自果川站抵水原爲二站其間有彌勒堂站遷奉時及此後動駕之時或爲宿所或爲晝停則百宮軍兵之露處姑無論揆以事面不可不用利川行宮已例而且伏聞利川行宮因肅廟朝受敎大小使行皆許入接聖意可以仰知彌勒堂店設置一院今番則奉安靈幄如以晝停行過則日後便於駐駕故敢達矣予曰廣尹已令入侍當詢問而大臣之意何如煜等曰一擧兩便且是不可已之擧分付地方官斯速擧行好矣予曰卿等之言果然且聞廣州居民之在此店近處者以距山城爲百餘里糴政爲切瘼云設院之後則別置一倉倉底民戶限年或永爲除役則數月之內募入者當甚多說者或以城餉之移置外倉爲難此則不然城餉之外亦豈無各衙門穀物之可以糶糴者乎鍾秀曰臣是居生於此店近處者故果知民情之如此而城餉體重不敢遽議矣今則事體所重豈可持疑乎有防曰勅需穀三衙門穀本自有裕雖非城餉亦可措置矣予曰廣尹亦陳所見李享元曰臣俄聞道伯之言設院甚便易事體不但如此自來民情皆願設倉矣予曰畿伯更陳措畫之

策有防曰設院設倉材木及燔瓦使廣尹當之財力則筵退後相議停當可以稟定矣予曰設院一款依利川例爲之事分付可也仍命明日再次看審再明日三次看審進去大臣禮堂觀象監提調除辭朝進去○園所都監以園所京都監 吏曹排設啓○遷園都監以本都監刑曹 工曹 司譯院三處排設啓
<일성록, 정조13년(1789) 7월 13일(정유)>

경제/건설

원소의 식목작업에 남양 등의 인력을 동원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강 중희당(重熙堂)에서 도감 당상 이문원(李文源),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을 소견하였다.

목 ○ 이문원이 아뢰기를, "원소의 국내(局內)에 나무를 심을 곳이 매우 광범위하여 많은 사람이 동원되지 않으면 한두 해 안에 다 심을 수가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수원부(水原府)와 안산(安山), 양성(陽城), 광주(廣州), 남양(南陽), 과천(果川), 진위(振威), 용인(龍仁) 등 부근 읍에서 힘을 합쳐 심어 주되, 읍의 크기를 헤아려 어디에서 어디까지로 기슭을 나누어 정해 주어 올가을에 다 심지 못하면 내년 봄에도 심고 내년 봄에 다 심지 못하면 내년 가을에 심으면 거의 다 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를 심을 때 각 읍에서 근면한 감색(監色)을 골라 보내어 검칙해서 심도록 하고, 수령도 간간이 직접 살펴서 태만한 폐단이 없도록 하며, 봄가을로 살필 때 말라 죽은 곳이 있으면 해읍(該邑)의 분장(分掌)한 감색을 엄하게 과치(科治)하도록 경기 감영에 분부하여 각 읍에 통지해서 거행하도록 하며, 운목군(運木軍)과 식목군(植木軍)에게는 양미(糧米)를 헤아려 지급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맞을 듯합니다." 하여, 그대로 따랐다. (…)

강 召見都監堂上李文源 畿伯 徐有防于重熙堂

목 文源啓言園所局內種木處極爲浩大如非衆力一二年內無以畢種臣意則本府與安山 陽城 廣州 南陽 果川 振威 龍仁等附近邑合力種之量邑之大小自某至某分麓定給今秋未盡種則明春種之明春未盡種則明秋種之庶可畢種種木時各邑擇送勤幹監色檢飭種植守令亦爲間間親審俾無怠慢之弊春秋看審時如有枯損處則該邑分掌監色從重科治之意分付畿營知委擧行運木與植木軍量給糧米恐合事宜矣從之 (…)
<일성록, 정조13년(1789) 8월 10일(계해)>

경제/건설

현륭원의 보토별단과 식목별단을 올리다

강 현륭원 영(顯隆園令) 서직수(徐直修) 등이 국내(局內)의 보토 별단(補土別單) 및 식목별단(植木別單)을 올렸다.

목 ○ 보토 별단은 다음과 같다.

원소(園所) 내청룡(內靑龍) 하단(下端)의 보토처 - 길이 42척(尺), 폭 9척, 높이 1촌(寸)이다. -

외청룡(外靑龍) 허리 아래 보토처 - 길이 10척, 폭 5척, 높이 2척이다. -

백호(白虎)의 무너진 가기(家基) 보토처 - 길이 42척, 폭 15척, 높이 4척이다. -

빙고(氷庫)의 기지(基址) 전보처(塡補處) - 길이 97척, 폭 45척, 깊이 15척이다. -

옛 서문로(西門路) 등성이 포석처(鋪石處) - 길이 80척, 폭 12척이다. -

내안(內案) 정사(正砂)의 패인 구덩이 보토처 - 길이 30척, 폭 10척이다. -

곤신(坤申) 방향 당(塘)을 판 곳 - 원주(圓周) 32장(丈), 지름 10장, 깊이 3척이다. -

○ 식목 별단은 다음과 같다.
원소에 식목한 것이 1월 19일부터 3월 2일까지 도합 송목(松木) 83만 4400주(株)이다. - 별도로 산 송목 10만 2000주, 헌릉(獻陵)의 잡목(雜木) 1000주, 선릉(宣陵)의 잡목 1000주, 정릉(靖陵)의 잡목 1000주, 경영(京營)에서 수송해 온 유목(柳木) 2000주, 윤계성(尹繼聖) 등이 사 온 송목 1만 7000주, 회목(檜木) 4000주, 잡목 8만 700주이다. -
8개 읍이 식목한 수 - **수원(水原)** 27만 6476주, 광주(廣州) 6만 3980주, **남양(南陽)** 9만 3320주, 안산(安山) 4만 2600주, 진위(振威) 4만 4340주, 용인(龍仁) 9만 8130주, 양성(陽城) 6만 7830주, 과천(果川) 5만 4320주이다. -
자원(自願)한 사람이 식목한 수 - 수원의 출신(出身) 황기정(黃基正) 송목 1만 주, 한량(閑良) 김낙함(金樂咸) 잡목 9만 주, 한량 박수의(朴首義) 잡목 6만 주, 여문영(呂文永) 잡목 2만 주, 전(前) 부사(府使) 김후(金逅) 송목 1만 주, 별군직(別軍職) 김의(金爕) 2만 주, 서울에 사는 전 경력(經歷) 이경대(李敬大) 송목 7만 주, 양인(良人) 김우득(金遇得) 회목 1만 200주, **남양(南陽)**의 한량 김수창(金壽昌) 회목과 잡목 3200주, 용인(龍仁)의 한량 김성소(金星燾) 송목과 잡목 5000주, 서흥(瑞興)의 양인 박세채(朴世采) 송목 1000주, 강릉(江陵)의 양인 이순동(李順東) 송목 1000주이다. -
도합 총 125만 96주이다.
송자(松子)와 상실(橡實)을 파종한 수이다. - 비국(備局) 송자 6석(石), 예조 송자 4석, 직(稷) 18석, 원소(園所)에 묻어 둔 상실 8석, 능원(陵園) 묘소에서 수송해 온 상실 8석 11두, 경기(京畿) 상실 25석 2두(斗), 원춘도(原春道) 상실 103석, 수원 상실 25석이다. -
강 **顯隆園**令 徐直修等進局內補土別單及植木別單
목 園所內靑龍下端補土處長四十二尺廣九尺高一寸外靑龍腰低補土處長十尺廣五尺高二尺白虎毁家基補土處長四十二尺廣十五尺高四尺水庫基塡補處長九十七尺廣四十五尺深十五尺 古西門路脊鋪石處長八十尺廣十二尺內案正砂掘坎補土處長三十尺廣十尺坤申方鑿塘處圓周三十二丈徑十丈深三尺○園所植木自正月十九日至三月初二日合松木八十三萬四千四百株別貿松木十萬二千株獻陵雜木一千株宣陵雜木一千株靖陵雜木一千株京營輸來柳木二千株尹繼聖等貿來松木一萬七千株檜木四千株雜木八萬七百株八邑植木數 水原二十七萬六千四百七十六株廣州六萬三千九百八十株南陽九萬三千三百二十株安山四萬二千六百株振威四萬四千三百四十株龍仁九萬八千一百三十株陽城六萬七千八百三十株果川五萬四十三百二十株自願人植木數 水原出身黃基正松木一萬株閑良金樂咸雜木九萬株閑良朴首義雜木六萬株呂文永雜木二萬株前府使 金逅松木一萬株別軍職金爕二萬株京居前經歷 李散大松木七萬株良人金遇得檜木一萬二百株南陽閑良金壽昌檜雜木三千二百株龍仁閑良金星燾松雜木五千株瑞興良人朴世彩松木一千株江陵良人李順東松木一千株都總一百二十五萬九十六株○松子橡實播種數 備局松子六石禮曹松子四石稷十八石園所埋置橡實八石陵園墓所輸來橡實八石十一斗京畿橡實二十五石二斗原春道橡實一百三石水原橡實二十五石
<일성록, 정조14년(1790) 3월 2일(임오)>

경제/건설

경기감사가 원소에 식목과 관련하여 장계를 올리다

강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 수원 부사 조심태(**趙心泰**)가 원소에 식목한 수효에 대해 치계하였다.

목 ○ 서유방의 장계에, "원소에 식목한 일에 대해 도차사원(都差使員)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언신(李彦藎), 차사원(差使員) 장봉 만호(長峯萬戶) 장세환(張世紈)이 연명으로 올린

첩정(牒呈)에 ‘수원 등 8개 읍의 식목은 지난달 2일부터 시작하여 **남양** 등 7개 읍이 먼저 일을 끝냈고, 수원은 25일에 다 심었기에 각 읍이 식목한 수를 성책하여 첩보(牒報)합니다.’ 라고 보고해 왔습니다. 8개 읍이 식목한 수를 후록(後錄)하여 치계합니다.”
하였다.
○ 후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원은 27만 6476주를 식목하였다.
광주는 6만 3980주를 식목하였다.
남양은 9만 3320주를 식목하였다.
안산은 4만 2600주를 식목하였다.
진위는 4만 4340주를 식목하였다.
용인은 9만 8130주를 식목하였다.
양성은 6만 7830주를 식목하였다.
과천은 5만 4320주를 식목하였다.
이상 74만 996주를 식목하였다.
○ 조심태의 장계에, “신이 공경히 유지(有旨)의 내용에 따라 잡목 9만 주를 종식(種植)하였고, 본부(本府)에 사는 절충장군(折衝將軍) 김낙함(金樂咸)이 송목 7만 주를 종식하였으며, 서울에 사는 전(前) 경력(經歷) 이경대(李敬大)가 잡목 6만 주를 종식하였으며, 본부에 사는 한량 박수의(朴首義)가 잡목 2만 주를 종식하였습니다. 본부에 사는 한량 여문영(呂文永) 등은 올가을을 기다려 뿌리가 잘 내린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원관(園官)과 상세하게 직접 살핀 후 장문할 계획입니다. 서울에 사는 양인 김우득(金遇得)의 회목(檜木) 1만 200주의 값 35냥, 본부에 사는 출신(出身) 황기정(黃基正)의 송목 1만 주의 값 20냥, 용인에 사는 한량 김성소(金星爇)의 송목과 잡목 5000주의 값 10냥, **남양**에 사는 한량 김수창(金壽昌)의 회목과 잡목 3200주의 값 10냥, 강릉의 백성으로 현재 신읍(新邑)에 이접(移接)된 양인 이순동(李順東)의 송목 1000주의 값 2냥을 일일이 불러들여 분급하였고, 서흥(瑞興)의 백성 박세채(朴世采)의 송목 1000주의 값 2냥은 박세채가 종식한 후 본토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지금 해읍에 이첩(移牒)하여 올려 보내게 하여 값을 받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강 京畿監司 徐有防 **水原府使** **趙心泰**以園所植水數爻馳啓
목 有防狀啓以爲園所植木都差使員 **南陽府使** 李彦盡 差使員 長峰 萬戶 張世紘聯名牒呈內**水原**等八邑植木之役始自去月初二日**南陽**等七邑先爲畢役**水原**則二十五日畢植故以各邑植木數修成册牒報報來矣八邑植木數後錄馳啓○**水原**植木二十七萬六千四百七十六株廣州植木六萬三千九百八十株**南陽**植木九萬三千三百二十株安山植木四萬二千六百株振威植木四萬四千三百四十株龍仁植木九萬八千一百三十株陽城植木六萬七千八百三十株果川植木五萬四千三百二十株以上植木七十四萬九百九十六株○心泰狀啓以爲臣敬依有旨辭意雜木九萬株種植本府居折衝金樂咸松木七萬株種植京居前經歷 李敬大雜木六萬株種植本府居閑良朴首義雜木二萬株種植本府居閑良呂文永等則待今秋著根完固之多寡與園官詳細躬審後狀聞計料京居良人金遇得檜木一萬二百株價三十五兩本府居出身黃基正松木一萬株價二十兩龍仁居閑良金星爇松雜木五千株價十兩**南陽**居閑良金壽昌檜雜木三千二百株價十兩江陵民時接新邑良人李順東松木一千株價二兩一一招致分給至於瑞興民朴世彩松木一千株價二兩則世彩種植後還歸本土故今方移牒該邑使之起送以爲受價之地
<일성록, 정조14년(1790) 3월 2일(임오)>

경제/건설

남양부가 심은 현륭원의 나무 수를 장계하다

강 수원 부사 조심태(趙心泰)가 원소(園所)에 심은 나무의 그루 수, 보토(補土)한 곳의 면적, 전(錢)·미(米)의 유재(遺在) 수량 및 감동(監董)한 사람의 성명에 대해 치문(馳聞)하였다.

목 ○ 장계에, "원소에 나무를 심고, 정자각(丁字閣)의 방전(方甎)을 다시 배설하고, 월대(月臺) 아래의 박석(礴石)을 정돈하고, 비각(碑閣) 벽의 채색을 다시 바르고, 여러 곳에 보토하고 사초(莎草)를 입히는 등의 일을 차례로 끝마쳤습니다. 심은 나무의 그루 수, 보토한 곳의 면적은 각각 성책(成冊)에 갖추어 올려보내며, 감식 차사원(監植差使員)과 교졸은 삼가 전날 내리신 전교에 따라 성명을 개록(開錄)하여 치문하며, 획급해 내리신 전 1000냥과 미 100석, 원납전(願納錢) 2000냥에 대해서는 용하(用下)와 유재를 구별하여 성책을 작성하여 올려보냅니다.

감식 차사원 및 교졸 부류 - 감식 차사원은 장봉 만호(長峯萬戶) 장세환(張世紈), 훈련도감 장교 절충장군(折衝將軍) 윤계성(尹繼聖), 수어청 장교 박수관(朴守寬), 어영청 장교 김우정(金禹鼎)이고, 식목 감관(植木監官)은 노대철(盧大喆)이고, 식목군(植木軍)은 노완철(盧完喆), 장용군(壯勇軍) 지태관(池台寬)·손한광(孫漢光)·이범산(李凡山)·김진철(金振喆)입니다. -

심은 나무의 그루 수 - 원관(園官)이 심은 나무는 4만 5288주(株)이고, 수원부가 심은 나무는 14만 3663주이고, 차사원이 심은 나무는 2만 2135주이고, 광주부(廣州府)가 심은 나무는 7만 6175주이고, **남양부(南陽府)**가 심은 나무는 3만 5180주이고, 안산군(安山郡)이 심은 나무는 1만 7813주이고, 진위현(振威縣)이 심은 나무는 1만 3080주이고, 용인현(龍仁縣)이 심은 나무는 2만 1766주이고, 양성현(陽城縣)이 심은 나무는 2만 830주이고, 과천현(果川縣)이 심은 나무는 1만 9670주이고, 식목 감관 노대철이 심은 나무는 1960주이고, 수호군(守護軍) 등이 심은 나무는 2만 5363주이고, 수원의 전민(廛民)이 자원하여 심은 나무는 9225주이고, 승군(僧軍)이 심은 나무는 2230주이니, 이상을 모두 합하면 소나무 45만 4378주입니다. - (…)

강 **水原府使** **趙心泰**以園所植木株數補土長廣錢米遺在及監董人姓名馳聞

목 狀啓以爲園所植木及丁字閣方甎改排月臺下磚石整舖碑閣壁彩修塗諸處補土被莎等役次第了畢而植木株數補土長廣各具成冊上送監植差員及校卒敬依前日傳敎姓名開錄馳聞劃下錢一千兩米一百石願納錢二千兩用遺在區別修成冊上送監植差員校卒秩監植差使員 長峯萬戶 張世紈 訓鍊都監將校折衝尹繼聖 守禦廳將校 朴守寬 御營廳將校 金禹鼎 植木監官 盧大喆植木軍盧完喆 壯勇軍池台寬 孫漢光 李凡山 金振喆植木株數園官植木四萬五千二百八十八株**水原府**植木十四萬三千六百六十三株差使員植木二萬二千一百三十五株廣州府植木七萬六千一百七十五株**南陽府**植木三萬五千一百八十株安山郡植木一萬七千八百十三株振威縣植木一萬三千八十株龍仁縣植木二萬一千七百六十六株陽城縣植木二萬八百三十株果川縣植木一萬九千六百七十株植木監官 盧大喆植木一千九百六十株守護軍等植木二萬五千三百六十三株**水原**廛民自願植木九千二百二十五株僧軍植木二千二百三十株都合松木四十五萬四千三百七十八株 (…)

<일성록, 정조14년(1790) 10월 21일(무진)>

경제/건설

남양이 현륭원의 식목과 관련하여 진행한 내용을 장계로 보고하다.

강 경기 감영에 장용영(**壯勇營**)의 돈 4만 냥을 빌려 주어서 그 돈으로 현륭원(**顯隆園**) 화소

(火巢) 안에 수용된 민전(民田)의 값과 행행(幸行)할 때 드는 외탕고(外帑庫)의 경상 비용으로 삼게 하고, **수원(水原)**, 안산(安山), 진위(振威), 양성(陽城) 등 읍의 향임(鄕任), 장교(將校)와 색리(色吏)로서 나무를 캐 오거나 심은 사람에 대해서는 등급을 나누어 시상하며, 차사원이 구관(句管)하여 나무를 심는 데 들어간 물력과 8개 읍의 부역(赴役)한 민정(民丁)에게 들어간 양미(糧米)는 수원부의 결전(結錢)과 대동(大同)으로 회감(會減)하고, 각 읍이 스스로 마련하여 나무를 심는 데 들어간 물력은 각 해당 읍의 공곡(公穀)으로 회감하라고 명하였다.

목 (…) 올봄에 나무를 심은 사람에게 상을 나누어 줄 때 누락된 장교(將校)와 색리에 대해서는 열읍(列邑)에 공문을 보내 알려서 조사하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각 읍의 보고가 지금 막 일제히 도착하였는데, 그중에는 그 읍에 있으면서 나무를 캐 왔기 때문에 별단(別單)에 들어가지 않았던 자도 있고 예전에 나무를 심을 때는 수고를 하였지만 올봄에는 부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된 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무를 심은 차수(次數)와 나무를 캐 온 차수를 구별하여 모두 아래에 열거하였습니다. 나무를 심었던 8개 읍 중에서 **남양(南陽)**과 과천(果川) 두 읍은 과연 누락된 사람이 없다고 하였으며, 광주(廣州)는 보고해 온 것이 있기는 하지만 모두 그해에 벌써 상전(賞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 또 장계에, "원소에 나무를 심은 차사원이 구관한 곳에 들어간 물력은 본부의 결전으로 회감하고, 8개 읍의 부역한 민정에게 들어간 양미도 대동미(大同米)로 회감하며, 스스로 준비하여 나무를 심은 고을에 대해서는 나무의 그루 수를 구별하여 사역(使役)한 군정(軍丁)과 함께 사실대로 성책(成冊)을 작성해서 보고하라고 모두 관문(關文)을 보내어 통지하였습니다. 각 읍의 보고가 지금 막 일제히 도착하였는데, 나무를 심은 8개 읍 중에서 **남양**·진위·양성·과천 등의 4개 읍은 스스로 준비해서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나무의 그루 수를 참고하여 회계 장부에 기록된 공곡(公穀)으로 회감하고 값을 지급한 뒤에 결전 및 대동미로 회감한 실제 수량과 함께 모두 열거하였습니다."

하였다. (…) 8개 읍이 나무를 심을 때 부역한 민정에게 들어간 양미를 대동미로 회감한 부류 - 미 75석(石) 14두 2승(升)은 수원의 나무를 심은 군정 5696명에게 1명당 양미 2승씩 지급한 것이고, 미 31석 1두 8승은 광주(廣州)의 나무를 심은 군정 2324명에게 1명당 양미 2승씩 지급한 것이고, 미 35석은 **남양(南陽)**의 나무를 심은 군정 2625명에게 1명당 양미 2승씩 지급한 것이고, (…) 각 읍이 스스로 준비하여 나무를 심은 군정에게 지급한 고가를 공곡으로 회감한 부류 - **남양**은 스스로 준비하여 추가로 심은 소나무와 잡목(雜木)이 6218주(株)이고, 사역한 군정이 511명으로, 1명당 미 2승씩 모두 미 6석 12두 2승을 지급하였다. (…)

강 命貸下**壯勇營**錢四萬兩于畿營俾爲**顯隆園**火巢內民田價及幸行時外帑庫經用之需**水原** 安山 振威 陽城等邑鄕任校吏採木植木人分等施賞差員句管植木物力八邑赴役民丁糧米以**水原府**結錢及大同會減各邑自備植木物力以各該邑公穀會減

목 (…) 今春之未及赴役亦爲見漏者故區別其植木採木次數一體開錄于左植木八邑中**南陽** 果川兩邑則果無遺漏之人云廣州則雖有報來而皆於當年已蒙賞典故今不擧論 (…) 又狀啓以爲園所植木之差員句管處所入物力以本府結錢會減八邑赴役民丁糧米亦以大同米會減自備植木邑則株數區別使役軍丁從實修成冊以報之意竝行關知委矣各邑所報今纔齊到而植木八邑中**南陽** 振威 陽城 果川等四邑有自備植木故考其株數以會付公穀會減給價後竝與結錢大同米會減實數一體開錄 (…) ○八邑植木時赴役民丁糧米以大同米會減秩米七十五石十四斗二升**水原**植木軍五千六百九十六名每

名糧米二升式米三十一石一斗八升廣州植木軍二千三百二十四名每名糧米二升式米三十五石**南陽**植木軍二千六百二十五名每名糧米二升式 (…) ○各邑自備植木軍給價以公穀會減秩**南陽**自備加植松雜木六千二百十八株使役軍五百十一名每名米二升式合米六石十二斗二升 (…)
<일성록, 정조16년(1792) 윤4월 7일(을해)>

3. 사회(社會)

⑴ 윤리 · 풍속

사회/윤리 · 풍속

남양부의 수재를 구휼토록 하다

강 남양부(南陽府)의 수재를 당한 집에 대하여 휼전(恤典)을 지급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정상순(鄭尙淳)이 남양부의 유학(幼學) 한덕규(韓德逵) 등이 수재를 당해 죽은 것을 치계(馳啓)한 것과 관련하여, 하교하기를, "본도로 하여금 휼전을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강 給南陽府揖戶恤典

목 京畿監司 鄭尙淳以南陽府幼學韓德逵等揖死馳啓敎以令本道恤典擧行

<일성록, 정조2년(1778) 8월 9일(병인)>

사회/윤리 · 풍속

남양 등에 별진(別賑)의 재원에 대한 윤음을 내리다

강 경기(京畿)와 호서(湖西)에 별진(別賑)의 재원에 대한 윤음(綸音)을 반급(頒給)하라고 명하였다.

목 ○ 하교하기를, "지금 경기와 호서 양도에 별진의 재원에 대한 윤음을 내리니, 경기 감영에는 백면지(白綿紙)로 장황(粧繢)한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3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白紙)에 쓴 것 4건을, 도사(都事)와 중군(中軍)에게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2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3건을, 파주(坡州) · 장단(長湍) · 풍덕(豐德) · 인천(仁川) · 남양(南陽) · 부평(富平) · 죽산(竹山) · 통진(通津) · 고양(高陽) · 김포(金浦) · 교하(交河) · 양천(陽川) 등 우심(尤甚)인 진휼(賑恤)을 설행한 12개 읍에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3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4건을, 광주(廣州) · 양주(楊州) · 수원(水原) · 용인(龍仁) · 양지(陽智) · 과천(果川) 등 지차(之次)인 진휼을 설행한 6개 읍에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3건을, 여주(驪州) · 교동(喬桐) · 안산(安山) · 안성(安城) · 가평(加平) · 영평(永平) · 진위(振威) · 이천(利川) · 양근(楊根) · 금천(衿川) · 양성(陽城) · 지평(砥平) · 음죽(陰竹) · 포천(抱川) 등 지차인 14개 읍에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1건을, 덕포(德浦) · 화양(花梁) 등 진휼을 설행한 2개 진(鎭)에는 각각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4건을 반급하여, 도합 장황한 백면지에 쓴 것 1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면지에 쓴 것 65건과 장황하지 않은 백지에 쓴 것 98건을 반급하라. (…)

강 命畿湖別賑綸音頒給

목 敎曰今下畿湖兩道別賑資綸音京畿監營粧繢 白綿紙件一不粧白綿紙件三不粧白紙件四都事中軍各不粧白綿紙件二不粧白紙件三坡州 長湍 豐德 仁川 南陽 富平 竹山 通津 高陽 金浦 交河 陽川等尤甚設賑十二邑各不粧白綿紙件三不粧白紙件四廣州 楊州 水原 龍仁 陽智 果川等之次設賑六邑各不粧白綿紙件一不粧白紙件三驪州 喬桐 安山 安城 加平 永平 振威 利川 楊根 衿川 陽城 砥平 陰竹 抱川等之次十四邑各不粧白綿紙件一不粧白紙件一德浦 花梁等設賑二鎭各不粧白綿紙件一不粧白紙件四合粧繢白綿紙件一不粧白綿紙件六十五不粧白紙件九十八頒給 (…)

<일성록, 정조8년(1784) 1월 17일(계묘)>

사회/윤리 · 풍속

전 남양부사 윤개(尹槩)의 사례를 들어 부조(不祧)의 은전을 내리다

강 충목공(忠穆公) 이시직(李時稷)과 충현공(忠顯公) 송시영(宋時榮)에게 부조(不祧)의 은전(恩典)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예조가 아뢰기를, "고(故) 충신 충목공 이시직, 충현공 송시영에게 불천위(不遷位)로 삼는 은전을 시행하는 것은 근거할 만한 법이 없고 아래에서 감히 전례를 끌어 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여, 하교하기를, "이미 고(故) 상신(相臣) 문충공(文忠公) 김상용(金尙容)의 사판(祠版)을 부조하게 한 전례가 있으니, 조가(朝家)에서 충의를 숭상하고 절의에 포상하는 정사로 볼 때 어찌 혹시라도 윤허를 아끼고 미루겠는가. 상소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라. 지난번 이 일로 인하여 들으니 고(故) **남양부사(南陽府使)** 충간공(忠簡公) 윤개(尹槩)는 바로 고 학사(學士) 윤집(尹集)의 형으로 병자년(1636, 인조14)의 난을 당하여 성(城)을 지키느라 목숨을 잃은 것은 지금까지도 칭찬하고 있는데 이미 대(代)가 다 되었다 들었다. 두 신하를 부조하는 것에 대해 이미 시행하도록 명하였으니 조정의 처분이 달라서는 안 될 것이다. 역시 부조하게 하라고 분부하라." 하였다.

강 命忠穆公李時稷 忠顯公宋時榮施以不祧之典

목 禮曹啓言故忠臣忠穆公李時稷 忠顯公宋時榮不遷之典法無可據有非在下所敢援例請寘之敎以旣有故相文忠公金尙容 祠版不祧之例以朝家尙忠褒節之政豈或斬持依疏請施行向因此事聞之故**南陽府使** 忠簡公尹槩卽故學士集之兄當丙子之難守城損軀至今稱道而聞已代盡云而臣不祧旣命許施朝家處分宜無異同亦爲不祧事分付

<일성록, 정조9년(1785) 1월 8일(무오)>

사회/윤리 · 풍속

진휼과 관련한 경기감사의 장계를 논의하다

강 영평(永平) 등의 고을은 다른 곡식으로 절반을 거두어들이게 해 달라는 경기 감사의 청에 대해, 시행하도록 허락하였다.

목 (…) 셋째, 계묘년(1783, 정조7)에 진휼(賑恤)을 설행할 때 **남양(南陽)** 등 6개 읍(邑)으로 이전(移轉)하였던 강도(江都)의 미(米)가 2100석인데, 이를 우선 본읍에 봉류하였다가 내년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정해진 수량대로 본소에 납부하게 해 달라고 한 일입니다. (…) 그대로 따르고 하교하기를, "다른 곡식으로 거두어들이는 일은 기백(畿伯)에게 들었고 민정(民情)도 미루어 알 수가 있으니, 3개 읍이 다른 곡식으로 거두어들이는 일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절반으로 시행하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강 許施畿伯 永平等邑代穀折半之請

목 (…) 其一江都米癸卯設賑時**南陽**六邑之移轉者爲二千一百石姑爲捧留本邑待明秋準納本所事也 (…) 從之敎以代穀事聞于畿伯民情亦可推知三邑代穀依狀請以折半許施也

<일성록, 정조9년(1785) 10월 7일(계미)>

사회/윤리 · 풍속

남양에 진휼한 일을 경기감사가 장계하다.

강 경기, 호남, 영남, 관동의 도신(道臣)이 진휼(賑恤)을 마쳤다는 것으로 치계(馳啓)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의 장계에, "도내(道內)의 12개 읍진(邑鎭)에 설진(設賑)하였는데, 조정에서 획하(劃下)한 상진곡(常賑穀)이 1만 석이고, 영진곡(營賑穀)이 5000석입니다. 공명첩(空名帖) 1100장 중 600장은 주휼(賙恤)해야 할 지차읍(之次邑)에 골고루 나누어 주어, 무너진 청사(廳舍)를 수리하거나 새로 지으면서 각기 경내(境內)의 진휼을 받지 못하고 환곡도 받지 못한 부류를 공역(工役)에 불러 모아 이로 인하여 접제(接濟)하게 하였습니다. 나머지 500장을 발매(發賣)하여 마련한 곡물이 3472석 남짓이고, 수령의 자비곡(自備穀)이 2631석 남짓이고, 사민(士民)의 보진곡(補賑穀)이 1만 4650석 남짓으로, 각곡이 도합 3만 5734석 남짓이고, 기민(饑民)의 총수는 17만 8939구(口)입니다. 진휼한 각곡이 1만 3444석 남짓이고, 남아 있는 각곡이 2만 2309석 남짓인데, 1만 석은 상진청(常賑廳)에 회록(會錄)하고, 5000석은 영진곡에 회록하여 실제 남은 곡물이 7309석 남짓입니다. 마땅히 각도에서 으레 행하는 규례에 따라 그대로 본영에 소속시켜 공용(公用)에 써야 하지만, 진휼하고 남은 곡물은 사체(事體)가 엄중하므로 아래에서 멋대로 하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본영의 지방(支放)이 점점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 가는데 그 원인 중에 한가지는 고마청(雇馬廳)입니다. 6개 역의 이졸(吏卒)의 급료 비용과 각 역참에서 역마(驛馬)를 교체하는 비용이 전적으로 여기에서 지급되는데, 본청에 있는 약간의 모곡(耗穀)과 소수의 입거전(入居錢)이 본래부터 부족하던 중에, 이른바 모조(耗條)가 재차 임인년(1782, 정조6)과 계묘년(1783, 정조7)의 정퇴(停退)를 거치면서 미봉(未捧)된 것이 과다하고, 입거전도 갑진년(1784, 정조8)과 병오년(1786, 정조10) 두 번의 칙사(勅使) 행차를 접대하면서 공적으로 차용하고 사적으로 빌린 것이 반이나 됩니다. 지금은 삭료를 계속 지급하지 못하고 궐마(闕馬)도 채워 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으니 너무나 답답하고 절박합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은 순아병(巡牙兵)입니다. 군수(軍需)에 대한 조치가 유명무실하여 장교와 병졸의 지방(支放)과 각종 군수에 쓰이는 경비가 태반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후의 도신이 모모(麰耗) 6, 7백 석을 가분(加分)해 주기를 청하여 목전의 어려움을 헤쳐 나갈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진휼하고 남은 곡식 7309석을 특별히 본영에 붙여 주어 모곡을 취해서 순아청과 고마청에서 보태어 쓸 수 있게 해 주신다면 해마다 번거롭게 청하던 맥모(麥耗)의 폐단도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 **남양(南陽)**은 구급한 기민이 2806구이다. - 각곡은 195석 5두 4승인데, 그중에 179석 8두 4승은 상진곡이고, 15석 13두는 부사 변지건(卞至健)의 자비곡이다. (…)

강 京畿 湖南 嶺南 關東道臣以畢賑馳啓

목 京畿監司 徐有防狀啓道內設賑十二邑鎭而朝家劃下常賑穀一萬石營賑穀五千石空名帖一千一百張內六百張分俵於之次邑之不可不賙恤處凡係公廨之頹圮者或繕修或新建俾各其境內上不及賑下不及還之類募赴工役賴以接濟五百張發賣作穀三千四百七十二石零守令自備穀二千六百三十一石零士民補賑穀一萬四千六百五十石零合各穀爲三萬五千七百五十四石零饑民都數十七萬八千九百三十九口賑下各穀爲一萬三千四百四十四石零餘在各穀二萬二千三百九石零以一萬石會錄常賑廳五千石會錄營賑穀實餘穀爲七千三百九石零矣固當依各道常行之例仍屬本營以資公用而賑餘穀物事面嚴重自下擅便極涉未安本營支放一事漸就痼瘼一則雇廳也六驛吏卒之料資各站馹騎之改立專責於此而本廳略干之耗入居數少之錢自來不數之中所謂耗條再經壬癸停退未捧夥然入居錢又支甲丙兩勅半是公借私貸今則朔料無以繼給闕馬不得責待此已悶迫一則巡牙兵也軍需措置有名無實

將卒支放各項軍需所用廢却居半故前後道臣請得加分麰耗六七百石以爲挨過目前之計矣今此賑餘穀七千三百九石零特許付之本營使之取耗補用於巡雇兩廳則麥耗之逐歲煩請亦可以除弊○ (…) 南陽救急饑民二千八百六口各穀一百九十五石五斗四升內一百七十九石八斗四升常賑穀十五石十三斗府使 卞至健自備 (…)
<일성록, 정조11년(1787) 5월 22일(무자)>

사회/윤리 · 풍속

남양인 중에 무신년 출정한 장사로 생존한 자와 순국한 자들에 대해 포상할 것을 논의하다

강 고 가의대부 주헌(朱櫶)에 대한 증직은 수의(收議)한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유방(徐有防)이 장계하기를, "무신년에 출정한 장사로서 지금까지 생존한 자들과 창의하여 순국한 사람으로서 민몰되어 아직 포양(褒揚)하지 못한 자들을 찾아내어 보고하라는 뜻으로 열읍(列邑)에 통지하였는데 각 읍에서 보고한 것이 이제야 겨우 모두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관직과 성명을 아래에 개록(開錄)합니다. 출정하여 유진(留陣)한 교졸(校卒)들에 대해서는 전교에 따라 해당 지방관으로 하여금 쌀과 고기를 제급하게 하였습니다. 또 술과 음식을 장만하고 음악을 연주하여 관가의 뜰에 초치하여 위로할 계획입니다. (…) 남양(南陽)의 절충장군 최창덕(崔昌德)은 94세인데 집사(執事)로서 부진하였고, 한량 양필휘(楊弼輝)는 82세인데 기패관으로서 부진하였고, 가선대부 김상구(金相九)는 99세이고 장일준(張一俊)은 89세인데 모두 마병으로서 부진하였고, 통정대부 주만선(朱萬先)은 82세이고 양인 정갯동(丁叾同)은 92세인데 모두 속오군 기총으로서 부진하였습니다.
(…) 하교하기를, "기념하여 시상하는 은전은 이달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이미 하교하였다. 거리가 먼 도(道)에서도 모두 도착하였는데 본도가 가장 늦었으니 지체하고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해당 도신을 추고하라. 오늘 정사에서 하비(下批)하는 명을 내릴 것이다. 이 장본은 즉시 예조 낭청으로 하여금 여러 대신들에게 문의하게 하되, 초기로 두루 물어본 뒤에 정서(正書)한다면 오늘 안에 형세상 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니, 시임 대신 및 이판부사에게만 문의하라." 하였다. (…)

강 命故嘉義朱櫶贈職依議施行

목 京畿監司 徐有防狀啓以爲戊申出征將士之至今生存者倡義殉身之泯未褒揚者搜訪以報之意知委列邑矣各邑所報今纔齊到故職姓名開錄于左出征留陣校卒則依傳敎令該地方給米肉又辦酒饌設樂招致官庭慰撫計料 (…) 南陽折衝崔昌德年九十四以執事赴陣閑良楊弼輝年八十二以旗牌官赴陣嘉善金相九年九十九張一俊年八十九俱以馬兵赴陣通政朱萬先年八十三良人丁叾同年九十二俱以束伍旗總赴陣 (…) 敎曰紀賞之典不可踰此月已有下敎則遠道畢到本道最後難免緩忽之責當該道臣推考今日政有下批之命此狀本卽令禮郎問議諸大臣草記遍詢後正書則今日內勢難爲之只令問議于時任大臣及李判府事 (…)
<일성록, 정조12년(1788) 3월 30일(임진)>

사회/윤리 · 풍속

남양으로 성묘가는 이복원(李福源)에게 요전상(澆奠床) 및 역마(驛馬)를 사급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판중추부사 이복원(李福源)을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도신(道臣)을 체차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정리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되니 경이 지금 해영(海營)으로 가는 것이 참으로 좋겠다. 언제 출발하려고 하는가?"

하니, 이복원이 대답하기를, “신의 선영이 **남양(南陽)**에 있습니다. 성묘하고 돌아오면 10일에서 15일 사이가 될 것이니 그대로 즉시 출발할 것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돌아오는 것은 언제쯤 되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세전(歲前)에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이 판부사(李判府事)가 **남양**에 성묘하러 갈 때 요전상(澆奠床) 및 역마(驛馬)를 전례대로 거행하라고 기영(畿營)에 분부하라.” 하였다.

강 召見判府事 李福源于誠正閣

목 予曰道臣遞易則爲難而情理亦不可不念矣卿今往海營儘便好矣何日欲發行耶福源對曰臣之先塋在**南陽**省掃而歸計當在旬望間仍卽發行矣予曰歸期當在何間對曰欲於歲前還歸矣敎曰李判府事 **南陽**地省掃時澆奠床及驛馹依例擧行事分付畿營

<일성록, 정조14년(1790) 10월 4일(신해)>

사회/윤리 · 풍속

남양의 해안에서 어업을 하다 익사한 자에게 휼전을 베풀다

강 태안현(泰安縣)의 물에 빠져 죽은 사람 등에게 휼전을 베풀었다.

목 ○ 충청 수사(忠淸水使) 김명우(金明遇)의 장계에, “태안 현감 한영규(韓永達)의 첩정(牒呈)에 ‘방금 안흥 첨사(安興僉使)가 보내 온 관문(關文)에, 본진(本鎭)의 마도(馬島) 우두머리가 와서 태안현 원서면(遠西面)의 백성 권덕삼(權德三) 등 7호(戶)가 가속 19명을 데리고 배 한 척에 함께 타고, 태안현 남면(南面)의 백성 문성찬(文成贊) 등 8호가 가속 20명을 데리고 배 한 척에 함께 타서 어업(漁業)의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남양(南陽)**으로 가서 대합을 잡고 소금을 생산한 뒤 내려오다가 이번 7월 20일 밤의 거센 바람에 두 척의 배가 모두 본도(本島) 뒤의 바다에서 침몰하여 남녀 각 2명씩만 살아 나오고 나머지는 모두 익사했다고 하였답니다.’ 하였습니다. 35명의 목숨이 일시에 물에 빠져 죽은 것도 매우 놀랍고 참담합니다. 아직 건지지 못한 시신이 또한 많아서 각별히 찾아 건져 내라는 내용으로 연해(沿海)의 각 읍진(邑鎭)에 엄히 신칙하고 관문을 보냈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혹 생전에 신역(身役)이 있었던 자는 탕감해 주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강 施泰安縣淹死人等恤典

목 忠淸水使 金明遇狀啓以爲泰安縣監 韓永達牒呈內卽到安興僉使移關內本鎭馬島頭頭人來告以爲泰安遠西面居民權德三等七戶率家屬十九名同騎一船南面居民文成贊等八戶率家屬二十名同騎一船漁利次往于**南陽**地採蛤沈醢下來矣今七月二十日夜大風兩船隻俱爲敗沒於本島後洋男女各二名生出其餘皆爲淹死云矣三十五人命之一時淹死極爲驚慘未拯屍身亦爲夥然各別搜拯之意沿海各邑鎭嚴飭發關敎曰如有生前身役蕩減事分付

<일성록, 정조16년(1792) 8월 4일(경오)>

사회/윤리 · 풍속

혼기가 지나도 혼인하지 못하는 남양인의 사정을 살피다

강 수원 판관(**水原判官**) 김노성(金魯成)에게 혼기(婚期)가 지났는데도 혼인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 보고 군정(軍政) 또한 중군(中軍)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하나 바로잡으라고 신칙하였다.

목 ○ **수원 유수(水原留守) 이명식(李命植)**의 장계에, “방금 본부의 판관 김노성의 첩정(牒呈)을 보니, 이번 동등(冬等)에 혼기가 지났는데도 혼인하지 못했던 본부 경내의 부류에게 정식에 따라 곡물을 도와서 지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혼인하지 못했던 부류의

성명 및 도와서 지급한 곡물을 후록(後錄)하여 급히 아룁니다.” 하였다.
○ 후록한 별단에, “장족면(長足面) 과부 김씨(金氏)의 딸 나이가 22세인데 용인(龍仁) 임광로(林光老)와 계축년(1793, 정조17) 10월 25일에 혼기가 지나 혼인하였고, 삼봉면(三峯面) 가선대부 이성윤(李誠潤)의 손자 이일손(李日遜)의 나이가 30세인데 **남양(南陽)** 이원지(李源之)의 딸과 계축년 11월 3일에 혼기가 지나 혼인하였고, 장족면 과부 윤씨(尹氏)의 아들 유학(幼學) 이원대(李元大)의 나이가 38세인데 과천(果川) 송광철(宋光喆)의 딸과 계축년 12월 28일에 혼기가 지나 혼인하였고, 부내(府內)의 북리(北里) 과부 장 조이(張召史)의 아들 양인(良人) 최진(崔鎭)의 나이가 31세인데 태촌(苔村) 김대춘(金大春)의 딸과 계축년 12월 25일에 혼기가 지나 혼인하였고, 오정면(梧井面) 양인 김대로(金大老)의 아들 김만춘(金晩春)의 나이가 31세인데 **남양** 홍수경(洪壽景)의 딸과 계축년(1793, 정조17) 12월 17일에 혼기가 지나 혼인하였고, 광덕면(廣德面) 유학 이득보(李得輔)의 아들 이윤대(李允大)의 나이가 30세인데 아산(牙山) 나완빈(羅完彬)의 딸과 계축년 10월 18일에 혼기가 지나 혼인하였고, 광교면(光敎面) 양인 이태득(李泰得)의 나이가 33세인데 안산(安山) 송중대(宋仲大)의 딸과 계축년 11월 21일에 혼기가 지나 혼인하였습니다. 이상 7인에게 각각 미(米) 1섬씩을 도와서 지급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이른바 지방관이 성심으로 찾아보아서 누차 신칙한 조령(朝令)을 봉행하였다면 어찌 30세의 노총각과 노처녀가 머리를 올리지 못하고, 장가가지 못한 자가 응시(應試)하는 일이 있겠는가. 이렇듯 만홀하게 거행해 놓고 감히 감영에 보고하는 말에 이처럼 규례에 따라 말을 만들었으니 너무도 놀랍다. 다른 군(郡)일 경우에도 감히 이와 같이 해서는 안 되거늘 하물며 본부에 새로 창설한 판관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렇지만 자꾸 잇따라서 감죄(勘罪)하는 것 또한 구차하니 우선 처분하지 말라.
원행(園行)하고 궁으로 돌아온 뒤에 판관으로 하여금 방방곡곡 백성의 집을 두루 다니면서 곳곳마다 고찰하고 사람마다 찾아내어 혹 한 사람의 홀아비도 없게 하라. 근래에 들으니 군정(軍丁)에 편입시키는 것을 백성들이 원망한다고 한다. 조령을 내린 초기여서 이를 제기하여 하교하지는 않았으나 또한 시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뒤섞여 그렇게 되었을 것이니, 이것 또한 판관이 중군에게 맡기지 말고 이번에 두루 다닐 때에 하나하나 알아가지고 와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중군으로 하여금 바로잡게 하라. 이와 같이 한 뒤에도 만약 부지런히 거행하지 못했다는 말이 들리면 해당 판관은 기필코 엄히 감처할 것이니, 이러한 내용으로 회유하라.” 하였다.

강 飭**水原判官** 金魯成搜訪過時未婚軍政亦令勿委中軍一一釐正

목 **水原留守** 李命植狀啓以爲卽接本府判官 金魯成牒呈則本府境內今冬等過期未婚之類依式助給穀物云故未婚之類姓名及助給穀物後錄馳啓○長足面寡女金氏女年二十二與龍仁林 光老癸丑十月二十五日過婚三峯面嘉善李誠潤孫子日遜年三十與**南陽** 李源之女癸丑十一月初三日過婚長足面寡女尹氏子幼學李元大年三十八與果川 宋光喆女癸丑十二月二十八日過婚府內北里寡女張召史子良人崔鎭年三十一與苔村金大春女癸丑十二月二十五日過婚梧井面良人金大老子晩春年三十一與**南陽** 洪壽景女癸丑十二月十七日過婚廣德面幼學李得輔子允大年三十與牙山 羅完彬女癸丑十月十八日過婚光敎面良人李泰得年三十三與 安山 宋仲大女癸丑十一月二十一日過婚以上七人各米一石敎曰所謂地方官若能誠心訪求奉行屢飭之朝令則豈有三十老童卯之不加髻不嫁娶者至於應試之擧乎擧行之慢忽若此敢於報營之辭如是循例措語者萬萬駭然在他郡猶不敢乃爾況本府之新設判官者乎續續勘罪亦涉屑越姑不處分園行還宮後令判官遍踏坊里村舍面面而考察人人而搜訪無或有一箇曠夫近聞編丁爲民怨云係是令初雖不提敎亦必有相混而然亦令判官勿委中軍今番遍踏時一一知

來可以釐正者令中軍釐正如是之後若以擧行之不勤有入聞該判官嚴勘斷不可已以此回諭
<일성록, 정조18년(1794) 1월 8일(병신)>

사회/윤리 · 풍속

남양인 김오성(金五成) 의행을 논의하다

강 **남양(南陽)** 사람 김오성(金五成)이 인명을 건져 살린 사실에 대해 수원 유수(**水原留守**)에게 하유하여 그로 하여금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용보(徐龍輔)의 장계에, "**남양부사(南陽府使)** 이익진(李翼晉)의 첩정(牒呈)에, 방금 본부 대부도(**大阜島**)의 약정(約正) 박흥창(朴興昌)의 문보(文報)를 보니, 「**화성**(**華城**)의 **성역(城役)**에 쓸 목재를 실은 배 1척이 지난달 28일에 본부 경계에 도착하였다가 바람을 만나 치패(致敗)되어 목재와 선척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격(沙格) 등이 답판(踏板)에 올라타거나 돛을 붙잡고서 본도의 영전포(營田浦)에 도착하여 생사의 기로에 있었을 때, 동임(洞任)인 절충장군(折衝將軍) 김오성이 동민(洞民)을 모아 그들을 맞아들여 구조하였고 잃어버렸던 목재도 찾아내 건졌습니다.」 하였으므로 치패된 선척의 사격 김학기(金學起) 등을 자세히 조사하였는데, 그들이 보고에서 「저희들이 풍덕부(豐德府)에서 건져낸 떠내려갔던 목재 5주(株)를 싣고 **화성**을 향하였는데, 지난달 28일에 본부 계오도(鷄五島) 앞바다에 이르러 갑자기 대풍을 만나 끝내 치패되었습니다. 선척 및 재목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저희들 5명은 답판에 올라타거나 돛을 붙잡고서 물결을 따라 표류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김오성이 위급한 때에 앞장서서 구조한 데 힘입어 인명이 전부 살아났고 재목도 모두 건져 낸 것이 과연 확실합니다.」 하였으니, 김오성이 인명을 구조해 살리고 재목을 건져 낸 것이 참으로 대단히 가상한 일입니다. 재목은 따로 감색(監色)을 정하여 즉시 성역소(**城役**所)에 실어 바치게 하라는 뜻으로 엄히 신칙하여 제사(題辭)를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성역에 재목을 나를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내 살린 것이 비록 법전에서 기록된 인원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반드시 장계로 보고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이에 낱낱이 거론하여 급히 장계합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대단히 가상하다. **남양** 사람 김오성의 일에 대해 유수에게 하유하여 그로 하여금 사실대로 장계로 보고하게 하라." 하였다.

강 命**南陽**人金五成拯活事實下諭于**水原留守**處使之狀聞

목 京畿監司 徐龍輔狀啓以爲**南陽府使** 李翼晉牒呈內卽接本府**大阜島**約正朴興昌文報則**華城城役**所用材木所載舡一隻去月二十八日來到本府境逢風致敗材木與舡隻不知去向沙格等或騎踏板或着帆席轉到於本島營田浦死生未分之際洞任折衝金五成聚集洞民接應救活而所失材木亦爲搜拯云故詳細査問於敗舡沙格金學起等處則所告內渠等逢載豐德府所拯漂失材木五株運向**華城**去月二十八日到本府鷄五島前洋忽遇大風竟至致敗舡隻及材木不知去處渠等五名騎板着帆隨波漂蕩矣幸賴金五成之急難奔救人命全活材木準拯果爲的實云金五成之人命救活材木拯得誠極嘉尙材木則別定監色卽爲運納於**城役**所之意嚴飭題送**城役**輸材時拯活者雖未滿法典內名數必爲狀聞事旣有成命故玆以枚擧馳啓敎以極爲可嘉**南陽**人金五成事下諭于留守處使之據實狀聞
<일성록, 정조18년(1794) 9월 10일(갑오)>

사회/윤리 · 풍속

남양의 재실과 함께 향곡 문제를 논의하다

강 남한산성의 향곡(餉穀)을 받아먹는 백성은 부윤(府尹)으로 하여금 가장 우심(尤甚)한 민

호(民戶)와 우심한 민호를 직접 뽑아내어 절반 혹은 3분의 1을 정퇴(停退)하고 다른 것으로 대신 거두는 것은 이를 기준으로 변통하며, 북한산성의 경우 가장 거두어들이기 어려운 곳은 다른 것으로 대신 바치게 해 주라고 명하였다.

목 ○ 전교하기를, "지금 비국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생각하니, 예컨대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향곡을 받아먹는 민호 중에 우우심(尤尤甚)한 민호가 있더라도 정퇴와 다른 것으로 대신 거두는 것을 모두 거론하지 않는가? 아니면 환자(還上)에서 변통하여 옮겨다 정퇴와 다른 것으로 대신 거두는 순서에 섞어 두는가? 어떻게 거행하는가? 그 곡절을 묘당으로 하여금 해당 도(道)와 해당 영(營)에 물어서 초기하게 하라." 하였다.

○ 비변사가 아뢰기를, "남한산성과 북한산성의 향곡을 정퇴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 거두는 데 편입시킬지의 여부에 대해 하교하신 대로 관문(關文)을 보내어 물어보니, 경기 감사 서용보(徐龍輔)의 보고에는, '향곡과 환곡은 명색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록 환곡을 정퇴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 거둘 때가 되더라도 향곡과 아울러 변통하여 옮겨다 정퇴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 거두는 순서에 섞어 두는 규례는 원래 없습니다. 이번에 북한산성에서 이전한 향곡을 봉류(捧留)하게 해 준 것은 세상에 드문 특별한 은혜에서 나온 것으로 열읍의 백성들이 마음으로 이미 만족하였으니 감히 다시 바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재해를 당한 백성의 형편에서 말해 보면 1만 5000포(包)의 미(米)에 대해 본색(本色)을 기준대로 납부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남한산성의 경우 환곡은 적고 향곡이 많아서 한 읍을 통틀어 21개 면 가운데 환곡을 받는 백성은 1, 2개 면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는 완전히 향곡을 받아먹습니다. 그러나 향곡은 체모가 중요하여 아래에서 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이와 같은 해가 되면 향곡과 환곡을 받아먹는 백성을 정퇴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 거두는 데에 편입시키지 못하니, 민정(民情)으로 논해 보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라고 하였고, 수어청과 총융청의 보고에는 모두 '만일 환곡과 향곡에 대해 정퇴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 거두라는 명이 있었으면 경기 감영에서 각 해당 읍에 통지하여 본영(本營)에 보고하고 거행하도록 했을 텐데, 이번에는 각 읍에서 본영에 보고한 일이 없었으므로 민호를 가려 뽑아 정퇴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신 거두는 일에 대해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여, 전교하기를, "남한산성은 모두 향곡을 받아먹는 민호인데 본도(本道)에 환곡은 정퇴하고 향곡을 정퇴하지 않으면 유독 조정에서 백성을 똑같이 대해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어찌 말이 되겠는가. 더구나 성곶(聲串)과 월곡(月谷) 등의 면에 집중된 흉년은 여러 면들이 **남양(南陽)** 등의 읍보다 조금 낫다고 하여 논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특별히 부윤으로 하여금 직접 민호를 뽑아내어 가장 우심한 민호와 우심한 민호는 절반 혹은 3분의 1을 정퇴하고 다른 것으로 대신 거두는 것은 이를 기준으로 변통하도록 도신(道臣)에게 분부하라. 북한산성은 일의 형편이 남한산성과 다르지만 그들에게 물어보아도 반드시 말이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곳은 가장 거두어들이기 어려운 곳에 대해 다른 것으로 대신 바치게 해 주도록 또한 분부하라." 하였다.

강 命南漢餉穀受食之民令府尹親執抄出最尤甚戶尤甚戶折半或三之一停退代捧視此闊狹北漢則最難捧處許令代捧

목 敎曰今因備局草記思之如南北漢山城之餉穀受食民戶中雖有尤尤甚戶停與代竝勿爲擧論乎抑闊狹推移於還上而互置停代秩乎何以擧行委折令廟堂問于該道該營草記○備邊司啓言南北漢餉穀入於停代與否依下敎關問則京畿監司 徐龍輔所報以爲餉與還名色名異故雖當還穀停代之時元無竝與餉穀闊狹推移互置停代之例而今番北城移轉之許令捧留出於曠絶之特恩刊邑民人意願已足不敢更

有希望而以災民事勢言之則萬五千包之米本色準納亦不可謂之全然不難至於南城則還少餉多通一邑二十一向之內受還之民不過爲一二面其餘則全受餉穀而餉穀體重有非自下仰請故每當如此之歲餉還受食之民不得入於停代之中論以民情誠爲可矜云守總兩營所報則皆以爲若有還餉停代之命則自畿營知委各該邑以爲報本營擧行之地而今番則各邑無報營之事秒戶停代一款姑未及詳知云矣敎以南城無非餉戶而本道停還不停餉獨未沾一視之澤豈可乎況聲串月谷等面之偏歉不可以諸面之稍勝於**南陽**等邑置之勿論之科特令府尹親執抄戶最尤甚戶尤甚戶折半或三之一停退代捧視此闊狹事分付道臣 北漢則事勢異於南城雖問於渠輩必無二辭此則最難捧處許令代捧事亦爲分付
<일성록, 정조18년(1794) 10월 14일(무진)>

4. 문화(文化)

(1) 과학

문화/과학

경기감사가 남양의 수해를 보고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경기 감사 이형규(李亨逵)를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비역(碑役)을 기일에 맞춰 끝냈으니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번에 도로를 적간할 때, 연로(沿路)의 농사는 보기에 어떠하던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대체적으로 풍년이라고 할 만합니다만, 이번에 찬비가 내린 뒤에 곡식이 간간이 손상을 입은 곳이 있었습니다. 한 도(道)를 가지고 말하자면, 남양(南陽), 수원(水原), 안성(安城), 부평(富平) 등 강이나 바다에 인접한 제읍(諸邑)이 간간이 수해를 입어 간혹 흉년으로 판명된 곳이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재정(災政)이 매우 어렵겠다."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한 도(道) 가운데 구재(舊災) 700결(結)이 전부터 전해 내려온 상태이고, 그 밖에도 시재(時災)를 입은 곳이 많기 때문에, 혹시 허(虛)와 실(實)이 서로 뒤섞이는 폐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각별히 각 읍의 수령을 신칙하였습니다." 하였다. (…)

강 召見京畿監司 李亨逵于誠正閣

목 予曰碑役果及期告成誠可幸也今番道路摘奸時沿路穡事所見何如耶亨逵曰大體則可謂豐登而今番冷雨之後禾稼間有傷損處以一道言之南陽 水原 安城 富平等沿江沿海諸邑間被水災或有判凶處云矣予曰然則災政甚難矣亨逵曰一道中舊災七百結自前流來而其外亦多有時災處故或慮虛實相蒙之弊各別申飭於各邑守令矣 (…)

<일성록, 정조5년(1781) 8월 14일(갑신)>

문화/과학

남양의 재해 상황을 논의하다

강 성정각(誠正閣)에서 윤대관(輪臺官) 및 경기 감사 이형규(李亨逵), 남양부사(南陽府使) 이동엽(李東燁), 예조 판서 정민시(鄭民始), 감인 당상(監印堂上) 정창성(鄭昌聖)을 소견(召見)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남양의 농사가 매우 참혹하게 흉년이 들었다고 하니, 무릇 위로할 때에 반드시 안정시킬 방도를 다해서 한 명의 백성도 굶주림에 허덕이는 근심에 이르는 이가 없게 더욱더 정성을 다하여 황정(荒政)을 잘 베풀도록 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기내(畿內)의 농사 형편은 과연 어떻다고 하던가?"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남양(南陽)과 수원(水原)이 유독 큰 흉년을 당한 고을이라 하더라도 김포(金浦)와 통진(通津) 등의 고을도 크게 흉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대용갈이의 부실함도 백성들이 농사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결과인데, 집재(執災)할 때에 혹 허실이 섞이는 폐단이 있기까지 하였으니, 이제 도신으로 하여금 조속히 순찰을 위해 출발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폐단을 염려하기 때문이다. 경은 되도록 빨리 감영으로 돌아가서 마련하여 분등하라." 하니, 이형규가 아뢰기를, "그믐 전에 모쪼록 감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

강 召見輪臺官及京畿監司 李亨逵 南陽府使 李東燁 禮曹判書 鄭民始監印堂上鄭昌聖于誠正閣

목 予曰南陽年事聞甚慘歉云凡於勞來之際必盡安集之方無使一民以致顚連之患益加殫誠善爲荒政也予曰畿內農形果何如云耶亨逵曰南水原雖曰獨凶金浦 通津等邑亦値大歉云矣予曰代播之不實亦是民人懶農之致而至於執災之際或有虛實相蒙之弊今使道臣欲爲趁早發巡者爲慮此弊也卿其從速還營磨鍊分等也亨逵曰晦前某條還營矣 (…)
<일성록, 정조6년(1782) 8월 11일(을해)>

문화/과학

선전관이 재해를 입은 남양의 실정을 장계하다

강 선전관(宣傳官)을 나누어 보내 기전(畿甸), 해서(海西), 관동(關東)의 농사 형편을 살피게 하였다. 선전관 김후(金焞)는 광주(廣州), 이천(利川), 음죽(陰竹), 여주(驪州), 원주(原州), 지평(砥平), 양근(楊根), 가평(加平), 포천(抱川), 영평(永平), 양주(楊州), 연천(漣川), 삭녕(朔寧), 마전(麻田), 적성(積城), 철원(鐵原), 김화(金化)에 나아가고, 김익빈(金益彬)은 금천(衿川), 인천(仁川), 남양(南陽), 안산(安山), 수원(水原), 용인(龍仁), 양지(陽智), 죽산(竹山), 안성(安城), 양성(陽城), 진위(振威)에 나아가고, 이신경(李身敬)은 고양(高陽), 교하(交河), 파주(坡州), 장단(長湍), 송도(松都), 금천(金川), 평산(平山), 풍덕(豐德), 교동(喬桐), 강화(江華), 통진(通津)에 나아갔다.

목 (…) ○ 선전관 김익빈이 장계하기를, "금천(衿川)은, 연강의 침수된 곳은 각 곡식이 남김없이 사라지고 저지대에 있는 동답(洞畓 동네의 공동 소유로 된 논)은 더러 침수된 곳이 있었으나, 수재를 당하지 않은 곳에서는 풍작(豐作)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인천, 남양, 안산, 수원 등의 고을은 모두 바닷가에 있는 지역으로 재해를 입은 정도가 가장 심하였습니다. 백성들의 사정은, 장마 전에 수확했던 추모(秋麰)는 농량(農糧)에 다 써 버렸고 장마 뒤에 반쯤 거두어들였던 춘모(春麰)는 썩거나 떠내려가 버려 남은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각 고을이 모환을 징수한 것은 절반이나 3분의 2였는데, 농사를 생각하면 참으로 매우 민망합니다." 하고, (…)

강 分遣宣傳官審察畿甸 海西 關東農形 宣傳官 金焞 廣州 利川陰竹驪州 原州 砥平 楊根 加平 抱川 永平 楊州 漣川 朔寧 麻田 積城 鐵原 金化 金益彬 衿川 仁川 南陽 安山 水原 龍仁 陽智 竹山 安城 陽城 振威 李身敬 高陽 交河 坡州 長湍 松都 金川 平山 豐德 喬桐 江華 通津

목 (…) ○宣傳官 金益彬狀啓衿川則沿江水沈處各穀消融無餘洞畓汚下處或有水沈之患而無水災處則可期登稔之望仁川 南陽 安山 水原等邑皆是濱海之地被災最甚民情則潦前所穫之秋麰已盡於農糧潦後半收之春麰或腐或溧所收無幾各邑麰還所捧或折半或三分二言念民事誠甚可悶又狀啓龍仁 陽智 竹山 安城 陽城 振威等邑農形則禾穀無水災處可期豐稔之望豆太雨前早種幾至向茂雨後晩耕似難成實木花爲潦所浸黃而不茂水災則成川覆沙邑邑有之麰麥或漂失於田中或腐傷於庭邊各邑麰還所捧或爲折半或爲三分之一二 (…)
<일성록, 정조11년(1787) 6월 17일(계축)>

문화/과학

경기감사가 남양의 재실을 장계하다

강 경기와 관북의 재실의 등급을 나누는 일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목 ○ 경기 감사 서정수(徐鼎修)의 장계에, "협농(峽農)과 야농(野農)에는 상호 득실이 있지만 이 읍과 저 읍에는 그리 심한 우열이 없으니, 통틀어 말하면 다 흉년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양천(陽川)의 경우 작년 농사에 이미 큰 흉년을 겪었는데 금년 재해의 형편이 또 참

혹한 흉년이 되었고, 부평(富平)은 양천처럼 한 경내가 온통 재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연해의 4개 면이 거의 모두 물에 잠겼으므로 이 두 읍은 우심재에 두었습니다. 이 밖의 각 읍은 협농과 야농의 사이에 재결(災結)과 실결(實結)이 섞여 있으니 그 가운데서 약간 읍을 지적해 낸 다음 억지로 구별하여 초실(稍實)로 지목하는 것은 끝내 분명하게 조사하여 밝히는 도리가 아니므로, 한결같이 모두 지차에 두었습니다.

재상(災傷)의 형편에 대해서는 수재(守宰)를 엄히 신칙하여 직접 전야(田野)를 점검한 다음 면과 리에 따라 등급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올해의 각종 재결은 5411결 83부(負) 9속(束)인데 연해 지역의 여러 해 구탈(舊頉)로 잡혀온 전답을 일체 마감한 것이 493결 89부 7속이니, 도합 5905결 73부 6속입니다. 이 재총(災摠)을 호조에서 내려 준 3500결과 비교해 보면 부족한 것이 2405결 73부 6속이니, 특별히 수효대로 더 떼어 주기를 허락해 주소서. 백성들의 고충에 관계되는 일은 아래에 조목별로 열거하니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 뜻을 여쭈어 분부하게 하소서.

〔우심재 2개 읍〕

양천(陽川)·부평(富平)

〔지차 35개 읍진(邑鎭)〕

양근(楊根)·금천(衿川)·고양(高陽)·김포(金浦)·진위(振威)·인천(仁川)·여주(驪州)·광주(廣州)·양주(楊州)·**남양(南陽)**·양성(陽城)·통진(通津)·**수원(水原)**·음죽(陰竹)·죽산(竹山)·교하(交河)·안산(安山)·교동(喬桐)·풍덕(豐德)·장단(長湍)·과천(果川)·이천(利川)·안성(安城)·연천(漣川)·파주(坡州)·지평(砥平)·적성(積城)·마전(麻田)·삭녕(朔寧)·영평(永平)·용인(龍仁)·양지(陽智)·포천(抱川)·가평(加平)·영종(永宗)

〔청하는 내용〕

첫째, 양천은 5개 면이 모두 우심재에 속하여 다만 리(里)로 그 우심재와 지차를 구분하였습니다. 우심재리는 당년의 환향(還餉)과 신포(身布) 3분의 2를, 지차리는 절반을 정퇴해 주소서. 환향을 다른 곡식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은 우심재리와 지차리를 막론하고 3분의 2까지 그에 상당하는 곡식으로 준절(準折)하여 대신 바치고 내년 가을이 되거든 도로 본색(本色)으로 만들게 해 주소서.

둘째, 부평은 재해를 입은 것이 양천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심재면의 우심재리는 당년의 환향과 신포를 절반까지, 지차리는 3분의 1을, 지차면의 우심재리는 4분의 1을 정퇴해 주소서. 환향을 다른 곡식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은 우심재면리·지차면리·초실면리를 막론하고 절반까지 그에 상당하는 곡식으로 준절하여 대신 바치고 내년 가을이 되거든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해 주소서.

셋째, 지차 35개 읍진 가운데 양근·금천·고양·김포·진위·인천·여주·광주·양주·**남양**·양성·통진·수원·음죽 등 14개 읍은 수재를 당한 면리인데 재해로 손상된 것이 우심재읍의 우심재면이나 우심재리와 다르지 않으니 당년의 환향을 3분의 1까지, 지차리 및 지차면의 우심재리는 4분의 1까지 정퇴해 주소서. 환향을 다른 곡식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은 모두 이 외의 21개 읍진과 함께 우심재면리·지차면리·초실면리를 막론하고 3분의 1까지 그에 상당하는 곡식으로 준절하여 대신 바치고 다음 해 가을이 되거든 도로 본색으로 만들게 해 주소서.

넷째, 각 해에 체납된 환향의 정퇴조(停退條)는 우심재와 지차를 막론하고 특별히 다음 해 가을까지 정퇴해 주소서.

다섯째, 북한(北漢), 평창(平倉), 강도(江都), 대흥(大興), 임진(臨津), 장산(長山)의 향곡

은 모두 수송하여 상납하게 하면 져 나르는 어려움과 지체하는 폐단이 반드시 평년보다 배가 될 것입니다. 우심재와 지차를 막론하고 본읍에 봉류(捧留)하였다가 다음 해 가을이 되거든 본소(本所)에 도로 납부하게 하고, 모곡(耗穀) 및 사수미(私受米)는 대전(代錢)으로 수송하되 1섬당 5냥씩 정하게 하소서.

여섯째, 금위영과 어영청에서 강도에 남겨 두는 향미(餉米)와 향태(餉太)를 수납하는 군인이 각 읍에 흩어져 있어서 운송하여 들이기가 더욱 어려우니, 또한 대전으로 바꾸어 바치되 미(米) 1섬당 5냥씩, 태(太) 1섬당 2냥씩 준절하여 정한 다음 수송하여 들이게 하소서. 본도에서 받아오는 강도미(江都米)의 모조도 남겨 두는 향미의 규례대로 1섬당 5냥씩 전으로 대신 바치게 하소서.

일곱째, 장단·풍덕·파주·교하 등 읍은 답농(畓農)에 흉년이 들어 미를 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금년 전세(田稅)와 대동세(大同稅)로 납부하는 대미(大米 쌀)는 근래의 규례대로 소미(小米 좁쌀)로 대신 바치게 해 주소서.

여덟째, 수어청과 총융청의 수첩 군관(守堞軍官), 장초 아병(壯抄牙兵), 별파진(別破陣) 등의 신미(身米)는 근래의 규례대로 1말당 4전(錢)씩 대전하게 해 주고, 이 밖에 아무 아문, 아무 군문을 막론하고 예전부터 납부해 온 미는 일체 시행하게 해 주소서.

아홉째,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일은 내년 가을까지 막아 주소서."

하였다. (…)

강 命京畿 關北災實分等依狀請施行

록 京畿監司 徐鼎修狀啓以爲峽農野農互有得失此邑彼邑無甚優劣統以言之擧未免告歉至於陽川昨秋穡事旣經大無今年災形又判慘歉富平雖不至如陽川之全一境被災而沿海四面擧皆水沈此兩邑則置之尤甚此外各邑峽野之間災實相參就其中指出若干邑强加區別目之以稍實終非綜核之道一併置之之次災傷形止嚴飭守宰躬檢田野依面里分等各樣今災爲五千四百十一結八十三負九束沿海地流來舊頃一體磨勘者爲四百九十三結八十九負七束合爲五千九百五結七十三負六束以此災總較諸地部所下三千五百結則其所不足爲二千四百五結七十三負六束請特許如數加劃至於事係民隱者條列于左幷令廟堂稟旨分付○尤甚二邑 陽川 富平 之次三十五邑鎭 楊根 衿川 高陽 金浦 振威 仁川 驪州 廣州 楊州 南陽 陽城 通津 水原 陰竹 竹山 交河 安山 喬桐 豐德 長湍 果川 利川 安城 漣川 坡州 砥平 積城 麻田 朔寧 永平 龍仁 陽智 抱川 加平 永宗 ○一陽川五面皆屬尤甚只以里區別其尤甚之次而尤甚里則新還餉身布三分二之次里則折半停退還餉代穀無論尤甚之次里限三分二以相當穀準折代捧待明秋還作本色一富平被災無異陽川尤甚面尤甚里新還餉身布限折半之次里三分一之次面尤甚里四分一停退還餉代穀毋論尤甚之次稍實面里限折半以相當穀準折代捧待明秋還作本色一之次三十五邑鎭中楊根 衿川 高陽 金浦 振威 仁川 驪州 廣州 楊州 南陽 陽城 通津 水原 陰竹等十四邑被水面里其所災損無異尤甚邑尤甚面尤甚里新還餉限三分一之次里及之次面尤甚里限四分一停退還餉代穀則幷與外此二十一邑鎭毋論尤甚之次稍實面里限三分一以相當穀準折代捧待明秋還作本色一各年舊還餉停退條毋論尤甚之次特許限明秋停退一北漢平倉 江都大興 臨津 長山餉穀幷令輸納則負戴之難流連之弊必倍常年毋論尤甚之次捧留本邑待明秋還納本所耗穀及私受米代錢輸送而每石以五兩爲定一禁御兩營 江都留餉米太所受軍人散在各邑運納尤難亦以錢代捧而米每石五兩太每石二兩折定輸納本道受來江都米耗條亦依留餉米例每石五兩以錢代捧一長湍 豐德 坡州 交河等邑沓農失稔出米尤難今年田大同所納大米依近例以小米代捧一守總兩營 守堞軍官壯抄牙兵別破陣等身米依近例每斗四錢許令代錢此外無論某衙門某軍門自前納米者一體施行一推奴徵債限明秋防塞 (…)

<일성록, 정조16년(1792) 9월 27일(계해)>

문화/과학

남양의 재실(災實)을 논의하다

강 경기에 재실(災實)의 등급을 나누는 일은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고, 사목재(事目災) 외에 추가로 청한 4765결(結) 82부(負) 2속(束)은 특별히 더 구획해 주며, 우심재읍(尤甚災邑)과 지차읍(之次邑) 가운데 가장 우심한 민호(民戶)의 올해 환곡 및 신역(身役)으로 바치는 전(錢)과 포(布)는 절반을 정퇴(停退)하고 우심재읍은 3분의 1을 정퇴하며, 올해의 환곡은 도내를 통틀어 가장 우심한 곳은 절반을 다른 것으로 대신 바치게 하고, 북한산성과 평창(平倉)의 향곡(餉穀)은 해당 읍에 봉류(捧留)하고 모조(耗條)는 돈으로 대신 바치게 하며, 교동(喬桐)과 풍덕(豐德)의 신공포(身貢布) 가운데 작년에 정퇴해 준 조목은 그대로 정퇴하고, 대흥(大興)·장산(長山)·임진(臨津)의 향곡은 모두 본읍에 봉류했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도로 본소(本所)에 납부하고 모곡은 돈으로 대신하여 수송하게 하며, 금위영과 어영청이 강도(江都)에 봉류하는 향미(餉米)와 향태(餉太) 및 강도미(江都米)의 모조는 전으로 대신하여 납부하게 하고, 장단(長湍) 등 4개 읍이 전세(田稅)와 대동세(大同稅)로 납부하는 대미(大米)는 소미(小米)로 대신 바치게 하며, 연천(漣川)에 대해 두태(豆太)로 대신 납부하게 했던 대동세의 소미는 본색인 소미로 상납하게 하고, 수어청과 총융청에 소속된 수첩 군관(守堞軍官)·장초(壯抄)·아병(牙兵)·별파진(別破陣) 등의 신미(身米) 및 보미(保米)와 수미(需米)는 위 항목에서 정퇴한 것과 초실(稍實)한 민호를 제외하고는 또한 전으로 대신하게 해 주며, 그 밖에 각 군문(軍門)과 아문(衙門)은 이전부터 상납하던 미(米)를 일체 시행하고, 증렬미(拯劣米)와 증렬태(拯劣太)는 내년 가을까지 정퇴하며, 우심재와 지차인 읍진(邑鎭)에 배소(配所)를 정하지 말게 하고, 노비를 추쇄하고 빚을 징수하는 것을 막는 등의 여러 가지 조목은 모두 시행하게 해 주라고 명하였다.

목 ○ 좌의정 김이소가 아뢰기를, "경기 감사 서용보(徐龍輔)의 장계에, **남양(南陽)** 등 11개 읍진을 우심재에 두고 광주(廣州) 등 25개 읍을 지차에 두었고 초실(稍實)의 명색은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사목재 외에 부족한 재결(災結) 4765결 82부 2속을 특별히 추가로 구획하게 해 주소서. 교동과 풍덕에 대해 작년에 정퇴했던 공포(貢布)를 일시에 모두 독촉하는 것과 북한산성과 평창의 금년 향곡을 규례대로 실어다 납부하는 것은 백성의 폐막에 관계되는 일이고 외람된 말이어서 감히 규례에 따라 청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후록(後錄)한 여러 조목에 대해서는 모두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 뜻을 여쭈어 분부하게 하소서.'라고 청하였습니다. (…)

강 命京畿災實分等依狀請施行事目災外加請四千七百六十五詰八十二負二束特爲加劃尤甚之次邑中最尤甚戶新還及身役錢布折半停退尤甚邑三分一停退新還通一道最尤甚處折半代捧北漢 平倉餉穀捧留該邑耗條以錢代捧喬桐 豐德身貢布昨年停退條仍爲停退大興 長山 臨津餉穀竝捧留本邑待明秋還納本所耗穀代錢輸送禁御營 江都留餉米太及江都米耗條代錢以納長湍等四邑田大同大米以小米代捧漣川大同小米代豆太以本色小米上納守總兩營 守堞軍官壯抄牙兵別破陣等身米及保需米除非上項停退者及稍實戶亦許代錢其外各軍門衙門自前納米者一體施行極劣米太限明秋停退尤甚之次邑鎭勿定配所推奴徵債防塞諸條竝爲許施

목 左議政 金履素啓言京畿監司 徐龍輔狀啓**南陽**等十一邑鎭置之尤甚廣州等二十五邑置之之次稍實名色不爲擧論仍以爲事目災外不足災四千七百六十五結八十二負二束特敎加劃喬桐 豐德昨年停退貢布之一時竝督北漢 平倉今年餉穀之如例輸納事關民瘼言涉猥越不敢循例陳請而後錄諸條竝令廟堂稟旨分付爲請 (…)

<일성록, 정조18년(1794) 10월 9일(계해)>

⑵ 예술

문화/예술

김용겸(金用謙)을 소견하여 음률을 논하면서 남양의 경(磬)을 언급하다

강 희정당에서 승지 김용겸을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음률(音律)도 알며, 《율려신서(律呂新書)》를 보았는가?”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보았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렇다면 율려를 알겠다.”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애초에 황종(黃鍾)이 근본이 되는 이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율려를 억지로 논하겠습니까. 만약 종(鍾)과 석경(石磬)을 듣는다면 청탁(淸濁)은 혹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남양(南陽)에서 경(磬)이 나고 해주(海州)에서 서(黍)가 나니, 때에 응하여 백성들과 함께 즐긴다고 이를 만하다. 세종조(世宗朝) 때 처음 만든 것을 알고 있는가?”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경이 장악원 제조 와 함께 음률을 바로잡는 일에 참여하였으면 좋겠다.”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신이 이미 명확히 아는 것이 없고 장악원의 관원도 아닌데 어떻게 같이 의논하겠습니까.” 하였다. (…)

강 召見承旨 金用謙于熙政堂

목 (…) 予曰音律亦知之而律呂新書見之否用謙曰見之矣予曰然則知律呂矣用謙曰初不知黃鍾爲本之理何以强論律呂耶若鐘石磬聞之淸濁或可辨矣予曰南陽之出磬海州之生黍可謂應時而與民樂世宗朝創爲之知之乎用謙曰然矣予曰卿與掌樂提調參論釐正音律好矣用謙 曰臣旣無明知官非掌樂何可與議乎 (…)

<일성록, 정조2년(1778) 10월 30일(병술)>

문화/예술

사직단의 아악에 대해 논의하다.

강 융효문(隆孝門)에서 판중추부사 서명응(徐命膺)과 장악원 제조 김용겸(金用謙)·이중호(李重祜)를 소견하였다.

목 ○ 내가 이르기를, “등가(登歌)와 헌가(軒架) 중에서 먼저 사직단(社稷壇)에서 쓰는 음악으로 하라.”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고악(古樂)을 회복할 수는 없어도, 아악(雅樂)과 속악(俗樂)의 악기(樂器)는 그래도 옛 제도에 따라 만들어 척도(尺度)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서명응이 아뢰기를, “성상의 분부가 실로 옳습니다만, 악제(樂制)에 밝은 자는 실로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응종궁(應鍾宮)은 사직단의 음악에 쓰는가?” 하니, 전악(典樂)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근래에는 특종(特鍾)과 특경(特磬)이 없는가?” 하니, 서명응이 아뢰기를, “특종과 특경이 없기 때문에 황종(黃鍾)과 경(磬)으로 대치해 쓰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것은 편종(編鍾)인가?”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영고(靈鼓)와 뇌고(雷鼓)도 있는가?”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뇌고는 없지만 영고는 사직단에서 씁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저 제조 는 음률을 많이 아는구나.” 하니, 서명응이 아뢰기를, “오래도록 악정(樂正)을 맡았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편종은 조정에서 쓰고 특종은 사직단에서 쓰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서명응이 아뢰기를, “천자는 팔일(八佾)을 쓰고 제후는 육일(六佾)을 쓰는데, 악장(樂章)에 따라 절주(節奏)를 맞추기 때문에 이러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종묘(宗廟)에서는 속악을 쓰고 사직(社稷)에서는 아악을 쓰는가?”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아악은 사직단 외에 또 어디에서 쓰는가?”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산단(山壇), 대보단(大報壇), 선농단(先農壇), 선잠단(先蠶壇), 문묘(文廟)에서 모두 아악을 씁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종묘는 옛날에 아악을 썼는데 지금은 속악을 쓰는 것은 언제 개정한 제도인가?”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세종조(世宗朝)에서 처음 속악을 썼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전정악(殿庭樂)이 속악이기 때문에 아악은 평소 듣는 음악이 아니라고 여겨 묘정(廟庭)에서 쓰지 않는 것일 것이다.” 하니, 서명응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악기의 척도는 옛 제도와 차이 나지 않는가?”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악제(樂制)는 세종조에 비로소 갖추어졌는데, 척도와 분량(分量)이 지금에 와서 차이가 나지 않는 줄 어찌 알겠습니까.” 하자, 전악이 아뢰기를, “종 소리는 급하면 안의 쇠를 깎고 경 소리는 느리면 양끝을 갈기 때문에 옛날의 척도와 맞지 않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황종은 얇고 응종(應鐘)은 두꺼운가?”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황종은 두껍기 때문에 소리가 탁하고, 응종은 가볍기 때문에 소리가 맑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중원(中原)의 석경(石磬)은 이 옥경(玉磬)과 같은가?” 하니, 서명응이 아뢰기를, “중원의 석경은 바로 천구(天球)인데, 우리나라 옥경은 성천(成川)과 **남양(南陽)**의 옥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릅니다.” 하였다. 생(笙)을 불도록 명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생을 만드는 제도를 모르는데, 판부사 가 연경(燕京)에 사신으로 갔을 때 알아왔는가?” 하니, 서명응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소(簫)를 불도록 명하고 나서, 내가 이르기를, “중지하라.” 하였다. 훈(塤)과 지(篪)를 불도록 명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이는 형제간에 쓰는 음악으로, 악곡 이름은 아름답지만 고악(古樂)은 결코 저렇지 않았다.”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음률이 저러하니 기쁘든 슬프든 간에 어찌 감동될 리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약(籥)와 적(翟)을 불도록 명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소리가 되질 않는다. 중지하라.” 하였다.
악장을 읽어 아뢰도록 명하자, 전악이 아뢰기를, “영신악(迎神樂)은 악장이 없고 전폐악(奠幣樂)은 악장이 있으니, 의당 전폐악의 악장을 아뢰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아악과 속악의 일무(佾舞)는 같은가, 다른가?”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문무(文舞)는 춤출 때 약(籥)과 적(翟)을 쓰는데 아악에 쓰는 것이고, 무무(武舞)는 방패[干], 도끼[戚], 활[弓], 화살[矢]을 쓰는데 속악에 쓰는 것입니다.”
하자, 전악이 아뢰기를, “아악과 속악의 춤은 대체(大體)는 같지만 절주(節奏)가 다릅니다.” 하였다. 축(柷), 어(敔), 부(缶), 절고(節鼓)를 촛불을 신호로 연주하고 노도(路鼗)로 무일(舞佾)을 도창(導唱)하여 합주(合奏)하기를 마쳤다. 내가 이르기를, “다시 묘정악(廟庭樂)을 연주하라.” 하였다. 종과 경을 합주하고 나서, 내가 이르기를, “편경은 아악과 속악이 같은가?”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생(笙)을 불도록 명하고 나서, 내가 이르기를, “중지하라.” 하였다.
현금(玄琴)을 타도록 명하자, 서명응이 아뢰기를, “현금은 일명 당금(唐琴)이라고 하며 중원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용할 줄 모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그

렇다면 ‘붉은 현(絃)을 퉁겨 서서히 연주하매 한 번 노래하여 세 사람이 화답한다.’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였다. 가야금(伽倻琴)을 타도록 명하고 나서, 내가 이르기를, “중지하라.” 하였다. 비파(琵琶), 아쟁(牙箏), 해금(奚琴)을 함께 타도록 명하고 나서, 내가 이르기를, “중지하라.” 하였다. 당적(唐篴), 퉁소(洞簫), 태평소(太平簫)를 불도록 명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태평소는 군문(軍門)의 태평소와 다르구나.”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태평소는 무무에 쓰는 것입니다.” 하였다. 축, 어, 장고(杖鼓), 북, 노도를 촛불을 신호로 연주하고 방향(方響), 소금(小金), 대금(大金)으로 무일을 도창하여 합주하기를 마쳤다. 내가 이르기를, “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어는 범[虎]모양으로 서방(西方)의 숙살기(肅殺氣)가 있으니, 이는 바로 음악을 끝내는 악기입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악공(樂工)이라고도 하고 악생(樂生)이라고도 하는 것은 어째서인가?” 하니, 김용겸이 아뢰기를, “속악을 맡은 자는 악공이라 하고, 아악을 맡은 자는 악생이라고 합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악생은 몇 명이고, 악공은 몇 명인가?” 하니, 이중호가 아뢰기를, “악공은 168명이고, 악생은 90명입니다.” 하여, 내가 이르기를, “액수(額數)가 부족한 듯한데, 일무(佾舞)를 분배할 때 쪼들리지 않는가?” 하니, 이중호가 아뢰기를, “원액(元額)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년악생(待年樂生)을 추이(推移)하여 쓰고 있습니다.” 하였다.

내가 이르기를, “사직 대제가 머지않았으니, 제조 는 미리 나아가 악기를 점검하고 낭청은 그때에 임박해서 나아가 점화(點火)하고 먼지를 털되, 비단 이번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영구히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이어 하교하기를, “하교할 일이 있어 편전(便殿)에서 소견하겠으니, 합문(閤門) 밖에 와서 기다리라.” 하였다.

강 召見判府事 徐命膺 掌樂提調 金用謙 李重祜于隆孝門

목 予曰登歌軒架間先以社壇所用樂爲之也予曰古之樂雖不可復雅俗樂器尙能依倣古制不失尺度則好矣而誰可爲此者命膺曰聖敎誠然而明於樂制者實難其人矣予曰應鍾宮則用於社壇之樂乎典樂曰然矣予曰近來無特鍾特磬乎命膺曰特鍾磬無之故以黃鍾磬代用矣予曰此編鍾乎用謙曰然矣予曰靈鼓雷鼓有之乎用謙曰雷鼓則無之而靈鼓則用於社壇矣予曰彼提調多解音律矣命膺曰久帶樂正故能習知之矣予曰編鍾則用於朝廷特鍾則用於社壇何也命膺曰天子用八佾諸候用六佾而隨其樂章協以節奏故如此矣予曰宗廟用俗樂社稷用雅樂乎用謙曰然矣予曰雅樂則社壇外又用於何處乎用謙曰山壇 大報壇 先農 先蠶 文廟皆用雅樂矣予曰宗廟古用雅樂而今用俗樂此乃何時更定之制耶用謙曰自世宗朝始用俗樂矣予曰殿庭樂卽俗樂故雅樂則以爲平日不御之樂不用於廟庭矣命膺曰然矣予曰樂器尺度能與古制不差乎用謙曰樂制始備於世宗朝而尺度分量安知其至今不差乎典樂曰鍾聲急則削其內金磬聲緩則磨其兩端故與古之尺度不協矣予曰黃鍾薄而應鍾厚乎用謙曰黃鍾厚故聲濁應鍾輕故聲淸矣予曰中原石磬與此玉磬同乎命膺曰中原石磬卽是天球而我國玉磬則以成川 南陽玉爲之故不同矣命吹笙予曰我國不知作笙之制矣判府事使燕京時知來乎命膺曰然矣命吹簫訖予曰止之命吹塤篪予曰此則用於兄弟之樂樂名則美矣而古樂則決不如彼矣用謙曰音律如彼而哀樂間寧有感動之理乎命吹籥篴予曰不成聲矣其止之命讀奏樂章典樂曰迎神樂則無樂章奠幣樂則有樂章當以典幣樂章奏之乎予曰雅俗樂佾舞同乎不同乎用謙曰文舞則舞用籥翟用於雅樂者也武舞則用干戚弓矢用於俗樂者矣典樂曰雅俗樂舞大體則同而節奏則不同矣柷敔缶節鼓照燭路鼗導唱舞佾合奏訖予曰更以廟庭樂爲之也鍾磬合奏訖予曰編磬則雅俗同乎用謙曰然矣命吹笙訖予曰止之命彈玄琴命膺曰玄琴一名唐琴自中原出來而我國之人不知其用矣予曰然則朱絃疏越一唱三歎之意安在哉命彈伽耶琴訖予曰止之命合彈琵琶牙箏 奚琴訖予曰止之命吹唐篴 洞簫 太平簫予曰太平簫則與軍門太平簫不

同矣用謙曰太平簫則用於武舞者矣柷敔杖鼓鼓路鼗照燭方響小金大金導唱舞佾合奏訖予曰敔之義何也用謙曰敔形如虎象西方肅殺之氣此乃止樂之器也予曰或曰樂工或曰樂生何也用謙曰典俗樂者謂之樂工典雅樂者謂之樂生矣予曰樂生幾名樂工幾名乎重祐曰樂工則一百六十八名樂生則九十名矣予曰額數似不足佾舞分排時能不苟艱乎重祐曰元額不足故以待年樂生推移用之矣予曰社稷大祭不遠提調前期進詣點檢樂器郎廳則臨時進詣點火拭塵而非但今番如此永爲定式也仍敎曰有下敎事便殿當召見來待閤門外

<일성록, 정조2년(1778) 11월 29일(을묘)>

문화/예술

남양에서 경석이 생산되기 시작한 일을 언급하며 아악의 일을 논의하다

강 없음

목 [인정문(仁政門)에 나아가 조참(朝參)을 행하였다.]

○ 호조 정랑(戶曹正郞) 구응(具膺)의 소회에, "나라의 재정이 넉넉한지 부족한지 여부와 백성들의 생업이 쇠잔한지 번성한지 여부는 오로지 전정(田政)에 달려 있고, 제언(堤堰)을 만들고 보(洑)를 쌓으며 황무지를 개간하고 진전(陳田)을 기경하는 것은 또 전정 가운데 가장 긴요한 일입니다. (…) ○ 한성부 서윤(漢城府庶尹) 박일원(朴一源)의 소회에,

"신은 전에 장악원 첨정(掌樂院僉正)을 맡은 바 있어 일찍이 태묘악(太廟樂)과 사전(祀典)에 대해 삼가 생각하던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정은 아악(雅樂)을 사단(社壇)과 황단(皇壇), 문묘(文廟)에 두루 쓰면서 유독 태묘에만은 쓰지 않으니, 어째서입니까? 생각건대, 우리 세종조 을사년(1425, 세종7)에 거서(秬黍)가 해주(海州)에서 나고 병오년(1426)에 경석(磬石)이 **남양(南陽)**에서 생산되자, 특별히 황종(黃鐘)을 만들어 악률을 바로잡게 하여 태묘의 제악으로 정하였습니다. 당상에서는 응종(應鐘)의 율을 쓰고 당하에서는 황종의 율을 써서 음이 올라가고 양이 내려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천지의 기운이 교합하여 만물이 무성해지는 뜻을 취한 것으로, 순 임금의 소악(韶樂)과 은나라 탕왕의 호악(濩樂)에 아름다움을 짝하였으니, 만세에 이르더라도 실로 따라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릉(英陵 세종)이 지난 이후에는 다시 속악(俗樂)을 쓰게 되었으니, 이른바 속악은 곧 당(唐)나라의 이원(梨園) 음악입니다. 명황(明皇 당 현종)이 안녹산(安祿山)의 난을 피하여 촉(蜀)에 행행한 시기에 특별히 신라(新羅)에서 문안 온 것을 가상하게 여겨 이원의 악부(樂部)를 하사하니 신라 왕이 영광스럽게 여겨 종묘(宗廟)에 올려 마침내 신라와 고려의 종묘악이 되었던 것인데, 장구(杖鼓)는 말갈(靺鞨)의 북이고, 필률(篳篥)은 오랑캐의 갈잎 피리이고, 해금(奚琴)은 해족(奚族)과 거란(契丹)의 거문고입니다. 당상에서 황종을 쓰고 당하에서도 황종을 써서 양뿐이고 음이 없어 오음(五音)이 조화롭지 못합니다. 나라에 아악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아악이 있는데도 도리어 속악을 쓰는 것은 실로 밝은 시대의 흠되는 일입니다.

우리 선대왕께서 일찍이 장악원(掌樂院)을 이원으로 칭하는 것을 금하셨고, 이원이라는 이름마저도 금하셨으니 어찌 이원의 음악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조정 신하들이 속악이 곧 이원의 음악이라고 진달하지 않았으니, 즉시 바로잡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아악을 쓴다면 필시 선대의 뜻을 계승하려는 우리 성상의 훌륭하신 효심에 빛이 날 것입니다.

경모궁(景慕宮)의 영신악(迎神樂)에 3성(成)을 쓰는 것은 더욱이 의의가 없습니다. 무(舞)에 6일(佾)을 쓰면 악(樂)에 9성을 쓰는 것이 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례(周禮)》에 교단(郊壇)에서는 6성을 쓰고 사단(社壇)에서는 8성을 쓰고 조묘(祖廟)에서는 9성

을 쓴다고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신이 감응하여 흠향하도록 하는 방도인데, 유사를 맡은 신하들이 이러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중사(中祀)에는 3성을 쓴다는 조문을 잘못 인용하여 무에 6일을 쓰고 악에 3성을 써서 무는 중하고 악은 가볍게 되어 음양이 조화롭지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 크게 예를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전(祀典)의 과품(果品)으로 말하더라도, 정(鼎)과 조(俎)에 기수(奇數 홀수)를 쓰고 변(籩)과 두(筥)에 우수(偶數 짝수)를 쓰는 것은 모두 음양을 형상한 것이니, 땅에서 생산되는 과품은 마땅히 우수를 써야 합니다. 태묘 시향(時享)의 과(果)를 5품으로 하고 고제(告祭)의 과를 1품으로 하는 것만도 이미 우수를 써야 하는 의리에 어긋나는데, 승(升 되)과 약(爵 반홉)의 수도 각기 달라 태묘에서는 1승 5약을 쓰고 영희전(永禧殿)에서는 2승 3약을 쓰고 황단(皇壇)에서는 3승 2약을 쓰니, 모두 지극히 공경히 할 곳인데도 서로 들쑥날쑥하여 같지 않습니다. 저경궁(儲慶宮), 육상궁(毓祥宮), 의열궁(義烈宮), 연호궁(延祜宮)도 사체가 높은 데에는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사전의 제수(祭需)를 마련하는 데는 간간이 차등이 있으니 또한 한결같은 예로 고르게 정해서 사전을 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여, 비답하기를,

"진달한 두 조항은 막중한 전례에 관계되는 일이니, 널리 물어서 처리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예조 참의가 시원임 대신에게 나아가 의논하고, 이어 낭관을 보내어 예를 잘 아는 신하에게 문의해서 각기 헌의하도록 하며, 관각의 신하도 모두 의견을 갖추어 헌의하게 하라. 그것이 다 도착하면 본조에서 초기로 품처하라." 하였다. (…)

강 없음

목 戶曹正郎 具膺所懷國計之盈縮民業之殘盛專係於田政而堤堰築洑開荒起陳又是田政中最緊者也 (…) ○漢城府庶尹 朴一源所懷臣前任掌樂院 僉正嘗於樂祀典竊有所懷矣我朝雅樂之遍用於杜壇皇壇 文廟而獨不用於太廟何也惟我世宗朝乙巳秬黍出於海州丙午磬石出於南陽特造黃鐘以正律呂定爲太廟之祭樂堂上用應鐘之律堂下用黃鐘之律陰升陽降蓋取天地之交泰配美虞韶匹休殷濩雖至萬世固宜遵用而英陵之後復用俗樂所謂俗樂卽唐之梨園樂也明王幸蜀之日特嘉新羅之奔問命賜梨園樂部羅王榮之薦于宗廟遂爲羅麗之廟樂而杖鼓羯鼓也篳篥胡笳也爽琴奚契丹之琴也堂上用黃鐘堂下亦用黃鐘獨陽無陰五音不和國無雅樂則已有雅樂而反用俗樂實是昭代之次典也惟我先大王嘗禁樂院之稱爲梨園 梨園之名稱且禁之豈用梨園之樂而其時廷臣未陳俗樂之是梨園樂不卽釐正者此也今若復用雅樂則必有光於我聖上繼述之達孝矣至若景慕宮迎神三成尤無義意舞用六佾則樂用九成於禮則然周禮之郊壇六成社壇八成祖廟九成皆爲昭格之道而有司之臣不識此理誤引中祀三成之文舞用六佾而樂用三成舞重樂輕陰陽不協豈非失禮之大者也雖以祀典之果品言之鼎俎之奇籩筥之耦皆象陰陽則地產之果品當用耦數而太廟時享之果五品告祭之果一品已違於用耦之義升爵之數亦各不同太廟用一升五爵永禧殿用二升三爵皇壇用三升二爵俱是至敬之地而參差不齊儲慶宮 毓祥宮 義烈宮 延祜宮事體之尊小無異同而祀典之需間有差等亦宜一例均定以重祀典矣批以所陳二條事係莫重典禮不可不博詢處之禮曹參議就議時原任大臣仍又發遣郎官問議于知禮之臣俾各獻議館閣之臣亦皆具意見獻議待其齊到自本曹草祀稟處 (…)

<일성록, 정조10년(1786) 1월 22일(정묘)>

연구진

연구책임	● 최성환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위원
연구원	● 이동인 / 수원학연구센터 연구원
연구보조원	● 양지선 / 단국대학교 강사
연구보조원	● 나영훈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수료
연구보조원	● 최문수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최덕환 /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
연구보조원	● 이진걸 /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 개인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근대 수원 자료집

발 행 인 손 혁 재
발 행 일 2015년 3월 6일
발 행 처 수원시정연구원
(443-8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 345번길111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비매품 ISBN 979-11-85686-32-5

본 출판물의 판권은 수원시정연구원에 속합니다.